



2022. 8.

국회에산정책처 | 대한민국 재정

2022 대한민국 재정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22 대한민국 재정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 대한민국 재정

총괄 | 송병철 예산분석실장

기획·조정 | 서세욱 사업평가심의관

이현중 예산분석총괄과장

박주연 산업예산분석과장

김현중 사회예산분석과장

이종구 행정예산분석과장

전용수 경제산업사업평가과장

김애선 사회행정사업평가과장

이은경 공공기관평가과장

이유미 추계세제총괄과장

작성 | 최성민 김윤성 김승현 김국찬 이강구 윤성식 김태민 박나경 안병후

이미선 고준혁 최해인 진달래 김정선 이한성 김성은 이선화 정성영

한예슬 최형수 김소연 심성택 송은혜 황아람 안태훈 변재연 이병철

임길환 손동희 강만원 전수연 김태은 안수지 김우림 김민석 한지은

안옥진 김보은 오지은 장희란 이규민 박승호 김문경 이광근 태정림

윤주철 이정훈 문지은

지원 | 이주호 장유진 최보경

이 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 따라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발간되었습니다.

연락처: 예산분석총괄과 02-6788-4687 bac@nabo.go.kr

이 보고서는 국회예산정책처 홈페이지(www.nabo.go.kr)를 통해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발간사

지난 3월 IMF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따른 영향으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조정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제여건도 코로나19 상황 장기화와 국제유가 상승,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을 통한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불확실한 경제여건 하에서 우리 국민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장기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국가재정이 효율적으로 운용·관리될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신의 재정정보 제공을 통해 국회의 예·결산 심사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2004년부터 매년 「대한민국 재정」을 발간하여 왔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2022 대한민국 재정」은 총 3부 27장으로 구성됩니다. 제1부에서는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주요 재정제도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에는 예산안 편성 파트에서 정보화사업·재난 안전사업·공적개발원조(ODA)·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등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고, 예산 집행 파트에서는 예산비중이 큰 출연·출자·보조 등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으며, 기타 재정제도에서는 부담금 및 대외군사 판매(FMS) 등의 내용을 추가하였습니다. 제2부에서는 2022년도 예산·기금의 주요 내용과 예산안 등의 국회 심의내역을 다루면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의과정을 추가하였으며, 제3부에서는 17개 상임위원회 별로 소관부처의 재정 현황과 주요 재정사업을 정리하였습니다. 그 밖에 글상자를 통하여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OECD 국가와 우리나라의 교육투자 비교 등 다양한 이슈들을 수록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라의 재정구조와 예산 현황을 파악하고 예·결산 심의를 하는데 「2022 대한민국 재정」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합니다.

2022년 4월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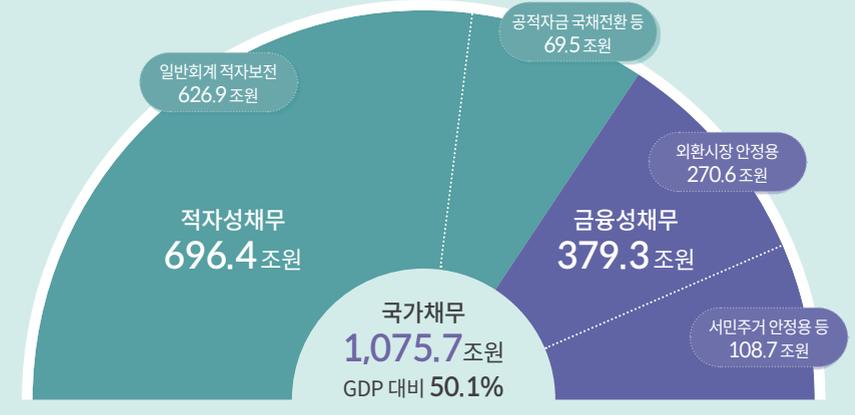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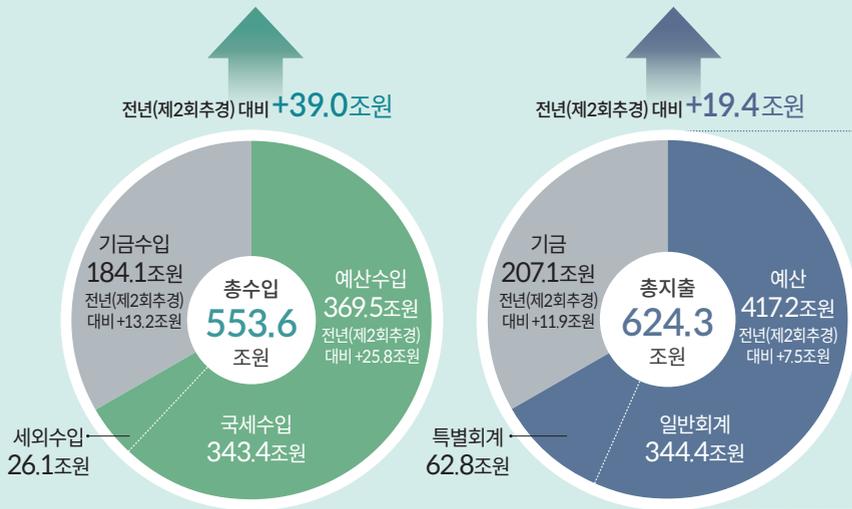
2022

주요 재정지표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 주요 재정지표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증감합계는 단수처리 과정에서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음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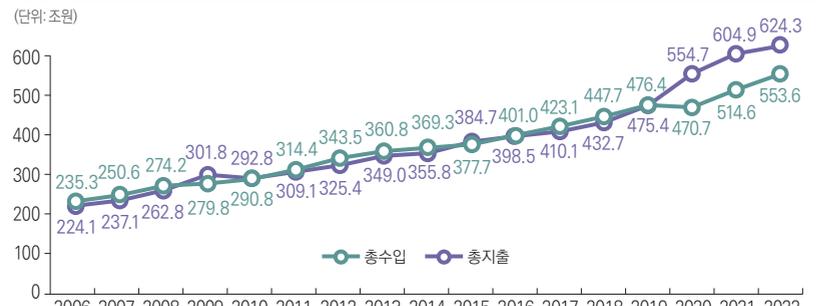
재정총량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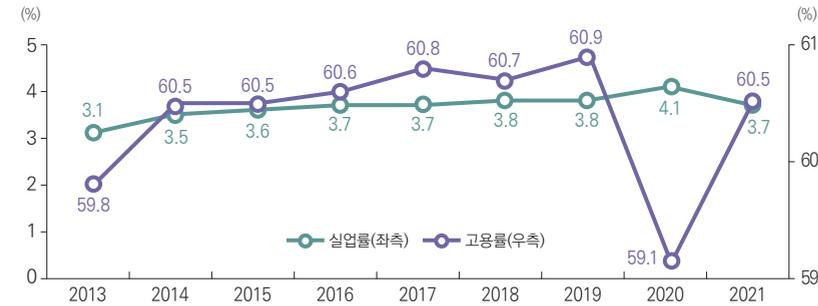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추경안	국회 확정(B)	추경안 대비 증감	(B-A)	(B-A)/A
총수입	482.6	514.6	553.6	553.6	553.6	0	39	7.6
총지출	558	604.9	607.7	621.7	624.3	2.6	19.4	3.2
관리재정수지 (GDP대비, %)	△112.5 (△5.6)	△126.6 (△6.2)	△94.1 (△4.4)	△108.2 (△5.0)	△110.8 (△5.2)	△2.6 (△0.1)	15.8 (1.4)	
국가채무 (GDP대비, %)	956 (47.3)	965.3 (47.3)	1064.4 (50)	1075.7 (50.1)	1075.7 (50.1)	0	110.4 (2.8)	11.4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및 「2022년도 예산안 심사보고서」, 2021.12.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연도별 실업률 및 고용률



12대 분야별 재원배분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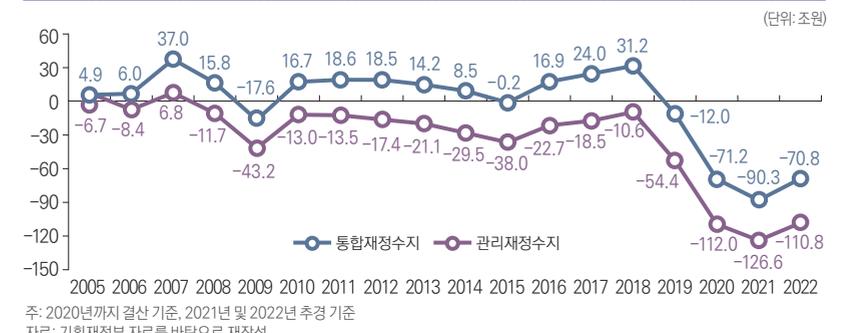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29.5 (131.9)	144.7 (145.8)	161 (162.6)	180.5 (197.8)	199.7 (212.1)	217.7 (221)	10.8
2. 교육	57.4 (59.4)	64.2 (64.4)	70.6 (70.7)	72.6 (71.0)	71.2 (77.8)	84.2 (84.2)	7.0
3. 문화·체육·관광	6.9 (7.0)	6.5 (6.5)	7.2 (7.3)	8.0 (8.1)	8.5 (8.8)	9.1 (9.2)	8.8
4. 환경	6.9 (7.1)	6.9 (7.0)	7.4 (8.6)	9.0 (9.2)	10.6 (10.7)	11.9 (11.9)	14.6
5. R&D	19.5 (19.5)	19.7 (19.7)	20.5 (20.9)	24.2 (24.3)	27.4 (27.5)	29.8 (29.8)	10.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0 (18.8)	16.3 (18.2)	18.8 (20.5)	23.7 (35.5)	28.6 (40.1)	31.3 (43.8)	17.7
7. SOC	22.1 (22.2)	19.0 (19.1)	19.8 (20.4)	23.2 (22.9)	26.5 (26.6)	28 (28.1)	10.2
8. 농림·수산·식품	19.6 (19.8)	19.7 (19.8)	20 (20.3)	21.5 (21.4)	22.7 (23)	23.7 (23.7)	4.7
9. 국방	40.3 (40.3)	43.2 (43.2)	46.7 (46.7)	50.2 (48.4)	52.8 (52.3)	54.6 (54.6)	6.0
10. 외교·통일	4.6 (4.6)	4.7 (4.7)	5.1 (5.1)	5.5 (5.1)	5.7 (5.7)	6 (6)	6.3
11. 공공질서·안전	18.1 (18.2)	19.1 (19.1)	20.1 (20.2)	20.8 (20.7)	22.3 (22.3)	22.3 (22.3)	3.9
12. 일반·지방행정	63.3 (65.1)	69.0 (69.1)	76.5 (76.7)	79 (94.0)	84.7 (99.7)	98.1 (98.1)	9.2

주: 본예산 기준, 괄호는 추경 기준, 연평균증가율은 본예산기준으로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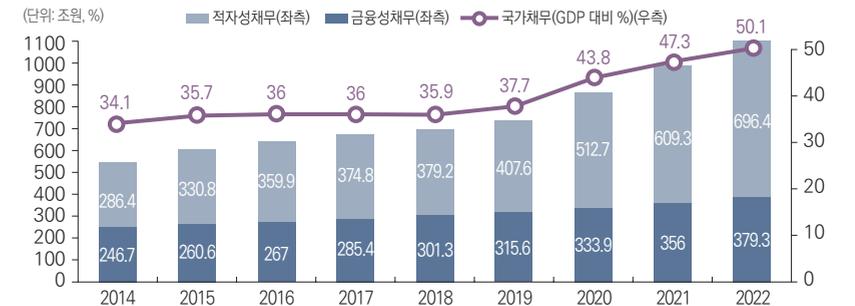
연도별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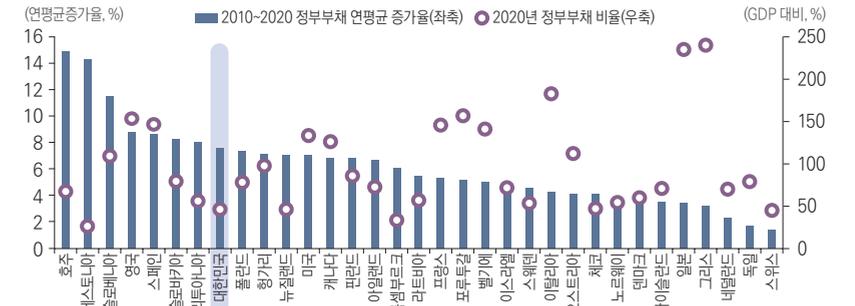
재정수지



국가채무



OECD 국가의 국가채무



제1부 재정의 이해

제1장 재정의 의의 2

제1절 재정의 의미 2

제2절 재정의 기능 2

제3절 재정의 분류 3

제2장 재정 구조 7

제1절 중앙정부 재정 7

1. 개관 7

2. 일반회계 9

3. 특별회계 10

4. 기금 11

제2절 지방정부 재정 16

1. 지방재정 의의 및 구조 16

2. 일반재정 18

3. 교육재정 26

4. 지방재정조정 32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40

제3절 일반정부 재정 43

제3장 수입·지출 48

제1절 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 48

1. 의의 48

2. 내부거래 52

3. 보전거래 57

제2절 재정수입 60

1. 국세수입 60

2. 세외수입 65

3. 기금수입 69

제3절 재정지출 71

1. 소관별 재정지출 71

2. 분야별 재정지출 74

3. 성질별 재정지출 79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81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86

제1절 재정수지 86

1. 재정수지의 의의 86

2. 재정수지의 구분 86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88

4. 재정수지 국제비교 89

제2절 국가채무 93

1. 국가채무의 의의 93

2. 국가채무의 구분 93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95

4. 국가채무의 관리 98

5. 국가채무 국제비교 112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114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14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114

2. 재정과정 개관 118

3. 예산의 종류 121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27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127

2. 국가재정운용계획 137

3. 조세지출 예산 141

4.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45

5. 국가연구개발(R&D) 153

6. 정보화사업 159

7. 민간투자사업 163

8. 총액계상사업 168

9. 재난안전사업 171

10. 공적개발원조(ODA) 179

11. 성인지예산제도 186

12. 국민참여예산제도 189

1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191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195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195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200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외제도 203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206

1. 정부의 예산집행 206
2. 예산집행의 신속성 유지제도 211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216
4. 국고금 관리 222
5. 출연·출자·보조 228
6. 연기금투자플 246
7. 회전자금 255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258

1. 정부 결산 258
2. 국회 결산 심의 266
3. 성과관리제도 272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276

제6절 기타재정제도 281

1. 법안비용추계 281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285
3. 8대 사회보험 288
4. 부담금 301
5. 대외군사판매(FMS) 312
6. 사회보장제도 314

제6장 국유재산 319

제1절 국유재산 현황 319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319
2. 국유재산 현황 321
3. 국유재산 취득·처분 324
4. 국유재산 수입 327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328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328

2. 국유재산종합계획 330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332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333

제7장 공공기관 340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340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340
2. 공공기관 현황 341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342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343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344

1.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344
2.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345
3. 공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349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352

제2부 2022년도 재정 현황

제1장 2022년도 재정개요 360

1. 재정 총량 360
2. 총수입 361
3. 총지출 361
4. 재정수지 364
5. 국가채무 365

제2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367

제1절 2022년도 예산 367

1. 예산총칙 367
2. 세입예산 376
3. 세출예산 379
4. 명시이월비 380

- 제2절 2022년도 기금 381
 - 1. 기금운용규모 381
 - 2. 기금별 운용규모 382
-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385
 -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385
 - 2. 정부지급금 추계 386
-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 388
 - 1. 2022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388
 -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389
 - 3. 국가보증채무 전망 391
-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391
 - 1.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91
 -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92
 -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93
- 제3장 2022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395**
 -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395
 -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396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398
 - 3. 본회의 의결 398
 - 제2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의 405
 -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406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407
 - 제3절 2021년 세법개정 410
 - 1. 개관 410
 -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410
 -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411
 -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412
 - 5.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주요 개정사항 ... 414
 - 6.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415
 -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415

제3부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420**
 - 제1절 국회 420
 -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21
 - 제3절 대통령경호처 423
 -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425
-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426**
 - 제1절 법무부 426
 - 제2절 법제처 429
 - 제3절 감사원 431
 - 제4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432
 - 제5절 대법원 433
 - 제6절 헌법재판소 436
- 제3장 정부위원회 438**
 -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38
 -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440
 - 제3절 국가보훈처 442
 -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447
 - 제5절 금융위원회 448
 -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56
 - 제7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458
-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459**
 - 제1절 기획재정부 459
 - 제2절 국세청 465
 - 제3절 관세청 469
 - 제4절 조달청 470
 - 제5절 통계청 473

제5장 교육위원회 475

제1절 교육부..... 475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483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3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492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495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498

제1절 외교부..... 498

제2절 통일부..... 501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3

제8장 국방위원회 505

제1절 국방부..... 505

제2절 방위사업청..... 508

제3절 병무청..... 510

제4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512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513

제1절 행정안전부..... 513

제2절 인사혁신처..... 517

제3절 경찰청..... 520

제4절 소방청..... 523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25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527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527

제2절 문화재청..... 532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535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535

제2절 해양수산부..... 542

제3절 농촌진흥청..... 546

제4절 산림청..... 548

제5절 해양경찰청..... 552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555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555

제2절 중소기업부..... 562

제3절 특허청..... 569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572

제1절 보건복지부..... 572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578

제3절 질병관리청..... 580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584

제1절 환경부..... 584

제2절 고용노동부..... 589

제3절 기상청..... 599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601

제1절 국토교통부..... 601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607

제3절 새만금개발청..... 609

제16장 정보위원회 611

제1절 국가정보원..... 611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613

제1절 여성가족부..... 613

글상자 목차

제1부 재정의 이해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5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18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초·중등 단계

교육투자 비교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

지역상생발전기금 37

지방소멸대응기금 42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 62

주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63

세원별 조세구조 65

구조적 재정수지

(Structural Budget Balance; SBB) 90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비교 90

국가보증채무 95

재정준칙(fiscal rules) 103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107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110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118

예산안 편성지침 129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 129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129

장기계속계약 133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안의 차이 137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148

사업추진 중 재정요소 증가 사업의

적정성 검토 15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절차 194

국회 예산심의권의 제약 198

세입 관련 법안 처리 전 세입예산안

처리 금지 원칙 199

부대의견 199

예산 집행지침 206

예산배정 208

전략물자 257

비용추계 사례 284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기금 289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301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324

교환 및 양여 325

제2부 2022년도 재정 현황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364

2022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

(총 45건) 401

부대의견 409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 대한민국 재정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재정의 이해

제1부

제1장 재정의 의의

제1절 재정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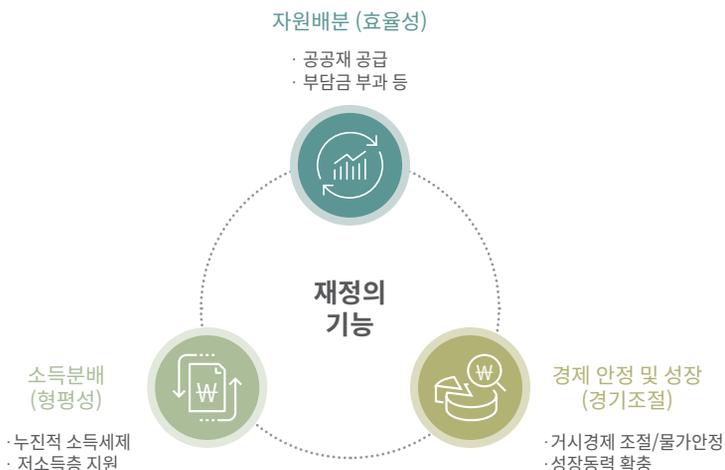
국민경제를 구성하고 있는 주체는 가계와 기업, 정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부는 가계와 기업으로부터 거두어들인 조세수입 등을 기반으로 하여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지출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부 부문의 경제활동을 통칭하여 재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즉, 재정활동은 정부가 수행하는 경제활동으로서 화폐단위로 표시되는 정부의 수입·지출 활동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조세(국세와 지방세)·부담금·기여금의 징수, 보유자산(주식, 부동산 등) 매각 및 국공채 발행 등으로 재원을 조성하며, 국방·외교·치안 등 국가의 유지, 연구·개발(R&D) 등 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조성, 교육 및 사회복지 수요의 충족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출한다.

제2절 재정의 기능

재정의 기능은 자원 배분(효율성), 소득분배(형평성), 그리고 경제 안정 및 성장(경기조절)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 배분 기능은 정부의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부담금 부과 등을 통해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고, 소득분배 기능은 누진적 소득세제나 저소득층 지원 등을 통해 소득을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끝으로 경제 안정 및 성장 기능은 경제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물가 안정과 고용 확대, 그리고 성장동력 확충 등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재정의 기능은 국민경제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보여주고 있을 뿐 아니라, 재정 활동의 총체적 성과를 평가하는 기준이며 개별적인 조세정책과 재정지출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준거가 되기도 한다.

[재정의 3대 기능]



제3절 재정의 분류

재정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재정 운용 주체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둘째, 재정 운용 수단에 따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셋째, 재정 활동의 성격에 따라 수입과 지출 활동으로 각각 구분된다.

주체에 따른 구분

재정은 운용주체에 따라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재정은 중앙정부를 단위로 이루어지는 재정 활동을 의미하며, 지방정부 재정은 지방자치에 기초한 자치단체의 재정 활동과 교육자치에 기초한 지방 교육재정을 포괄한다.

수단에 따른 구분

재정은 운용수단에 따라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국회의 의결대상은 중앙정부 재정에 속하는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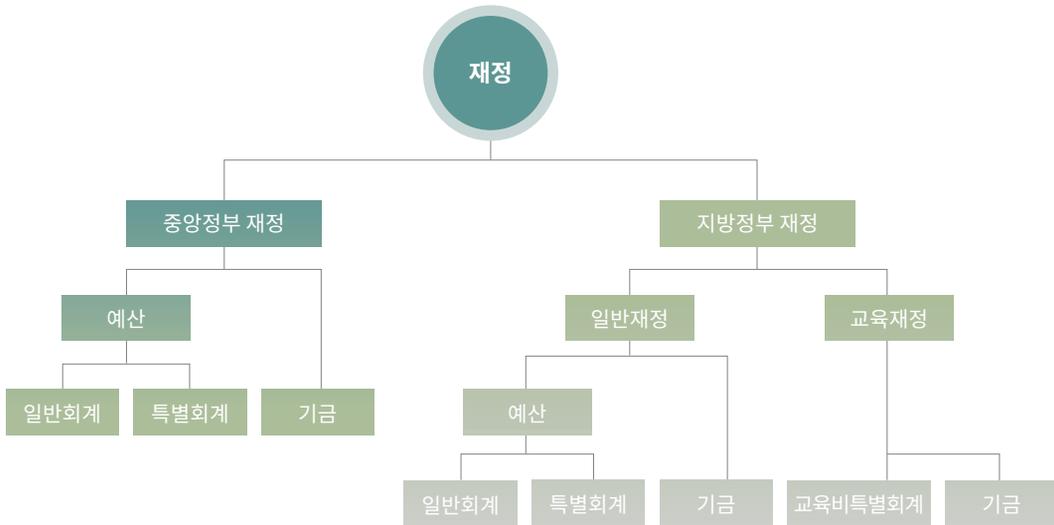
예산의 실질적 의미는 국가의 재정수요와 이를 충당하는 재원을 추정하여 작성한 특정 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예정적 계산서를 말한다. 형식적 의미로는 「대한민국헌법」, 「국회법」 및 「국가재정법」에 따라 정부가 일정한 형식에 따라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 한 회계연도의 국가재정 계획을 말한다. 국회가 심의·의결하는 예산은 이러한 형식적 의미의 예산을 말한다.

반면, 기금은 예산과 구분되는 재정수단으로서, 예산과 유사한 형식으로 편성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계획변경이나 집행절차 등에 있어 예산보다 넓은 재량권이 인정된다.¹⁾

성격에 따른 구분

재정활동은 본질적으로 정부의 수입과 지출 활동이다. 예산과 기금 등 모든 재정운용수단은 수입과 지출로 구성된다. 특히 「국가재정법」에서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수입은 세입, 지출은 세출로 규정함으로써 기금의 수입·지출 활동과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 재정의 분류]



1) 예산과 기금의 구체적인 차이는 제2장 제1절 4.기금 참조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개념

재정정책은 경기를 안정시키거나 부양하기 위한 목적으로 정부의 재정지출이나 조세수입을 변화시키는 정책을 의미한다. 반면, 통화정책은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활동과는 별개로, 화폐의 독점적 발행권을 지닌 중앙은행이 경제 내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나 금리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경기안정화를 꾀하는 정책을 의미한다.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은 정책결정·집행의 주체, 구체적인 수단 등에서 차이를 보이거나, 총수요를 조절하여 경기 침체나 과열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고자 하는 목적을 공유한다.

•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의 연계

이러한 목적을 고려할 때,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실시함에 있어 정책 효과, 경기 상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경기 침체기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확장적 통화정책이 병행될 경우 더 높은 총수요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해 목표한 바 이상으로 총수요가 증대될 경우 경기 과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정책의 방향성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위기와 그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 대해 세계 각국은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확장적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병행하여 적극적인 경기 부양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의 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과 통화량 역시 코로나19 이전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2020년 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은 주요 선진국이 전년대비 18.9%p 증가하였으며, 2020년 기준 OECD 국가들의 총유동성(M3)²⁾은 전년대비 14.5% 증가하였고 특히 미국은 OECD 평균보다 4.7%p 높은 19.2%의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2016~2021년 주요국 GDP 대비 정부부채(D2) 비율]

(단위: GDP 대비 %, %p)

구분	2016	2017	2018	2019(A)	2020(B)	B-A	2021(C)	C-B
전세계 평균	83.2	82.0	82.3	83.6	98.6	15.0	97.8	-0.8
주요 선진국	105.6	103.2	102.7	103.8	122.7	18.9	121.6	-1.1
캐나다	91.7	88.8	88.8	86.8	117.5	30.7	109.9	-7.6
유럽	90.1	87.7	85.7	83.7	97.5	13.8	98.9	1.4
프랑스	98.0	98.3	98.0	97.6	115.1	17.5	115.8	0.7
독일	69.3	65.0	61.6	59.2	69.1	9.9	72.5	3.4
이탈리아	134.8	134.1	134.4	134.6	155.8	21.2	154.8	-1.0

2) 통화량은 그 범위에 따라 M1(현금통화 및 요구불예금,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등), M2(M1 외 기간물 정기에 적금 및 부금, 시장형 금융상품, 금융채 등), M3(M2 외 예금은행 및 비은행금융기관 기타 예수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구분	2016	2017	2018	2019(A)	2020(B)	B-A	2021(C)	C-B
스페인	99.2	98.6	97.5	95.5	119.9	24.4	120.2	0.3
일본	232.5	231.4	232.5	235.4	254.1	18.7	256.9	2.8
영국	86.8	86.3	85.8	85.2	104.5	19.3	108.5	4.0
미국	106.9	106.0	107.1	108.5	133.9	25.4	133.3	-0.6
신흥국	48.4	50.5	52.4	54.7	64.0	9.3	64.3	0.3
저소득 국가	39.5	42.1	42.7	44.2	49.9	5.7	50.2	0.3
한국	41.2	40.1	40.0	42.1	48.9	5.8	51.3	3.4

자료: 1) IMF, 「Fiscal Monitor」, 2021.10.

2) 기획재정부, 「금년도 재정정책운영상과, '20년도 일반정부·공공부문 부채」, 2021.12.16.

주: 2021년은 잠정치

[2016~2020년 주요국 총유동성(M3) 추이]

(단위: 2015년=100, %)

구분	2016	2017	2018	2019(B)	2020(A)	2020년 증가율 (A-B)/B
미국	106.8	112.9	117.2	123.2	146.8	19.2
일본	102.8	106.3	109.0	111.2	117.2	5.4
유로지역	104.9	109.9	114.0	119.9	130.0	8.4
영국	106.5	115.5	119.7	121.3	131.7	8.6
호주	105.9	113.2	116.2	119.7	129.7	8.4
한국	108.2	115.5	123.6	133.3	144.4	8.3
OECD	106.6	113.6	119.3	125.2	143.3	14.5

자료: OECD(계절조정 반영 수치)

제2장 재정 구조

제1절 중앙정부 재정

1. 개관

재정구조

2022년 중앙정부의 재정은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0개) 및 기금(68개)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정부 재정체계]

일반회계	기업특별회계(5개)	기타특별회계(15개)	기금(68개)
<p>세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세 · 법인세 · 부가가치세 · 기타 국제수입 · 세외수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사업 · 우체국예금 · 양곡관리 · 조달 · 책임운영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도작업 · 지역발전 · 농어촌구조개선 · 등기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 에너지 및 자원사업 · 우체국보험 · 주한미군기지이전 · 환경개선 · 국방군사시설이전 · 혁신도시건설 · 교통시설 · 유아교육지원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성기금 49개 · 사회보험성기금 6개 · 금융성기금 8개 · 계정성기금 5개
<p>세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지방행정 · 공공질서및안전 · 통일/외교 · 국방 · 교육 · 문화및관광 · 환경 · 사회복지 · 보건 · 농림수산 ·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 교통및물류 · 통신 · 국토및지역개발 · 과학기술 · 예비비 			

재정규모

2022년 추경예산 기준 중앙정부의 예산 및 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와 보전거래를 제외한 중앙정부 재정규모³⁾는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24.3조원이다.

[2022년 중앙정부재정 규모]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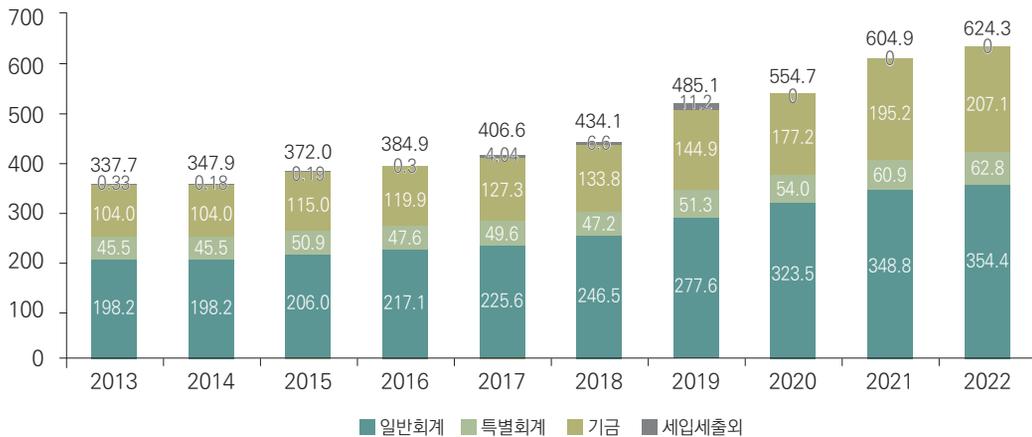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본예산	
		본예산	제2회 추경	본예산	제1회 추경
총수입	478.8 ¹⁾	482.6	514.6	553.6	553.6
- 예산	312.4	311.6	343.6	369.5	369.5
· 국세수입	285.5	282.7	314.3	343.4	343.4
· 세외수입	26.9	28.9	29.3	26.0	26.0
- 기금	166.2	171.0	171.0	184.1	184.1
총지출	549.9 ²⁾	558.0	604.9	607.7	624.3
- 예산	374.4	375.0	409.7	413.0	417.2
· 일반회계	320.8	314.8	348.8	350.2	354.4
· 특별회계	53.6	60.2	60.9	62.8	62.8
- 기금	175.2	182.9	195.2	194.6	207.1

주: 1) 국고통합계정 여유자금 운용수익 등 세입세출 외 수입(0.1조원) 포함

2) 지방자치단체 교부금 정산 등 세입세출 외 지출(0.4조원) 포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중앙정부 재정 규모(총지출) 추이]



주: 예산(추경 포함)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2022년 기준 총 68개 기금 중 9개 기금(외국환평형기금 및 8개 금융성기금)은 제외한다. 총계, 총수입·총지출 등 재정규모 측정방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제3장 제1절 '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 목차 참조

중앙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정부가 총지출 자료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5년 209.6조원에서 2022년 624.3조원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총지출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일반회계 56.8%, 특별회계 10.1%, 기금 33.2%이다.

[중앙정부 총지출 대비 회계·기금별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출	규모	337.7	347.9	372	384.9	406.6	434.1	485.1	549.9	604.9	624.3
	비중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일반회계	규모	198.2	198.2	206	217.1	225.6	246.5	277.6	320.8	348.8	354.4
	비중	58.7	57.0	55.4	56.4	55.5	56.8	57.2	58.3	57.7	56.8
특별회계	규모	45.5	45.5	50.9	47.6	49.6	47.2	51.3	53.6	60.9	62.8
	비중	13.5	13.1	13.7	12.4	12.2	10.9	10.6	9.7	10.1	10.1
기금	규모	104	104	115	119.9	127.3	133.8	144.9	175.2	195.2	207.1
	비중	30.8	29.9	30.9	31.2	31.3	30.8	29.9	31.9	32.3	33.2
세입세출외	규모	0.33	0.18	0.19	0.3	4.04	6.6	11.2	0.4	-	-
	비중	0.1	0.1	0.1	0.1	1.0	1.5	2.3	0.1	-	-

주: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 이후는 예산(추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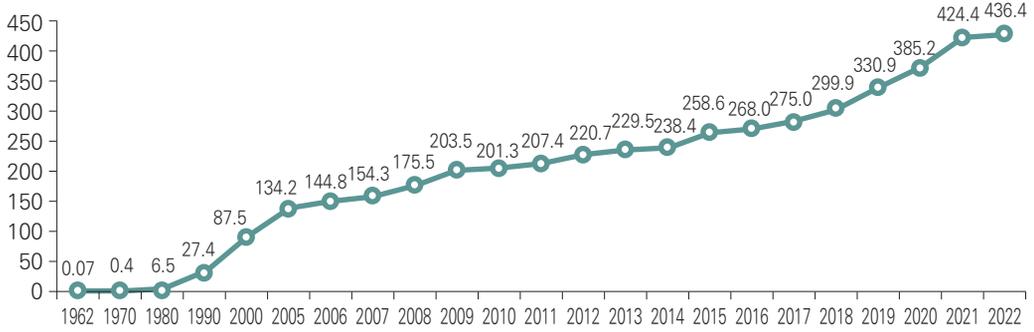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2. 일반회계

일반회계는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수입과 정부출자기업의 배당·지분 매각 수입 등 세외수입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하기 위해 설치된 회계이다. 2022년도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계는 436.4조원이다.

[일반회계 연도별 지출 총계]

(단위: 조원)



주: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 이후는 예산(추경) 기준

자료: 1. 대한민국재정,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 연도
2. 기획재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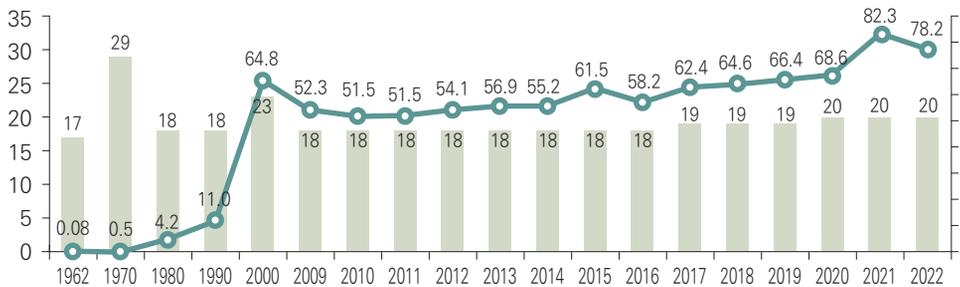
3. 특별회계

특별회계는 국가가 특정사업을 추진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고자 할 때, 또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회계이다. 2022년 1회 추경기준 특별회계의 총계는 78.2조원이다. 특별회계는 모두 20개이고, 정부가 특정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설치하는 기업특별회계(5개)와 그 밖의 목적으로 개별법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타특별회계(15개)로 구분된다. 기업특별회계에는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른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있다.

[특별회계 수 및 연도별 지출 총계]

(단위: 개)

(단위: 조원)



주: 2020년까지는 결산기준, 2021년 제2회 추경기준,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1. 대한민국재정,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각 연도
2. 기획재정부

[특별회계 설치 현황(총 20개)]

(단위: 억원)

특별회계	소관부처	근거법률	2022 세출예산
양곡관리	농림축산식품부	정부기업예산법	22,428
우체국예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34,081
우편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부기업예산법	46,448
조달	조달청	정부기업예산법	4,930
책임운영기관	기획재정부, 각 소관부처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12,259
교도작업	법무부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1,216
국가균형발전	기획재정부, 각 소관부처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114,087
농어촌구조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152,503
등기	대법원	등기특별회계법	3,05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4,054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1,429
에너지및자원사업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53,300
우체국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10,284
주한미군기지이전	국방부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7,716
환경개선	환경부	환경정책기본법	69,062
국방·군사시설이전	국방부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7,665
혁신도시건설	국토교통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437
교통시설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교통시설특별회계법	173,458
유아교육지원	교육부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38,29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 조치법	24,830
합 계			781,531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기금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은 조세수입이 아닌 출연금·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여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므로 수입과 지출의 연계가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에서 특별회계와 유사하다. 과거 기금은 국회의 심의·의결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예산과는 확연히 구분되었으나 현

재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형태로 예산과 동일하게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기 때문에 본질적 차이는 약해진 상황이다.⁴⁾ 그러나 기금은 계획변경이나 집행절차에 있어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비해 탄력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여전히 재정운용 수단으로서의 차이를 가진다.⁵⁾

[예산과 기금의 비교]

구분	예산		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설치사유	국가고유의 일반적 재정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정사업 운용 • 특정자금 운용 • 특정세입을 특정 세출에 충당 	특정목적에 위해 특정자금을 운용
운용형태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원칙	일반회계와 기금의 운용형태 혼재	출연금·부담금 등 다양한 재원으로 다양한 목적사업 수행
수입·지출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배제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특정수입과 지출의 연계
확정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처의 예산요구 • 기획재정부의 정부예산안 편성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관리주체의 기금운용 계획안 수립 • 기획재정부장관과 운용주체간의 협의·조정 •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
집행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법성에 입각하여 엄격히 통제 • 목적외 사용금지 		합목적성 차원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 보장
계획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경예산편성 • 이용·전용·이체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 초과 변경시 국회 의결 필요 (금융성기금의 경우 30%)
결산	국회 심의·의결		

자료: 기획재정부

기금은 2022년 현재 24개 부처에서 68개를 설치·운용 중이며, 운용규모 총계는 수정 기준(제1회 추경) 787.9조원이다.

4) 구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 개정(2002.3.1 시행)과 「국회법」 제84조의2의 신설로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국회가 심의·확정하고 있다.

5) 대표적인 예로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국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운용계획의 일부를 자체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기금 연도별 지출순액]



주: 2020년까지는 결산 지출순액⁶⁾ 기준, 2021년 및 2022년은 수정계획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일반적으로 기금은 그 성질에 따라 사업성기금, 사회보험성기금, 금융성기금, 계정성기금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사업성기금은 특정한 재정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관리·운영하는 기금으로 49개의 기금이 설치·운영되고 있다.

사회보험성기금은 연금지출과 보험지출에 대비하여 기여금과 보험료 등의 자금을 운용하는 기금으로 국민연금기금,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6개이다.

금융성기금은 특정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순수 재정활동이 아니라 보증·보험 등을 제공하는 금융활동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등 8개이다.

끝으로 계정성기금은 특정 자금을 모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 기금으로 공적자금상환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외국환평형기금, 복권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5개이다.

6) 기금 여유자금운용에서 발생하는 여러 번의 수입과 지출에 의해 최초 기금 운용액이 수입과 지출의 횟수만큼 부풀려져 있으므로 결산 작성 시 순계방식으로 계산하여 입력하도록 되어 있다(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결산작성지침).

[부처별 기금현황(68개)]

(단위: 억원)

소관위원회 (기금수)	소관 부처 (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영주체	2022 수입·지출계획
법제사법 위원회(2개)	법무부(1개)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	법무부	1,001
	대법원(1개)	사법서비스진흥기금	사업성	법원행정처	1,826
정무위원회 (8개)	국가보훈처 (2개)	보훈기금	사업성	국가보훈처	6,823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사업성	국가보훈처	1,378
	금융위원회 (6개)	공적자금상환기금	계정성	금융위원회	51,37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금융성	농협중앙회	22,029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성	금융위원회	557
		신용보증기금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120,88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금융성	예금보험공사	31,97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금융성	한국주택금융공사	42,100		
기획재정 위원회(7개)	기획재정부 (7개)	공공자금관리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2,600,073
		복권기금	계정성	복권위원회	77,564
		외국환평형기금	계정성	기획재정부	865,773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금융성	신용보증기금	6,917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업성	기획재정부	14,502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성	기획재정부	19,375
기후대응기금	사업성	기획재정부	24,594		
교육위원회 (2개)	교육부(2개)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보험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공단	132,940
		사학진흥기금	사업성	한국사학진흥재단	3,682
과학기술 정보방송 통신위원회 (4개)	과학기술정보 통신부(2개)	과학기술진흥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03
		정보통신진흥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35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방송 통신위원회 (1개)	방송통신발전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13,910
	과학기술정보 통신부·원자 력안전위원회 (1개)	원자력기금	사업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연구개발계정)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규제계정)	4,994
외교통일 위원회(3개)	외교부(2개)	국제교류기금	사업성	한국국제교류재단	2,205
		국제질병퇴치기금	사업성	외교부	921
	통일부(1개)	남북협력기금	사업성	통일부	15,571
국방위원회 (2개)	국방부(2개)	군인연금기금	보험성	국방부	37,212
		군인복지기금	사업성	국방부	10,203
행정안전 위원회(1개)	인사혁신처 (1개)	공무원연금기금	보험성	공무원연금공단	267,951

소관위원회 (기금수)	소관 부처 (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영주체	2022 수입·지출계획
문화체육관광 위원회(7개)	문화체육 관광부(6개)	관광진흥개발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18,734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성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민체육진흥계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 원회 (사행산업중독예방치 유계정)	28,102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5,240
		언론진흥기금	사업성	한국언론진흥재단	382
		영화발전기금	사업성	영화진흥위원회	2,004
		지역신문발전기금	사업성	문화체육관광부	95
	문화재청(1개)	문화재보호기금	사업성	문화재청	1,551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 위원회(8개)	농림축산 식품부(7개)	양곡증권정리기금	계정성	농림축산식품부	7,271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25,842
		농어업재해재해보험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1,450
		농지관리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32,784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 지불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24,22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4,721
	축산발전기금	사업성	농림축산식품부	10,445	
해양수산부 (1개)	수산발전기금	사업성	해양수산부	9,267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 기업위원회 (7개)	산업통상 자원부(4개)	무역보험기금	금융성	한국무역보험공사	44,227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사업성	산업통상자원부	72,118
		전력산업기반기금	사업성	산업통상자원부	62,324
		산업기술진흥 및 사업화촉 진기금	사업성	산업통상자원부	1,770
	중소벤처 기업부(3개)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 기금	사업성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6,61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사업성	중소벤처기업부	246,771
기술보증기금	금융성	기술보증기금	33,481		
보건복지 위원회(3개)	보건복지부 (3개)	국민연금기금	보험성	보건복지부	1,307,422
		국민건강증진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44,572
		응급의료기금	사업성	보건복지부	4,639
환경노동 위원회(10개)	환경부(5개)	금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금강수계위원회	1,738
		낙동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낙동강수계위원회	2,535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영산강·섬진강수계 위원회	1,421
		한강수계관리기금	사업성	한강수계위원회	6,763
		석면피해구제기금	사업성	환경부	321

소관위원회 (기금수)	소관 부처 (기금수)	기금명	유형	관리운용주체	2022 수입·지출계획
환경노동 위원회(10개)	고용노동부 (5개)	고용보험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227,049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보험성	고용노동부	181,407
		근로복지진흥기금	사업성	근로복지공단	4,334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9,6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	사업성	고용노동부	18,746
국토교통 위원회(2개)	국토교통부 (2개)	주택도시기금	사업성	국토교통부	928,510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사업성	국토교통부	2,642
여성가족 위원회(2개)	여성가족부 (2개)	양성평등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6,682
		청소년육성기금	사업성	여성가족부	1,751
합 계					7,879,172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제2절 지방정부 재정

1. 지방재정 의의 및 구조

지방재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개별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행정 구역 내 주민들의 공적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수입·지출 활동과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⁷⁾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은 지방세, 세외수입(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등), 의존수입(중앙정부 및 상급자치단체로부터의 교부세, 보조금 등), 지방채 등을 재원으로 하며, 이를 기반으로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다.⁸⁾

우리나라 지방정부 재정(이하 '지방재정')은 일반행정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일반재정과 교육에 대한 자치를 관할하는 교육재정으로 구분된다.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되며 국가재정과 유사한 구조를 갖는다. 일반회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

7) 「지방재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방재정"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지출 활동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산 및 부채를 관리·처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8) 「지방자치법」 제7장(재무) 제3절(수입과 지출)

고 있다.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에 충당하고자 할 때 설치하며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로 구분된다. 지방공기업특별회계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조례로 설치·운영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지방공단에 적용되며 상·하수도 사업 등을 추진한다. 기타특별회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각종 특별회계 중 지방공기업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특별회계를 총칭⁹⁾한다. 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할 수 있으며, 중앙정부의 기금과 유사하게 계획변경 등에서 집행 상 탄력성¹⁰⁾이 인정된다.

교육재정은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시·도교육청의 재정활동으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17개 시·도교육청의 교육감이 관장한다. 교육·학예에 관한 경비를 별도로 경리하기 위하여 일반재정과 구분하여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운영된다.

[지방재정 구조]



자료 : 행정안전부 및 교육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 등 100여종이 넘는 다양한 형태의 특별회계가 존재한다.

10) 정책사업 지출계획 금액의 20% 이하를 변경하는 경우 지방의회 의결면제 등

지방재정의 규모를 2021년 당초예산¹¹⁾ 통합재정지출¹²⁾ 기준으로 살펴보면 일반재정은 259조 3,891억원이며, 교육재정은 71조 8,605억원이다. 2021년도 기준으로 국가재정(본예산 총지출 기준 557조 9,872억원)과 지방재정(일반재정, 교육재정)의 규모를 구성비로 비교하면 62.7 : 37.3(일반재정 29.2, 교육재정 8.1)이다.¹³⁾ 국가재정 중 지방자치단체가 실제로 집행하는 보조금 및 교부금 등 이전재원을 고려하면 지방재정의 규모는 보다 증가한다. 2021년도 총 재정사용액 기준으로 비교하면 중앙정부는 373조 3,410억원,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253조 2,745억원, 지방교육재정 74조 5,751억원으로 53.3 : 36.1 : 10.6의 비율(2013년 53.2 : 34.2 : 12.6)이다.

2. 일반재정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된다. 이하에서는 일반재정의 규모를 예산(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과 기금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후에 이를 포괄하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를 기술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재정규모를 측정하는 방식으로는 총계방식과 순계방식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 중 순계예산을 기준으로 서술하였다.

총계예산과 순계예산

• 총계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규모를 단순하게 합산한 금액을 총계예산이라 한다. 여기에는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국고보조금 및 시도비보조금, 시도세 및 세외수입의 징수교부금, 시·도의 기초단체용자금, 자치단체간의 부담금, 회계간의 전출금 등이 중복계상된다. 개별 지방자치단체별(예를 들어, 서울시 본청, 종로구, 경기도 본청, 수원시 등)로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는 총계예산을 사용한다.

• 순계예산

지방자치단체 간 예산의 중복계상은 광역과 기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재정활동의 상호의존성 및 동일한 지방자치단체 내에서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간의 전출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이와 같이 중복된 예산을 공제한 예산규모를 순계예산¹⁴⁾이라 한다.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 예산규모, 서울시(시본청 + 25개 자치구), 경기도(도본청 + 31개 시·군) 등의 전체 예산규모를 나타낼 때는 순계예산규모를 사용한다.

11) 당초예산은 전년도에 지방의회에서 심의·확정한 예산으로, 중앙정부의 본예산(기금운용 계획안포함)과 같은 의미이다.

12) 통합재정지출(순계) = 일반회계 지출 + 특별회계 지출 + 기금지출 - 보전지출(지방채상환, 지난연도 이월금 등)

13)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기준의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기준 62.4 : 37.6(일반재정 28.2, 교육재정 9.4) 대비 지방재정 비중 확대

14) 순계예산은 세입예산의 경우 세입을 받는 단체 또는 회계에서 이를 공제하고, 세출예산의 경우 세출을 주는 단체 또는 회계에서 이를 공제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현황

세입예산

지방자치단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보조금+조정교부금),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지방채로 구성된다. 2021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지방자치단체 일반재정 세입예산은 263조 917억원으로 2020년 당초예산 253조 2,263억원 대비 3.9% 증가한 규모이다.

자체수입은 116조 7,479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조 7,436억원(1.5%) 증가하였다. 이 중 지방세가 92조 6,047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546억원(1.8%)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이 24조 1,433억원으로 전년 대비 892억원(0.4%) 증가하였다.

이전수입은 118조 7,213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8조 6,020억원(7.8%) 증가하였다. 지방교부세가 49조 2,632억원으로 전년 대비 1,073억원(△0.2%) 감소하였으나, 보조금이 69조 4,581억원으로 전년 대비 8조 7,093억원(14.3%) 증가하였다.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1조 783억원으로 전년 대비 1조 4,640억원(△6.5%) 감소하였고, 지방채는 6조 5,442억원으로 전년 대비 9,837억원(17.7%) 증가하였다.

[2021년 자원별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19	2020		2021	증감		
	최종예산	당초예산(A)	최종예산	당초예산(B)	B-A	(B-A)/A	
자체수입	지방세	855,359	909,501	921,924	926,047	16,546	1.8
	세외수입	259,804	240,541	320,367	241,433	892	0.4
	소계	1,115,164	1,150,043	1,242,290	1,167,479	17,436	1.5
이전수입	지방교부세	561,809	493,705	501,232	492,632	△1,073	△0.2
	보조금	607,212	607,488	824,763	694,581	87,093	14.3
	소계	1,169,021	1,101,193	1,325,996	1,187,213	86,020	7.8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96,032	225,423	424,783	210,783	△14,640	△6.5	
지방채	40,316	55,605	68,026	65,442	9,837	17.7	
합 계	2,720,533	2,532,263	3,061,095	2,630,917	98,654	3.9	

주: 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세출예산

2021년 당초예산 순계 기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규모는 263조 917억원이다. 분야별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80조 4,767억원(30.6%)으로 가장 크고, SOC 분야 37조 2,014억원(14.1%), 인력운영비¹⁵⁾ 33조 141억원(12.5%) 등이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11조 3,126억원으로 80.3%이고, 특별회계가 51조 7,791억원으로 19.7%이다. 환경 분야의 경우 예산의 57.2%가 특별회계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상하수도·수질, 폐기물 처리 등의 사업이 공기업특별회계에 계상되기 때문이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분야별·회계별 세출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일반회계(A)	특별회계(B)	합계(A+B)	분야별 비중	
사회복지	681,104	123,663	804,767	30.6	
SOC	교통및물류	130,274	78,732	209,007	7.9
	국토및지역개발	113,593	49,414	163,007	6.2
	소계	243,867	128,146	372,014	14.1
인력운영비	270,060	60,081	330,141	12.5	
환경	112,753	150,878	263,631	10.0	
농림해양수산	169,010	3,432	172,441	6.6	
교육	135,542	4,787	140,329	5.3	
일반공공행정	129,362	5,135	134,496	5.1	
문화및관광	115,422	4,321	119,744	4.6	
기본경비등	71,201	10,119	81,320	3.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6,705	5,572	72,277	2.7	
예비비	33,655	5,863	39,518	1.5	
공공질서및안전	37,022	15,778	52,800	2.0	
보건	44,074	18	44,091	1.7	
과학기술	3,349	0	3,349	0.1	
합 계	2,113,126	517,791	2,630,917	100.0	
(순계예산 대비 비중)	(80.3)	(19.7)	(100.0)		

주: 순계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5) 인력운영비는 보수, 기타직보수, 무기계약직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연금지급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을 합한 액수이다.

지방자치단체 기금현황

지방자치단체의 기금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과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

2020년말 기준 지방자치단체 기금의 수는 총 2,400개이며, 기금조성액은 총 38조 8,863억원이다. 기금수는 전년 대비 3개가 감소하였고, 조성액 또한 전년 대비 1조 9,707억원 감소하였다. 자체기금(전년대비 0.9조 증가) 증가에도 불구하고 기금조성액이 감소한 주요 사유는 재난관리기금(전년 대비 2.0조원 감소), 지역개발기금(전년 대비 1.4조원 감소) 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기금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2016		2017		2018		2019		2020	
기금수	조성액								
2,312	162,877	2,323	336,127	2,316	324,341	2,403	408,543	2,400	388,863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2020년 당초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 규모는 총 34조 2,811억원으로, 전년 당초계획 대비 9,416억원(△2.7%) 감소하였다.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규모]

(단위: 억원, %)

2019 최종계획	2020년		2021년 당초계획(C)	증감	
	당초계획(A)	최종계획(B)		C-A	(C-A)/A
377,500	352,227	490,202	342,811	△9,416	△2.7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규모

의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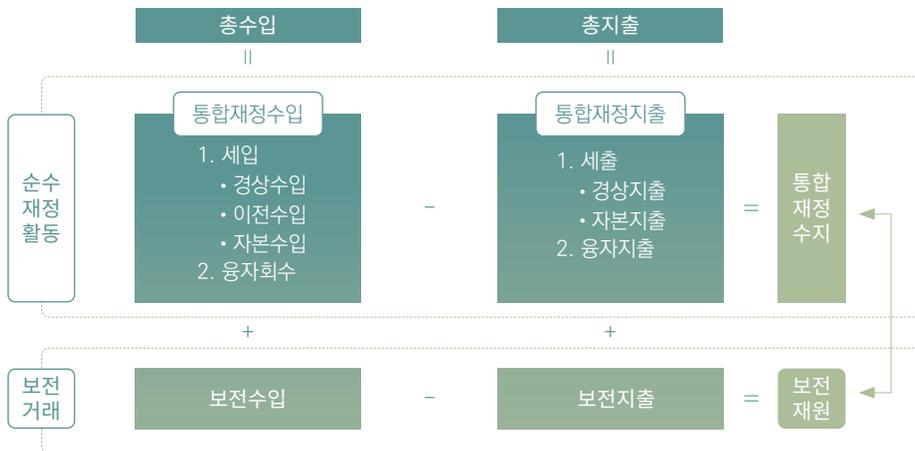
통합재정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산출기준은 순계기준이 적용된다. 우리나라도 1979년 IMF의 권고에 따라 이를 도입하여 중앙정부 등의 통합재정수지를 공개하여 왔으며, 2013년부터 지방재정을 포함한 통합재정규모와 통합

재정수지를 발표하고 있다.¹⁶⁾

우리나라의 지방통합재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하는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및 기금과 지방공기업의 공기업 특별회계를 포함한다.¹⁷⁾ 단,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및 기금 등) 간 내부거래와 지방자치단체(광역과 기초자치단체, 지방교육자치단체) 간 외부거래의 중복 계상분을 제외한다. 또한 수지차(收支差) 보전을 위한 보전거래도 제외한다.

또한 통합재정수지는 당해회계연도의 순수한 수입과 지출인 통합재정 수입에서 통합재정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 지방정부의 금융활동으로 간주되는 보전재원은 제외하고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를 표시하는 지표이다.

[통합재정수지 산정체계도]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 (총수입·총지출) 예산과 기금을 통합한 순계기준의 규모로서, 회계 간 내부거래와 자치단체 간 외부거래를 제외한 규모(보전재원은 포함)
- (통합재정수입) 총수입에서 차입금과 지난연도 이월금 등 보전수입(지방채 차입금, 국·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 규모
- (통합재정지출) 총지출에서 차입금 상환과 다음연도 이월금 등 보전지출(지방채 원금상환, 예치금, 국·시도비보조금 반환금 등)을 제외한 순수한 재정지출 규모
- (통합재정수지) 당해연도의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재정활동의 적자 또는 흑자 등 재정운영수지를 측정하는 지표

$$\begin{aligned}
 * \text{통합재정수지} &= \text{통합재정수입} - \text{통합재정지출} \\
 &= (\text{세입} + \text{용자회수}) - (\text{세출} + \text{용자지출}) \\
 &= \text{세입} - \text{세출} \text{ 및 } \text{순용자} (\text{용자지출} - \text{용자회수})
 \end{aligned}$$

16) 기획재정부, 각 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참조

17) 단, 지방교육재정(교육비특별회계)은 제외하고 있다.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수입은 경상수입(지방세, 세외수입), 이전수입(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자본수입(재산매각수입), 융자회수(융자·출자금 회수)로 구성된다. 2021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입(순계 기준)은 240조 1,591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10조 5,711억원(4.6%) 증가하였으며, 최종예산 대비 19조 4,809억원(△7.5%) 감소하였다.

[2021년도 통합재정수입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증감		증감률	
	당초(A)	최종(B)	당초(C)	C-A	C-B	당초대비	최종대비
통합재정수입	2,295,880	2,596,400	2,401,591	105,711	△194,809	4.6	△7.5
일반회계	2,037,165	2,302,666	2,129,406	92,241	△173,260	4.5	△7.5
특별회계	236,211	248,166	247,759	11,548	△408	4.9	△0.2
기금	22,504	45,567	24,426	1,922	△21,141	8.5	△46.4

주: 통합재정수입(순계)=일반회계수입+특별회계수입+기금수입-보전수입(차입금, 지난연도 이월금 등)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재원별 통합재정수입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재원별 통합재정수입은 지방세가 92조 6,047억원으로 38.6%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세외수입 24조 6,787억원(10.3%), 지방교부세 49조 2,262억원(20.5%), 보조금 69조 4,886억원(28.9%), 융자회수 등 4조 1,609억원(1.7%)이다.

[2021년도 재원별 통합재정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구성비
지방세	926,047	0	0	926,047	38.6
세외수입	98,595	141,208	6,984	246,787	10.3
지방교부세	486,576	5,686	0	492,262	20.5
보조금	595,565	99,016	305	694,886	28.9
융자회수 등	22,623	1,849	17,137	41,609	1.7
합계	2,129,406	247,759	24,426	2,401,591	100.0

주: 융자회수 등=융자회수(1조 9,357억원)+공사·공단 전입금(421억원)+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2조 1,832억원)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통합재정지출

통합재정지출은 경상지출(인건비, 물건비, 이자지급, 기타경상이전지출), 자본지출(고정자산취득, 자본이전 등) 및 용자지출(용자·출자금 지출)로 구성된다. 2021년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지출은 259조 3,891억원으로 전년 당초예산 대비 7조 1,148억원(2.8%) 증가하였으며, 전년 최종예산 기준으로는 42조 2,990억원(△14.0%) 감소하였다.

[2021년도 통합재정지출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당초(C)	증감		증감률	
	당초(A)	최종(B)		C-A	C-B	당초대비	최종대비
통합재정지출	2,522,743	3,016,881	2,593,891	71,148	△422,990	2.8	△14.0
일반회계	1,975,403	2,418,182	2,071,738	96,335	△346,445	4.9	△14.3
특별회계	499,064	511,652	475,826	△23,238	△35,827	△4.7	△7.0
기금	48,277	87,047	46,328	△1,949	△40,719	△4.0	△46.8

주: 통합재정지출(순계)=일반회계 지출+특별회계 지출+기금지출-보전지출(지방채상환, 다음연도 이월금등)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2021년 당초예산 기준 분야별 통합재정지출은 사회복지 분야가 80조 4,035억원으로 31.0%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SOC 분야 35조 1,604억원(13.6%), 인력운영비 33조 228억원(12.7%), 환경 25조 2,507억원(9.7%), 농림해양수산 17조 2,787억원(6.7%) 등이다.

[2021년도 분야별 통합재정지출 규모]

(단위: 억원, %)

분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구성비	
사회복지	680,083	122,336	1,616	804,035	31.0	
SOC	교통 및 물류	126,355	67,157	868	194,380	7.5
	국토 및 지역개발	110,802	41,615	4,807	157,224	6.1
	소계	237,157	108,772	5,675	351,604	13.6
인력운영비	270,060	60,166	2	330,228	12.7	
환경	110,675	140,017	1,815	252,507	9.7	
농림해양수산	165,949	2,749	4,089	172,787	6.7	
교육	135,298	2,363	175	137,836	5.3	
일반공공행정	115,282	1,550	9,935	126,767	4.9	

분 야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합계	구성비
문화및관광	112,563	3,584	2,051	118,198	4.6
기본경비등	72,403	10,198	236	82,837	3.2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3,849	3,877	15,153	82,879	3.2
예비비	33,609	4,683	0	38,292	1.5
보건	44,027	18	552	44,597	1.7
공공질서및안전	27,470	15,512	5,003	47,985	1.8
과학기술	3,313	0	25	3,338	0.1
합 계	2,071,738	475,826	46,328	2,593,891	100.0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통합재정수지

2021년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입은 240조 1,591억원, 통합재정지출은 259조 3,891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9조 2,301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이는 2020년 당초예산 대비 3조 4,563억원 감소, 2020년 최종예산 대비 22조 8,181억원 감소한 규모이다.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를 계산하는 시점에는 전년도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¹⁸⁾이 확정되지 않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을 수입과 지출에 계상하여 흑·적자를 파악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추정치를 통합재정수입에 포함하지 않은 경우와 포함한 경우로 구분하여 통합재정수지를 파악한다.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20		2021 당초(C)	증감	
	당초(A)	최종(B)		C-A	C-B
통합재정수입(a)	2,295,880	2,596,400	2,401,591	105,711	△194,809
통합재정지출(b)	2,522,743	3,016,881	2,593,891	71,148	△422,990
통합재정수지 I (c=a-b)	△226,863	△420,481	△192,301	34,563	228,181
순세계잉여금(d)	177,685	300,476	158,124	△19,561	△142,352
통합재정수지 II(e=c+d)	△49,178	△120,006	△34,177	15,001	85,829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18) 순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이월재원+보조금집행 잔액)
 이월재원=명시이월금+사고이월금+계속비이월금
 세계잉여금(결산상 잉여금)=수납된 세입액-지출된 세출액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내역]

(단위: 억원)

통합재정수입			통합재정지출			
수입과목		금액	지출과목		금액	
세입	경상수입	1,184,339	세출	경상지출	1,901,029	
	이전수입	1,187,148		용자지출	자본지출	664,123
	자본수입	10,747			소계	2,565,152
	소계	2,382,234				
용자회수		19,357	용자지출		28,739	
합 계		2,401,591	합 계		2,593,891	

• 통합재정수지(I)=세입-세출-순용자(용자지출-용자회수)=△192,301

• 통합재정수지(II)(순세계잉여금 177,685억원 포함시)=△34,177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당초예산 기준 연도별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4조 4,696억원 적자, 2021년 19조 2,301억원 적자이다. 한편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할 경우의 통합재정수지는 2016년 1조 3,345억원 흑자, 2021년 3조 4,177억원 적자이다.

[연도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수지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통합재정수지(I)	△144,696	△143,692	△185,055	△223,460	△226,863	△192,301
통합재정수지(II)	13,345	48,297	△5,940	△22,774	△49,178	△34,177

주: 각 연도 당초예산 기준이며, 통합재정수지(I)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되며, 통합재정수지(II)는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하여 계산됨
 자료: 행정안전부(2021. 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3. 교육재정

지방교육재정 세입 구조

지방교육재정은 교육지방자치단체(시·도 교육청)의 교육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해 운영된다.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은 크게 이전수입과 자체수입, 지방채 및 기타 등으로 구분된다. 이전수입은 중앙정부(교육부) 이전수입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인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전입금과 기타 이전수입으로 나눌 수 있다. 자체수입은 사용료, 수수료,

자산수입 등을 포함한다.¹⁹⁾

2022년 본예산 기준 지방교육재정 총 세입은 82.7조원 규모이며, 이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60.9조원으로 전체 세입의 73.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세입]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이전수입	701,391	786,476	740,328	694,749	800,953
중앙정부 이전수입	565,633	645,716	594,421	559,964	650,298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4,777	605,305	541,887	521,269	608,658
- 보통교부금	509,509	588,010	520,433	505,158	591,123
- 특별교부금	15,268	17,295	14,994	6,440	8,434
- 증액교부금	-	-	6,460	9,671	9,101
국고보조금	1,928	2,258	12,634	2,148	5,941
특별회계전입금	38,927	38,153	39,900	36,547	35,699
지자체 이전수입	134,439	139,247	141,527	132,980	149,549
기타 이전수입	1,319	1,512	4,381	1,805	1,107
자체수입	17,004	16,043	12,120	3,953	5,290
지방채 및 기타	69,970	71,354	69,639	12,529	14,684
내부거래 ¹⁾	-	-	179	7,374	5,974
합 계	788,365	873,873	822,267	718,605	826,901

주: 1)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간의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예산 과목 신설

1. 2018-2020년은 결산액 기준이며, 2021년 및 2022년은 본예산액 기준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세출 구조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은 교원 인건비 등 경직적 지출의 비중이 높은 특징이 있다. 2022년 본 예산 기준으로 교육행정기관 및 각급 학교의 정규직·비정규직 보수 등을 포함하는 인건비는 49.5조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의 59.8%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사립 학교회계전출금(인건비 및 시설 사업비 제외)등을 포함하는 전출금 규모는 15.5조원으로 전체 세출 규모의 18.7% 수준이다.²⁰⁾

19) 2021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전학년에 시행됨에 따라 자체수입 중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없어졌다. 다만,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입학금과 수업료를 정하는 자립형 사립고 등은 무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들 사립고의 입학금 및 수업료 수입은 학교회계 자체수입으로 처리된다.

2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경우 교육재정 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운용되며, 기금의 성격 상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예비결산을 통해 이·불용예상액을 적립하기 때문에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을 별도로 세출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있다.

[지방교육재정 세출]

(단위: 억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인건비	401,235	427,793	443,354	462,213	494,650
물건비	23,870	26,296	30,369	25,512	30,666
이전지출	33,188	31,919	32,251	31,547	34,425
자본지출	76,868	111,644	98,875	57,031	106,852
상환지출	40,831	59,966	3,011	794	524
전출금 등	138,940	145,066	155,775	138,619	154,823
예비비 및 기타	1,195	1,327	1,491	2,517	3,354
내부거래 ¹⁾	-	-	11,928	372	1,607
합 계	716,127	804,011	777,054	718,605	826,902

주: 1) 교육비특별회계와 기금간의 '내부거래' 처리를 위하여 예산 과목 신설
 1. 2018~2020년은 결산액 기준이며, 2021년 및 2022년은 본예산액 기준
 자료: 교육부

[지방교육재정 세입재원 구조]

(단위: 조원)



주: 1. 2022년도 본예산 기준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20. 1. 1. 시행)으로 2020년부터 내국세분 교부비율이 인상(20.46→20.79%)되었으며, 이는 「재정분권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10. 30.)에 따라 감소되는 내국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금현황

시·도교육청의 기금은 시·도교육감이 특정한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59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이다.

2021년말 기준 시·도교육청 기금의 수는 총 44개이며, 연도말 현재액은 총 5조 3,751억원이다. 기금 수는 전년 대비 13개가 증가하였고, 연도말 현재액은 전년 대비 2조 4,803억원 증가하였다. 연도말 현재액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전년 대비 0.7조원 증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1.8조원 신설) 등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도별 시·도교육청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연도	기금 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7	9	3,566	359	3,207
2018	10	4,669	331	4,338
2019	20	17,981	823	17,157
2020	31	29,761	813	28,948
2021	44	61,653	7,903	53,751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시·도교육청 기금 중 규모 및 증가액이 큰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의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는 시·도교육청이 회계연도 간의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 또는 예치금의 통합적 관리를 위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기금의 조성, 용도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교육청은 2019년부터 조례 제정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을 시작하였으며, 2021년 14개 교육청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연도말 현재액은 3조 121억원 규모이다.

[연도별 시·도교육청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 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19	6	6	11,828	0	11,828
2020	17	13	23,056	0	23,056
2021	17	14	36,894	6,744	30,121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2021년 신설된 기금으로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근거하여 15개 교육청이 조례를 제정하고 13개 교육청이 신규로 1조 8,704 억원을 조성하여 469억원을 사용하고 연도말 현재액은 1조 8,236억원 규모이다.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등에 관한 법률」은 교육시설 등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교육시설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2019. 12. 3.)²¹⁾ 되었으며, 제30조는 교육감이 관할 교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하여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시·도교육청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수 및 조성액 규모]

(단위: 개, 억원)

	조례 제정 교육청	기금수	누적 조성액	사용액	연도말 현재액
2021	15	13	18,704	469	18,236

주: 조성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한 누적액

자료: 교육부

OECD 국가와 우리나라 초·중등 단계 교육투자 비교

• 교육투자 규모

2018년 기준 초·중등 단계(초등~고등학교)의 교육투자 규모를 살펴보면, 학생 1인당 공교육비*는 OECD 평균 10,454달러, 우리나라 13,794달러 수준이다. GDP 대비 공교육비 비중은 OECD 평균 3.4%, 우리나라 3.5%이며, 교육분야 지출이 정부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OECD 평균 7.8%, 우리나라 10.3%이다.

* 공교육비는 공교육 기관에 투자되고 공교육 기관을 통해 지출되는 교육비용으로 '정부재원(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 포함)+민간재원(가계 등)+해외재원'의 합계

[초·중등 단계(초등~고등학교) 교육투자(2018년)]

(단위: GDP에 대한 미국 달러 구매력 평가(PPP) 환산액, %)

구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GDP 대비 공교육비			정부 총지출 중 교육 분야 지출 비중
	정부	민간	합계	정부	민간	합계	
OECD 평균	9,913	854	10,454	3.1	0.3	3.4	7.8
한국	12,339	1,455	13,794	3.2	0.4	3.5	10.3

주: 1. 합계에 해외재원 포함, 한국의 경우 해외재원을 민간재원에 포함

2. 초기재원 기준: 정부에서 민간으로의 이전지출을 정부 부담에 포함하여 산출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 9.

21) 2020. 12. 4. 시행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초·중등 단계 교육을 위한 재원조달과 재정지출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재정책임 분담구조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부가 이전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시·도교육청 재원 조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초·중등 교육재정에서 지방정부 재정자립도(16%)가 OECD 국가(41%)보다 낮은 수준이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시·도교육청의 지출권한이 높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집행 비중은 99%에 달한다.

[초·중등 단계(초등~고등학교) 교육재정의 정부간 재원조달 및 지출(2018년)]

(단위: %)

구분	재원 조달		지출	
	중앙	지방	중앙	지방
OECD 평균	59	41	44	56
한국	84	16	1	99

주: 지방정부는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교육청을 모두 포함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 2021: OECD indicators', 2021. 9.

4. 지방재정조정

의의 및 유형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 격차의 시정을 통한 지방공공서비스의 확충, 지역 간 외부효과의 내부화를 통한 지방공공재 공급, 중앙정부 위임사무에 대한 비용 부담 등을 목적으로 중앙정부와 자치단체 간 또는 자치단체 상호 간에 재정을 조정하는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지방 간 또는 광역-기초 간 수직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수직적 재정조정, 동일 계층 지방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인 수평적 재정조정의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교육자치단체에게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중앙정부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보조금
근거 법령	「지방교부세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재원 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특별교부세: 내국세의 19.24% • 부동산교부세: 종합부동산세 전액 • 소방안전교부세: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¹⁾ 	국가 예산으로 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국세의 20.79%²⁾와 교육세 일부 - 보통교부금(내국세 교부금 97% + 특별회계전입금을 제외한 교육세) - 특별교부금(내국세 교부금 3%) • 교육세 일부 • 중앙정부 일반회계 전입금 등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부동산교부세: 용도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 • 특별교부세: 용도지정, 조건부여 가능 • 소방안전교부세: 특수수요는 용도 지정 가능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 재원으로 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용도지정 없음 • 특별교부금: 용도지정·조건부여 가능 • 누리과정 지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부동산교부세: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세: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 소방안전교부세: 일반 및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특정목적재원(이전재원 성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통교부금: 일반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별교부금: 특정재원(자주재원 성격) • 특정목적재원(이전재원 성격)

주: 1) 소방안전교부세율은 2018년 20%에서 2019년 35%, 2020년 45%로 인상되었음.

2)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2020. 1. 1. 시행)으로 2020년부터 내국세분 교부비율이 인상(20.46→20.79%)되었으며, 이는 「재정분권 추진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10. 30.)에 따라 감소되는 내국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한 것임.

자료: 행정안전부(2021.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및 교육부 자료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원보장과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의 네 가지로 구분된다.

이 중 보통교부세·부동산교부세는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이며, 특별교부세·소방안전교부세는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정재원이다. 지방교부세의 재원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19.24%, 종합부동산세 총액,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45%, 전년도 정산액(내국세,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의 예산액과 결산액 간의 차이로 인한 교부세 차액)으로 구성된다.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정 목적을 달성하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지방교부세와 달리 사업별로 용도와 조건이 지정되어 특정 목적으로 집행해야 하고 일정한 지방비 부담이 요구된다. 국고보조금은 교부목적에 따라 부담금·교부금·협회의 보조금으로, 지방비 부담방식에 따라 정률보조금·정액보조금으로, 지원내용에 따라 자본보조금·경상보조금으로, 교부조건에 따라 특

정보조금·포괄보조금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고보조금의 재원은 해당연도에 중앙정부의 예산으로 계상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으로 구성된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2004.4.1.시행)의 시행 및 국고보조사업의 개편²²⁾과 함께 2005년 신설되었다. 정부는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로 개편하면서, 지역개발사업의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지역개발사업계정 내 200여개 사업을 24개 포괄보조사업으로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재원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는 포괄보조금 제도를 도입하였다. 2015년에는 기존의 광역경제권이 행정구역 중심의 인위적 설정으로 인해 정책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지역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역개발계정, 광역발전계정을 각각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으로 변경하였다. 2018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의 개정과 함께 ‘2019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을 변경하며 생활기반계정, 경제발전계정을 각각 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으로 변경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였다.

2021년 기준으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현황을 살펴보면, 4개 계정(지역자율계정, 지역지원계정, 세종특별자치시계정, 제주특별자치도계정)에 8개 사업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10.3조원 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계정별로는 지역자율계정 2.5조원, 지역지원계정 7.5조원, 세종특별자치시 및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이 0.3조원 규모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역 간 균형 있는 교육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을 설치·경영하는 데 필요한 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제도이다.²³⁾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용도가 정해져 있지 않은 일반재원인 보통교부금과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특별교부금 두 가지로 구성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은 2022년 기준 해당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편입분을 제외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조정재원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소방안전교부세의 법정률이 인상된 것은 「재정분권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10.30.)에 따른 것이다.²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비율 인상

22) 당시 533개, 12조 6,568억원의 국고보조사업 중 233개 사업(7조 9,485억원)만 국고보조사업으로 유지되고, 163개 사업(1조 689억원)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었으며, 126개 사업(3조 5,777억원)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되었다.

23)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2016.12.20.제정)의 제정으로 2017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가 2019년까지 한시 설치(2019. 12월에 2020~2022년 3년 연장)됨에 따라 전액 보통교부금에 편입되던 교육세 중 일부가 특별회계로 전입되었다.

2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정률은 내국세의 20.79%로 인상되었고('18년 20.27%, '19년 20.46%, '20년 20.79%),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로 인상('18년 20%, '19년 35%, '20년 45%)되었다.

²⁵⁾은 2018년까지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11%였던 지방소비세율을 2019년 15%²⁶⁾, 2020년 21%로 인상함에 따라 감소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²⁷⁾ 총액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안전교부세의 인상은 소방직의 국가직화 및 소방인력 충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한 것이다.

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

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간 수직적·수평적 재정불균형을 조정하는 수단으로, 시·도비 보조금,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등으로 구성된다.

시·도비 보조금은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광역자치단체의 정책적 필요에 따른 기초자치단체 사업에 대한 지원 또는 시·도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초자치단체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광역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조달되며,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대부분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의 재원 분담을 전제로 한다.

조정교부금 중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특별·광역시별로 자치구간 세원 분포의 불균형에 따른 재원확보 능력의 차이를 시정하고 모든 자치구가 일정 수준의 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다. 재원은 특별·광역시의 시세(市稅) 중 보통세(광역시의 경우 주민세 재산분 및 주민세 종업원분 제외)의 일정액으로 구성된다. 한편 시·군 조정교부금은 광역 시·도가 관할 시·군이 징수한 도세의 일부를 해당 시·군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시·군에서 징수하는 광역시세·도세의 27%(인구 50만 이상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47%)를 재원으로 한다.

[자치단체간 지방재정조정제도]

구분	시·도비 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시·군 조정교부금	
근거 법령	「지방재정법」 제23조제2항 ²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의2 • 「지방재정법」 제29조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6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2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2항제1호 개정(2020.1.1. 시행)

26) 「부가가치세법」 제72조제1항 개정(2019.1.1. 시행)

2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를 재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지방소비세율 인상이 내국세가 감소하게 되어 내국세의 일정률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비례하여 감소하게 된다.

28) 지방보조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1.1.12. 제정)이 제정되면서 기존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내용이 이 관하였다.

구분	시·도비 보조금	자치구 조정교부금	교육청 전출금
		시·군 조정교부금	
재원 구성	시·도의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광역시의 보통세 중 조례로 정하는 일정액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hr/>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시·도세(화력·원자력발전·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제외) 총액 및 지방소비세의 27%(인구 50만 이상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는 47%)에 해당하는 금액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교육세 전출금 • 담배소비세 전출금 • 시·도세 전출금 •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 교육급여 보조금 • 기타 전출금
용도	특정한 지원대상사업 재정수요 총당(용도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조정교부금: 용도지정 없이 자치단체의 일반재원으로 사용 • 특별조정교부금: 교부 시 부과된 조건이나 목적에 맞게 사용 	지방의 교육·학예에 드는 경비

자료: 행정안전부(2021.5.), 「2021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및 교육부 자료

교육청 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를 근거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함께 교육비특별회계의 주요 재원을 형성하는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을 의미한다. 교육청 전출금은 법적 성격에 따라 법정전출금·비법정전출금으로 구분되고, 재원부담주체에 따라 광역단체 전출금·기초단체 전출금으로 구분된다. 재원은 법정전출금인 지방교육세 전출금, 담배소비세 전출금, 시·도세 전출금, 학교용지 일반회계 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금, 교육급여 보조금과 비법정전출금인 기타 전출금으로 구성된다.

지역상생발전기금

2010년에 신설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의 개발이익을 비수도권에 지원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상생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재원은 수도권 3개 시·도(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의 일정비율(35%)을 핵심으로 하며, 그 외 예치받은 자금, 지방채 발행 수입 일시차입금,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의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의2).

[지방소비세율 연도별 변화와 지역상생발전기금 현황]

구분	5%	6%(11%)	4%(15%)	6%(21%)	4.3%(25.3%)
2010~2013년	지방자치단체별 최종소비지출액				
2014~2018년	기준 배분 (서울:광역시:도 =1:2:3)				
2019년	※ 수도권 시·도에서 배분받은 지방소비세 세수의 35% 지역상생발전기금에 출연	2013년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유상거래주택 취득 세율 인하로 감소하는 세수 보전	지방자치단체별 최종 소비지출액 기준 배분		
2020년				전환사업 보전분, 재정조정분, 잔여분으로 구분하여 각각 배분	
2021년					지방소비세의 10%p 중 전환사업보전분 약 3.6조원과 재원조정분 0.9조원을 제외한 잔여분(4.7%p, 약 4조원) 중 수도권 지자체 분의 35% 출연
2022~2023년					2단계 재정분권에 따라 지방소비세 인상분(4.3%p)은 시도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를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하고,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금액을 광역·기초자치단체에 6:4로 재배분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신설 당시 10년간 한시(2010년~2019년) 운영을 계획하였으나, 현정부의 재정분권 추진(1단계 '19~'20년, 2단계 '22~'23년)에 따라 운영시효를 2029년까지 연장하였다.

기금의 운용 용도는 지방채 및 공사채의 인수, 예치금 원리금 상환, 지역발전과 지역상생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재정지원 및 보조사업의 지원 등이며(「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8조), 용도에 따라 재정지원계정, 융자관리계정 및 전환사업보전계정으로 구분된다. 2014년까지는 수도권 출연금의 전액(조합운영비 제외)을 재정지원계정으로 배분하였으나, 2015년부터 출연금의 50%는 재정지원계정, 50%는 융자관리계정으로 배분하고 있다. 재정지원계정의 경우, 2020년부터 기존 포괄적 용도 지정방식에서 벗어나 특정 분야(사회복지,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국토 및 지역개발)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나, 2020년 및 2021년에 한해 코로나19 피해극복 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계정의 배분기준은 한시적으로(2020년~2022년) 3단계(상대적 손익규모, 재정여건, 증감보정)에서 2단계(재정여건, 증감보정)로 단순화되었다. 전환사업보전계정의 경우, 2020년에 신설되어 국가에서 지방으로 전환되는 군특사업 등 전환사업의 비용 보전을 위해 운용되고 있으며,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한시계정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 재원은 법 제17조의2제1항제7호에 따른 금액, 제8호에 따른 그 밖의 수입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5).

기금의 관리·운용기관으로는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조합에는 조합회의, 조합장 및 사무직원을 두고 있다(「지방자치법」 제176조 및 제177조). 조합회의는 시도 기획조정실장(17인),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전문가(2인) 등 20인으로 구성되며, 조합장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이사장이 조합사무의 위탁에 따라 겸임하고 있다.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금은 약 4,121억원 규모이며(서울 1,767억원, 인천 407억원, 경기 1,947억원), 그중 재정지원은 2,060억원, 융자관리는 2,061억원, 전환사업보전은 3.57조원 배분되었다.

지방재정조정 현황

일반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현황

일반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전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이전하는 시·도비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으로 구성된다.

2021년 일반지방재정(당초예산 기준) 세입 총계는 365.7조원이다. 이중 자체재원은 120.7조원이고 지방채 및 내부거래는 43.6조원이며 나머지 201.4조원은 의존재원으로 총계예산 대비 비중은 55.1%이다. 중앙정부 이전재원은 171.4조원(지방교부세 49.3조원, 국고보조금 122.1조원)(46.9%)이고, 광역단체 이전재원은 30.0조원(자치구 조정교부금 5.4조원, 시·군 조정교부금 5.9조원, 시·도비 보조금 18.7조원)(8.2%)이다.

[일반지방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추이(총계 기준)]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계예산(A+B+C)		290.7	304.5	324.5	367.7	428.7	365.7
자체재원(지방세+세외수입)(A)		96.7	102.6	108.0	114.0	123.1	120.7
의존재원	의존재원 합계(B)	140.9	146.8	163.6	194.7	241.2	201.4
	소계(a)	117.4	127.2	136.8	164.3	201.5	171.4
	중앙 → 지방						
	지방교부세	37.3	43.4	47.9	56.2	50.1	49.3
	국고보조금	80.1	83.8	88.9	108.1	151.4	122.1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의존 재원	광역시 → 기초	소계(b)	23.4	19.6	26.8	30.4	39.7	30.0
		자치구 조정교부금	4.9	5.5	5.7	6.1	6.5	5.4
		시·군 조정교부금	5.6	6.1	6.0	6.7	7.2	5.9
		시·도비 보조금	13.0	13.9	15.1	17.6	26.0	18.7
기타(지방채+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C)			53.2	47.6	50.9	59.0	64.5	43.8
총계예산 대비 비중	중앙 → 지방(a)	40.4	41.8	42.2	44.7	47.0	46.9	
	광역시 → 기초(b)	8.0	6.4	8.3	8.3	9.3	8.2	
	의존재원(B)	48.5	48.2	50.4	53.0	56.3	55.1	

주: 2020년까지는 최종예산, 2021년은 당초예산 기준임. 회계·재원별에서 '지방채'는 2013년까지는 종전 세입구조에 따라 '지방채및예치금회수(600)' 과목에 편성된 금액이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과목은 기존 세외수입 과목 등을 개편하여 2014년부터 신설한 과목임
 자료: 행정안전부, 각 연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 개요」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현황

2021년 교육비특별회계(당초예산 기준) 규모는 71조 8,605억원이다. 자체수입 및 지방교육채 등은 1조 6,482억원이고 나머지 69조 4,749억원은 이전수입으로 96.7%를 차지한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55조 9,964억원(지방교육재정교부금 52조 1,269억원, 국고보조금 2,148억원, 특별회계 전입금 3조 6,547억원)(77.9%)이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13조 2,980억원(법정이전수입 12조 342억원, 비법정이전수입 1조 2,638억원, 기타이전수입 1,805억원)(18.5%)이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재원이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2021		증감액 (B-A)	증감률(B-A)/A *100
	재원규모(A)	비중	재원규모(B)	비중		
이전수입	712,736	(96.4)	694,749	(96.7)	△17,986	△2.5
중앙정부 이전수입	579,949	(78.5)	559,964	(77.9)	△19,985	△3.4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5,140	(72.4)	521,269	(72.5)	△13,871	△2.6
국고보조금	7,966	(1.1)	2,148	(0.3)	△5,818	△73.0
특별회계 전입금	36,843	(5.0)	36,547	(5.1)	△296	△0.8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31,256	(17.8)	132,980	(18.5)	1,724	1.3
법정이전수입(의무)	117,302	(15.9)	120,342	(16.7)	3,040	2.6
비법정이전수입(재량)	13,954	(1.9)	12,638	(1.8)	△1,316	△9.4
기타이전수입	1,531	(0.2)	1,805	(0.3)	274	17.9

구 분	2020		2021		증감액 (B-A)	증감률(B-A)/A *100
	재원규모(A)	비중	재원규모(B)	비중		
지방교육채 및 기타	18,401	(2.5)	12,529	(1.7)	△5,871	△31.9
합 계	739,014	(100.0)	718,605	(100.0)	△20,409	△2.8

주: 2020~2021회계연도 시·도 교육비특별회계 재원별 본예산 기준(이전수입 규모는 예산안 편성시 예정교부금 규모. 확정교부된 이전수입규모는 지방자치단체 추경을 통해 반영). 법정이전수입(의무)은 지방교육세전입금, 담배소비세전입금, 시도세전입금,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보전금, 교육급여보조금, 무상교육경비 전입금으로 구성되며, 비법정이전수입(재량)은 광역단체전입금, 기초단체전입금으로 구성됨

자료: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1.3), 「2021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본예산 분석결과」

5. 재정분권과 지방재정

재정분권 추진현황

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재정적 권한·기능과 책임을 이양하는 것으로 과세자주권, 지방 세출에 대한 자주권, 정부 간 재정조정제도 등이 핵심이다.

우리나라에서 재정분권의 근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주체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불일치라고 볼 수 있다. 먼저 재정수입을 살펴보면 2021년 기준 총조세 중 지방세 비율은 24.7% 수준이다. 반면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전체 통합재정지출 889.2조원 대비 중앙정부의 지출 비중은 62.7%(558.0조원)이고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교육자치단체)는 37.3%(331.3조원)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2021년 당초예산 기준 지출비중이 수입 비중에 비해 12.6%p를 초과하며 이러한 초과분만큼 재정갭(fiscal gap)이 발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재정갭에 대해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이전재원으로 충당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재정수입-지출 간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지방의 자율성·책임성을 확보한다는 목적 하에 ‘재정분권 추진방안(2018.10.30., 관계부처 합동)’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제1단계(’19~’20년) 및 제2단계(’22~’23년)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당초 ’21년부터 추진될 계획이었던 2단계 추진방안은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율 등으로 22년에 시행되었다. 먼저, 재정분권 1단계에서는 지방세 확충과 기능이양을 위한 지방소비세율 인상, 중앙정부 기능이양, 소방안전교부세율 확대를 핵심과제로 추진했으며, 실제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7개의 재정분권 관계 법률을 개정²⁹⁾하였다. 정부는 인상된 지방소비세(’18년 11%, ’19년 15%, ’20년 21%)에 대해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

29) 재정분권 관계법률은 「지방세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재정법」,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부가가치세법」이다.

역시:도=1:2:3)를 적용하여 배분하고, 수도권 자치단체 지방소비세 세수의 35%를 지역상생발전 기금으로 출연하였다.

또한 지방세 확충과 연계하여, 중앙정부 기능 지방이양(3.5조원 규모)³⁰⁾을 추진하였다.³¹⁾ 아울러, 소방직 국가직화와 소방인력 충원을 지원하기 위해 소방안전교부세율을 '19년 35%, '20년 45%로(비교: '18년 담배분 개별소비세의 20%) 인상하였다.

1단계 추진방안 이행 결과,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4%p('18년 결산 22.3%, '20년 결산 26.3%) 개선되었고, '20년 기준 3.2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되었다.

[재정분권 이행경과 및 추진방안]

구분	이전	1단계		2단계
	'18년	'19년	'20년	'22년~'23년 ¹⁾
지방소비세율	11%	15%(+4%p)	21%(+6%p)	25.3%(+4.3%p)
소방안전교부세율	20%	35%(+15%p)	45%(+10%p)	-
기능이양	-	3.5조원		2.3조원
국세:지방세 ('16년 76:24)	77.7:22.3	76.4:23.6	73.7:26.3	72.6:27.4

자료: 행정안전부 자료를 토대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한편, 재정분권 2단계('22년~'23년)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추가 인상,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을 핵심과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지방세 추가 확충('22년 23.7%(+2.7%p), '23년 25.3%(1.6%p))을 통해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을 당초 목표였던 7:3에서 72.6:27.4로 개선할 계획이다. 지방소비세 인상분은 기존 시·도 소비지수에 지역별 가중치(수도권:광역시:도=1:2:3) 적용하여 광역자치단체별로 배분하는 방식에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된 지방소비세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6:4로 재배분하도록 개선되었다.

또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하여 낙후지역 인프라 확충 등에 사용한다는 계획이다. 재원은 정부가 매년 1조원씩 10년간(2022년~2031년) 총 10조원을 출연하고, 지역소멸지수, 낙후도 등에 따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에 25%, 75%씩 배분할 예정이다.

30)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의 일괄개정(2020.02.18.)에 따라 2021년 1월 1일부터 16개 부처 소관 46개 법률의 400개 사무에 대한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되었다.

31) 기능이양에 따른 비용 보전을 위해 2020년부터 지역상생발전기금 내 전환사업보전계정을 신설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2단계 추진방안에 따라 2022년 한시계정에서 2026년까지 연장되었다.

아울러, 국고보조율을 인상³²⁾을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대응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2.3조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이 지방이양³³⁾될 예정이다.

2단계 추진방안을 통해서는 국세 대비 지방세 비중이 1.1%p('20년 결산 26.3%, '23년 결산 27.4%) 개선되고, 2.3조원 규모의 지방재정이 순확충될 예정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³⁴⁾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역상생발전기금과 동일하게 시·도에 설치되어 운용되나, 수평적 재정조정 제도인 지역상생발전기금과는 달리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한다는 차이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라 도입되었으며, 10년간(2022년~2031년) 매년 1조원씩 지원하여 총 10조원을 재원으로 하고, 2022년 예산에는 사업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7,500억원이 편성되었다.

기금의 주된 용도는 인구감소지역 등 낙후지역 인프라 개선이며, 그 외 지방 공사채 발행한도 확대 등 지방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사용될 계획이다. 용도에 따라 광역지원계정과 기초지원계정으로 구분되며, 지역소멸지수, 낙후도 등을 고려하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 각각 25%, 75%를 배분할 예정이다. 다만, 자치단체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배분 기준을 설정하고 자치단체별 재정 확충규모를 파악·안내하는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³⁵⁾

기금의 관리·운용은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과 함께 관리 및 운용한다. 조합에는 광역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 및 기초지원계정 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위원회 위원은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총 23인 이내로 구성된다(「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26조).

32) 국고보조율 인상대상 사업은 기초연금, 첫만남 이용권,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사업 등이 있다.

33)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을 위해 13개 부처 소관의 36개 법률을 개정하여 261개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관광진흥법 등 2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등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소관상임위 심사 중이다.

34) 국회예산정책처, 「대한민국 지방재정 2021」, 2021.9., pp90-91; 국회예산정책처,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 발표」, 재정동향&이슈 제3권 제18호, 2021.12., pp.60-63;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행정안전위원회)」, 2021.10., pp.11-30 참조

35)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금은 인구 감소지역('21.10월 지정, 89곳)에 집중 배분할 계획이며, 전문가와 자치단체의 의견을 토대로 배분 기준을 마련하여 4월부터 집행할 예정이다.

제3절 일반정부 재정

개요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재정 규모를 중앙정부 재정과 지방정부 재정으로 나눠서 논의하였으나, 정부 전체의 재정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을 구성하는 다양한 경제주체들의 재정 규모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 통계의 객관적인 국제 비교 및 투명성·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의 「정부재정 통계편람」(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에 따른 일반정부 재정 통계를 작성하고 있다.³⁶⁾ GFS는 1974년 작성된 이후 총 3번 개정되었는데, 1차 개정은 「GFS 1986」으로 현금주의에 근거하며, 이후 발생주의를 적용한 「GFS 2001」, 「GFS 2014」로 개정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는 ‘통합재정수지’ 및 ‘관리재정수지’ 작성 시에는 현금주의 기준인 「GFS 1986」을 적용하고, 일반정부 재정수지는 「GFS 2001」을 기초로 산출하고 있다.

「GFS 1986」과 「GFS 2001」의 주요한 차이점은 아래 표와 같다.

[재정통계편람별 차이점]

구분	GFS 1986	GFS 2001
단위의 포괄 범위	기능적 기초(functional basis) 위에서 정의 *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의 재정 관련 거래를 포함하되, 재정정책과 무관한 거래는 제외(즉, 금융 활동 제외)	제도 단위(institutional units)를 기초로 정의 * 다른 단위의 준재정 활동은 제외, 일반정부 부문 단위가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포함(금융 활동도 포함)
경제 사건의 기록 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사건의 포괄 범위	현금의 흐름만 기록	자산·부채·수입·비용에 영향을 주는 모든 경제적 사건 기록

36) IMF는 1974년에 「정부재정 통계편람」을 발간하였으며, 세계 각국은 IMF의 권고에 따라 매년 이 기준에 따라 재정통계를 작성·제출한다. 우리나라도 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통합재정을 작성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는 분기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는 IMF가 발행하는 「GFS(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 Book」에 수록된다.

구분	GFS 1986	GFS 2001
수지 항목	단일의 수지 항목 • 총 수지(통합재정수지) = (수입 + 무상 원조) - (지출 + 순 용자) * 비금융자산의 거래는 자본수입·자본지출로 계상 → 총 수지에 영향	수지 항목이 다양 1) 순 운영 수지(net operating balance) = 수입 - 비용 * 비금융자산의 거래는 수입·비용으로 처리되지 않아 수지에 영향 없음 2) 총 운영 수지 = 수입 - (비용 - 고정자본소비) = 순 운영 수지 + 고정자본소비 3) 순 용자/순 차입(net lending/borrowing) = 순 운영 수지 - 비금융자산 순 취득

자료: 기획재정부(2021. 3),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포괄 범위

「GFS 2001」에 근거하여 작성된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의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1개), 특별회계(20개), 기금(67개), 비영리공공기관(222개)과 지방정부의 일반회계(243개), 특별회계(2,042개), 기금(2,468개), 비영리공공기관(95개)이다. 「GFS 2001」은 「GFS 1986」과 달리 중앙정부의 8개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³⁷⁾한다.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포괄범위]

구분		GFS 1986	GFS 2001
중앙	회계	일반회계 1개, 기타특별회계 15개, 기업특별회계 5개	좌동
	기금	사업성 기금 58개	금융성·외평기금 9개(추가)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222개 기관(추가)
지방	회계	일반회계 243개, 기타특별회계 1,771개, 지방교육비특별회계 17개, 직영공기업특별회계 254개	좌동

37) 「GFS 2001」은 제도단위의 시장성 여부에 따라 정부 포괄 범위를 설정하여, 정부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한다. 제도 단위는 자율적 의사 결정 체계 및 독립적 자금 운용 계정 보유 여부로 판단한다. 시장성 여부는 원가보상률(판매액/생산원가)이 50% 이하일 경우 일반정부, 50% 초과일 경우 공기업으로 분류하며, 원가보상률이 50%를 초과하더라도 정부판매비율(정부대상 판매액/판매액)이 80% 이상이면 일반정부로 분류한다.

구분		GFS 1986	GFS 2001
지방	기금	지방재정법 대상 2,468개 전체	좌동
	비영리 공공기관	제외	95개 공사·공단(추가)

주: 금융성기금(8개)은 기술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자료: 기획재정부(2021. 3.),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재정 규모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의 규모는 수입 655.5조원, 지출 590.6조원, 재정수지 16.3조원(흑자)이다. 수입 중 조세수입은 385.0조원으로 전체 수입의 58.7%를 차지하는데, 중앙정부 292.5조원, 지방정부 92.5조원이다.

지방정부의 주요 수입은 출연(122.2조원)으로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과 교부금 등을 포함하는데, 내부거래에 해당하므로 일반정부 수입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급여(155.7조원)이며, 다음으로 피용자보수(120.0조원), 재화와 용역(117.3조원) 등의 순이다.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수입·지출 및 재정수지]

(단위: 조원)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1. 수입	542.9	244.4	83.3	△16.0	311.6	△199.0	655.5
(GDP대비, %)	(28.3)	(12.7)	(4.3)	(△0.8)	(16.2)	(△10.4)	(34.2)
1.1 조세	292.5	92.5	-	-	92.5	-	385.0
1.2 사회보험료	146.4	-	-	-	-	-	146.4
1.3 출연	6.3	122.2	78.2	△16.0	184.4	△190.7	0.0
1.4 기타수익	97.6	29.7	5.0	-	34.7	△8.3	124.1
2. 지출	542.1	236.6	75.4	△16.0	260.1	△199.0	590.6
(GDP대비, %)	(28.3)	(12.3)	(3.9)	(△0.8)	(15.4)	(△10.4)	(33.3)
2.1 비용	529.5	206.2	69.9	△16.0	260.1	△199.0	590.6
2.1.1 피용자 보수	50.9	35.4	33.6	-	69.0	-	120.0
2.1.2 재화와용역	57.9	63.5	4.2	-	67.7	△8.3	117.3
2.1.3 이자	19.9	0.9	0.3	-	1.2	△0.0	21.1
2.1.4 보조	25.1	67.6	10.4	-	78.1	-	103.1
2.1.5 출연	185.1	20.1	2.2	△16.0	6.3	△190.7	0.7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2.1.7 기타	34.9	18.7	19.2	-	37.9	-	72.8
2.2 비금융자산 순취득	12.7	30.4	5.5	-	35.9	-	72.8
3. 재정수지(1-2) ¹⁾ (GDP 대비, %)	0.7 (0.0)	7.7 (0.4)	7.9 (0.4)	-	15.6 (0.8)	-	16.3 (0.9)

주: 1) 재정수지는 수입에서 비용 및 비금융자산 순취득을 차감한 것으로, 「GFS 2001」 상 수지항목 중 "순 용자/순 차입"에 해당.

자료: 기획재정부(2021. 3.),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산 및 부채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의 자산은 총 3,836.0조원으로 GDP 대비 199.9%를 차지한다. 이는 비금융자산 2,220.2조원(57.9%), 금융자산 1,615.8조원(42.1%)으로 구성되는데, 중앙정부는 금융자산이 비금융자산보다 많고, 지방정부는 자산의 대부분이 비금융자산으로 구성(88.4%)되어 있다.

「GFS 2001」에 따른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부채는 812.3조원으로 GDP 대비 42.3%를 차지한다.

[2019회계연도 일반정부 자산 및 부채]

(단위: 조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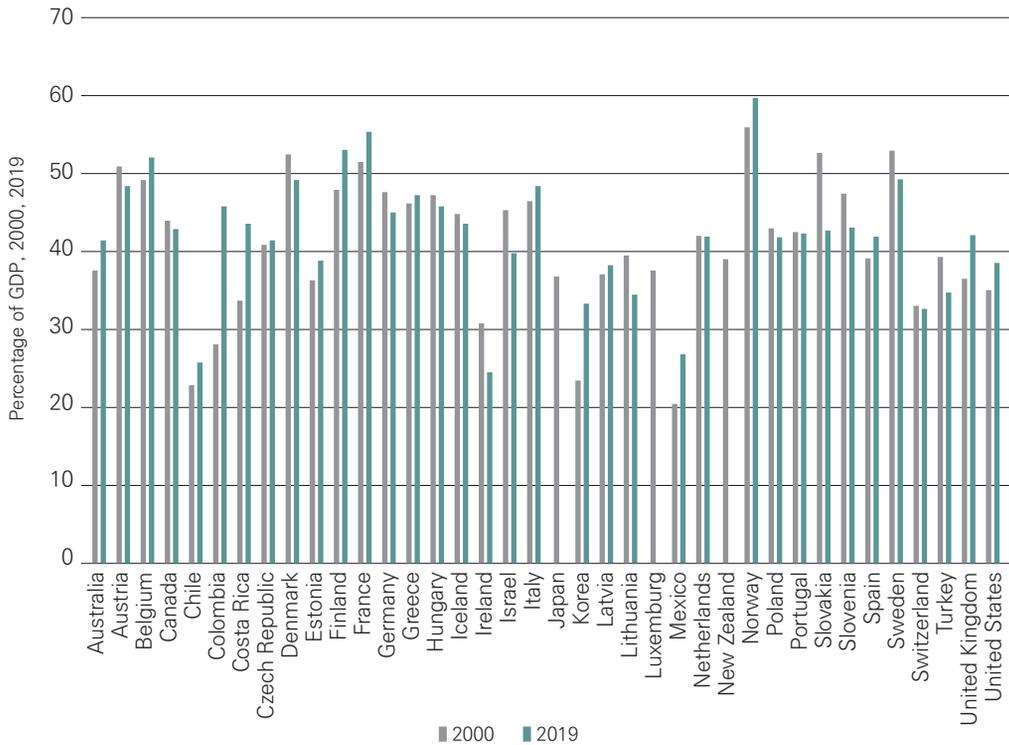
구분	중앙정부	지방정부				내부거래	일반정부
		지방재정	지방교육재정	내부거래	합계		
자산	2,432.6	1,302.4	113.2	△0.5	1,415.1	△11.8	3,836.0
(GDP대비, %)	(126.8)	(67.9)	(5.9)	(△0.0)	(73.7)	(△0.6)	(199.9)
- 비금융자산	968.9	1,149.6	101.6	-	1,251.3	-	2,220.2
- 금융자산	1,463.7	152.8	7.2	△0.5	163.9	△11.8	1,615.8
부채	769.2	48.1	7.2	△0.5	54.9	△11.8	812.3
(GDP대비, %)	(40.1)	(2.5)	(0.4)	(△0.0)	(2.9)	(△0.6)	(42.3)

자료: 기획재정부(2021. 3.), 「2019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국제비교³⁸⁾

OECD 통계에 따르면, 회원국의 일반정부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25%(아일랜드)에서 56.0%(노르웨이)에 이른다. 우리나라는 그 비중이 작은 편에 속하나, 2000년 24%에서 2019년 34%로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큰 폭(10%p)으로 증가하였다.

[OECD 회원국의 일반정부 총지출 비교]



주: 일본, 룩셈부르크, 뉴질랜드는 2019년 통계가 발표되지 않았으며, 2018년 기준으로는 각각 GDP대비 일반지출 비중이 39%, 42%, 40%임
 자료: OECD Stat(Total disbursements, general government, as a percentage of GDP), feb 2022

38) 우리나라의 경우 기획재정부는 IMF의 정부재정통계편람(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기준의 지표를 작성하여 IMF에 제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 기준의 국민계정을 작성하여 OECD에 제출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OECD 통계에 따른 비교로, 앞에서의 GFS 기준과 달리 SNA 기준에 따라 작성된 자료이다.

제3장 수입·지출

제1절 총계·순계와 총수입·총지출

1. 의의

총계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총계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각의 수입·세출(기금은 수입·지출)을 모두 합한 것을 의미한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20.4조원이 증가한 1,254.0조원으로, 일반회계 421.4조원, 특별회계 76.3조원, 기금 756.3조원 규모이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단위: 조원, %)

구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80.9	421.4	40.5	10.6
특별회계	79.0	76.3	△2.7	△3.4
기금	773.7	756.3	△17.4	△2.2
총계	1,233.6	1,254.0	20.4	1.7

주: 증감규모 및 증감률은 단수 조정 기준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에는 국민경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수입·지출 외에도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의 내부거래’와 ‘정부의 수입·지출 차를 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차입·상환, 여유자금 운용 등의 보전거래’가 모두 포함되는데, 이는 재정 규모를 실제보다 과장한다. 따라서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지표로서 순계 또는 총수입·총지출이 함께 활용된다.

순계

순계란 재정규모를 나타내는 지표 중 하나로서 총계에서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전체의 순계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51.8조원이 증가한 953.2조원이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순계]

(단위: 조원, %)

구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감	
			B-A	(B-A)/A
순계 ¹⁾	901.4	953.2	51.8	5.7

주: 1) 회계·기금 전체를 단위로 한 순계(회계·기금 총계에서 내부거래 전체를 차감한 것)를 의미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계 및 총수입·총지출은 원칙적으로 국가재정 전체를 측정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이기 때문에 그에 포함되는 회계·기금 종류가 고정되어 있는 반면, 순계는 포함하는 회계·기금 종류에 따라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뿐 아니라, 기금 전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계, 특별회계 전체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계, 기업특별회계·기타특별회계 등 특정 유형의 특별회계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계, 사업성기금·금융성기금 등 특정 유형의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계, 단일 회계 또는 기금만을 대상으로 하는 순계 등 다양한 단위로 산출이 가능하다.

순계는 이러한 산출 단위에 따라 차감되는 내부거래의 범위도 달라진다. 순계 산출시 차감되는 내부거래는 각 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전체’가 아니라 ‘해당 순계의 산출 단위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계·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총계에서 회계·기금 간 거래, 회계 간 거래, 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등 모든 내부거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반면, 기금 전체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기금 간 거래, 계정 간 거래 등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기금 간 거래는 차감하지 않는다. 또한 특정 특별회계나 기금의 순계를 집계할 때에는 해당 특별회계나 기금 내에서 발생하는 계정 간 거래는 차감하지만 그 외부와의 거래인 회계 간 거래, 기금 간 거래, 회계기금 간 거래 등은 차감하지 않는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2022년도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순계를 산출하면 아래 표와 같은 수치가 나온다.

[2022년도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 순계¹⁾]

(단위: 조원, %)

구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감	
			B-A	(B-A)/A
일반회계	380.9	421.4	40.5	10.6
특별회계	72.9	69.2	△3.7	△5.1
기금	632.5	626.5	△6.0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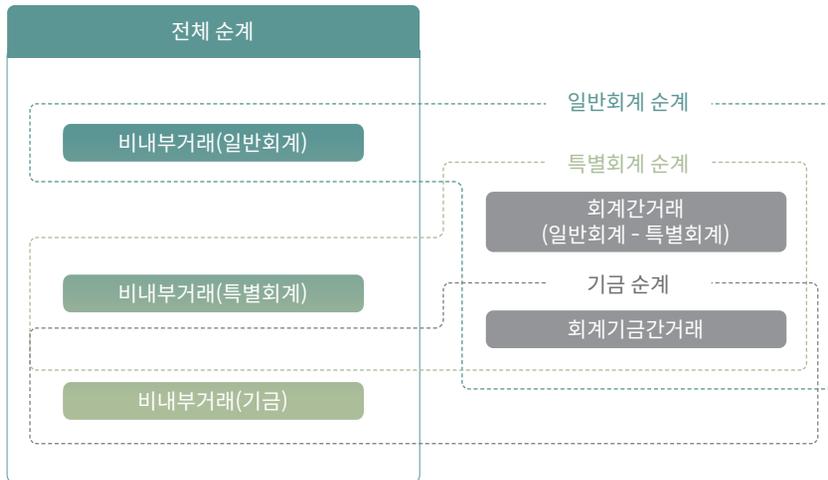
주: 1) 각각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 기금 전체만을 대상으로 한 순계를 의미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참고로 위의 표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각각의 순계를 합산하면 이전 페이지 표에 따른 회계·기금 전체 순계보다 큰 수치가 도출되는데, 이는 전술한 것과 같이 차감하는 내부거래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이다.

[회계·기금 전체 순계와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각 순계의 내부거래 범위 비교]



총수입·총지출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5년(2006년도 예산안)부터 도입되어, 재정운용계획 수립 등에 있어 중앙정부의 재정규모를 파악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총수입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³⁹⁾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⁴⁰⁾의 총계 기준 수입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수입 및 보전수입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수입은 553.6조원이다.

$$\text{총수입} = \text{수입총계(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 \text{내부거래수입} - \text{보전수입}$$

내부거래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다른 회계·기금·계정으로부터 넘겨받은 수입으로, 예수와 같이 빌리는 경우와 전입과 같이 무상으로 얻는 경우가 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수입을 단순 합계하는 경우 정부 내부거래를 중복 계상하여 실제 수입을 과다 계상하게 되므로 총수입 산출 시에는 내부거래를 제외하게 된다.

보전수입은 특정 회계·기금·계정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민간으로부터 빌리거나(국채발행 또는 차입) 남는 돈을 민간에 빌려주었다가 회수(여유자금 회수)하는 경우 등을 의미한다. 이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정부수입으로 보기 힘들기 때문에 총수입 산출 시 제외된다.

한편 총지출은 총수입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8개 금융성기금과 계정성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의 총계 기준 지출을 모두 더한 뒤,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을 차감하여 산출한다. 2022년 본예산 기준 중앙정부 총지출은 607.7조원이다.

$$\text{총지출} = \text{지출총계(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 \text{내부거래지출} - \text{보전지출}$$

39) 금융성기금(8개):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무역보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40) 총수입·총지출은 국민 경제에 미치는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활동을 파악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정부의 금융성 활동을 수행하는 금융성 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내부거래

의의 및 유형

특별회계나 기금은 특정 사업이나 자금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편성·운영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정부내부거래를 통해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기금 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내부거래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또는 계정 간 부족한 자금을 보전하거나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내부거래는 세입과목상 전입금, 예수금, 원금회수 및 이자수입 등으로 세출과목상 전출금, 예탁금, 원금·이자 상환지출 등으로 편성된다.

전입금은 회계·기금 또는 계정이 다른 회계·기금 또는 계정으로부터 무상으로 제공받는 자금을 의미한다. 전입금을 제공하는 회계 또는 기금에서는 이를 세출과목 중 전출금으로 계상한다.

예수금은 전입금과 다르게 회계·기금 또는 계정이 다른 회계·기금 또는 계정으로부터 유상으로 빌려오는 자금을 의미하며, 예수금을 제공하는 회계·기금 또는 계정에서는 이를 세출과목 중 예탁금으로 계상한다. 예수금은 유상으로 빌려오는 자금이므로 이를 받은 회계·기금 또는 계정은 차후 그 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환거래는 세입과목상 예탁원금회수·예탁이자수입, 세출과목상 예수금원금상환·예수금이자 등으로 계상된다.

내부거래와 관련된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은 아래와 같다.

[내부거래 관련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

		세 입		세 출	
관	항	목	목	세목	
(34)	(89)	(892)세계잉여금이입액(기금)			
세계 잉여금	세계잉여금 이입액				
(40) 정부내 부수입 및 기타	(91) 전입금	(911)일반회계전입금	(610) 전출금 등	(610-01)일반회계전출금	
		(912)특별회계전입금		(610-02)특별회계전출금	
		(913)기금전입금		(610-03)기금전출금	
		(915)계정간전입금		(610-04)계정간전출금	
	(92) 예탁원금 회수	(921)일반회계예탁원금회수	(510) 상환지출	(510-04)예수금원금상환	
		(922)특별회계예탁원금회수			
		(923)기금예탁원금회수			
		(925)계정간예탁원금회수			
		(926)타회계전대차관원금회수		(510-06)전대차관원금상환	
		(927)기금전대차관원금회수			
	(94) 예수금	(941)일반회계예수금	(480) 예탁금	(480-01)일반회계예탁금	
		(942)특별회계예수금		(480-02)특별회계예탁금	
		(943)기금예수금		(480-03)기금예탁금	
		(945)계정간예수금		(480-04)계정간예탁금	
	(95) 예탁 이자수입	(951)일반회계예탁이자수입	(510) 상환지출	(510-05)예수금이자	
		(952)특별회계예탁이자수입			
		(953)기금예탁이자수입			
		(955)계정간예탁이자수입			
		(956)타회계전대차관이자수입		(510-07)전대차관 이자	
		(957)기금전대차관이자수입			
(96) 기타	(961)당기순이익전입금	(610) 전출금 등	(610-07)당기순이익		
	(962)감가상각비전입금		(610-06)감가상각비		
	(963)제충당금전입금				

주: 목별 일반적인 분류를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법적 근거

특별회계나 기금은 독립적으로 편성·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지나친 칸막이식 재정운용은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법」 제13조는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는 기업특별회계의 매 회계연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겼을 경우 이를 적립금 및 잉여금으로 적립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밖에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복권 및 복권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의 개별 법률에서도 회계·기금 간 이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2022년도 내부거래 현황

2022년도 정부 내부거래는 전년도 대비 31.3조원 감소한 300.8조원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1,254.0조원)의 24.0%를 차지한다. 거래 유형별로는 회계기금 간 거래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기금 간 거래가 그 뒤를 이었다.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중 내부거래 비중]

(단위: 조원, %, %p)

구 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 감	
			B-A	(B-A)/A
예산 및 기금 총계(a)	1,233.6	1,254.0	20.4	1.7
일반지출 ¹⁾	571.2	622.4	51.2	9.0
정부 내부거래(b)	332.1	300.8	△31.3	△9.4
회계기금 간	148.5	129.1	△19.4	△13.1
회계 간	40.2	38.6	△1.6	△4.0
기금 간	140.1	129.0	△11.1	△7.9
계정 간	3.4	4.2	0.8	23.5
보전거래	330.3	330.8	0.5	0.2
비율(b/a)	26.9	24.0	△2.9	-

주: 1) 일반지출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각 연도 총지출 규모(2021년 558.0조원, 2022년 607.7조원)와 차이가 있음

1. 내부거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 보전거래는 세출·지출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됨

일반회계의 내부거래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4조 5,008억원 증가한 71조 6,0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유형 중에서는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34조 5,899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48.3%)을 차지하였다.

[일반회계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 감	
				B-A	(B-A)/A
일반회계 → 특별회계	전출금	361,120	345,899	△15,221	△4.2
일반회계 → 기금	전출금	200,945	247,665	46,720	23.3
	상환지출	108,982	122,491	13,509	12.4
	소계	309,927	370,156	60,229	19.4
합계(a)		671,047	716,055	45,008	6.7
일반회계 예산 규모(b)		3,808,508	4,214,160	405,652	10.7
비율(a/b)		17.6	17.0	△0.6	-

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특별회계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는 2021년도 본예산 대비 6조 2,841억원이 감소한 10조 2,55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거래유형 중에서는 특별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이 3조 7,758억원으로 가장 높은 비중(36.8%)을 차지하였다.

[특별회계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 감	
				B-A	(B-A)/A
특별회계 → 일반회계	전출금	2,486	2,156	△330	△13.3
특별회계 → 특별회계	전출금	38,855	37,758	△1,097	△2.8
특별회계 → 기금	전출금	33,522	36,117	2,595	7.7
	예탁금	80,420	19,819	△60,601	△75.4
	상환지출	10,113	6,705	△3,408	△33.7
	소계	124,055	62,641	△61,414	△49.5
합계(a)		165,396	102,555	△62,841	△38.0
특별회계 예산 규모(b)		790,292	762,609	△27,683	△3.5
비율(a/b)		20.9	13.4	△7.5	-

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도 기금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는 2021년도 당초계획 대비 30조 3,096억원 감소한 214조 8,116억원으로 나타났으며, 동일 회계·기금 내에서의 계정 간 거래는 2021년도 대비 7,830억원 증가한 4조 1,531억원으로 나타났다.

[기금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현황]

(단위: 억원, %, %p)

회계/기금	유형	2021 당초계획(A)	2022 당초계획(B)	증 감	
				B-A	(B-A)/A
기금 → 일반회계	전출금	1,743	1,106	△637	△36.5
	예탁금	935,137	761,759	△173,378	△18.5
	소계	936,880	762,865	△174,015	△18.6
기금 → 특별회계	전출금	2,966	15,627	12,661	426.9
	예탁금	8,898	14,841	5,943	66.8
	상환지출	101,875	64,926	△36,949	△36.3
	소계	113,739	95,394	△18,345	△16.1
기금 → 기금	전출금	20,193	25,247	5,054	25.0
	예탁금	687,239	635,207	△52,032	△7.6
	상환지출	693,161	629,403	△63,758	△9.2
	소계	1,400,593	1,289,857	△110,736	△7.9
합계(a)		2,451,212	2,148,116	△303,096	△12.4
기금운용계획 규모(b)		7,736,941	7,563,337	△173,604	△2.2
비율(a/b)		31.7	28.4	△3.3	-

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회계·기금 내 계정 간 내부거래 현황]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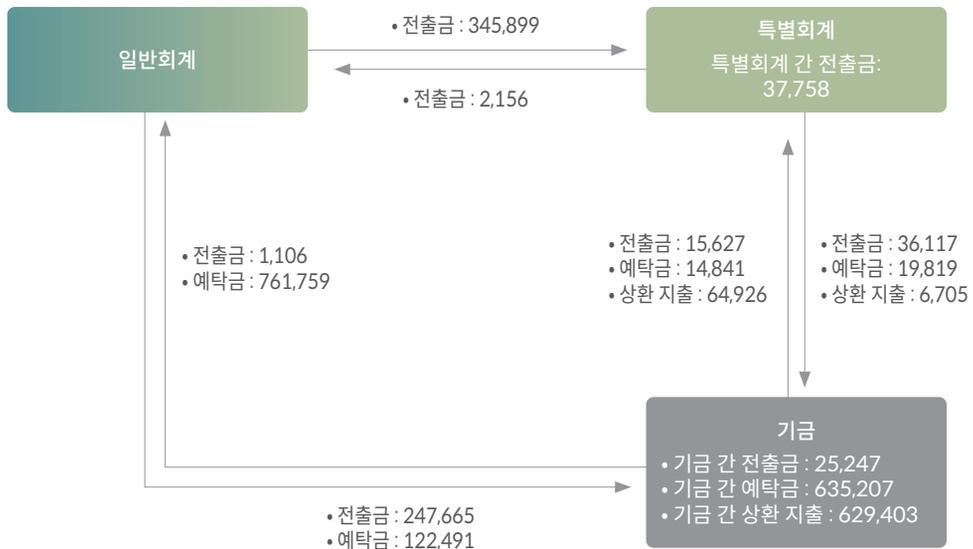
회계/기금	유형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 감	
				B-A	(B-A)/A
특별회계 계정 간 거래	전출금	20,911	30,576	9,665	46.2
	기타 ¹⁾	1,407	2,015	608	43.2
	소계	22,318	32,591	10,273	46.0
기금 계정 간 거래	전출금	10,036	8,822	△1,214	△12.1
	상환지출	1,347	118	△1,229	△91.2
	소계	11,383	8,940	△2,443	△21.5
계정 간 거래 합계		33,701	41,531	7,830	23.2

주: 1) 당기순이익전입금(961), 감가상각비전입금(962), 제충당전입금(963)을 의미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제작성

2022년도 정부 내부거래 예산 현황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2022년도 정부 내부거래 예산 현황]

(단위: 억원)



3. 보전거래

의의 및 유형

보전거래는 국채발행 또는 상환, 차입 또는 차입금상환, 여유재원의 금융기관 예치 등 실질적 수입·지출의 확대보다는 재정수지를 보전해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정 회계나 기금이 자체수입이나 내부거래수입으로 조달하지 못해 그 밖의 방법으로 수입을 메워야 할 때 그 수입과 지출의 차(재정수지)를 보전하기 위하여 이루어지며, 세입과목에는 국공채 발행이나 유가증권 매각대, 차입 등의 형태로, 세출과목에는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예치금 상환 등의 형태로 편성된다.

보전거래와 관련된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은 아래와 같다.

[보전거래 관련 세입과목 및 세출과목]

세 입			세 출	
관	항	목	목	세목
(31)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81) 국공채 수입	(811)국공채발행수입	(510) 상환지출	(510-01)국내차입금 상환
	(82) 민간 차입금	(821)한은장기차입금		
		(822)통화금융기관차입금		
		(823)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		
		(824)기타민간차입금		
	(825)한은일시차입금			
	(84) 유가증권 매각대	(842)지방채매각대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 매입	(470-07)지방채매입
		(843)기타유가증권매각대		(470-08)기타유가증권매입
				(470-09)복권당첨금 지급준비 예치금
		(844)국채매각대		(470-05)국채매입
	(845)공채매각대	(470-06)공채매입		
	(85) 정부예금 회수	(851)한국은행예치금회수		(470-01)한국은행예치금
		(852)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70-02)통화금융기관예치금
		(85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470-03)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854)기타민간예치금회수		(470-04)기타민간예치금
(32) 차관 수입	(86) 차관 수입	(861)차관현금수입		(510) 상환지출
		(862)차관물자용역대수입		
(33) 전년도 이월금	(88) 전년도 이월금	(881)전년도이월금	(710) 예비비 및 기타	(710-04)차기이월금
(34) 세계 잉여금	(89) 세계잉여금 이입액	(893)전년도세계잉여금		
(40) 정부내 부수입 및기타	(91) 전입금	(916)기타전입금	(610) 전출금 등	(610-05)기타전출금
	(94) 예수금	(946)기타민간예수금	(510) 상환지출	(510-08)민간예수금 원금상환

주: 목별 일반적인 분류를 표시한 것임
 자료: 기획재정부 작성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법적 근거

「국가재정법」 제18조는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는 ‘세입 내 세출’ 원칙을 표명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예외적으로 국채·차입금을 통한 세출재원 조달을 인정하고 있다. 동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은 예산 총칙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라 공공자금관리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2022년도 보전거래 현황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1,254.0조원 중 보전거래는 26.4%를 차지하는 330.8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0.5조원 증가하였다. 유형별로는 여유자금운용 등 기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그 규모는 2021년도 229.7조원 대비 △4.1조원 감소한 225.6조원으로 나타났다.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총계 중 보전거래 비중]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 감	
			B-A	(B-A)/A
예산 및 기금 총계(a)	1,233.6	1,254.0	20.4	1.7
일반지출 ¹⁾	571.2	622.4	51.2	9.0
정부내부거래	332.1	300.8	△31.3	△9.4
보전거래(b)	330.3	330.8	0.5	0.2
차입금 원금상환 등	100.6	105.2	4.6	4.6
여유자금운용 등 기타 ²⁾	229.7	225.6	△4.1	△1.8
비율(b/a)	26.8	26.4	△0.4	-

주: 1) 일반지출에는 총지출에 포함되지 않는 금융성기금과 외국환평형기금 지출이 포함되어 있어 각 연도 총지출 규모(2021년도 558.0조원, 2022년도 607.7조원)와 차이가 있음

2) 우체국보험 적립금 운용(기타전출금) 포함

1. 내부거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세입·수입 총계표, 보전거래는 세출·지출 총계표를 기준으로 산정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제2절 재정수입

중앙정부의 재정수입은 국세수입, 세외수입 등의 예산수입과 기금수입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중앙정부 총수입은 553.6조원으로, 이 중 국세수입이 전체 총수입의 62.0%인 343.4조원이며, 세외수입과 기금수입은 각각 26.1조원(4.7%), 184.1조원(33.3%)이다.

[중앙정부 재정수입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21		2022 예산(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예산수입	311.6	343.6	369.5	57.9	18.6
- 국세수입	282.7	314.3	343.4	60.7	21.5
- 세외수입	28.9	29.3	26.1	△2.8	△9.7
기금수입	171.0	171.0	184.1	13.1	7.7
총수입	482.6	514.6	553.6	71.0	14.7

주: 1. 2021년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총수입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국세수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재원은 국세수입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국세는 그 부과에 통관절차를 필요로 하는 가를 기준으로 내국세와 관세로 구분된다. 내국세는 관세를 제외한 국세이고, 관세는 「관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조세이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농어촌특별세, 기획재정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항목인 주세를 제외한 나머지 12개의 국세는 모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세입으로 계상된다.

2021년도 국세수납액은 전년 대비 58.6조원(20.5%) 증가한 344.1조원으로서, 주요 세목별 수납액을 보면, 소득세 114.1조원, 부가가치세 71.2조원, 법인세 70.4조원, 교통·에너지·환경세 16.6조원, 상속·증여세 15.0조원, 증권거래세 10.3조원이다.

[국세 수납액]

(단위: 조원)

회계	소관	세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예산	수납	예산								
총국세			251.1	265.4	268.1	293.6	294.8	293.5	279.7	285.5	314.3	344.1	343.4
일반 회계	기획 재정부	소득세	69.6	75.1	72.9	84.5	80.4	83.6	88.5	93.1	99.5	114.1	105.8
		법인세	57.3	59.2	63.0	70.9	79.3	72.2	58.5	55.5	65.5	70.4	74.9
		상속·증여세	6.0	6.8	6.2	7.4	7.2	8.3	8.4	10.4	11.9	15.0	13.1
		부가가치세	62.6	67.1	67.3	70.0	68.8	70.8	64.6	64.9	69.3	71.2	77.5
		개별소비세	9.0	9.9	10.2	10.5	10.3	9.7	9.5	9.2	10.1	9.4	10.1
		증권거래세	4.0	4.5	4.0	6.2	4.5	4.5	4.9	8.8	8.3	10.3	7.5
		인지세	0.9	0.9	0.9	0.9	0.9	0.8	1.1	1.0	0.9	1.0	0.9
		과년도수입	3.8	4.4	3.4	4.4	4.3	5.9	4.9	4.2	4.6	5.1	6.2
		관세	9.0	8.5	9.4	8.8	9.1	7.9	7.7	7.1	8.3	8.2	8.7
		교통·에너지·환경세	15.4	15.6	16.4	15.3	14.8	14.6	15.5	14.0	15.7	16.6	15.4
		교육세	5.1	5.0	5.2	5.1	4.9	5.1	5.0	4.7	5.3	5.1	5.3
		종합부동산세	1.4	1.7	1.8	1.9	2.8	2.7	3.3	3.6	5.1	6.1	7.4
국가균형 발전 특별회계	기획 재정부	주세	3.3	3.0	3.5	3.3	3.4	3.5	3.2	3.0	3.2	2.7	3.7
농어촌구 조개선 특별회계	농림 축산식품부	농어촌특별세	3.8	3.8	3.8	4.4	4.2	3.9	4.7	6.3	6.4	8.9	6.7

주: 예산 수치는 추가경정예산 기준(2022년도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국세와 지방세

조세는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고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민(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금전급부이다. 「대한민국헌법」 제38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59조에서는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의 세목은 25개로서 과세주체에 따라 구분하면, 국세 14개 세목과 지방세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세는 중앙정부가 과세권을 가지고 부과·징수하며 크게 내국세(13개)와 관세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내국세는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와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목적세(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로 구분할 수 있다.

지방세는 지방정부가 과세하는 조세로 총 11개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용도별로 9개의 보통세(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자동차세)와 2개의 목적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로 분류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



주: 괄호() 안은 세목의 개수

국세와 지방세의 규모를 살펴보면, 2020년 기준 국세는 285.5조원으로 총조세의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세는 102.0조원으로 총조세의 26.3% 수준이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총조세	318.1	345.8	377.9	383.9	387.6
• 국세	242.6	265.4	293.6	293.5	285.5
(비중)	(76.3)	(76.7)	(77.7)	(76.4)	(73.7)
• 지방세	75.5	80.4	84.3	90.5	102.0
(비중)	(23.7)	(23.3)	(22.3)	(23.6)	(26.3)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및 행정안전부, 「지방세통계연감」

주요 조세지표: 조세부담률과 국민부담률

• 조세부담률

조세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지방세)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한 나라의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조세를 부담하는지 측정하는 지표이다. 20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0%로 2013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미국, 일본보다는 높고 OECD 평균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GDP	1,500.8	1,562.9	1,658.0	1,740.8	1,835.7	1,898.2	1,924.5	1,933.2	
조세 규모	조세	255.7	267.2	288.9	318.1	345.8	377.9	383.9	387.6
	- 국세	201.9	205.5	217.9	242.6	265.4	293.6	293.5	285.5
	- 지방세	53.8	61.7	71.0	75.5	80.4	84.3	90.5	102.0
조세부담률	17.0	17.1	17.4	18.3	18.8	19.9	19.9	20.0	

자료: e-나라지표

[OECD 주요국 연도별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평균
2013	17.0	16.9	19.4	26.0	28.6	23.0	32.6	23.9
2014	17.1	18.1	19.7	25.8	28.5	22.9	32.4	24.1
2015	17.4	18.3	20.0	25.9	28.6	23.2	33.1	24.1
2016	18.3	18.1	19.7	26.3	28.7	23.5	34.2	24.7
2017	18.8	18.6	20.6	26.6	29.3	23.4	34.5	24.5
2018	19.9	18.9	18.8	26.6	29.9	24.0	34.2	24.5
2019	19.9	18.5	18.9	26.3	30.1	24.0	33.7	24.5
2020	20.0	-	19.2	25.9	30.6	23.1	33.5	24.2

주: 1. 일본은 2020년 자료 미발표

2.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

• 국민부담률

국민부담률은 조세수입(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이 명목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다. 앞서 살펴본 조세부담률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에 해당하지만, 국민들이 강제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연금 및 사회보험의 부담은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이 때문에 조세뿐만 아니라 사회보장기여금을 포함한 모든 강제적인 납부액을 GDP 대비 비율로 나누어 국민부담률을 산출한다. 사회보장기여금은 준조세 성격의 4대 공적연금(국민연금·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과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 포함)의 기여금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020년 기준 27.9%로,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라 최근까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 결과, OECD 평균과의 차이는 2013년 9.6%p에서 2020년 5.6%p로 감소하였다.

[OECD 주요국 연도별 국민부담률 추이]

(단위: %)

연도	한국	일본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OECD평균
2013	23.1	28.6	25.5	31.9	45.4	37.0	42.5	32.7
2014	23.4	30.0	25.9	31.7	45.4	36.8	42.2	32.9
2015	23.7	30.2	26.2	31.8	45.3	37.3	42.6	32.9
2016	24.7	30.3	25.9	32.4	45.4	37.8	44.1	33.6
2017	25.4	30.9	26.8	32.9	46.1	37.7	44.1	33.4
2018	26.7	31.6	24.9	32.9	45.9	38.4	43.8	33.5
2019	27.2	31.4	25.0	32.7	44.9	38.6	42.8	33.4
2020	27.9	-	25.5	32.8	45.4	38.3	42.6	33.5

주: 1. 일본은 2020년 자료 미발표

2.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

세원별 조세구조

OECD는 조세의 원천에 따라 조세를 소득과세(income and profit taxes), 재산과세(property taxes), 소비과세(consumption taxes)로 나누고 있으며, 구분이 곤란한 세목은 기타(other taxes)로 분류하고 있다.

우리나라 조세를 해당 기준에 따라 분류하면, 개인과 법인의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소득세, 법인세 등은 소득과세로 분류된다. 자산의 취득·보유·이전 단계에 부과하는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상속세, 증여세, 증권거래세 등은 재산과세로 구분된다. 소비과세에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등이 포함되며, 기타 세목으로는 과년도수입이 존재한다.

명목GDP 대비 조세수입 비율을 세원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우리나라 조세수입에서 가장 큰 세원은 소득과세(8.6%)이다. 이를 개인과 법인으로 구분하면 개인소득에 대한 과세(5.2%)가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3.4%)를 상회하고 있다. 이외에 소비과세(6.8%), 재산과세(4.0%), 기타(0.7%)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세원별 조세구조]

(단위: 명목GDP 대비, %)

구분	한국								OECD
	'13	'14	'15	'16	'17	'18	'19	'20	'20
소득과세	6.8	6.8	7.2	7.7	8.1	9.1	9.1	8.6	10.9
- 개인소득	3.6	3.8	4.1	4.3	4.5	4.9	4.8	5.2	8.3
- 법인소득	3.2	3.0	3.1	3.4	3.6	4.2	4.3	3.4	2.7
재산과세	2.4	2.6	2.9	2.9	3.0	3.1	3.1	4.0	1.9
소비과세	7.1	7.0	6.7	7.0	7.0	7.0	7.0	6.8	10.6
기타	0.8	0.7	0.6	0.7	0.7	0.7	0.7	0.7	0.9

주: OECD 평균은 2021년 가입한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38개국 기준이며, 2020년 미발표국가(일본, 호주)의 경우 전년도 수치를 인용하여 계산

자료: OECD, Revenue Statistics(<https://stats.oecd.org>)

2. 세외수입

세외수입의 구분

세외수입은 정부의 세입예산 가운데 국세 이외의 수입을 말한다. 세외수입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상의 세입예산 과목(수입관)에 따라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수입대체경비수입, 관유물 매각대, 용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 전년도 이월금,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 등 9개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중 수입대체경비수입은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을 의미하는데, 이 항목에는 재산수입, 경상이전수입,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상의 세부항목(수입항)이 모두 포함될 수 있다.⁴¹⁾ 한편, 특별회계 세입 중 주세·농어촌특별세 등 국세 외의 자체세입(부담금,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등) 역시 세외수입에 해당한다.

[세외수입의 구분]

구 분(수입관)	예산과목(수입항)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10)	• 양곡사업수입(41), 우정사업수입(42), 조달사업수입(45), 책임운영기관사업수입(49)
재산수입(11)	• 관유물대여료(51), 정부출자수입(52), 전대차관이자수입(53),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54)
경상이전수입(12)	• 벌금, 몰수금 및 과태료(56), 변상금 및 위약금(57), 가산금(58), 기타경상이전수입(59)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13)	• 병원수입(62), 교도소수입(63), 입장료수입(64), 면허료 및 수수료(65), 입학금 및 수업료(66), 항공, 항만 및 용수수입(67), 실습수입(68), 잡수입(69)
수입대체경비수입(14)	•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경비로 지출되는 수입
관유물매각대(15)	• 고정자산 매각대(71),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2), 채고자산 및 유동자산 매각대(73)
용자 및 전대차관 원금회수(20)	• 용자원금 회수(75), 전대차관 원금회수(77), 정부출자주식매각대(78)
차입금 및 여유자금 회수(31)	• 민간차입금(82), 유가증권 매각대(84)
차관수입(32)	• 차관수입(86)
전년도 이월금(33)	• 전년도 이월금(88)
세계잉여금(34)	• 세계잉여금이입액(89)
정부내부수입 및 기타(40)	• 전입금(91), 예탁원금회수(92), 예수금(94), 예탁이자수입(95)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총계 기준 세외수입 예산 규모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외수입 총계는 171.2조원으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 기준 192.4조원보다 21.2조원(△11.0%) 감소한 규모이다. 회계별로 보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03.5조원으로 전년 대비 16.3조원(△13.6%)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67.7조원으로 전년 대비 4.9조원(△6.8%) 감소하였다.

41) 「국가재정법」 제53조에서는 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모든 수입과 모든 지출을 세입과 세출로 하며, 세입과 세출은 빠짐없이 예산에 계상되어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제17조)의 예외를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은 국가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인 수입대체경비를 규정한다.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예산사업은 해당 사업명에 수입대체경비임이 표시되며, 수입대체경비 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은 「201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부터 별도의 수입과목(14관 수입대체경비수입)으로 분류하여 편성하고 있다.

[세외수입 현황(총계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B)	B-A	(B-A)/A
일반회계	1,068,282	1,197,992	1,034,656	△163,336	△13.6
자산수입	53,041	61,200	50,950	△10,250	△16.7
경상이전수입	63,479	63,479	56,851	△6,628	△10.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87	8,387	7,965	△422	△5.0
수입대체경비수입	2,883	2,883	2,494	△389	△13.5
관유물매각대	1,123	1,123	1,213	90	8.0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3	3	3	0	0
세계잉여금	0	16,924	0	△16,924	△100.0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39,367	1,043,993	915,180	△128,813	△12.3
특별회계	703,093	726,407	677,355	△49,052	△6.8
자산수입	7,708	3,808	2,770	△1,038	△27.3
경상이전수입	49,979	49,979	38,800	△11,179	△22.4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348	17,348	15,839	△1,509	△8.7
수입대체경비수입	128	1,091	32	△1,059	△97.1
관유물매각대	8,857	8,857	7,084	△1,773	△20.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3,736	63,736	67,385	3,649	5.7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2,076	12,076	9,339	△2,737	△22.7
세계잉여금	7,329	32,243	28,543	△3,700	△11.5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35,932	537,269	507,563	△29,706	△5.5
합계	1,771,376	1,924,399	1,712,011	△212,388	△11.0

주: 2021년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2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수입 기준 세외수입 예산 규모

총수입을 기준으로 한 세외수입 규모는 총계 기준에서 세계잉여금, 정부내부수입 등의 내부거래 및 보전거래 수입항목을 제외하여 산출한다. 총수입 기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의 세외수입은 26.1조원으로 2021년도 추경 기준인 29.3조원보다 3.2조원(△11.0%) 감소한 규모이

다. 회계별로 보면 2022년도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11.9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조원(△12.8%)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14.1조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조원(△9.4%) 감소하였다.

[세외수입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추경(A)	예산(B)	B-A	(B-A)/A
일반회계	128,916	137,075	119,476	△17,599	△12.8
재산수입	53,041	61,200	50,950	△10,250	△16.7
경상이전수입	63,479	63,479	56,851	△6,628	△10.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387	8,387	7,965	△422	△5.0
수입대체경비수입	2,883	2,883	2,494	△389	△13.5
관유물매각대	1,123	1,123	1,213	90	8.0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3	3	3	0	0
특별회계	159,731	155,831	141,248	△14,583	△9.4
재산수입	7,708	3,808	2,770	△1,038	△27.3
경상이전수입	49,979	49,979	38,800	△11,179	△22.4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7,348	17,348	15,839	△1,509	△8.7
수입대체경비수입	28	28	32	4	14.3
관유물매각대	8,857	8,857	7,084	△1,773	△20.0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3,736	63,736	67,385	3,649	5.7
용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2,076	12,076	9,339	△2,737	△22.7
합계	288,647	292,906	260,725	△32,181	△11.0

주: 2021년도 추경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2022년도 예산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수입 기준 세외수입 수납액 현황

2021년도 총수입 기준 세외수입 수납액은 전년도 대비 3.6조원(13.4%) 증가한 30.5조원이며, 최근 5년 간 총수입 기준 세외수입 수납액은 2017년 25.5조원에서 2021년 30.5조원으로 증가하였다.

[세외수입 수납액 현황(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예산	수납
총 세외수입		26.4	25.5	27.2	26.0	26.9	25.2	29.1	26.9	29.3	30.5
일 반 회 계	재산수입	3.3	3.3	3.8	3.7	3.3	3.3	4.7	4.5	6.1	6.2
	경상이전수입	5.9	6.5	6.3	5.7	5.7	4.9	6.9	6.3	6.3	7.0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0.7	0.6	0.9	0.7	0.9	0.8	0.9	0.7	0.8	0.7
	수입대체경비수입	0.3	0.3	0.3	0.4	0.3	0.4	0.4	0.1	0.3	0.1
	관유물매각대	0.1	0.1	0.1	0.1	0.1	0.1	0.1	0.1	0.1	0.2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0.06	0.1	0.07	0.06	0.03	0.05	0	0	0	0
특 별 회 계	재산수입	0.5	0.6	0.6	0.8	0.8	0.6	0.7	0.6	0.4	0.2
	경상이전수입	4.6	4.9	4.4	4.9	4.9	4.7	4.9	4.7	5.0	5.0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1.7	1.5	1.7	1.5	1.7	1.5	1.7	1.5	1.7	1.5
	수입대체경비수입	0.02	0.1	0.02	0.01	0.003	0.1	0.003	0.007	0.003	0.008
	관유물매각대	0.7	0.6	0.8	0.9	1.0	1.1	0.9	1.0	0.9	0.6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7.1	5.7	6.9	6.3	6.9	6.7	6.8	6.4	6.4	8.1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	1.4	1.3	1.3	1.0	1.3	0.9	1.2	0.9	1.2	1.0

주: 1. 예산 수치는 추가경정예산 기준

2. 일반회계 융자 및 전대차관원금회수는 예산 및 수납실적이 매년 5억원 미만이라 생략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기금수입

기금운용계획 기준 기금수입

중앙정부 기금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도 전체 기금수입(총계 기준) 규모는 756.3조원으로 2021년도 773.7조원 대비 17.4조원(△2.2%) 감소하였다. 총계 기준 기금수입은 외형상 기금수입으로 계상되는 모든 항목을 합산한 것으로 자체수입뿐만 아니라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항목 등을 포함한다.

[기금운용계획 기준 기금수입]

(단위: 조원, %)

구 분	2021 계획 (A)	2022 계획 (B)	증 감	
			(B-A)	(B-A)/A
기금수입(총계)	773.7	756.3	△17.4	△2.2
자체수입	182.2	195.9	13.7	5.4
정부내부수입	184.6	173.2	△11.4	△6.2
차입금	198.9	189.4	△9.5	△4.8
여유자금회수 등 ¹⁾	208.0	197.9	△10.1	△4.9

주: 1) 여유자금회수 등에는 예수금, 유가증권매각대 및 정부예금회수가 포함

1. 총계 및 당초 계획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총수입 기준 기금수입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 중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 등은 내부거래 또는 보전거래에 해당하여 실질적인 수입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므로,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정부 총수입을 산정할 때에는 이와 같은 항목들을 제외하고 연금보험료·용자회수금·이자수입 등 실질적인 의미에서 수입이라고 볼 수 있는 자체수입만을 기금수입으로 간주한다. 또한 금융성기금(8개)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IMF 기준상 재정활동이 아닌 금융활동으로 분류되어 있어 총수입에서 제외하고 있다.

총수입 기준 2022년도 기금수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13.1조원(7.7%) 증가한 184.1조원이다. 이를 수입원천별로 살펴보면, 사회보장기여금은 전년 대비 3.7조원(4.8%) 증가한 80.7조원, 경상이전수입은 전년 대비 1.6조원(5.2%) 증가한 32.6조원, 용자원금 회수는 전년 대비 4.3조원(16.4%) 증가한 30.5조원, 재산수입은 전년 대비 2.5조원(9.3%) 증가한 29.3조원, 재화 및 용역 판매수입 등 기타수입은 전년 대비 1.1조원(11.1%) 증가한 11.0조원이다.

또한 기금수입을 기금의 유형별로 살펴보면, 사업성 기금(49개)은 전년 대비 3.6조원(7.8%) 증가한 49.7조원, 사회보험성기금(6개)은 전년 대비 7.6조원(6.5%) 증가한 124.7조원, 계정성기금(4개)은 전년 대비 1.9조원(24.7%) 증가한 9.6조원으로 계획되었다.

[수입원천·기금유형별 기금수입(총수입 기준)]

(단위: 조원, %)

구 분	2021 계획 (A)	2022 계획 (B)	증 감	
			(B-A)	(B-A)/A
기금수입(총수입)	171.0	184.1	13.1	7.7
[수입원천별]				
사회보장기여금	77.0	80.7	3.7	4.8
경상이전수입	31.0	32.6	1.6	5.2
용자원금 회수	26.2	30.5	4.3	16.4
재산수입	26.8	29.3	2.5	9.3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등 기타	9.9	11.0	1.1	11.1
[기금유형별]				
사업성기금(49개) ¹⁾	46.1	49.7	3.6	7.8
사회보험성기금(6개)	117.1	124.7	7.6	6.5
계정성기금(4개)	7.7	9.6	1.9	24.7

주: 1) 2021년도에는 48개였으나, 2022년도에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됨에 따라 49개로 증가

1. 총수입 기준으로 금융성기금(8개) 및 계정성 기금 중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제3절 재정지출

1. 소관별 재정지출

중앙정부는 2022년을 기준으로 「국가재정법」상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인 18개의 부, 6개의 처, 18개의 청 등 60개의 소관으로 구분되며, 이는 각각 총계 기준과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보전 거래를 제외한 총지출 기준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을 총지출 기준으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부가 98.0조원(15.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교육부(89.6조원, 14.4%), 행정안전부(70.7조원, 11.3%), 국토교통부(60.9조원, 9.8%), 국방부(39.7조원, 6.4%)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교육부(6.6조원, 8.0%), 보건복지부(5.3조원, 5.7%), 국토교통부(3.4조원, 6.0%) 등의 총지출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경우 기관이 신설되어 예산이 순증되었고, 전년 대비 총지출 증감률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회(126.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116.7%),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40.0%)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금융위원회(△41.2%), 새만금개발청(△15.9%), 기획재정부(△11.7%)는 전년 대비 총지출이 감소하였다.

[소관별 재정지출]

(단위: 십억원, %)

소 관	2021		2022		총지출 증감 (B-A)	총지출 증감률 (B-A/A)
	총지출 (A)	총계	총지출 (B)	총계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0	10	14	14	4	40.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6	6	13	13	7	116.7
감사원	136	136	136	136	0	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7	37	50	50	13	35.1
경찰청	11,969	12,018	12,285	12,326	316	2.6
고용노동부	38,236	55,302	37,067	53,031	△1,169	△3.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	20	20		비고(순증)
공정거래위원회	146	146	158	158	12	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7,744	21,737	18,560	23,033	816	4.6
관세청	596	596	614	614	18	3.0
교육부	83,024	95,512	89,625	102,119	6,601	8.0
국가보훈처	5,835	6,681	5,875	6,563	40	0.7
국가인권위원회	38	38	39	39	1	2.6
국가정보원	746	746	831	831	85	11.4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41	641	656	656	15	2.3
국민권익위원회	91	91	93	93	2	2.2
국방부	37,728	42,035	39,719	44,199	1,991	5.3
국세청	1,868	1,868	1,933	1,933	65	3.5
국토교통부	57,445	129,163	60,886	134,815	3,441	6.0
국회	705	705	704	704	△1	△0.1
금융위원회	1,361	30,457	800	30,291	△561	△41.2
기상청	426	426	454	454	28	6.6
기획재정부	34,214	421,192	30,225	383,154	△3,989	△11.7
농림축산식품부	16,548	29,981	16,877	29,971	329	2.0
농촌진흥청	1,096	1,096	1,189	1,189	93	8.5
대법원	2,044	2,222	2,026	2,206	△18	△0.9
대통령경호처	93	93	97	97	4	4.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8	98	96	96	△2	△2.0
문화재청	1,142	1,149	1,208	1,216	66	5.8

소 관	2021		2022		총지출 증감 (B-A)	총지출 증감률 (B-A/A)
	총지출 (A)	총계	총지출 (B)	총계		
문화체육관광부	7,190	10,024	7,483	9,453	293	4.1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	33	34	34	1	3.0
방송통신위원회	52	52	51	51	△1	△1.9
방위사업청	16,424	16,433	16,681	16,692	257	1.6
법무부	4,058	4,238	4,175	4,341	117	2.9
법제처	41	41	43	43	2	4.9
병무청	244	244	273	273	29	11.9
보건복지부	92,743	197,889	98,040	198,857	5,297	5.7
산림청	2,564	3,320	2,390	3,281	△174	△6.8
산업통상자원부	11,435	29,848	11,157	28,763	△278	△2.4
새만금개발청	296	296	249	249	△47	△15.9
소방청	221	221	243	243	22	10.0
식품의약품안전처	611	611	664	664	53	8.7
여성가족부	1,207	1,288	1,429	1,527	222	18.4
외교부	2,841	2,971	3,005	3,187	164	5.8
원자력안전위원회	155	155	156	156	1	0.6
인사혁신처	21,308	27,834	22,460	31,073	1,152	5.4
조달청	227	464	295	493	68	30.0
중소벤처기업부	28,037	56,769	31,351	57,285	3,314	11.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85	385	873	873	488	126.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	14	14		비고(순증)
질병관리청	6,350	6,369	7,512	7,535	1,162	18.3
통계청	415	415	380	380	△35	△8.4
통일부	1,475	2,005	1,502	1,888	27	1.8
특허청	525	639	547	794	22	4.2
해양경찰청	1,541	1,541	1,686	1,686	145	9.4
해양수산부	6,205	8,345	6,385	8,365	180	2.9
행정안전부	72,527	72,527	70,665	70,665	△1,862	△2.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34	868	404	797	△30	△6.9
헌법재판소	53	53	53	53	0	0.0
환경부	11,276	17,295	11,853	18,306	577	5.1
합 계	604,896	1,317,356	624,303	1,298,042	19,407	3.2

주: 2021년은 제2회 추경예산, 2022년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및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2. 분야별 재정지출

의의

정부는 국가 재정을 분류하면서 12대 분야와 16대 분야를 함께 활용하고 있다. 16대 분야는 프로그램 예산체계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장-관-항에서 분야-부문-프로그램으로 전환된 예산의 기본 체계로서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에서는 16대 분야를 활용하고 있다.

12대 분야는 나라살림,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을 설명하기 위한 분류로서 UN의 세출예산분류체계(COFOG), IMF의 정부재정 통계편람(GFS: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Manual) 등 기준을 참고하여 2005년 도입되었으며, 2006년도 예산안부터 국회에 제출되었다.

12대 분야 중 대부분의 분야는 16대 분야와 대응되나, R&D 분야, 국방 분야 등 일부 분야의 경우 별도의 집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통신 분야와 예비비 분야의 경우 12대 분야 집계에는 포함되지 않는데, 통신 분야는 대부분 기업특별회계(우편·우체국예금·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운용과 관련되어 재정투자과 차이가 있고,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소요에 대비한 것으로 재원배분 방향과 관련하여 별도로 집계하지 않는다. R&D 분야는 OECD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 사업을 재분류하고, 여러 분야에 산재한 R&D 사업의 재정지원 방향을 보다 체계적으로 제시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분야를 포함한 전체 분야에 포함된 예산을 재집계하고 있다. 국방 분야의 경우 병무청을 제외하고 국방부 및 방위사업청의 일반회계 총계만을 계상하고 있는데, 이는 여타 회계·기금(군사시설특별회계, 주한미군이전특별회계, 군인복지기금 등)은 그 설치 목적이 국방력 확충과 직접 관련되어 있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16대 분야 총지출의 합계는 정부가 발표하는 총지출 금액과 일치하나, 12대 분야의 경우 일부 분야의 집계가 별도로 이루어짐에 따라 분야별 지출액 합계가 총지출과 일치하지 않는다.

[자원배분 분류체계 비교]

12대 분야		16대 분야	
도입 배경	예산분류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에 따른 예산체계 개편(장·관·항→분야·부문)	
도입 시점	2006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	
특징 (장점)	국제기준을 참고하여 만든 체계로서 국가간 비교 용이	실제 예산편성체계(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일치하여 산출작업 용이	
연번	분야	연번	[코드번호] 분야
1	보건·복지·고용	1	[080] 사회복지
		2	[090] 보건
2	교육	3	[050] 교육
3	문화·체육·관광	4	[060] 문화및관광
4	R&D(별도통계) ¹⁾	5	[150] 과학기술
5	산업·중소기업·에너지	6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6	SOC	7	[120] 교통및물류
		8	[140] 국토및지역개발
7	농림·수산·식품	9	[100] 농림수산
8	환경	10	[070] 환경
9	국방(일반회계 총계) ²⁾	11	[040] 국방
10	외교·통일	12	[030] 통일·외교
11	공공질서·안전	13	[020] 공공질서및안전
12	일반·지방행정	14	[010] 일반·지방행정
		15	[130] 통신
		16	[160] 예비비

주: 1) 과학기술 분야 외에, 여타 분야 중 R&D 관련 사업예산을 중복 계상

2) 국방분야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병무청 제외) 일반회계 총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12대 분야별 재정 현황을 보면 보건·복지·고용 분야가 221.0조 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98.1조원), 교육 분야(84.2조원), 국방 분야(54.6조원) 등이다.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증가율은 환경(11.2%), 산업·중소기업·에너지(9.2%), R&D(8.4%), 교육(8.2%)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반·지방행정(△1.6%)은 2021년 제2회 추경예산 대비 감소하였다.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현황]

(단위: 조원, %)

분야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	
			B-A	(B-A)/A
1. 보건·복지·고용	212.1	221	8.9	4.2
2. 교육	77.8	84.2	6.4	8.2
3. 문화·체육·관광	8.8	9.2	0.4	4.5
4. 환경	10.7	11.9	1.2	11.2
5. R&D ¹⁾	27.5	29.8	2.3	8.4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40.1	43.8	3.7	9.2
7. SOC	26.6	28.1	1.5	5.6
8. 농림·수산·식품	23.0	23.7	0.7	3.0
9. 국방 ²⁾	52.3	54.6	2.3	4.4
10. 외교·통일	5.7	6	0.3	5.3
11. 공공질서·안전	22.3	22.3	0	0
12. 일반·지방행정	99.7	98.1	△1.6	△1.6

주: 1) 각 분야에 포함된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2) 국방 분야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병무청 제외) 일반회계 총계

1.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분야별 지출의 2017~2022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18.4%), 보건·복지·고용 분야(10.9%), 환경 분야(10.9%) 순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 보건·복지·고용	131.9	145.8	162.6	197.8	212.1	221	10.9
2. 교육	59.4	64.4	70.7	71.0	77.8	84.2	7.2
3. 문화·체육·관광	7.0	6.5	7.3	8.1	8.8	9.2	5.6
4. 환경	7.1	7.0	8.6	9.2	10.7	11.9	10.9
5. R&D	19.5	19.7	20.9	24.3	27.5	29.8	8.9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8.8	18.2	20.5	35.5	40.1	43.8	18.4
7. SOC	22.2	19.1	20.4	22.9	26.6	28.1	4.8
8. 농림·수산·식품	19.8	19.8	20.3	21.4	23.0	23.7	3.7

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9.국방	40.3	43.2	46.7	48.4	52.3	54.6	6.3
10.외교·통일	4.6	4.7	5.1	5.1	5.7	6	5.5
11.공공질서·안전	18.2	19.1	20.2	20.7	22.3	22.3	4.1
12.일반·지방행정	65.1	69.1	76.7	94.0	99.7	98.1	8.5

주: 1. 각 연도 추경예산 기준

2. 연평균 증가율은 단수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편,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총지출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5년 69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21~2025년 동안 총지출 증가율은 2021년 제2회 추경 예산 기준 3.4%로 전망되는데, 총지출보다 높은 증가율로 재정규모가 확대되는 분야는 환경 분야(5.1%), R&D 분야(4.4%), 보건·복지·고용 분야(4.1%), 국방 분야(3.7%) 등 4개 분야이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4.5%), 농림·수산·식품 분야(1.2%), 문화·체육·관광 분야(1.6%)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출 규모 증가율을 보였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12대 분야별 자원배분 전망]

(단위: 조원, %)

분야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1.보건·복지·고용	212.1	221.0	232.2	246.1	259.3	4.1
2.교육	77.8	84.2	84.8	87.4	90.0	1.7
3.문화·체육·관광	8.8	9.2	9.1	9.4	9.8	1.6
4.환경	10.7	11.9	12.9	13.7	14.5	5.1
5.R&D	27.5	29.8	32.3	34.0	35.4	4.4
6.산업·중소기업·에너지	40.1	43.8	32.6	35.0	36.4	△4.5
7.SOC	26.6	28.1	28.7	29.5	30.2	1.8
8.농림·수산·식품	23.0	23.7	24.0	24.4	24.9	1.2
9.국방	52.3	54.6	57.7	60.3	63.1	3.7
10.외교·통일	5.7	6.0	6.2	6.4	6.6	2.4
11.공공질서·안전	22.3	22.3	23.4	24.3	25.1	3.0
12.일반·지방행정	99.7	98.1	100.4	103.0	105.8	1.9

주: 2021년은 제2회 추경예산, 2022년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및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16대 분야별 재원배분 현황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총지출 624.3조원을 16대 분야별로 살펴보면 사회복지 분야가 196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이며, 다음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98조원), 교육 분야(84조원), 국방 분야(53조원) 순으로 규모가 크게 나타난다.

분야별 지출의 2017~2022년 연평균 증가율을 살펴보면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8%이며, 보건 분야(20.1%),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18.3%), 환경 분야(11.4%) 등의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났다.

[16대 분야별 재원배분 추이]

(단위: 조원, %)

분야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1.일반·지방행정	65	69	77	94	100	98	8.6
2.공공질서및안전	18	19	20	21	22	22	4.1
3.통일·외교	5	5	5	5	6	6	3.7
4.국방	39	42	45	47	51	53	6.3
5.교육	59	64	71	71	78	84	7.3
6.문화및관광	7	7	7	8	9	9	5.2
7.환경	7	7	9	9	11	12	11.4
8.사회복지	121	135	150	182	189	196	10.1
9.보건	10	11	12	16	23	25	20.1
10.농림수산	20	20	20	21	23	24	3.7
11.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9	18	20	36	40	44	18.3
12.교통및물류	19	15	16	19	22	23	3.9
13.통신	7	7	7	8	9	9	5.2
14.국토및지역개발	4	4	4	4	5	5	4.6
15.과학기술	7	7	7	8	9	10	7.4
16.예비비	3	3	3	6	10	5	10.8
총지출	410	433	475	555	605	624	8.8

주: 1. 각 연도 추경예산 기준

2. 연평균 증가율은 단수차이를 처리하는 방식에 따라 상이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3. 성질별 재정지출

의의

중앙정부의 재정지출은 7개의 성질로 구분되며,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세출과목을 100목(인건비), 200목(물건비), 300목(이전지출), 400목(자산취득 및 운용), 500목(상환지출), 600목(전출금등) 및 700목(예비비 및 기타)으로 나누고 있다.

인건비(100목)는 보수, 기타직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연가보상비 등으로 구성되며, 물건비(200목)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피복비 등을 포함한 운영비와 여비,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연구용역비, 안보비 등으로 이루어진다. 이전지출(300목)은 손실보상금, 배상금 등을 포함한 보전금과 민간보조, 민간위탁사업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민간이전과 자치단체보조, 자치단체교부금 등을 포함한 자치단체이전, 해외이전, 일반출연금,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포괄한다. 자산취득 및 운용(400목)은 건설보상비, 건설비, 유형자산, 무형자산, 융자금, 출자금 등,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예탁금, 지분취득비 등으로 구성되며, 상환지출(500목)은 차입금과 예수금, 전대차관의 원금상환 및 이자를 포괄한다. 전출금등(600목)은 회계 또는 기금 전출금으로 구성되며, 예비비 및 기타(700목)는 예비비, 예비금, 차기이월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성질별 재정지출 현황

재정지출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총지출 산출 시 제외되는 내부거래(전출금 등) 및 보전거래(상환지출 등)가 포함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성질별 세출과목을 모두 포괄하기 위하여 총계 기준으로 과목별 현황을 정리하였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지출목의 규모와 세출 총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인건비가 45조 7,624억원으로 3.5%를 차지하며, 물건비 34조 685억원(2.6%), 이전지출 430조 5,657억원(33.2%), 자산취득 및 운용 475조 1억원(36.6%), 상환지출 212조 6,331억원(16.4%), 전출금등 89조 8,278억원(6.9%), 예비비 및 기타 10조 1,826억원(0.8%)이다.

한편, 전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예비비 및 전출금등(600목)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였고, 물건비(200목)가 전년 대비 4.4%, 인건비(100목)이 전년 대비 3.1% 순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성질별 세출내역]

(단위: 억원, %)

지출목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	
			B-A	(B-A)/A
인건비(100)	443,710	457,624	13,914	3.1
인건비(110)	443,710	457,624	13,914	3.1
물건비(200)	326,416	340,685	14,269	4.4
운영비(210)	264,775	277,853	13,078	4.9
여비(220)	6,966	6,872	△94	△1.3
특수활동비(230)	2,384	2,396	12	0.5
업무추진비(240)	1,919	1,889	△30	△1.6
직무수행경비(250)	10,324	10,538	214	2.1
연구용역비(260)	32,588	32,825	237	0.7
안보비(270)	7,460	8,312	852	11.4
이전지출(300)	4,189,625	4,305,657	116,032	2.8
보전금(310)	229,273	288,592	59,319	25.9
민간이전(320)	1,367,606	1,303,878	△63,728	△4.7
자치단체이전(330)	2,083,295	2,159,431	76,136	3.7
해외이전(340)	20,799	20,575	△224	△1.1
일반출연금(350)	233,718	253,824	20,106	8.6
연구개발출연금(360)	254,934	279,357	24,423	9.6
자산취득 및 운용(400)	5,041,780	4,750,001	△291,779	△5.8
건설보상비(410)	15,867	23,624	7,757	48.9
건설비(420)	152,672	162,521	9,849	6.5
유형자산(430)	164,672	155,133	△9,539	△5.8
무형자산(440)	1,755	2,063	308	17.5
융자금(450)	525,662	470,195	△55,467	△10.6
출자금등(460)	112,265	103,491	△8,774	△7.8
예치금및유가증권매입(470)	2,235,189	2,251,077	15,888	0.7
예탁금(480)	1,833,195	1,581,309	△251,886	△13.7
지분취득비(490)	503	588	85	16.9
상환지출(500)	2,213,948	2,126,331	△87,617	△4.0
상환지출(510)	2,213,948	2,126,331	△87,617	△4.0
전출금등(600)	806,496	898,278	91,782	11.4
전출금등(610)	806,496	898,278	91,782	11.4
예비비 및 기타(700)	151,584	101,826	△49,758	△32.8
예비비 및 기타(710)	151,584	101,826	△49,758	△32.8
합 계	13,173,559	12,980,402	△193,157	△1.5

주: 1. 2021년은 제2회 추경예산, 2022년은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 총계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brain.go.kr)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의의

의무지출(mandatory expenditure)이란 법령 등에 의해 국가의 지출의무가 명시된 지출이다.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는 의무지출을 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로 규정하고 있다. 의무지출과 상대되는 개념인 재량지출(discretionary expenditure)은 법률상 지출의무가 없는 지출로서, 국가 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로 규정된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은 지출근거, 발생요인 등에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차이]

구분	의무지출	재량지출
지출 구분 근거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3
지출 발생요인	지출의무가 명시된 재정수반법률	사업추진 근거법 등
지출 규모	법령에 의해 결정	국회심의에 따라 결정
예산 변경방법	재정수반법령의 제·개정(입법과정)	예산심의 과정에서 규모 조정
예산안 심사관점	편성규모의 정확성 등	정책(사업)과 규모의 타당성 등

2022년 의무지출 예산 현황

2022년 의무지출 예산은 303.2조원으로 전년 대비 37.1조원(13.9%) 증액되었으며, 재량지출은 304.5조원으로 전년 대비 12.6조원(4.3%) 증액되었다. 2022년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49.9%, 재량지출 비중은 50.1%로 나타났다.

[의무·재량지출 예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B)	증 감	
		본예산(A)	추경		B-A	(B-A)/A
의무지출 (비중)	252.8 (46.0)	266.1 (47.7)	279.1 (46.1)	303.2 (49.9)	37.1	13.9
재량지출 (비중)	296.8 (54.0)	291.9 (52.3)	325.8 (53.9)	304.5 (50.1)	12.6	4.3
합 계	549.5	558.0	604.9	607.7	49.7	8.9

주: 2021년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의무지출 예산 303.2조원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지방이전재원 분야는 133.9조원으로 전년 대비 25조원(23%) 증액되었고, 복지 분야는 140조원으로 전년 대비 8.7조원(6.6%) 증액되었다. 기타 분야는 10.4조원으로 전년 대비 2.8조원(36.8%) 증액되는 등 법정지출은 284.3조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원(14.7%) 증가하였다. 또한, 이자지출은 18.9조원으로 전년 대비 0.6조원(3.3%) 증액되어 각 분야별 의무지출이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무지출 분야별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21 본예산(A)	2022 본예산(B)	증감	
			B-A	(B-A)/A
의무지출	266.1	303.2	37.1	13.9
지방이전재원	108.9	133.9	25.0	23.0
복지	131.3	140.0	8.7	6.6
기타	7.6	10.4	2.8	36.8
이자지출	18.3	18.9	0.6	3.3
재량지출	291.9	304.5	12.6	4.3
합계	558.0	607.7	49.7	8.9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2년 의무지출 및 재량지출 예산안 국회심사 현황

국회는 의무지출 정부안 301조 1,000억원에서 2조 1,000억원 증액한 303조 2,000억원을 2022년 의무지출 예산으로 확정하였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 제출 의무지출 예산안은 지방이전재원 분야에서 2조 7,000억원, 기타 분야에서 3,000억원 증액되었으나, 복지 분야와 이자지출에서 각각 1,000억원, 8,000억원 감액되는 등 총 2조 1,000억원이 증액되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의무지출 분야별 심사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22 정부안	국회심사결과			2022 본예산
		소계	증액	감액	
의무지출	301.1	2.1	3.3	△1.2	303.2
지방이전재원	131.3	2.7	2.7	-	133.9
복지	140.1	△0.1	0.2	△0.3	140.0
기타	10.1	0.3	0.4	△0.1	10.4
이자지출	19.7	△0.8	-	△0.8	18.9
재량지출	303.3	1.1	5.5	△4.4	304.5
합계	604.4	3.2	8.8	△5.6	607.7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국세수입 순증액에 연동하여 지방이전재원 분야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7,284억원(62.5조원→63.2조원), 부동산교부세 7,528억원(6.6조원→7.4조원), 보통교부세 9,078억원(54.2조원→55.1조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건강보험의 정부지원 비율을 높인 건강보험가입자지원(복지 분야)에서 1,000억원(8.6조원→8.7조원)이 증액되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정부의 방역 조치인 집합금지·영업제한에 따라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기타 분야)에서 4,000억원(1.8조원→2.2조원)이 증액되었다.

반면, 집행 예상액보다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연례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던 국민연금급여지급(복지 분야)에서 3,000억원(30.9조원→30.6조원)이 삭감되었고, 국가배상금 지급(기타 분야)에서 1,000억원(2,500억원→1,500억원), 국고채 이자상환(이자지출 분야)에서 7,603억원(16.4조원→15.6조원)이 각각 감액되어 전년도 예산액 수준을 유지하였다.

의무지출 예산 추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의무지출 예산은 연평균 8.7% 증가하였으며, 이는 총지출 및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9.1% 및 9.5%보다 각각 0.4%p 및 0.8%p 낮은 수치이다.

의무지출의 세부 유형별 기존 추이를 살펴보면, 2018~2019년 동안 의무지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던 지방이전재원 분야 규모는 2020년 소폭 증가하였다가 2021년에는 감소하였다. 반면 복지 분야 규모는 2019~2021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0년부터 의무지출 예산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22년에는 지방이전재원 분야의 비중은 전년 대비 3.2%p 증가한 44.2%, 복지 분야의 비중은 전년 대비 3.2%p 감소한 46.2% 수준으로, 복지 분야의 비중이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의무지출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추세는 지속되고 있다.

[2018~2022년 의무지출 분야별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법정지출(A)	200.9	223.4	238.7	247.8	284.3	9.1
- 지방이전재원	99.4	111.5	111.6	108.9	133.9	7.7
- 복지	95.7	106.7	119.7	131.3	140.0	10.0
- 기타	5.8	5.2	7.4	7.6	10.4	15.7
이자지출(B)	16.0	15.9	17.0	18.3	18.9	4.3
의무지출(C=A+B)	217.0	239.3	255.6	266.1	303.2	8.7
재량지출(D)	211.9	230.3	256.7	291.9	304.5	9.5
총지출(C+D)	428.8	469.6	512.3	558.0	607.7	9.1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14년부터 2022년까지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20년과 2021년에 감소하였으나, 2022년에는 다시 증가하여 2020년과 비슷한 수준이다.

2018~2022년 5년간 의무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8.7%로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 9.5%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22년 예산에서는 전년 대비 의무지출 증가율(13.9%)이 재량지출 증가율(4.3%)에 비해 높게 나타나,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차이는 2021년 4.6%p에서 2022년 0.2%p로 축소되었다.

[우리나라 2014~2022년 총지출 대비 의무·재량지출 비중 추이]

(단위: %)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의무지출 전망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의무지출은 2021년 본예산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연평균 6.5%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는 같은 기간 총지출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다. 2021년 예산에서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악화된 경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재정운용에 따라 재량지출의 비중이 확대되었으나,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맞물린 복지분야 법정지출의 확대 등 의무지출의 증가 추세에 따라 2024년부터는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와 같은 의무지출의 증가는 재정의 신축성과 경기대응력을 저하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의무지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B)	증가액 (B-A)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A)	추경						
총지출	558.0	604.9	607.7	634.7	663.2	691.1	133.1	5.5
- 의무지출 (비중)	266.1 (47.7)	279.1 (46.1)	303.2 (49.9)	311.7 (49.1)	327.0 (49.3)	342.7 (49.6)	76.6	6.5
- 재량지출 (비중)	291.9 (52.3)	325.8 (53.9)	304.5 (50.1)	323.0 (50.9)	336.2 (50.7)	348.4 (50.4)	56.5	4.5

주: 2021년 본예산은 국회 확정예산 기준, 추경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4장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제1절 재정수지

1. 재정수지의 의미

재정수지는 해당 연도의 재정수입에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로서, 해당 연도 재정 활동의 건전성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

재정지출이 재정수입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재정수지 적자가 발생하면 차입이나 국채발행, 자산 매각 등을 통한 보전이 필요하게 되므로 국가채무의 증가 또는 국가자산의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반대로 재정수입이 재정지출보다 더 크게 나타나 재정수지 흑자가 발생하면 국채상환이나 예치금 등에 사용하게 되므로 국가채무가 감소하거나 국가자산이 증가하게 된다.

2. 재정수지의 구분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모두 포괄하는 수치로서,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및 차입·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실질적 의미의 수입·지출의 차이를 나타낸다.

통합재정수지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에 따라 1979년부터 연도별로, 1999년 7월부터는 월별로 작성·공표하고 있으며 IMF 「정부재정통계 1986(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1986)」을 기준으로 '통합재정수입'에서 '통합재정지출 및 순융자'를 차감하여 계산한다⁴²⁾.

42) '통합재정수입'과 '통합재정지출'은 각각 내부거래와 보전거래 등을 제외한 비상환성 수입 및 지출을 의미하며, 각각 경상수입·자본수입과 경상지출·자본지출로 구성된다. 다음, '순융자'는 유동성 목적이 아닌 정책적 목적의 대출인 '융자지출'에서 해당 대출금의 회수액인 '융자회수'를 차감한 개념이다.

한편,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하여도 통합재정수지가 산출된다. 이는 통합재정수입·지출 기준과 총수입·총지출 기준이 용자지출·회수와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지출을 계상하는 방식에서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아래 표와 같이 수입에서 지출을 차감한 값은 구조적으로 동일하기 때문이다.

[총수입·총지출 및 통합재정수입·지출 비교]

구분	총수입·총지출	통합재정수입·지출
도입 시기	200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시	1979년 IMF 권고
목적	재정 규모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정부 부문이 민간 부문에 미치는 영향 분석
활용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편성 규모 집계 등	월별 수지공표, IMF 제출 등
차이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회수 및 지출을 각각 총수입·총지출에 계상 • 기업특별회계: 총계 기준의 영업수입·지출을 각각 총수입·총지출에 계상 <p>※ 통합재정수지 = 총수입 - 총지출 = (일반수입 + 용자회수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입) - (일반지출 + 용자지출 + 기업특별회계 영업지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자: 순용자(지출-회수) 산출한 후 통합재정수입에서 차감 • 기업특별회계: 영업수지(영업수입-지출)를 산출한 후 흑자인 경우 통합재정수입에, 적자인 경우 통합재정지출에 계상 <p>※ 통합재정수지 = 통합재정수입 - 통합재정지출 = (일반수입 + 기업특별회계 영업흑자) - (일반지출 + 순용자 + 기업특별회계 영업적자)</p>

자료: 기획재정부, 「2017회계연도 한국통합재정수지」, 2019.3.을 바탕으로 재작성

「국가재정법」은 정부로 하여금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근거 및 관리계획을 포함하도록 하고(제7조제2항제6호), 매년 1회 이상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며(제9조제1항), 「국가회계법」은 국가결산보고서의 세입세출결산에 통합재정수지 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제15조의2제3항제1호).

관리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 기금 수지를 제외한 재정수지로서, 재정건전성을 보다 정확히 판단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집계하기 시작하였다.

그동안 국민연금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고용보험기금·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등 4개 사회보장성기금은 연금수급자 수가 본격적으로 증가하지 않은 사유 등으로 전체적인 규모에서 흑자가 발생하여 왔으며, 이는 통합재정수지를 양호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사회보장성 기금의 장기적인 재정소요를 고려하면 이러한 사회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하는 관리재정수지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는 유용한 재정지표라고 할 수 있다.

3. 재정수지의 추이 및 전망

정부가 관리재정수지를 발표하기 시작한 2001년 이후 흑자를 기록한 해는 2002~2003년 및 2007년 등 3개 연도에 불과했으며, 2008년부터는 결산 기준으로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통합재정수지는 2009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2001년부터 2018년까지 결산 기준으로 매년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19년부터 적자로 전환되었다.

[재정수지 추이]

(단위: 조원)



주: 2020년까지는 결산기준, 2021년 이후 예산(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가 2021년 9월 국회에 제출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90.3조원에서 2025년 △72.6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는 2021년 △126.6조원에서 2025년 △109.2조원으로 각각 적자폭이 감소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비율도 2021년 △6.2%에서 2025년 △4.6%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정수지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연평균 증가율
총수입	514.6	553.6	570.2	593.9	618.5	4.7
총지출	604.9	624.3	634.7	663.2	691.1	5.5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90.3 (△4.4)	△70.8 (△3.3)	△64.5 (△2.9)	△69.4 (△3.0)	△72.6 (△3.0)	-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비율)	△126.6 (△6.2)	△110.8 (△5.1)	△104.7 (△4.7)	△108.4 (△4.7)	△109.2 (△4.6)	-

주: 2021년도는 제2회 추경예산 기준, 2022년도는 제1회 추경예산 기준, 2023~2025년도는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른 전망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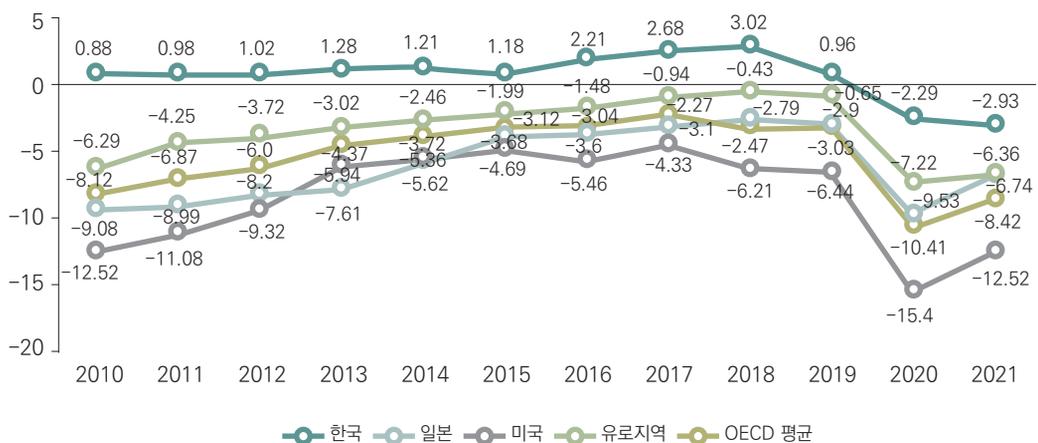
자료: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4. 재정수지 국제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통합재정수지(General Government Financial Balance)는 GDP 대비 2.93% 적자로 예상되며, 이는 미국(△12.52%), 일본(△6.36%), OECD 평균(△8.42%)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보장성 기금의 지출이 수입보다 적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주요 OECD 국가의 일반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GDP 대비 %)



주: 2020~2021년은 OECD 전망치 기준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110, 2021.12.

구조적 재정수지 (Structural Budget Balance; SBB)

구조적 재정수지는 총수입과 총지출에서 경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재정수지 요인을 제외한 지표이다. 경기에 민감한 일시적인 요인을 제외한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재정수지 요인을 파악하는 지표로 주로 정부의 중기재정여력을 판단하는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된다. 그러나 잠재성장을 등 관측되지 않은 변수를 추정방법에 활용하기에 이에 따른 불확실성이 크다는 한계점도 존재한다.

참고로 통합재정수지의 보조지표로 활용되는 기초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가채무에 따른 이자비용 지출을 제외한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추정한 지표이다.

주요국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 및 통화정책 비교

2020년 2월부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실시한 외출제한·집합금지 등 이동제한 방안은 각국의 실물 경제 활동을 크게 위축시켰다. 이는 경제성장률 감소, 실업자 수의 급격한 증가 등으로 나타났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요국은 전례 없는 규모의 재정정책 및 통화금융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각국의 재정정책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개인의 생계 및 고용지원에 집중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자·휴직자·저소득층 중심으로 현금지급, 대출지원 및 실업수당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액 혹은 자산/소득 여건에 따라 차등하여 현금을 지급하거나(대한민국, 일본, 싱가포르 등), 조업단축 지원금 제도를 도입하거나 해당 제도의 적용대상을 확대하여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급여 감소를 보상 또는 고용유지를 지원하거나(미국, 영국, 독일 등), 개인·법인소득세 또는 공공요금 납부유예 등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지출규모]

(단위: 10억 달러, 2020년 GDP 대비 %)

순위	국가	지출규모 ¹⁾ (비중)	순위	국가	지출규모 (비중)
1	미국	5,328(25.5)	10	브라질	133(9.2)
2	일본	844(16.7)	11	인도	109(4.1)
3	중국	711(4.8)	12	스페인	107(8.4)
4	독일	589(15.3)	13	대한민국	105(6.4)
5	영국	522(19.3)	14	인도네시아	99(9.3)
6	캐나다	262(15.9)	15	네덜란드	93.9(10.3)
7	프랑스	253(9.6)	16	러시아	74(5.0)

순위	국가	지출규모 ¹⁾ (비중)	순위	국가	지출규모 (비중)
8	호주	250(18.4)	17	태국	73.2(14.6)
9	이탈리아	205(10.9)	18	오스트리아	65.7(15.2)

주: 1) 지출규모는 실업급여 등 추가적인 재정소요, 고용보조금 등 이전지출 및 세금감면 등 단기간에 재정수지 또는 부채수준에 반영되는 재정지출을 의미하며, 더 자세한 설명은 IMF, "Fiscal Monitor: Policies to support people during the COVID-19 pandemic", 2020.4, p.22의 Box 1.1.을 참고

자료: IMF, "dataset of fiscal monitor", 2021.10

[국가별 재정정책 주요내용]

국가	주요내용
한국	- 새희망자금, 버팀목자금 등 100~500만원 규모의 소상공인 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급 - 특고·프리랜서·영세자영업자 등의 구직급여 확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확대 등 일자리 관련 지원
미국	- 2020년 12월 9,000억 달러 규모의 5차 재정지원법안 및 2021년 1월 1조 9,000억 달러 규모의 새로운 재정부양안 발표 - 제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7,000억 달러 규모의 리쇼어링 촉진, R&D 투자 등 지원
영국	- 총매출이 30% 이상 감소한 자영업자의 평균 수익 80%를 지원하는 자영업자소득지원제도(Self-employment Income Support Scheme) 시행 - 20%에서 5%로 부가가치세(VAT)를 감면하고 50만 파운드 이하의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면제 등 조세완화 정책 시행
독일	- 폐업위기에 몰린 자영업자를 구제하기 위한 긴급지원금(Soforthilfe) 및 피해 정도에 따라 차등지급되는 극복지원조치(Überbrückungshilfe) 시행 - 2020년 아동 1인당 300유로, 2021년 150유로의 아동양육 특별지원금 지급
프랑스	- 단기간 근로제 근로자 임금 지원, 저소득 가정 지원 등에 3,275억 유로 규모의 재정 지원 조치들을 발표 - 피해를 입은 10인 미만 소기업·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게 2020년 4월부터 월 1,500유로를 지급
중국	- 실업 보험, 세금 감면 및 사회 보장 기여금 면제 그리고 추가 공공 투자 등에 4조 2,000억 위안을 투입 - 소규모 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기준을 월매출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조정하고 영세기업 및 자영업자의 납세소득이 100만 위안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50% 감면
일본	- 사업활동에 타격을 입은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직자의 휴업수당 일부를 지원해주는 '고용조정지원금'을 실시하고 학교 임시 휴교에 따른 휴직자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 - 자녀 양육 세대에 아동수당을 확대 지급(한 자녀에 한해 월 1만~1만 5,000엔 지급)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실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준금리 조정, 유동성 공급 등의 통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0~0.25% 범위에서 유지하였고, 일본중앙

은행도 10년물 일본국채수익률을 0.25% 보다 낮게 유지하겠다고 최근 발표하였다. 이에 더해 금융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해 기업 대출 확대와 회사채 매입을 지원하고 있는 모습이다.

[국가별 통화정책 주요내용]

국가	주요내용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통화스왑 체결 및 계약연장 - 17조원 규모의 국고채 단순매입 및 25조원인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를 43조원으로 증액 - 공개시장운영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 확대
미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기준금리를 0~0.25% 범위에서 유지 - 2020년 3월 최소 7천억 달러 규모의 주택대출담보증권(MBS), 자산담보증권(ABS) 등을 매입하는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재개
영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0.75%의 정책금리를 역사상 가장 낮은 수준인 0.1%로 인하 - 중앙은행의 영국 국채 및 비금융 회사채 보유량을 4,500억 파운드로 확대 - 회사채 매입 등 양적완화 규모를 4,450억 파운드에서 6,450억 파운드로 증액
독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일재건은행(KfW) 등과의 협업을 통해 500억 유로 규모의 1인 기업, 프리랜서 등의 임차료 및 리스 비용 지원 - 유럽중앙은행(ECB)의 7,500억 유로 규모의 양적완화와 더불어 유동성이 낮은 기업의 지급불능 신고 의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등 기업에 단기 현금 유동성 제공을 위한 재융자 정책 추진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출액 15억 유로 미만 기업에 대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출 보증과 종업원이 5,000명 이상 사업장이면서 매출액 15억 유로 이상 기업에 대해 1회에 한해 대출 보증
중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증가율 목표를 30%에서 40%로 상향 조정 - 지방 은행의 무담보 중소기업 대출 지원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에 지장이 발생할 경우 중소기업의 대출 금액을 보장해주는 2억 8,000만엔 규모의 '안전망 보증'을 발표하고 대상 업종을 확대 - 소규모 사업자·중소기업으로 대출 대상업종 및 지원금액 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지원하는 '특별대출', 음식점, 카페, 숙박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위생환경 특별대출제도' 등 대출지원제도를 신설

제2절 국가채무

1. 국가채무의 의의

국가채무는 정부가 민간이나 해외에 원리금의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채무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는 국가채무에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발행채권’,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정부의 대지급(代支給) 이행이 확정된 국가보증채무’를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하지 않는 회계 또는 기금의 금전채무’는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과 ‘발행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및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도 국가채무에서 제외하고 있다.

2. 국가채무의 구분

유형에 따른 구분

국가채무는 유형별로 크게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중앙정부 채무는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된다.

국채

국채는 국가의 재정수지 상의 세입부족액을 보전하고 수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이다. 「국채법」 제4조에 따라 국채는 공공자금관리기금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고채권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 법률에 따라 다른 회계·기금 또는 특별계정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는 국채로 구분된다.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국민주택채권(제1종),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화표시), 재정증권⁴³⁾이 있으며, 제2종 국민주택채권과 원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은 더 이상 발행되지 않고 있다.

43) 재정증권은 세입·세출간 일시적 자금 불일치로 발생하는 국고 부족금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유가증권으로, 발행한 연도 내에 전액 상환하기 때문에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차입금

차입금은 정부가 한국은행, 민간기금 또는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법정 유가증권의 발행 없이 직접 차입한 금액을 의미한다. 차입대상에 따라 정부가 한국은행 등 국내 금융기관, 민간기금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국내차입금과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국제기구와 외국 정부 등으로부터 차입하는 해외차입금으로 구분되며, 해외차입금은 2016년에 전액 상환한 이후 잔액은 없는 상황이다.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라 국가가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 금액 또는 계속비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로서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일반적인 예산사업은 예산확보 후 사업을 집행하는 데 반해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예산확보 전에 국회의 승인을 얻은 범위 내에서 미리 지출원인행위(계약)를 하고 실제 지출은 이후 수년에 걸쳐 이루어지게 된다. 국고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연도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예외적인 제도로서, 해양경찰청의 함정 건조 사업이나 외교부의 재외공관 건축사업 등이 국고채무부담행위로 집행된 바 있다. 현재 이들 사업은 세출예산(계속비 등)으로 편성되고 있다.

지방정부 순채무

지방정부 순채무는 지방정부의 지방채 및 지방교육채 잔액에서 중앙정부에 대한 채무잔액을 차감한 것으로 정의된다. 「국가재정법」에 따른 국가채무의 범위에 속하지는 않지만, 국제 비교 등을 위해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1997년 이후 매년 지방정부 순채무를 국가채무에 포함하고 있다.

성질에 따른 구분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적자성 채무와 금융성 채무로도 구분한다. 금융성 채무는 융자금·외화자산 등 대응 자산이 있어 별도의 재원 조성 없이 자체 상환이 가능한 반면, 적자성 채무는 대응 자산이 없어 상환 시 조세 등으로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적자성 채무는 목적에 따라 다시 일반회계 적자보전 채무, 공적자금 상환용 채무, 기타 적자성 채무(양곡증권 정리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등)로 구분된다.

국가보증채무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채무 이행 의무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가채무는 정부의 채무이행 의무가 확정된 채무라는 점에서 국가보증채무와 구별된다. 정부가 이러한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58조와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국회의 의결을 먼저 거쳐야 한다.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명시된 2022년 보증채무 규모는 19.4조원(GDP 대비 0.9%)이다. 이 중 한국장학재단채권의 보증채무가 10.0조원으로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한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보증채무는 기간산업 기업 지원을 위해 한국산업은행이 발행하는 기금채의 원리금 상환을 국가가 보증하는 것으로, 2025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보증채무 규모 전망]

(단위: 조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채무	11.3	19.4	16.7	13.6	9.7
(GDP 대비, %)	(0.6)	(0.9)	(0.8)	(0.6)	(0.4)
- 장학재단채권	10.3	10.0	9.9	9.8	9.7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1.0	9.4	6.8	3.8	-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1.9.

3. 국가채무의 추이 및 전망

국가채무의 추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결산 기준 최근 10년간 국가채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동안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17년과 2018년을 제외하고는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2020년 말 기준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3.8%이다.

[국가채무 추이(유형에 따른 구분)]

(단위: 조원, %)

연도	중앙정부채무							지방정부 순채무	국가채무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			
	소계	국고 채권	국민 주택채권	외평채권					
2011	402.8	397.1	340.1	48.9	8.1	2.5	3.3	17.6	420.5 (30.3)
2012	425.1	420.0	362.9	49.5	7.6	2.3	2.8	18.0	443.1 (30.8)
2013	464.0	459.5	400.7	51.3	7.5	1.9	2.7	25.7	489.8 (32.6)
2014	503.0	498.1	438.3	52.8	7.0	2.6	2.4	30.1	533.2 (34.1)
2015	556.5	551.5	485.1	59.3	7.1	3.3	1.7	34.9	591.5 (35.7)
2016	591.9	587.5	516.9	64.0	6.7	3.9	0.5	35.0	626.9 (36.0)
2017	627.4	623.3	546.7	69.4	7.2	3.8	0.2	32.8	660.2 (36.0)
2018	651.8	648.4	567.0	73.3	8.0	3.2	0.2	28.7	680.5 (35.9)
2019	699.0	696.3	611.5	76.4	8.3	2.6	0.1	24.2	723.2 (37.7)
2020	819.2	815.2	726.8	78.9	9.5	3.3	0.7	27.5	846.6 (43.8)

주: ()는 GDP 대비 비율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 국가채무를 유형별로 보면 중앙정부 채무가 819.2조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96.8%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방정부 순채무가 27.5조원이다. 중앙정부 채무 중 국채가 815.2조원으로 가장 규모가 크고, 차입금과 국고채무부담행위가 각각 3.3조원, 0.7조원이다. 국채 중에서는 국고채권이 726.8조원, 국민주택채권과 외평채권이 각각 78.9조원, 9.5조원이다.

다음으로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보면,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60.6%인 512.7조원이며, 금융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39.4%인 333.9조원이다.

[국가채무 추이(성질에 따른 구분)]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가채무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5	723.2	846.6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 중 비중)	206.8 (49.2)	220.0 (49.7)	253.1 (51.7)	286.4 (53.7)	330.8 (55.9)	359.9 (57.4)	374.8 (56.8)	379.2 (55.7)	407.6 (56.4)	512.7 (60.6)
- 일반회계 적자보전	135.3	148.6	172.9	200.6	240.1	271.3	289.6	300.4	334.7	437.5
- 공적자금 국채전환	45.7	45.7	46.9	48.7	49.4	48.5	47.5	45.3	44.1	42.8
- 기타	23.8	25.7	33.3	37.2	41.3	40.0	37.7	33.4	28.8	32.4
금융성 채무 (국가채무 중 비중)	213.6 (50.8)	223.1 (50.3)	236.7 (48.3)	246.7 (46.3)	260.6 (44.1)	267.0 (42.6)	285.4 (43.2)	301.3 (44.3)	315.6 (43.6)	333.9 (39.4)
- 외환시장 안정용	136.7	153.0	171.0	185.2	198.3	209.8	222.3	234.9	247.2	256.4
- 서민주거 안정용 등	76.9	70.1	65.7	61.6	62.3	57.2	63.1	66.4	68.5	77.5

주: 1. 소수점 이하는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결산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각 연도 국가채무관리계획 및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재정운용계획의 국가채무 전망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중앙정부 채무와 지방정부 순채무를 합한 국가채무는 2021년 965.3조원(GDP 대비 47.3%)에서 2025년 1,415.9조원(GDP 대비 58.5%)으로 연평균 10.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중 중앙정부 채무는 2021년 937.8조원에서 2025년 1,381.7조원으로 연평균 10.2% 증가하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2021년 27.5조원에서 2025년 34.3조원으로 연평균 5.7%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전망(유형에 따른 구분)]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비율)	965.3 (47.3)	1,075.7 (50.1)	1,182.8 (52.9)	1,298.9 (55.8)	1,415.9 (58.5)	10.1
- 중앙정부	937.8	1,044.6	1,150.0	1,265.4	1,381.7	10.2
- 지방정부 순채무	27.5	31.1	32.7	33.5	34.3	5.7

주: 1. 2021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2023~2025년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조정한 것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다음으로 국가채무를 성질별로 보면, 적자성 채무는 2021년 609.3조원에서 2025년 961.3조원으로 연평균 12.1% 증가하고, 금융성 채무는 2021년 356.0조원에서 2025년 454.7조원으로 연평균 6.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가채무 전망(성질에 따른 구분)]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1~'25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965.3	1,075.7	1,182.8	1,298.9	1,415.9	10.1
- 적자성 채무 (국가채무 중 비중)	609.3 (63.1)	696.4 (64.7)	776.1 (65.6)	863.6 (66.5)	961.3 (67.9)	12.1
- 금융성 채무 (국가채무 중 비중)	356.0 (36.9)	379.3 (35.3)	406.7 (34.4)	435.3 (33.5)	454.7 (32.1)	6.3

주: 1. 2021년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년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이며, 2023~2025년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치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맞춰 조정한 것임

2. 구성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2021.9.) 등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

4. 국가채무의 관리

국가채무 통계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통계는 IMF의 「정부재정 통계편람 1986(A Manual on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GFS 1986)」을 기준으로 작성되고 있다. 그러나 현금주의를 따르는 이 방식

은 상환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채무(debt)만을 인식하여 포괄범위 및 작성방식이 다른 국가들과의 국제비교를 어렵게 하였으며, 특히 국가 간 비교에 가장 널리 활용되는 OECD의 일반정부 부채 통계⁴⁴⁾와의 차이를 야기하였다.

아울러 「GFS 1986」에 따른 국가채무 통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및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일반정부⁴⁵⁾ 기준으로 산출해야 하지만, 「GFS 1986」에 따른 국가채무(D1)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확정채무⁴⁶⁾만 포함하고 있어 포괄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재정통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생주의·복식부기 국가회계제도 도입과 함께 IMF의 「GFS 2001」을 기본적인 기준⁴⁷⁾으로 하는 ‘일반정부 부채(D2)’ 통계를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2012년 말부터 작성하고 있다.⁴⁸⁾

일반정부 부채(D2) 통계는 회계기준을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전환하여 미지급금, 예수금 등의 발생주의 부채 항목도 포함하며,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비영리공공기관의 부채도 함께 포함한다. 아울러 지방재정도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하는 등 중앙정부와 동일한 기준으로 개편되었다.

정부는 「GFS 2001」을 기본적인 기준으로 하는 일반정부 부채(D2) 통계와 함께 기존의 「GFS 1986」에 따른 국가채무(D1) 통계도 계속하여 작성하여 「국가재정운용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등에 활용하고 있으며, 「국가회계법」제14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인 재무제표상 부채는 적극적인 재정위험관리 판단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한편, 2000년대 후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각국의 재정적자 및 공공부문 부채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IMF·OECD 등 9개 국제기구는 통계작성 범위를 GFS 기준의 일반정부에 공기업을 추가한 ‘공공부문(Public Sector)’으로 확대한 부채 작성 지침인 「PSDS(Public Sector Debt Statistics)」를 발표하였다. 정부는 PSDS 등을 기준으로 한 공공부문 부채(D3)를 일반정부 부채(D2)와 함께 2011회계연도부터 적용하여, 2012년 말부터 작성하고 있다.

44) UN의 국민계정체계(SNA: System of National Accounts)에 기초하여 발생주의 기준으로 한국은행의 기초자료를 통해 OECD에서 작성한다.

45) IMF 기준(1986년)에 의한 경우 일반정부는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단위(Units)로 규정되어 있다.

46) IMF 기준(1986년)에 의한 경우, 보증채무는 이행청구를 받기 전까지는 국가채무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회보장제도의 암묵적 채무(준비금 부족액) 또한 국가채무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보증채무와 사회보장제도의 암묵적 부채는 정부가 그 규모를 인식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부기사항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47) 이와 함께 UN의 1993·2008 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 EU의 1995 ESA(European System of Accounts) 기준 및 주요국들의 사례 등을 보조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48)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가채무·부채 관리를 위해 산출하는 ‘일반정부 부채(D2)’와 국가재정 전반의 규모 파악을 위해 산출하는 「한국통합재정수지」의 ‘일반정부 부채’는 「GFS 2001」을 기본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나, 일부 세부항목(파생금융상품, 주식 및 기타지분 등)의 처리 기준을 달리하고 있어 서로 상이한 값이 도출된다.

[2020년도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비교]

구 분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
규모 (GDP 대비)		846.6조원 (43.8%)	945.1조원 (48.9%)	1,280.0조원 (66.2%)
산출근거		국가재정법(제91조) ('86 GFS)	국제기준 ('01 GFS, PSDS)	국제기준 (PSDS)
회계기준		현금주의	발생주의	발생주의
포 괄 범 위	중앙정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 관리기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 관리기금 ·공공기관 관리기금 ·비영리공공기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정부 관리기금 ·공공기관 관리기금 ·비영리공공기관
	지방·교육 자치단체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교육비특별회계 ·비영리공공기관
	비금융공기업	제외	제외	포함
부 채 항 목	국 채	포함	포함	포함
	차입금	포함	포함	포함
	공 채	제외	포함	포함
	총당부채 (공무원, 군인 연금 등)	제외	제외 (별도 부기)	제외 (별도 부기)
	기타발생주의 부채항목	제외	포함	포함
	연기금이 보유한 국공채	포함	제외	제외

주: 1. 기타 발생주의 부채항목에는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금 등이 포함

2. 규모는 2020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0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발생주의 회계에 따른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부채(D2)는 945.1조원(GDP 대비 48.9%)이며, 「국가재정법」 상의 현금주의에 따른 국가채무는 846.6조원(GDP 대비 43.8%)이다. 일반정부 부채와 비금융공기업을 포함한 공공기관의 부채를 국제지침에 따라 하나의 단위로 통합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280.0조원으로, 이는 우리나라 GDP의 66.2%에 이르는 규모이다.

[2020년 국가채무, 일반정부 부채, 공공부문 부채 세부 내역]

(단위: 조원)

분 류			국가채무 (D1)	일반정부 부채 (D2)	공공부문 부채 (D3)	
국 가 채 무 내 역	일반 정부	중앙 정부	회계·기금	819.2	857.7	857.7
			비영리공공기관(222개)	-	53.7	53.7
			내부거래	-	△13.0	△13.0
			소계	819.2	898.4	898.4
		지방 정부	지방자치단체(243개)	30.0	56.6	56.6
	지방교육자치단체(17개)		1.6	6.6	6.6	
	비영리공공기관(95개)		-	1.0	1.0	
	내부거래		-	△1.2	△1.2	
	소계		31.6	63.0	63.0	
	중앙-지방정부 간 내부거래			△4.2	△16.2	△16.2
	비금융 공기업	중앙(111개)	-	-	369.7	
		지방(56개)	-	-	46.2	
		내부거래	-	-	△7.8	
		소계	-	-	408.1	
	일반정부-비금융공기업 간 내부거래			-	-	△73.3
합 계 (GDP 대비 비율)			846.6 (43.8%)	945.1 (48.9%)	1,280.0 (66.2%)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제96호, 2022.1.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 여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으며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국가채무 규모를 안정적인 수준으로 관리(‘국가채무 수준관리’)하고, 재정자금의 상환·조달과 관련된 국가채무 재무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국가채무 재무위험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국가채무 수준관리

「국가재정법」 제86조는 정부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무를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국가재정법」 제91조제1항은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실적·계획 및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 증감 전망 등을 포함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같은 법 제7조제3항은 국회가 예산안 심의 시 동 계획을 참고할 수 있도록 국가채무관리계획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여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러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제4항에서도 국가결산보고서에 국가채무관리보고서를 첨부하도록 규정하여 결산 심의 시에도 국회가 국가채무 현황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적정 국가채무는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과 ‘최적성(optimality)’의 두 가지 기준에 따라 논의되고 있다. ‘국가채무의 지속가능성’은 정부지출 및 세입이 장기적으로 정부의 예산제약조건을 충족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이다. 즉, 일정한 수명을 가진 개인과는 달리 정부는 영속적인 주체로 간주되기 때문에 정부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서 국가채무 전부를 상환할 필요는 없으므로 국가채무가 상환 가능한 범위 안에 있거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일정 수준으로 복귀가능하다면 적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국가채무의 최적성’은 정부의 예산제약식을 만족한 상태에서 사회적 후생을 극대화하는 규모에 관한 문제이다. 즉, 국가채무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들 사이의 상충관계를 고려하여, 경제에 미치는 편익과 비용을 고려하여 최적 수준을 도출하게 된다. 다만, 사회적 후생은 현실의 자료에 의해 직접적으로 측정되는 개념이 아니기에, 이론적인 방법에 의해서만 분석 가능하다는 한계가 존재한다. 불안전 금융시장 하에서 국채발행의 증가는 가계의 유동성 제약을 완화하여 전체적인 사회 후생을 개선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존재하며, 국가채무를 늘려 정부지출을 증가시키면 단기적으로 총수요가 확대되어 GDP 성장률이 제고되고, 특히 민간의 총수요가 부족한 경제위기 시에는 적자재정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확대가 위기 극복에 기여하기도 한다. 반면, 국가채무의 증가는 이자율을 상승시켜 민간투자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자본축적을 저해하여 총생산을 감소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또한, 국가채무의 원리금을 상환하기 위해서는 결국 세율을 인상해야 하며 이에 따라 투자, 노동 공급 및 소비 여력 축소 등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게 된다. 따라서 국가채무의 최적 수준은 서로 상반되는 두 기대효과의 비교를 통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2020.9.) 결과를 바탕으로 선제적인 재정의 총량관리 및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을 법제화하겠다는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는 국가채무 비율을 GDP 대비 50% 후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정준칙(fiscal rules)

재정준칙(fiscal rules)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법적 구속력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재정운용 목표로 재정규율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이 도입·운영 중인 재정건전화 제도로, 목표변수에 따라 수입준칙, 지출준칙, 재정수지준칙, 채무준칙 등으로 구분된다.

[재정준칙 유형별 장단점]

	장점	단점	운용국가
수입준칙	· 초과수입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여 재정건전성에 기여	· 수입준칙 단독으로는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직접적 연관성이 부족	· 네덜란드
지출준칙	· 정부지출을 줄여 재정건전화에 기여 ·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하여 통제 가능성이 높은 편임	· 재정의 지속가능성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부족 · 재정건전화 시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조세지출 등을 통한 우회 위험이 존재	· 스웨덴 · 미국 · 폴란드 · 네덜란드
재정수지준칙	·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간단하고, 이해하기 쉽고, 투명하고, 모니터링이 용이하고, 대중들과 소통이 쉬움	· 경기안정화기능이 미약(경기순응적)하여 거시경제 안정성이 저해될 가능성 존재	· 스위스 · 독일 · 이탈리아
구조적 재정수지준칙	· 경기대응성을 유지하면서도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	· 잠재GDP, 수입 및 지출의 GDP 탄력성 등의 추정에 불확실성이 내재	· 오스트리아 · 포르투갈 · 스웨덴
채무준칙	· 재정건전성 제고에 효과적 · 단순하고 감독이 용이하여 통제 가능성도 높은 편임	· 경기안정화기능이 미약(경기순응적) · 최적의 부채 수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려움	· 독일 · 영국 · 스페인 · 체코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19~2050년 NABO 장기 재정전망」, 2018.12.

국가채무 재무위험 관리

국가채무 재무위험 관리는 재정자금의 조달·상환과 관련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채무 포트폴리오를 적정하게 구성하고 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가채무 관련 재무위험에는 이자율, 환율, 물가상승률 등 시장가격 변동이 자금 조달 비용에 미치는 변동성 위험인 시장위험(market risk)과 차환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높은 금리로 발행해야 하거나 차환이 불가능하게 될 위험인 차환위험(refinancing risk) 등이 있다.

국채는 1950년 건국국채가 발행된 이후 총 21종의 국채가 발행되었으나, 현재 발행되고 있는 국채는 국고채권, 제1종 국민주택채권, 외화표시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등으로 구분된다. 이 중 국고채는 각 회계 및 기금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하여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발행하고 있

는 국채로서, 원금과 이자가 고정된 일반적인 채권 형태의 국고채와 원금과 이자가 물가에 따라 변동하는 물가연동국고채가 있다. 일반적인 형태의 국고채에는 만기 2년물(2021년부터 신규 발행),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등 7가지 종류가 있다. 10년 만기 이상 장기 채의 발행 비중은 2010년 42.1%에서 2020년 60.4%로 증가하였다.

[만기물별 국고채 발행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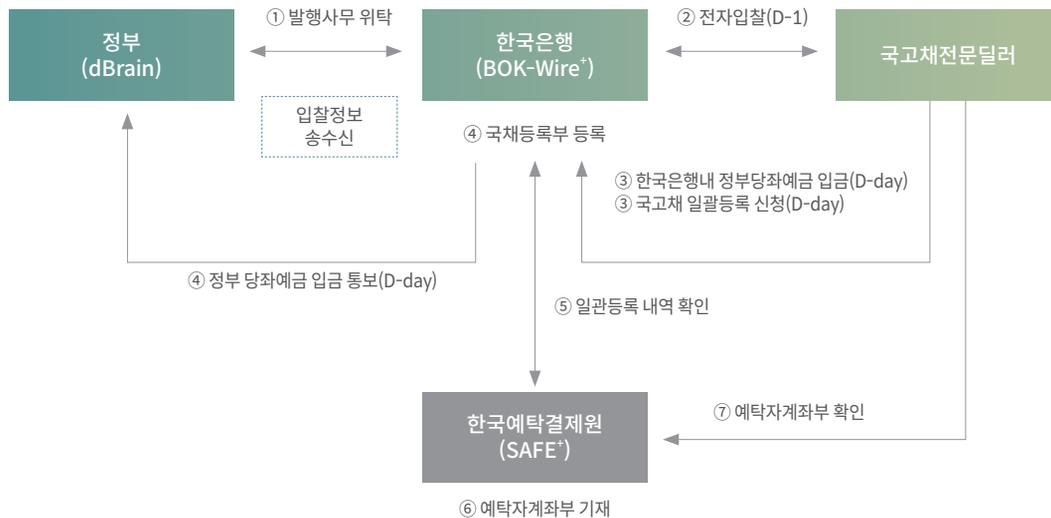
(단위: 조원)

구분	3년물	5년물	10년물	20년물	30년물	50년물	합계
2010	17.2 (22.2%)	27.7 (35.6%)	21.6 (27.8%)	11.2 (14.3%)	-	-	77.7 (100%)
2011	21.2 (26.0%)	25.2 (31.1%)	22.7 (27.9%)	12.2 (15.0%)	-	-	81.3 (100%)
2012	19.4 (24.3%)	23.5 (29.5%)	24.3 (30.5%)	10.8 (13.6%)	1.6 (2.1%)	-	79.7 (100%)
2013	23.1 (26.1%)	22.7 (25.7%)	24.8 (28.1%)	8.7 (9.9%)	9.0 (10.2%)	-	88.4 (100%)
2014	24.3 (24.9%)	25.5 (26.2%)	26.6 (27.3%)	10.8 (11.0%)	10.3 (10.6%)	-	97.5 (100%)
2015	26.7 (24.5%)	29.7 (27.2%)	29.7 (27.3%)	11.0 (10.0%)	12.1 (11.1%)	-	109.3 (100%)
2016	23.8 (23.6%)	24.5 (24.2%)	27.2 (26.9%)	10.1 (10.0%)	14.3 (14.2%)	1.1 (1.1%)	101.1 (100%)
2017	20.0 (19.9%)	23.9 (23.7%)	26.6 (26.4%)	10.0 (9.9%)	20.1 (19.9%)	0.2 (0.2%)	100.8 (100%)
2018	19.5 (20.0%)	19.9 (20.4%)	23.6 (24.2%)	9.8 (10.0%)	22.6 (23.2%)	2.1 (2.2%)	97.4 (100%)
2019	20.6 (20.3%)	18.5 (18.2%)	26.1 (25.7%)	7.7 (7.5%)	25.6 (25.2%)	3.2 (3.2%)	101.7 (100%)
2020	35.1 (20.1%)	34.0 (19.5%)	45.9 (26.3%)	13.0 (7.4%)	42.4 (24.3%)	4.1 (2.4%)	174.5 (1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021.5.

국고채의 발행, 상환, 교환, 원리금 지급 및 이와 관련된 공고, 입찰, 등록, 상장신청 등 국고채 발행사무는 「국채법」에 따라 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은행이 수행하고 있다. 국고채 발행사무는 한은금융결제망(BOK-Wire+)으로 이루어지며 국고채 응찰 및 낙찰 정보는 한은금융결제망과 정부의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연계를 통해 이루어지고, 발행등록 및 예탁 정보는 한은금융결제망과 한국예탁결제원 예탁결제시스템(SAFE+)간 연계를 통해 자동 송수신되고 있다.

[국고채 입찰 및 발행과정]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 2020」, 2021.3.

국고채 발행시장에서 국고채 입찰은 국고채전문딜러와 예비국고채전문딜러만을 대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⁴⁹⁾

발행시장에서 채권을 인수한 투자자는 채권의 만기일 전에 발행자인 국가에 원금 및 이자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만기 이전에 채권을 현금화하려는 투자자에게 채권의 환금성을 제공하고, 채권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채권의 담보가치 증대, 발행채권의 가격 결정 기능 등을 제고하여 국고채의 원활한 발행을 돕기 위해 국고채 유통시장을 활성화하려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국채시장은 한국거래소 시장(장내시장)과 장외시장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국거래소 시장은 경매시장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장외시장은 주로 브로커시장과 딜러시장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⁵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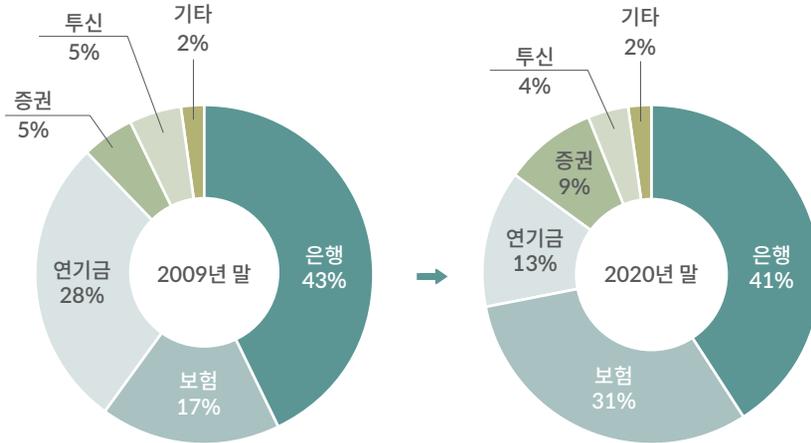
국채시장의 투자자는 국적에 따라 내국인과 외국인으로, 투자기관 유형에 따라서 금융기관(은행, 보험, 연기금 등)과 비금융기관(비금융회사, 개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2020년 말 기준으로

49) 최소 입찰 규모는 10억원이며 입찰단위는 10억원의 정수배이다. 발행시장에서 국고채를 인수하고자 하는 일반인(전문딜러 및 예비전문딜러를 제외한 개인, 금융기관, 기타 법인 등)은 미국, 일본 등과 달리 발행시장에 직접 참여할 수 없으며, 국고채전문딜러를 통해 위탁참여 할 수 있다. 일반인에게는 경쟁입찰을 통해 결정되는 최고낙찰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응찰 최저금액은 10만원이다.

50) 채권 유통시장에는 투자자가 직접 매매상대방을 찾는 직접탐색시장, 투자자가 브로커(대리인)에게 매매를 위임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브로커시장, 딜러가 직접 고객의 거래상대방이 되어 리스크를 부담하면서 자기 계정으로 채권거래를 하는 딜러시장, 투자자들이 단일 기구를 통하여 동시에 매도·매수 주문을 제출하는 경매시장 등이 있다.

은행(303.2조원, 41.0%)이 가장 많은 국고채를 보유하고 있으며, 주로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고 개인투자자의 비중은 낮은 상황이다.

[국고채 보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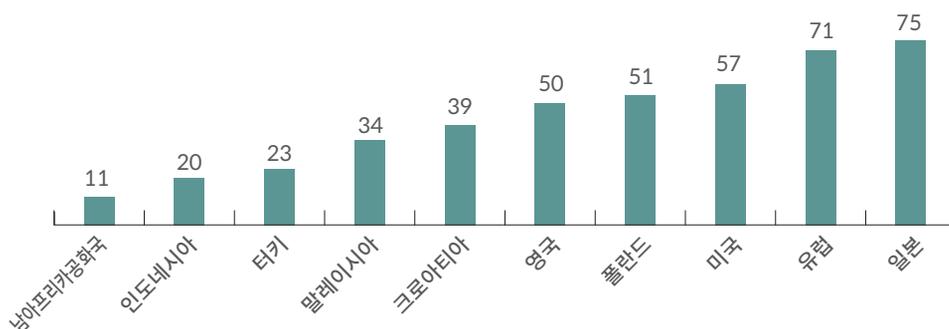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 2020」, 2021.3.

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중앙은행의 국채매입은 오늘날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주로 활용하는 공개시장조작을 통한 통화정책수단의 대표적인 예이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모두 확장적으로 운용하였다. 세계 각국이 경기진작을 위해 적극적 재정부양책을 추진하면서 유로지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의 국채발행이 크게 증가하였다. 또한 주요국 중앙은행은 실물 및 금융부문의 심각한 부진에 대응하여 정책금리를 제로 수준까지 인하하고 국채 등을 매입하여 시장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하는 양적 완화를 시행하였다.

2020년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재난지원금, 실업급여 강화 등을 비롯한 재정지출을 확대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감소된 재정수입과 확대된 재정지출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한 가운데 각국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도 확대되었다. 선진국 중앙은행은 정책금리를 더 이상 내릴 수 없는 상황에서 장기 국채를 사들여 유동성을 공급함으로써 장·단기 금리를 낮게 유지하려 하고 있다.

[2020년 2월~9월 각국별 전체 국채발행액 중 중앙은행의 국채 매입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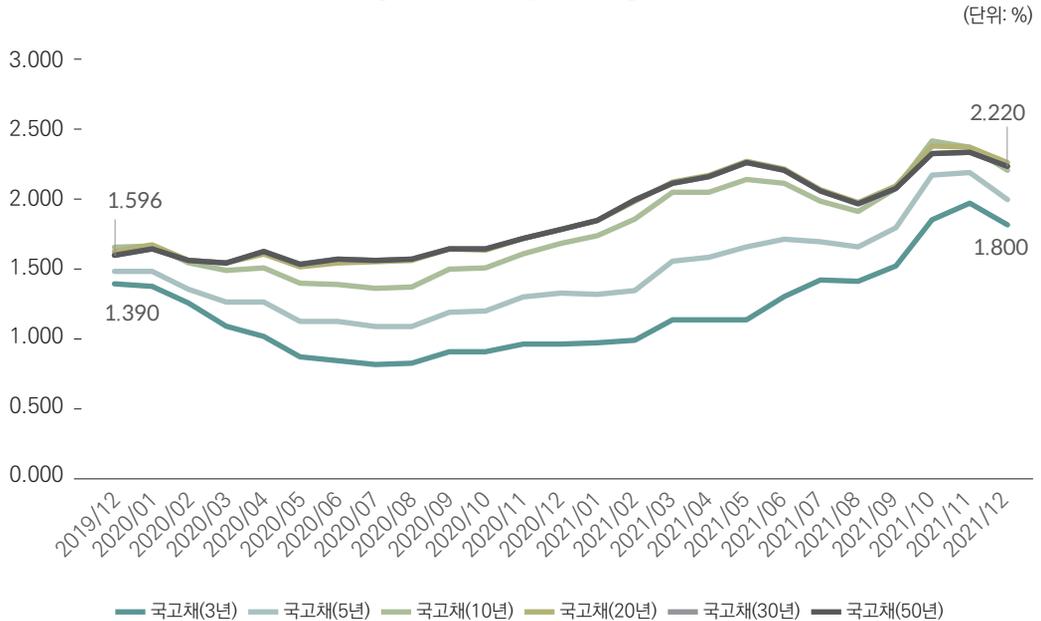
반면,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할 목적보다는 국채시장에서 금리가 급격히 변동하는 것을 완화하거나 유동성조절 수단의 하나인 RP매각용 국채를 확보하기 위해 매입하고 있다.⁵¹⁾ 한국은행이 국채 유통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하고 있는 규모는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이다.

중앙은행이 대규모로 국채를 매입할 경우 시장에 유동성 공급이 확대되어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중앙은행의 대규모 국채매입은 정부의 재정건전성과 대외신인도, 물가·이자율·환율 등의 거시경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필요가 있다.

51) 우리나라의 공개시장운영은 1969년 2월부터는 은행을 상대로 국공채매매가 가능해졌고, 1977년에는 매매 대상기관의 범위를 제2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매매방식도 단순매매와 환매조건부매매(RP매매)로 구분하였다.

국고채 유통금리를 보면 2019년 12월 3년물 국고채는 1.390%이며 50년물 국고채는 1.596%로 약 0.206%p의 차이를 보인다. 2021년 5월 3년물 국고채 유통금리는 1.134%, 50년물 국고채 유통금리는 2.249%로 장·단기물 유통금리 차이는 1.115%p로 확대되었으나, 이후 장·단기물의 스프레드는 감소하여 2021년 12월 3년물 국고채 유통금리는 1.800%, 50년물 국고채 유통금리는 2.220%로 나타났다.

[국고채 유통금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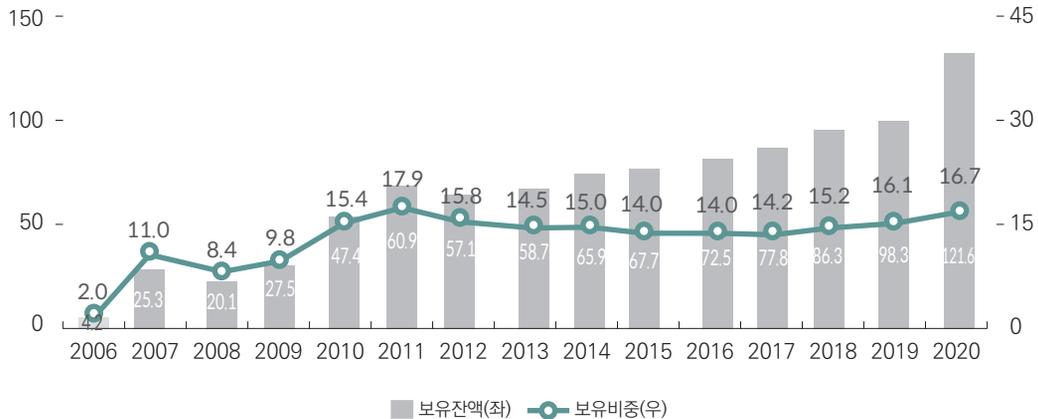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한편, 외국인이 보유하고 있는 국고채는 2020년 말 기준으로 121.6조원이며, 국고채 발행 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 비중은 2011년 17.9%에서 2015년 14.0%까지 하락했다가 2020년 16.7%로 다시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 추이]

(단위: 조원, %)



자료: 기획재정부, 「국채 2020」, 2021.3.

2020년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18.7조원이며 이 중 국고채 이자비용이 약 90%인 16.8조원을 차지하고 있다. 국가채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나, 최근 저금리⁵²⁾로 인해 국가채무 이자비용은 2015년 17.7조원에서 2020년 16.8조원으로 약간 감소하였다.

[연도별 국가채무·국고채 규모 및 이자비용 추이]

(단위: 조원)

구분	국가채무	국가채무 이자	국고채(누적)	국고채(발행)	국고채 이자
2014	533.2	19.4	438.3	97.5	17.3
2015	591.5	19.7	485.1	109.3	17.7
2016	626.9	19.7	516.9	101.1	17.6
2017	660.2	18.8	546.7	100.8	16.9
2018	680.5	18.7	567.0	97.4	16.9
2019	723.2	18.0	611.5	101.7	16.3
2020	846.6	18.7	726.8	174.5	16.8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첨부서류」, 2021.9.

52) 국고채 평균 조달금리: '14년 3.02% → '15년 2.15% → '16년 1.62% → '17년 2.10% → '18년 2.43% → '19년 1.68% → '20년 1.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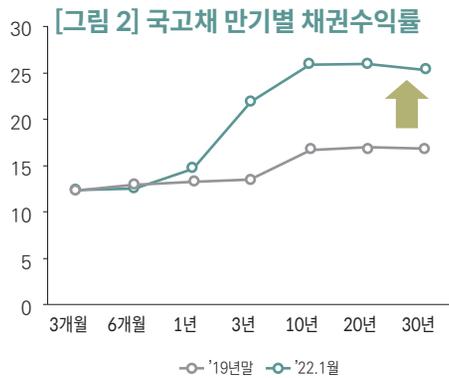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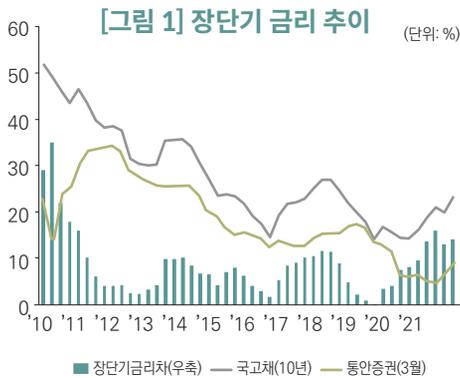
정부는 「2021~2025년 국가채무관리계획」에서 국고채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최근 국고채 발행 증가로 리스크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코로나19 위기극복 및 경제 회복, 인구구조 변화 등 구조적 요인에 대응한 재정소요에 따라 국고채 발행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연간 국고채 발행량은 2020년 174.5조원에서 2021년 186.3조원으로 예상된다. 또한, 국고채의 금융시장 영향력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국채시장의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대·내외 경제상황, 시장 수급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기별·연물별 국고채 발행량을 탄력 배분할 계획이며, 적정 수준의 조기상환을 통해 국고채 만기구조를 분산하여 미래 차환리스크를 축소할 계획이다.

장단기 국채금리스프레드의 경기변동 예측력 검토

우리나라 장기 금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등락을 보이는 가운데 외국인 투자자금 유입, 확장적 통화정책,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전반적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20년 4분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10년물 국고채 금리는 2009년 4분기 5.4% 수준에서 2020년 3분기 1.4%로 하락한 이후 상승세를 보이며 2021년 4분기 2.3% 기록하였다. 장기 국고채 금리는 경기여건이 개선될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통화긴축이 강화될 경우, 금융시장 내 채권수요가 공급을 초과할 경우 상승압력이 높아진다.

단기 금리는 기준금리 등락에 따라 변동성을 보이는 가운데 2012년 2분기 이후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냈으나 2021년 3분기 이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장단기 금리 변화에 따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도 등락 양상을 보이고 있다. 국고채(10년)과 통안채(3월)간 금리스프레드는 2012년~2020년 0.0~1.2%p수준에서 등락을 보였으나 2021년 들어 확대되며 1.3~1.6%p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코로나19 확산 전후 국고채 만기별 채권 수익률을 분석한 결과 2019년말 대비 장기금리의 상승으로 2022년 1월말 기준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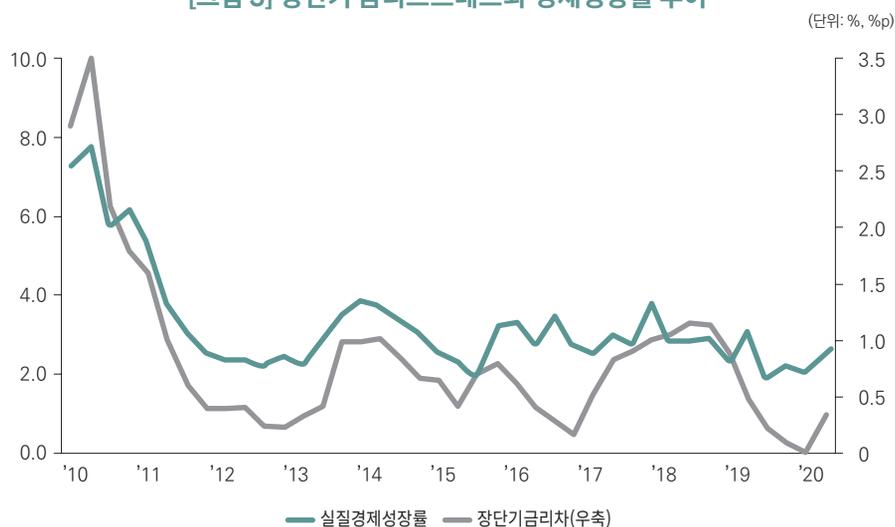


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는 국고채(10년)금리-통안채(3월) 금리 자료: FnGuide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경기변동을 예측할 수 있는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찬반의견이 있다. 이하에서는 장단기 금리스프레드를 통해 경기변동에 대한 예측이 가능한지 검토하였다. 경기변동은 경제성장률 방향성의 변화로 볼 수 있으므로,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와 경제성장률의 추이를 살펴보았다.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와 경제성장률 추이를 [그림 3]에서 확인한 결과 시점별 차이는 존재하나 전반적으로 실질경제성장률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간에 유사한 패턴이 나타났다. 또한 실제 2010년 1분기부터 2019년 4분기까지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와 경제성장률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상관계수가 0.92로 나타났다.⁵³⁾ 이는 경제성장률과 장단기 금리스프레드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며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확대(축소)될 때 경제성장률이 상승(하락)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통해 장단기 금리스프레드가 경기변동의 방향성을 예측하는 선행지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 장단기 금리스프레드와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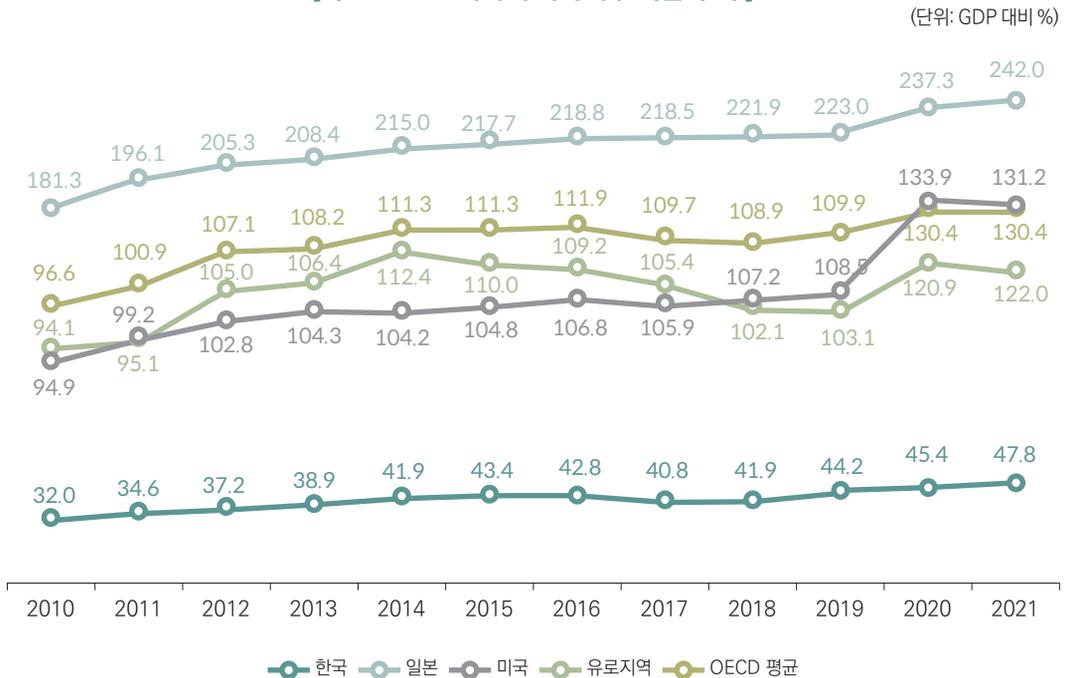
53) 두 변수간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지표로 값이 양(+)이면 두변수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의미이며 1이면 두 변수의 움직임이 완전히 동일하다는 뜻이다. 지표의 값이 음(-)면 두변수의 움직임이 역방향임을 의미하며 상관계수의 -1이면 움직임이 완전히 역방향임을 의미한다.

5. 국가채무 국제비교

국가채무 수준 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일반정부 총금융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Financial Liabilities)는 GDP 대비 47.8%로 예상되며, 이는 일본(242.0%), 미국(131.2%) 등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주요 OECD 국가의 국가채무 비율 추이]



주: 2020~2021년은 OECD 전망치 기준임

자료: OECD, Economic Outlook, No.110, 2021.12.

국가채무 증가 속도 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주요 회원국의 2010~2020년간 일반정부 총부채(General Government Gross Debt)의 증가율을 보면, 우리나라는 7.5% 수준으로 다른 회원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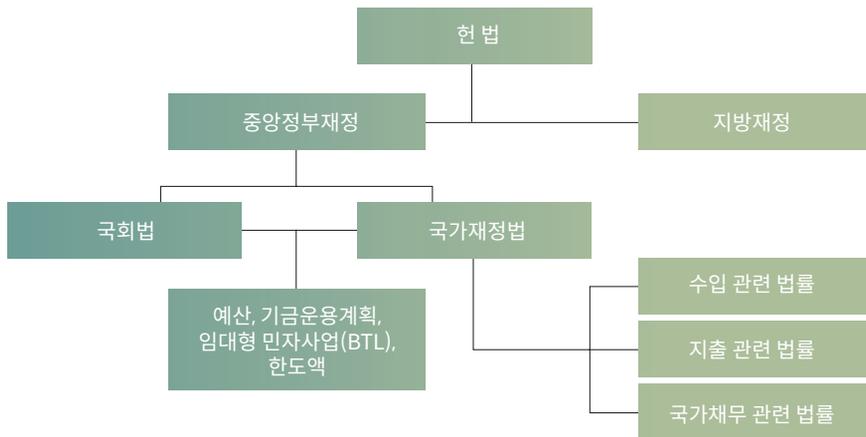
제5장 재정과정 및 재정제도

제1절 재정과정의 이해

1. 재정과정 관련 법률

우리나라 재정과정 관련 법률의 체계는 최상위의 「대한민국헌법」 아래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을 관장하는 「국가재정법」과 국회의 예·결산 심의 과정 등을 관장하는 「국회법」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그 외에도 재정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다수의 수입 관련 법률, 지출 관련 법률 및 국가채무 관련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

[주요 재정법률 체계]



「대한민국헌법」과 재정과정

「대한민국헌법」은 국가의 재정기능에 대한 원칙적인 사항으로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과 국회의 통제 하에 국가의 재정활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재정민주주의를 선언하고,

조세법률주의·예산의결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회의 예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확정권(제54조, 제56조), 국회의 예산안 심의 시 예산 증액 및 새 비목 설치에 관한 사항(제57조), 조세법률주의(제59조), 감사원의 결산 검사(제99조) 등의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대한민국헌법」의 재정과정 관련 조항】

조 문	내 용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예산안 제출·심의·확정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준예산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계속비
	② 예비비는 총액으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의 지출은 차기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예비비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57조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예산 증액 및 새비목 설치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국채 모집 등의 의결권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조세법률주의
제99조	감사원은 세입·세출의 결산을 매년 검사하여 대통령과 차년도국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원의 세입·세출 결산 검사

자료: 「대한민국헌법」

「국가재정법」과 재정과정

「국가재정법」은 재정운영의 일반원칙, 예산 및 기금의 편성·집행·결산·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의 기본법이다. 이 법은 2006년 10월 4일 법률 제 8050호로 제정되어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고, 2021년 12월 31일까지 총 76차례 개정되었다.

「국가재정법」 제1장은 재정운영의 일반원칙에 관하여, 제2장은 예산의 편성·집행에 관하여, 제3장은 결산의 원칙·절차에 관하여, 제4장은 기금관리·운용의 원칙과 기금의 편성·집행에 관하

여, 제4장의2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절차에 관하여, 제5장은 재정건전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관하여, 제6장은 재정집행 관리 등에 관하여, 제7장은 벌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의 구성]

구분		내용
제1장 총칙	§1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3) • 회계구분(§4) • 기금의 설치(§5) •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7) • 성과중심의 재정운용(§8)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16 ~ §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총계주의(§17) • 예비비(§22), 계속비(§23), 명시이월비(§24), 국고채무부담행위(§25) • 성인지예산서(§26)
	제2절 예산안의 편성 §28 ~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기사업계획서(§28) • 예산안의 국회제출(§33) • 총액계상(§37) • 예비타당성조사(§38·§38의2·§38의3)
	제3절 예산의 집행 §42 ~ §5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45) • 예산의 전용(§46) 및 이용·이체(§47) • 세출예산의 이월(§48) • 총사업비의 관리(§50) • 예비비(§51·§52)
제3장 결산	§56 ~ §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결산서의 작성(§57) •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59~§61)
제4장 기금	§62 ~ §8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66) 및 국회제출(§68) • 기금운용계획의 변경(§70) • 기금 결산(§73) • 기금운용실태 조사·평가(§82)
제4장2 성과관리	§85의2 ~ §85의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85의3) • 재정사업 성과평가(§85의8)
제5장 재정건전화	§86 ~ §9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개정(§87) •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89) •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90) • 국가채무의 관리(§91) •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92)
제6장 보칙	§93 ~ §1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정집행의 관리(§97) • 재정업무의 정보화(§97의2)
제7장 벌칙	§102	기금운용에서의 직권남용 처벌(§102)
별표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		별표2. 기금설치 근거법률
		별표3. 금융성 기금

자료: 「국가재정법」

「국회법」과 재정과정

「국회법」은 재정에 대한 심의주체, 심의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이나 결산은 법률안과 같은 의안의 일종으로, 「국회법」에서는 예산안·결산의 심의 절차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일반 의안의 심의절차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특수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관련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의 재정과정 관련 조항】

구분	조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설치	§45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	§79의2
조세특례 관련 법률안에 대한 조세특례평가 자료의 제출	§79의3
예산 관련 법률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의 협의	§83의2
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84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	§84의2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에 대한 공청회	§84의3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의 회부 등	§84의4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85의3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	§106의2⑩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	§127의2
결산의 심의기한	§128의2

자료: 「국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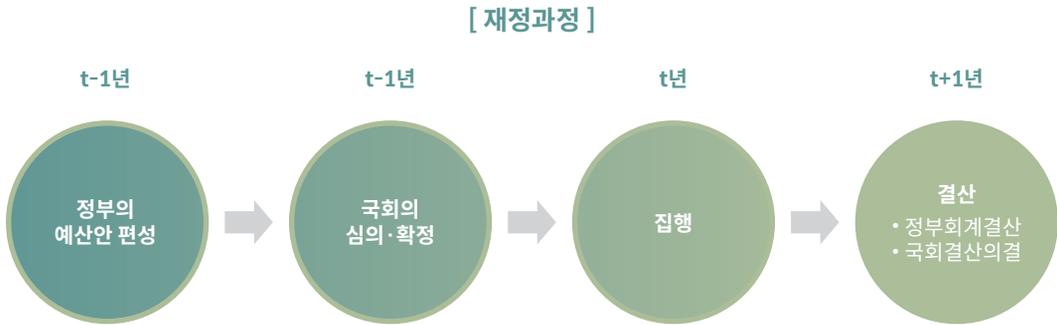
그 밖의 재정과정 관련 법률

그 외의 재정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운영되고 있는 법률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수입 관련 법률을 살펴보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등 각종 세법과 「부담금관리기본법」, 「국고금 관리법」, 「국유재산법」 등 세외수입 관련 법률이 있다. 또한, 지출 관련 법률로 예산의 편성 및 집행과 관련하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비롯하여 각종 특별회계 및 기금 관련 법률이 있으며, 회계·계약·감사와 관련하여 「국가회계법」, 「감사원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그 외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등 각종 사회안전망을 규정하는 법률들이 있으며, 마지막으로 국가채무와 관련하여 「국채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적자금상환기금법」 등의 법률이 운영되고 있다.

2. 재정과정 개관

재정과정은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과정은 ① 정부의 예산안 편성, ②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③ 정부의 집행으로 이루어지고, 결산과정은 ① 정부의 결산보고서 작성, ② 감사원의 결산 검사, ③ 국회의 결산심사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재정과정을 재정절차라고도 한다.

우리나라의 예산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한 회계연도(1년) 동안만 효력을 갖는 것이 원칙이지만, 재정과정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서 해당 회계연도 전후의 회계연도에 걸쳐 3회계연도 내에서 진행된다. 예를 들어 2022년도 예산은 2021년에 예산안의 편성·심의가 이루어지고, 2022년에 예산의 집행, 2023년에 결산이 진행된다. 기금의 경우에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확정 및 결산 등은 「국가재정법」과 「국가회계법」 등의 규정에 따라 예산과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이란,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해야 한다는 원칙이다(「국가재정법」 제3조). 즉, 그 연도에 지출하여야 할 경비는 그 연도 내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조달되어야 하고, 그 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가 다른 연도에 지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국가예산은 민간부문의 예산과 달리 집행할 경비를 먼저 산출하고 이에 따라 수입을 결정하는 시스템이 적용되기 때문에 수입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지출을 결정하는 등 방만한 예산운용을 차단하려는 목적과 예산운용의 성과나 실적을 보다 용이하게 파악하기 위한 목적에서 요구되는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복잡 방대한 예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이 원칙을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예산운용의 신속성이나 탄력성을 심하게 제약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에서는 명시이월비(제24조), 세출예산의 이월(제48조), 세계잉여금의 다음연도 이입(제90조)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예산과정과 결산과정의 주요 절차와 시기를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우리나라의 예산·결산 과정]

구분	과 정	내 용	법정시한	근거규정
예 산 과 정	중기사업 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주체)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 제출	매년 1월 31일	「국가재정법」 §28, §66①
	예산안편성 지침 통보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연도의 예산안편성 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각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	매년 3월 31일	「국가재정법」 §29①, §66②
	예산요구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기금관리주체)은 예산안편성지침(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국고채무부담행위요구서(기금운용계획안)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	매년 5월 31일	「국가재정법」 §31①, §66⑤
	정부예산안 편성	기획재정부는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	「국가재정법」 §32, §66⑥
	예산안 국회제출	정부는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3)까지 국회에 제출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매년 9월 3일)	「국가재정법」 §33, §68①
	예산안 본회의 보고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	-	「국회법」§84①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장이 심사기한을 지정 가능	「국회법」 §84①, ②, 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존중하여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	-	「국회법」 §84③, ⑤
본회의 심의·확정	본회의 부의 → 예결위원장 심사보고 → 토론 → 표결·확정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매년 12월 2일)	「대한민국헌법」 §54② 「국회법」 §84의2①	

구분	과정	내용	법정시한	근거규정
결산과정	출납정리 기한	출납정리기한(해당 회계연도 말일)이 지나면 각급 기관이 소관장부를 정리·마감한 후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보고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2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직전 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	다음연도 2월 10일	「국고금관리법」 §4의2①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94③
	중앙관서 결산보고서 작성 및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다음연도 2월 말일	「국가회계법」 §13② 「국가재정법」 §58①, §73
결산과정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	기획재정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중앙관서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	다음연도 4월 10일	「국가회계법」 §13③ 「국가재정법」 §59
	감사원 결산 검사	감사원은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	다음연도 5월 20일	「대한민국헌법」 §99 「국가재정법」 §60
	국가결산 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 및 첨부서류를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	다음연도 5월 31일	「국가재정법」 §6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정부가 결산을 국회에 제출하면 국회는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 의장은 각 상임위원회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	의장이 심사기간을 지정 가능	「국회법」 §84①, ②, 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내용을 참고하여 결산을 종합심사하고 본회의에 상정	-	「국회법」 §84②, ③, ⑤
	본회의 심의·의결	결산은 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며,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의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	정기회 개회 전	「국회법」 §84②, ③ §128의2

3. 예산의 종류

「대한민국헌법」 제54조⁵⁴⁾에 따르면 예산안은 정부가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며,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하여 확정한다. 예산은 정부가 국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시기와 국회의 심의·확정 여부에 따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예산의 종류]

구 분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준예산
		수정예산		
관련법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	「국가재정법」 제35조	「대한민국헌법」 제56조 「국가재정법」 제89조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3항
편성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심의·확정	국회	국회	국회	-
국회 제출시기	회계연도 120일전	회계연도예산 확정전	「국가재정법」에 규정된 조건에 해당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
특징	국회의 심의·확정시 '본예산'이 됨		'본예산'과 대비하여 '추경예산'이라 함	회계연도 개시일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할 경우 정부가 집행

주: 1.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1항은 공통적으로 적용됨

2.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도 제출 가능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본예산

「대한민국헌법」 제54조제2항에 따르면 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⁵⁵⁾는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매년 9월 3일 이전에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

54)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① 국회는 국가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한다.

② 정부는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90일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한다.

55)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쳐 심의하며 본회의를 개최하여 확정한다. 일반적으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면 이를 본예산이라 한다.

수정예산안

「국가재정법」 제35조⁵⁶⁾에 따르면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수정예산안에 관하여 「대한민국헌법」에는 별도의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재정법」에 수정예산안의 근거를 둔 것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⁵⁷⁾에 국회의 심의 과정에서 수정하는 것보다는 정부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즉,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정부의 동의를 받아 지출예산 증액 등의 수정을 할 수 있지만 여러 부처에서 추진할 다수의 사업에 관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수정의 규모가 큰 경우에는 예산안을 편성한 정부가 종합적으로 조정하여 재편성하는 것이 국회 심의의 편의성 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⁵⁸⁾ 수정예산안은 1970년도 예산안과 1981년도 예산안,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출되었으며, 이 중 2009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당시 미국 금융위기에 따른 국제금융시장 불안 등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하여 제출되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도 제출이 가능한데, 1980년 10월 30일 한국중공업 정상가동 지원, 한국은행 장기차입금으로 인한 세입증액 등을 위하여 198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1,000억원)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제출된 사례가 있다.

56) 「국가재정법」

제35조(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57) 수정예산안의 편성 요건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비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변경하는 것이지만, 수정예산안의 경우에는 국회에서 확정하기 전에 예산안의 일부를 수정하는 것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58) 국회예산정책처, 「2009년도 수정예산안 분석」, 2008. 11.

[수정예산안 규모 및 수정 내역]

(단위: 억원)

구 분	제출일		예산안 규모			수정내역
	당초 예산안	수정 예산안	당초(A)	수정(B)	수정규모 (B-A)	
1970년도 예산안	'69.9.1	'69.11.19	6,553	6,603	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 재정보전(28.9) • 재해대책비(5.9) • 국회의사당 신축비(6.5) • 의무교육 부족시설 확충(5.8) • 국세청 정원 증가 등 기타(2.9)
1981년도 예산안	'80.10.28	'80.11.12	94,079	97,292	3,21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재해대책비(1,425) • 중화학공업지원(1,000) • 토지개발공사 출자(550) • 통일주체국민회의 폐지(△24) • 전투경찰 증원 등 기타(262)
2009년도 예산안	'08.10.2	'08.11.7	273.8조원	283.8조원	10.0조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경제활성화(4.6조원) • 중소기업·자영업자·농어업인 지원 (3.4조원) • 저소득층 복지지원 확대(1.0조원) • 청년 등 실업대책(0.3조원) • 지방 재정 지원 확대(1.1조원) • 유가·환율 조정 등(△0.4조원)

주: 1. 1970년도 및 1981년도 예산안은 세출예산 순계 기준이며, 2009년도 예산안은 총지출 기준
 2. 1981년도 예산안은 제8차 헌법에 따라 1980년 10월 2일 제출되었으나, 이를 심의하던 제10대 국회가 10월 28일 해산되고 국가보위입법 회의로 대체되면서 같은 날 다시 제출
 자료: 각 연도별 「수정예산안」

추가경정예산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6조⁵⁹⁾에 따라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다.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세입예산의 경정 또는 세출예산의 비목을 신설하거나 기존 비목의 금액을 변경할 수 있고 예산총칙 등도 수정할 수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국회가 심의·확정한 예산에 변경을 가하기 위하여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인 반면, 수정예산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을 국회가 심의하는 도중에 변경하기 위한 예산안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59) 「대한민국헌법」

제56조 정부는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89조제1항⁶⁰⁾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는 경우를 ①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② 경기침체·대량실업·남북관계의 변화·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③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사전에 방지하려는 취지이다.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절차는 기본적으로 본예산안과 동일하다. 그러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의 작성 등 일부 절차가 생략되며, 국회에 제출할 때에도 예산안의 첨부서류 일부 생략할 수 있다.⁶¹⁾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서 「국가재정법」에 명시된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모든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제출시기가 지연되어 예산 배정과 집행의 적시성이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할 경우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하여야 하며,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⁶²⁾

정부는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으며, 2020년에는 1961년 이후 처음으로 총 4회의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다.

60)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61) 「국가재정법」

제36조(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62) 「국가재정법」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②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및 편성 내역]

(단위: 조원)

연도 (회수)	제출일 의결일	추경규모			편성 내역	재원	
		정부안 (A)	국회확정 (B)	(B-A)			
2016 1회	7.26. 9.2.	11.0	10.9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조조정 지원(1.9) • 일자리 창출 및 민생안정(1.9) • 지역경제 활성화(2.3) • 지방 재정 보강(3.7) • 국가채무 상환(1.2) 	세수실적 개선	9.8
						내국세	9.5
						교통세	0.7
						관세	△0.4
						세계잉여금	1.2
2017 1회	6.7. 7.22.	11.2	10.2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자리 창출(4.2) • 일자리 여건 개선(1.2) •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2.3) • 지방 재정 보강(3.5) 	예상 초과세입	8.8
						세계잉여금	1.1
						기금 여유자금	1.3
2018 1회	4.6. 5.21.	3.9	3.8	△0.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년 일자리 대책(2.9) • 구조조정지역·업종 대책(1.0) 	세계잉여금	2.0
						한은잉여금	0.6
						기금 여유자금	1.3
2019 1회	4.25 8.2.	6.7	5.8	△0.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세먼지 대응 등 국민안전(2.2) • 경기회복·민생경제 지원(4.5) 	세계잉여금	0.06
						한은잉여금	0.3
						특별회계 재원	0.4
						기금 재원	2.3
						국채발행	3.6
2020 1회	3.4. 3.17.	8.5 (11.7)	10.9 (11.7)	2.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염병 대응체계 강화 등(2.3) •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지원(2.4) • 민생·고용안정 지원(3.0) • 지역경제 회복지원(0.8) 	한은잉여금	0.7
						기금 여유자금	0.3
						기금차입금	0.4
						국채발행	10.3
						세입결손	△3.2
2회	4.16. 4.30.	4.0	8.0	4.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사업(7.6) • 지출구조조정(△3.6) 	기금 여유자금	1.2
						외평기금자산매입 축소	2.8
3회	6.3. 7.3.	23.9 (35.3)	23.7 (35.1)	△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지원 패키지(5.0) • 고용·사회안전망 확충(9.4) • 기타 경기보강 대책(11.3) • 지출구조조정(△9.2) 	기금 재원	2.3
						국채발행	23.8
						세입결손	△11.4
4회	9.11. 9.22.	7.8	7.8	△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상공인 등 긴급 피해지원(3.8) • 긴급 고용안정 패키지(1.4) • 저소득층 긴급 생계지원(0.4) • 긴급돌봄 지원 등(2.2) 	기금차입금	0.3
						국채발행	7.5

연도 (회수)	제출일 의결일	추경규모			편성 내역	재원	
		정부안 (A)	국회확정 (B)	(B-A)			
2021 1회	3.4. 3.25.	15.0	14.9	△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6.9) •긴급 고용대책(2.8)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1.0) •방역대책(4.1) 	국채발행	9.9
						세계잉여금	2.6
						한은잉여금	0.8
						기금재원 활용	1.7
2회	7.2. 7.24.	33.0	34.9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코로나19 피해지원(15.7) •백신·방역 보강(4.4) •고용 및 민생안정 지원(2.6) •지역경제 활성화(12.6) 	초과세수	31.5
						세계잉여금	1.7
						기금재원 활용 등	1.8
2022 1회	1.24. 2.21	14.0	16.9	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상공인(13.5) •백신·방역 보강(2.8) •예비비 보강(0.6) 	국채발행 (초과세수) ¹⁾	11.3
						공자기금 여유자금	2.7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및 기금 여유자금	2.9

주: 1) 초과세수는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승인 이후 활용가능하므로 우선적으로 국채발행을 통해 2022년 제1회추경 편성 재원을 확보

1. 추경규모는 총지출 기준 직전예산보다 증가된 규모이며,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포함

2. 괄호 안의 추경 규모는 세입감액 경정(세입결손)을 포함한 추경규모를 의미

자료: 각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서」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준예산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심의가 완료되지 못하여 회계연도 개시일(1월 1일)까지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정부는 준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 준예산은 「대한민국헌법」 제54조 제3항⁶³⁾에 규정되어 있으며, ①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②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③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에 해당하는 경비에 한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960년 준예산 규정 도입 이후 현재까지 준예산이 실제 집행된 사례는 없다.

63) 「대한민국헌법」

제54조 ③ 새로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정부는 국회에서 예산안이 의결될 때까지 다음의 목적을 위한 경비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다.

1.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
2. 법률상 지출의무의 이행
3.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

제2절 예산안 편성과 재정제도

1. 정부의 예산안 편성

「대한민국헌법」 제54조는 예산안의 편성권을 정부에,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제출한 예산요구서를 기초로 기획재정부장관이 총괄하여 수행한다.

정부의 구체적인 예산안 편성과정은 「국가재정법」 제2장제2절 ‘예산안의 편성(「국가재정법」 제28조부터 제41조)’에 규정되어 있다. 이들 규정 중 예산안 편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요 사항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제28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의 예산안편성지침 통보(제29조),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의 예산요구서 제출(제31조), ④ 기획재정부장관의 정부예산안 편성(제32조) 및 국회 제출(제33조)이다.⁶⁴⁾

편성절차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과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을 위한 분야별·부처별 지출한도 설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국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보고된다. 예산안 편성지침에는 중기사업계획서 등을 토대로 예산편성의 기본방향, 재정운용방식, 분야별 재원배분방향 등이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 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64) 기금의 경우 기금관리주체의 중기사업계획서 제출(제66조제1항),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통보(제66조제2항),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제66조제5항), 기획재정부장관의 기금운용계획안 마련(제66조제6항) 및 국회 제출(제68조제1항)이 「국가재정법」에 예산안과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다.

예산요구서 작성·제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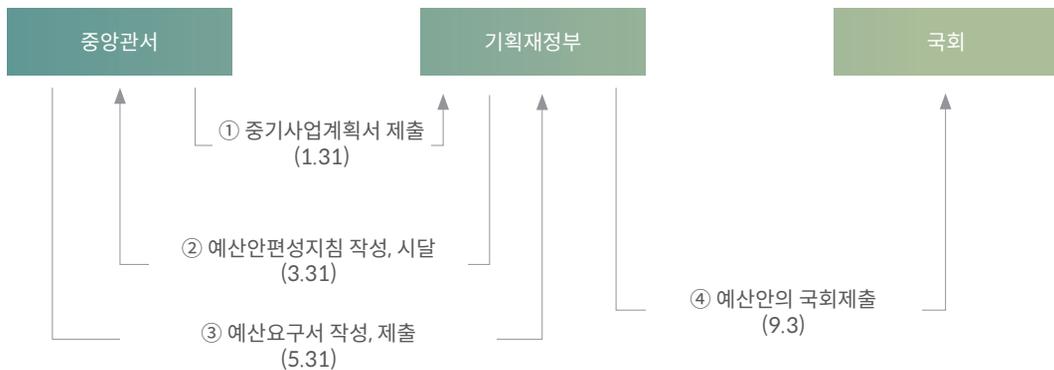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안 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요구서에는 ①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및 각 목명세서, ② 국고채무부담행위설명서, ③ 계속비설명서, ④ 세입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내용에 관한 서류, ⑤ 사업계획서, ⑥ 직종별 정원표 및 전년도 정원과의 대비표, ⑦ 국유재산의 관리운용 보고서 및 전년도와의 대비표, ⑧ 성인지 예산서 등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출된 예산요구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의 예산안 편성은 사실상 1월부터 시작해 국회에 제출하는 9월 3일까지 약 8개월여 동안 이루어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2022년도 예산안 편성과정]



예산안 편성지침

기획재정부는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예산안 편성 및 결산을 총괄한다. 이러한 사무의 일환으로 기획재정부는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9조 및 제6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다음 연도의 예산안 편성지침을, 기금관리주체에게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안 편성지침은 보통 해당연도 예산안 편성방향, 세입 및 세출예산안 작성시 유의사항,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등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전방위적 경제활력 제고, 미래 혁신투자, 민생·포용기반 구축, 국민 안전과 삶의 질 등 4대 투자중점에 대한 적극적 재정운용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총량관리 및 재정혁신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

예산의 총액배분·자율편성(top-down) 제도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하여 부처별 지출한도를 먼저 정하고, 각 부처가 지출한도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다.

과거 부처요구·중앙편성(bottom-up) 제도는 예산당국이 주도하여 단년도 재정운영 및 개별사업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방식이었다. 이에 비해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는 중기적 관점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거시적·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 예산편성에 관한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5년도 예산안 편성 시부터 도입되었다. 「국가재정법」 제29조제2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그런데 총액배분·자율편성 제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획재정부에서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에 대해 세세한 사항까지 재검토하고 있어 부처의 자율성 제고에 한계가 있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보고하지 않아 지출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등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다.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국가재정법」 제6조제1항은 '독립기관'으로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정하고 있다. 위 기관들은 「대한민국헌법」 제3장(국회), 제5장(법원), 제6장(헌법재판소), 제7장(선거관리)에서 각각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헌법기관들로서 그 독립성 보장을 위해 예산의 편성 및 운용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율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국가재정법」 제40조는 정부가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당해 기관장의 의견을 최

대한 존중해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미리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협의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구하여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독립기관의 경우에도 국회·법원 등의 조직 및 기능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과목의 적용, 예산안 편성 지침의 제약 등으로 인해 예산안 편성의 자율성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집행에 있어서도 정부의 예산집행지침, 예산배정시기 조정 등으로 인해 자율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예산의 구성

「국가재정법」 제19조⁶⁵⁾는 예산의 형식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명시이월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 등 5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예산의 구성]

구분	내용
예산총칙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 규정
세입세출예산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 세부사항
계속비	완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여러 연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
명시이월비	경비의 성격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비
국고채무부담행위	당해연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총칙

예산총칙은 예산전반에 관한 총괄적인 것으로 「국가재정법」 제20조⁶⁶⁾에 의해 규정된다. 이에

65)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66) 「국가재정법」

제20조(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계속비·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 금융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따라 각 회계별 세입세출예산 총액, 국채 또는 차입금의 한도액 및 재정증권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전체 세입세출예산의 종합적인 모습과 집행과정에서 준수되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예산총칙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서만 효력을 지닌다.

세입세출예산

세입세출예산은 「국가재정법」 제21조에 규정되며, 회계연도 내에 있어서의 모든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세부사항을 말한다. 세입세출예산은 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이 중 세입은 조세 등을 통해 충당하기 때문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입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수입을 실질적으로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예측한다는 점이 그 특징이다. 반면, 세출은 정해진 목적 이외에 지출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정해진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없고, 지출의 시기도 한정되어 있어 예산의 법적 의미는 주로 세출의 규율에 있다.

[세입 및 세출]

세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은 일차적으로 조세 등의 세입으로 충당하며, 세입예산은 국세수입과 세외수입으로 분류됨 • 세입이 지출 경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차입금이나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충당
세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재원으로 함. 부득이한 경우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 • 지출의 목적, 금액, 시기 등으로 정부를 구속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하며, 중앙정부의 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기업특별회계, 15개의 기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세입예산은 내용에 따라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⁶⁷⁾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67) 「국가재정법」

제21조(세입세출예산의 구분)

- ① 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 ② 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③ 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관·항으로 구분한다.

계속비

계속비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 완성하기까지 오랜 기간을 요하는 경우, 소요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는 경비를 말한다.

「국가재정법」 제3조⁶⁸⁾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하여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그러나 계속비는 이러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이며, 이에 대해 「대한민국헌법」⁶⁹⁾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제23조⁷⁰⁾는 이에 대한 절차 규정으로 계속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계속비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후 5년 내에서는 허용된 경비총액 범위 내에서 지출할 수 있으며,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의 여건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러한 지출연한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다.

68) 「국가재정법」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69)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0)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장기계속계약

정부가 민간과의 계약을 통해 다회계년도 사업을 수행하는 방식으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에 따라 ① 계속비계약과 ② 장기계속계약이 있다.

[계속비계약과 장기계속계약 비교]

구분	계속비계약	장기계속계약
근거 규정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1항 ⁷¹⁾ 「국가재정법」 제23조 ⁷²⁾	「국가계약법」 제21조제2항 ⁷³⁾
대상사업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
사업내용	확정	
사업기간의 제한	5년 (단 국회의결로 연장 가능)	제한 없음
총예산확보	국회의결로 사업비 총액	국회의결로 당해연도 사업비
입찰	총공사금액	총공사금액
계약체결 방법	총공사금액으로 계약체결 (연부액 부기)	각 회계연도에 예산범위 안에서 계약체결 (총공사금액 부기)

자료: 예산정책처

정부는 장기계속계약을 계속비계약에 비해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는 2022년도에 다수의 다년도 사업 예산이 편성·집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비 사업이 편성되지 않은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계속비계약 사업의 경우 당해연도 예산총칙에 사업비 총액 및 연부액이 별도로 표시되는 등 국회에서 사전통제가 가능한 정보가 제공되어 있는 반면,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세출예산안에 당해연도 예산만 반영되어 있어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등에 대한 국회의 사전통제가 충분히 이루어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71) 「대한민국헌법」 제55조 ①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지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정부는 연한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72) 「국가재정법」 제23조(계속비) ①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73) 「국가계약법」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가스·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도 계속비와 마찬가지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이며, 「국가재정법」 제24조제1항⁷⁴⁾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와 항목, 금액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명시이월비는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사업에서만 활용되었고, 2015년부터는 편성되지 않고 있다.

이월에는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있으며, 명시이월은 당초예산에서 미리 명시하여 국회의 의결을 얻는데 비하여 사고이월은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명시이월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비로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함
사고이월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예산의 이월은 다년도에 걸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점에서 계속비와 유사하나, 계속비는 예산 편성 시 몇 년에 걸쳐 예산지출을 예정하고 있는 반면, 이월제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집행을 계획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계속비는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을 완성할 때까지 계속 이월할 수 있으나, 이월은 다음 회계연도의 집행만을 허용하고 있다.⁷⁵⁾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재정법」 제25조⁷⁶⁾에 따라 차년도 이후의 지출을 전제로 해당연도에

74) 「국가재정법」

제24조(명시이월비)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75)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76) 「국가재정법」

제25조(국고채무부담행위)

① 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을 함으로써 국가가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하며, 사전에 국회의 의결을 받은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다. 즉, 국고채무부담행이란 해당 연도에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25조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일반적인 채무부담행위(제1항)와 재해복구를 위한 채무부담행위(제2항)로 분류되며, 제1항에 따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전에 사업 및 금액을 특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제2항에 따른 행위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 현황을 보면,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는 2018년에 475억원이 활용되었고, 재해복구를 위한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회의 의결을 얻어 한도액을 매년 1조 3,000억원으로 정하고 있었으나, 2021년부터 1조 5,00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최근 5년간 국고채무부담행위 규모: 2018~2022년도]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	475	0	0	0	0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한도액)	13,000	13,000	13,000	15,000	15,000
합 계	13,475	13,475	13,000	15,000	15,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성

「국가재정법」 제67조⁷⁷⁾에 따르면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운용총칙은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포함)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나뉘며,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된다.

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 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77) 「국가재정법」

제67조(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 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 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 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국가재정법」 제34조와 제71조는 국회에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규정하고 있다. 예산안의 경우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계속비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기금조성계획,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등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②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③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 포함) ④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당해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⑤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역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⑥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⑦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⑧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⑨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⑩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⑪ 성과계획서 ⑫ 성인지 예산서 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⑭ 조세지출예산서 ⑮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⑯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⑰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⑱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⑲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금조성계획 ②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③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④ 성과계획서 ⑤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⑥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⑦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⑧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자료: 「국가재정법」

수정예산안과 예산안 수정안의 차이

수정예산안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할 때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국회에 다시 제출한 예산안을 말한다(「국가재정법」제35조).⁷⁸⁾ 수정예산안은 국회 심사 중에 정부에서 다시 제출한 것이므로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대체하여 심사과정을 거치게 된다.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치면서 수정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발의 또는 제출된 것을 의미한다. 예산안 수정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후 수정의결한 위원회 수정안과, 의원 50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본회의에 직접 제출되는 본회의 수정안(「국회법」제95조)으로 구분된다.

수정예산안은 예산안 편성·제출권한을 가진 정부에 의해 제출되며, 예산안 수정안은 국회의 심사과정을 거쳐 제출된다는 데 그 차이점이 있다. 또한, 수정예산안은 당초 제출된 예산안을 대체하므로 일반적인 예산안 심의절차와 동일하게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치게 된다. 이에 따라 수정예산안에 대한 위원회 수정안 또는 본회의 수정안도 가능하다. 일례로, 2009년 정부는 경기침체의 전세계적 확산으로 인한 경제성장 전망 및 경제여건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2008.11.7. ‘2009년도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상임위 예비심사(2008.11.14.~12.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2008.11.19.~2008.12.13.) 및 수정의결을 거쳐 총수입을 수정예산안보다 2.2조원 적은 291조원으로, 총지출은 수정예산안보다 많은 284.5조원으로 의결한 바 있다.

2. 국가재정운용계획

의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란 정부가 「국가재정법」 제7조에 따라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기간에 대한 세입, 세출, 재정수지, 조세부담률, 국가채무 등의 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문서를 말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국가정책 방향과 자원배분 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 계획으로, 단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틀이 되며 매년 경제·사회적 여건 변화와 연동·보완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각 부처를 포괄하는 정부의 단년도 예산은 중장기 국가비전과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한 중기적 시계에서 편성될 수 있다.

「국가재정법」 제7조는 정부가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

78) (p. 122) 참조

는 사항과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중기 재정전망 및 그 근거’,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등이며,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전년 계획 대비 변동사항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및 ‘장기 재정전망 결과’이다⁷⁹⁾.

[국가재정운용계획의 포함사항 및 첨부서류]

포함사항	첨부서류
①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①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②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③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④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⑤ 의무지출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③ 국가채무관리계획
⑥ 재량지출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④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⑤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⑦ 세입·세외수입·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⑧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⑨ 통합재정수지에 대한 전망과 관리계획	

자료: 「국가재정법」 제7조

주요 내용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2021년 본예산 기준 총수입은 482.6조원에서 2025년 618.5조원으로 연평균 6.4% 증가될 계획인 반면, 총지출은 558.0조원에서 2025년 691.1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될 계획으로, 총수입 증가 속도가 총지출 증가 속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같은 기간 2021년 본예산 기준 의무지출은 266.1조원에서 2025년 342.7조원으로 연평균 6.5% 증가하여, 총지출 대비 의무지출 비중은 2021년 본예산 기준 47.7%에서 2025년 49.6%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는 2021년 본예산 기준 75.4조원 적자를 기록한 이후 2022년에 55.6조원으로 적자폭이 감소되지만, 2023년부터 적자폭이 다소 확대되면서 2025

79) 2020년 3월 「국가재정법」 제7조가 개정·시행되면서 정부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 첨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년에는 72.6조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수지⁸⁰⁾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 또한 적자폭이 2021년 112.5조원에서 2022년 94.7조원으로 감소되었다가, 2023년부터 점진적으로 확대되어 2025년에는 109.2조원 적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 밖에 국가채무(D1)는 2021년 956.0조원(GDP 대비 47.3%)에서 2025년 1,408.5조원(GDP 대비 58.8%)에 이르는 등 지속적인 확대 추세가 전망된다.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운용 전망 및 목표]

(단위: 조원, %)

구 분	2021		2022	2023	2024	2025	연평균 증가율
	본예산	추경 ²⁾					
총수입 (증가율 ¹⁾)	482.6	514.6	548.8 (13.7)	570.2 (3.9)	593.9 (4.2)	618.5 (4.1)	6.4
총지출 (증가율)	558.0	604.9	604.4 (8.3)	634.7 (5.0)	663.2 (4.5)	691.1 (4.2)	5.5
의무지출 (증가율)	266.1	279.1	301.1 (13.2)	311.7 (3.5)	327.0 (4.9)	342.7 (4.8)	6.5
재량지출 (증가율)	291.9	325.8	303.3 (3.9)	323.0 (6.5)	336.2 (4.1)	348.4 (3.6)	4.5
통합재정수지(A) (GDP 대비)	△75.4 (△3.7)	△90.3 (△4.4)	△55.6 (△2.6)	△64.5 (△2.9)	△69.4 (△3.0)	△72.6 (△3.0)	-
사회보장성기금수지(B) (GDP 대비)	37.1 (1.8)	36.3 (1.8)	39.1 (1.8)	40.2 (1.8)	39.0 (1.7)	36.6 (1.5)	-
관리재정수지(A-B) (GDP 대비)	△112.5 (△5.6)	△126.6 (△6.2)	△94.7 (△4.4)	△104.7 (△4.7)	△108.4 (△4.7)	△109.2 (△4.6)	-
국가채무 (GDP 대비)	956.0 (47.3)	965.3 (47.3)	1,068.3 (50.2)	1,175.4 (53.1)	1,291.5 (56.1)	1,408.5 (58.8)	10.2

주: 1) 전년 대비(2022년의 경우 2021년 본예산 대비)

2) 2021년 제2회 추경 확정예산 기준

1.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인하여 합산·차감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2022년은 정부안 기준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바탕으로 재작성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총수입 증가율을 초과하였던 이전 계획과 달리, 총수입 증가율이 총지출 증가율을 초과하고 관리재정수지의 적자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제 회복에 따른

80) 정부는 재정수지의 착시효과 제거를 위하여 2002년부터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도출하고 있다.

세수여건 개선으로 재정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코로나19 위기에서의 회복과 성장 동력 확보 등을 위해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되 향후 경제회복 추이에 맞추어 재정지출 증가 속도를 하향 조정해 나갈 것으로 계획한 데 기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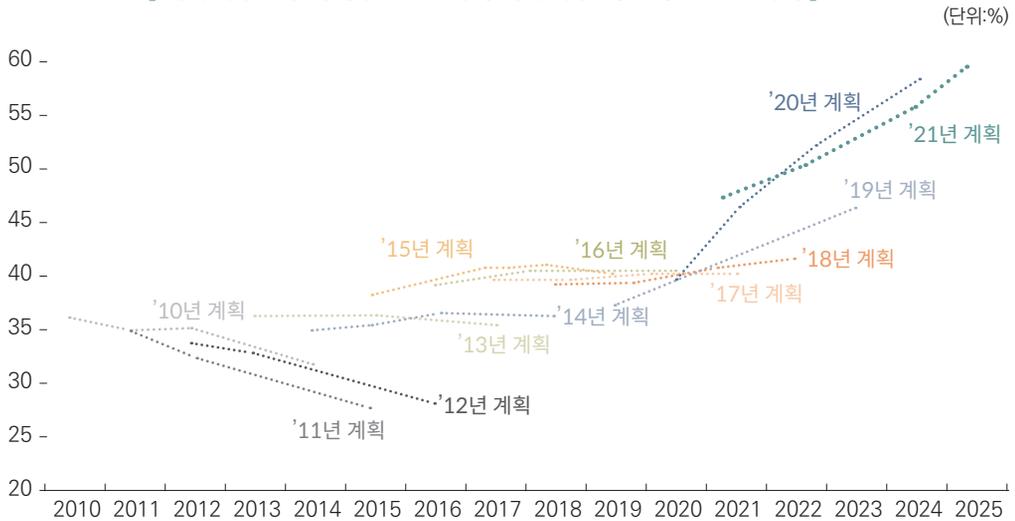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전년 대비 주요 내용 비교]

구분	2020~2024년 국가재정운용계획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수입	• 연평균 3.5% 증가(국세수입 2.8%) • 2024년 조세부담률 19.0% 국민부담률 27.3%	• 연평균 6.4% 증가(국세수입 7.9%) • 2024년 조세부담률 20.7% 국민부담률 29.0% • 2025년 조세부담률 20.6% 국민부담률 29.2%
	•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5.7% • 의무지출 증가율 연평균 5.3% • 재량지출 증가율 연평균 6.2%	• 재정지출 증가율 연평균 5.5% • 의무지출 증가율 연평균 6.5% • 재량지출 증가율 연평균 4.5%
재정수지	• 2024년 관리재정수지 △127.5조원	• 2024년 관리재정수지 △108.4조원 2025년 관리재정수지 △109.2조원
국가채무	• 202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3%(1,327.0조 원)로 증가	• 2024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6.1%(1,291.5조 원)로 증가 • 2025년 국가채무는 GDP 대비 58.8%(1,408.5조 원)로 증가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연도별 계획은 기존 계획들과 비교하여 높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6년 계획까지는 계획기간 초반에 국가채무 비율을 확대시키더라도 후반에 다시 감축시키는 방향으로 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2017~2018년 계획은 계획기간 후반에도 국가채무 비율을 확대시켰으나, 그 상승세는 완만하였다. 그러나 2019년 계획부터 계획기간 전체에 걸쳐 국가채무 비율이 확대되었고,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세도 과거 계획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2021년 계획에도 이러한 추이가 지속된다.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의 연도별 계획]



자료: 대한민국 정부, 「국가재정운용계획」, 각 연도

3. 조세지출 예산

의의

조세지출의 개념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 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의 방식으로 납세자에 대한 재정지원을 목적으로 발생하는 국가 세입의 감소를 말한다.⁸¹⁾ OECD(1996)는 조세지출의 개념을 “조세체계상 일반적인 원칙인 기준조세체계(Benchmark Tax System)를 벗어난 조세특례”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기준조세체계란 각 세목의 구조적 요소인 과세대상, 과세표준, 세율구조, 과세기간, 국제조세규약 등을 의미한다. 다만, 국가별로 조세체계가 상이하고 조세지출의 범위에 대한 국가간 합의된 기준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각국의 사정에 따라 조세지출의 범위를 달리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지출예산서상 조세지출은

81)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율적용 또는 과세이연 등 조세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의 직전 연도 실적과 해당 연도 및 다음 연도의 추정금액을 기능별·세목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조세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의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조세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 중 특정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⁸²⁾

조세지출의 유형

조세지출은 세부담을 영구적으로 감소시키는 '직접감면'과 일정기간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으로 구분된다. '직접감면'에는 비과세(특정소득 과세대상에서 제외), 소득공제(일정금액을 소득금액에서 차감), 저율과세(일반세율보다 낮은 세율 적용), 세액공제(일정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 등이 있다. 이 외에도 근로장려세제나 부가가치세 영세율·면제 등 다양한 직접감면 유형이 존재한다.

'간접감면'에는 준비금(특정 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 과세이연(특정시점까지 과세를 연기), 이월과세(이후 거래단계로 과세시점을 연기) 등이 있다.

조세지출예산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작성하는 조세지출예산서는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조세지출 내역을 작성·공표함으로써 세출예산과 연계하여 재원 배분의 효율성과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

정부는 1999년부터 2009년까지 직전연도, 당해 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조세지출보고서」로 작성하여 공표하여 왔으며, 2010년부터 「국가재정법」에 따라 직전·당해·다음연도의 국세감면 실적 및 추정금액을 작성한 조세지출예산서를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다만, 조세지출예산서는 예산안과 마찬가지로 다음연도에 발생하게 될 금액을 추정하지만, 조세지출 항목별로 감면액을 국회에서 검토·승인받는 것이 아니라는 차이가 존재한다.

8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의3(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이하 "조세지출"이라 한다)에는 조세특례 중 특정 산업 또는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 여부, 조세특례의 폐지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이하 "조세지출예산서"라 한다)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포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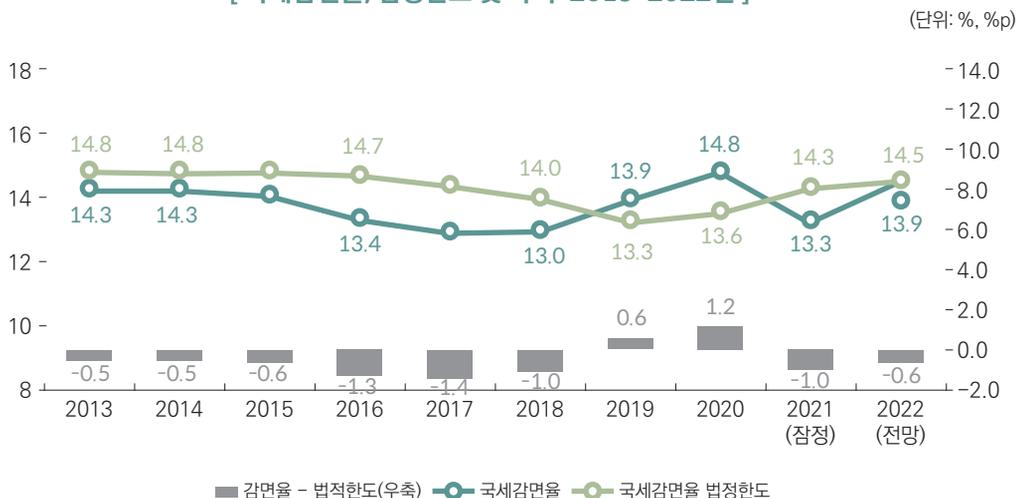
조세지출에 대한 관리

국세감면율 한도제

2007년부터 정부는 조세지출의 확대에 의한 세수손실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제88조에 따라 국세감면율⁸³⁾ 한도제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는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하여금 당해연도 국세감면율이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의 0.5%p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운용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10년간의 국세감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의 국세감면율은 법정 한도를 하회하여 운용되어왔다. 그러나 2019년 국세감면율은 13.9%로 법정한도인 13.3%를 초과하였으며, 2020년 국세감면율 또한 14.8%로 법정한도인 13.6%를 초과하여 2년 연속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였다. 2021년부터는 감소추이로 전환하여 2021년 국세감면율은 법정한도(14.3%)를 하회하는 13.3%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2년 국세감면율 역시 법정한도(14.5%) 대비 0.6%p 적은 13.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참고로, 「2021년도 조세지출 예산서」부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1조 개정에 따라 국세수납액에 지방소비세액을 포함하여 국세감면율을 계산함으로써 이전보다 국세감면율이 하락하는 효과가 발생했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 및 차이: 2013~2022년]



주: 1. 국세감면율의 2020년 실적치 및 2021년·2022년 전망치는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근거

2. 2021년 국세감면율은 2021년 국세수입 실적을 반영하여 재계산

3. 2022년 국세감면율 및 국세감면율 법정한도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2년 국세수입 예산을 반영하여 재계산

자료: 대한민국 정부, 연도별 「조세지출예산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83) 국세감면율은 감면 이전의 국세수입 대비 국세감면액의 비율로 {국세감면액/(국세수입+국세감면액)}×100(%)로 계산된다.

조세특례평가제도

조세특례평가제도는 조세특례의 무분별한 신규 도입과 관행적인 일몰 연장을 예방하고, 조세 특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한 효율적인 제도 정비를 목적으로 2014년 도입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⁸⁴⁾하였다.

(조세특례 예비타당성평가)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300억원⁸⁵⁾ 이상인 조세특례제도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정부가 제출하는 경우 전문적인 외부 조사·연구기관의 사전 평가결과를 첨부하여야 한다. 한편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일정액 이상의 조세특례를 신규로 도입하는 법률안을 발의·제안하는 경우에도 국회예산정책처 등 전문 조사·연구 기관이 작성한 조세특례 평가자료를 첨부하도록 하는 「국회법」 제79조의3이 2014년 3월 18일 신설되었다.

(조세특례 의무심층평가)

일몰이 도래하는 조세특례 중 연간 조세특례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금액⁸⁶⁾ 이상인 조세특례의 경우 의무적으로 외부 전문 조사·연구기관을 통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예산분류기준별 규모

2022년 조세지출액 전망치는 59조 5,208억원으로, 2021년 전망치 55조 9,366억원에 비하여 6.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예산분류기준별로 살펴보면, 2022년 조세지출액은 사회복지(34.9%),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26.4%), 보건(14.1%), 농림수산(10.3%) 순으로 전망된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의 경우 2021~2022년에 걸쳐 금액과 비중 모두 증가하는 특징을 보이며, 사회복지 분야의 경우 2022년까지 조세지출액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2022년 조세지출 비중이 2021년에 비해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84)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4항단서 및 제142조제5항을 규정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2014.1.1.)에 따라 에 규정한 평가제도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

85)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제5항

86) 연간 조세특례금액 300억원 이상(「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5조제4항)

[예산분류기준별 조세지출 추이]

(단위: 억원, %)

구분	2020 (실적)		2021 (전망)		2022 (전망)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비중
1 일반공공행정	31,923	6.0	40,511	7.2	41,455	7.0
2 공공질서 및 안전	-	-	-	-	-	-
3 외교·통일	10	0.0	11	0.0	12	0.0
4 국방	283	0.1	311	0.1	335	0.1
5 교육	13,716	2.6	11,095	2.0	11,926	2.0
6 문화 및 관광	393	0.1	247	0.0	267	0.0
7 환경	12,515	2.4	13,575	2.4	14,511	2.4
8 사회복지	187,173	35.3	198,420	35.5	207,835	34.9
9 보건	74,942	14.2	78,491	14.0	83,819	14.1
10 농림수산	59,352	11.2	57,851	10.4	61,477	10.3
11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32,572	25.0	143,009	25.6	156,894	26.4
12 교통 및 물류	5,160	1.0	4,554	0.8	4,837	0.8
13 통신	-	-	-	-	-	-
14 국토 및 지역개발	11,212	2.1	11,262	2.0	11,808	2.0
15 과학기술	106	0.0	29	0.0	32	0.0
16 예비비	-	-	-	-	-	-
합계	529,357	100.0	559,366	100.0	595,208	1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1.9.

4.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의의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근거하여 대규모 신규사업의 적정 투자시기와 재원조달 방법 등에 대한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 및 평가를 통해 사업의 추진 여부를 공정하게 결정하기 위한 제도로써,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재정사업 분석을 바탕으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①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지능정보화 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②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

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신규사업이 이에 해당한다.⁸⁷⁾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구분	사업 유형	요건
조사 대상	(1항 1~3호)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정보화 사업, 국가연구 개발사업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
	(1항 4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중기재정지출 500억원 이상

동 제도가 도입된 1999년부터 2021년 12월말까지 실시된 총 조사건수는 960건, 총사업비는 470.7조원이다. 이 중 614건(287.7조원)의 경우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346개 사업(183.0조원)은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2021년의 경우, 전체 조사대상 28건 중 78.6%인 22건이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현황]

(단위: 건, 조원, %)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1999	19	27.1	12	63.2	7.3	26.9	7	36.8	19.8	73.1
2000	30	14.0	15	50.0	6.1	43.6	15	50.0	7.9	56.4
2001	41	19.8	14	34.1	6.5	32.6	27	65.9	13.4	67.4
2002	31	20.1	14	45.2	10.0	50.1	17	54.8	10.0	49.9
2003	32	17.6	19	59.4	13.6	77.4	13	40.6	4.0	22.6
2004	55	18.7	41	74.5	13.3	71.4	14	25.5	5.3	28.6
2005	30	12.4	19	63.3	8.4	68.0	11	36.7	4.0	32.0
2006	52	21.5	28	53.8	9.3	43.2	24	46.2	12.2	56.8
2007	45	16.7	26	57.8	10.5	62.6	19	42.2	6.2	37.4
2008	43	11.0	28	65.1	5.2	47.4	15	34.9	5.8	52.6

87) 과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및 면제대상의 세부 사항을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었으나, 이로 인해 예비타당성제도를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집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2014년 1월「국가재정법」개정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실시대상 및 면제대상을 직접 법률에 규정하고, 면제대상의 내역 및 사유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연도	조사대상		타당성 있음				중·장기적으로 검토 필요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건수		사업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9	72	35.4	47	65.3	24.8	70.2	25	34.7	10.6	29.8
2010	81	35.8	60	74.1	23.1	64.5	21	25.9	12.7	35.5
2011	63	24.0	45	71.4	16.3	68.0	18	28.6	7.7	32.0
2012	48	23.7	37	77.1	17.3	73.1	11	22.9	6.4	26.9
2013	29	7.7	18	62.1	4.8	63.1	11	37.9	2.8	36.9
2014	47	13.9	35	74.5	10.2	73.1	12	25.5	3.8	26.9
2015	41	8.9	25	61.0	4.6	51.8	16	39.0	4.3	48.2
2016	43	17.9	26	60.5	11.1	62.0	17	39.5	6.8	38.0
2017	44	23.1	20	45.5	10.7	46.3	24	54.5	12.4	53.7
2018	29	13.6	20	69.0	10.1	74.3	9	31.0	3.5	25.7
2019	33	19.4	25	75.8	14.9	76.9	8	24.2	4.5	23.1
2020	24	24.7	18	75.0	9.7	39.4	6	25.0	14.9	60.6
2021	28	43.8	22	78.6	39.8	90.8	6	21.4	4.0	9.2
합계	960	470.7	614	64.0	287.7	61.1	346	36.0	183.0	38.9

자료: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을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상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규 예정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가 제출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중장기 투자계획과의 부합성, 사업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의 시급성, 국고지원의 요건, 지역균형발전 요인, 기술개발의 필요성(R&D 사업) 등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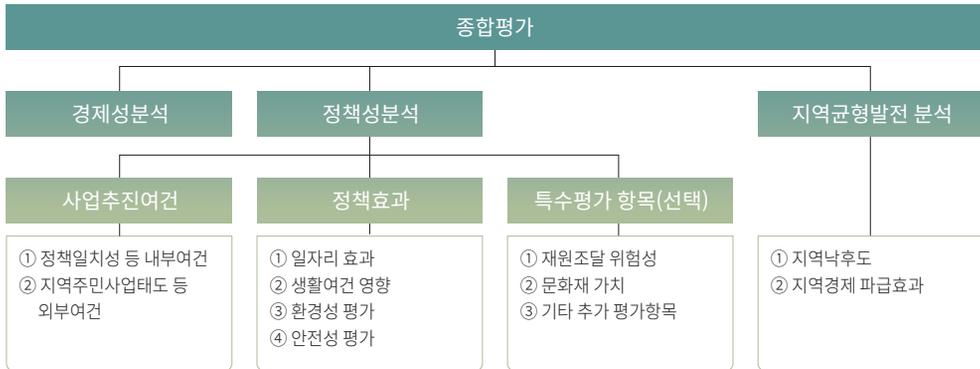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KIPF)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R&D 분야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에서 수행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은 비용-편익분석 등 경제성 분석과 함께 사업추진 여건, 정책의 효과성 등 정책성 분석, 계층화분석법(AHP)을 활

용한 종합평가 등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종료 후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수행방식

예비타당성조사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수행한 후, 각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종합적인 결론을 제시한다.

[예비타당성조사 평가 항목]



자료: 「예비타당성조사수행 총괄지침」 [별표6]

경제성 분석은 대상사업의 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인 조사과정으로서 기본적으로 비용-편익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활용하는데, B/C비율이 1 이상이면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종합평가는 각 유형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최종 단계이다. 종합평가는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하는데, 통상적으로 $AHP \geq 0.5$ 인 경우, 사업이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사업 특성에 따라 평가항목을 변경하여 정보화사업(사업의 주 내용이 건설사업인 경우는 제외)은 기본적인 항목에 더해 기술성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사업효과가 특정지역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은 지역균형발전 분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과 함께 과학기술적 타당성을 분석하여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화사업에서 수행하는 기술성 분석은 업무요구 부합성, 적용기술 적합성, 구현·운영계획 적정성 등을 분석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서 수행하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은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 등으로 범주화하여 분석한다. 또한 복지사업의 경우, 경제·사회·환경에 대한 분석, 사업설계의 적정성, 비용·효과성 등을 점검한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면제되는 10개 사업 유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른 사업, 재난복구,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38조제4항에서는 국회가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면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타당성에 대해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가 의결을 통해 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

구분	사업 유형
면제 대상	(2항 1호)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2항 2호) 문화재 복원사업
	(2항 3호)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2항 4호)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2항 5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2항 6호) 재난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2항 7호)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2항 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2항 9호)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 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2항 10호)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단, 종전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자료: 「국가재정법」 제38조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현황

「국가재정법」 제34조제15호⁸⁸⁾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 시 첨부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로 제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총 18개 사업이다.

이 중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에 제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총 14개로 이들 사업은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제8호), 국가안보 관련 사업(제3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제10호) 등의 사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구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중 법령에 따라 추진하기 위해 면제된 사업이 8개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 3개, 국가안보 사업이 2개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금운용계획안에 제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은 총 4개로,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을 위하여 면제된 사업 3건과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1건으로 구성된다.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기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

(단위: 억원)

면제사유	사업 수	총사업비 ¹⁾
(제1호) 공공청사, 교정시설,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4	3,930
(제3호) 국가안보와 관계되는 국방 관련 사업	2	14,545
(제4호) 남북교류협력 또는 국가간 협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	-
(제5호)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	-
(제6호) 시설안전성 확보, 안전문제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1	1,054
(제8호)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8	27,052
(제10호)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	3	6,516
합 계	18	53,097

주: 1) 총사업비는 각 부처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구서 제출 시 제시된 총사업비 기준

1. 2022년 정부안 첨부서류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은 2020년 하반기~2021년 8월까지 기준

자료: 2022년도 예산안 첨부서류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88)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그 중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2015년 이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현황을 살펴보면, 면제 사업 건수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14건 수준이었으나, 2018년 30건, 2019년 47건, 2020년 31건, 2021년 31건으로 면제 사업 수가 확대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는 2015년 1.4조원 규모에서 2019년 36.0조원, 2020년 30.0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2021년에는 10.5조원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또한, 전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면제된 사업의 비중을 살펴보면, 사업 수를 기준으로 2018년 53.3%, 2019년 53.2%, 2020년 54.8%, 2021년 12.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2018년 85.1%, 2019년 69.5%, 2020년 83.0%, 2021년은 8.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총사업비 추이]

(단위: 건, 억원, %)

연도	사업 수 기준			총사업비 기준		
	전체 면제 (A)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B)	비중 (B/A)	전체 면제 (C)	국가 정책적 추진 필요에 따른 면제(D)	비중 (D/C)
2015	13	1	7.7	14,003	1,508	10.8
2016	17	0	0.0	28,060	0	0.0
2017	12	2	16.7	176,421	163,318	92.6
2018	30	16	53.3	128,798	109,638	85.1
2019	47	25	53.2	359,750	250,089	69.5
2020	31	17	54.8	300,215	249,151	83.0
2021	31	4	12.9	105,020	8,603	8.2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정책적 필요에 따른 면제 사업은 요건이 다소 포괄적이라는 점에서 그 규모가 증가하는 것은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실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그동안 「예비타

당성조사 운용지침⁸⁹⁾에 따라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왔다.

그러나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지침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 실시여부도 기획재정부장관의 재량사항이므로 현행 규정만으로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 중 어떠한 사업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대상인지 알기 어렵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최근 「국가재정법」 개정(2020.3.)을 통해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유(「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10호)’로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거치도록 의무화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실시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있다.⁹⁰⁾

사업추진 중 재정소요 증가 사업의 적정성 검토

당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에 대해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자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이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에 따르면,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제4호의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89)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자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검토(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은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할 때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하여 효율적 대안을 분석한다.

90) 「국가재정법」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자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5. 국가연구개발(R&D)

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⁹¹⁾ 정의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위에서 말하는 연구개발(R&D)은 사물·현상·기능에 대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용하는 체계적이고 창조적인 활동을 의미한다.⁹²⁾

「대한민국헌법」 제127조제1항에서 ‘국가는 과학기술의 혁신과 정보 및 인력의 개발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기본법」 제4조에서 ‘국가는 과학기술혁신과 이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는 민간의 연구개발활동을 보완하고, 미래 핵심기술의 선행적 개발을 지원하며,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술영역인 기초·공공·복지 분야의 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⁹³⁾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⁹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매년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와 공모 일정 등을 포함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평가를 거쳐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할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체계는 상위 수준의 ‘사업(Program)관리시스템’과 하위 수준의 ‘과제(Project)관리시스템’으로 구분한다. 사업관리시스템에서는 부처별 사업기획, 예산의 배분·조정, 사업집행, 성과평가 등을 수행한다. 과제관리시스템 수준에서는 개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선정평가, 연구수행, 성과활용 등을 수행한다.

9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92) OECD, 「Frascati Manual」, 2002.

93) 한용용·김주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5.

9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8조(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무의 관장)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국가R&D사업의 관리 형태는 ‘부처 직접 수행·관리 형태’, ‘위탁관리 형태’, ‘기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부처 직접 수행·관리 형태’는 과제 단위의 기획, 공모, 선정평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으로, 부처가 직접 수행·관리한다. ‘위탁관리형태’는 부처 산하의 연구관리전문기관 등에게 기획·관리·평가 등을 위탁하는 형태이다. ‘기타’는 교육공무원 인건비, 국공립(연) 및 출연(연)의 경직성 경비 등 별도의 체계적 기획·평가·관리업무 수행이 불필요한 사업이 해당된다⁹⁵⁾.

연구관리전문기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⁹⁶⁾ 정의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중앙행정기관이 직접 수행하거나 국공립연구소, 정부출연연 등에 예산을 출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연구관리전문기관에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평가·관리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있다.⁹⁷⁾

국가연구개발사업과 예비타당성조사

예비타당성조사제도 도입 이후 R&D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예비타당성조사로 인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위축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R&D 고유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책-기획(예타)-예산-평가 전 과정을 연계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업무를 기획재정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재정법」 제38조의3⁹⁸⁾이 신설되었다(2018. 1. 16.). 이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18년 4월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2020년 5월에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기관으로 지정하였다.

95) 한웅용·김주일, 「2020년도 정부연구개발예산 현황분석」,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20.5., 국회예산정책처, 「국가R&D사업의 과제기획·선정평가 체계 분석」, 2020.10.

9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전문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으로서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기관을 말한다.

97) 국회예산정책처, 「국가연구개발사업 분석-총괄」, 2019.10.

98) 「국가재정법」

제38조의3(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 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편성 절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혁신본부)에서 예산 배분·조정안을 마련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⁹⁹⁾과 기획재정부에서 심의하는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¹⁰⁰⁾으로 구분된다.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예산요구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자료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주요 R&D 예산의 배분방향 및 배분·조정 내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¹⁰¹⁾ 예산의 배분·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일반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과 함께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을 최종 편성한다.

99)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③ 법 제12조의2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인문사회 분야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국가안전보장상 고도의 보안성이 요구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을 제외한 사업을 말한다.

1.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수립한 계획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5년 이상 중장기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
2. 미래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도의 전문적·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3.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기 위한 기초과학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4.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 연구시설·장비 구축사업, 2개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는 연구개발사업 등 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가 필요한 국가연구개발사업

100) 일반R&D 사업은 인문사회R&D, 대학지원금, 보안성 국방R&D, 국공립연구소의 운영경비 등이다.

101)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이하 생략)

[국가연구개발 예산안의 편성과정]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현황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한국판 뉴딜, 미래주력산업, 프론티어형 전략기술, 도전적 기초 연구 등 미래산업 선도적 지위로의 도약을 위한 전략 R&D 투자를 확대하며, 이를 위해 10대 중점 투자분야¹⁰²⁾에 전년대비 1.4조원이 증가한 12.8조원을 편성하였다.

102) 10대 중점투자분야: 한국판뉴딜, BIG3, 소재·부품·장비, 감염병, 국민안전, 우주·항공, Next D.N.A. 국정과제(기초연구, 중소기업 R&D), 혁신인재, 국제협력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예산 규모는 29조 7,770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2조 2,639억원(8.2%) 증가하였다. 주요R&D사업은 24조 2,363억원, 일반R&D사업은 5조 5,407억원이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1조 4,752억원, 특별회계 5조 7,655억원, 기금 2조 5,333억원이 편성되었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주요/일반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전체R&D사업	241,064	274,005	275,131	297,770	297,770	22,639	8.2
주요R&D사업	196,695	224,894	226,020	242,363	242,363	16,343	7.2
일반R&D사업	44,369	49,112	49,112	55,407	55,407	6,296	12.8

주: 2022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회계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전체R&D사업	241,064	274,005	275,131	297,770	297,770	22,639	8.2
예산	223,065	253,920	255,046	272,407	272,407	17,361	6.8
- 일반회계	177,199	198,864	199,990	214,752	214,752	14,762	7.4
- 특별회계	45,866	55,056	55,056	57,655	57,655	2,599	4.7
기금	17,999	20,085	20,085	25,333	25,333	5,248	26.1

주: 2022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예산 규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9조 2,799억원(31.2%)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산업통상자원부 5조 3,248억원(17.9%), 방위사업청 4조 8,310억원(16.2%), 교육부 2조 4,331억원(8.2%), 중소벤처기업부 1조 7,888억원(6.0%) 등의 순이다.

[2022년 국가연구개발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B-A	(B-A)/A
전체R&D사업	241,064	274,005	275,131	297,770	297,770	22,639	8.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78,791	87,357	87,503	92,799	92,799	5,442	6.1
산업통상자원부	41,960	49,518	49,518	53,248	53,248	3,731	7.5
방위사업청	38,725	43,314	43,314	48,310	48,310	4,996	11.5
교육부	21,818	23,444	23,444	24,331	24,331	888	3.8
중소벤처기업부	14,839	17,229	17,229	17,888	17,888	659	3.8
농촌진흥청	6,898	8,022	8,022	8,533	8,533	511	6.4
보건복지부	7,171	8,030	9,010	8,361	8,361	△649	△7.2
해양수산부	6,792	7,825	7,825	8,237	8,237	412	5.3
국토교통부	5,268	6,031	6,031	5,788	5,788	△243	△4.0
기획재정부	27	27	27	5,507	5,507	5,480	20,319.8
국무조정실	4,902	5,288	5,288	5,457	5,457	169	3.2
환경부	3,714	4,072	4,072	3,776	3,776	△296	△7.3
농림축산식품부	2,307	2,757	2,757	2,902	2,902	145	5.3
산림청	1,279	1,493	1,493	1,575	1,575	83	5.5
질병관리청	-	1,167	1,167	1,461	1,461	293	25.1
식품의약품안전처	966	1,186	1,186	1,340	1,340	154	13.0
문화체육관광부	956	1,139	1,139	1,323	1,323	183	16.1
기상청	972	1,162	1,162	1,236	1,236	74	6.4
행정안전부	783	1,037	1,037	1,200	1,200	164	15.8
원자력안전위원회	725	1,143	1,143	1,149	1,149	6	0.5
국방부	531	556	556	702	702	147	26.4
문화재청	497	607	607	649	649	42	7.0
특허청	521	545	545	602	602	57	10.5
경찰청	224	492	492	592	592	99	20.2
해양경찰청	201	263	263	428	428	165	62.9
소방청	150	209	209	233	233	24	11.7
관세청	-	30	30	44	44	14	47.2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	-	30	30	30	순증
법무부	13	25	25	27	27	2	8.0
고용노동부	8	8	8	9	9	0	5.0
새만금개발청	7	7	7	9	9	2	25.7
인사혁신처	5	6	6	6	6	0	4.9
통일부	4	4	4	4	4	-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4	4	4	4	0	5.1
공정거래위원회	4	4	4	4	4	-	-
여성가족부	2	3	3	3	3	0	5.0
외교부	2	3	3	2	2	△0	△9.9
법제처	1	1	1	1	1	0	5.7

주: 2022년 추경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6. 정보화사업

의의 및 적용대상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2호¹⁰³⁾에 따르면,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하며, 정보화사업은 이와 같은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정보화사업에는 정보시스템의 기획·구축·운영·유지관리를 위한 사업, 공공·민간 정보화 지원 및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한 사업, 그리고 기타 정보화 관련 법령¹⁰⁴⁾에 따른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에 포함된 사업이 포함된다.

정보화사업의 관리 및 예산 편성

정보화사업의 관리 및 예산 편성 과정에서 주요 특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정보화사업 중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의 경우 시스템 구축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BPR¹⁰⁵⁾ 및 ISP¹⁰⁶⁾ 수립을 완료하여야 한다(「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작성 세부 지침」). 이와 같은 절차는 정보화 계획수립 단계부터 불필요한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 방지를 통해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2017년부터 수행되고 있다. ISP 수립을 위한 예산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혹은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 협의되어 전용된 예산으로 수행하여야 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ISP 수립 공통가이드」에 따라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요구에 앞서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검토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여야 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전문기관(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을 통해 ISP 최종산출물에 대한 사업 타당성, 실현 가능성, 규모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고 해당 결과를 신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의 예산안 편성 시 활용하게 된다.¹⁰⁷⁾ 다만, 단순 기

103)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정의)

2. “정보화”란 정보를 생산·유통 또는 활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104) 「지능정보화 기본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전자정부법」 등

105) BPR(Business Process Reengineering, 업무재설계) : 기업의 활동이나 업무 흐름을 분석화하고 이를 최적화하는 것으로,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과정들을 제거하기 위해 업무 상의 여러 단계들을 통합하고 단순화하여 재설계하는 경영혁신 기법을 의미(출처 : 두산백과)

106) ISP(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정보화전략계획) : 조직, 기관의 미래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떻게 효과적으로 정보기술을 연계하고 적용할 것인가 전략을 짜고 해결책을 찾아 실행 계획을 수립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출처 : 지식경제용어사전)

107) ISP 이후 편성된 예산안이 국회에서 확정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사업에 대한 상세분석과 입찰 제안요청서를 마련하기 위해 추가적으로 ISMP(Information System Master Plan, 정보화시스템 마스터플랜)를 수립할 수 있다. 여기서 ISMP는 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 전략과 이행 계획을 수립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능개발 등 BPR·ISP 수립 실익이 낮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이나, BPR·ISP 수립 중이 나 정책적 중요성 및 시급성이 높은 경우 등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사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예산을 요구할 수 있다.

둘째, 정보화사업은 매년 수립되는 「정보화사회 실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실행계획에 대한 분석 의견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며,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의견을 참고하여 정보화사업의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제1항과 제2항¹⁰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¹⁰⁹⁾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5월 20일까지 전년도 정보화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와 같이 제출된 각 중앙행정기관의 정보화 추진 실적과 실행계획을 점검·분석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검토의견을 참작하여 최종 예산안을 편성하고 있다.¹¹⁰⁾¹¹¹⁾

108)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7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종합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9)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조(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 등)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전년도 실행계획의 추진 실적과 다음 해의 실행계획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 : 매년 5월 20일

110)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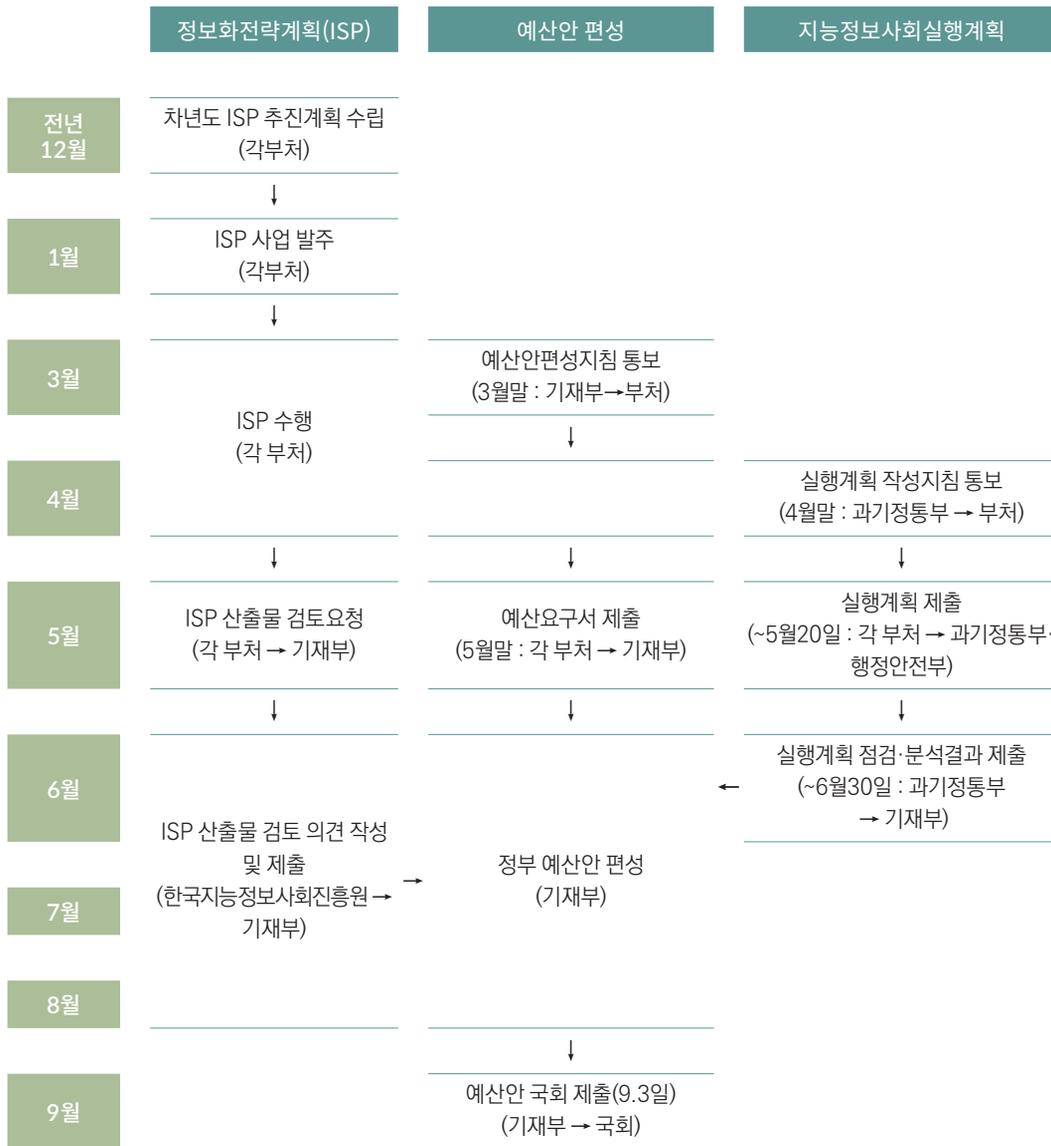
제4조(실행계획 추진실적 등 점검·분석의견의 제시 등)

-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점검·분석한 결과와 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하여 그 의견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시해야 한다.

- 1.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한 자료를 점검·분석한 결과와 행정안전부장관이 제출한 자료를 종합한 의견 : 매년 6월 30일

111) 정보화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부처의 모든 정보화사업을 포괄하는 ‘지능정보화실행계획’을 제출받아 점검·분석한 후 기획재정부에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를 총괄하며 정부·국민·기업에 파급효과가 커서 범정부적 중점관리가 필요한 핵심 전자정부사업 추진을 위해 전자정부지원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부처의 서버, 네트워크장비 등 정보자원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보화사업 예산안의 편성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2022년도 정보화사업은 ① 지능형 정부, ② 데이터 구축·개방·활용, ③ 비대면 서비스 확대, ④ 클라우드 전환, ⑤ 스마트 재난안전 등 5개 분야에 중점 편성되었다.

2022년 정보화사업 예산규모는 총 5조 6,323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3,431억원(6.5%)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조 2,161억원, 특별회계 4,600억원, 기금 9,563억원이 편성되

었다. 부처별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조 3,303억원(23.6%)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행정안전부 1조 2,051억원(21.4%), 국방부 7,329억원(13.0%), 법무부 1,691억원(3.0%) 등의 순이다.

[2022년 정보화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체 정보화사업	51,449	52,784	52,892	56,323	3,431	6.5
예산	41,830	43,624	43,732	46,760	3,028	6.9
- 일반회계	38,289	39,064	39,172	42,161	2,989	7.6
- 특별회계	3,541	4,560	4,560	4,600	40	0.9
기금	9,618	9,159	9,159	9,563	403	4.4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 정보화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B)	증 감	
		본예산	추경(A)		B-A	(B-A)/A
전체 정보화사업	51,448	52,784	52,892	56,323	3,431	6.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6,715	12,991	13,099	13,303	204	2.0
행정안전부	9,682	10,973	10,973	12,051	1,078	10.0
국방부	5,420	6,424	6,424	7,329	905	14.1
법무부	1,016	1,301	1,301	1,691	390	30.0
대법원	1,410	1,708	1,708	1,669	△39	△2.0
보건복지부	1,911	1,923	1,923	1,499	△424	△22.0
고용노동부	1,048	1,077	1,077	1,473	396	37.0
국토교통부	1,027	1,252	1,252	1,348	96	8.0
국세청	1,091	1,120	1,120	1,307	187	17.0
경찰청	831	1,169	1,169	1,226	56	5.0
교육부	997	813	813	924	110	14.0
문화체육관광부	721	863	863	801	△61	△7.0
기상청	494	675	675	751	76	11.0
중소벤처기업부	546	694	694	682	△12	△2.0
해양수산부	354	502	502	673	171	34.0
조달청	331	532	532	658	126	24.0
환경부	395	565	565	620	55	10.0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기획재정부	1,274	917	917	610	△307	△33.0
기타(38개 부처)	6,185	7,285	7,285	7,708	423	5.8

자료: 기획재정부

7. 민간투자사업

의의

민간투자사업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부문이 제안하는 사업 또는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등을 말한다. 「민간투자법」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운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처음으로 도입된 이후, 여러 차례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사업대상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사업방식도 다양화되었다. 이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이 급증하였고, 최소운영수입보장 등의 제도 도입으로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2010년도에 추진하는 임대형 민자사업부터는 민간투자사업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결과와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추진 경위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8월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 제정으로 도입되었다. 1998년 12월 전면 개정된 「(구)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되었고,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체계를 제공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7월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에 최소운영수입보장(Minimum Revenue Guarantee, MRG) 제도가 도입되었다.

2005년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하여 그동안 추진해 오던 수익형 민자사업(이하 “BTO”) 방식뿐만 아니라 임대형 민자사업(이하 “BTL”) 방식도 도입함으로써, 기존

산업기반시설 위주에서 교육·복지·문화시설 분야로 사업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참여의 폭이 넓어지고 참여 기회도 다양하게 확대되었다. 2008년에는 무분별한 BTL 추진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BTL 한도액안에 대한 국회의 사전의결을 신설하여 통제를 강화하였다.

민간투자사업의 급증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건전성 악화 및 사업추진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10년도에 추진하는 사업부터는 민자사업 한도액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의무화하였다. 또한,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결과와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최소운영수입보장(MRG)제도가 2009년에 폐지되어 투자 리스크가 큰 BTO 사업이 위축됨에 따라, 정부는 2015년에 위험분담 또는 손익공유로 BTO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BTO-rs(위험분담형)와 BTO-a(손익공유형)를 도입하였다. BTO-rs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신안산선 복선전철이며, BTO-a 방식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경산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및 아산테크노밸리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등이 있다.

2016년에는 BTL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 정부고시와 함께 민간제안방식을 허용하고, 민자사업 대상시설에 공공청사, 화장시설 등을 추가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민자 대상시설 확대를 위해 포괄주의를 도입하고 제안보상 합리화를 통해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촉진하는 등 신규 민자사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 관련 제도 연혁]

구 분	주요 내용
도입 (1994.8.)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 촉진법」 제정 정부 주도의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에 따른 재원부족 보완 등을 위해 민자제도 도입, 수익형 민자사업(BTO) 중심
전면 개정 (199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제도를 국제기준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수익성 제고 등 적극적 유인체계를 제공함으로써 외국 자본 등 민간투자를 적극 활성화하는 한편 이를 통해 경제 활성화·국가경쟁력 강화·성장잠재력의 확충을 도모
MRG 도입 (199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최소운영수입 보장 및 초과수입 환수의 기준과 절차 마련
BTL 도입 (2005.1.)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 도입(민간제안 미허용)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학교시설, 군 주거시설, 공공임대주택, 아동보육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공공보건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추가

구분	주요 내용
MRG 폐지 및 축소 (2006.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민간제한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 정부고시사업의 운영수입보장 수준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장기간: 15 → 10년 - 보장수준: 90% 상한으로 5년 경과시 10%씩 축소
관리 강화 (2008.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에 대한 국회 심의절차 신설 • 민간투자사업 실적보고서, BTL 정부지급금추계서 등 국회 제출
MRG 폐지 (2009.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 정부고시사업의 운영수입보장제도 폐지
방식 확대 (2015.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O-rs(위험분담형)와 BTO-a(손익공유형) 도입
대상 확대 등 (2016.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대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한 허용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 청사(경찰청의 지방청 및 경찰서 제외), 확장시설, 아동복지시설, 택시공영차고지 포함
대상 확대 (2018.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에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포함
전문기관 등도 민간제한사업 제안서 검토 허용 (2019.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사업비가 2천억원 미만이고, 예타 대상이 아닌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서 제안서 검토 수행 •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할 수 있는 일반 금전채무 한도를 4천억원에서 5천억원으로 상향
민자사업 다원화, 활성화 (2020.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O+BTL 혼합형 민자방식을 도입하는 등 민자사업 다원화 • 제안보상 합리화를 통해 창의적인 사업제안을 촉진하는 등 신규 민자사업 활성화
포괄주의 도입 (202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투자사업 대상시설을 민간투자법에 열거된 53개 시설 유형에서 공익 침해 우려가 없는 경제·사회 기반 시설 및 공공·공공용시설로 변경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 현황

2020년 말 기준으로 완공되어 운영 중인 사업은 BTO 205개, BTL 469개로 총 674개 사업이다. 또한 현재 시공 중인 사업은 BTO 21개, BTL 16개로 총 37개 사업이며, 시공 준비 중인 사업은 BTO 13개, BTL 6개로 총 19개 사업이다.

2020년까지 민간투자사업에 투자된 금액은 132.9조원이며, 민간이 투자한 금액은 95.0조원이다. 정부는 민간투자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보조금 23.6조원, 토지보상비 14.2조원을 투자하였다.

[민간투자사업 추진 단계별 투자비 실적('94~'20)]

(단위: 개, 조원)

구분	사업수					투자비			
	합계	운영중	시공중	준비중	종료	합계	민간 투자비	건설 보조금	토지 보상비
BTO	263	205	21	13	24	99.3	62.4	23.2	13.7
BTL	502	469	16	6	11	33.5	32.6	0.4	0.5
합계	765	674	37	19	35	132.9	95.0	23.6	14.2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도 민간투자사업 운영현황 및 추진실적 등에 관한 보고서」, 2021.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추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다음 연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의 총한도액,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9조의2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근거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해당 회계연도부터 1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정부지급금추계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후,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기획재정부는 BTL 정부지급금을 추계하고 있다. 「2021~2030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임대형 민자사업 중 2021년 5월 31일 현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의하여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2021년도부터 2030년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는 16조 2,926억원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1~2030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단위 :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14,111	14,713	16,936	16,911	16,887
국가사업	10,458	11,079	13,305	13,262	13,238
- 임대료	8,760	9,316	11,291	11,303	11,288
- 운영비	1,699	1,763	2,014	1,958	1,950
국고보조	3,653	3,633	3,631	3,650	3,650
- 임대료	3,653	3,633	3,631	3,650	3,650
- 운영비	-	-	-	-	-

구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 계	16,913	16,930	16,888	16,624	16,014
국가사업	13,263	13,280	13,241	13,001	12,783
- 임대료	11,286	11,276	11,224	10,957	10,767
- 운영비	1,978	2,004	2,017	2,045	2,016
국고보조	3,650	3,650	3,648	3,623	3,232
- 임대료	3,650	3,650	3,648	3,623	3,232
- 운영비	-	-	-	-	-

주: 단수조정으로 연도별 합과 합계란의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30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21, p.3.

연도별 국가사업의 정부지급금은 2023년까지 증가하는데, 증가요인은 군주거시설, 철도, 학교 등에서 신규 사업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2022년 신규 운영 사업은 군주거시설 3개, 철도 2개, 학교 3개, 어린이집 1개 등 이다. 대상시설별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 추계 금액은 다음 [표]와 같다.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은 2022년 기준으로 군주거시설 5,552억원, 하수관거 3,357억원, 철도 2,859억원 등이다.

[대상시설별 정부지급금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합계	2021	2022	2023	2024	2025
합계	합계	162,926	14,111	14,713	16,936	16,911	16,887
	국가사업	126,911	10,458	11,079	13,305	13,262	13,238
	국고보조	36,016	3,653	3,633	3,631	3,650	3,650
군주거시설	국가사업	55,453	5,421	5,552	5,552	5,558	5,563
하수관거	국고보조	33,266	3,376	3,357	3,354	3,373	3,373
철도	국가사업	45,456	2,456	2,859	4,910	4,987	5,002
유치원 및 학교	국가사업	20,559	1,953	1,993	2,124	2,173	2,177
정보통신망	국가사업	647	193	200	202	51	-
박물관 및 미술관	국가사업	1,487	149	146	148	149	149
공공보건의료	국가사업	924	91	91	91	91	92
	국고보조	1,727	173	173	173	173	173
청소년 수련시설	국가사업	755	75	75	75	75	75
문화복합시설	국고보조	48	5	5	5	5	5
과학관	국고보조	485	50	50	50	50	50
국제회의시설	국고보조	490	49	49	49	49	49
어린이집	국가사업	1,465	94	134	154	154	154
청사	국가사업	236	23	23	23	23	24

주: 단수조정으로 연도별 합과 합계란의 금액이 다를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30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21. pp.8~11.

8. 총액계상사업

의의

총액계상은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산편성단계에서 세부 내용을 정하지 않고 총액규모만을 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이다.¹¹²⁾

112) 「국가재정법」

제37조(총액계상)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계상사업 대상 및 한도

총액계상사업 대상은 주로 대상사업 또는 장소가 전국적으로 분포되거나 전국에 걸쳐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유지보수사업 등 세부사업별로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예산의 편성단계가 아닌 집행단계에서 수요를 정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이다. 총액계상이 가능한 사업은 ① 도로보수 사업, ②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 ③ 항만시설 유지보수 사업, ④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⑤ 수리부속지원 사업, ⑥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 ⑦ 그 밖에 대규모 투자 또는 보조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이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총액계상사업의 한도는 매 회계연도 예산순계를 기준으로 100분의 3의 범위에서 편성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총액계상사업의 추진 절차

총액계상사업은 각 중앙관서에서 기획재정부에 대상사업을 요구하여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에서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사업별 총액규모만을 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세부적인 내역 없이 총액규모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는다. 국회에서 확정된 총액계상사업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예산집행의 기본방향, 예산배분원칙, 사업선정기준 등을 사전협의한 후 예산을 배정하고, 구체적인 배분내역과 예산의 집행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도 제출하여야 한다.

[총액계상사업 추진 절차]

- ① 대상사업 지정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및 대상사업 지정 : 4월말
- ② 예산요구(각 부처 → 기획재정부) : 5월
- ③ 예산안 편성(총액규모만 편성) : 6~9월
- ④ 국회 예산 심의·의결 : 10~12월
- ⑤ 세부사업 시행계획 수립(각 부처) → 기획재정부와 협의 : 12월
 - 집행방향·배분원칙·사업선정 원칙 등 정책사항만 협의, 구체적 배분내역은 부처 자율결정
- ⑥ 예산배정(기획재정부 → 각 부처) : 익년 1월
- ⑦ 전 회계연도 세부집행실적 제출(각 부처 → 기획재정부) :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⑧ 당해 회계연도 세부사업 시행계획 및 전 회계연도 세부집행실적 국회 예결위 제출 (각 부처 → 예결위)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2년도 총액계상사업 예산 현황

2022년 총액계상사업 예산규모는 2조 7,9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186억원(8.5%) 증가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등 총 4개 부처에 편성되어 있고, 최근 4년간 총액계상사업 예산규모는 예산 순계의 약 0.6% 수준이다.¹¹³⁾

2022년도 총액계상사업 전체 예산액 대비 부처별 비중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가 60.5%로 가장 비중이 크며, 농림축산식품부 24.4%, 문화재청 14.4%, 해양수산부 0.7% 순이다.

부처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국토교통부는 2021년 추가경정예산 대비 1,658억 3,600만원 (10.9%), 농림축산식품부는 457억 8,600만원(7.2%), 문화재청은 70억원(1.8%) 증가하였고, 해양수산부는 전년과 동일하다.

[2022년 부처별 총액계상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본예산(B)	증감	
		본예산	추경(A)		B-A	(B-A)/A
국토교통부	1,469,109	1,524,932 (59.2)	1,524,932 (59.2)	1,690,768 (60.5)	165,836	10.9
- 도로유지보수	659,202	664,406	664,406	773,372	108,966	16.4
-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809,907	860,526	860,526	917,396	56,870	6.6
-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	-	-	-	-	-
농림축산식품부	565,614	636,463 (24.7)	636,463 (24.7)	682,249 (24.4)	45,786	7.2
- 수리시설 개보수	565,614	636,463	636,463	682,249	45,786	7.2
해양수산부	26,640	19,035 (0.7)	19,035 (0.7)	19,035 (0.7)	-	-
- 항만시설 유지보수	26,640	19,035	19,035	19,035	-	-
문화재청	393,300	397,000 (15.4)	397,000 (15.4)	404,000 (14.4)	7,000	1.8
- 문화재 보수정비	393,300	397,000	397,000	404,000	7,000	1.8
합계	2,454,663	2,577,430	2,577,430	2,796,052	218,622	8.5

주: 1. 괄호 내 수치는 연도별 전체 총액계상사업예산 중 해당 부처가 차지하는 예산의 구성비

2. 국토교통부 도로구조물 기능개선 사업은 2020년부터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으로 통합

자료: 각 부처 사업설명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13) 최근 5년간 총액계상사업의 예산규모(본예산 기준)는 2018년 2.0조원으로 예산순계(330.8조원)의 0.6%, 2019년 2.2조원으로 예산순계(361.8조원)의 0.6%, 2020년 2.4조원으로 예산순계(386.2조원)의 0.6%, 2021년 2.6조원으로 예산순계(417.4조원)의 0.6%, 2022년 2.8조원으로 예산순계(455.8조원)의 0.6%, 수준이다.

9. 재난안전사업

재난안전사업의 개념 및 분류체계

재난안전사업은 재난관리 및 안전관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¹¹⁴⁾상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하며,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행정안전부는 자연재난,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공통 분야로 재난안전사업을 분류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매년 기획재정부와 협의하여 재난안전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 편성 시 29개 중앙행정기관의 394개 사업이 재난안전사업으로 선정되었다.

[재난·안전사업 분류체계]

분야	피해유형(43)
자연재난	풍수해, 산사태,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설·한파, 폭염, 낙뢰 등 기타 9개 유형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화재·폭발, 산불, 시설물 재난·사고, 교통 재난·사고, 방사능 재난·사고,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미세먼지, 수질오염, 해양오염, 감염병, 가축 및 수산생물 전염병, 생활·레저 사고, 산업재난·사고, 식품 사고, 의료제품 사고, 범죄, 자살, 전시재난·테러 등 26개 유형
공통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구조·구급 및 응급의료, 재난 구호 및 복구, 재난 안전관리체계, 국가핵심기반 사고, 안전취약계층 지원, 해외재난관리, 교부세 및 기타 등 8개 유형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예산 현황

재난안전 사업 예산 및 사업수는 본예산 기준으로 2017년 14.6조원, 2018년 15.2조원, 2019년 15.9조원, 2020년 17.5조원, 2021년 20.6조원, 2022년 예산은 21.9조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11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재난관리”란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4.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최근 재난안전예산 예·결산 현황]

(단위: 조원, %)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	2020년 예산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본예산(계획)	14.6	15.2	15.9	17.5	20.6	21.9
추가경정(수정)예산(A)	14.9	15.3	17.2	18.8	20.6	-
집행액(B)	13.4	13.5	16.5	18.5	-	-
집행률(B/A)	90.0	88.1	95.8	98.6	-	-
총지출 대비 재난안전사업 비중(본예산)	3.6	3.5	3.4	3.4	3.7	3.6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재난안전예산(21.9조원) 규모는 전년 대비 6.5% 증가하였으며, 총지출 대비 3.6% 수준이다. 재난안전사업 유형별 재난안전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 기준 풍수해·산사태 등 자연재난 관련 예산이 5조 1,304억원(23.4%), 화재·폭발·교통사고 등 사회재난 및 안전사고 관련 예산이 11조 2,709억원(51.4%),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등 공통 관련 예산이 5조 5,145억원(25.2%)이다.

[재난안전사업 유형별 재난안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분야	유 형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증감률
합 계		205,691	219,160	13,469	6.5
자연 재난	풍수해	33,241	33,006	△235	△0.7
	산사태	1,729	2,400	671	38.8
	가뭄	10,539	11,532	993	9.4
	지진	3,039	3,464	425	14.0
	황사	143	139	△5	△3.5
	조류	309	712	403	130.4
	대설·한파	1	1	-	-
	폭염	70	50	△20	△28.6
	낙뢰 등 기타	-	-	-	-
	자연재난 소계	49,070	51,304	2,233	4.6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화재·폭발	313	753	441	140.9
	산불	1,177	1,230	53	4.5
	시설물 재난·사고	936	972	36	3.8
	도로교통 재난·사고	26,994	28,455	1,460	5.4

분야	유형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감	증감률
사회 재난 및 안전 사고	철도교통 재난·사고	18,676	19,253	577	3.1
	항공교통 재난·사고	661	640	△21	△3.2
	선박 재난·사고	5,149	5,134	△15	△0.3
	방사능 재난·사고	1,822	1,248	△574	△31.5
	유해화학물질 재난·사고	303	118	△185	△61.1
	미세먼지	9,643	7,136	△2,507	△26.0
	수질오염	1,734	1,780	45	2.6
	해양오염	192	251	59	30.7
	감염병	5,983	20,025	14,042	234.7
	가축 및 수산생물전염병	3,923	4,021	98	2.5
	승강기 사고	44	43	△1	△2.3
	전기·가스 사고	1,126	1,150	24	2.1
	등산·레저 사고	194	182	△12	△6.2
	물놀이 사고	21	16	△4	△19.0
	생활제품 사고	73	-	△73	△100.0
	사업장 산재	9,777	10,971	1,194	12.2
	농어업 사고	2,098	2,100	2	0.1
	식품 사고	3,327	3,316	△11	△0.3
	의료제품 사고	577	576	△1	△0.2
	범죄	1,768	2,374	606	34.3
자살	380	462	82	21.6	
전시재난·테러	518	503	△15	△2.9	
사회재난 소계	97,409	112,709	15,301	15.7	
공통	재난안전관리체계	2,290	2,501	211	9.2
	안전문화 및 교육·훈련·홍보	224	249	26	11.6
	구조, 구급 및 응급의료	2,931	2,956	25	0.9
	재난구호 및 복구	33,982	28,116	△5,866	△17.3
	국가핵심기반 사고	1,398	1,260	△138	△9.9
	안전취약계층 지원	814	889	75	9.2
	해외재난 관리	159	164	5	3.1
	교부세 및 기타	17,414	19,010	1,596	9.2
	공통 소계	59,212	55,145	△4,065	△6.9

자료: 행정안전부

부처별 재난안전예산을 살펴보면, 2022년도 재난안전 사업 예산을 기준으로 전체 29개 부처에 21조 9,160억원이 편성되었다. 재난안전 사업 예산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토교통부(5조 2,860억원)이며, 농림축산식품부(3조 1,271억원), 행정안전부(3조 654억원), 기획재정부(1조 6,053억원), 질병관리청(1조 5,112억원) 순이다.

[부처별 재난안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연번	부처명	2021년		2022년		예산 증가율 (B-A/A)	주요재난안전사업
		본예산 (A)	사업 수	본예산 (B)	사업 수		
1	국토교통부	51,004	48	52,860	45	3.6	일반철도 안전 및 시설개량(11,304)
2	농림축산식품부	27,231	24	31,271	24	14.8	수리시설개보수(6,822)
3	행정안전부	36,006	63	30,654	64	△14.9	재해위험정비(6,178)
4	기획재정부	16,053	2	16,053	2	-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53)
5	질병관리청	760	10	15,112	9	1,888.4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14,008)
6	해양수산부	15,998	52	14,733	48	△7.9	국가어항(2,626)
7	환경부	14,895	49	13,605	41	△8.7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4,782)
8	고용노동부	9,581	8	10,727	8	12.0	클린사업장조성지원(4,509)
9	보건복지부	8,431	39	8,876	39	5.3	중증외상전문 진료체계 구축(670)
10	산림청	4,714	8	4,164	8	△11.7	사방사업(2,267)
11	식품의약품안전처	3,186	37	3,113	37	△2.3	어린이먹을거리 안전관리강화(584)
12	해양경찰청	2,432	11	2,924	11	20.2	방제정 건조(153)
13	교육부	2,546	4	2,507	4	△1.5	학생건강지원강화(11)
14	경찰청	2,003	8	2,352	11	17.4	교통과학장비관리(1,452)
1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710	20	2,081	17	△22.9	해킹바이러스 대응체계 고도화(634)
16	산업통상자원부	2,385	13	1,870	11	△21.6	일반용 전기설비 안전점검(1,046)
17	국방부	1,035	2	1,604	2	55.0	내진성능 평가 및 공사(1,267)
18	기상청	1,204	24	1,252	23	4.0	지상·고층 기상관측망 확충 및 운영(193)
19	소방청	1,086	17	928	17	△14.5	중앙119 특수구조대 지원(351)
20	법무부	607	4	689	4	13.5	전자감독(274)
21	여성가족부	515	6	559	6	8.5	가정폭력 피해자지원(362)
22	원자력안전위원회	474	5	438	5	△7.6	방재환경기반구축(106)

연번	부처명	2021년		2022년		예산 증가율 (B-A/A)	주요재난안전사업
		본예산 (A)	사업 수	본예산 (B)	사업 수		
23	농촌진흥청	274	2	257	2	△6.2	농작업 재해예방(21)
24	중소벤처기업부	205	5	226	3	10.2	시장경영혁신지원(226)
25	외교부	139	1	146	1	5.0	재외국민보호(146)
26	문화체육관광부	158	6	142	6	△10.1	안전한 스포츠활동 지원(50)
27	대법원	9	2	9	1	-	법원시설관리(9)
28	방송통신위원회	11	1	8	1	△84.6	방송분야 재난관리지원(8)
29	문화재청	10	1	3	1	△70.0	문화재방재 드론 스테이션 구축(3)
합 계		205,691	472	219,160	451	6.5	

주: 부처는 2022년 예산 규모 순으로 정렬. 기획재정부 사업에는 예비비(1조 6,000억원)가 포함됨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사전협의 및 평가제도

재난안전사업 예산에 대한 관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¹¹⁵⁾ 및 제10조의3¹¹⁶⁾에 따른 사전협의·평가제도 중심의 체계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 재난안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면, 그 결과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에 일부 반영되어 투자우선순위 등이 정해지고, 기획재정부는 이를 토대로 예산안을 편성한다.¹¹⁷⁾

115) 제10조의2(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0조의3에서 같다)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와 해당 기관의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투자우선순위 의견을 매년 1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예산요구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기사업계획서, 투자우선순위 의견 및 예산요구서를 검토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 방향
2. 관계 중앙행정기관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투자적정성, 중점 추진방향 등에 관한 사항
3.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유사성·중복성 검토결과
4. 그 밖에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투자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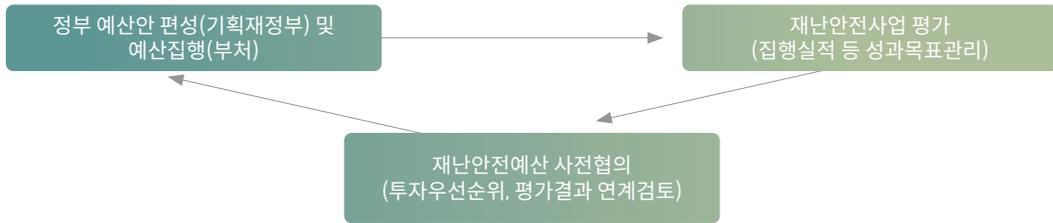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116) 제10조의3(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117)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제도는 2016년도 예산 편성 시부터 실시되었고,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2016년 시범평가를 거쳐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 및 평가 체계]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 평가제도는 행정안전부가 각 부처의 재난안전사업의 효과성 및 효율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과정에 활용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먼저 재난안전사업 소관 부처에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행정안전부가 다시 평가를 실시하여 자체평가 점수와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를 합산 후 상대평가로 3개 등급(우수, 보통, 미흡)을 부여한다.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는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시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반영하고 있다.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제도]

- (절차) 자체평가(부처) → 평가단 평가(행정안전부) → 결과 종합(행정안전부) → 의견제시(부처) → 자문위원회 개최 및 평가결과 확정(행정안전부)
- (결과 산출) 자체평가 점수(50점), 행정안전부 평가 점수(50점)과 가·감점을 합산, 상대평가로 사업별 우수, 보통, 미흡 3단계 등급 부여
 - 가·감점은 사회적 가치 실현(+3) 등
 - 우수 20% 이하, 보통 70% 내외, 미흡 10% 이상 부여

자료: 행정안전부

2020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평가에서는 총 257개 사업을 평가하여, 48개(20%)의 사업이 우수등급을, 169개(70%)의 사업이 보통등급을, 24개(10%)의 사업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미흡등급을 받은 주요 이유는 피해 저감·제도 개선 성과 부족, 목표 달성률 미흡, 예산집행률 저조 등이었다.

[2020회계연도 재난안전사업 평가 결과]

(단위: 개)

분야	재난 사고 유형	사업수	평가 등급			미분류
			우수	보통	미흡	
총 계	37	257	48 (20%)	169 (70%)	24 (10%)	16
자연재난	5	50	9	32	6	3
사회·안전사고	25	153	29	98	14	12
공 통	7	54	10	39	4	1

주: 재난사고 유형별로 상대평가를 실시함에 따라 18개 사업은 평가등급 미분류(재난사고 유형에 해당하는 사업이 2개 이하인 경우)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사업예산 사전협의제도는 재난안전사업 예산의 통합적·전문적 관리와 투자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적 장치이다. 각 부처가 소관 재난안전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면,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를 검토 후 사업별 투자우선순위(가, 나, 다 3개 등급) 및 핵심사업(전체 예산안의 10% 이내) 등을 정하여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통보한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안전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편성하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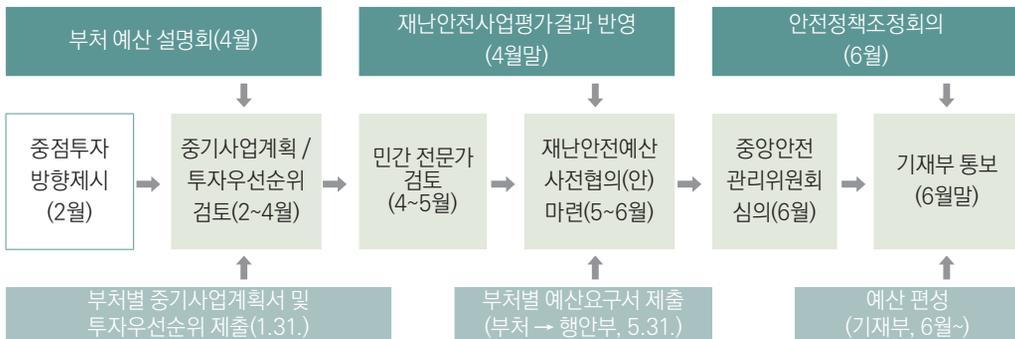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제도]

- 부처에서 제출한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등을 분석하여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등급 및 핵심사업 10% 선정

「가」등급	투자확대 40%(사업수 기준) * 핵심사업 포함	「나」등급	투자유지 50%	「다」등급	투자축소 10%
-------	-------------------------------	-------	----------	-------	----------

※ ‘핵심사업’은 투자확대 사업 중 국민 생활·안전과 밀접하고 재난안전 정책 기여도가 큰 사업

- (추진절차) 민간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사업별 투자우선순위 등 심의·확정 후 기재부 통보



자료: 행정안전부

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 기준으로 사업 필요성 및 사업의 기대 효과가 40% 반영되고,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가 30% 반영되며, 투자 여건이 30% 반영된다.

[투자우선순위 선정 세부기준]

평가 기준		비 중
사업 필요성 및 기대효과 (40%)	피해현황(인적·물적 피해규모, 발생 빈도, 파급력 등)	10%
	사회적 이슈 및 위험 전망(최근 부각된 위험성, 향후 피해 발생 가능성 등)	15%
	사업의 기대효과(재난·사고 예방 및 저감 효과 등)	15%
사업 실적 (30%)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우수 30, 보통 15, 미흡 0)	30%
투자 여건 (30%)	공급주체 측면(부처에서 제출한 투자우선순위)	20%
	범정부 측면('22년 중점투자유형, 범부처 종합계획 연계 수준)	10%

주: 2022년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2022년 예산 기준 핵심사업 39개를 포함한 158개 사업이 가등급, 197개 사업이 나등급, 39개 사업이 다등급을 받았다.

[재난안전예산 사전협의 결과]

연도	구 분	투자확대('가' 등급)	투자유지('나' 등급)	투자축소('다' 등급)
2020년	사업수	171개(7.8조원) *핵심사업 40개 포함	205개(6.7조원)	42개(0.7조원)
	비율	40.9%	49.0%	10.0%
2021년	사업수	160개(11.5조원) *핵심사업 40개 포함	199개(8.8조원)	40개(0.7조원)
	비율	40.1%	49.9%	10.0%
2022년	사업수	158개(11.0조원) *핵심사업 39개 포함	197개(11.7조원)	39개(0.5조원)
	비율	40.1%	50.0%	9.9%

자료: 행정안전부

10. 공적개발원조(ODA)

의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개발원조위원회(OECD DAC)의 정의에 따르면, 공적개발원조(ODA¹¹⁸⁾란 '원조공여국이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자체 재정자금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원조'로 규정되며, 개발도상국 정부, 지역 및 국제기구에 제공되는 자금이나 기술협력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나타난다. 폭넓은 개념으로는 국제개발협력(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이 사용되기도 하는데, 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 개발도상국과 개발도상국 간, 혹은 개발도상국 내의 개발 및 빈부격차 해소를 통해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과 행동을 의미한다.

한국은 수원국에서 공여국이 된 최초의 사례로서 ODA를 통한 경제·사회 발전의 우수 모델로 인식되고 있다. 해방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 약 127억 불을 지원받았으며, 1960년대부터는 원조공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ODA 인정요건 및 지원방식

OECD DAC는 금융조건 개정 권고안(Revised DAC Terms Recommendation)에 따라 ODA 정의에 관한 네 가지 조건(공여 주체·대상·목적·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첫째, 공여 주체는 공여국의 중앙·지방정부, 산하 집행기관 등 공적기관이 되어야 하고, 둘째, 공여 대상은 OECD DAC가 정하는 개발도상국¹¹⁹⁾이나 국제기구에 포함되어야 하고, 셋째, 공여 목적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에 있으며, 군사원조, 종교적 지원, 학술·문화교류 등 비경제적 목적은 제외되며, 넷째, 공여 조건은 양허적(concessional) 조건, 즉, 수원국이 국제자본시장 내 상업적 조건으로 확보 가능한 자금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어야 하며, 소득수준별 적격 증여율 기준¹²⁰⁾이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형태는 전달경로 및 조건 부과 여부 등에 따라 분류된다. 우선, 전달경로에 따라 '양자원조'와 '다자원조'로 구분된다. 양자원조는 상환의무가 없는 '무상원조(증여)'와 상환의무가 있는 '유상원조(양허성 차관)'로 나뉘며, 다자원조는 UN 등 국제기구 활동에 대한 재정적인 기여나 다자개발은행에 자본금을 출자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방식으로 구성된다. 이외에도, ODA의 지원

118)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119) DAC List of Aid Recipients에 해당하는 국가

120) 최빈·저소득국 45% 이상, 하위중소득국 15% 이상, 상위중소득국 10% 이상

형태는 조건 부과 여부에 따라 ‘구속성(Tied) 원조’와 ‘비구속성(Untied) 원조’로 나뉘기도 하며, 그중 구속성 원조는 ODA 사업에 관한 입찰자격을 해당 공여국 및 일부 국가에 한정하거나 조달처를 제한하는 반면, 비구속성 원조는 입찰자격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조달할 수 있는 형태로 구분된다.

[ODA 지원 형태]

구분	상환의무 유무	원조 유형
양자 원조	무상원조(증여): 상환의무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 지원 -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 프로젝트 원조 - 전문가 파견 및 기타 기술협력 - 개발도상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유상원조(비증여): 상환의무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구제 - 행정비용 - 기타 공여국 내 지출
다자 원조	국제기구 출연(분담금) 및 출자 국제기구에 대한 양허성 차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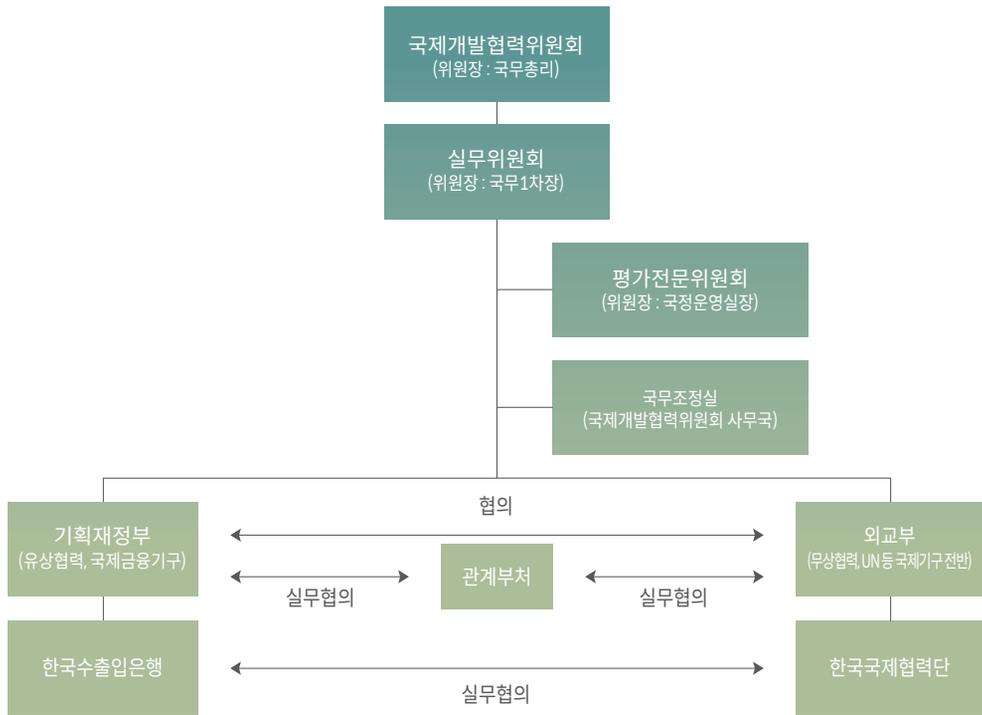
자료: 국무조정실,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2020.12., p.16

추진체계

한국 ODA는 과거부터 유상·무상원조의 이원화 구조로 추진되었으며 점차 그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유·무상원조 간 조정체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다. 이를 토대로 현행 ODA 추진체계는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근거하여 총괄·조정기관(국제개발협력위원회), 주관기관(기획재정부, 외교부), 시행기관(한국수출입은행, KOICA,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3단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총괄 및 조정기구로서 ODA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국제금융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주관하고 한국수출입은행에 대외협력기금(EDCF)을 위탁하여 유상원조를 관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UN 등 국제기구를 통한 다자협력을 주관하고 시행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통해 무상원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ODA 추진체계]



자료: 국무조정실,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2020.12., p.67

ODA 사업 예산편성·집행 절차

ODA 사업 예산편성을 위해서는 종합시행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종합시행계획은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국제개발협력 추진전략과 사업계획 등이 포함되어 있다.¹²¹⁾

먼저 시행기관에서 제출한 기관별 시행계획안을 주관기관이 종합·검토하여 분야별 시행계획안을 구성하고, 이를 국제협력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조정·심사하여 종합시행계획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친다. 다음으로 종합시행계획을 근거로 각 부처에서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게 되는데,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 편성시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해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면 이를 반영해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한다.

121) 「국제개발협력기본법」제11조에 따르면,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5년마다 주관기관이 제출한 분야별 기본계획안을 조정·심사하여 종합기본계획을 의결·확정한다. 동법 제14조에 따르면, 위원회는 종합기본계획에 따라 종합시행계획을 매년 심사·의결하여 확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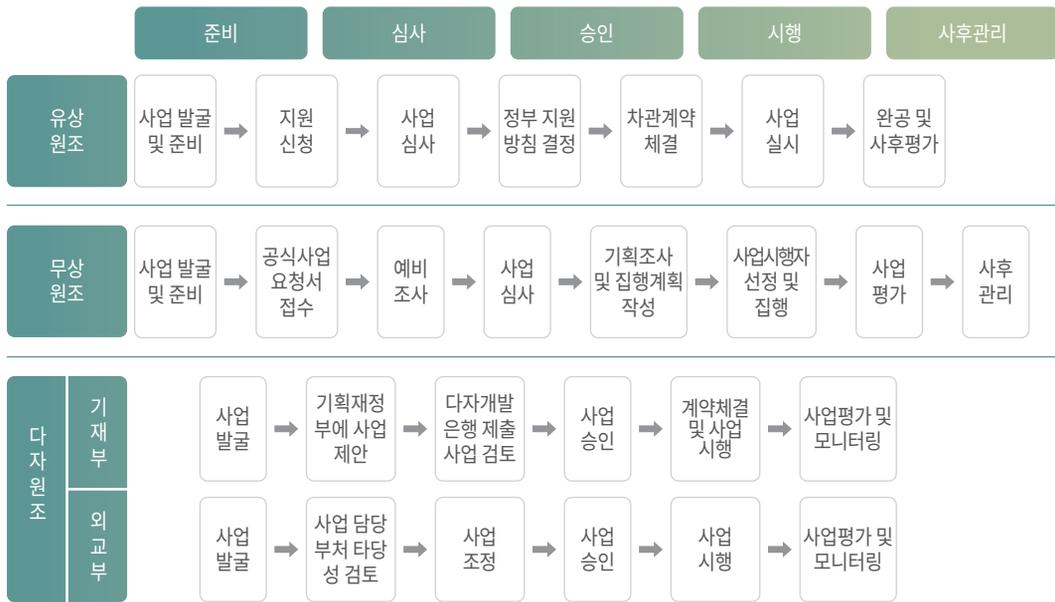
[ODA 사업 예산편성 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2020.12., p.77

한편, ODA 정책방향에 관한 결정은 위원회에서 추진하지만, 실제 사업 집행은 각 시행기관이 담당하고 있다. 한국수출입은행, KOICA 등이 ODA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 절차는 유형별로 상이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준비-심사-승인-시행-사후관리 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유형별 ODA 사업 예산집행 절차]



자료: 국무조정실, 「2020 대한민국 ODA 백서」, 2020.12., pp78-80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2년도 ODA 사업예산 현황

2022년 ODA 사업 예산규모는 4조 425억으로 전년 대비 2,882억원(7.7%) 증가하였으며, 양자간원조는 3,220억원(유상원조 1,333억원, 무상원조 1,887억원), 다자간원조는 823억원이다.

[2022년 ODA 사업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A)	2022(B)	증 감	
				B-A	(B-A)/A
총ODA	34,270	37,543	40,425	2,882	7.7
양자간원조	2,775	2,926	3,220	294	10.0
- 유상원조	1,185	1,258	1,333	75	6.0
- 무상원조	1,590	1,668	1,887	219	13.1
다자간원조	652	828	823	△5	△0.6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2.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2년도 ODA 사업의 부처별 예산규모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가 1조 6,090억원(44.0%)으로 가장 비중이 크며, 외교부 1조 4,446.1억원(39.6%), 농림축산식품부 1,053억원(2.9%), 교육부 949억원(2.6%), 산업통상자원부 699억원(1.9%) 등의 순이다.

부처별 증감현황을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 확정액 대비 155억원(1.0%), 외교부는 2,137억원(17.3%), 농림축산식품부는 47억원(4.7%), 교육부는 166억원(21.3%), 산업통상자원부는 178억원(34.1%), 증가하였다.

[2022년 ODA 사업 부처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2021(A)	2022(B)	증 감	
				B-A	(B-A)/A
총ODA	31,136.5	33,611.2	36,550.9	2,939.7	8.7
기획재정부 (EDCF 포함) ¹⁾	14,222.7	15,934.1	16,089.5	155.4	1.0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²⁾	11,980.8	12,323.9	14,460.7	2,136.8	17.3
농림축산식품부	889.5	1,005.8	1,052.7	46.9	4.7
교육부 (교육청 포함) ³⁾	766.1	782.7	949.1	166.4	21.3
산업통상자원부	454.6	521.2	698.8	177.6	34.1
보건복지부	584.5	677.4	619.7	△57.7	△8.5
국무조정실	90.9	98.5	100.7	2.2	2.2
지방자치단체	98.5	76.4	61.7	△14.7	△19.2
기타	2048.9	2191.2	2518.0	326.8	14.9

주: 1) '22년도 ODA 예산 기준, 기획재정부(본부)는 2,755.3억원, EDCF는 13,334.2억원

2) '22년도 ODA 예산 기준, 외교부(본부)는 5,358.0억원, 한국국제협력단은 9,102.7억원

3) '22년도 ODA 예산 기준, 교육부는 931.9억원, 교육청은 17.2억원

1. 사업예산 규모는 ODA 계상비율에 따라서 ODA로 인정되는 액수만 포함

2. '22년 다자협력 중 국제금융기구 출자금 1,052억, 양허성 기금 2,695억, IMF 특별인출권 활용 출연금 503억의 경우 ODA 총규모에는 포함되지만 기관별 사업예산에는 미포함
(단, GCF에 관한 양허성기금 376억원은 사업예산에 포함)

3. '20년 41개(지자체 10개 포함), '21년 42개(지자체 10개 포함), '22년 44개(지자체 11개 포함) 기관이 참여하였음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2022년 기준 44개 시행기관이 1,76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시행기관인 한국수출입은행과 KOICA 외에도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¹²²⁾, 공공기관 등에서 ODA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시행기관의 수와 ODA 규모가 확대되면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와 주관기관의 조정 역할이 강화되고 있으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OECD DAC에서 정한 SDGs¹²³⁾의 방향성에 부합하는지, 수원국에 대한 자원배분이 우리나라의 외교전략 등과 부합하는지, 수원국의 환경을 고려하여 적정예산 및 사업기간이 계획되었는지 등 조정절차의 타당성 관련 논의가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 ODA 사업수 현황]

(단위: 개)

시행부처(기관)	사업수	사업명
합계(44개)	1,765	
기획재정부 (수출입은행 포함)	305	경제발전경험공유사업(KSP), 국제금융기구출연, 에티오피아 남부 국가전력망 확충사업 등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포함)	800	국제기구분담금 및 인도적 지원, 국별협력사업, 해외봉사단, 글로벌연수 등
농림축산식품부	62	국제농업협력사업(ODA) 등
교육부 (교육청 포함)	97	글로벌 코리아 스칼라십, 교육부 교류협력국 교육정보화 지원 매칭사업 등
산업통상자원부	67	산업 및 에너지협력개발지원(ODA) 등
보건복지부	41	캄보디아 서부지역 통합모자보건증진사업 등
국무조정실	17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 등
지방자치단체(11개)	29	개도국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 등
기타	347	지능형 교통 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해외농업기술개발지원(KOPIA, 다자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 고용휴직 제도운영 등

주: 1. 교육청 예산은 교육부 매칭사업으로 기관 수 및 사업 수에는 미포함

2. 총 44개 기관(지자체 11개 포함)이 참여하였음

자료: 국제개발협력위원회, 「2022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확정액 기준)」, 2022.1. 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122) 지방자치단체 ODA는 '05년 27억원에서 '22년 61.7억원 규모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23) UN에서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의 후속 의제로 지속가능한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설정하며 인도주의적·상호의존적 가치에 기반한 국제개발협력을 권고하고 있으며, 17개 목표 및 169개 세부목표로 구성되어 있다.

11. 성인지예산제도

의의

성인지예산제도(gender-responsive budgeting)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집행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혜택을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이다.¹²⁴⁾

성인지예산은 여성을 위한 별도의 예산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 그리고 각 성별의 다양한 집단에 대한 예산의 차별적 효과를 보여주기 위한 정부예산 분석이고 성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예산으로 전환¹²⁵⁾하는 것이며, 성평등이란 여성과 남성이 50대 50으로 예산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여성과 남성의 수요를 잘 반영한 혜택이 제공되어야 함을 의미한다.¹²⁶⁾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는 '정부는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있어서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을 명문화하고 있다. 또한 동법 제26조 및 제68조의2는 '정부는 예산·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각 보고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성인지예산 편성에 대하여 구체화하고 있다.

성인지예산 집행이 완료된 후 사후적 제도를 살펴보면, 같은 법 제57조 및 제73조의2에서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기금의 혜택을 받고 예산·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성인지 결산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성인지결산제도를 명시하고 있다. 정부는 성인지결산 결과를 「국가재정법」 제16조제5호에 따라 정부의 예산편성에 환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운영체계

성인지예산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여성가족부와 협의하여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고 각 부처로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고¹²⁷⁾, 여성가족

124)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0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 2019.

125) Budlender&SharpwithAllen, Kerri, 1998.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I)」, 2019에서 재인용)

126)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10년 평가와 과제(I)」, 2019.

12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9조(성인지 예산서의 내용 및 작성기준 등) ② 성인지 예산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여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 제시한 작성기준(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기준을 포함한다) 및 방식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작성한다.

부 산하기관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은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을 담당하며,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인지예산센터는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지원을 담당한다.

성인지 예산서 작성과 관련하여,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에서는 대상사업 선정기준은 제시 하되 대상사업의 선정은 성평등 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 여부를 고려하여 각 부처가 발굴·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는 각 부처의 성인지 예산서를 취합하고 대상사업을 협의·조정 한 뒤, 국회에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성인지 예산서를 제출한다. 성인지 결산서의 경우, 각 부처가 해당 회계연도의 성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성평등 목표 추진결과를 고려하여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기획재정부가 취합·검토한다. 이에 대하여 감사원이 성인지결산 검사를 수행한 후 기획재정부는 국회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성인지 결산서를 제출한다.

[성인지예산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및 기능]

기관명	역할 및 기능
기획재정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침 작성·배포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성인지 예산서 취합·검토 • 성인지 예산서 국회 제출
여성가족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기준 마련 • 성인지 예산서 작성교육 및 지원 총괄
해당 부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및 작성
감사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결산 검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성인지예산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지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부처 사업담당자 교육

자료: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22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 매뉴얼(2021.5.)」 및 「202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 작성 매뉴얼(2020.12.)」을 바탕으로 재작성

제도 도입 및 경과

「국가재정법」(2007.1.1.시행, 2006.10.4.제정, 법률 제8050호)에 성인지 예·결산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 조항이 마련되어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성인지예산제도가 적용되었다. 이에 따라 29개 기관 195개 세부사업, 7조 3,144억원 규모의 2010년도 성인지 예산서가 최초로 국회에 제출(2009.10.1.)되었으며,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동 예산서에 바탕을 둔 2010회계연도 성인지 결산서가 국회에 제출(2011.5.30.)되었다.

이후 계속하여 성인지 대상사업의 개편 및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의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2010년 5월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2011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성인지예산제도의 범위에 예산사업 외의 기금사업도 포함되었으며, 성인지 예산서에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성인지 결산서에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문화되었다.

각 연도 성인지 예·결산 작성지침을 통한 개편사항을 살펴보면, 2011년부터는 성평등 목표와 관련되는 성과목표 설정 및 실적치를 작성하도록 하고, 2012년에는 성인지 결산서 작성 시 해당 사업과 관련된 성평등 현황 및 추진실적, 향후 개선사항 등을 작성하도록 하여 성인지적 성과관리를 강화하였다. 2015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시 기존 기획재정부와 여성가족부가 결정하여 각 기관별로 하향식으로 통보하는 방식에서 기획재정부·여성가족부가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 기준만을 제시하고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사업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였다.

2018년에는 성인지 대상사업 선정기준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상사업 선정기준을 직접목적사업과 간접목적사업으로 개편하였다. 직접목적사업은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를 포함하고 있는 사업이며, 간접목적사업은 사업의 고유목적이 있으며 성평등을 1차적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사업 수행의 결과가 간접적으로 성평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이다. 2020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시부터는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¹²⁸⁾을 선정·포함하여 성인지적 재정운용을 위한 중점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2020년 10월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 운영규정¹²⁹⁾」 제정을 통해 2021년부터는 기존의 관계부처 상설협의체를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로 개편하고, 협의회 내에 전문평가위원회를 신설하여 대상사업 선정 및 성과관리, 성인지 예·결산 관련 주요사항 등에 대한 심의 기능을 하도록 하였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 현황

국회 심의를 거친 2022년도 본예산 기준 성인지예산은 39개 중앙관서의 341개 대상사업에 대하여 작성되었으며, 예산규모는 27조 3,06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07.7조원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2021년도 추경 기준 38개 중앙관서, 304개 대상사업, 36조 9,132억원에 대비하여 사업 수는 12.2%인 37개 사업이 증가하였고, 예산규모는 △22.6%인 7조 9,789억원이 감소한 것이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특별회계 사업이 244개 사업 10조 9,832억원, 기금 사업이 97개 사업

128) 2020·2021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 성폭력, 데이터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사업, 2022년도 성평등 추진 중점사업: 중앙정부가 취업취약계층의 고용창출 및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재정을 지출하는 사업

129) 기획재정부 훈령. 2020.10. 제정, 2021.1. 시행

16조 3,233억원으로, 전년도(추경기준)와 비교하여 일반·특별회계 사업은 7조 373억원 감소하였고, 기금 사업은 9,416억원 감소하였다.

[2022년도 성인지예산 현황]

(단위: 개, 억원, %)

구분		2021(A)	2022(B)	증감(B-A)	증감률 (B-A)/A
중앙관서 수		38	39	1	2.6
회계	예산	180,205 (183,063)	109,832	△70,373	△39.1
	사업 수	225 (225)	244	19	8.4
기금	예산	172,649 (186,069)	163,233	△9,416	△5.5
	사업 수	79 (79)	97	18	22.8
합 계	예산	352,854 (369,132)	273,065	△79,789	△22.6
	사업 수	304 (304)	341	37	12.2

주: 본예산 기준으로, () 안의 수는 2021년 추경포함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12. 국민참여예산제도

의의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예산과정 중 제안·심사·우선순위 결정에 참여함으로써 재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는 제도로, 「국가재정법」 제16조제4호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다.¹³⁰⁾

130) 「국가재정법」

제16조(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7조의2(예산과정의 국민참여) ① 정부는 법 제16조제4호에 따라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산과정의 국민참여를 통하여 수렴된 의견을 검토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예산편성 시 반영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의견수렴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민으로 구성된 참여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시책의 마련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2022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의의	중앙정부 예산과정에 일반 국민을 참여시킴으로써 재정의 민주성·투명성 제고	
유형	제안형	국민제안에 대한 소관 부처의 사업화 적격성 여부 심사 및 적격 제안에 대한 국민 참여 토론 및 전문가 논의를 통한 예산사업화 [주요 운영 절차] 제안 접수 → 적격성 심사(소관부처) → 지원협의회 자문 → 정부예산안 요구(소관부처) → 요구사업 검토 및 선호도투표(예산국민참여단) → 정부예산안 확정(기재부 예산실)
	토론행	국가 재정과 관련된 주요 사회 현안(국민 공모 또는 부처 선정)에 대해 국민이 참여하는 숙성 토론을 거쳐 예산사업화 [주요 운영 절차] 주제선정 → 예산사업화를 위한 토론회 → 정부예산안 요구(소관부처) → 정부예산안 확정(기재부 예산실)

주: 기획재정부의 「'23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2021.9.)」은 2023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을 위한 2022년도의 운영방식, 절차 등을 수록

자료: 기획재정부, 「'23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2021.9.을 바탕으로 재작성

현황

2022년도 국민참여예산은 사업수 71개, 예산액 1,429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2021년도와 비교하면 사업수를 기준으로 12.7%(8개), 예산액을 기준으로 22.3%(261억원) 증가하였다. 2022년도 예산 상의 국민참여예산 주요 사업으로는 기존건축물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학대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운영 등이 있다.¹³¹⁾

[국민참여예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사업수 (A)	예산 (B)	사업수 (C)	예산 (D)	사업수 ((C-A)/A)	예산 ((D-B)/B)
국민참여예산 규모	63	1,168	71	1,429	12.7	22.3
- 제안형	43	891	48	548	11.6	△38.5
- 토론형	20	277	23	880	15	217.7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131) 주요 사업은 2022년도 국회확정예산 기준 예산액 상위 2개 사업을 지칭

추진절차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2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 절차는 크게 사업제안 접수 및 숙성('22.1.~5.), 사업 검토 및 선호도투표('22.6.~7.), 정부예산안 반영(~'22.9.),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22.9.~12.)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반영을 위한 2022년 국민참여예산제도 주요 추진절차]

절 차	주요 내용
사업제안 접수 및 숙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제안 집중접수 ('22.1.~2.) • 제안사업 적격성 검토 및 사업숙성 ('22.3.~5.) (접수된 사업은 기재부에서 소관 부처 지정) • 각 부처 예산안 요구 (각 부처 → 기획재정부, ~'22.5.)
사업 검토 및 선호도투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국민참여단 사업 검토 ('22.6.) • 선호도투표 ('22.7.)
정부예산안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예산실) 예산 심의 ('22.6.~8.) • 국무회의에서 예산안 확정 ('22.9.)
국회 예산안 심의·확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회에서 정부예산안 심의·확정 ('22.12.)

자료: 기획재정부, 「'23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2021.9. 및 기획재정부, 「국민참여예산 제안 집중접수 실시」, 20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13.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의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운용하는 예산과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 편성과 집행 등 재정운용과정에 반영하는 제도를 의미한다.¹³²⁾

즉, 동 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탄소중립 및 기후변화 대응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예·결산 제도를 활용하는 것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을 통해 정부가 운영하는 재정사업의 기후변화 영향을 측정·평가하고, 관련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기후변화 목표에 근거한 재정운용 및 정책결정과정에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132) OECD, UNDP(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 및 해외 주요국가에서는 녹색예산(green budgeting), 탄소인지예산, 기후예산(climate budgeting), 친환경인지예산 등 다양한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다.

제도 도입배경 및 주요 내용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을 통해 탄소인지예산제도 도입에 관한 논의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었으며,¹³³⁾ 2021년 5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 제도의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이 명문화되었다.¹³⁴⁾

개정된 법률이 2022년 1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정부는 “2023년도 예산안”부터 예산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기금에 대해서는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예산 및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감축효과 분석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정부의 결산 시에도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여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을 포함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주요 내용]

구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대상	예산 및 기금	예산 및 기금
규정 (주요내용)	제27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u>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u>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의2(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u>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u>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시행일	2022.1.1. (2023년도 예산안부터 작성)	2022.1.1. (2023회계연도 결산서부터 작성)

자료: 「국가재정법」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133)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20.12.)은 ‘경제구조의 저탄소화’, ‘신유망 저탄소산업 생태계 조성’, ‘탄소중립사회로의 공정 전환’ 등 3대 정책방향에 더해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를 주요 추진전략으로 제시하였으며, ‘탄소중립 제도적 기반 강화’ 측면에서 재정제도의 개선 및 녹색금융 활성화 등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탄소인지예산제도는 정부의 수입·지출 전반의 재정운영 과정에서 탄소의 환경적·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관리하는 제도적 운영기반의 일환으로 포함되었다.

134) 또한, 기후위기 대응과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법적 기반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2021.9.24. 제정, 2022.3.25. 시행)에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도입 및 시행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었다.

정부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는 사업(감축사업)¹³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각 사업별 유형에 따라 정량적·정성적 분석 방식을 도입하는 등 감축효과, 감축목표 설정(예산) 및 달성 정도(결산)를 점검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운영체계 및 운영절차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체계를 살펴보면, 기획재정부는 제도의 총괄부처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기준을 마련하여 각 부처로 예·결산서 작성지침과 양식을 배포하며,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결산서 작성교육과 실무지원, 사업별 온실가스 감축기여도 및 목표달성 여부에 대한 분석을 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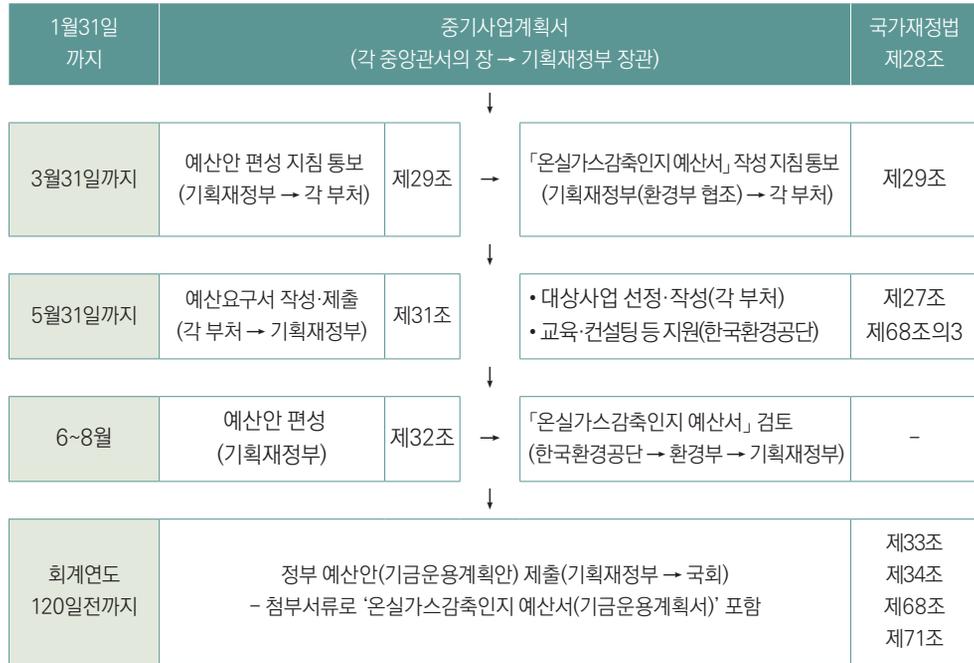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는 성인지 예산제도와 동일한 방식으로 정부의 예산·기금 편성 및 결산 절차에 포함하여 이루어진다. 먼저,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경우, 기획재정부가 예산서 작성지침 및 양식을 통보하면, 각 부처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을 발굴·작성하여 기획재정부에 제출한다. 이후 기획재정부는 제출된 예산서를 바탕으로 대상사업을 협의·조정한 뒤,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한다.

다음으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경우, 각 부처가 해당 회계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대상사업에 대해 온실가스 감축효과 및 감축목표 달성 결과 등을 고려하여 결산서를 작성하고 기획재정부가 취합·검토한다.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결산서를 감사원에 제출하면 감사원이 결산 검사를 수행하며, 기획재정부는 감사원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에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로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를 제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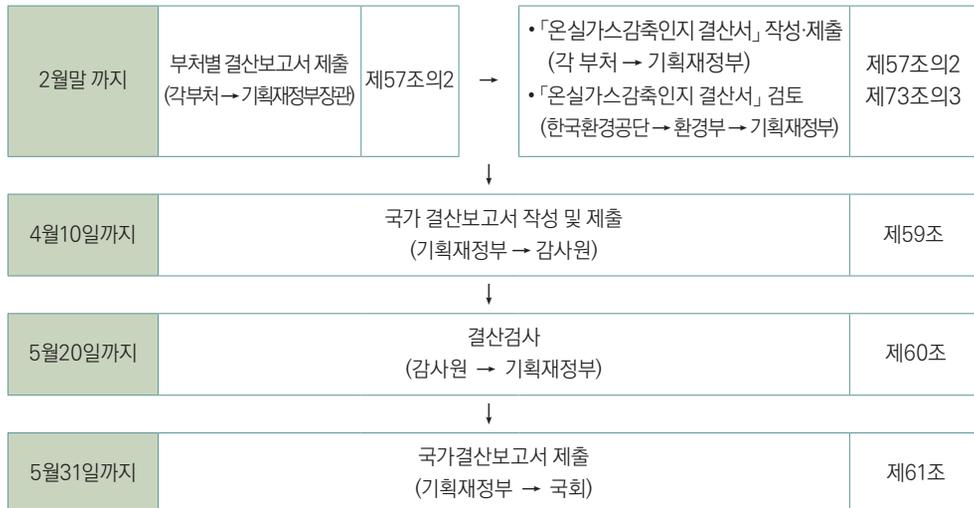
135)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의 적용대상 사업은 ①사업의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감축사업의 정의에 부합하는지, ②「제2차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등 국가의 주요 정책과 연계하여 개별 사업이 '전환', '산업', '건물', '수송' 등 감축사업 유형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기준으로 각 부처가 자체적으로 선정하며,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절차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절차



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작성 절차



자료: 기획재정부·환경부, 「2022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운영계획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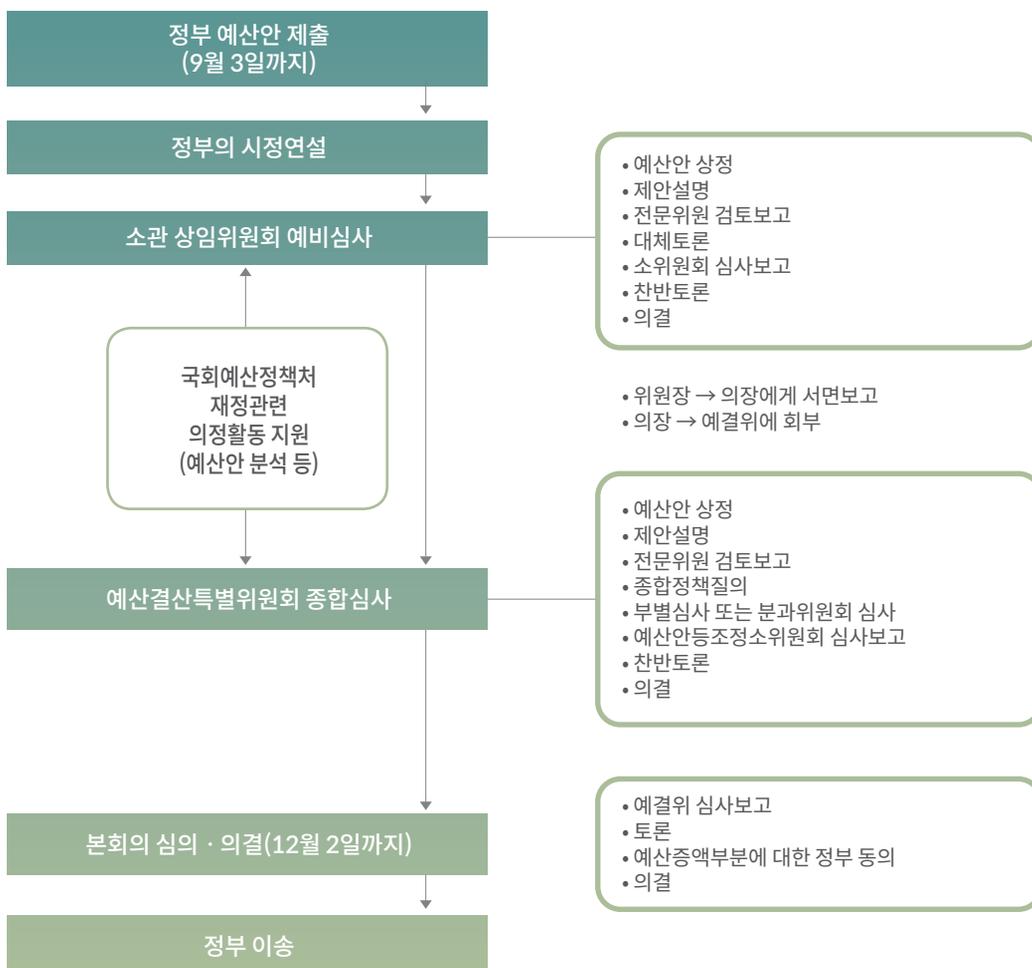
제3절 예산안 심의와 재정제도

1. 국회의 예산안 심의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은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후에 다시 정부로 이송된다. 국회의 예산안 심사절차는 정부의 시정연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의 종합심사, 본회의의 심의·의결 등으로 구성된다.

「국회법」은 예산안의 심사와 관련하여 일반 의안의 심사에 대한 특별규정을 두어 예산안의 특수성을 인정하고 있다(「국회법」 제84조부터 제84조의3까지).

[국회의 예산안 심의·확정 절차]



정부의 시정연설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국회는 본회의에서 정부의 시정연설을 듣는다.

우리나라는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제2공화국을 제외하고 대통령중심제를 채택하여 왔음에도 대통령이 국회 본회의에서 직접 시정연설을 한 사례는 많지 않고 대개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을 대독하였으나, 최근에는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늘어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서 대통령이 직접 국회 본회의에 출석하여 시정연설을 행한 경우는 1988, 2003, 2008, 2013~2021년으로, 2013년부터는 매년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시정연설의 시기는 일정하지 않은데, 국회는 본회의 일정을 고려하여 시정연설일자를 결정한다. 과거에는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기 전에 시정연설을 듣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국회법」 개정(1994.6.28.)으로 시정연설을 듣기 전이라도 소관 상임위원회에 예산안을 회부할 수 있게 되었다.

추가경정예산안도 예산안이므로 시정연설의 대상이 되며,¹³⁶⁾ 예산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에도 시정연설이 실시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국회의장이 제출된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면, 이로써 국회 예산안 심사의 실질적인 첫 단계인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개시된다. 예산안이 회부된 소관 상임위원회는 예비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의장에게 보고한다. 국회의장은 예산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할 때에는 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안을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절차는 법률안 등 일반 의안에 대한 심사와 마찬가지로 ①예산안의 상정, ②소관 부처 장관의 제안 설명, ③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④대체토론, ⑤소위원회 심사, ⑥찬반 토론 및 의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이때 기금운용계획안의 경우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와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국회법」 제84조의2 '기금운용계획안의 회부 등'에 따라 기금을 운용·관리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는 기금사업을 수행하는 부처의 소관 상임위원회로부터 기금사업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상임위원회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면 국회의장이 예비심사보고서를 예산안에 첨부하여 예

136) 제17대국회(2004~2008) 이래 2021년 12월까지 추가경정예산안이 모두 17차례 국회에 제출되었는데, 추가경정 예산안과 관련하여 대통령이 직접 시정연설을 한 것은 2017년 한차례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을 하였다.

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 회부함으로써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개시된다. 국회의장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기간을 정할 수 있으며 상임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바로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으므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예결위의 종합심사가 개시될 수 있다. 이 경우 국회의장은 예비심사보고서를 첨부하지 않고 해당 상임위원회의 예산안을 예결위에 회부할 수 있다.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예결위의 심사에 앞선 예비적인 성격을 가지며 예비심사결과는 예결위를 구속하지 못한다.¹³⁷⁾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여금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내용을 존중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 예산금액을 증가시킬 때에는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¹³⁸⁾

예결위의 종합심사는 ① 예산안의 상정, ② 정부의 제안 설명, ③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④ 종합정책질의, ⑤ 부별심사 또는 분과위원회심사, ⑥ 찬반토론, ⑦ 표결의 순으로 이루어진다. 종합정책질의는 모든 부처에 대해 예결위 위원들이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정부 측의 답변을 듣는 절차를 의미하며, 부별심사는 경제부처와 비경제부처로 나누어 부처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고 답변을 듣는다. 부별심사와 분과위원회 심사는 둘 중에 하나의 절차만 진행하는데 실제로는 부별심사로 운영되고 있다.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진행할 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각 교섭단체별 질의시간 등의 진행방법을 정한다.¹³⁹⁾

예결위는 종합정책질의와 부별심사를 마치면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1~15명 정도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소위원장은 예결위원장으로 하며, 간사는 교섭단체별로 1명씩 둔다. 2022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는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2021년 11월 16일부터 가동되었다. 예결위 위원 전체가 참여하는 종합정책질의나 부별심사에서는 행정부의 국무위원을 대상으로 각 위원별로 약 10분씩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형태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안 자체에 대한 구체적

137) 「국회법」 제84조제4항에서는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심사에 대해 그 내용의 기밀성을 고려하여 정보위원회의 심사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보고 있다. 정보위원회의 예산안 및 결산 심사 결과는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심사결과에 대한 통보가 있어도 이를 가감하거나 변경하는 등의 수정을 할 수 없다.

138)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여야 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게 하거나 새 비목(費目)을 설치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새 비목의 설치에 대한 동의 요청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회부된 때부터 72시간 이내에 동의의 여부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

139)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결위 종합심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되었다.

구분	종합정책질의	부별심사(경제부처)	부별심사(비경제부처)
실시	11월 5일, 8일	11월 9~10일	11월 11~12일

인 심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예결위의 실질적인 예산안 심사는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이루어지게 된다. 통상적으로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감액심사를 먼저 진행한 후, 증액심사를 진행한다.

본회의 심의·의결

예산안의 본회의 심의절차는 ① 상정, ②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의 심사보고, ③ 질의 및 찬반 토론, ④ 예산안 증액 및 새 비목 설치 동의, ⑤ 표결, ⑥ 의결의 순으로 진행된다. 예산은 법률과 달리 대통령에 의한 공포를 효력발생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거부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회 본회의 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의원 50인 이상의 찬성으로 가능하지만, 1970년부터 자동부외제 도입 전 해인 2013년까지 본회의 수정동의에 의해서 예산안이 의결된 경우는 단 1회에 불과하였고, 나머지 해에는 예결위 위원회안대로 통과되었다.

그러나 2014년 자동부외제 적용 이후에는 예결위의 심사 일정이 촉박해짐에 따라 본회의에서 수정동의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2015년부터 매년 예결위가 기한 내 심사를 마치지 못하여 본회의에서 정부안에 대한 수정동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다.

국회 예산심의권의 제약

「대한민국헌법」 제57조는 국회의 예산안 수정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다. 위 규정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국회의 적극적 수정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무분별한 예산증액의 폐단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지만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제약하고 재정민주주의를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예산안에 대한 외국 의회의 수정권한을 살펴보면, 미국은 의회가 스스로 정한 지출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증액 및 삭감을 할 수 있고, 일본은 수입증액이나 지출삭감만이 가능하며, 영국은 삭감만 가능하다.

2022년도 예산안의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1건의 수정안이 제출되었으며, 원안보다 증액된 부분에 대하여 「대한민국헌법」 제57조에 따른 정부의 동의를 거쳐 예산안을 의결하였다.¹⁴⁰⁾

140)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2022년도 예산안 총지출 604.4조원 대비 3.3조원이 증가(증액 8.9조원, 감액 5.6조원)한 607.7조원을 수정안으로 제출하였다. 사업계획이 미흡하거나 집행 가능성이 낮고, 시급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하고, 코로나19에 따른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과 방역 및 의료지원을 위한 예산, 아동·농어민 등 민생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을 증액하거나 신설하였다.

세입 관련 법안 처리 전 세입예산안 처리 금지 원칙

「국회법」 제84조제7항에서는 세목이나 세율과 관계있는 법률안의 제·개정을 전제로 하여 제출된 세입예산안은 심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세입예산안은 세법 등의 개정으로 인한 다음 연도의 세수증감효과를 반영하여 제출된다. 따라서 이러한 세입예산안이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확정되려면 먼저 세법 등의 내용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확정되어야 한다. 세법 등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세입예산안이 확정된다면 논리상으로 모순일 뿐 아니라 국회운영상 혼란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부대의견

국회는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면서 관례적으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으므로, 국회가 특정 예산사업의 집행과 관련된 의지를 표명하는 별도의 수단으로 부대의견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부대의견은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가 없고, 예산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정부에 대한 구속력 여부에 관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부대의견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에 포함(첨부)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부대의견의 구속력을 부인하는 것은 예산의 심의·확정권을 국회에 부여하고 있는 「대한민국헌법」 제54조의 취지에 반하는 측면이 있다. 특히 부대의견의 내용이 예산의 집행시기 및 집행조건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예산의 효력에 준하는 구속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헌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연도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국회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결위의 종합심사 등을 거쳐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는데, 제17대 국회 이후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을 비교해 보면 총 규모 면에서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의 1% 범위 내외에서 증액 또는 삭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22년도 예산안의 경우 정부가 편성한 총수입 548.8조원, 총지출 604.4조원을 심의하여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07.7조원으로 확정하였다.

[연도별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

(단위: 조원)

구 분		국회 심의 결과				처리일자
		총수입		총지출		
		정부안	국회 확정	정부안	국회 확정	
제17대 국회	2005년도 예산안	225.6	225.8	208.0	207.8	2004.12.31.
	2006년도 예산안	235.6	235.3	221.4	222.0	2005.12.30.
	2007년도 예산안	251.8	250.6	238.5	237.0	2006.12.27.
	2008년도 예산안	274.2	274.2	257.3	257.2	2007.12.28.
제18대 국회	2009년도 예산안	293.2	291.0	283.8	284.5	2008.12.13.
	2010년도 예산안	287.8	290.8	291.8	292.8	2009.12.31.
	2011년도 예산안	314.6	314.4	309.6	309.1	2010.12.8.
	2012년도 예산안	344.1	343.5	326.1	325.4	2011.12.31.
제19대 국회	2013년도 예산안	373.1	372.6	342.5	342.0	2013.1.1.
	2014년도 예산안	370.7	369.3	357.7	355.8	2014.1.1.
	2015년도 예산안	382.7	382.4	376.0	375.4	2014.12.2.
	2016년도 예산안	391.5	391.2	386.7	386.4	2015.12.3.
제20대 국회	2017년도 예산안	414.5	414.3	400.7	400.5	2016.12.3.
	2018년도 예산안	447.1	447.2	429.0	428.8	2017.12.6.
	2019년도 예산안	481.3	476.1	470.5	469.6	2018.12.8.
	2020년도 예산안	482.0	481.8	513.5	512.3	2019.12.10.
제21대 국회	2021년도 예산안	483.0	482.6	555.8	558.0	2020.12.2.
	2022년도 예산안	548.8	553.6	604.4	607.7	2021.12.3.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각 연도 나라살림 예산개요, 기획재정부 열린재정, 국회의안정보시스템

2.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지정

의의

2012년 「국회법」 개정에 따라 「대한민국헌법」상 예산안 의결 기한인 12월 2일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도입되었고, 이에 따라 세입예

산안에 부수되는 법률안을 함께 처리하기 위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절차가 마련되었다.

「국회법」 제85조의3에 따라 위원회는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에는 그 다음날인 12월 1일에 자동부된 것으로 본다. 세입예산안 본회의의 자동부의 제도는 정부안만 존재하는 세출예산안과 달리 다수의 세입예산 관련 법률안 중 예산안과 함께 자동부의해야 할 법률안을 선택(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 지정)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내년도 예산의 집행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법률안을 세입예산안 부수법률안으로 지정함으로써, 국회가 지정된 법률안에 대해 예산안과 함께 기한내에 심사를 종료하기 위한 취지가 있다.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국회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게 된다.¹⁴¹⁾

대상 법률안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세법의 제·개정안이 주요 대상이고, 세법이 아닌 법률의 제·개정안이 다음연도 세입예산안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지정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부담금 신설 등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 증감에 영향을 주는 법률안의 경우, 본회의의 자동부의 대상인 ‘예산안 등’에 기금운용계획안이 포함된 점 등을 고려하여 지정이 가능한 것으로 본다.

지정절차

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발의·제출할 때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¹⁴²⁾ 국회의장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표시된 법률안을 국회예산정책처에 송부하여 의견을 요청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다음연도 예산안과의 관련성 및 예상되는 세수효과

141)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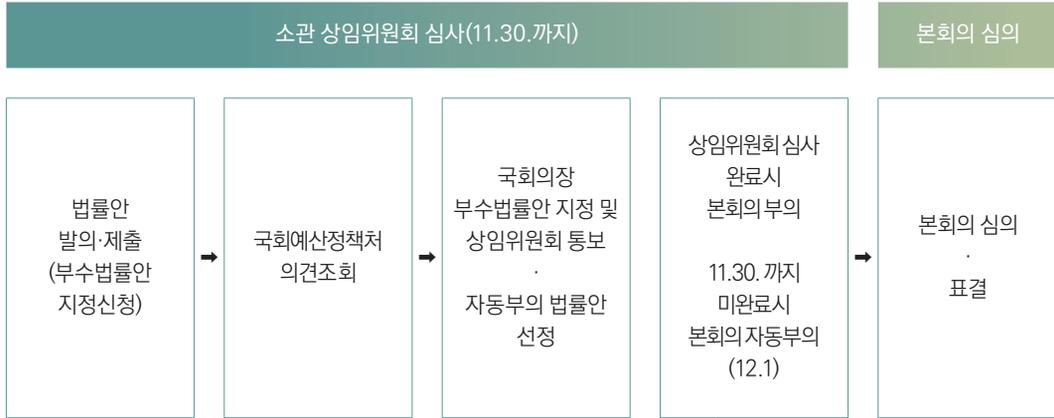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42) 법률안 표시부 ‘참고사항’에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이라는 문구를 기재한다.

등을 검토하고, 국회의장은 이를 참고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지정하여 각 위원회에 통보하게 된다.

매년 11월 30일까지 위원회의 심사가 완료되지 않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된 것으로 간주한다.¹⁴³⁾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처리절차]



제도 시행경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제도는 2012년 「국회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2014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을 신청한 법률안 374건(의원발의 256건, 정부제출 118건) 중 197건이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부수 법률안은 160건이며 이중 130건이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 2021년에 지정신청된 법률안 29건(의원발의 15건, 정부제출 14건) 가운데 17건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었다. 지정된 부수 법률안 중 위원회 대안 입안 등을 반영하여 최종적으로 총 16건이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었으며, 16건 모두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143) 단,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국회법」제85조의3제2항 단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등 현황 : 2014 ~ 2021년]

(단위: 건)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지정신청	62 ¹⁾	16	74	47	54	49	43	29	374
- 의원발의	45	4	58	35	37	34	28	15	256
- 정부제출	17	12	16	12	17	15	15	14	118
국회예산정책처 의견조회	62	16	74	47	54	49	43	29	374
부수법률안 지정	31	15	31	25	28	32	18	17	197

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지정 미표시 법률안(의원발의) 2건 포함, 제도 시행전 제출

3.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제도

의의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는 위원회가 예산안 등(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지 못한 경우, 그 다음 날에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는 제도이다.

매년 「대한민국헌법」 상의 예산안 심사 기한인 12월 2일 이후에 예산안이 처리되는 것¹⁴⁴⁾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 「국회법」 제85조의3 '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 제도의 예외를 인정하여 예산안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으로 부의되지 않는다.¹⁴⁵⁾

자동 부의된 예산안 등의 수정

예산안 등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부의 되는 경우, 자동부의 되는 안건은 정부 또는 의원이 제안한 원안 또는 위원회안이다. 따라서 예산안 등이 자동 부의되는

144) 국회의 예산안 심의 및 처리는 법안 심의와 마찬가지로, 원내 교섭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이루어지며, 「국회법」 제85조의3을 신설하기 전인 2000~2011년까지 다음 연도 예산안이 헌법이 정한 기한 이내에 처리된 경우는 단 한 차례에 불과하였다.

145)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 등의 본회의 자동 부의 등)

- ① 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이미 논의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회의 수정안이 제안될 수 있다.

동일 제명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

「국회법」 제85조의3제2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경우에도, 의장은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청취하여 일부 법률안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본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않으면 자동으로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유를 두고 있다는데 제도적 의의가 있다. 이는 동일 제명의 법률안을 동시에 가결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내용상 모순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다.

제도가 처음 적용된 2014년에는 이를 활용하여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동일 제명의 법률안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건 및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14건) 중 일부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동일 제명의 법률안은 각 1건씩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어 총 31건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14건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이후 2016년에는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이, 2017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되고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았으나, 2018~2019년에는 모든 동일 제명의 법률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2020~2021년의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중 동일 제명의 법률안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각 2건씩이었으며, 해당 법률안에 대해 기획재정위원회가 입안한 대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다. ¹⁴⁶⁾¹⁴⁷⁾

제도 시행경과

예산안 등의 자동 부의 제도는 2014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어, 2015년도 예산안 심사부터 적용되었다. 예산안 등의 자동 부의를 도입한 취지를 고려하면 헌법상 심사기한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예산안 등에 대한 본회의 수정에도 시일이 소요되므로, 12월 2일까지 예산안 등을 처리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다만 정기회 중에 예산안 등을

146) 「국회법」 제85조의3제5항에 따라 위원회가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해 대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147) 2022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17건으로, 세입증감 여부,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 소관 상임위원회 논의 정도, 교섭단체 및 정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하였다.

처리하고 있다.

2015~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2014~2015년의 경우, 예산안 등을 12월 2일 상정·표결함으로써 심사기한을 준수하였으나, 2017~2020년도의 예산안 등은 12월 2일 이후에 처리되었다.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경우에는 특별한 심사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으나 최근에는 예산안 등에 앞서 처리되고 있다.¹⁴⁸⁾ 다만, 2020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2019년에는 예산안 등을 먼저 처리하고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2021~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한 2020~2021년의 경우, 12월 1일 상정, 12월 2일과 12월 3일에 각각 표결함으로써 심사기한을 준수하였다.

[자동 부의된 예산안 등의 처리 현황 : 2014 ~ 2021년]

구 분		본회의	
		상정	의결
2014	2015년도 예산안등	2014.12.1.	2014.12.2.
2015	2016년도 예산안등	2015.12.1.	2015.12.2.
2016	2017년도 예산안등	2016.12.1.	2016.12.3.
2017	2018년도 예산안등	2017.12.1.	2017.12.6.
2018	2019년도 예산안등	2018.12.1.	2018.12.8.
2019	2020년도 예산안등	2019.12.1.	2019.12.10.
2020	2021년도 예산안등	2020.12.1.	2020.12.2.
2021	2022년도 예산안등	2021.12.1.	2021.12.3.

148)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은 시행일이 다음연도 1월 1일인 경우가 많으므로, 그러한 범위에서는 12월 내에 처리될 필요가 있다.

제4절 예산 집행과 재정제도

1. 정부의 예산집행

의의

예산의 집행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에 따라 해당 회계연도 동안 수입을 조달하고 공공경비를 지출하는 재정활동을 의미한다. 이는 단순히 예산으로 정해진 금액을 수납하고 지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수입의 조정, 예산 및 자금의 배정, 지출원인행위의 실행, 국채의 발행, 일시차입금의 차입, 세출예산의 이용·전용·이체, 계약의 체결 등을 모두 포함하는 활동으로, 이러한 예산집행은 행정부 뿐 아니라, 입법부와 사법부에서도 이루어진다.

예산 집행지침

기획재정부는 예산·기금의 편성·집행·성과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기관으로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이하 “예산 집행지침”)을 매년 작성하여 각 부처에 통보하고 있다.

예산 집행지침은 예산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설정을 위해 작성되는 것으로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의 역할을 하고 있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8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매년 1월말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 집행지침을 통보하여야 한다. 예산 집행지침은 보통 일반지침과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으로 구성되는데, 일반지침은 경상경비 절감, 예산배정, 수입관리 등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통일적으로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사업유형·비목별 지침은 기본경비·정보화, 인건비·업무추진비 등 유형별·비목별 세부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예산집행 절차

국회에서 승인된 예산이 집행되는 절차는 크게 예산집행의 준비절차와 실행절차로 나눌 수 있다.

예산집행의 전 단계로 예산을 각 중앙관서별로 배정하는 것을 예산집행의 준비절차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배정’은 중앙예산기관이 면밀한 계획을 세워 각 분기별로 예산을 할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산배정의 목적은 ① 각 부처가 연도 초부터 지나치게 자금을 많이 집행함으로써 초래될 수 있는 후반기의 자금부족 사태를 방지하고, ② 세수가 예상 외로 부진한 경우 세입이 세출보다 적어지는 상황을 대비하여 자금지출을 조정하며, ③ 예산집행 실적을 점검하면서 집행 가능한

수준만큼의 자금을 배정하고 집행을 독려하는 데 있다.

예산배정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 등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국가재정법」 제42조),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고(「국가재정법」 제43조제1항), ③ 승인이 난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함으로써 이루어진다.¹⁴⁹⁾

각 중앙관서에 예산이 배정되면 예산을 실제로 집행하게 되는데, 그 절차는 ① 예산의 재배정, ② 지출원인행위, ③ 예산의 지출로 나눌 수 있다.

예산의 재배정이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사업부서에게 예산을 지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하며, 이를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으며, 상급관서의 재무관으로 하여금 재배정받은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하급관서의 재무관에게 이를 재배정하게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7조).

예산의 재배정이 이루어지면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지출원인행위는 국고금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 행위를 말하는데, 배정된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의 금액 범위에서 이루어진다.

지출원인행위에 따라 발생한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이 이루어진다. 지출관은 재무관으로부터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 받아 채무를 확인한 후, 채권자등의 계좌로 이체하여 지급한다.

149) 한편, 기금의 경우 기금운용계획 확정 후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다(「국가재정법」 제68조제2항).

예산배정

예산배정은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②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후, ③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

「국가재정법」은 이와 같은 일반적인 예산배정 절차 외에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의 예산배정, 수시배정, 예산배정의 유보 등 다양한 배정방식을 규정하고 있다.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는 경비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6조에 의해 ① 외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② 선박의 운영·수리 등에 소요되는 경비, ③ 교통이나 통신이 불편한 지역에서 지급하는 경비, ④ 각 관서에서 필요한 부식물의 매입 경비, ⑤ 범죄수사 등 특수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⑥ 여비, ⑦ 경제정책상 조기집행을 필요로 하는 공공사업비, ⑧ 재해복구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로 한정되어 있다.

수시배정은 사업시행의 점검이 필요한 사업 등에 대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 관계없이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등을 분석·검토한 후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이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떤 사업에 대한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되어 있더라도 경제정책이나 재정운용상의 필요에 의하여 예산배정의 유보 등을 할 수도 있다.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 보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예산집행의 통제

예산집행의 통제는 행정부 내부의 통제와 외부통제로 구분할 수 있는데, 행정부 내부의 통제는 다시 예산의 배정·재배정, 재정집행의 관리, 내부통제로 구분된다.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은 회계연도 개시와 함께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미를 갖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사업수행의 완급을 조절하고 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예산집행통제의 기능도 함께 갖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법」 제97조는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과 낭비 방지를 위하여 사업집행보고서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가 사업집행보고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집행상황과 낭비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98조에 따라 재정관리·재원사용의 적정 여부

와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이를 예산집행과정의 내부통제라고 부른다.

예산집행에 대한 외부통제는 크게 국회, 감사원, 국민에 의한 통제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국회에 의한 통제는 예산의 이용에 대한 사전승인, 예비비 사용에 대한 사후승인, 명시이월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사전승인, 국채모집 및 국가부담이 될 계약 체결에 대한 동의, 결산심의, 국정감사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국회는 결산심의를 통해 예산집행 전반에 걸쳐 합법성, 타당성, 효율성 등에 대해 심사하고, 그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정부 또는 해당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감사원은 국가의 세입 및 세출의 결산검사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회계검사를 수행한다. 회계검사는 개별 사업단위 또는 사항의 예산집행에 대한 합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예산집행의 통제수단으로서 기능하며 예산집행의 규범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재정법」 제100조는 예산집행에 대한 국민의 감시와 시정요구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의 예산을 집행하는 자 등이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재정집행관리제도

의의 및 대상

정부는 「국가재정법」 제97조¹⁵⁰⁾에 따라 재정의 경기안정화 기능 확보 및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매년 주요 관리대상사업을 선정하고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¹⁵¹⁾를 통해 재정집행 실적을 점검·관리하고 있다. 2021년은 47개 중앙행정기관, 38개 기금, 33개 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¹⁵²⁾를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다. 기금의 경우 주로 사업성기금 사업이 해당되며 계정성기금과 금융성기금은 제외된다. 사회보험성기금 중에는 고용보험기금만 포함된다.

150) 「국가재정법」

제97조(재정집행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151) 재정관리점검회의는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52) 인건비, 기본경비, 법령에 따라 매월 정액 지급하는 사업 등은 제외

[2021년 총지출 및 재정집행관리대상사업 범위]

구 분	총지출(본예산)		재정집행관리대상사업	
	대상	예산규모	대상	예산규모
합 계	-	558.0조원	-	343.7조원
예산	중앙행정기관(전체) 60개	375.0조원	중앙행정기관 47개	232.2조원
기금	57개	182.9조원	38개	61.1조원
공공기관	-	-	33개	50.4조원

자료: 기획재정부

관리 절차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매월 경과 후(외국환평형기금은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20일 이내에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집행보고서에는 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월별 집행실적, ② 집행부진 사유 및 향후 개선계획, ③ 각 부처 및 기관별 예산낭비 신고 실적 및 대응 실적, ④ 그 밖에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정하는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다.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출된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 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집행 관리 등을 위하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현재 동 회의는 기획재정부 2차관과 각 부처 1급 공무원 및 공기업 부사장이 참여하고 있다. 주로 상반기에는 재정조기집행 상황을 파악 및 독려하고, 하반기에는 이월 및 불용 최소화를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상반기에는 재정관리점검회의의 중점점검대상으로 일자리, 복지 등 민생안정과 관련이 있는 핵심사업 위주로 선정하고 일부 부진 사업은 부처 자체 특별점검 및 현장점검반 운영 등을 통해 부진 해소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조기집행 달성에 힘쓰며, 하반기에는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점검체계로 전환하여 각 부처·기관별 특별점검단 운영, 부처합동 현장 점검 등으로 연례적 이월·불용 사업 특별 관리 및 집행 애로 요인 해소를 통해 연말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한다.¹⁵³⁾

153) 심혜인, 「주요 재정사업의 집행 특성과 재정관리의 시사점」, 한국재정정보원, 2020.4.

재정집행 실적

최근 정부는 집행실적 관리에 있어 하반기 대비 상반기 집행목표를 높게 잡고 그 집행을 관리·이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을 실무상 '조기집행'이라고 칭하고 있다. 정부는 조기집행을 통하여 민간투자 및 소비를 활성화시켜 상반기에 예상되는 경기 부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연초부터 예산사용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여 연말에 예산의 무리한 집행이나 불용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2017~2021년 중앙부처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을 살펴보면, 매년 그 목표를 초과달성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상반기 집행목표 63.9%에 대비해 69.3% 집행률을 보여 목표를 5.4%p 초과달성하였다.

[2017-2021년 중앙부처 조기집행 목표 및 실적]

(단위: 조원, %)

구분	연간집행계획 (A)	상반기 집행목표		상반기 집행실적	
		금액(B)	집행률(B/A)	금액(C)	집행률(C/A)
2017	233.8	135.7	58.0	139.52	59.6
2018	238.6	138.9	58.2	149.3	62.6
2019	252.6	155.9	61.7	166.2	65.8
2020	261.4	164.6	63.0	175.6	67.2
2021	293.3	187.4	63.9	203.2	69.3

자료: 2017~2020년 자료는 국회예산정책처, 「2019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
2021년 자료는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2020년 8월호)」

2.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제도

의의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예산은 소관별·사업별·대상별로 금액이 정해져 있고, 「국가재정법」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예산총계주의 원칙,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 등을 규정하여 예산집행의 규범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활동이 점차 방대해지고 복잡해지며,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노출됨에 따라 탄력적이면서도 신축적인 예산집행 활동도 필요하다. 이에 「국가재정법」은 예산안의 편성이나 심의 당시에 예상하지 못했던 사정변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 유지를 위한 제도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

예산의 전용과 조정

예산의 전용은 각 세항·목(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용통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각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다. 전용을 할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2014년 「국가재정법」 개정에 따라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사업을 추진하거나,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의 전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전용을 한 경우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전용을 통한 경비의 금액과 이유를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예산의 전용과 유사한 개념으로 예산의 조정이 있다. 조정은 법적 용어는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①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 간에 예산을 상호 용통하는 것, ② 동일한 세항(단위사업) 내에서 동일 목을 세세항(세부사업) 간에 상호 용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활용되고 있다. 즉, 예산의 조정은 예산의 전용보다 한 단계 낮은 예산 단위 사이에서 금액을 상호 용통하는 것을 의미하며, 예산 집행지침에서는 이를 세목간 조정, 내역변경 등의 용어로 표현하고 있다.

예산의 이용과 이체

예산의 이용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관·항(입법과목) 간에 상호 용통하는 것을 말하는데,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따라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다만, 이용 사유인 '예산집행상의 필요'가 지나치게 폭넓게 인정되고 있는 문제를 감안하여, 이용의 사유를 ①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동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② 환율변동·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③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도록 「국가재정법」을 개정(2014.12.30.)하였다.

예산의 이체는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속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예산의 이체는 사업내용이나 예산규모 등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해당 예산의 귀속만 변경하는 것으로서, 「국가재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 장의 요구에 따라 예산을 이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용·이체를 한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이·전용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예산액 (A)	이용		전용	
		금액(B)	비중(B/A)	금액(C)	비중(C/A)
2016	3,419,467	3,877	0.11	16,845	0.49
2017	3,498,987	3,669	0.10	11,414	0.33
2018	3,712,672	3,351	0.09	18,789	0.51
2019	4,041,056	5,285	0.13	17,678	0.44
2020	4,599,635	12,889	0.28	17,858	0.39

주: 총계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

기금운용계획 변경

기금운용계획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의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세부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및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에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능하다.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조정을 통해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마련하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국회 제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국가재정법」 제70조제3항에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변경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① 금융성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일 때, ② 금융성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경우 10분의 2 이하)일 때, ③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④ 여유자금·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황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⑤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⑥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이 그 예외에 해당한다.

각 기금관리주체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내역을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연도별 기금운용계획 변경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당초계획(A)	수정	변경액(B) ¹⁾	변경률(B/A)
2016	6,200,110	6,260,616	177,379	2.86
2017	6,152,636	6,214,630	176,136	2.86
2018	5,948,707	6,026,255	211,709	3.56
2019	6,331,783	6,378,332	159,803	2.51
2020	7,247,628	7,893,576	831,389	11.47

주: 1) 세부항목(단위사업·세부사업·목) 이상에서 발생한 증액분의 합계임

1. 총계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회계연도 결산 총괄분석 II」, 2021.8.

예산의 이월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원칙적으로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으나, 「국가재정법」 제48조에 따라 ① 명시이월비, ②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등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또한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 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미리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예비비

예비비는 예산의 편성 및 심의 시점에서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총액으로 국회의 승인을 얻어 세출예산에 계상하였다가 필요할 때 사용하는 금액이다. 「대한민국헌법」은 제55조제2항에 예비비의 근거를 두고,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정의(제22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제51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절차(제52조)를 규정하고 있다.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일반예비비와 목적예비비로 구분된다. 일반예비비는 사용용도가 제한되지 않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다. 목적예비비는 매년 예산총칙에서 용도를 제한하여 편성한다. 2022년 예비비 예산액은 총 4조 5,000억원으로, 이 중 일반예비비는 1조 8,000억원, 목적예비비는 2조 7,000억원이다.

「국가재정법」 제51조는 예비비의 관리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으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는 총액

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된 예비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비비 사용의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예비비의 방만한 운영은 정부의 임의적인 재량지출을 확대하고, 입법부의 예산 심의·확정권을 우회하는 수단이 될 수 있으므로 「국가재정법」은 예비비의 사용절차와 예비비 사용의 사후승인 절차를 함께 규정하고 있다.¹⁵⁴⁾

[연도별 예비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연도	일반회계 세출(A)	예비비 합계	일반예비비		목적예비비	
			금액(B)	비중(B/A)	금액(C)	비중(C/A)
2018	3,039,658	30,500	12,000	0.39	18,500	0.61
2019	3,346,598	30,000	12,000	0.36	18,000	0.54
2020	3,891,191	56,100	14,000	0.36	42,100	1.08
2021	4,244,413	97,000	16,000	0.38	81,000	1.91
2022	4,364,319	45,000	18,000	0.41	27,000	0.6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국회, 「예산총칙」, 각 연도

[2022년도 예산총칙 중 목적예비비의 용도 제한]

조항	내용
제12조	일반회계 예비비 중 2,7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3조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제12조 규정에 의한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총칙」

154)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④ 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총사업비 관리 및 타당성재조사

의의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국고 또는 기금으로 추진하는 대규모 재정사업의 총사업비를 사업추진 단계별로 합리적으로 조정·관리하기 위하여, 해당 사업 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사업비 증가를 미연에 방지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동 제도를 도입하였다.

법적 근거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수단의 일환으로 구(舊)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따라 1994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06년 이후부터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고 있다. 그리고 중앙관서의 장은 동 지침을 바탕으로 대상사업의 각 단계별로 사업규모, 총사업비, 사업기간을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요건

총사업비 관리 제도는 사업기간이 2년 이상으로서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이나 정보화사업 등(건축사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¹⁵⁵⁾ 다만 일부 국고 정액지원사업, 국고 용자지원사업, 민간 투자사업, 기존 시설의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등은 총사업비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¹⁵⁶⁾

155)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56)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총사업비의 관리) ① 법 제5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규모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법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액되어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상인 사업

가.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다만, 건축사업은 제외한다.

나.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사업

운영 현황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은 2001년 693개 사업, 총 184조원 규모에서 2021년 808개 사업, 249조원 규모로 증가하였다. 대상사업 종류는 크게 토목·건축·정보화·R&D사업으로 구분되며, 2021년의 경우 토목사업이 381건, 215조원으로 전체의 47.2%(비용은 86.3%)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건축사업(385건, 26조원), R&D사업(30건, 4.7조원), 정보화사업(12건, 3.8조원)순이다.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추이]

(단위: 건, 조원)

구분	합계		토목사업		건축사업		정보화사업		R&D사업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2001	693	184	595	176	98	8	0	0	0	0
2002	602	183	517	176	85	7	0	0	0	0
2003	668	205	570	198	98	7	0	0	0	0
2004	698	206	586	198	112	8	0	0	0	0
2005	718	221	567	208	151	13	0	0	0	0
2006	733	211	606	201	127	10	0	0	0	0
2007	734	214	605	202	129	12	0	0	0	0
2008	1,113	237	859	220	254	17	0	0	0	0
2009	1,268	251	932	227	336	24	0	0	0	0
2010	1,002	265	730	238	270	26	2	0.9	0	0
2011	962	264	698	237	262	27	2	0.9	0	0
2012	956	263	669	231	284	31	3	1.1	0	0
2013	939	263	633	230	304	32	2	0.4	0	0
2014	917	259	633	227	282	31	2	0.4	0	0
2015	908	254	581	220	296	29	3	0.9	28	3.2
2016	911	249	565	219	317	26	3	1.2	26	2.9
2017	856	237	501	210	330	23	2	1.0	23	2.7

다.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2. 건축사업 또는 연구개발사업으로서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가 증액되어 총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사업비를 관리하는 대규모 사업에서 제외한다.

1.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하지 아니하는 사업

2. 국고에서 용자로 지원하는 사업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간투자사업

4.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5. 시설 또는 장비의 구축을 포함하지 아니하는 연구개발사업

구분	합계		토목사업		건축사업		정보화사업		R&D사업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사업수	총사업비
2018	803	227	464	201	317	22	2	1.4	20	2.5
2019	757	226	417	200	319	21	5	2.2	16	2.5
2020	773	235	380	205	355	23	9	3.1	29	3.6
2021	808	249	381	215	385	26	12	3.8	30	4.7

주: R&D 사업은 2015년부터 건축사업에서 분리하여 별도 통계 작성
 자료: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변경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총사업비총액(A)	211	214	237	251	265	264	263	263
변경액(B)	△1.4	1.9	2.8	5.2	4.1	0.9	0.9	0.2
B/A	△0.7	0.9	1.2	2.1	1.5	0.3	0.3	0.1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총사업비총액(A)	259	254	249	237	227	226	235	249
변경액(B)	0.5	2.3	-0.9	1.8	2.9	4.9	3.3	3.3
B/A	0.2	0.9	-0.4	0.7	1.3	2.2	1.4	1.3

자료: 기획재정부

타당성재조사

타당성재조사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 통제를 강화하고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¹⁵⁷⁾

타당성재조사 대상사업

「국가재정법」 제50조제2항 및 제3항¹⁵⁸⁾에서 타당성재조사 대상 사업과 제외사업을 규정하고

157) 「총사업비관리지침」

제44조(타당성 재조사의 목적) 타당성 재조사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그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재조사하여 타당성이 없는 사업의 추진 또는 불필요한 사업비 증액을 억제함으로써 재정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158) 「국가재정법」

제50조(총사업비의 관리)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있다. 본래 법률의 위임에 따라 시행령에서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었으나, 2020년 3월 「국가재정법」을 개정하면서 이를 상향 입법하여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게 되었다.

동 규정에 따르면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중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총사업비와 국가 재정지원 규모가 증가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추진 중인 사업,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증가하거나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등에 있어서 그 타당성을 재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때와 지역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하는 사업, 재해예방·복구 지원 등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등의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주요 조사내용

타당성재조사는 기본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는 작업으로,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다.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1조는 타당성재조사의 조사내용으로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경제성 분석, 정책적 분석,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비교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사한 조사방법 및 기준을 사용하고, 「국가재정법」 제8조의2¹⁵⁹⁾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한국개발연구원, 한국조세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159) 「국가재정법」

제8조의2(전문적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연구

재정연구원 및 지정기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 타당성재조사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시점 및 관점이 상이하여 일부 차이점이 발생한다. 즉, 타당성재조사는 사업 추진 전에 수행되는 예비타당성조사에 비해 상세한 최신 자료를 기반으로 검토하고, 총사업비 변경 뿐만 아니라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을 기각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기존 조사 등과 비교하여 실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는 기존 조사결과와의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특히 물량변동에 따른 영향에 초점을 두어 조사하며, 사업단계별로 나누어 총사업비 변동에 초대한 주요부분을 집중하여 총사업비 변경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총사업비관리지침 제51조는 타당성재조사 개요에 최초 사업이 추진되어 타당성재조사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상세한 추진경위, 현재까지의 예산집행 현황과 이전단계 분석결과를 포함하도록 한다. 또한 매몰비용의 처리 등 분석기준을 일부 다르게 적용하도록 하고, 수요재추정시 전 단계의 수요추정 결과와 비교하여 제시하도록 하며, 사업추진이 필요한 경우 적정 수요규모에 기초한 시설물의 적정 규모를 추정하여 총사업비 조정시 기초가 되는 총사업비 규모를 포함하도록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와 타당성재조사 차이점]

비교항목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재조사
조사시점	• 사업추진 전	• 사업추진 중
조사관점	• 사업추진여부	• 총사업비 변경 및 기존 사업 기각 여부 • 기존 조사결과와의 차이 발생 원인을 규명
분석방법 및 기준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및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 따른 방법 및 기준 적용 -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2조에 따라 ① 경제성 분석, ② 정책성 분석, ③ 지역균형발전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④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	•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사업부문별 조사방법론을 동일하게 적용하되, 「총사업비관리지침」제51조에 따라 타당성재조사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여 분석 - 「총사업비관리지침」제51조에 따라 ① 사업의 개요 및 재조사의 쟁점 파악, ② 사업계획의 적절성 검토, ③ 경제성 분석, ④ 정책성 분석, ⑤ 지역균형발전 분석 등 수행단계별로 제시된 내용을 조사하고, 이를 ⑥ 종합하여 사업의 타당성 및 대안을 제시

타당성재조사 현황

2021년 타당성재조사가 이루어진 사업은 총 6개로 총사업비 기준으로는 8,920억원이다. 이 중 2개 사업(조치원 우회도로 건설공사 및 밀양폴리텍 건립사업)은 통과되지 못하였고, 4개 사업(회덕IC 연결도로 등 각종 도로 건설·확장 및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사업)이 통과되었으며,

통과된 사업의 총사업비 규모는 5,889억원이다. 타당성재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중단이 되며, 통과한 사업은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¹⁶⁰⁾

[타당성재조사 사업의 총사업비 현황]

(단위: 건, 억원)

연도	사업 수 기준			총사업비 기준		
	전체 건수	합 계		통과	미통과	
통과		미통과				
2016	9	4	5	22,686	14,187	8,499
2017	10	4	6	22,864	5,400	17,464
2018	4	4	0	6,644	6,644	0
2019	6	2	4	8,989	2,661	6,328
2020	4	2	2	10,506	9,858	648
2021	6	4	2	8,920	5,889	3,031

자료: 기획재정부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는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¹⁶¹⁾에서는 타당성재조사 면제사업에 있어서 사업계획적정성 재검토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60)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54조(기본원칙) ②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타당성 재조사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8조제1항의 타당성 재조사의 시행 시기별로 타당성 재조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161)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방식에 준하여 재원조달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수립에 반영할 수 있다.

1. 국가재정법 제50조 제2항 및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2조의 타당성재조사 요건에 해당되나, 국가재정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4. 국고금 관리

의의

국고금의 개념

국고금은 정부가 공공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달하고 운용하는 일체의 현금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는 국고금을 ① 법령 또는 계약 등에 따라 국가의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¹⁶²⁾에 납입된 모든 현금 및 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¹⁶³⁾으로 정하는 것, ② 「지방세법」에 따라 국가가 징수한 지방소비세를 지방세입으로 납입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보유하는 현금등, ③ 재정증권의 발행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에 의하여 조달된 현금등¹⁶⁴⁾, ④ 국고금의 운용 목적으로 취득한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있다.

국고금 관리의 정의

국고금 관리란 국고금의 조달·지출 등 세입·세출 예산의 실제 집행과정에서의 전반적인 국가 시재금(時在金)¹⁶⁵⁾의 관리를 의미한다. 정부 재정지출에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조달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하면서 자금조달 규모와 시기를 최적화하고, 유휴자금(Idle Money)은 최소화함으로써 재정활동의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는 국고금 관리의 원칙으로 ① 국고금은 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할 것, ② 국고금은 적절한 때에 지출되도록 할 것, ③ 국고금은 안전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운용할 것, ④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162) 이에 해당하는 기금은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기금 중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운용(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기금이다(「국고금 관리법」 제3조제1항제2호). 따라서 관리·운용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에 납입된 현금은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신용보증기금은 각각 그 관리·운용주체가 예금보험공사,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신용보증기금으로, 동 기금들에 납입된 현금은 국고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163)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조(현금과 같은 가치를 가지는 국고금) 법 제2조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법 제12조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금고은행(이하 “한국은행 등”이라 한다)에 납입한 국가예금
2. 제32조제5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에 예치한 국고예금
3. 제85조에 따라 한국은행에 예탁하거나 금고은행에 예치한 국가예금
4.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증권
5. 「우체국 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우체국 예금자금
6.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4조에 따른 우체국보험적립금
7.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 따른 회전자금

164) 국고금 운용 시에는 계획한 세출시기에 충분한 세입이 확보되지 않는 등 일시적으로 세입·세출 간의 불일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최근 정부의 조기집행 강화 경향(조기집행비율: ('18년)62.1%→('19년)65.4%→('20년)66.5%→('21년)68.2%)에 따라 이와 같은 일시적 세입·세출 간 불일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일시적 세입·세출 간 불일치가 발생하면 정부는 국고금 출납상 필요한 경우 재정증권의 발행,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등의 방법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조달된 현금도 국고금에 포함된다.

165) 지출을 하고 난 후 남아 있는 돈

국고금의 수입과 지출 절차

국고금의 수입

국고금의 수입은 조세 등의 국고금이 세입으로 납입되거나 기금에 납입되는 것을 말하며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금을 징수하거나 수납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입의 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수입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 수입징수관에게 위임하여 납입을 고지하고 징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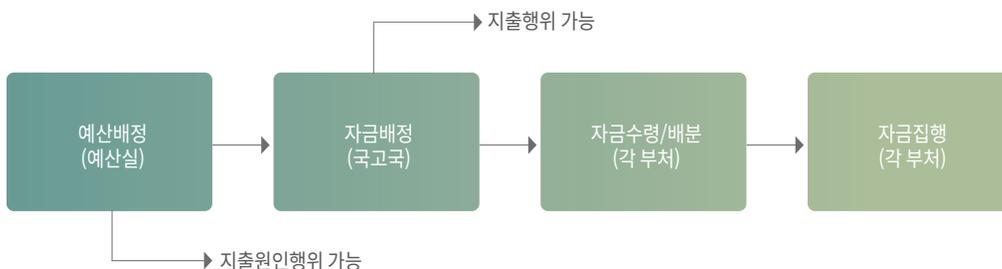
국고금의 실질적인 수납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출납공무원이라 하며, 출납공무원이 수납한 국고금의 납입 또는 납세의무자 등이 직접 납부하는 국고금의 출납사무는 한국은행에서 담당한다. 한국은행은 국고금 취급에 필요한 여건을 갖춘 금융기관과 국고금 취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금융기관의 영업점을 '국고대리점'으로 지정하여 국고금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하고 있다.

국고금의 지출

국고금의 지출은 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따라 국고에서 현금 등이 지급되는 것을 말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출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지출원인행위와 지출에 관한 사무를 관리한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은 '예산배정 → 자금배정 → 실제 지출' 과정을 거쳐 집행된다. 예산배정은 예산 통제의 목적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서에 따라 예산을 나누어주는 것이다. 그 후 자금수급 관리 목적으로 예산배정의 범위 내에서 연초에 연간, 매월 월 단위 자금계획을 수립하여 자금배정이 이루어진다. 실제 지출은 자금배정 금액 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채권자, 수급권자 등에게 자율적으로 집행하게 된다.

[국고금 지출 과정]



과거에는 지출관이 국고수표를 발행하면 한국은행 국고대리점이 동 국고수표의 소지인에게 국고금을 지급하였으나, 2003년 1월부터는 지출의뢰 정부부처·한국은행·금융기관 간에 전산시스템(국고전산망)을 연결하여 지출관의 지급지시에 의해 한국은행이 실시간으로 채권자의 예금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출관이 지출결의를 바탕으로 지출금 이체를 요청하는 국고금 입금요구 전문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한국은행에 전송하면, 한국은행은 실시간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채권자의 계좌로 국고금을 지급하게 된다.

다만 정부부처의 일상 운영경비(관서운영경비)의 경우에는 동 경비를 사용하는 출납공무원(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금융기관에 개설한 별도의 계좌(국고예금계좌)에 일정기간의 부서 운영경비를 전자이체 방식으로 먼저 이체한 후 필요시 정부구매키드 사용, 현금 지급 등의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은 조세납부시기에 따라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수납되는 반면 지출은 수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세수납액과 지출액의 차이에 따라 일시 여유자금이나 부족분이 발생하게 되는데, 여유자금은 국고금의 통합계정을 통하여 관리하고, 부족자금은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으로 조달하게 된다.

국고금의 통합관리

통합계정

정부는 국고금의 수납을 원활히 조절하고 정부 내부자금을 최대한 활용하여 외부자금 조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계·계정별로 구분 관리되고 있던 국고금을 2005년부터 통합하여 관리하고 있다. 일반회계와 17개 특별회계가 통합계정에 포함되고,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에 따른 우체국보험특별회계와 기업특별회계 중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및 양곡관리특별회계는 통합계정에서 제외¹⁶⁶⁾된다.

자금 측면에서 통합계정만 국고금 잔고를 보유하고, 일반·특별회계에 설치된 각종 계좌는 무(無)잔고로 유지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국고금 수급조절을 통합계정에서 총괄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통합계정 국고금의 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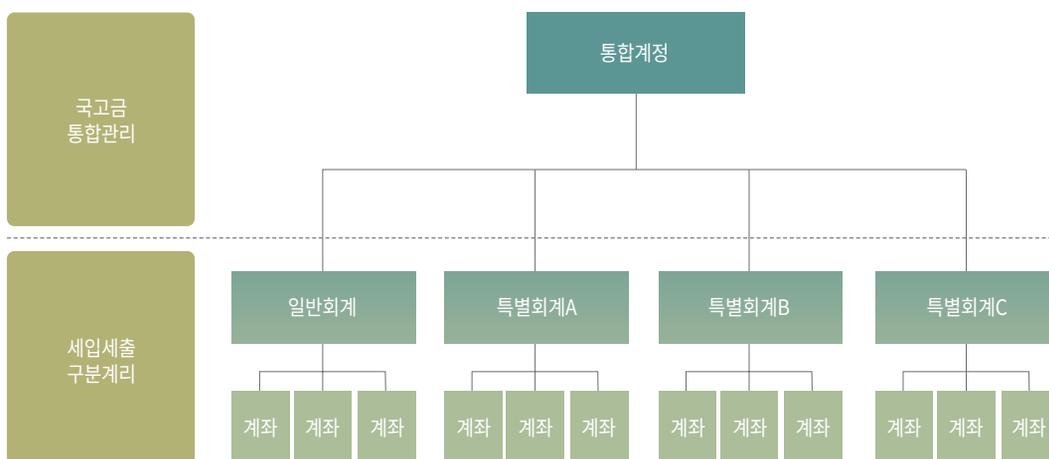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고금 출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때는 통합계정의 자금을 세입세출 예산 외에 ① 국공채 및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매매, ② 금융회사 예치 또는 단기대여, ③ 증

166)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지출의 재원으로 사용되며, 우정사업본부에서 고객의 예금, 보험료와 함께 자금을 운용함에 따라 통합계정에서 제외되었다. 양곡관리특별회계는 양곡연도(11월 익년도 10월)의 특성상 연말에 자금수요가 크나, 통합계정은 연말에 일시차입금을 전액 상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통합관리가 어렵기때문에 제외되었다.

권금융회사 또는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채무증서의 매매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2021.9.1.부터 2024.8.31.까지 3년간 한국증권금융, KB국민은행, NH농협은행이 국고금 위탁 운용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고금을 운용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제4항에 따라 통합계정의 자금조달 비용 및 이자는 동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금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으로 우선 충당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운용수익 잔액은 다음연도 통합계정 자금조달 및 이자를 지급하기 위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한다. 국고금 운용수익규모가 차입이자비용 규모를 상회하여 운용수익 이월액이 누적되는 경우에는 세입으로 이입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국고금의 통합관리]



최근 10년간 국고금 운용수익을 살펴보면, 2013~2015년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다 2016년 이후 흑자로 전환되어 2018년까지 각각 704억원, 1,273억원, 1,604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9년에 다시 824억원 적자로 전환되었고, 2020년에도 88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며, 2021년에는 국고금 운용수익이 1,170억원으로 전년 대비 917억원 증가하고, 차입 이자비용은 전년 대비 840억원 감소하면서 877억원 흑자로 전환되었다.

[국고금 운용수익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고금 운용수익(A)	333	483	545	1,259	1,433	1,628	824	253	1,170
차입 이자비용(B)	2,644	1,850	1,308	555	160	24	1,648	1,133	293
- 한은 일시차입	975	165	196	26	2	-	280	522	18
- 재정증권 발행	1,669	1,685	1,112	529	159	24	1,368	610	275
- 공자기금 상호예탁	-	-	-	-	-	-	-	-	-
재정수지(A-B)	△2,311	△1,367	△763	704	1,273	1,604	△824	△880	877
운용수익 적립금	-	26	82	786	2,059	3,662	838	140	1,099
일반회계 세입 납입액	-	-	-	-	-	-	2,000	-	-

자료: 기획재정부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

기획재정부는 자금배정 시 지출 소요를 감안하여 연간, 월간 자금조달 계획을 함께 수립한다. 기간별 세입 전망과 지출 예상 소요를 감안하여 자금 부족이 예상될 경우 적자국채 발행, 일시차입금 등으로 보완하여 자금을 조달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32조는 국고금 출납 상 필요한 때에는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 등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일시적 부족자금의 조달 최고한도액은 각 회계·계정·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 심의·의결을 받고, 재정증권 발행 또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으로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016년 12월 「국고금 관리법」 일부개정에 따라 정부가 국회의 승인을 받은 최고한도액 범위 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고,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하는 경우 자금 소요가 해소되는 때에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¹⁶⁷⁾

2022년도 차입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재정증권 발행

재정증권은 정부가 국고금 일시부족분 조달을 위해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유가증권을 말한

167)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⑤ 기획재정부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한 자금은 자금 소요의 사유가 없어졌을 때에는 지체 없이 상환하여야 한다.

다. 「국고금 관리법」 제33조¹⁶⁸⁾에 따르면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하도록 하고 있다. 국고금 수급상황을 감안하여 월별 발행규모를 결정하고 통상 1개월에서 3개월물 위주의 단기증권으로 발행한다.

한국은행 일시차입

한국은행 일시차입은 회계연도 내의 일시적인 현금의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 차입하는 것이다.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이율 및 기타조건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하며, 2022년도 일시차입금리는 분기별로 '직전분기 말월중 91일물 한국은행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 + 0.1%p'¹⁶⁹⁾이다. 2016년 12월 27일 「국고금 관리법」이 개정되어 부족자금 조달 시 우선적으로 재정증권을 활용하도록 함에 따라¹⁷⁰⁾ 2017년 한국은행 일시차입 규모는 2016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고, 2018년에는 일시차입 실적이 없었으나, 2019년에 이어 2020년에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2021년에는 전체 차입액이 감소하면서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재정증권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 실적]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차입한도(통합계정)	30.0	30.0	30.0	30.0	30.0	30.0	30.0	30.0	40.0
최고차입 실적	합계	28.5	20.5	22.0	15.9	8.9	2.0	25.0	18.9
	재정증권 발행	9.0	12.0	12.0	6.9	6.9	2.0	19.0	12.4
	한국은행 일시차입	19.5	8.5	10.0	9.0	2.0	0.0	6.0	6.5

주: 합계는 연중 최고 차입일 기준 잔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168) 「국고금 관리법」

제33조(재정증권의 발행 등) ① 재정증권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법률에 따라 일시차입을 할 수 있는 것만 해당한다)의 부담으로 기획재정부장관이 발행한다.

② 재정증권은 공개시장에서 발행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금융회사등, 정부출자기업체, 보험회사, 그 밖의 자에게 매각할 수 있다.

169) 「한국은행법」

제75조(대정부 여신 등) ①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여신과 직접 인수한 국채의 총액은 금융기관과 일반에 대하여 정부가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합하여 국회가 의결한 기채(起債) 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른 여신에 대한 이율이나 그 밖의 조건은 금융통화위원회가 정한다.

170) 「국고금 관리법」

제32조(자금의 조달) ⑤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조달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제33조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을 통한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여야 한다.

5. 출연·출자·보조

개 관

의의 및 개념

정부는 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또는 다른 법인·사업자가 수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경우 정부가 아닌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하는데, 대표적인 지원방식으로 출연, 출자, 보조가 있다.

출연은 정부가 직접 수행해야 할 사업을 대행하는 자에게 법률에 근거하여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출자는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해당 법인의 지분을 취득하는 등 투자 형태로 금전적 지원을 제공하는 방식이며, 보조는 국가 외의 자(지방자치단체, 민간)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방식 간 비교

출연, 출자 및 보조는 정부가 공익사업을 위해 정부 외의 법인·사업자 등에게 지급하는 재정상 지원이라는 점에서 유사하지만, 법적 근거, 사용용도, 집행 후 처리 등에 차이가 있다.

먼저 법적 근거 측면에서, 보조는 일반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있어 그 외의 개별법적 근거가 필요하지는 않으며 예산편성에 따라 보조금 지원이 가능하다. 출연과 출자의 경우 일반법이 없어 개별법상 근거가 필요하며, 특히 출연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에서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다.¹⁷¹⁾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보면, 보조금의 지급대상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민간사업자인 반면, 출연 대상은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설치된 정부출연기관에 한정되며 출자 대상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이다.

사용용도 측면에서는 출연과 출자의 경우 포괄적 용도로 지급되어 집행상의 재량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출연금 중 인건비는 해당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등 출연금 사용에는 일부 제한이 있다. 반면 보조는 일반적으로 사용용도가 지정되므로 다른 목적으로 보조금을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171)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집행 후 처리방식에 대하여, 보조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고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을 반환하여야 한다. 출연의 경우 정부 정책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개발출연금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서 정산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나¹⁷²⁾, 비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출연금 및 비연구개발사업의 출연금(일반출연금)은 관련 법령에 구체적인 처리 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예산편성지침이나 각 기관의 집행지침 등에 따라 처리한다. 한편, 출자의 경우 별도의 정산 절차 없이 이자수입은 해당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하며, 출자한 기관은 출자금으로 취득한 지분에 대한 배당수입을 얻거나 향후 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출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출연·출자·보조 간 비교]

구분		출연	출자	보조
개념		정부가 수행해야 하는 사업을 대행하는 자에 대하여 법률근거에 따라 반대급부 없이 지급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기관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해 지급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이 수행하는 사업을 반대급부 없이 지원
법적 근거	일반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개별	「국가재정법」 제12조,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5조 등	개별 법률의 지원근거와 관계없이 예산편성에 따라 지원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지원대상		정부출연기관	통화금융기관, 민간·정부출자기업체 등 공익사업 수행 법인	지방자치단체, 민간
사용용도 지정		포괄적 용도로 지급되나 일부 사용용도 지정	미지정	사용용도 지정
집행후 처리		- 연구개발출연금: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정산·회수 - 비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출연금·일반출연금: 예산편성지침 등에 따라 처리	별도의 사후정산 없이 이자수입은 해당기관의 자체수입으로 처리, 출자기관은 지분 취득에 따른 배당수입 또는 지분 매각 등으로 자금 회수 가능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후정산 및 국고 반환

17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⑦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연구개발비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분	출연	출자	보조
비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출연금(350목):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자금 출연금, 민간기금 출연금 - 연구개발출연금(360목): 연구개발인건비, 연구개발경상경비, 연구개발건축비, 연구개발장비·시스템 구축비, 연구개발활동비등, 연구개발 기획평가관리비 	출자금 등(460목): 일반출자금,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이전(320목) 중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 자치단체이전(330목) 중 자치단체 경상보조, 자치단체 자본보조 <p>* 해외이전보조는 제외</p>

자료: 박기영, 「국가재정」(2018), 「2022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출연·출자·보조 예산 현황

2022년 본예산 기준 출연·출자·보조에 편성된 예산은 총 165.9조원으로, 총지출 607.7조원의 27.3%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 출연금은 53조 2,635억원, 출자금은 10조 2,428억원, 보조금은 102조 3,465억원이다.

[출연·출자·보조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총지출(조원)	428.8	469.6	512.3	558.0	607.7
출연금	325,814	352,703	419,588	483,052	532,635
(비중)	7.6	7.5	8.2	8.7	8.8
출자금	53,575	71,969	85,642	105,971	102,428
(비중)	1.2	1.5	1.7	1.9	1.7
보조금 ¹⁾	669,415	778,979	867,426	978,546	1,023,465
(비중)	15.6	16.6	16.9	17.5	16.8

주: 1) 해외이전보조는 제외

1.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출연금

개요

출연금은 정부가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또는 국가가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으로 교부받는 금액을 의미한다. 「국가재정법」 제12조¹⁷³⁾에 따라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거나,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출연금은 목적에 따라 크게 일반출연금과 연구개발출연금으로 구분된다. 2017년부터 일반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 금융성기금출연금, 민간기금출연금과 같이 네 가지 세목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출연금은 인건비, 경상경비, 건축비, 장비·시스템구축비, 연구활동비등, 기획평가관리비와 같이 여섯 가지 세목으로 구성하고 있다.

출연금은 연구개발출연금과 일반출연금의 정산체계가 상이하다. 연구개발출연금의 정산 및 회수는 기본적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지며, 동법은 발생한 이자수입의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에 산입하거나 재투자하는 등 그 용도를 정해두고 있다.¹⁷⁴⁾ 다만 비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출연에 해당하는 정책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연구 사업 등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규정하는 연구개발비 관리 등 일부 항목의 적용 제외 규정을 두고 있어 예산편성 지침이나 각 기관(또는 연구회)의 집행지침을 따르게 된다.

한편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아닌 기타 정부출연기관의 일반출연금의 경우 정산 등 관리를 위한 법적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나, 기획재정부는 소관 부처에게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사업출연금)의 미집행분과 목적외 사용분을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출연금 지출을 절감하고, 출연금을 사업목적 달성에 충실히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¹⁷⁵⁾

173) 「국가재정법」

제12조(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17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26조(연구개발비의 정산 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각 단계가 끝나는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에 해당 단계의 연구개발시 사용용도와 사용실적을 적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20조(연구개발비의 사용용도 등) ③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

175) 기획재정부, 「2022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pp.231~232

출연금 현황

2022년 예산에서 편성된 출연금은 2021년 대비 5조원 증가한 53조 3천억원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8년 33조 4천억원에서 연평균 12.4% 증가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총지출의 연평균 증가율인 9.2%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출연금 비중은 2018년 7.8%에서 2019년 7.6%로 감소하였으나 2020년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22년 8.8%로 2018년에 비해 1.0%p 상승하였다.

[출연금 규모]

(단위: 조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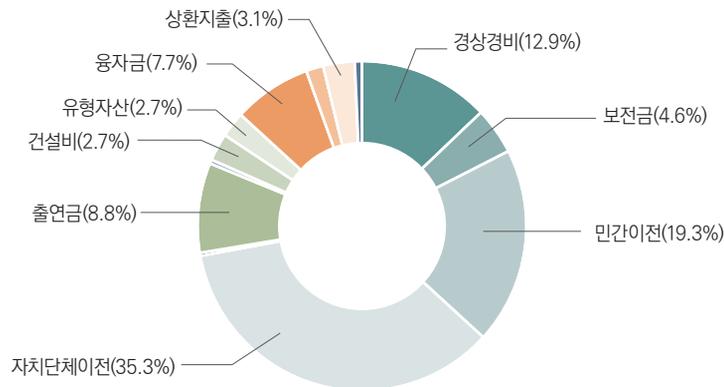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출연금 지출(A)	33.4	35.9	46.8	48.3	53.3	12.4
총지출(B)	427.5	473.9	549.5	558.0	607.7	9.2
비중(A/B)	7.8	7.6	8.5	8.7	8.8	-

주: 2018~2020년은 결산기준, 2021년 및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22년 총지출 예산(607조 7천억원)의 지출 항목별 예산 비중을 보면, 출연금은 53조 3천억원으로 8.8%를 차지하고 있으며, 자치단체이전(35.3%), 민간이전(19.3%), 경상경비(12.9%)에 이어 큰 규모를 보이고 있다.

[지출항목별 예산 비중]

(단위: %)



주: 경상경비=인건비+운영비+여비+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직무수행경비+연구용역비+안보비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출연금의 구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예산안의 경우 일반출연금이 25조 3천억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47.5%, 연구개발출연금이 27조 9천억원으로 전체 출연금의 52.3%를 차지하고 있다.

[출연금 구성별 규모]

(단위: 조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출연금	15.2 (45.5)	16.8 (46.8)	24.2 (51.7)	22.9 (47.4)	25.3 (47.5)
연구개발출연금	18.1 (54.2)	19.2 (53.5)	22.6 (48.3)	25.4 (52.6)	27.9 (52.3)
합 계	33.4 (100.0)	35.9 (100.0)	46.8 (100.0)	48.3 (100.0)	53.3 (100.0)

주: 1. 2018~2020년은 결산기준, 2021년 및 2022년은 본예산 기준

2. ()안은 비중을 의미함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2022년 출연금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총 53조 3천억원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2조 445억원(22.6%)으로 가장 많은 출연금을 소관하고 있으며, 교육부 9조 2,315억원(17.3%), 국토교통부 6조 6,149억원(12.4%), 산업통상자원부 6조 5,387억원(12.3%)순이다.

[소관부처별 출연금 예산 규모]

(단위: 억원, %)

부처	일반출연		연구개발출연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643	21.3	94,802	78.7	120,445
교육부	61,790	66.9	30,525	33.1	92,315
국토교통부	60,392	91.3	5,758	8.7	66,149
산업통상자원부	12,525	19.2	52,862	80.8	65,387
방위사업청	0	0.0	38,015	100.0	38,015
중소벤처기업부	18,129	50.4	17,854	49.6	35,983
고용노동부	29,966	100.0	0	0.0	29,966
행정안전부	12,607	93.7	854	6.3	13,461
기획재정부	5,995	52.4	5,443	47.6	11,439
보건복지부	2,724	27.2	7,301	72.8	10,025
외교부	9,375	100.0	0	0.0	9,375

부처	일반출연		연구개발출연		합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환경부	6,296	70.8	2,597	29.2	8,893
해양수산부	515	7.1	6,755	92.9	7,27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0	0.0	5,457	100.0	5,457
농림축산식품부	1,755	42.1	2,418	57.9	4,173
농촌진흥청	358	12.5	2,500	87.5	2,858
경찰청	1,408	70.7	584	29.3	1,993
문화체육관광부	529	29.0	1,296	71.0	1,825
원자력안전위원회	190	14.2	1,149	85.8	1,339
금융위원회	1,288	100.0	0	0.0	1,288
국방부	0	0.0	722	100.0	722
식품의약품안전처	119	17.6	556	82.4	674
여성가족부	626	100.0	0	0.0	626
기상청	125	20.5	488	79.5	613
공정거래위원회	613	100.0	0	0.0	613
산림청	9	1.6	554	98.4	563
해양경찰청	2	0.5	418	99.5	420
통일부	374	100.0	0	0.0	374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50	89.3	30	10.7	280
소방청	2	1.0	206	99.0	208
문화재청	0	0.0	102	100.0	102
특허청	88	100.0	0	0.0	88
질병관리청	0	0.0	67	100.0	67
관세청	0	0.0	44	100.0	44
국회	43	100.0	0	0.0	43
방송통신위원회	38	100.0	0	0.0	38
새만금개발청	25	100.0	0	0.0	25
인사혁신처	13	100.0	0	0.0	1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2	100.0	0	0.0	12

주: 비중은 합계 중 출연금 유형별 금액 비중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출자금

개요

출자금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사업운영에 필요한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정부가 공기업·법인 등에 자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현금이나 현물의 형태로 제공하는 금전적 급부를 의미한다. 정부는 출자기관의 주주로서 운영에 대한 감독권 등을 갖게 되며, 출자대상의 수익 중 일부를 배당받을 수 있다.¹⁷⁶⁾ 출자는 현금이 원칙이나, 현물로도 가능하다.

출자금을 편성·집행하기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나 일반법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출자가 실시되고 있으며, 이자수입 등 이익금의 처리에 관해서도 개별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유재산 출자지분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국유재산법」에 적용대상, 원칙,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¹⁷⁷⁾

유형

출자는 출자수단을 기준으로 현금출자와 현물출자로 구분된다. 출자는 예산·기금 상 재원을 바탕으로 하는 현금출자가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유재산법」제60조¹⁷⁸⁾의 요건에 해당하면 국유

176) 제7장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참조

177) 「국유재산법」

제65조의2(정부배당대상기업 및 출자재산의 적용범위) 이 절은 국유재산으로 관리되고 있는 출자재산으로서 국가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정부가 현물로 납입받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대상기업”이라 한다)으로부터 정부가 받는 배당(이하 이 절에서 “정부배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65조의3(정부배당결정의 원칙) 제8조에 따른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상법」 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산정된 배당가능이익이 발생한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정부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1. 배당대상이 되는 이익의 규모
2. 정부출자수입 예산 규모의 적정성 및 정부의 재정여건
3. 각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률 및 배당성향
4. 같거나 유사한 업종의 민간부문 배당률 및 배당성향
5. 해당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자본금 규모, 내부자금 적립 규모, 부채비율, 국제결제은행의 기준에 따른 자기자본비율, 과거 배당실적, 투자자원 소요의 적정성 등 경영여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결정 기준

제65조의4(정부배당수입의 예산안 계상 등)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기초로 다음 연도의 정부배당수입을 추정하여 소관 예산안의 세입 예산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의 수입계획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65조의5(정부배당의 결정) ① 정부배당대상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배당결정과 관련한 자료를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부배당대상기업은 정부배당을 결정하는 경우 이사회·주주총회 등 정부배당결정 관련 절차를 거치기 전에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과 각각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65조의6(국회 보고 등) 총괄청과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이 완료된 때에는 정부배당대상기업의 배당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178) 「국유재산법」

제60조(현물출자) 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을 현물출자할 수 있다.

재산 중 일반재산을 정부출자기업체에 현물출자할 수 있고, 이 경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어¹⁷⁹⁾ 국회 심의 없이도 출자할 수 있다.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면, 출자는 일반출자와 통화금융기관 출자로 구분되며, 각각 일반출자금(460-01)과 통화금융기관 출자금(460-02) 목으로 편성된다. 일반출자는 민간 및 「국유재산법」에 따른 정부출자기업체 등에 대하여 정부가 출자하는 것을 말하며, 통화금융기관 출자는 예금은행에 대한 정부 출자를 말한다. 일반출자는 다시 중소기업모태조합 출자와 같이 예금은행이 아닌 민간부문에 출자하는 것과, 대한석탄공사·한국주택금융공사 출자 등 정부출자기업체에 대한 출자로 구분된다. 통화금융기관 출자는 예금은행에 정부가 출자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부는 금융산업의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유도하고 금융기관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 신규출자를 원칙적으로 불인정하고 있다. 2007년 이후 통화금융기관 출자금이 편성된 사례는 확인되지 않는다.¹⁸⁰⁾

출자금 현황

2022년도 출자금 예산은 총 10조 2,428억원으로 총지출 607.7조원의 1.7%를 차지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회계 1조 5,585억원, 특별회계 2조 6,903억원, 기금 5조 9,940억원으로 구성된다.

[출자금 구성별 규모]

(단위: 억원, %)

	2018	2019	2020	2021	2022
출자금	53,575	71,969	85,642	105,971	102,428
(비중)	1.2	1.5	1.7	1.9	1.7
일반회계	9,052	15,399	16,184	21,627	15,585
특별회계	13,236	15,779	23,502	26,504	26,903
기금	31,287	40,791	45,956	57,840	59,940
정부총지출(조원)	428.8	469.6	512.3	558.0	607.7

주: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 1 정부출자기업체를 새로 설립하려는 경우
- 2 정부출자기업체의 고유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의 확충이 필요한 경우
- 3 정부출자기업체의 운영체제와 경영구조의 개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79)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② 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180) 금융시장 안정화, 투자 지원 등의 목적으로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국책금융기관에 출자된 경우에도 일반출자금으로 편성되고 있다.

2022년 출자금 예산을 부처별로 보면 13개 부처 총 10조 2,428억원 규모로, 이 중 국토교통부가 7조 7,933억원(76.1%)으로 가장 많은 출자금을 소관하고 있으며, 금융위원회 6,500억원(6.4%), 중소벤처기업부 5,200억원(5.1%), 환경부 4,445억원(4.3%) 순이다.

[출자금 부처별 규모]

(단위: 백만원, %)

부처명	2022 예산	비중
국토교통부	7,793,315	76.1
금융위원회	650,000	6.4
중소벤처기업부	520,000	5.1
환경부	444,540	4.3
문화체육관광부	252,800	2.5
기획재정부	182,321	1.8
산업통상자원부	114,674	1.1
해양수산부	79,500	0.8
농림축산식품부	60,000	0.6
교육부	50,636	0.5
보건복지부	50,000	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5,000	0.2
특허청	20,000	0.2
합계	10,242,786	100.0

주: 본예산(총지출)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

정부출자 대상기관을 중심으로 보면, 2021년 말 기준 정부출자기관은 총 39개로, 10개 부처 소관 공공기관 34개 및 비공공기관 5개(서울신문사, 대한송유관공사, 공항철도주식회사,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이다.¹⁸¹⁾ 사업성격에 따라 대상기관을 구분하면, SOC 관련 14개, 에너지 관련 7개, 금융 관련 7개, 기타 11개 기관이다.

181)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7장 공공기관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참조

[분야별 정부출자 대상기관]

(단위: 개)

분야	주요 업종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SOC	공항, 철도, 항만 등	12	13	14	14
에너지	가스, 전력, 광물 등	7	7	7	7	7	7
금융	은행, 주택금융 등	6	7	7	7	7	7
기타	관광, 조폐 등	11	11	11	11	11	11
합계	-	36	38	39	39	39	39

자료: 기획재정부

2021년 말 기준 정부출자 대상기관에 대한 총 출자금은 158조 776억원이며, 일반회계에서 75조 2,929억원(47.6%), 특별회계·기금에서 82조 7,846억원(52.4%) 출자하였다. 출자대상 기관을 기준으로 보면, 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117조 825억원으로 전체 정부출자의 74.1%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타공공기관(23%), 준정부기관(2.7%) 순으로 나타났다.

[회계·기금별 정부출자 대상기관 현황(2021년 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일반회계	특별회계·기금	계
공기업	381,775	789,050	1,170,825
준정부기관	41,638	1,066	42,704
기타공공기관	326,936	36,119	363,055
공공기관 외	2,581	1,611	4,193
합계	752,929	827,846	1,580,776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 2.

보조금

보조금 개요 및 유형

보조금에 관한 기본법인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제2조¹⁸²⁾에 따르면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¹⁸³⁾으로 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보조금의 교부 주체는 국가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이어야 하고, 교부 대상 사무·사업은 국가 이외의 자가 수행하는 것이어야 한다. 또한 보조금의 범위에는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 국제조약에 따른 것을 제외한 부담금,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급부금 중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이 포함된다.

보조금을 ‘지원대상’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인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과 개인 또는 법인의 시설운영이나 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민간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리고 보조금을 ‘지원내용’을 기준으로 분류하면 인건비, 운영비, 여비, 용역비 등 물건비성 경비를 지원하는 경상보조금과 토지매입비, 시설건축비, 자산취득 등을 위한 자본적 경비를 지원하는 자본보조금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보조금 현황

2022년 본예산 경우 국고보조금 규모는 102.3조원으로, 국고보조금을 지급대상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민간보조는 전체 보조금의 22.4%(22.9조원), 자치단체보조는 77.6%(79.4조원)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고보조금 규모는 증가 추세에 있으며,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4.4조원 증

18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를 포함한다)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것과 그 밖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시설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교부하는 것만 해당한다), 부담금(국제조약에 따른 부담금은 제외한다),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하는 급부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8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급부금의 지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부담금 외의 급부금은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3조에 따른 소득보조금으로 한다.

가하였다. 정부총지출 규모의 연평균 증가율은 9.1%,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은 11.2%로, 국고보조금의 연평균 증가율이 국가재정지출의 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이다.

[국고보조금의 규모와 정부 총지출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보조금 규모	66.9	77.9	86.8	97.9	102.3	11.2
· 자치단체보조	50.1	58.8	65.7	74.8	79.4	12.2
· 민간보조	16.8	19.1	21.1	23.1	22.9	8.1
정부 총지출	428.8	469.6	512.3	558.0	607.7	9.1
정부 총지출 대비 보조금 비율	15.6	16.6	16.9	17.5	16.8	1.9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보조금의 특징

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금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지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고 변경할 수 있다.¹⁸⁴⁾

한편,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고,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¹⁸⁵⁾

18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①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간접보조사업자는 법령과 간접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간접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4항에 따라 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아니하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유사한 목적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85)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를 위반하여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보조사업자의 실적보고

보조금의 경우 중앙정부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수행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¹⁸⁶⁾

보조금 교부 결정 취소, 반환 및 제재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¹⁸⁷⁾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되면 중앙관서의 장은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과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186)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을 적은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 또는 보조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실적보고서 또는 간접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실적 보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지방자치단체의 장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경우에는 3개월)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8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정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¹⁸⁸⁾

한편, 「보조금법」 제31조의2제1항¹⁸⁹⁾에서는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보조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등에는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자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조사업 연장평가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

「보조금법」 제15조¹⁹⁰⁾에서는 의무지출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

188)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보조금의 반환)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 그 취소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189)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를 소관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이 복지사업 또는 정부 정책사업을 대행하는 것으로 다른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 대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30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190)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에 대하여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을 평가하여 3년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존속기간이 연장된 보조사업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평가를 실시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 및 해당 결과의 예산안 반영 정도를 「국가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 설정 제외대상 사업)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에 따른 의무지출 사업
2.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지방재정법」 제37조에 따른 재정투자사업 심사 결과 사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업타당성이 인정되어 진행 중인 계속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사업을 제외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하고,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보조사업의 실효성 및 재정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고 그 존속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보조사업 연장평가를 도입하고 있다.

보조사업 운용평가 주체인 기획재정부장관은 ① 보조금의 운용 및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② 정부출연기관에 소속된 박사학위 소지자로서 보조금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③ 5년 이상의 실무경험이 있는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및 금융업무 전문가, ④ 그 밖에 보조금 사업 운용실태의 조사 및 평가 업무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보조사업평가위원을 선정하여 보조사업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평가기준 및 연장평가 결과

기획재정부는 보조사업 연장평가 시 평가자의 주관적인 평가를 지양하고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평가지표에 대한 구체적인 체크리스트를 마련하고 있다.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 보고서」에 따른 평가항목은 크게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으로 나눌 수 있다.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의 평가항목 및 배점]

(단위: 점)

평가기준	평가 항목(배점)
(1) 보조사업의 타당성(80)	① 보조사업 법령 및 목적의 타당성(10)
	② 보조사업의 효과성(30)
	③ 보조사업의 필요성(10)
	④ 재원지원 규모의 적정성(10)
	⑤ 사회적 가치 실현(가산점 최대 3)
(2) 보조사업 관리의 적정성(20)	① 보조사업자 선정의 적정성(5)
	②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5)
	③ 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리의 적정성(10)
	④ 자체 사업관리 노력(가산점 최대 3)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0. 9.

3.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포괄보조금으로 편성한 사업

4. 그 밖에 존속기간의 설정 취지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업으로서 보조사업의 존속기간을 3년 이내로 한정할 필요가 없다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2020년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에는 2017년 보조사업 평가를 받은 사업 및 존속기한 3년 도래 사업을 평가 대상으로 하되, 타 기관에서 평가를 받는 사업(복권기금 평가 사업 등) 등을 제외하고 241개의 세부사업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였다. 평가 결과는 ① 폐지(즉시폐지, 단계별 폐지), ②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 변경, ③ 유지(정상추진)로 구분된다.

사업건수별 최종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즉시폐지 2개 사업(0.8%), 단계적폐지 12개 사업(5.0%), 통폐합 5개 사업(2.1%), 감축 68개 사업(28.2%), 사업방식변경 130개 사업(53.9%), 정상추진 24개 사업(10.0%)이며, 예산 규모별 최종 판정결과를 살펴보면, 즉시폐지 39억원(0.05%), 단계적폐지 1,540억원(1.8%), 통폐합 527억원(0.6%), 감축 2조 255억원(23.7%), 사업방식변경 5조 4,054억원(63.2%), 정상추진 9,112억원(10.7%)으로 나타났다.

[2020 국고보조사업 최종 판정결과]

(단위: 개, 억원, %)

구분	즉시폐지	단계적폐지	통폐합	감축	사업방식변경	정상추진	합계
사업수	2	12	5	68	130	24	241
(비율)	(0.8)	(5.0)	(2.1)	(28.2)	(53.9)	(10.0)	(100.0)
예산	39	1,540	527	20,255	54,054	9,112	85,526
(비율)	(0.05)	(1.8)	(0.6)	(23.7)	(63.2)	(10.7)	(100.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국고보조사업 연장평가보고서」, 2020. 9.

보조금통합관리망

2017년부터 기획재정부는 보조금의 중복지급 및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정보공개를 통해 국민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e나라도움)을 운영하고 있다.¹⁹¹⁾

「보조금법」 제26조의3¹⁹²⁾에서는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보조사업자등

191)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고 보조금의 중복수급이나 부정 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이하 “보조금통합관리망”이라 한다)을 구축하여야 하고, 보조사업 및 보조사업자의 선정, 보조사업의 집행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2)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자등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받아 처리(「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2호의 처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6조의5부터 제26조의9까지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사항에 관한 전산정보자료
2.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3. 「부동산등기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등기기록

에 대한 과세관련 자료,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의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법 제26조의4¹⁹³⁾에서는 중앙관서의 장 등이 금융기관에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보조금통합관리망은 부정수급된 보조금이나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등의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보조금을 신청·집행·사후 단계별로 검증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보조금법」 제35조¹⁹⁴⁾ 및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¹⁹⁵⁾에서는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하여는 그 현황을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1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해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모든 공모현황이 제공되므로 사업분야별, 공모기관별, 지역별 조회가 가능하고, 사업자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정보(이하 “신용정보”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28조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세 관련 자료 또는 정보

가. - 바 생략

7.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 또는 장애인연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

8. 그 밖에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효율적 운영 및 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

19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①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들의 선정 및 자격관리,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중복·부정 수급 방지 등 보조금의 효율적인 집행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보조금통합관리망을 통하여 금융기관등(「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94)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①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중앙관서의 장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로부터 보고받은 중요재산의 현황을 컴퓨터 통신 등을 이용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95)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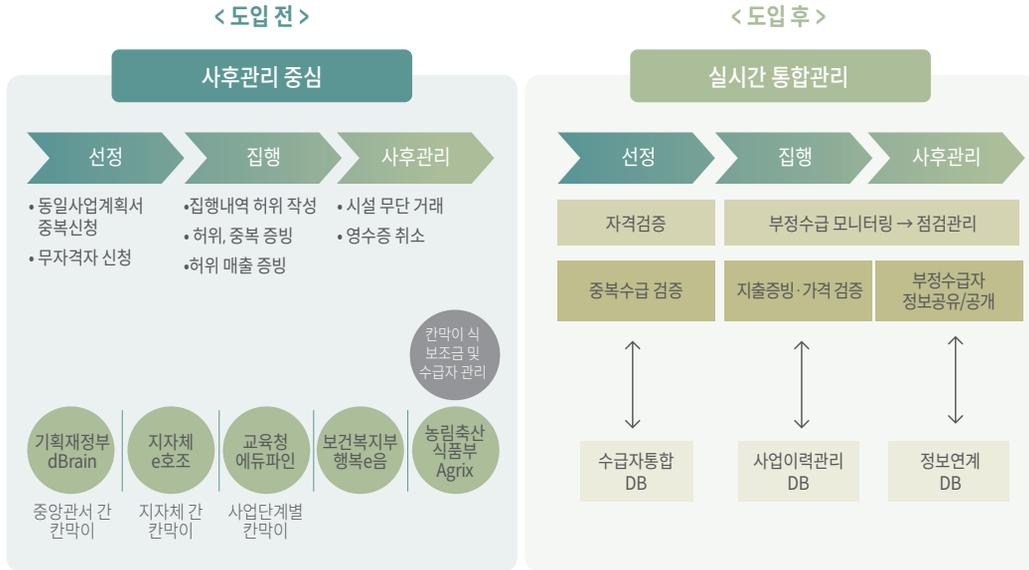
제46조(중요재산의 보고 및 공시) ① 보조사업자 등의 중요재산 보고는 「보조금법」 제35조제1항과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며 별지 제3호서식 ‘중요재산 현황’을 작성하여 중요재산 취득 후 15일 이내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이후 중요재산 처분제한기간 이전까지 매년 6월과 12월에 변동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동사항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법 시행령」 제1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보고한 중요재산 취득현황과 변동현황을 확인·점검 후 보조금시스템에 공시해야 한다. 이때, 취득현황은 보고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고, 변동현황은 매년 6월말과 12월말까지 공시해야 한다. 이 경우 공시 기간은 최초 공시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1.-4. 생략

[e나라도움(부정수급 방지프로세스) 도입 전후 비교]



자료: e나라도움 홈페이지(<https://www.gosims.go.kr>)

6. 연기금투자상품

의의

기금은 여유자금의 운용 목적, 운용자산의 크기, 보유인력의 전문성 등 그 특성에 따라 직접운용과 위탁운용 중 한 가지 형태를 사용하거나 두 가지 형태를 절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직접운용(내부운용)은 기금 내부인력이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고, 위탁운용(외부운용)은 외부 전문인력에게 자산의 운용을 위탁하는 것을 의미한다. 위탁운용 방식에는 연기금투자상품 또는 한국투자공사를 이용하거나 직접 위탁운용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은 일부 자금을 한국투자공사에 위탁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금은 직접 위탁운용사를 선택하거나 연기금투자상품을 이용하고 있다.

연기금투자상품은 연기금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종전의 기획예산처에서 기금정책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2001년 12월에 도입한 것으로 개별 연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예탁받아 민간금융기관을 통해 운용하는 투자체계를 말한다.¹⁹⁶⁾ 연기금투자상품 제도 도입을 통하여 전문적

196) 「국가재정법」

제81조(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이고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고, 개별 기금별 자산운용에 따른 소요비용의 절감을 기대할 수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을 제외한 66개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형태는 다음과 같다.

[기금별 금융자산 운용형태]

(단위: %)

소관 부처	기금명	관리운용주체	위탁운용		직접 운용	
			연기금 투자율	직접 선정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법무부	100.0	0.0	0.0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법원행정처	100.0	0.0	0.0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국가보훈처	99.2	0.0	0.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국가보훈처	100.0	0.0	0.0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한국은행	0.0	0.0	100.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농협중앙회	23.5	0.0	76.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금융위원회	0.0	0.0	100.0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40.1	5.8	54.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예금보험공사	10.7	0.0	89.3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한국주택금융공사	47.7	0.0	52.3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19.1	80.9	0.0	
	복권기금	복권위원회	100.0	0.0	0.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46.1	0.0	53.9	
	대외경제협력기금	수출입은행	99.9	0.0	0.1	
	국유재산관리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	85.4	0.0	14.6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0.0	0.0	
	정보통신진흥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8.1	0.0	8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발전기금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17.4	0.0	8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 기금	원자력연구개발계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00.0	0.0	0.0
		원자력안전규제계정	한국원자력안전재단	45.1	0.0	54.9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0.4	52.7	47.0	
	사학진흥기금	한국사학진흥재단	76.4	0.0	23.6	

소관 부처	기금명		관리운영주체	위탁운용		직접 운용
				연기금 투자율	직접 선정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문화체육관광부	99.8	0.2	0.0
	국민체육 진흥기금	국민체육진흥계정	서울올림픽기념국민 체육진흥공단	84.7	0.0	15.3
		사행산업중독예방 치유계정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0.0	0.0	100.0
	문화예술진흥기금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7.3	48.1	24.6
	언론진흥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99.8	0.0	0.2
	영화발전기금		영화진흥위원회	98.9	0.0	1.1
	지역신문발전기금		한국언론진흥재단	100.0	0.0	0.0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문화재청	100.0	0.0	0.0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한국국제교류재단	82.0	0.0	18.0
	국제질병퇴치기금		한국국제협력단	100.0	0.0	0.0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한국수출입은행	98.1	0.0	1.9
국방부	군인연금기금		국방부	99.4	0.6	0.0
	군인복지기금		국방부	91.3	0.0	8.7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공무원연금공단	0.2	64.0	35.8
농림축산 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농림축산식품부	0.0	0.0	100.0
	농산물가격안정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97.3	0.0	2.7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농업정책보험금융원	100.0	0.0	0.0
	농지관리기금		한국농어촌공사	97.9	0.0	2.1
	농업·농촌공익기능증 진직접지불기금		농협경제지주	100.0	0.0	0.0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46.5	0.0	53.5
	축산발전기금		농협경제지주	100.0	0.0	0.0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수협중앙회	100.0	0.0	0.0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공사	55.6	0.0	44.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산업통상자원부	50.7	49.3	0.0
	전력산업기반기금		산업통상자원부	80.0	17.2	2.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00.0	0.0	0.0

소관 부처	기금명	관리운영주체	위탁운영		직접 운영
			연기금 투자율	직접 선정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32.8	0.0	67.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00.0	0.0	0.0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45.9	4.3	49.9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0.0	42.6	57.4
	국민건강증진기금	보건복지부	100.0	0.0	0.0
	응급의료기금	보건복지부	100.0	0.0	0.0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위원회	0.0	99.8	0.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98.1	0.0	1.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	8.7	0.0	91.3
	한강수계관리기금	한강수계관리위원회	100.0	0.0	0.0
	석면피해구제기금	환경부	100.0	0.0	0.0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노동부	0.0	100.0	0.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노동부	0.0	100.0	0.0
	근로복지진흥기금	근로복지공단	100.0	0.0	0.0
	임금채권보장기금	고용노동부	99.0	1.0	0.0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고용노동부	96.1	3.9	0.0
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	국토교통부	4.4	95.1	0.4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손해보험협회	100.0	0.0	0.0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여성가족부	100.0	0.0	0.0
	청소년육성기금	여성가족부	98.8	0.0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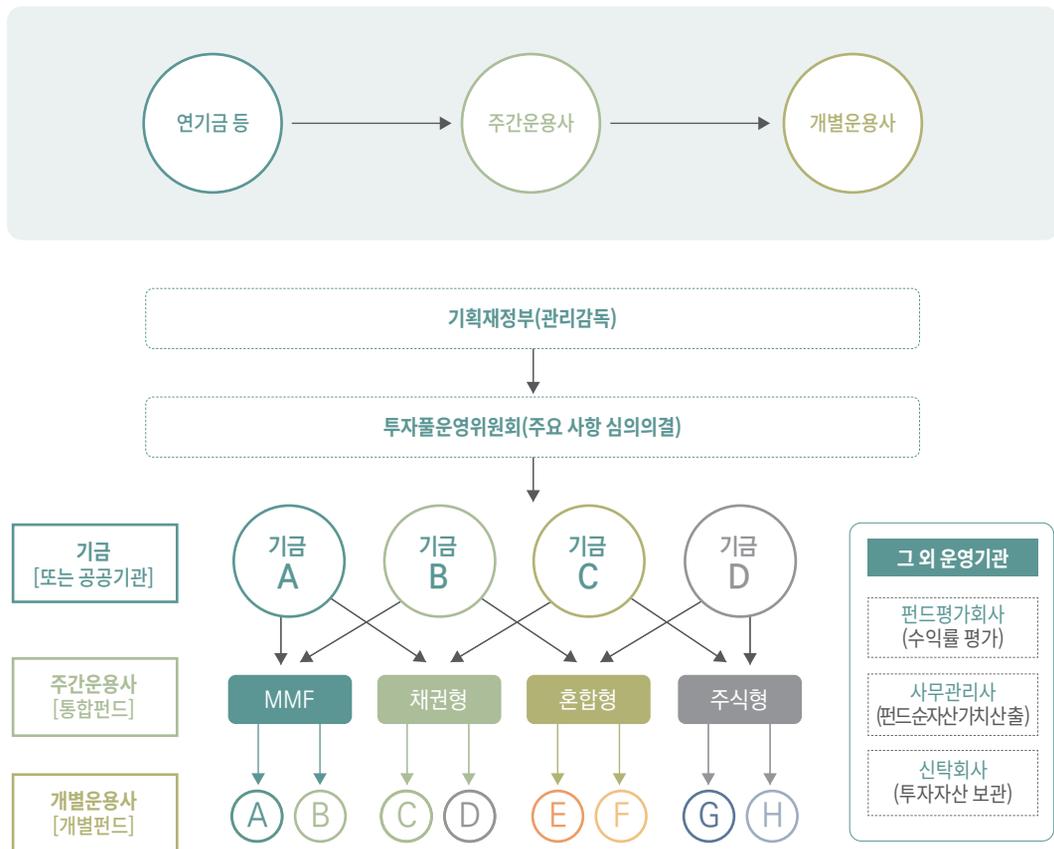
주: 2021년 연중 운용평잔 기준, 단, 국민연금기금은 10월말 기준임

자료: 각 기금 제출자료 바탕으로 재작성

연기금투자자의 구조 및 운영체계

연기금투자자는 재간접투자방식(Fund of funds)¹⁹⁷⁾으로 운영되는데,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는 통합펀드(상위펀드)와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실제 운용하는 운용펀드(하위펀드)로 구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개별 연기금은 투자 기간, 상품 유형을 지정하여 통합펀드에 자금을 예치하고, 통합펀드의 주간운용사는 개별 연기금에서 기간과 유형을 결정하여 예치한 자금을 통합관리하며, 기금이 제시한 조건을 가장 잘 수행할 수 있는 개별운용사에 자금을 배정한다. 또한 개별 운용사는 주간운용사에서 자금을 수탁해 주간운용사가 제시한 조건에 맞게 자산을 운용한다.

[연기금투자자 운영 구조]



자료: 연기금투자자 홈페이지(www.investpool.go.kr, 2022. 1. 25. 접속)

197) 펀드에 재투자하여 위험을 분산하고 투자기회를 확대하는 펀드(재간접투자기구)를 의미

연기금투자자의 건전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획재정부, 투자플운영위원회, 주간운용사, 펀드평가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 등이 다양한 준법감시 및 성과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투자플운영위원회¹⁹⁸⁾를 운영하고 투자플 전반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수행한다. 투자플운영위원회는 투자플 운영의 기본방향을 수립하고 주간운용사 및 펀드평가회사의 선정과 교체, 운용사 운용에 대한 성과평가, 연기금투자플 운영규정의 제·개정 등 투자플 제도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담당한다.

주간운용사는 개별운용사의 운용성과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자금을 차등 배분하여 투자성과를 극대화하고, 펀드평가회사는 수익률 및 위험관리 등 운용성과 평가와 운용실태 모니터링을 담당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는 펀드 순자산 가치 및 기준가 산출과 운용제한사항 점검 및 준법감시를 하며, 신탁업자는 투자자산을 보관·관리하고 운용자금을 결제하며 관련 법령 및 규약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일반사무관리회사와 신탁업자의 경우 종래에는 주간운용사가 자체적으로 선정하였으나, 주간운용사에 대한 독립적인 준법감시 역할을 강화하기 위하여 조달청 입찰을 통해 선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고, 2022년 1월부터 이에 따라 선정된 기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연기금투자플 운영기관]

구분	주요업무	회사명
주간운용사	개별운용사에 대한 자금배분 및 기금서비스 제공	삼성자산운용, 미래에셋자산운용
일반사무관리회사	순자산 가치(기준가)의 산출 및 준법감시 등	하나펀드서비스
신탁업자	투자자산의 보관, 관리, 운용자금 결제 등	신한은행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펀드평가회사)	펀드의 운용성과(수익률 및 위험관리) 평가 등	KG제로인
개별운용사	배분받은 자금을 금융시장에 투자하여 실제 운용	주간운용사 자율선정 - 삼성 총 53개('21.7.26. 중복제외시 26개) - 미래에셋 총 68개('21.7.23. 중복제외시 19개)

자료: 연기금투자플 홈페이지(www.investpool.go.kr, 2022. 1. 25. 접속) 및 기획재정부

198) 위원장(기획재정부 차관) 1인을 포함하여 기금관리 주무부처의 정부위원 7인, 연기금투자플 관련 학식·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12인 등 20인의 위원으로 구성

연기금투자플 규모 및 수익률

연기금투자플은 2001년 12월 12일부터 기금의 여유자금 등을 수탁받아 운용을 개시한 이후 최근까지 수탁규모를 확대하고 있는데, 2002년 1.9조원 규모에서 2021년에는 34.3조원으로 확대되었다. 연기금투자플에 예탁한 기금 수¹⁹⁹⁾도 2002년에는 43개였으나 2021년 12월말 기준 59개로 확대되었다.

연기금투자플 상품은 MMF펀드(Money Market Fund: 단기금융펀드)·채권형펀드(국내/해외)·혼합형펀드·주식형펀드(국내/해외)·ELF펀드(Equity-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대체투자형펀드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말 기준 펀드 유형별 예탁규모를 살펴보면, 채권형(국내) 36.6%, MMF 35.6% 순으로 두 펀드가 높은 비중(72.2%)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혼합형(채권, 주식) 펀드가 23.8%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다.

2015년까지 연기금투자플 상품은 국내투자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운용능력이 부족한 중소형 연기금들이 투자대상을 다변화하고 수익률을 높일 수 있도록 2016년부터 해외(주식형, 채권형)·대체투자(실물부동산, 리츠(REITs)) 등의 신상품이 도입되었다.

[연기금투자플 운용규모 추이(설정액 평잔)]

(단위: 억원, %, 개)

구분	MMF	채권형 (국내)	혼합형	주식형		기타 ¹⁾	총수탁고	예탁 기금수
				국내	해외			
2012	19,471 (18.3)	58,824 (55.1)	27,950 (26.2)	392 (0.4)	-	58 (0.1)	106,695	54
2013	29,091 (21.7)	65,170 (48.6)	39,516 (29.4)	458 (0.3)	-	-	134,235	53
2014	21,238 (14.2)	69,844 (46.8)	57,545 (38.5)	754 (0.5)	-	-	149,382	51
2015	26,970 (14.7)	83,433 (45.4)	72,328 (39.4)	924 (0.5)	-	-	183,655	55
2016	32,447 (15.5)	102,522 (48.9)	72,708 (34.7)	1,599 (0.8)	268 (0.1)	-	209,544	55
2017	33,535 (17.0)	95,897 (48.5)	64,956 (32.9)	2,402 (1.2)	927 (0.5)	20 (0.0)	197,738	56
2018	38,663 (20.5)	64,705 (34.3)	80,350 (42.6)	2,774 (1.5)	1,995 (1.1)	63 (0.0)	188,550	60
2019	54,799 (25.5)	70,775 (32.9)	83,033 (38.6)	2,842 (1.3)	2,562 (1.2)	536 (0.3)	215,016	61

199) 외국환평형기금 제외

구 분	MMF	채권형 (국내)	혼합형	주식형		기타 ¹⁾	총수탁고	예탁 기금수
				국내	해외			
2020	92,500 (34.2)	97,311 (36.0)	70,124 (25.9)	3,284 (1.2)	4,697 (1.7)	2,701 (1.0)	270,617	61
2021	121,924 (35.6)	125,486 (36.6)	81,678 (23.8)	3,683 (1.1)	5,502 (1.6)	4,246 (1.2)	342,519	60

주: 1) 기타는 해외채권, 국내대체투자, ELF(Equity-Linked Fund, 주가연계펀드)로 구성

1. 운용규모는 연간 실적액 평균잔고를 의미, 외국환평형기금 예탁금은 제외

2. ()의 수는 각 연도별 총수탁고 대비 비중을 의미

자료: 열린재정 및 각 기간 「연기금투자자물 월간성과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최근 10년간(2012~2020년) 초과수익률을 기준으로 연기금투자자의 성과를 살펴보면, MMF형과 국내주식형은 지속적으로 초과 성과를 달성하는 반면, 국내채권과 혼합형의 성과는 등락을 보이고 있다. 2016년부터 새로 도입된 해외주식·채권, 대체투자 등의 경우 성과의 등락을 보이고 있으나,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운용기간이 짧아 앞으로의 운용성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연기금투자자물 자산운용 수익률 추이]

(단위: %, %p)

구 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MMF	수익률	3.27	2.65	2.47	1.70	1.39	1.37	1.72	1.74	1.03	0.83
	초과 수익률	0.12	0.12	0.10	0.05	0.06	0.07	0.10	0.12	0.12	0.11
국내 채권	수익률	4.58	2.50	4.74	2.98	1.43	0.97	2.75	2.69	2.47	△0.19
	초과 수익률	0.32	△0.05	0.39	0.33	△0.10	△0.04	△0.02	0.19	0.35	△0.11
혼합형	수익률	4.40	2.54	2.73	2.59	1.89	3.88	△0.79	4.69	8.32	2.97
	초과 수익률	△0.32	△0.09	0.66	0.60	△0.35	0.28	0.01	0.14	0.96	0.88
국내 주식	수익률	7.18	2.32	△4.49	3.80	3.98	24.81	△17.22	9.60	34.35	5.79
	초과 수익률	△3.10	2.09	3.11	5.31	0.01	2.81	0.19	1.36	2.91	3.04
해외 주식	수익률	-	-	-	-	-	18.01	△9.51	28.41	8.36	28.40
	초과 수익률	-	-	-	-	-	0.14	0.49	1.15	△0.13	2.14
해외 채권	수익률	-	-	-	-	-	4.20	13.96	5.37	△0.69	
	초과 수익률	-	-	-	-	-	△1.73	△0.39	0.75	△0.47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내 대체	수익률	-	-	-	-	-	-	-	3.99	4.61	5.86
	초과 수익률	-	-	-	-	-	-	-	0.29	2.62	-
ELF	수익률	-	-	-	-	-	-	-	-	3.27	△6.24
	초과 수익률	-	-	-	-	-	-	-	-	-	-

주: 1. '수익률'은 연도별 수익률이며, '초과수익률'은 각 유형별 수익률-유형별 벤치마크(BM)수익률

* 벤치마크(Benchmark)란 자산운용의 결과가 우수한지 또는 부진한지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준지표로서, 주로 시장수익률이 사용됨

2. 유형별 초과수익률은 유형 내 통합펀드들의 초과수익률을 펀드규모로 가중평균한 값

3. 채권형(국내/해외), MMF의 수익률은 연환산된 값(=분기(월간)수익률/운용일수×365)임

자료: 각 기간 「연기금투자포털 월간성과평가보고서」

완전위탁형 제도 운영

완전위탁형 제도(OCIO, Outsourced Chief Investment Officer)는 외부의 자산운용자가 연기금과 같은 자산보유자의 자금을 위탁받아 자산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해주는 전략적 일임위탁을 의미한다.

2020년 7월 29일 제71차 투자포털운영위원회는 전담조직 등 자산운용 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중소형 기금의 자산운용 전략수립, 투자실행, 성과평가 및 위험관리 등 자산운용 업무 전체를 연기금투자포털에 위탁하는 완전위탁형 제도 도입을 확정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등 15개 기금 1.7조원 규모로 완전위탁형 제도가 시범운영되었다. 시범운영 기간에는 주간운용사의 전문인력 등을 활용하여 포트폴리오 수립, 투자상품 선정 등 자산운용 전반에 대한 자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2021년 10월 7일 제75차 투자포털운영위원회는 시범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2022년에 완전위탁형 제도를 전면도입하기 위한 과제를 논의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완전위탁형 제도에 참여하는 기금의 자산운용 체계를 정비한다. 연기금 투자포털은 완전위탁형 제도 참여 기금의 자산운용 업무 전체를 담당하게 되므로, 해당 기금은 자체적인 자산운용 체계를 유지할 필요성이 줄어든다. 따라서 참여 기금의 자산운용위원회, 성과평가위원회 등 자산운용 체계를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관련 기능을 연기금투자포털에서 위탁·관리해나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둘째, 주간운용사에 대한 성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연기금투자포털에서 자산운용 업무 전체를 담당하게 되므로 주간운용사에 대한 성과관리와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전담 주간운용사의 완전위탁형 운용실적에 대해 전략적 자산 배분, 자산운용지침 수립의 적정성 등 완전위탁형 관련 업무 내용을 반영한 성과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운용성과 제고를 유도하기 위해 실

현수익률이 기준수익률을 초과한 경우 초과수익에 대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등 보상체계 도입 여부도 검토할 계획이다.

7. 회전자금

회전자금의 의의

회전자금은 1961년 원조물자 판매대금으로 조성·운용되던 대충자금에서 시작되었으며, 1963년 회전기금 설치(2억원), 1967년 조달기금 설치(9억 8,300만원)에 이어 1995년부터 회전자금으로 전환(4,254억원)되었다.

조달청은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근거를 두고 조달특별회계 내의 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전자금을 보유한다. 「국가재정법」에 대한 특별법인 「정부기업예산법」 제13조에서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대한 예외를 법률로써 인정하고 있으므로, 조달특별회계가 세입세출 외에 사업의 운영상 필요한 자금을 보유하더라도 동 자금의 보유가 「국가재정법」 제17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현재 회전자금을 통해 운용되는 사업은 수요물자사업과 비축물자사업으로 구분된다. 수요물자계정은 조달업체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달청이 수요기관을 대신하여 국내 생산 물품 및 용역의 대가를 납품업체에 우선 지급한 후, 수요기관에 납입고지하여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비축물자계정은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 수급과 물가 안정을 위한 것으로,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민간과 협력하여 생활필수품, 원자재, 금속 등을 비축하거나 공급 후 판매 대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조달청은 회전자금 운용과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여유자금이 발생할 경우 시중은행에 예치하여 이자수익을 창출하고, 자금 수요가 급증하는 명절이나 연도 말에는 자금 부족의 해소를 위하여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또는 국고금 통합계정의 여유자금을 이용한다.

회전자금의 규모

최근 5년간(2018~2022년) 회전자금의 규모를 살펴보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1조 3,076 억원으로 동일한 수준의 회전자금이 운용되었다. 그러나 2020년에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비축을 위해 1,006억원이 증액되었고, 2022년에는 요소 및 요소수와 그 외 긴급수급조절물자 비축을 위해 481억원이 증액되어, 2022년 기준 회전자금은 1조 4,563억원 규모이다.

[연도별 회전자금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회전자금		13,076	13,076	14,082	14,082	14,563
수요물자계정		1,051	1,051	1,051	1,051	1,051
비축물자계정		12,025	12,025	13,031	13,031	13,512
전년대비	증감	0	0	1,006	0	481
	증감률	0.0	0.0	7.7	0.0	3.4

자료: 조달청

회전자금의 운용

회전자금은 수요물자와 비축물자로 구분하여 운용하고 있다.

수요물자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조달사업법」 제2조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등에 따른 물자로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수요기관에 필요한 물자를 말한다. 수요물자는 수요기관의 장이 물품 및 용역을 요청하면 조달청장이 국내 및 국외에서 구매·공급(임차 또는 대여 포함)하는 절차를 거친다. 그러나 재해 또는 사고로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수요기관이 직접 물자를 조달한다. 수요물자에는 레미콘, 컴퓨터와 같은 각종 건설자재 및 행정용품 등이 포함되며, 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 등 일부 품목은 제외된다.

비축물자는 「조달사업법」 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등에 따른 물자로서 장단기의 원활한 물자수급과 물가안정, 재난·국가위기 등 비상시 대비를 위하여 정부가 단독으로 또는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비축하거나 공급하는 원자재, 시설자재 및 생활필수품이다. 비축대상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후 고시 등의 절차를 거쳐 지정하는데, 현재 「비축대상물자 고시」에는 비철금속, 희소금속, 방산물자용 원자재, 재활용원자재, 긴급수급조절물자 등이 지정되었다.

이 중 '희소금속'은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과 달리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으로, 신산업·신에너지 분야의 핵심 소재로서 산업적 수요가 큰 리튬, 망간, 코발트 등이 포함되어 있다. 현재 금속비축 업무는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舊 한국광물자원공사)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국회·감사원 등의 금속비축 일원화 권고에 따라, 정부는 '금속자원 비축제도 개선방안'을 마련('19. 6) 후 조달청이 보유 중인 희소금속 9종을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이관하여 금속비축 업무가 일원화되도록 노력 중이다.²⁰⁰⁾

200) 조달청과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양측은 목표 이관시점을 '22년으로 하고 이관 완료를 위해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긴 「희소금속 이관 및 이관 前 관리 공동기준」을 마련('20. 6)하였으나, 예산 확보 난항 및 비축창고 적재공간 부족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 이

또한 ‘긴급수급조절물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긴급히 비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비축대상물자 고시’ 관련 긴급수급조절물자 지정 공고(기획재정부 공고)를 통해 지정되며 그 사례로는 ‘마스크²⁰¹⁾’와 ‘요소 및 요소수²⁰²⁾’가 있다.

전략물자

전략물자는 「대외무역법」 제19조²⁰³⁾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으로 지정·고시된 물품에 해당한다. 2021년 12월 기준 「대외무역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전략물품은 총 1,760종이다.

전략물자의 관리는 전략물자 여부에 대한 판정과 전략물자로 판정된 물품의 수출 허가로 구분된다. 무역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 등이 전략물자 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전략물자 판정은 「대외무역법」 제20조²⁰⁴⁾에 따른 「전략물자 수출입고시」에 의거하여 전략물자관리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과 방위사업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략물자로 고시된 물품을 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전략물자관리원 등 허가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정 교육을 이수한 경우 수출하려는 자의 자가판정을 통해 전략물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수출하려는 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할 경우 수출하려는 자는 허가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아 해당 물품을 수출할 수 있다.

전략물자판정은 2017년 5,095건에서 2021년 1만 3,965건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자가판정은 2017년 2,646건에서 2021년 1만 318건으로, 전문판정은 2017년 2,449건에서 2021년 3,647건으로 증가하였다. 전략물자에 대한 수출허가는 2017년 4,238건에서 2021년 4,780건으로 증가하였다.

관시점의 이연 등을 내용으로 하는 관리 공동기준 개정안을 작성하였으며, 현재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서 해당 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

201) (2020년 4월 24일) 마스크 지정: 2020년 1월부터 확진자가 발생한 코로나19의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국가가 선제적으로 감염 예방 필수품인 마스크를 비축할 필요가 있어 지정

202) (2021년 11월 10일) 요소 및 요소수 지정: 2021년 10월부터 요소 수입 급감으로 요소수 생산에 차질이 발생하면서,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위해 요소수를 사용하는 디젤 차량 운행 등을 위해 필요한 요소수 긴급 정부수요 물량을 공급하기 위해 지정

203) 「대외무역법」

제19조(전략물자의 고시 및 수출허가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라 한다)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하여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지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204) 「대외무역법」

제20조(전략물자의 판정 등) ② 물품등의 무역거래자(제19조제2항에 따른 기술이전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임하거나 기술이전 행위를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24조의2 및 제25조에서 같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하려는 물품등이 전략물자 또는 제19조제3항제13호에 따른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장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문기관에 판정을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현황]

(단위: 건)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략물자 판정신청건수	84,423	105,080	107,226	108,698	101,189
전략물자 판정건수(자가+전문판정)	5,095	5,726	10,172	6,089	13,965
전략물자 판정건수(자가판정)	2,646	3,547	6,814	3,295	10,318
전략물자 판정건수(전문판정)	2,449	2,179	3,358	2,794	3,647
전략물자 수출허가건수	4,238	5,025	4,810	4,004	4,780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5절 결산과 재정제도

1. 정부 결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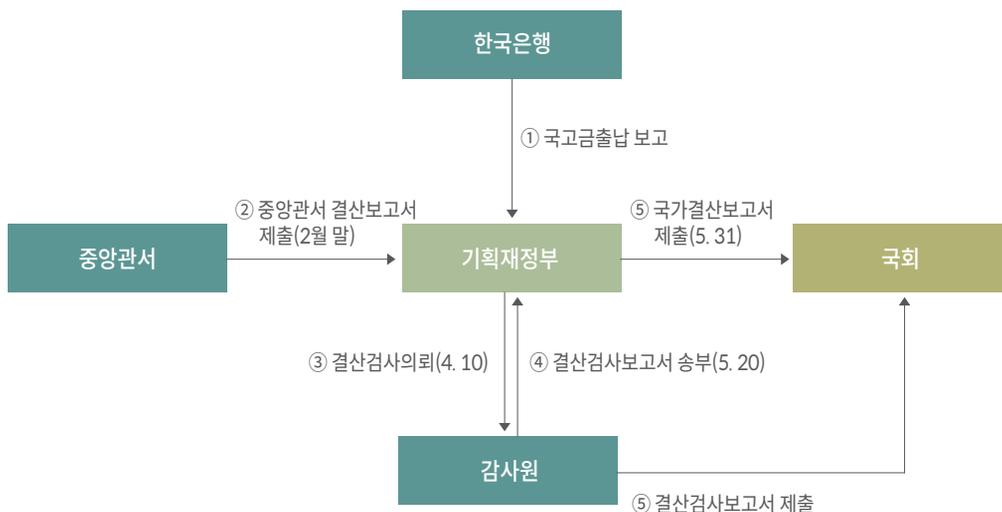
정부의 결산 과정

정부의 결산 과정은 「국가재정법」, 「국가회계법」, 「국고금 관리법」 등에 규정되어 있다. 이는 출납사무 완결, 각 중앙관서의 결산보고서 등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의 국가결산보고서 작성 및 국무회의 심의, 감사원의 결산 검사,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 제출 등으로 이루어진다. 출납사무의 완결이란 수입금의 수납행위와 지출금의 지급행위를 종료하고 국고금 출납장부를 마감하는 것을 말한다.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에서는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를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납장부가 마감되면 각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한 일반회계·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작성한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 주체는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한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하며, 기획재정부는 각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국가결산보고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다음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해야 한다.

감사원은 수입과 지출, 재산의 취득·보관·관리 및 처분 등에 대한 검사를 포함하는 회계 검사를 실시하여 결산을 확인한다. 이를 통해 결산의 합법성과 정확성을 점검하여 변상책임의 판정, 징계·문책요구, 시정·개선요구, 고발 등의 조치를 한다. 감사원은 결산검사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다시 송부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가 완료되면 정부는 국가결산보고서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의 결산과정]



결산보고서의 구성

국가결산보고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출하는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를 하나로 통합·작성하여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과를 반영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결산보고서를 말한다. 중앙관서 결산보고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국가재정법」 제58조·제73조 및 「국가회계법」 제13조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그 소관에 속하는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통합하여 작성한 결산보고서를 의미한다.²⁰⁵⁾

국가결산보고서

국가결산보고서는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따라 결산 개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 성과보고서로 구성된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결산보고서는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있다.

205)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자가 관리하는 기금의 결산 보고서는 해당 기금관리 주체가 기금에 관한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면, 이를 중앙관서 결산보고서에 포함시킨다.

[결산보고서의 구성 및 작성방법]

구분	구성서류 작성방법
1. 결산개요	결산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과, 재정운용과 재무상태를 파악하도록 작성
2. 세입세출결산 (수입지출결산)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과 동일한 구분에 따라 그 집행결과를 종합하여 작성
3. 재무제표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4. 성과보고서	성과계획서상의 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

결산개요는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재무제표 및 성과보고서의 내용을 요약하여 예산 및 기금의 집행결과, 재정의 운영 내용과 재무 상태를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세입세출결산은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에 따라 예산이 집행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다.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세입세출결산에는 세입예산액·징수결정액 등 세입에 관한 사항 및 세출예산액·지출액·불용액 등 세출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수입지출결산에는 당초 수입계획액·징수결정액·수납액 등 수입에 관한 사항 및 당초 지출계획액·지출액·불용액 등 지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 명시 사항]

구분	세입세출결산	기금의 수입지출결산
세입 또는 수입에 관한 사항	세입예산액, 이체 등 증감액 세입예산 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당초 수입계획액, 수정 수입계획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세출 또는 지출에 관한 사항	세출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사용액, 전용등 증감액 초과 지출액, 세출예산 현액 지출액, 다음 연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지출계획액, 수정 지출계획액 전년도 이월액, 지출계획 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자료: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4조(결산보고서의 작성)

재무제표는 거래를 측정·기록·분류·요약해 작성되는 회계보고서로,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된다. 재정상태표는 기업의 대차대조표에 해당하며, 현재의 자산과 부채의 명세 및 상호관계 등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다. 재정운영

표는 기업의 손익계산서에 해당하며,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 결과를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특히 기금별, 부처별 재정운영표에 프로그램 순원가를 표시하여 사업별 순원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명세를 표시한다.

성과보고서는 성과계획서에서 정한 성과목표와 그에 대한 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는 것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 성과지표별 달성현황, 성과분석 및 개선사항 등을 프로그램예산 체계상의 단위사업 수준에서 설명하고 있다. 성과보고서는 기관별 성과목표 달성 분석을 통해 재정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다음 연도 예산편성에 환류하기 위한 제도이다.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국가회계법」 제15조의2에 따라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과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있다. 세입세출(수입지출) 결산의 첨부서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포함되어 작성되고 있고, 국가채무관리보고서 등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는 별도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재무제표 부속서류 중 ① 국가채무관리보고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로 정의되는 국가채무를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하여 매 회계연도말 기준으로 현황을 작성한 보고서이다. ②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를 의미하는 국가채권의 현황을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으로 구분하여 현황을 나타내고 있다. ③ 국유재산관리운영보고서는 모든 국유재산을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재산으로 구분하여, 국유재산 현황 및 증감 내역과 국유재산종합계획 집행실적을 명시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④ 물품관리운영보고서는 물품을 소관별·품종별·회계별로 구분하여 현황과 증감사유 등을 제공하고 있다.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

세입세출결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계속비 결산명세서 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3.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4.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5. 이월명세서 6. 명시이월비 집행명세서 7.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8. 성인지 결산서 9.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 10. 예비금 사용명세서 1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12. 현물출자명세서 13.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14.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처리명세서 15. 세계잉여금의 내역 및 사용계획
수입지출결산(기금)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재원조성실적표 2. 성인지 기금결산서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 4. 기금운용계획의 변경내용 설명서
국가결산보고서 세입세출결산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통합재정수지표 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사용명세서
재무제표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가채무관리보고서 2.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3.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4. 물품관리운용보고서

자료: 「국가회계법」 제15조의2, 「국가회계법 시행령」 제5조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2에 따라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다음 연도 2월 10일까지 완결되어야 한다. 이때 총세입액과 총세출액이 확정되면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을 차감한 금액이 도출되며, 이를 세계잉여금이라 한다.²⁰⁶⁾

최근 세계잉여금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2013년, 2014년은 경제여건 악화에 따른 세입 실적 저

206) 국가결산보고서상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으로, 「국가재정법」에 따른 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 중 이월액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이월금, 적립금도 제외한 개념이다.

조와 재정집행 증가 등에 따라 세계잉여금이 음의 값을 기록하였다. 세계잉여금은 2015년 이후 흑자로 전환하여 2018년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 약 2.1조원 규모로 큰 폭으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국세수납액이 2019년 예산 대비 1.3조원 결손된 것에 주로 기인한다. 2021년은 예산 대비 세입이 약 17.5조원 초과함(국세수입 +29.8조원, 세외수입 △12.3조원)에 따라 세계잉여금 규모가 23.3조원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연도별 세계잉여금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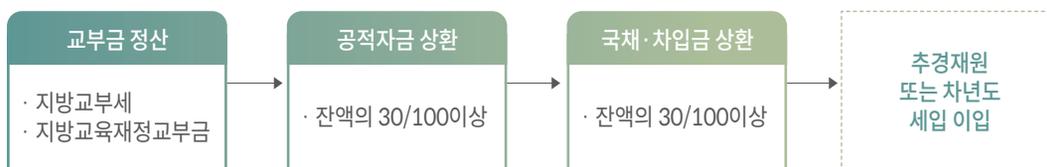
(단위: 억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7,607	△7,618	28,138	80,316	112,855	131,547	21,228	93,550	233,232
일반회계	812	964	25,276	60,920	100,422	106,575	619	57,193	179,949
특별회계	△8,419	△8,582	2,862	19,396	12,433	24,972	20,609	36,357	53,283

자료: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제90조²⁰⁷⁾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을 살펴보면, 개별 법령에 따라 해당 회계세입으로 이입되는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을 제외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하며, 그 후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국채 또는 차입금 등 국가채무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잔액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후의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국가재정법」 제90조에 따른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순서]



207) 「국가재정법」

제90조(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② 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연도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사용 내역]

(단위: 억원, %)

연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A)	사용내역				
		지방교부세 등 정산(B)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 및 국가채무		추가경정예산 재원	다음연도 세입이입
			상환(C)	C/(A-B)		
2011	51,285	19,586	16,167	51.0	0	15,532
2012	8,533	1,886	3,390	51.0	3,257	0
2013	812	0	414	51.0	0	398
2014	964	0	492	51.0	472	0
2015	25,276	0	12,891	51.0	12,386	0
2016	60,920	38,091	11,643	51.0	11,186	0
2017	100,422	59,762	20,737	51.0	19,923	0
2018	106,575	105,291	655	51.0	629	0
2019	619	619	0	0	0	0
2020	57,193	22,653	17,615	60.5	16,924	0

주: 1. 2019회계연도에는 세계잉여금 규모가 과소하여 전액 지방교부세·교부금 정산에 활용되었음

2. 매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서 지방교부세 등 정산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의 30%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출연되었고, 그 후 남은 잔액의 30%가 채무상환에 사용되었음

자료: 기획재정부

특별회계 세계잉여금 처리 절차

2021회계연도 재정운용 결과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은 18.0조원으로 전년 5.7조원에 비하여 12.3조원(215.8%) 증가하였고, 특별회계 세계잉여금은 5.3조원으로 전년 3.6조원 대비 1.7조원 (47.2%) 증가하였다.

[2021회계연도 마감 결과]

(단위: 조원)

구분		예산 (2차 추경기준)	총세입 (A)	총세출 (B)	결산잉여금 (C=A-B)	이월 (D)	세계잉여금 (E=C-D)
합계	2021(a)	506.7	524.2	496.9	27.3	4.0	23.3
	2020(b)	460.0	465.5	453.8	11.7	2.3	9.4
	(a-b)	46.7	58.7	43.1	15.6	1.7	13.9
일반 회계	2021(a)	424.4	438.4	417.7	20.6	2.6	18.0
	2020(b)	389.1	392.4	385.2	7.1	1.4	5.7
	(a-b)	35.3	46.0	32.5	13.5	1.2	12.3
특별 회계	2021(a)	82.3	85.8	79.1	6.7	1.3	5.3
	2020(b)	70.8	73.1	68.6	4.5	0.9	3.6
	(a-b)	11.5	12.7	10.5	2.2	0.4	1.7

주: 구성항목별 계산금액은 단수 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이하 표 동일)

자료: 기획재정부, 「2021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2.2.11.

「국가재정법」 제90조에서 규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처리되는 일반회계 세계잉여금과 달리, 특별회계의 세계잉여금은 각 근거 법률에 따라 처리된다. 2021회계연도의 세계잉여금은 4월 중 법정 절차(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이에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계잉여금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차년도 세입으로 이입되었으며, 기업성이 고려되고 자금의 신속적 운용이 요구되는 특별회계인 기업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양곡관리특별회계·조달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및 우체국보험특별회계는 주로 적립금으로 적립되었다.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단위: 억원)

구분	세계잉여금	처리계획	법적 근거
교도작업특별회계	100	차년도 세입이입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9조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	187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7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3,927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9조
등기특별회계	684		「등기특별회계법」 제5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5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 44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6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제10조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2,06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9조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59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	36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 중심 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50조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234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9조
환경개선특별회계	3,079		「환경개선특별회계법」 제8조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412	이월손실금 보전 및 적립금 적립	「우체국보험특별회계법」 제8조
양곡관리특별회계	274	적립금 및 잉여금 적립	「정부기업예산법」 제21조
조달특별회계	290		
우편사업특별회계	556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589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29	이익잉여금 적립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8조
교통시설특별회계	△1,466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35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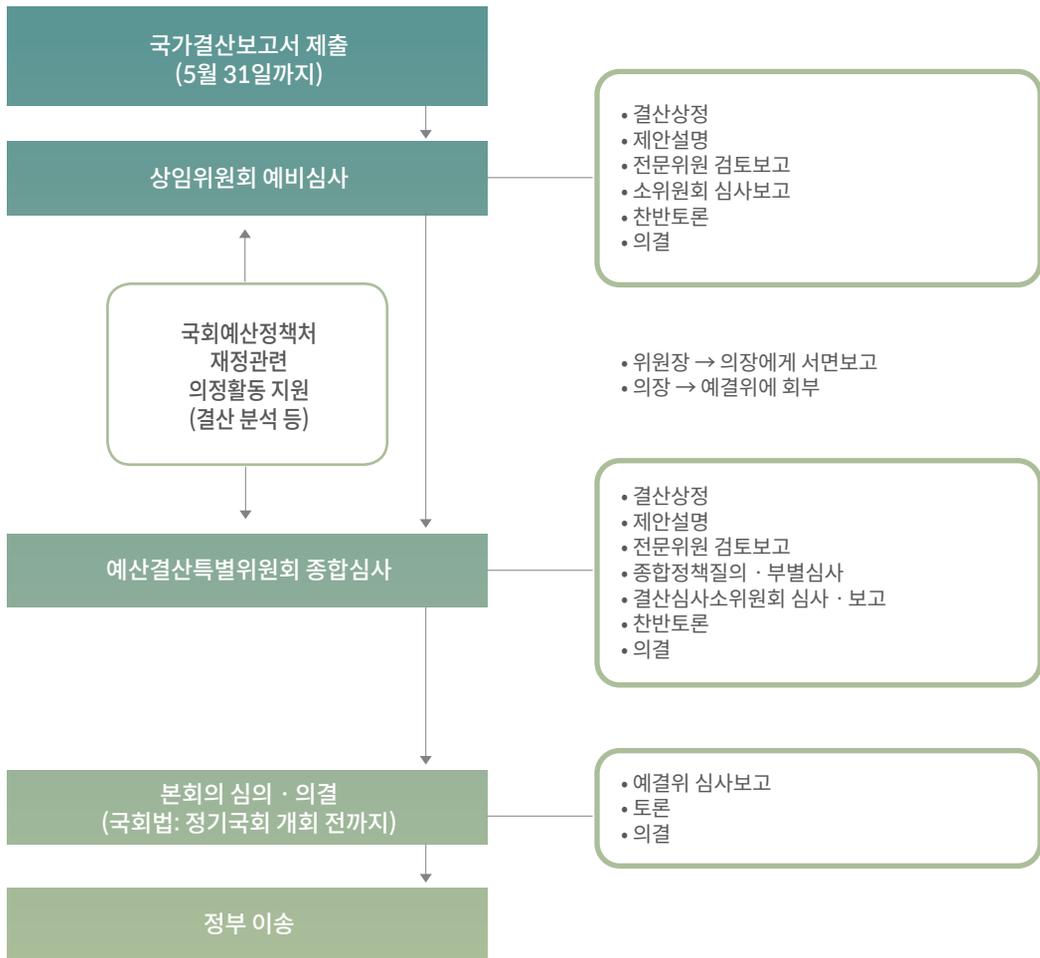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0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2. 국회 결산 심의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

국회의 결산 심의 과정은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본회의 심의·의결 등으로 이루어진다.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정부의 시정연설 절차가 있는데 결산의 경우 시정연설을 하지 않는 것을 제외하면 전반적인 절차는 예산안 심의과정과 유사하다.

[국회의 결산심의 과정]



국회의 결산 심의·의결은 재정 집행에 대한 승인이라는 성격을 가진다. 즉, 예산집행에 대한 사후적 심의를 통하여 적법성 및 타당성을 확인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결산 심의는 위법·부당한 지출 여부 및 국회의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심의를 통한 재정통제기능, 재정운용 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환류기능 등을 가진다. 국가결산보고서에 성과보고서(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및 재무제표(2011회계연도 결산부터)가 포함되도록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이 2008년에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국회의 결산 심사는 종전의 집행 실적 점검 위주에서 성과보고서와 재무제표를 바탕으로 한 성과 중심의 심사로 전환되고 있다.

「국회법」 제128조의2에 따라 국회는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을 정기회 개회 전까지 완료해야 한

다. 「국회법」에 따른 정기회는 매년 9월 1일에 집회되므로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은 매년 9월 1일 정기회 집회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의결은 2021년 12월 2일에 이루어졌다.

[연도별 국회의 결산 의결 현황]

회계연도	결산 제출일자	결산 의결일자
2015년	2016년 5월 31일	2016년 9월 2일
2016년	2017년 5월 31일	2017년 12월 6일
2017년	2018년 5월 31일	2018년 12월 8일
2018년	2019년 5월 31일	2019년 10월 31일
2019년	2020년 6월 1일	2020년 11월 19일
2020년	2021년 5월 31일	2021년 12월 2일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결산의 후속조치

「국회법」 제84조제2항은 결산 심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또는 징계 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국회법」 제127조의2는 결산 결과 문제가 있는 특정사안에 대하여 국회가 의결로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⁸⁾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결산 의결 시 시정요구와 별도로 부대의견을 채택하고 있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국회는 1,881건의 시정요구와 4건의 감사요구, 21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208) 다만, 「국회법」 제127조의2를 통해 국회로 하여금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결산심사 시기가 아닌 경우에도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결산 시정요구·감사요구·부대의견 현황]

(단위: 건)

구 분	2015 회계연도	2016 회계연도	2017 회계연도	2018 회계연도	2019 회계연도	2020 회계연도
시정요구	2,061	1,805	1,833	1,356	1,667	1,881
감사요구	3	1	4	4	4	4
부대의견	27	25	19	23	19	21

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포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보고서」, 각 연도

시정요구

시정요구 제도는 국회 결산 심사 결과 국회가 정부로 하여금 향후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에서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에 대해서 그 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국회의 주요 재정통제제도 중 하나이다. 국회는 「국회법」 제84조제2항²⁰⁹⁾ 후단의 규정에 따라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시정요구의 요건 중 위법이란 예산집행에 있어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이며, 부당한 사항이란 예산을 부적절하게 편성 또는 집행하였거나 집행이 부진한 경우와 회계처리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 등을 의미한다.

시정요구 제도는 2003년에 국회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법」 개정을 통해 도입되었다. 국회가 결산 심의를 통하여 이미 집행된 예산을 무효로 하거나 취소할 수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결과가 적법했는지 등을 확인하여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한 방안으로 도입한 것이다.

시정요구의 유형은 「국회법」에 변상과 징계 등으로 예시되어 있으며, 국회는 변상·징계·시정·주의·제도개선의 5가지로 구분하여 운용 중이다.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로 적용되기도 한다.

209)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② 의장은 예산안과 결산에 제1항의 보고서를 첨부하여 이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심사가 끝난 후 본회의에 부의한다. 결산의 심사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국회는 본회의 의결 후 정부 또는 해당 기관에 변상 및 징계조치 등 그 시정을 요구하고,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시정 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결산시정요구 유형 및 조치대상 기관]

유형	적용기준	조치대상기관
변상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국가 재산에 금전적 손실을 가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장
징계	「국가공무원법」또는 기타 법령에 규정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장관 또는 임용권자
시정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추징, 회수, 원상복구, 사업추진방식 변경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장
주의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당기관이나 책임자에게 주의를 줄 필요가 있는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장
제도개선	법령상 또는 제도상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 감독기관장 또는 소속 기관장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주요업무 가이드」, 2019

최근 5년간 국회 결산 심사 결과 시정요구 건수를 살펴보면 2016회계연도 1,805건에서 2018회계연도 1,356건까지 감소하였다가 2020회계연도에는 1,881건으로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연도별 국회 결산심사 시정요구 현황]

(단위: 건)

회계연도	2016	2017	2018	2019	2020
시정요구	1,805	1,833	1,356	1,667	1,881

주: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포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1.12.

202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시정요구의 유형을 살펴보면 제도개선이 1,197건으로 가장 많으며 주의 534건, 시정 220건, 징계 2건의 순이다.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결과 위원회별 시정요구]

(단위: 건)

구분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국회운영	-	-	1	22	28	1	50
법제사법	-	-	21	52	76	7	142
정무	-	-	12	63	105	7	173
기획재정	-	1	5	45	103	1	153

구분	시정요구유형						계
	변상	징계	시정	주의	제도개선	(중복)	
교육	-	-	6	4	24	1	33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	-	13	16	49	4	74
외교통일	-	-	8	23	56	1	86
국방	-	-	36	27	42	6	99
행정안전	-	1	6	41	116	7	157
문화체육관광	-	-	35	15	23	4	6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	-	6	53	128	2	185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	-	6	25	100	3	128
보건복지	-	-	4	20	113	1	136
환경노동	-	-	7	68	134	17	192
국토교통	-	-	53	51	62	9	157
여성가족	-	-	1	9	37	1	46
공통	-	-	-	-	1	-	1
합계	-	2	220	534	1,197	72	1,881

주: 1. '중복'은 하나의 시정요구 건에 대하여 두 가지 이상의 시정요구 유형이 복수 적용된 경우(예: 시정 및 제도개선)이며, 집계에서 중복은 제외함

2. 예비비지출에 대한 시정요구 포함

자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결산 심사보고서」, 2021.1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1.12.

국회의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

정부 또는 해당 기관은 「국회법」 제84조제2항 후단에 따라 결산 시정요구를 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처리하여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9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 2021년 1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고, 2021년 4월 말을 기준으로 조치결과를 재점검하여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였다. 정부는 후속 조치결과 기준으로 전체 시정요구 중 정보위원회 소관 시정요구를 제외한 1,647건에 대하여 1,377건(83.6%)은 조치를 완료하였고, 270건(16.4%)은 조치 중이라고 보고하였다. 동 조치 미완료 건수의 비율(16.4%)은 전년도인 2018회계연도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 미완료 건수의 비율(13.6%)보다 2.8%p 증가하였다.

시정요구 제도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조치결과에 대한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고, 국회의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결산시정요구에 따라 예산 조정이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심사하여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정부의 예산상 조치가 적정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가 2회에 걸쳐 결산 시정요구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서' 및 '후속 조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후에도 조치가 완료되지 않거나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조치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하도록 제도화하여 결산 심사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국회의 시정요구 취지를 충실히 반영하여 조속히 조치를 이행함으로써 반복적 시정요구를 줄이기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3. 성과관리제도

의의

성과관리제이란 기존의 투입·통제 중심의 방식을 벗어나 성과관리를 통해 획득된 성과정보를 바탕으로 정부업무 수행의 책임성을 제고하며, 예산의 편성·심의·집행·결산의 전(全) 과정을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성과관리 관점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성과관리제도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국가재정법」 및 「국가회계법」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 먼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제2조에서 성과관리의 정의, 제4조에서 성과관리의 원칙, 제5조에서 성과관리전략계획, 제6조에서 성과관리시행계획, 이하의 조문에서는 정부업무평가제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국가재정법」은 제4장의2에서 성과관리를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85조의2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를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분하고, 제85조의3에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하의 조문에서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국가회계법」은 제14조 및 제15조에서 결산보고서 구성서류의 하나로서 성과보고서를 규정하고 있다.

연혁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1990년대부터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980년대 이후 누적되기 시작한 재정적자에 대응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공공서비스의 감소 없이 정부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중기예산제도와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와 같은 국제적 행정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단계적으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사업에 대한 재정지출에 있어 투입 위주의 관리방식을 사용함에 따라 성과 및 책임성 측면에서 취약하였다. 또한 사회보장 관련 재정지출수요의 지속적 증가 등 재정부담 요인들이 상존하므로, 성과관리제도는 미래의 재정수요에 대비하여 정부사업의 효과를 증대시킬 필요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도입과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면, 1999년에 처음으로

성과관리제도가 도입되어 16개 기관에서 시범적으로 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이후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2003년), 정책·성과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2004년),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2005년), 재정사업심층평가(2006년)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었으며, 2009회계연도 성과보고서가 2010년에 최초로 작성되어 국회에 제출되었다. 또한 2016년부터 기획재정부는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 방식을 도입하였다. 통합재정사업평가에서는 개별사업평가를 부처에 위임하고 부처 평가과정 전반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메타평가 방식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평가결과의 환류구조 문제, 평가중복으로 인한 비효율성 문제 등이 제기됨에 따라 2018년부터 메타평가를 폐지하고, 기존의 평가대상사업과 별개로 재정사업심층평가에서 기획재정부가 직접 선정한 핵심사업에 대한 평가를 별도로 시행하는 방식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가 변경되었다. 2020년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에 「국가재정법」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을 위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체적으로 설정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보고서 등의 작성·제출 및 성과평가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며,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의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을 확대·강화하였다.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 추진 현황]

일자	추진 내용
1999.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주의예산제도 도입 및 추진계획마련(16개 기관을 선정하여 시범사업 실시) 부처별 성과지표 개발(정부조직 경영진단)
2000.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6개 시범사업기관의 성과계획서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 2001년도 예산과 관련한 시범사업 추진방침을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하여 통보(기존의 16개 시범기관 외 12개 기관을 추가로 선정, 총 28개 기관)
200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2년도 성과계획서 및 2000년도 성과보고서 작성지침 통보(11개 기관을 시범사업 대상기관으로 추가 선정, 총 39개 기관)
200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으로 전환하기 위해 재정성과목표관리제도를 도입
2004.5~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4년도 성과관리제도 시행지침 시달·정책·성과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체계 도입
2005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성과관리제도의 보완을 목적으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 도입
2006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도입

일자	추진 내용
2008	• 성과계획서 최초로 국회 제출
2010	• 성과보고서 최초로 국회 제출
2016	•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를 개선하여 통합재정사업평가방식 도입
2018~ 2019	• 재정사업자율평가에서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점검하는 메타평가 폐지, 재정사업심층평가에서 핵심사업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
2021	• 「국가재정법」 개정으로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내용을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로 구분 •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담당 공무원 지정 등 추진체계를 마련 • 성과평가의 결과 등 성과정보의 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성과정보 공개

자료: 1. 김춘순, 「국가재정 이론과 실제」, 2014. 10.
 2. 국회예산정책처, 「2015회계연도 재정사업 성과평가」, 2016. 7.
 3. 기획재정부, 「80대 핵심사업 평가 추진계획」, 2018.1.
 4. 기획재정부,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안번호 13611」, 2021.12.

주요 내용

재정사업 성과관리제도는 크게 성과목표관리, 성과평가로 구분될 수 있다. 성과목표관리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를 관리하는 제도이다. 또한 성과평가는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하는 것이다.

[성과관리제도 현황]

평가제도	성과관리내용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결과의 관리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분석·평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은 정부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기획재정부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아래 사항을 포

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재정성과운영관)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성과목표담당관)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2022년도 예산안부터 성과계획서 작성단위를 ‘단위사업 및 프로그램’ 기준에서 ‘프로그램’ 기준으로 상향하였다.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재정사업 성과평가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주요 재정사업을 스스로 평가(재정사업자율평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심층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하기 위하여 재정지출 구조의 적정성과 분야별 재정지출의 우선순위에 대한 분석·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재정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할 수 있으며,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포상 등을 할 수 있다.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4. 국가회계제도와 국가재무제표 결산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발생주의는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거래를 기록하는 방식을 말하는 것으로 현금의 변동이 있을 경우 거래를 기록하는 현금주의와 상대되는 기록 방식을 의미한다. 복식부기는 거래 발생과 동시에 기록을 두 번(차변과 대변)하는 방식으로, 단식부기와 상대되는 기록방식이다. 따라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란, 경제적 거래가 발생하는 시점에 차변과 대변을 동시에 회계 처리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연혁

1998년 5월 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의 도입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고, 2007년 10월 「국가회계법」의 제정을 통해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를 도입하게 되었다. 상기 「국가회계법」의 2009년 시행으로, 우리나라 중앙정부는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에 따른 결산

및 재무보고를 2011 회계연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국가회계법」 제14조(결산보고서의 구성)에 따르면, 국회에 제출되는 국가결산보고서에는 세입세출결산 외에도 재무제표(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가 포함된다. 이러한 구성에 따라 우리나라의 결산보고서는 현금주의·단식부기 방식의 세입세출 결산과 발생주의·복식부기 방식의 재무제표를 모두 작성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

국가재무제표는 국가재정활동에 이해관계를 갖는 정보이용자가 국가가 공공회계 책임을 적절히 이행하였는지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재무제표는 정보이용자에게 국가의 재정상태와 그 변동과 재정운영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포함한다. 또한, 재무제표의 부속서류로 필수보충정보와 부속명세서를 두고 있다.

재정상태표는 국가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국가 자산이 세부적으로 어떤 자산으로 구성되어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부채 중 상환이 확정된 부채 외에 연금충당부채와 같이 지급시기와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부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재정운영표는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결과를 표시하는 재무제표이며, 발생주의 방식에 따른 감가상각비 등의 비용을 포함하고, 수익 등을 차감하여 산출됨에 따라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결산보다 구체적인 원가정보를 제공한다.

순자산변동표는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내역을 보여주며,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하다. 국가의 순자산변동표는 기초순자산에서 재정운영결과를 차감하고, 납입자본의 증가, 투자증권평가손익 등의 조정항목을 가산하여 기말순자산을 산출한다.

주석은 재무제표의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양적, 질적 정보를 제공하며, 중요한 회계처리방침,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지급보증 등) 등이 있다.

필수보충정보는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기 위한 정보 등으로,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연금보고서, 국세징수활동표 등으로 구성된다.

부속명세서는 단기투자증권명세서, 장기투자증권명세서, 사회기반시설명세서, 차입금명세서 등이 있으며, 재무제표에 표시된 계정과목의 세부적인 금액과 사항을 기록하고 있다.

[국가재무제표 구성항목]

종류	설명	
재무제표	재정상태표	재정상태일 현재의 자산, 부채 및 순자산으로 구성된 재정상태를 표시
	재정운영표	회계연도 동안 수행한 정책 또는 사업의 원가와 재정운영에 따른 원가의 회수 명세 등을 포함한 재정운영결과를 표시
	순자산변동표	회계연도 동안 순자산의 변동을 표시하며, 기초순자산, 재정운영결과, 재원의 조달 및 이전, 조정항목, 기말순자산으로 구분 표시
	주석	정보이용자에게 충분한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채택한 중요한 회계정책과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설명
부속서류	필수보충정보	재무제표에는 표시하지 아니하였으나, 재무제표의 내용을 보완하고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정보
	부속명세서	재무제표에 표시된 회계과목에 대한 세부명세를 명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국가재무제표 상의 총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

2020년 말 기준으로 국가재무제표 상의 총자산은 2,487조원이며 부채는 1,982조원으로, 총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505조원이며, 순자산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3%이다.

2011회계연도부터 국회에 제출된 국가재무제표 상의 총자산은 2011년 1,525조원에서 출발하여 2020년까지 총 962조원 증가하였는데, 동 기간 동안 부채는 773조원에서 1,982조원으로 1,209조원 증가하여 총자산 증가액을 넘어서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총자산이 연간 평균적으로 5.6% 증가함에 비해 부채가 11.2% 증가함에 따라 순자산은 3.6% 감소하였다.

[국가 총자산, 부채, 순자산 현황]

(단위: 조원, %)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평균 증감률
총자산	금액(a)	1,525	1,580	1,666	1,759	1,856	1,967	2,063	2,127	2,299	2,487	-
	증감률	-	3.6	5.4	5.6	5.5	6.0	4.9	3.1	8.1	8.2	5.6
총부채	금액	773	902	1,118	1,213	1,293	1,433	1,556	1,683	1,744	1,982	-
	증감률	-	16.7	23.9	8.5	6.6	10.8	8.6	8.2	3.6	13.6	11.2
순자산	금액(b)	752	678	548	546	563	534	507	443	555	505	-
	증감률	-	△9.8	△19.2	△0.4	3.1	△5.2	△5.1	△12.6	25.3	△8.9	△3.6
순자산비율(b/a)		49.3	42.9	32.9	31.0	30.3	27.1	24.6	20.8	24.1	20.3	-

자료: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국가의 총자산은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사회기반시설²¹⁰⁾,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성된다.

부채는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장기충당부채와 비유동부채로 구성된다. 유동부채와 장기차입부채는 상환의무가 있는 부채임에 반해, 장기충당부채는 연금충당부채 등 지출시기와 지출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다.

재정운영결과

2020년도 국가재정운영표 상 재정운영순원가는 448.1조원이며, 재정운영순원가에 국세수익 등의 비교환수익 347.5조원을 차감하여 산출한 재정운영결과는 100.6조원으로, 재정운영결과 값이 양(+)이라는 것은 재정운영을 위해 투입한 비용이 국세수익 등의 수익보다 많았음을 의미한다. 재정운영순원가는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투입한 프로그램순원가에서 인건비 등의 관리운영비 등을 가산한 것이다.

국가재정운영표 상의 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입한 원가에서 프로그램 수행과정에서 발생한 직접수익을 차감한 프로그램 순원가는 2011년 224.0조원 이후 증가하는 추세이며 2020년에는 코로나19 위기 등에 따른 재정 확장 정책 등에 따라 453.8조원에 이른다. 이는 정부의 프로그램 중심의 정책사업 원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국가재정운영표]

(단위: 조원)

구분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I. 재정운영순원가	257.6	254.1	275.3	265.0	244.6	363.5	345.2	343.3	395.2	448.1
1. 프로그램순원가	224.0	242.2	263.8	262.9	236.6	301.7	328.4	344.6	388.2	453.8
2. 관리운영비	18.9	21.0	21.4	22.7	24.0	24.4	25.4	26.5	27.4	28.6
3. 비배분비용	61.0	33.8	29.5	21.8	28.1	79.4	34.7	23.7	18.5	19.3
4. (-) 비배분수익	△46.3	△42.9	△39.4	△42.4	△44.1	△42.0	△43.3	△51.5	△38.9	△53.6
II. 비교환수익 등	230.4	254.9	246.5	257.2	274.0	304.9	324.1	351.1	351.7	347.5
1. 국세수익	195.3	202.7	204.6	207.0	218.2	243.4	266.1	294.9	291.8	288.7
2. 부담금수익	13.3	14.6	14.6	15.0	16.3	17.3	17.2	17.6	17.5	17.3
3. 사회보험수익	10.7	12.1	12.7	14.1	14.9	15.7	16.3	17.9	19.1	20.3
4. 제재금수익 등	4.7	5.3	5.1	6.0	5.6	5.8	6.6	6.1	5.2	5.9
5. 기타재원조달 및 이전	6.4	20.2	9.5	15.1	19.0	22.7	17.9	14.6	18.1	15.3
III. 재정운영결과(I-II)	27.2	△0.8	28.8	7.8	△29.4	58.6	21.1	△7.8	43.5	100.6

자료: 대한민국 정부, 연도별 국가결산보고서

210) 사회기반시설은 도로, 철도, 항만,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여항 등을 말한다.

다양한 정보제공자로서의 국가재무제표

현금주의 방식의 세입세출결산서를 통해서도 파악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정보가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에 따른 국가재무제표를 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되고 있다.

재정상태표는 국가 총자산의 크기와 국가가 제공하는 다양한 공공서비스 등에 활용하는 자산 규모 등을 제공한다. 정보이용자는 국채 등과 같이 상환원리금이 정해진 채무 외에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으로 인하여 부담할 향후 부채규모를 국가재무제표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재정운영표 상의 프로그램순원가는 국가가 재원을 조달하여 제공한 서비스의 순원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재정활동결과에 대한 평가 등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국가가 부담하는 지급보증으로 인한 우발부채, 계류 중인 소송사건 등에 대한 정보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에서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방대하고 유의미한 정보가 국가재무제표에서 제공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회계용어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활용도가 낮은 측면이 있다. 따라서 국가재무제표가 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석기법 등에 대한 연구와 전문교육 강화가 필요하다.

발전과제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제도가 재정운영에서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① 예산과 회계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발생주의 회계 결산자료를 각종 재정사업이나 사업수행자의 평가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② 재무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각 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적절히 분류하고 평가하여 재무제표에 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할 필요가 있다. ③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등 예산사업의 순원가를 충분하게 파악하고 유사 사업과의 비교평가를 용이하게 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④ 성과관리 활용을 강화하기 위하여 예산체계상 프로그램이나 단위사업이 성과 또는 산출물의 유형에 따라 재편성되고, 성과관리체계가 이러한 예산체계와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6절 기타재정제도

1. 법안비용추계

의의

법안비용추계는 발의·제안 또는 제출된 법률안이 의결되어 시행될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재정지출의 순증가액 또는 재정수입의 순감소액을 전문적인 추계기법을 활용하여 추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법률 시행에 따른 국가 및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증가하여 재정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안에 수반되는 비용을 사전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법안이 실제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재정소요를 점검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다. 즉, 입안하는 단계부터 국가가 부담해야 할 재정소요에 대해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국가재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연혁

국회는 1973년에 「국회법」을 개정하여 의원이 예산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법안을 발의할 때 ‘예산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실제 예산명세서 첨부실적은 제13대 국회에서 제16대 국회까지 총 의원발의 법안 수 대비 3.8%(121건/3,171건)에 불과할 정도로 미미하였다. 정부제출 법안에 대해서도 1999년에 재정소요 추계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추계서의 첨부실적이 높지 않았다.

비용추계제도가 활성화된 것은 제17대국회(2004.5.~2008.5.) 부터이다. 2005년 7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예산명세서’라는 용어를 ‘비용에 대한 추계서’로 표현을 변경하고, 의원발의 의안 외에 위원회제안 의안과 정부제출 의안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하도록 하였다. 이보다 앞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04년부터 비용추계 업무를 시작하였고, 정부의 경우에도 2006년 10월 「국가재정법」의 제정으로 비용추계서 작성 및 제출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2007년부터 정부제출안에 적용하였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011년 7월 「지방자치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비용추계서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하도록 규정하였다.

2014년 3월 「국회법」을 개정하여 2015년 3월부터 의원 또는 위원회가 재정수반의안을 발의 또는 제안하는 경우 및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을 수정한 경우 반드시 국회예산정책처가 작성한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다만, 의안 발의·제안의 적시성 및 의안 처리의 효

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대한 비용추계요구서를 첨부한 경우에는 재정수반 의안을 발의한 후 위원회 심사 전까지 추계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위원회가 제안하거나 위원회에서 수정된 재정수반 안건은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추계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21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비용추계 회답서를 비용추계를 요구한 의원뿐 아니라 직접 의장(국회사무처 의안과)에게도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비용추계제도를 효율화하고, 비용추계서 제출이 누락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재정수반 법안의 발의·제안 절차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안을 의원 또는 위원회가 발의·제안하는 경우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국회예산정책처에 요구하고,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여 법안을 발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의원이 긴급한 사유 등으로 인하여 법안을 우선 발의하려는 경우에는, 의원은 국회예산정책처에 발의하려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를 요구하고, 「의안비용추계 요구서」를 법안에 첨부하여 법안을 발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종전에는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로부터 회답받은 비용추계서 또는 비용추계 미첨부사유서를 위원회의 심사 전에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였으나, 2021년 7월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현재는 국회예산정책처가 직접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비용추계서 회답서를 제출하고 있다.

정부가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여 비용추계가 필요한 법률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법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는 국회와 같이 법안비용추계서 작성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이 없어, 대부분의 경우 법안을 담당하는 부처에서 비용추계서를 직접 작성하여 법안에 첨부하고 있다.

[비용추계 관련 법안 발의 절차]



국회에산정정책처의 비용추계 회답실적

국회에산정정책처가 의원에게 제공한 비용추계서의 회답 실적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5년(제17대 국회)에는 168건을 의원에게 회답하였으며, 2009년(제18대 국회)에는 588건, 2013년(제19대 국회)에는 866건을 회답하는 등 회답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국회에산정정책처의 비용추계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국회법」 규정이 시행된 2015년 이후부터 국회에산정정책처의 회답 건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15년 1,994건, 2016년 3,020건, 2017년 3,407건에 이어 2020년에는 4,645건, 2021년에는 4,911건의 회답건수를 기록하였다.

[2015년 이후 의안비용추계 회답 현황]

연도	접수건수(건)	회답건수(건)
2015	1,994	1,994
2016	3,020	3,020
2017	3,407	3,407
2018	3,179	3,179
2019	2,779	2,779
2020	4,645	4,645
2021	4,913	4,911

주: 연도별 회답실적은 비용추계 의뢰년도 기준이며, 2021년 회답실적은 2022년 2월 16일 기준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 사례

법인세율 변경: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2021.01.25.발의)

1. 주요내용

- 비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2. 재정수반요인

- 본사 소재지에 따라 법인세율 이원화
 - 비수도권에 본사가 소재하고 있는 내국기업에 대하여 인하된 법인세율 적용

3.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귀속소득 분부터 변경된 법인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2~2026년까지 집계
 - 2022년 귀속소득에 대한 세수효과는 징수기준에 따라 2023년부터 발생
 - 단, 중간예납 정산을 고려할 경우 2022년에 세수효과 일부 발생 가능
- 비수도권 본사 소재지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하 세수효과는 다음의 가정을 통해 추계
 - 2019년 신고기준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가 향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과표 구간별 1기업당 과세표준은 국회예산정책처의 법인세 전망 증가율에 따라 증가할 것으로 가정
 - 산출세액 대비 공제·감면 수준이 동일한 비율을 유지할 것으로 가정
- 법인세율 변화에 따른 기업의 행태변화는 미고려
 - 세율 변동에 따라 본사 소재지를 이동하거나 투자·생산 등 기업의 행태가 변화할 경우, 비용추계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음

4. 비용추계 내역 및 결과

- (전망방법) 비수도권 소재기업을 대상으로 과세표준 구간별로 “1개 기업당 세액차이 × 법인수”를 계산한 후, 구간별 세수효과를 합산
- 1법인당 부담세액 변화분에 과세표준 구간별 기업수(2019년 신고기준)를 곱하여 전체 산출세액 변화분 추계
- 산출세액 대비 총부담세액 비중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하여 공제 감면에 따른 부담세액 변화분 추계
- 법인세 징수기준을 고려 시, 비수도권 소재 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인하함에 따라 법인세는 2022년 0.5조원, 2026년 6.9조원 등 2022년에서 2026년까지 5년간 총 26.5조원(연평균 5.3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계

[비수도권 소재 기업 법인세율 인하안에 따른 재정수입 변화: 법인세]

(단위: 조원)

	2022	2023	2024	2025	2026	합계	연평균
법인세율 인하안에 따른 법인세 수입 변화	△0.5	△6.1	△6.4	△6.6	△6.9	△26.5	△5.3

2.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의의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법률(이하 ‘가결 법률’)이 시행될 경우 예상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향후 5년간의 재정변화를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재정변화란 기준선²¹¹⁾과 비교하여 제·개정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추가’ 혹은 ‘신규’로 발생하는 수입 또는 지출의 증감을 의미한다.

유사개념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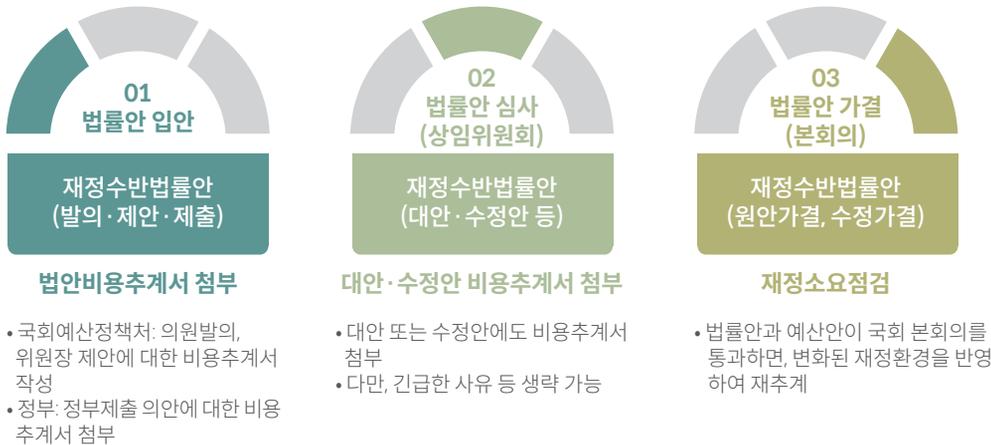
재정소요점검은 입법의 재정영향을 분석한다는 점에서 「국회법」 제79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안비용추계와 유사하다.

법안비용추계는 법안 발의단계에서 재정수반법률안의 재정수반요인이 야기하는 ‘비용’, 즉 ‘지출이 순증하거나 수입이 순감하는 경우’가 추계 대상이다. 반면, 재정소요점검은 국회 본회의에

211) 기준선(baseline)은 현재의 법과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때의 수입 또는 지출 규모를 의미하며, 물가상승률 등 거시경제 지표들을 반영하여 전망한 것이다.

서 가결된 법률을 대상으로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 등 재정환경 변화²¹²⁾를 고려하여 지출 또는 수입의 순감 및 순증까지 포함한다.

[재정수반법률안에 대한 법안비용추계 및 재정소요점검 처리과정]



점검대상

재정소요점검 대상은 국회에서 가결된 '재정수반법률'이며, 분석단위는 재정수반법률에 포함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재정수반요인'이다. 재정소요점검 대상인 재정수반법률은 법률안이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수정안, 긴급한 사유로 비용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은 일부 위원회안 및 정부제출안 등 모든 가결 법률이 포함된다.

필요성

재정소요점검은 가결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의 현황을 파악하고,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추계하여 입법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어 유용하다.

첫째, 재정소요점검은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수정된 재정수반요인과 재정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추계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법안비용추계제도를 보완할 수 있다.²¹³⁾

212) '재정환경 변화'는 발의단계 비용추계 시점과 달라진 거시경제지표 변화(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등)와 확정예산 등을 반영하였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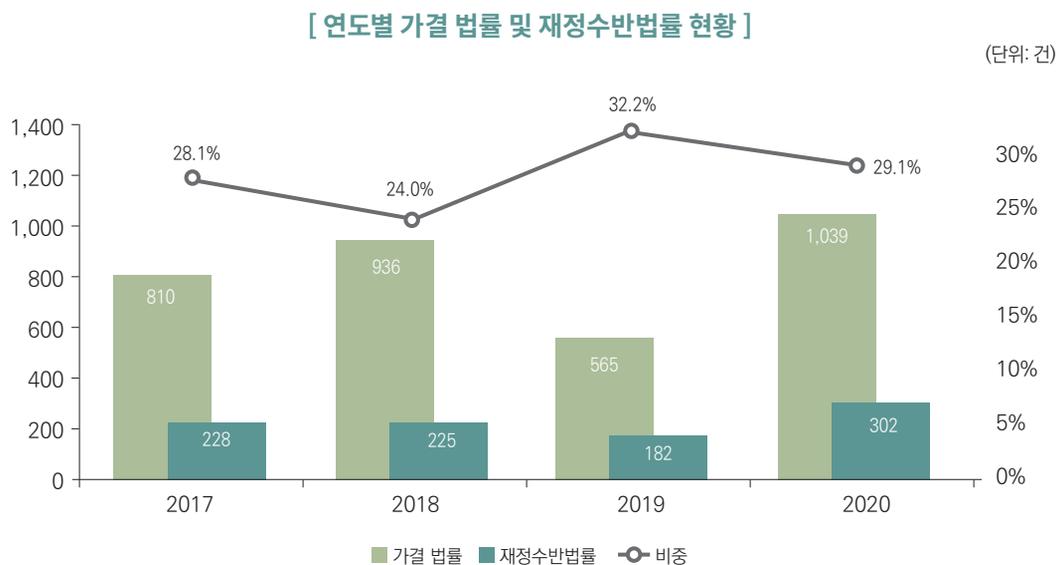
213) 비용추계서는 법률안 입안단계의 의원발의안에 대한 재정수반요인을 추계하므로, 법률안이 상당 시간 경과 후 가결되는 경우 추계서의 기반이 된 거시경제지표의 변동, 예산안 확정 등의 재정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재추계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 제안의 경우「국회법」제79조의2제3항에 따라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첨부가 생략되는 경우, 최종 가결안에 대한 재정소요를 점검함으로써 사후적으로 재정에 미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정부가 제출하는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는 정부가 법안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이에 대한 재정소요도 파악 가능하다.

둘째, 법률안별로 추계가 이루어지는 법안비용추계 제도는 한 해 동안 가결된 법률안 전체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어려운데, 재정소요점검을 통해 가결 법률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법률 제·개정에 따른 재정소요가 예산안에 편성되었는지, 국가가 최종 확정된 예산에 재정소요가 반영되었는지 점검할 수 있어 법률과 예산간의 연계성을 점검할 수 있게 된다.²¹⁴⁾

셋째,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수반법률의 시행 후 5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입과 지출의 증감을 추계하므로, 중기적 관점에서 가결 법률의 재정영향을 분석할 수 있다.

2017~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이후 가결된 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가결 법률 중 재정수반법률의 비중은 30% 내외 수준인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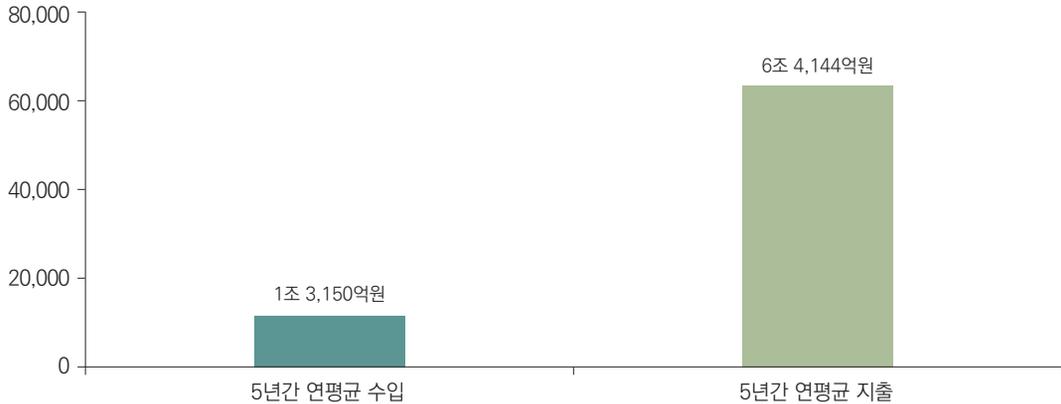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각 연도.

214) 예산법률주의와 탑다운(Top-down)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미국은 재정총량 내에서 위원회별 예산 및 재정수반법률안을 의회가 심의·확정하므로, 재정준칙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코어키퍼링(Scorekeeping)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스코어키퍼링(Scorekeeping) 제도는 기존의 입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기준선 전망)와 당해 회기 동안 통과된 법률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향후 재정소요를 합산하여 향후 예산에 반영될 모든 재정소요를 점검하는 제도이다. 의회가 설정한 재정총량인 예산결의안 한도 내에서 페이고(PAYGO) 준칙과 스코어키퍼링 준칙을 준수하도록 하여 재정수반법률을 관리하고 있다. 향후 우리 예산과정에서도 재정준칙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면, 재정총량 내에서 재정수반법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 재정소요점검은 재정총량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선을 매년 재설정하는 데 준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가결 법률 중 추계가 가능한 수입법률과 지출법률에 대한 재정소요점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수입법률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1조 3,150억원 수입 증가가 예상되고, 지출법률 시행에 따라 향후 5년간 연평균 6조 4,144억원의 지출증가가 예상된다.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결과: 수입·지출]

(단위: 억원)



주: 연도별 재정변동 금액은 해당연도에 가결된 법률에 따른 향후 5년간 연평균 값을 의미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0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3. 8대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상해·질병·노령·실업·사망 등에 의한 경제적 어려움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보장정책의 주요 수단이다. 우리나라는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에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험은 국민의 노후 기본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과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총 8개로 구분된다.

사회보험의 재정운용방식은 차이가 있는데,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 운용되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업관리기관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회계로 운영되고 정부재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8대 사회보험 개요]

구분	도입 연도	2021년말 가입자수 (만명)	정부재정 포함 여부	회계	재정권 (예산·결산)
국민연금	1988	2,216 ('21.10월 기준)	포함	국민연금기금	국회의결
공무원연금	1960	126		공무원연금기금	
군인연금	1963	19.2		군인연금기금	
사학연금	1975	33		사학연금기금	
고용보험	1995	1,447		고용보험기금	
산재보험	1964	1,940		산재보험기금	
건강보험	1977	51,398 ('21.9월 기준)	미포함	정부재정외 (건강보험공단회계)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노인장기요양보험	2008	51,398 ('21.9월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사회보장성기금과 공적연금기금

사회보장성기금이란 사회보장 급여 지급을 목적으로 정부가 통제하며, 기금의 명의로 자산과 부채를 보유하는 기금을 의미한다(IMF 재정통계편람). IMF 기준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성 기금은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 산재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이 해당된다. 4대 사회보장성기금은 재정건전성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되는 관리재정수지와 관련되어 있다.

한편, 퇴직·장애·사망 등 소득상실사유 발생 시에 급여 지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공적연금기금이 있다. 공적연금은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운 사적연금과 달리 요건에 해당하는 자의 가입이 강제되는 특징을 가진 일종의 사회보험으로, 8대 사회보험 중 공적연금기금으로는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기금, 특수직역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군인연금기금·공무원연금기금·사학연금기금 등 4개의 기금이 있다.

8대 사회보험 수입·지출·재정수지

8대 사회보험의 전체 재정규모를 살펴보면, 2022년 수입은 224.9조원, 지출은 187.9조원이며, 재정수지는 37.1조원, 적립금은 1,081.5조원 규모이다.

[8대 사회보험 수입, 지출, 재정수지]

(단위: 억원)

구 분		결 산					예 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 연금	수입	590,925	617,512	662,516	723,935	940,440	737,131
	지출	197,637	214,375	235,121	264,540	299,440	314,649
	재정수지	393,288	403,137	427,395	459,395	641,000	422,482
	적립금	6,216,422	6,387,811	7,366,538	8,337,276	9,487,194	9,909,676
공무원 연금	수입	126,000	134,560	148,537	155,930	156,647	167,413
	지출	148,820	157,366	169,100	181,574	189,047	199,989
	재정수지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32,576
	적립금	109,506	108,379	120,429	133,087	151,752	154,023
군인 연금	수입	16,354	17,228	18,073	18,894	19,190	19,776
	지출	30,660	32,208	33,646	34,482	35,331	36,569
	재정수지	△14,306	△14,980	△15,573	△15,588	△16,141	△16,793
	적립금	11,676	11,623	12,444	13,017	13,483	13,426
사학 연금	수입	56,636	55,447	59,603	62,095	75,895	69,717
	지출	42,174	44,196	47,402	51,637	54,545	56,046
	재정수지	14,462	11,251	12,201	10,458	21,350	13,671
	적립금	183,486	184,561	207,045	232,046	260,433	271,624
고용 보험	수입	101,362	107,696	118,638	198,358	200,074	186,586
	지출	94,607	115,778	139,515	204,653	210,577	190,172
	재정수지	6,755	△8,082	△20,877	△6,295	△10,503	△3,586
	적립금	102,544	94,452	73,532	66,996	56,487	42,077
산재 보험	수입	72,895	79,951	80,672	82,877	95,277	91,505
	지출	53,078	59,509	64,496	70,771	80,083	88,844
	재정수지	19,817	20,442	16,177	12,106	15,194	2,661
	적립금	158,470	178,912	195,089	207,195	222,222	223,909
건강 보험	수입	579,990	621,159	680,643	734,185	804,921	869,823
	지출	572,913	622,937	708,886	737,716	776,692	886,700
	재정수지	7,077	△1,778	△28,243	△3,531	28,229	△16,877
	적립금	207,733	205,955	177,712	174,181	202,410	185,533
노인장기 요양보험	수입	38,777	46,272	57,991	74,450	92,941	107,449
	지출	42,866	52,960	64,852	74,110	83,853	105,888
	재정수지	△4,089	△6,688	△6,861	340	9,088	1,561
	적립금	17,684	10,996	4,136	4,475	13,563	15,124

구분		결산					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수입	1,582,939	1,679,825	1,826,673	2,050,724	2,385,385	2,249,400
	지출	1,182,755	1,299,329	1,463,018	1,619,483	1,729,568	1,878,857
	재정수지	400,184	380,496	363,655	431,241	655,817	370,543
	적립금	7,007,521	7,182,689	8,156,924	9,168,273	10,407,544	10,815,392

주: 1. 2022년은 본예산 기준(건강보험은 제1차 건강보험종합계획 기준)으로 적립금 규모에 2021년 결산 실적이 반영되지 않았음
 2.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경우 재정수지와 연동되지 않고 지불준비금의 기능을 함
 3.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적자보전금은 수입에 포함되지 않으며,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경우 가입자 지원이 수입에 포함되었음
 4. 공무원연금은 연금사업 및 퇴직수당 지급 사업만 포함하여 작성
 자료: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재정수지 상태는 보험별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국민연금, 사학연금,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2년 재정수지 흑자가 예상되며, 흑자 규모는 각각 42.2조원, 1.4조원, 0.3조원, 0.2조원 규모이다.

한편,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2022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공무원연금 △3.3조원, 군인연금 △1.7조원이다. 고용보험의 재정수지는 구직급여 보장성 강화, 일자리 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2018년 적자(△0.8조원)로 전환되고 2022년에도 △0.4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재정수지는 보장성 강화 등으로 인해 2018년 적자(△0.2조원)로 전환되고 2022년에도 △1.7조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재정수지 적자가 확대되고 있는 사회보험에 대해 보험료율 인상을 추진하였다. 고용보험 근로자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이 2018년 1.3%에서 2019년 10월 1.6%로 인상되었으며 2022년 7월부터 1.8%로 인상²¹⁵⁾되며, 건강보험 보험료율은 2018년 6.24%, 2019년 6.46%, 2020년 6.67%, 2021년 6.86%, 2022년 6.99%로 인상되었다.

215)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일부터 1.8%로 0.2%p 추가 인상하기로 의결(2021. 9. 1.)하였다.

[8대 사회보험 보험료율 추이 및 부담비율]

(단위: %)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국민연금		9.0										
		사용자:근로자 = 1:1(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공무원연금		14.0			16.0		16.5	17.0	17.5	18.0		
		국가(또는 지자체):공무원 = 1:1 ¹⁾										
군인연금		11.0	14.0									
		국가:군인 = 1:1										
사학연금		14.0			16.0		16.5	17.0	17.5	18.0		
		(교원) 국가:학교경영기관:교원 = 0.41:0.59:1 (직원) 직원:학교경영기관 = 1:1										
고용 보험	근로자	고안 직능	0.25~0.85(전액 사업주 부담)									
		실업 급여	1.1	1.1 → 1.3 (7월)	1.3				1.3 → 1.6 (10월)	1.6	1.8 ²⁾ (7월)	
	사업주와 근로자 1:1 부담											
	자영 업자	고안 직능	0.25(전액 자영업자 부담)									
실업 급여		2.0(전액 자영업자 부담)										
산재보험		1.77	1.70				1.80	1.65	1.56	1.53		
		전액 사업주 부담(특고 종사자의 경우 사업주와 50:50 부담)										
건강보험		5.80	5.89	5.99	6.07	6.12	6.24	6.46	6.67	6.86	6.99	
		(일반) 사용자:근로자 = 1:1(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국가:학교경영기관:교원 = 0.4:0.6:1										
노인장기요양보험		6.55					7.38	8.51	10.25	11.52	12.27	
		(일반) 사용자:근로자 = 1:1(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 (사립학교교원의 경우) 국가:학교경영기관:교원 = 0.4:0.6:1										

주: 1) 공무원연금 특례적용자(철도공사, 국립대법인 등)는 개인과 해당 특례기관이 1:1로 부담

2) 고용보험위원회는 실업급여계정 보험료율을 2022년 7월 1부터 1.8%로 0.2%p 추가 인상을 의결(2021. 9. 1.)

1. 고용보험 ▲임금근로자 고안직능 보험료: 기업 규모별 차등 부과 ▲임금근로자 실업급여 보험료: ① '11.4.1.이후 1.1%, ② '13.7.1.이후 1.3%, ③ '19.10.1.이후 1.6%

자료: 보건복지부, 인사혁신처, 국방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보험료 지원, 급여지원, 관리운영비 지원, 적자보전금 지원 등으

로 구성된다. 이 중 적자보전금 지원은 명시적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및 ‘군인연금 적자보전’과 재정수지 적자 보전을 목적으로 가입자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의 4개 사업으로 나누어진다.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2017년 13조 1,951억원에서 2022년 22조 45억원으로 증가하였다. 2022년 국가지원금 규모를 보험별로 보면, 건강보험 11조 733억원, 공무원연금 3조 2,576억원, 고용보험 2조 1,103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1조 8,058억원, 군인연금 1조 6,973억원, 국민연금 1조 722억원, 사학연금 9,877억원, 산재보험 183억원의 순이다.

[8대 사회보험에 대한 국가지원금]

(단위: 억원)

구분	회계	결산					2022 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국민연금		6,694	10,074	14,301	13,540	9,274	10,722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반회계	4,305	7,588	11,537	10,867	6,448	7,895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농림부)	1,759	1,776	2,020	1,679	1,687	1,743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해수부)	-	-	-	65	68	68
		소계	1,759	1,776	2,020	1,744	1,613	1,811
	실업크레딧	일반회계	176	202	213	274	320	300
		국민연금기금 ¹⁾	175	202	213	274	320	305
		고용보험기금	176	202	213	274	320	300
급여 지원	출산크레딧	일반회계	1.16	1.57	1.77	1.77	1.99	3.38
		국민연금기금	2.01	2.51	3.3	5.65	9.16	7.89
	군복무크레딧	일반회계 ³⁾	-	-	-	-	-	-
관리운영비 지원		일반회계	100	100	100	100	100	100
사학연금			8,241	8,153	8,959	8,959	9,407	9,877
보험료 지원	연금 국가부담금	일반회계	3,719	3,808	3,941	4,211	3,751	3,871
급여 지원	퇴직수당 국가부담금	일반회계	4,522	4,345	5,018	4,748	5,656	6,006

구분		회계	결산					2022 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공무원연금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32,576
급여 지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일반회계 지방재정 특례기관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32,576
군인연금			14,523	15,100	15,740	15,779	16,012	16,793
급여 지원	군인연금 적자보전	일반회계	14,523	15,100	15,740	15,779	16,012	16,793
고용보험			1,472	2,043	3,035	13,569	18,392	21,103
보험료 지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일반회계	565	1,141	1,633	2,067	7,738	8,103
급여 지원	모성보호지원	일반회계	900	900	1,400	1,800	2,200	3,000
	청년 및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지원	일반회계	-	-	-	9,700	8,452	8,000
고용보험운영 지원		일반회계	7	2	2	2	2	-
실업급여계정 이자비용 한시지원		일반회계	-	-	-	-	-	2,000
산재보험			155	155	155	155	163	183
산재보험운영		일반회계	63	63	63	63	63	63
산재예방지원		일반회계	92	92	92	92	100	120
건강보험			72,209	75,229	82,323	97,373	100,921	110,733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일반회계	48,828	52,001	59,721	73,482	76,534	86,843
		국민건강증진기금	19,011	18,801	18,082	18,801	19,167	18,149
보험료 지원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농림부)	1,686	1,695	1,515	1,650	1,675	1,853
		농어촌구조 개선특별회계 (해수부)	-	-	-	52	52	75
		소계	1,686	1,695	1,515	1,702	1,727	1,928
차상위계층 지원		일반회계	229	222	246	195	210	203
급여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일반회계	2,455	2,510	2,759	3,193	3,283	3,610
보험료 경감	예산 미지원		-	-	-	-	-	-

구분	회계	결산					2022 예산
		2017	2018	2019	2020	2021	
노인장기요양보험		5,837	7,123	8,933	12,436	15,211	18,058
노인장기요양가입자 지원		5,822	7,107	8,912	12,414	15,186	18,014
보험료 지원	차상위계층 지원	15	16	21	22	25	44
합 계		131,951	140,683	154,009	187,455	201,780	220,045
적자보전 성격의 국가지원금		111,004	115,815	123,018	146,120	159,299	172,375

주: 1) 국민연금기금 내 실업크레딧 사업 결산액은 사업비 전체 결산액이 아닌 보험료지원금 결산액만 기재(운영비 제외)

2) 기금계획은 별도로 하지 않으며 국민연금 급여(노령연금 수급시)에서 지출

3) 2047년 예산 소요 발생

1. 2022년은 본예산 기준

자료: 「2019~2028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국회예산정책처, 2019.12.) 바탕으로 재작성 및 소관부처 제출자료

이 중 적자보전금 지원은 총 국가지원금의 78.3%에 해당하는 17조 2,375억원 규모이고, 보험 별로 보면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 10조 4,992억원, 공무원연금 적자보전 3조 2,576억원,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지원 1조 8,014억원, 군인연금 적자보전 1조 6,793억원 규모이다.

8대 사회보험의 재정전망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전망제도 및 최근 추계결과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연금 가입시점과 수급시점의 차이가 있어 장기 재정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재정전망을 실시할 필요가 있어, 각 소관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경우 2018년 제4차 재정계산을 실시하였으며 수지적자시점은 2042년, 기금소진시점은 2057년으로 2013년 3차 대비 각각 2년, 3년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은 2020년에 재정계산이 실시되었으며, 특수직역연금의 2020년 재정계산에 따르면,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 시점은 2029년, 기금고갈시점은 2049년으로 2015년 재정계산 대비 각각 6년, 2년 당겨진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 및 군인연금의 경우 이미 재정수지 적자를 국고로 보전하고 있으며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매년 확대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고용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의 사회보험은 매년 징수되는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는 구조로 인해 공적연금의 재정계산과 같이 일관된 재정전망제도가 미비한 상황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법에 의해 일정 적립배율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 주기적으로 재정전망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다. 다만, 2020년에 실시된 재정추계(전망기간:

2020~2029년)에 따르면 2029년 실업급여 적립금이 19.0조원, 고용안정 적립금이 6.1조원으로 전망되고 있다.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 및 시행령 제90조에서 전년도 보험급여의 총액에 상당하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3년마다 보험료와 보험급여의 총액을 분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0년 재정추계(전망기간: 2020~2065년)에 따르면 2065년 산재보험 적립금 규모가 636.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 처음 건강보험 재정전망 결과(전망기간: 2019~2023년)를 발표하였으며, 2023년 건강보험 재정수지 적자는 △0.9조원 규모, 적립금은 11.1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에 따라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을 포함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018년 「2018~2022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22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립금이 고갈된다는 재정전망 결과만 제시하였다.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제도 및 최근 추계결과]

구분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법적근거	「국민연금법」 제4조	「공무원연금법」 제66조	「군인연금법」 제41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	
실시현황	- 1998년 재정계산 제도 법제화 - 4차례 시행(2003년, 2008년, 2013년, 2018년)	- 1995년 재정계산 제도 법제화 - 5차례 시행(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2020년	- 2006년 재정계산 제도 법제화 - 2차례 시행(2015년, 2020년)	- 1995년 재정계산 제도 법제화 - 5차례 시행(2001년, 2006년, 2010년, 2015년, 2020년)	
실시주기	5년	5년	5년	5년	
전망기간	70년	40년 이상	별도 규정 없음	70년	
최근 재정 추계결과	실시 시기	2018년	2020년	2020년	2020년
	추계 결과	-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42년 - 적립금 고갈 2057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 (GDP대비 비율) : 0.1% (2020년) → 0.6% (2060년)	재정수지 적자 규모: 1.8조원(2020년) → 10.1조원(2060년)	- 재정수지 적자 전환 2029년 - 적립금 고갈 2049년

구 분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법적근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	「국민건강보험법」 제 3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조
실시현황		2017년	2014년 이후	2019년	2018년
실시주기		1년	규정3년(실시1년) 3년 단위로 발표	규정 5년	규정 5년
전망기간		10년	45년	5년	2022년 전망 결과만 제시
최근재정 추계결과	실시 시기	2020년 (2020~2029년)	2020년 (2020~2065년)	2019년 (2019~2023년)	2018년
	추계 결과	2029년 적립금 실업급여 19.0조원 고용안정 6.1조원	2065년 적립금 636.3조원	2023년 수지적자(△0.9조원) 적립금 11.1조원	2022년 적립금 고갈

주: 동 전망은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코로나19 상황 반영 시 변동될 수 있음
자료: 각 소관부처 제출자료

재정전망의 한계

8대 사회보험 재정전망이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20년 3월 「국가재정법」 개정을 통해 40회계연도 이상의 장기재정전망을 매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하도록 보완하였다.²¹⁶⁾ 동 보완은 국가재정뿐만 아니라 사회보험에 대한 통합적인 검토와 추계를 바탕으로 국가재정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것이다.

[중장기 재정전망 실시 현황]

구 분	법적 근거	대상	전망기간	실시주기
장기재정전망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	국가재정 전체	40년 이상	5년
재정계산제도	「국민연금법」 제4조	국민연금	70년	5년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3조	사학연금	70년	5년
	「공무원연금법」 제66조	공무원연금	40년 이상	5년

216) 정부는 2015년 12월, 「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항에 따라 「2016~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20년 3월 개정된 「국가재정법」 제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여 2020년 9월 3일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였다.

구 분	법적 근거	대상	전망기간	실시주기
재정계산제도	「군인연금법」 제41조	군인연금	별도규정없음	5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90조	산재보험	45년	3년
중장기 기금관리계획	「국가재정법」 제73조의3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5년 이상	매년
중장기 재정전망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2항	건강보험	5년	5년

자료: 각 소관부처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그러나 중장기 재정전망제도별로 추계 시기 및 방식, 추계결과 공개범위 등이 상이하여 사회보험 전반에 대한 장기재정전망을 통합적으로 접근하고 분석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보험별 재정전망 체계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방안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이 정책결정과정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는 2020년 4대 공적연금의 장기 재정전망(전망기간: 2020~2090년)을 발표한 바 있다.²¹⁷⁾ 이에 따르면 4대 공적연금의 수입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55.7조원에서 2090년 104.4조원으로 연평균 0.9%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지출은 불변가격 기준 2020년 55.1조원에서 2090년 330.9조원으로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입에 비해 약 3배 높은 지출의 증가율로 인해 재정수지는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0.6조원 흑자를 보이고, 2030년과 2040년 사이 적자 전환 후 2090년에 226.7조원이 되기까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별 전망결과를 보면, 국민연금의 경우 2038년에 최대 적립금을 보인 뒤 2039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55년에는 적립금이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무원연금은 불변가격 기준으로 2020년 재정수지 적자 2.1조원에서 점차 적자 규모가 커져 2090년 32.1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사학연금은 2032년 최대 적립금을 보인 뒤 2033년부터 재정수지가 적자로 전환됨에 따라 적립금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8년에는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군인연금은 재정수지 적자가 2020년 1.7조원에서 2090년 6.7조원으로 그 규모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7)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2020.7.

[4대 공적연금 재정수지 및 적립금 전망: 2020~2090년]

(단위: 조원, %)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90	연평균 증가율
합 계	수입	55.7	116.6	118.2	106.0	92.6	96.1	100.1	104.4	0.9
	지출	55.1	95.7	149.1	210.0	268.7	314.0	335.7	330.9	2.6
	재정수지	0.6	20.9	△31.0	△104.0	△176.2	△217.9	△235.5	△226.7	
	(GDP대비 비율)	(0.02)	(0.88)	(△1.10)	(△3.32)	(△5.17)	(△5.96)	(△6.04)	(△5.48)	
	적립금	775.6	1,068.5	1,054.0	438.3	25.0	28.4	31.6	35.0	
	(GDP대비 비율)	(40.10)	(44.34)	(37.68)	(13.97)	(0.73)	(0.77)	(0.81)	(0.84)	
국민 연금	수입	33.2	89.6	89.5	75.2	60.7	64.1	67.6	73.0	1.1
	지출	29.9	59.5	103.5	155.3	206.2	244.0	260.0	251.0	3.1
	재정수지	3.3	30.1	△14.1	△80.1	△145.5	△179.9	△192.4	△178.0	
	(GDP대비 비율)	(0.17)	(1.25)	(△0.50)	(△2.55)	(△4.26)	(△4.92)	(△4.94)	(△4.30)	
	적립금	740.0	1,027.7	1,019.9	416.4	-	-	-	-	
	(GDP대비 비율)	(38.3)	(42.6)	(36.5)	(13.3)	-	-	-	-	
공무원 연금	수입	16.1	19.5	21.1	23.1	24.6	24.9	25.5	24.5	0.6
	지출	18.2	26.3	33.3	40.3	45.9	49.9	53.3	56.6	1.6
	재정수지	△2.1	△6.8	△12.2	△17.2	△21.4	△25.0	△27.8	△32.1	
	(GDP대비 비율)	(△0.11)	(△0.28)	(△0.43)	(△0.55)	(△0.63)	(△0.68)	(△0.71)	(△0.78)	
	적립금	12.4	14.9	17.5	20.3	23.3	26.5	29.6	32.8	
	(GDP대비 비율)	(0.64)	(0.62)	(0.62)	(0.65)	(0.68)	(0.72)	(0.76)	(0.79)	
사학 연금	수입	4.6	5.4	5.3	5.2	4.6	4.2	4.0	3.7	-0.3
	지출	3.5	5.3	6.6	7.7	8.9	11.4	13.2	13.5	2.0
	재정수지	1.1	0.1	△1.3	△2.5	△4.3	△7.2	△9.1	△9.9	
	(GDP대비 비율)	(0.06)	(0.01)	(△0.05)	(△0.08)	(△0.13)	(△0.20)	(△0.24)	(△0.25)	
	적립금	21.9	24.5	15.1	-	-	-	-	-	
	(GDP대비 비율)	(1.18)	(1.06)	(0.56)	-	-	-	-	-	
군인 연금	수입	1.8	2.1	2.3	2.5	2.7	2.9	3.0	3.2	0.8
	지출	3.5	4.6	5.7	6.7	7.7	8.7	9.2	9.8	1.5
	재정수지	△1.7	△2.5	△3.4	△4.2	△5.0	△5.8	△6.2	△6.7	
	(GDP대비 비율)	(△0.10)	(△0.11)	(△0.12)	(△0.14)	(△0.15)	(△0.16)	(△0.16)	(△0.16)	
	적립금	1.3	1.4	1.5	1.6	1.7	1.9	2.0	2.2	
	(GDP대비 비율)	(0.07)	(0.06)	(0.05)	(0.05)	(0.05)	(0.05)	(0.05)	(0.05)	

주: 1. 국민연금의 적립금은 2055년에 소진되고, 사학연금의 적립금은 2048년에 소진되므로 각각 2060년 이후와 2050년 이후에는 적립금이 존재하지 않음

2. 각각의 공적연금 제도 차이로 인해 전망결과 및 분석결과의 직접 비교는 해석에 유의 필요

3. 전망액은 2020년 불변가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4대 공적연금 장기 재정전망」, 2020.7.

또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1년 중기재정전망에서 8대 사회보험의 중기 재정전망(전망기간: 2021~2030년)을 발표한 바 있다.²¹⁸⁾ 2020년 장기 재정전망에 포함되지 않은 사회보험의 전망 결과를 보면,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요율 상한(8%) 도달(2027년)에 따른 수입 증가분 축소, 보장성 강화 계획에 따른 지출 증가로 매년 적자가 지속되고 2025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4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에 적립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보험은 2021년 6.1조원 적자에서 보험료율 인상²¹⁹⁾에 따라 2023년 흑자로 전환되고 2030년에는 4.5조원 흑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재보험은 2021년 0.2조원 흑자에서 2030년에는 1.3조원 흑자로 전망기간 동안 흑자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과 국가재정

4대 사회보장성기금과 관리재정수지

재정수지는 국가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의 차이를 의미하는 지표로서 국가채무와 함께 재정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이러한 재정수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할 수 있으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를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한다.

그러나 통합재정수지는 인구구성 등에 따라 구조적으로 대규모 흑자를 시현하는 사회보험을 포함하여 작성되고 있어, 실제보다 재정수지가 양호하게 보이는 착시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2002년부터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를 별도로 산출하여 중기재정운용목표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건강보험 및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외 운용

8대 사회보험 중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기금의 형태로 운용되어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해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으나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정부 재정 외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회계로 운영됨에 따라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다.

2021년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규모가 각각 81.8조원, 8.7조원으로 총 90.5조원이지만, 동 보험들이 재정 외로 운영됨에 따라 전체 지출(90.5조원)이 정부총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예상보험료수입의 20%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재정(2021년 11.5조원)만 정부총지출에 포함된다.

218) 국회예산정책처, 「2021~2030년 NABO 중기 재정전망」, 2021.10.

219)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022년 7월 1일부터 0.2%p 인상 계획

4. 부담금

의의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²²⁰⁾에서는 부담금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 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부담금의 개념에는, 부담금이 일반 재정수요보다는 특정사업을 위한 경비에 충당되고, 특정한 사업과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 대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재정책임이라는 것은 부담금은 부담금 부과대상자의 범위와 부담금 징수목적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집단이 다른 집단 또는 일반적 납세의무자보다 징수목적에 대해 명백한 상관관계가 있어야 함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부담금은 특정 공익사업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에게 해당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 및 각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자가 공공사업을 필요로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하거나 특정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경우 등에 부과된다.

부담금과 조세 등 유사개념과의 차이

• 조세와의 차이

조세는 일반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국민으로부터 무상으로 강제적으로 징수하는 재화(財貨)”라고 정의할 수 있다. 부담금은 공익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조세와 그 성격이 유사하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조세와 부담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서로 구분된다. 첫째,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것인데 비하여 조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일반수입을 목적으로 한다. 둘째, 부담금은 당해 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 부과하는 데 반해, 조세는 특사업과 관계없이 일반국민 또는 주민에게 부과한다. 셋째, 부담금은 사업소요 경비, 사업과의 관계 등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반면, 조세는 담세능력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한다.

220)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부담금”이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행정권한을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법인의 장 등 법률에 따라 금전적 부담의 부과권한을 부여받은 자(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계없이 특정 공익사업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조세 외의 금전지급의무(특정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예치금 또는 보증금의 성격을 가진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다만, 조세 중에서 목적세는 특정한 사업의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경비라는 점에서 부담금과 성질이 같으나, 부담금과 같이 그 사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자에게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과 관련이 없는 일반개인에 대하여 그 납세능력에 따라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 사회보험료·수수료 등과의 차이

사회보험료는 보험의 원리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에 의하여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로서,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해서 부과되는 반면,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에 대한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사용료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으로 정의된다.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에 대한 대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되는 점이 다르다.

한편, 각종 행정제재금은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나 처벌을 위해 부과되고 있다.

[부담금과 관련된 유사 개념과의 차이]

개념	정의	부담금과의 차이
사회 보험료	피보험자의 질병·노령·실업·사망 등의 사회적 사고에 의한 소득상실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 등에 근거해 피보험자와 사용자 등이 부담하는 보험료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사업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해 부과되나 사회보험료는 피보험자들간의 연대적 배분 및 차등적 조절을 감안해서 부과
수수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인에 대하여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 요금	부담금은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 관계자에게 부과되나 수수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개별적인 서비스에 대한 반대급부(요금), 사용료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공공시설을 이용하거나 재산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대가)로서 부과됨
사용료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사용의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	
과태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된 일정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부과하는 금전벌	부담금이 특정의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특별한 이해관계자에게 부과하는데 반해, 행정제재금은 재정수입의 목적이 아닌 행정상 의무이행의 확보를 위하여 또는 의무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목적으로 부과됨
벌금	국가가 범죄인에게 일정한 금액의 납부를 명령하여 그 금액 한도 내에서 범죄인의 재산박탈을 내용으로 하는 형벌	
범칙금	일정한 범칙행위에 대하여 일정금액의 범칙금의 납부를 통고하고, 그 통고를 받은 자가 기간 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절차가 진행되나,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범칙행위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금전벌	

개념	정의	부담금과의 차이
가산금	일정한 행정법상의 급부의무 또는 작위의무를 진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그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재로서 가해지는 금전부담	
과징금	행정청이 일정한 행정법상의 의무위반자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상의 제재로서의 금전지급의무	
이행 강제금	행정청이 일정기간 내에 비대체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소정의 금액을 부과·징수할 것을 예고한 후 당해 의무불이행에 대하여 과하는 금전벌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5.31.

분류

부담금은 설치목적 및 성격에 따라 이용자·원인자 부담금, 수익자 부담금, 유도성 부담금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이용자·원인자 부담금은 각종 시설의 건설 또는 유지 등을 위하여 그 사용자 또는 원인자에게서 관련비용을 징수하는 경우로 기반시설설치비용, 수도법상 원인자부담금, 물이용부담금 등이 있다. 둘째, 수익자 부담금은 공공사업 또는 시설로 인해 특별한 이익을 받은 자에게 징수하는 부담금으로 개발부담금, 농산물수입이익금 등이 있다. 셋째, 유도성 부담금은 직접적인 규제수단이 아닌 금전에 의한 간접적인 규제수단에 의하여 일정한 국가목적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장애인고용부담금, 배출부과금, 과밀부담금 등이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분류되고 있으나, 부담금간 경계가 애매한 부분이 있고 의미상 서로 중첩되는 부분도 있어, 개별 부담금의 성격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다.

기능

부담금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목적을 고려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개별 부담금이 다양한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부담금의 기능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서비스를 창출하거나 바람직한 행위를 유도하는 것이다.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한 공공서비스 창출

부담금은 기금이나 특별회계 또는 특정 공공기관의 수입으로 계상되어 그 사용용도가 정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부담금은 특정한 공공사업의 원인을 제공한 자나 공공사업으로부터 편익을 얻는 자 등에게 부과하여 해당사업의 시행과 자원 확보가 연계된다는 측면이 있다.

공공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담금을 징수할 경우, 부담금은 원인자·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과해야 한다. 이는 개별 부담자가 정부의 제반 공공서비스로부터 받은 편익이나 공공사업을 필요하게 하는 원인에 따라 비례하도록 부담을 배분하는 것으로서, 이론적으로는 일반국민들이 각종 공공사업에서 그들이 받는 추가적인 편익이나 유발시킨 추가 비용만큼 부담금을 부과하면 정부가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의 사회적 공급수준은 최적이 되기 때문이다.

바람직한 행위의 유도

부담금은 사회적 또는 법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를 국민에게 유도하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현행 부담금 중 일부는 행정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인 간접적 강제제도와 유사하게 국민의 금전적 부담을 수반하는 의무이행 수단의 측면도 있다. 즉, 법적인 가치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대가로 부담금을 납부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징수한 부담금으로 목적달성에 필요한 재정지출을 한다.

반대로 부담금을 납부할 의무자가 법적인 가치에 적합하게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부담금을 면제시키거나, 아니면 다른 반가치적인 행위를 한 자로부터 징수한 부담금으로 이에 따른 비용을 보상하기도 한다. 사업주가 기준 고용률에 미달하는 장애인을 고용하는 경우에 일정액의 부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장애인고용부담금이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해 설치된 과밀부담금이 이러한 성격의 부담금이다.

부담금 관리제도

부담금으로 인한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조성된 재원을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하기 위해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설치의 제한(제3조),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제4조), 부담금 신설·변경시 심사(제6조),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6조의2), 부담금 운용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 제출(제7조), 부담금운용평가 제도(제8조)를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사

부담금 신설·변경 시 심의절차는 행정부 내부 심의절차와 근거조항 신설·변경 및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 개정에 따른 국회심의절차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행정부 내부 심의절차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²²¹⁾에 의하면, 부담금을 신설·변경하

221)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심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부담금의 부과대상을 확대·축소하는 경우와 부담금의 부과요율을 인상·인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

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부담금 신설·변경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담금관리 기본법은 부담금 신설·변경시의 심사기준으로 첫째, 부담금을 신설·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둘째, 부담금의 부과요건 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셋째, 부담금 재원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넷째,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않을 것, 다섯째,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여섯째,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등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부담금 신설·변경 심사 요청 시 제출해야 하는 '부담금의 신설·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에는 계획서의 내용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부담금 신설·변경 목적 및 그 필요성, 부과 및 징수주체, 부과요건, 징수액의 사용목적 등 부담금의 세부 내용뿐만 아니라 자체 심사결과 등도 포함하도록 하여 실질적인 부담금 심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한 심사절차는,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자체심사를 거쳐 해당 법령안을 입법 예고하거나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심사 요청을 하면, 제출된 계획서를 바탕으로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된다. 심사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심사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은 법에 따라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할 때에는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서(이하 "계획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요청받으면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제9조에 따른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로 하여금 심의하게 하여야 한다.

1. 부담금을 신설 또는 변경할 명확한 목적이 있을 것
2. 부담금의 부과요건등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3. 부담금의 재원 조성의 필요성과 사용목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각각 갖추었을 것
4. 기존의 부담금과 중복되지 아니할 것
5. 부담금의 부과가 조세보다 적절할 것
6. 부담금의 존속기한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을 것. 다만, 그 부담금을 계속 존속시켜야 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부담금의 신설 또는 변경이 같은 항 각 호의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부담금 신설·변경 시 행정부 내부 심의절차]



한편, 부담금 부과근거를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²²²⁾에서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부담금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4조²²³⁾에서는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한다.)을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 법률에 부과요건 등 부담금 부과에 관한 근거조항을 신설 또는 변경하는 것 외에 「부담금관리 기본법」 별표를 함께 개정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3월 말까지 부담금운용계획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

222)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담금 설치의 제한) 부담금은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설치할 수 없다.

223)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4조(부담금의 부과요건 등) 부담금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주체, 설치목적, 부과요건, 산정기준, 산정방법, 부과요율 등(이하 “부과요건 등”이라 한다.)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다만, 부과요건 등의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용계획서를 작성하여 5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를 작성하여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작성 및 국회 제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1월 말까지 부담금운용보고서의 작성지침을 수립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부담금의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전년도 부담금의 부과실적 및 사용명세 등이 포함된 부담금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3월 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기초로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2002년에 「2001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가 처음으로 작성되었으며, 이후 매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부담금운용 평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서는 부담금운용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각 부담금의 부과목적·부과실태 및 부과절차의 공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하도록 하였고, 평가결과 부담금운용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당해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제도개선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부담금의 폐지 등을 위한 법령 개정방안, 부담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제도의 신설 등 대책을 마련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또한, 기획재정부장관은 부담금운용실태를 점검·평가하고 부담금 제도에 관한 전문적·기술적인 연구를 하거나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부담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담금운용평가를 처음 시행한 2003년을 비롯해 2006년, 2009년은 3년마다 한 번씩 전체 부담금을 평가하였으며, 2010년부터는 매년 전체 부담금의 1/3씩 평가하는 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부담금운용평가 내용]

연도	평가분야	주요내용
2018	농림·보건·외교·고용·과학기술 분야 부담금 23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수익자부담금 일부를 유사 부담금과 통합 등 제도개선 추진
2019	국토교통·금융·해양수산·환경 분야 부담금 32개	부담금 통합징수, 징수율 제고, 산정기준 연속성 제고, 권리구제(이의신청, 환급 등) 강화 등 제도개선 추진
2020	문화·산업·환경 분야 부담금 34개	회원제골프장 부담금 폐지, 부과기준 개선, 징수 제고, 가산금 규정 마련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제도개선 추진

자료: 각 연도 부담금운용평가보고서

2020년도 부담금 현황

부담금 수

1960년대 및 1970년대에는 각각 7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었으며 1980년대에는 총 34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1990년대에는 국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수질·폐기물·소음·해양 등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보전요구와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한 대중교통 시설 확충, 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한 공공시설 설치 필요성 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어나 95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01년 이후 100여개의 부담금을 유지하다, 2010년 부담금 성격이 있는 존치 부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을 관리대상에 추가하고, 예치금·보증금 성격의 8개 부담금을 제외하여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11년에는 석면피해구제분담금 등 3개의 부담금이 신설되어 97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다. 2013년에는 전기통신사업자 연구개발부담금이 폐지되고, 2014년에는 공공시설 관리자 비용부담금이, 2015년에는 기반시설 설치비용 부담금이 폐지됨에 따라 총 94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16년에는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출연금에서 분리)되었고, 한강 수계 수질총량초과 부과금 등 5개 부담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총 90개의 부담금이 운용되었다. 2017년에는 오염총량초과부과금이 과징금으로 전환되어 89개의 부담금을 운용하였고 2018년에 폐기물처분부담금이 신설되어 90개의 부담금을 2020년까지 유지중이다.

[연도별 부담금 수]

(단위: 개)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00	'02	'04	'06	'08	'10	'12	'14	'16	'18	'20
7	14	34	95	98	102	102	100	101	94	97	95	90	90	90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5.31

부처별로는 2020년 기준 18개 부처가 총 90개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가장 많은 부담금을 운용하는 부처는 환경부로 20개 부담금을 운용중이고, 국토교통부 15개, 산업통상자원부 9개, 금융위원회 8개, 농림축산식품부·문화체육관광부·해양수산부가 각 7개, 기획재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림청이 각 2개, 교육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자력안전위원회가 1개의 부담금을 운용하고 있다.

부담금 징수내역

2020년도 부담금 징수실적은 20조 1,847억원으로 전년대비 2,368억원(△1.2%)이 감소하였다. 2020년도에 부담금을 운용한 18개 부처별 징수금액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장 많은 4조 3,571억원으로 전체 징수실적의 21.6%를 차지하였고, 다음으로 금융위원회가 4조 2,235억원으로 20.9%를, 보건복지부가 2조 9,671억원으로 14.7%를, 환경부가 2조 6,664억원으로 13.2%를 차지하였다.

[부처별 부담금 징수실적 현황]

(단위: 억원, %)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순위	소관 부처	금액(구성비)
1	산업통상자원부	43,571(21.6)	10	교육부	3,519(1.7)
2	금융위원회	42,235(20.9)	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89(1.7)
3	보건복지부	29,671(14.7)	12	산림청	2,121(1.1)
4	환경부	26,664(13.2)	13	기획재정부	1,076(0.5)
5	농림축산식품부	13,289(6.6)	14	원자력안전위원회	961(0.5)
6	국토교통부	12,504(6.2)	15	해양수산부	914(0.5)
7	고용노동부	10,920(5.4)	16	외교부	276(0.1)
8	중소벤처기업부	6,579(3.3)	17	행정안전부	125(0.1)
9	문화체육관광부	3,979(2.0)	18	식품의약품안전처	55(0.0)
합계		201,847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5.31.

전체 부담금의 징수규모는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연적으로 증가하거나, 정책적 목적 또는 일시적 요인 등에 의해 변동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2020년도에 전년대비 징수금액이 증가한 부담금은 42개로 총 11,895억원이 증가하였고, 감소한 부담금은 42개로 총 14,263억원이 감소하였다. 반면 징수실적의 변동이 없는 부담금은 6개로 나타났다. 2020년도에 징수액이 크게 증가한 부담금으로는 부보대상 예금 평균잔액 증가에 따른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1,815억원), 담배 반출량 증가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1,567억원), 부담금기초액 증가에 따른 장애인고용부담금(+1,367억원) 등이 있다.

[2020년도 주요 징수액 증가 부담금]

(단위: 억원)

부담금명	'19실적	'20실적	증감		증가 사유
	(A)	(B)	(B-A)	%	
예금보험채권상환기금 특별기여금	17,933	19,748	1,815	10.1	- 부모대상 예금 평균잔액 증가
국민건강 증진부담금	28,105	29,671	1,567	5.6	- 담배반출량(판매량) 증가 (3,378백만갑 → 3,568백만갑)
장애인 고용부담금	6,190	7,558	1,367	22.1	- 부담기초액 증가 ('19년)1,048천원 → ('20년)1,078천원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5.31.

2020년도 중 징수액이 크게 감소한 부담금은 출국납부금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출국자수 감소에 따라 전년대비 3,076억원이 감소하였다. 또한 수송 및 산업부분 석유 소비 감소 및 발전용 LNG 부과요율 인하에 따라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이 전년대비 2,967억원 감소하였으며 전기판매량 감소에 따라 전력산업기반부담금도 전년대비 1,156억원 감소하였다.

[2020년도 주요 징수액 감소 부담금]

(단위: 억원)

부담금명	'19실적	'20실적	증감		감소 사유
	(A)	(B)	(B-A)	%	
출국납부금	4,006	930	△3,076	△76.8	- 코로나19로 인한 출국자 수 감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의 수입·판매부과금	16,041	13,074	△2,967	△18.5	- 코로나19로 인한 수송 및 산업부분 석유 소비 감소 - 산업용, 난방용 LNG 수요 감소 및 발전 용 LNG 부과요율 인하 등
전력산업 기반기금 부담금	20,892	19,736	△1,156	△5.5	- 전기 판매량 감소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5.31.

부담금 사용내역

2020년도에 징수된 총 20조 1,847억원의 부담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전체 부담금 징수액 중 86.9%인 17조 5,418억원이 중앙정부의 기금

(14조 5,742억원)과 특별회계(2조 9,677억원)의 수입으로 귀속되었고, 10.0%인 2조 174억 원이 광역지방자치단체(9,935억원)와 기초지방자치단체(1조 239억원)의 수입으로, 나머지 3.1%인 6,255억원이 공공기관 등의 수입으로 귀속되었다.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을 살펴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원자력안전위원회는 모두 중앙정부의 기금으로 귀속되었으며, 산림청 부담금은 중앙정부의 특별회계로, 교육부 및 행정안전부의 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부담금은 모두 공공기관 등으로 귀속되었다.

[부처별 부담금 귀속내역]

(단위: 억원)

소관부처	부담금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기금	특별회계	광역	기초	
합 계	201,847	145,742	29,677	9,935	10,239	6,255
금융위원회	42,235	39,935	-	-	-	2,300
기획재정부	1,076	929	-	-	-	14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389	3,389	-	-	-	-
교육부	3,519	-	-	3,318	200	-
외교부	276	276	-	-	-	-
행정안전부	125	-	-	125	-	-
문화체육관광부	3,979	3,955	-	-	-	24
농림축산식품부	13,289	13,289	-	-	-	-
산업통상자원부	43,571	26,852	14,410	-	-	2,310
보건복지부	29,671	29,671	-	-	-	-
환경부	26,664	9,144	8,380	2,717	6,422	-
고용노동부	10,920	10,920	-	-	-	-
국토교통부	12,504	345	4,766	3,772	3,611	9
해양수산부	914	616	-	2	5	291
중소벤처기업부	6,579	5,460	-	-	-	1,119
산림청	2,121	-	2,121	-	-	-
원자력안전위원회	961	961	-	-	-	-
식품의약품안전처	55	-	-	-	-	55

자료: 기획재정부, 「2020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2021.5.31.

5. 대외군사판매(FMS)

의의

국방 분야 예산은 크게 ① 군 병력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인 병력운영비와 ② 기 획득한 무기체계 및 시설의 유지·운용을 위한 전력유지비, ③ 무기체계 획득을 위한 비용인 방위력개선비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된다.

이중 방위력개선비 집행을 통한 무기체계 획득은 크게 연구개발 방식과 구매 방식으로 나뉘며, 구매방식은 다시 국내구매와 국외구매로 구분된다. 국외구매 방식은 국외 상업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 Foreign Military Sales)로 다시 나뉘는데, 이중 대외군사판매란 미국 정부가 우방국에 대한 안보지원의 일환으로 군사물자를 유상으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에서 구매할 수 없는 무기체계의 경우 국외 상업구매를 통해 획득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미국 정부가 지정한 대외군사판매 전용 군수물자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를 이용해야만 한다.²²⁴⁾

현황

우리나라에서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구매한 주요 무기체계로는 F-35A(스텔스전투기), 글로벌호크(무인정찰기), P-8A(해상초계기), MH-60R(해상작전헬기), AH-64E(대형공격헬기) 등이 있다.

최근 5년간 대외군사판매를 통한 무기체계 구매 지출액은 2019년에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하였다가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는데, 이는 글로벌호크, AH-64E 등의 순차적 납품에 따라 해당 무기체계 구매를 위한 각 연도별 지출액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FMS를 통한 무기체계 구매 지출액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지출액	18,932	21,027	37,102	33,474	31,377

자료: 방위사업청

224) 미 국방안보협력국(Defense Security Cooperation Agency)이 작성한 SAMM(Security Assistance Management Manual)에 공대공미사일, 공격헬기 등 대외군사판매를 통하여만 구매 가능한 'FMS only' 목록이 규정되어 있다.

절차

FMS 구매절차는 FMS 구매를 희망하는 구매국이 미국 정부로 구매를 희망하는 무기체계에 대한 LOR(Letter of offer Request, 오퍼요청서)을 발송하고, 이에 대해 미국 정부가 판매대상 무기체계의 구성 및 가격, 판매조건 등을 명시한 LOA(Letter of offer Acceptance, 오퍼수락서)를 구매국에 제공한다. 이에 구매국이 동의할 경우 LOA에 서명하여 FMS 구매계약 절차가 완성된다.

LOA 서명 이후 계약조건에 따라 구매국이 초입금을 송부하고, 이후 분기별 대금지급일정에 따라 미국 정부가 지급액을 청구한다. 구매국은 미국 정부의 청구액을 검토하여 적정대금을 미 연방준비은행에 개설한 계좌로 송금하고, 미 국방재무회계본부가 이를 인출하여 생산업체의 계약 물자 납품실적 등에 따라 대금을 지급하게 된다.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최종 정산을 거쳐 미국 정부에 부족액을 추가 송금하거나 과지불금을 환수 받은 후 계약이 종결된다.

대외군사판매(FMS)와 국외 상업구매 비교

국외 상업구매가 우리 법령상의 방위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구매 방식이라면, 대외군사판매는 미 대외지원법(FAA, Foreign Assistance Act) 및 무기수출통제법(AECA, Arms Export Control Act)에 따라 운영되는 미국 정부의 무기제공 방식이다. 또한 국외 상업구매의 경우 방위사업청이 국외 방산업체와 직접 계약하는 방식을 취하는 반면, 대외군사판매는 방위사업청과 미국 정부 간 협상 과정을 통해 구매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국외 상업구매가 무기체계 주장비 및 보조장비의 획득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는 반면, 대외군사판매는 이에 더하여 무기체계 운영유지에 필요한 기술지원, 교육훈련, 수리부속 등의 제공까지를 그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대외군사판매(FMS)와 국외 상업구매 비교]

구분	대외군사판매(FMS)	국외 상업구매
근거	• 미 대외지원법/무기수출통제법	•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계약대상	• 방위사업청 ↔ 美정부	• 방위사업청 ↔ 국외 방산업체
구매대상	• 미정부가 FMS방식으로 판매하는 무기체계(최신 무기체계, 암호 물자 등) 및 군사훈련 등	• 국외 방산업체가 자국으로부터 수출승인받은 군수품

자료: 방위사업청

대외군사판매를 통해 미군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성능의 무기체계를 미국 정부의 보증 하에 구매하여 활용할 수 있고, 무기와 제반장비, 서비스를 일괄 구매함으로써 전력화 및 후속군수지

원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대외군사판매 조건을 미국 정부가 독자적으로 설정하여 통보하는 방식 상 구매국이 가격 흥정 등 협상력을 발휘할 여지가 적다는 단점도 있다.

6.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의 정의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소득 및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가리킨다.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 구분하고 있다.

[사회보장의 유형 및 정의]

구분	정의
사회보험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공공부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
사회서비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시설의 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

자료: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와 사회보장 전달체계, 그리고 재정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되거나 누락되지 않도록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13년 1월 27일부터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해야 한다.²²⁵⁾

중앙행정기관장과 지방자치단체장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를 위해 신설·변경하고자 하는

225) 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의 예는 다음과 같다. ①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는 민간재원사업, ② 사회보장사업의 시행 근거가 되는 법률안이나 조례안, ③ 물가상승률이나 기준중위소득 등의 최저보장수준, 또는 최저임금 등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사항으로 인한 변동, ④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대상자 규모, 또는 예산 등만 변동하는 경우, ⑤ 관련 법령에 규정된 사회보장관련 시설, 기관, 단체 등의 개폐 및 고유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지원, ⑥ 사업 시행기간이 정해져 있는 한시 사업이나 단년도 사업, ⑦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폐지, ⑧ (지방자치단체) 대상자 선정기준이나 지원내용 등의 변경 없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합의에 따른 재원분담비율의 변경, ⑨ (지방자치단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대상에 대한 보상지원사업, 역사적 사건 등에 따른 비례 보상 지원 등

사회보장제도의 목적, 법적근거, 대상, 전달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4월 30일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6월 30일까지 보건복지부에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부처 사업의 경우 긴급한 사유에 의하여 제출기한 이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정부예산안 제출시기와 협의처리기한 등을 고려하여 5월 말까지 협의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의요청기간 이후에도 긴급한 사유 등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확정된 즉시 협의요청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는데, 협의요청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은 협이가 차년도로 이월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절차]

절차	주요내용
사전 컨설팅 (협의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기관이 필요할 경우 사업기획 및 협의요청서 작성 단계부터 사전 컨설팅 진행
↓ 협의요청 (요청기관 → 복지부) ※ 제출기한: 중앙행정기관은 4월 30일(최대 5월 말), 지방자치단체는 6월 30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출서류: 협의요청 공문, 협의요청서 및 참고자료(기초지자체는 관할 시·도와 복지부에 동시 문서 시행)
↓ 자료보완 (복지부/협의지원단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에 필요한 자료의 누락, 보완 필요시 수정·보완(보완자료 기간은 협의 기간에 미산입)
↓ 관련부처(부서) 의견수렴 (복지부 → 관계부처(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요청사업 관련 소관부처(부서) 의견조회
↓ 전문가 의견수렴 (복지부/협의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사업 분야 전문가그룹(협의지원단) 자문 등 의견수렴
↓ 제도조정전문위원회 검토·협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의 쟁점, 새로운 제도의 도입 등 전문적 검토가 필요한 안건의 경우 전문위원회에서 종합적 검토 • 필요시 협의요청기관 사업 담당자 참여 및 의견 개선 가능
↓ 결과 통보 (복지부 → 요청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안건: 60일 이내 처리 • 쟁점안건: 최대 6개월 이내 처리(협의요청기관의 자료보완기간 등은 협의 기간에 미산입) • 협의요청기관, 협의총괄부서(중앙부처-기재부, 각 부처 재정부서, 지자체-관할 시·도), 지방의회 사무처(지자체 사업에 해당)에 동시 통보

주: 기한을 초과한 건은 협이가 차년도로 이월됨

자료: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2

보건복지부는 관련부처와 전문가(협의지원단)의 의견을 수렴하고, 필요한 경우 제도조정전문위원회의 쟁점사항 등의 검토를 거쳐 최종 협의 결과를 도출한다. 이때, 신설 또는 변경하는 사업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재정·지역복지 활성화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기준]

법정 기준	주요 검토항목
사업의 타당성	① 사업추진 근거의 명확성(추진근거) ② 지역문제의 시급성, 지역내 우선순위, 지역특수성 ③ 사업취지(목적)와 사업내용 간 연계성 ④ 공공재원 투입의 필요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⑤ 사회보장제도 중장기 발전전략과의 부합여부 ⑥ 지원대상자에 대한 유사급여·서비스 여부 ⑦ 사업시행에 따른 중복, 누락(해소), 편중(해소) 효과 ⑧ 정부와 지자체 사업간 연계를 통한 보충성 확보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⑨ 전달체계의 과부하/분절성 심화에 따른 비효율 여부 ⑩ 수혜자 접근성(편의성), 급여제공의 적시성 ⑪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활용
재정에 미치는 영향	⑫ 재원규모 및 조달 계획 등 재정의 지속가능성 ⑬ 재정집행의 효율성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⑭ 지역사회보장계획,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중장기 사업 계획 수립 ⑮ 지역 주민참여 및 복지수요 반영 ⑯ 지역자원 활용 및 연계
기타	⑰ 성과지표 활용 등 성과관리 계획 수립 ⑱ 제도 시행 예정 시기의 적절성

자료: 보건복지부,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2022

보건복지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요청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전문적 검토와 협의요청기관과의 협의 등이 필요한 쟁점 안건의 경우에는 최대 6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보장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하여 심의·의결해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보받은 심의·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사회보장제도를 운영 또는 개선해야 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현황

제도가 신설된 2013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접수된 건은 2019년 994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0년에 77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799건으로 전년 대비 증가하였다. 2013년 이후 사회보장제도 변경으로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접수된 건은 2017년 495건으로 가장 많았고, 2021년에는 365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접수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합계	신설	36	60	249	685	735	876	994	772	799
	변경	25	21	112	386	495	285	324	316	365
중앙	신설	13	7	8	4	14	16	14	22	23
	변경	17	7	5	27	25	36	49	37	25
지자체	신설	23	53	241	681	721	860	980	750	776
	변경	8	14	107	359	470	249	275	279	340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사회보장위원회 조정의 조정이 이루어진 건은 2015년 변경 사업 1건과 2017년 신설 사업 1건이 있고, 나머지는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완료되거나 협의요청기관의 철회, 보건복지부의 반려 등에 의해 종결되었다. 2021년에 제도 신설로 협의가 접수된 799건 중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576건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완료되었고, 146건은 협의가 진행중이며, 40건이 철회, 37건이 반려 등으로 처리되었다.²²⁶⁾ 같은 해 제도 변경으로 협의가 접수된 365건 중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293건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완료하였고, 43건이 협의 진행중이며, 21건이 철회, 8건이 반려 등으로 처리되었다.

226)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2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협의요청기관에 자료보완 요청이나 재협의를 통보한 후, 협의요청기관이 6개월 이상 의견을 회신하지 않으면 당해연도의 협의절차가 종료된다.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설	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	33	56	194	531	619	780	830	648	722
	협의완료	33	55	194	531	619	778	830	636	576
	진행중	0	1	0	0	0	2	0	12	146
	철회	0	0	8	39	30	55	70	65	40
	기타	3	4	47	115	85	41	94	59	37
	위원회 조정	0	0	0	0	1	0	0	0	0
변경	보건복지부장관과의협의	25	19	95	347	458	247	290	287	336
	협의완료	25	19	95	347	458	247	289	283	293
	진행중	0	0	0	0	0	0	1	4	43
	철회	0	0	11	14	22	27	29	22	21
	기타	0	2	5	25	15	11	5	7	8
	위원회 조정	0	0	1	0	0	0	0	0	0

주: 1. 협의완료 및 진행중인 건은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협의가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 건을 가리킴

2. 기타는 ① 협의대상이 아니므로 협의요청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시행(반려), ② 복지부의 '자료보완'요청 및 '재협의' 통보 후, 협의요청기관이 장기간 의견을 회신하지 않는 등 협의의 진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사업의 당해년도 협의절차 종료 통보('18년 1건('20.1월 종료 통보), '19년 1건('21.11월 종료 통보))

자료: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6장

국유재산

제1절 국유재산 현황

1. 국유재산의 의의 및 종류

국유재산의 의의

「국유재산법」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재산을 국유재산으로 정의하고 있다.²²⁷⁾ 국유재산에는 부동산, 건물, 입목죽, 선박·항공기, 유가증권 등 유형자산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저작권 등의 무체재산까지 포함되는데, 동 법에서는 국유재산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국유재산의 범위]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부선거(浮船渠) 및 항공기와 그들의 종물
3. 「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에 따른 정부기업(이하 “정부기업”이라 한다)이나 정부시설에서 사용하는 기계와 기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4.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광업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권리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증권
6. 지식재산
 -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저작권, 저작인접권, 품종보호권, 지식재산권 등

자료: 「국유재산법」 제5조

227) 「국유재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유재산”이란 국가의 부담, 기부채납이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라 국가 소유로 된 제5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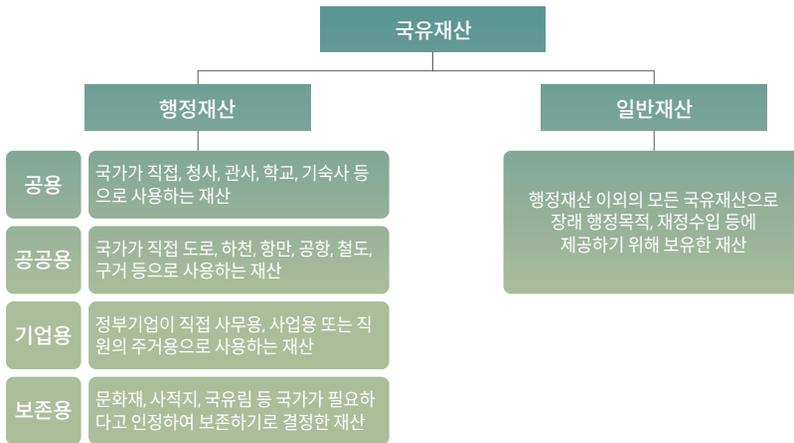
국유재산은 SOC시설 제공, 자연재해 방지,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 등 공공재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장래 행정목적에 사용되는 비축자원 기능, 매각·임대를 통한 국가재정수입 확충이라는 재정 수입 기능을 가지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국유재산의 종류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 및 일반재산으로 구분된다. 행정목적으로 사용되는 국유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으로 구분하고 있다.

행정재산은 사용주체 및 용도에 따라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으로 구분된다.²²⁸⁾ ① 청사, 관사, 학교 등 국가가 직접 사무용 또는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용재산, ② 도로, 하천, 공항 등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은 공공용재산, ③ 정부기업이 사용하는 재산은 기업용 재산, ④ 문화재 등 필요에 따라 보존이 필요한 재산은 보존용 재산으로 구분한다.²²⁹⁾

[국유재산의 종류]



228) 「국유재산법」

제6조(국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국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2. 공공용재산: 국가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3. 기업용재산: 정부기업이 직접 사무용·사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으로 사용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4. 보존용재산: 법령이나 그 밖의 필요에 따라 국가가 보존하는 재산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국유재산을 말한다.

229) 참고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은 “공유재산”에 해당한다.

행정재산은 행정목적으로 사용 중인 재산, 일반재산은 행정목적으로의 용도가 폐지된 재산으로 볼 수 있는데, 실무적인 차원에서 그 활용 및 처분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 행정재산의 경우 행정목적으로 직접 사용 중인 점을 고려하여, 행정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사용허가 등이 가능하고 대부, 매각, 교환 등 처분이 제한된다. 반면 일반재산의 경우 대부분만 아니라 매각 등 처분이 가능하다.

2. 국유재산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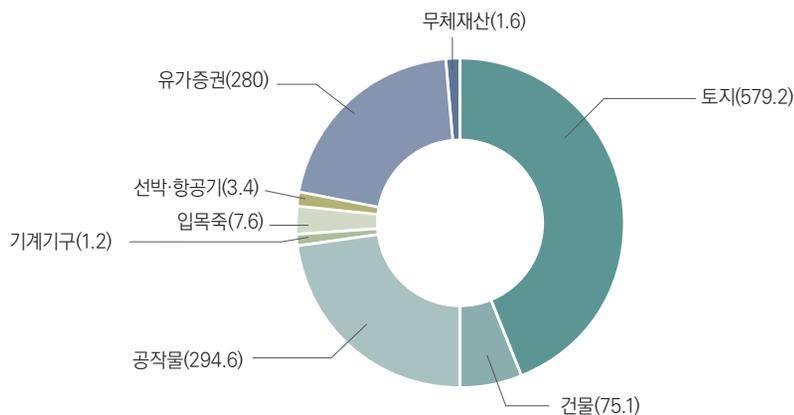
2021년 12월 기준 국유재산(잠정치) 총 보유규모는 1,242.7조원으로, 2016년부터 국유재산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비중은 74.6%로 국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행정재산 중 토지는 2021년 12월 기준 547.7조원으로, 2020년 476.8조원보다 14.9% 증가하였다.

일반재산은 2021년 12월 기준 315.9조원으로,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유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증가추세였으나 2021년에는 25.4%로 감소하였다. 일반재산의 대부분은 유가증권으로 구성되는데, 유가증권에는 정부출자기관 출자증권, 여유자금 운용을 통한 기타 수익증권, 물납증권, 특별회계·기금 상 지분증권, 지방채권 등이 있다.

한편, 국유재산을 그 종류별로 살펴보았을 때 2021년 12월 기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국유재산은 토지이며, 공작물, 유가증권, 건물 순이다.

[국유재산 종류별 비중(2021.12.)]

(단위: 조원)



주: 1. 2021년 자료는 잠정

2. d-Brain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2022.2.)

[국유재산 종류별·연도별 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12	
합계	1,044.4	1,075.8	1,081.8	1,125.0	1,151.5	1,242.7	
행정재산	토지	437.4	436.1	440.9	456.1	476.8	547.7
	건물	64.1	66.5	68.5	70.9	74.0	73.0
	공작물	275.6	282.1	288.6	287.5	285.7	294.4
	기계기구	0.6	0.9	1.0	1.0	0.9	1.2
	입목축	6.1	10.8	6.7	5.8	5.4	5.4
	선박·항공기	2.3	2.3	2.5	2.8	3.0	3.4
	유가증권	-	-	-	-	-	-
	무체재산	1.1	1.1	1.1	1.1	1.2	1.6
	소계 (비중)	787.3 (75.4%)	800.0 (74.4%)	809.5 (74.8%)	825.2 (73.3%)	847.0 (73.6%)	926.8 (74.6%)
	일반재산	토지	29.6	26.9	26.8	28.7	30.2
건물		1.2	1.2	1.4	1.8	1.9	2.1
공작물		0.1	0.1	0.1	0.1	0.1	0.2
기계기구		-	-	-	-	-	-
입목축		1.9	2.0	2.1	2.2	2.2	2.2
선박·항공기		-	-	-	-	-	-
유가증권		224.3	245.7	241.8	267.0	270.0	280.0
출자		126.4	131.0	135.2	140.9	149.4	158.1
물납 ²³⁰⁾ (비상장 주식)		0.82 (0.72)	0.79 (0.75)	0.8 (0.76)	0.59 (0.55)	0.57 (0.57)	0.92 (0.92)
기타		97.08	113.91	105.8	125.51	120.03	121.0
무체재산		-	-	-	-	-	-
소계 (비중)	257.2 (24.6%)	275.9 (25.6%)	272.2 (25.2%)	299.8 (26.7%)	304.5 (26.4%)	315.9 (25.4%)	

주: 1. 2020년까지는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21년 자료는 잠정

2. d-Brain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 2.

대표적인 국유재산을 살펴보면, 2020년 말 기준 공작물 중 가액이 가장 높은 것은 경부고속도

230) 상장주식은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여 금전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아 2013년부터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9년까지는 매각하지 않고 남은 대금이 포함되어 있음

로로 12조 3,123억원이며, 서해안고속도로 6조 8,911억원, 남해고속도로 6조 3,340억원 순이다. 건물의 경우 정부세종청사 1단계 건물이 4,297억원으로 가장 가액이 높으며, 정부세종청사 2단계(3,914억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2,962억원), 대전청사(1,972억원), 국회의원회관(1,882억원) 순이다.

[주요 국유재산 현황(2020년 말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순위	국유재산명	가액
건물 ¹⁾	1	정부세종청사 1단계	4,297
	2	정부세종청사 2단계	3,914
	3	국립아시아문화전당	2,962
	4	대전청사	1,972
	5	국회의원회관	1,882
공작물 ²⁾	1	경부고속도로	123,123
	2	서해안고속도로	68,911
	3	남해고속도로	63,340
	4	(고속)경부고속선	62,403
	5	당진·영덕고속도로	56,566

주: 1) 건물자체의 장부가액임(부지에 대한 가액은 미반영)

2) 공작물 자체의 장부가액임(포장물, 교량, 터널 가액만 반영, 부지에 대한 가액은 미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한편, 우리나라는 외교활동 등을 위해 해외의 토지·건물도 국유재산으로 보유하고 있는데, 대사관, 문화원, 교육원과 같은 해외 기관의 청사·부지 등 총 357건이 등록되어 관리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주일본 대한민국대사관 청사부지 및 청사, 주홍콩 총영사관 청사 등이 있다.

[해외 소재 국유재산 현황(2020년 말 기준)]

용도						합계	
토지		건물					
		사무소		주택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146	585,576	114	371,140	97	102,074	357	1,058,790

주: 1. 토지는 대지 면적, 건물은 연면적 기준

2. 자체시스템 운영기관(국방부, 방위사업청, 우정사업본부) 자료 제외

자료: 기획재정부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물납제도는 납세자가 금전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 유가증권 등으로 조세를 납부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유가증권의 가액이 상속재산의 50%를 초과하고,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며, 금융재산이 납부세액에 미달 시 허용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상장주식의 경우에는 현금으로의 전환이 용이하여 금전납부가 가능하다고 보아 2013년부터 물납대상에서 제외되었고, 비상장주식은 다른 상속재산이 없거나 물납 총당에 부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부받은 물납증권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물납증권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탁받아 증권 관리, 가치 평가, 매각 등을 실시한다.

그런데 물납된 비상장주식 중 매각이 사실상 어려운 휴·폐업 법인이 누적(2019. 10월말 비상장법인 337개 중 휴·폐업 비중은 46%, 물납금액 2,671억원)되어 잠정적인 국고 손실이 발생한 상황이다. 이는 기존 법령상 비상장주식 물납 불허 기준이 불충분하여 부실 자산에 대해서도 물납을 허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 방안(2019. 12. 11.)’을 통하여 ① 물납에 부적합한 비상장주식에 대해 물납 불허 요건을 명확히 하였고 ② 물납허가 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물납자산의 관리·처분 적정성, 물납 요건 등을 확인하는 절차를 도입하였으며, ③ 물납법인의 부실화 방지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또한, ‘물납주식 매각 활성화 방안(2021. 4. 23.)’을 통해 물납주식에 시장 적정 가치를 반영하도록 하였으며, 물납주식 발행회사의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투자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물납주식의 수요를 확대 또는 다변화하고자 하였다.

3. 국유재산 취득·처분

국유재산의 취득은 건물의 신·증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 수용, 공유수면매립, 매수, 교환, 기부채납 등을 통하여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은 예산을 확보하여 사법상 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금전적 대가를 지급한 후에 재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 이외에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등 특별법에 따라 토지 등을 취득하는 경우, 국가가 제3자로부터 기부를 받아서 국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인 기부채납의 경우 등이 있다.

국유재산의 처분은 매각, 교환, 양여, 신탁, 현물출자 등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국가 외의 자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재산은 교환이나 양여가 아닌 한 처분할 수 없고,²³¹⁾

231) 「국유재산법」

일반재산은 처분할 수 있다. 이에 행정재산으로 존치할 필요가 없는 재산은 용도폐지 하여 일반 재산으로 전환한 뒤에 처분이 가능하다.

교환 및 양여

교환이란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유재산을 국가 이외의 자의 재산과 상호 교환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의미한다. 국유재산의 처분과 동시에 다른 국유재산의 취득이 이루어지며, 교환의 대상이 되는 국유재산은 일반재산이 전형적이나 행정재산의 경우에도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교환이 허용된다.

양여는 국가가 대가를 받거나 또는 받지 아니하고 국가이외의 자에게 일반재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사법상의 계약을 말한다. 양여는 실질적인 재정원조나 보조금 교부 효과를 발생시키고 국유재산의 보호, 유지 측면에서 부적절하기에 양여는 일반재산을 지자체에 양여하는 경우 등에 한정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²³²⁾

연도별 국유재산 취득·처분 현황을 살펴보면, 매년 처분 총액보다 취득 총액이 더 크다. 2021년 1~12월 국유재산(잠정치) 취득 총액은 27조 785억원, 처분 총액은 13조 1,155억원으로 취득 총액이 처분 총액을 13조 9,630억원 초과하고 있다. 취득과 처분은 주로 매매(매입·매각)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2020년 국유재산 매매 중 취득규모는 전년대비 29조 5,268억원 감소(△93.7%)한 1조 9,847억원, 처분규모는 전년대비 24조 8,841억원 감소(△98.4%)한 3,999억원이었다. 그러나 2021년 기타재산의 매매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2021년 12월 말 기준 전체 취득·처분규모도 증가하였다.

제27조(처분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처분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환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1. 공유(公有)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하여 그 교환받은 재산을 행정재산으로 관리하려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232) 「국유재산법」

제55조(양여)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여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반재산을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양여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유지·보존비용을 부담한 공공용재산이 용도폐지됨으로써 일반재산이 되는 경우에 해당 재산을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에 양여하는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재산을 용도폐지하는 경우 그 용도에 사용될 대체시설을 제공한 자 또는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그 부담한 비용의 범위에서 용도폐지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4. 국가가 보존·활용할 필요가 없고 대부·매각이나 교환이 곤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연도별 국유재산 취득·처분]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1~12.
합계	토지	취득	79,390	47,251	49,934	33,361	60,723
		처분	32,426	21,236	23,505	13,058	33,028
	건물	취득	114,844	42,279	50,496	29,118	39,691
		처분	3,062	1,279	1,884	23,346	12,952
	기타	취득	376,021	542,294	333,596	22,830	170,372
		처분	215,087	393,618	236,478	14,278	85,064
계	취득	570,255	631,824	434,027	85,308	270,785	
	처분	250,575	416,133	261,866	50,682	131,155	
매매 ¹⁾	토지	취득	13,120	7,918	7,928	1,578	7,670
		처분	23,926	13,854	16,300	999	16,440
	건물	취득	35,286	24,493	38,957	4,707	20,188
		처분	343	351	435	8	1,084
	기타	취득	300,078	456,865	268,230	13,563	148,514
		처분	215,026	393,462	236,105	2,992	84,218
계	취득	348,483	489,276	315,115	19,847	176,374	
	처분	239,295	407,667	252,840	3,999	101,740	
교환 ²⁾	토지	취득	3,808	4,168	414	123	335
		처분	3,706	6,560	444	65	328
	건물	취득	119	2,280	29	0	11
		처분	129	82	26	0	10
	기타	취득	135	69	0	0	0
		처분	2	15	0	0	0
계	취득	4,062	6,517	443	123	346	
	처분	3,837	6,657	550	65	338	
기타 ³⁾	토지	취득	62,463	35,165	41,592	31,660	52,719
		처분	4,794	822	6,761	11,994	16,266
	건물	취득	79,440	15,506	11,511	24,411	19,490
		처분	2,590	846	1,423	23,338	11,864
	기타	취득	75,807	85,360	65,365	9,267	21,856
		처분	59	141	372	11,286	947
계	취득	217,710	136,031	118,468	65,338	94,050	
	처분	7,443	1,809	8,556	46,618	29,077	

주: 1) 취득의 경우는 매입, 처분의 경우는 매각

2) 취득과 처분 모두 교환 및 환지

3) 취득의 경우는 신규등록과 무상취득, 처분의 경우는 멸실과 양여

1. 2020년까지는 국유재산관리운영총보고서(d-Brain 기준), 2021년 자료는 2021년 월별 잠정현황을 합산

2. d-Brain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 2.

4. 국유재산 수입

국유재산의 수입으로 매각대, 대여료, 변상금이 있다. 매각대는 일반재산의 매각을 통해 발생하게 되며, 대여료는 국유재산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행정재산)와 대부에 따른 대부료(일반재산)가 해당한다. 또한,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무단이용·점유 하는 경우 변상금이 부과된다.

2017년부터의 국유재산 수입 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수입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대응의 일환으로 취약계층에 대한 국유재산 사용료 경감 등의 정책²³³⁾이 추진됨에 따라 대여료 수입이 2020년에 이어 2021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도별 국유재산 수입 현황]

(단위: 억원)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1~12
합 계	46,403	37,707	37,236	38,022	24,210
• 매각대	39,469	28,196	28,478	29,624	20,994
- 토지, 건물 등 ¹⁾	24,444	20,577	20,535	21,955	14,070
- 기타고정자산 ²⁾	218	106	578	220	39
- 재고자산 ³⁾	14,803	7,509	7,363	7,447	6,883
- 유동자산 ⁴⁾	4	4	2	3	2
• 변상금 ⁵⁾	372	453	760	668	504
• 대여료 ⁶⁾	6,561	9,058	7,998	7,730	2,712

주: 1) 토지, 건물, 기계기구, 입목축, 기타 토지 및 무형자산 매각대(711, 712, 721, 722, 723목)

2) 기타 내용연수 1년 이상의 완성재(증축포함) 매각수입(713목)

3) 재고재산의 매각수입(731목)

4) 기타 내용연수 1년 이내의 불용품 등 유동자산 매각수입(732목)

5) 법령과 계약에 의거하여 국가가 수납할 변상금(571목)

6) 토지, 건물, 기타 관유물대여료(511, 512목)

1. 2020년까지는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d-Brain 기준), 2021년 자료는 2021년 월별 잠정현황을 합산

2. d-Brain자료 및 d-Brain을 사용하지 않는 기관(국방부, 방사청, 우정사업본부)의 제출자료 합산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 재정동향 및 이슈」, 2022. 2.

233) 국유재산 한시 연체료 감경, 취약계층 임대료 완화, 사용료납부 유예 등이 이루어졌다.

제2절 국유재산 관리제도

1. 국유재산 관리체계 및 실태조사

국유재산 관리체계

국유재산 관리·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유재산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하천·도로 등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국유재산은 「도로법」, 「하천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다.

「국유재산법」 제8조²³⁴⁾에 따르면 국가 일반회계에 속한 국유재산은 총괄청(기획재정부)이 총괄적으로 관리하나 일반회계에 속한 국유재산 중 행정재산의 관리는 소관 중앙부처에 위임하고 있으며, 특별회계와 기금에 속한 국유재산은 해당 회계와 기금의 소관부처의 책임 하에 관리한다.

일반재산은 과거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임 및 위탁관리 하는 이원화된 체제였으나, 2011년부터 관리기관 일원화 작업을 추진하여 2013년 6월부터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반회계에 속한 일반재산에 대한 관리 업무를 전담하게 되었다.

또한 일반회계의 부처별 공용재산(청사, 관사 등) 취득사업을 2012년부터 국유재산관리기금²³⁵⁾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국유재산관리기금에서 취득한 재산은 일반회계 소속으로 하고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234) 「국유재산법」

제8조(국유재산 사무의 총괄과 관리)

- ① 총괄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고 그 국유재산(제3항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처분하는 국유재산은 제외한다)을 관리·처분한다.
- ② 총괄청은 일반재산을 보존용재산으로 전환하여 관리할 수 있다.
- ③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특별회계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설치된 기금에 속하는 국유재산과 제4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재산을 관리·처분한다.
- ④~⑤ 생략
- ⑥ 이 법에 따른 총괄청의 행정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시행령

제4조의3(행정재산 관리·처분의 사무 위임)

- ① 총괄청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 1-3. 생략
 4. 행정재산의 관리(취득에 관한 사무는 제외한다)에 관한 사무
 5. 용도가 폐지된 행정재산(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은 제외한다)의 처분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총괄청이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처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사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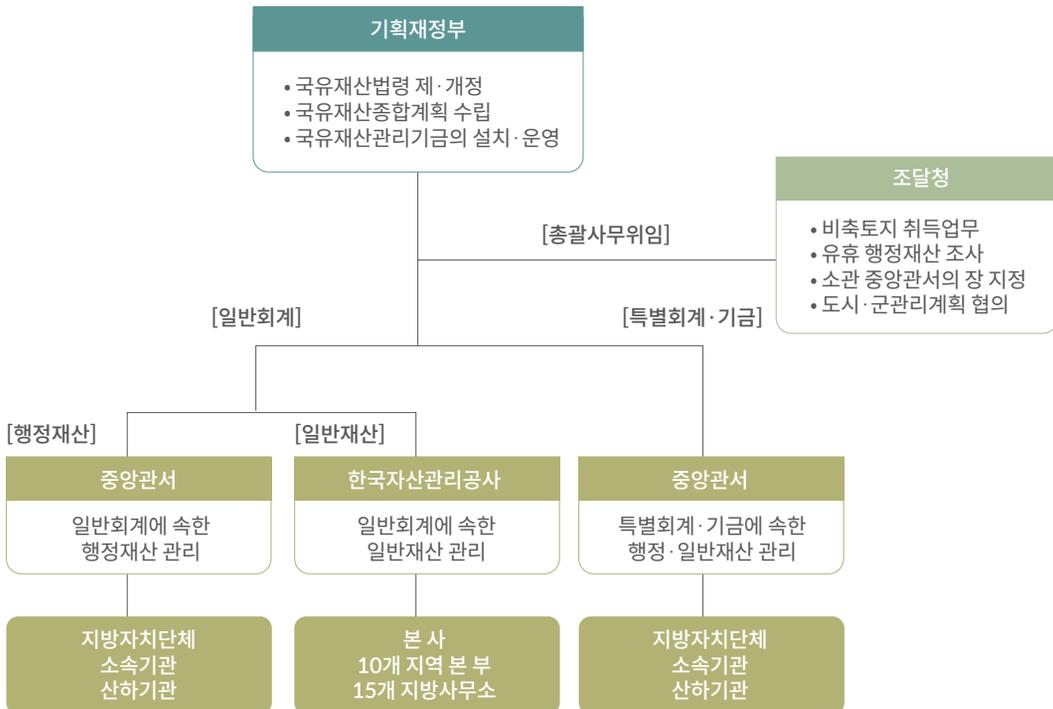
235) 「국유재산법」

제26조의2(국유재산관리기금의 설치) 국유재산의 원활한 수급과 개발 등을 통한 국유재산의 효용을 높이기 위하여 국유재산관리기금을 설치한다.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부처별 청사·관사 사업의 경쟁적 추진에 따라 야기되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의 활용도를 제고하고, 총괄청(기획재정부)의 일반재산 매각·임대 등의 수입을 청사·관사 매입 등에 충당하여 재정부담을 완화하며, 용도폐지된 국유지를 매각한 재원으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한 국유지를 매입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조달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비축토지의 취득업무, 유휴 행정재산 조사, 소관 중앙관서의 장 지정, 관리실태 확인·점검 업무 등 총괄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있다.

[국유재산 관리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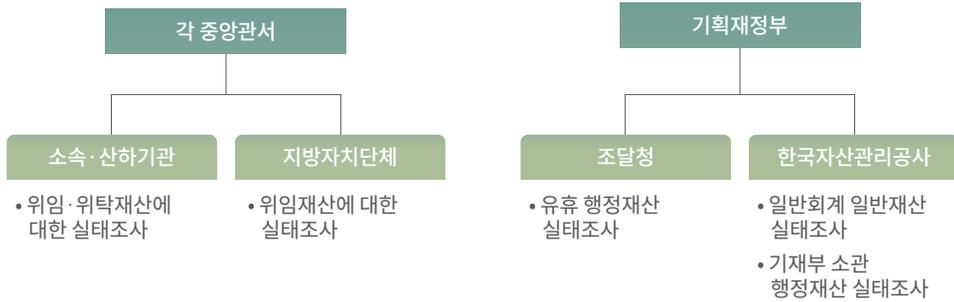


자료: e나라재산(www.k-pis.go.kr)

국유재산 실태조사

「국유재산법」 제66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68조제4항, 제69조제1항 및 제2항 등에 따르면, 중앙관서의 장 등은 매년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의 등기 및 지적현황 등 실태를 조사하여 국유재산 대장을 정비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 등 다수의 중앙관서는 소속·산하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실태조사업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행하도록 운영하고 있다.

[국유재산 실태조사 체계]



자료: 감사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추진실태」, 2019.5.

실태조사 대상은 국유재산의 특성 및 이용 상태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되 실태조사 범위에 ① 재산 등기 및 지적 현황, ② 주위 환경, ③ 이용 현황, ④ 그 밖에 재산의 보존·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1년에 1회 이상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2. 국유재산종합계획

의의 및 내용

국유재산종합계획은 2012년부터 도입된 제도로, 국유재산 정책방향 및 목표를 제시하고, 중장기 개발계획을 수립하며,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는 역할을 한다.

국유재산종합계획은 ①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② 국유재산 취득, 처분, 행정재산 사용 및 사용허가, 일반재산 대부계획 등 관리·처분 총괄계획 ③ 국유재산 처분 기준 ④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으로 구성된다.²³⁶⁾

236)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작성절차

국유재산종합계획은 「국유재산법」 제9조²³⁷⁾에 따라 작성된다.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② 중앙관서의 장은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한다. ③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들이 제출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이 확정된 후 중앙관서의 장은 반기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살펴보면,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장 지원이라는 정책목표 하에 ① 민간·지자체와 협력하여 국유재산 개발의 효과성 제고, ② 국가 핵심정책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공익적 활용 확대, ③ 행정재산 관리 내실화를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 ④ 국유재산의 관리기반 강화를 정책 방향으로 삼고, 이에 따라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공공주택·생활SOC 확충, 그린뉴딜·2050 탄소중립 정책 뒷받침, 사 용료 경감 등 청년·소상공인 지원 강화, 국유재산 가치산정을 위한 평가체계 개편 등 12개 정책과제를 설정하고 있다.

237) 「국유재산법」

제9조(국유재산종합계획) ① 총괄청은 다음 연도의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의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지침에 따라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다음 연도의 계획을 작성하여 매년 6월 30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계획을 종합조정하여 수립한 국유재산종합계획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국유재산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국유재산 정책방향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 관리·처분의 총괄 계획

3. 국유재산 처분의 기준에 관한 사항

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8조에 따른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외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중요한 사항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의 주요 내용]

구성 항목	주요 내용
중장기 국유재산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을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및 포용성장 지원 ▶ 정책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지자체와 협력하여 국유재산 개발의 효과성 제고 • 국가 핵심정책 및 청년·소상공인 지원 등 공익적 활용 확대 • 행정재산 관리 내실화를 통한 국유재산 가치 제고 • 국유재산의 관리기반 강화 ▶ 주요 정책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참여개발 활성화, 한국형 뉴딜정책 뒷받침, 공공주택·생활SOC 공급지원, 소상공인 지원 등
국유재산 관리·처분 총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국유재산 관리·처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취득, 처분, 행정재산 사용 승인·용도폐지, 사용허가·대부, 개발 등 연간 계획
국유재산 처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2년도 국유재산 처분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제한 대상, 매각 시 총괄청의 승인·협의사항 등 국유재산 처분과 관련한 제반사항 규정
국유재산특례 종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유재산 특례 운용 방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활력 제고, 포용사회 지원에 기여하도록 국유재산특례를 운용하고, 특례제도 개선도 추진 ▶ 2020년 국유재산특례 유형별 운용전망(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감면 16.4조원, 양여 0.6조원, 장기사용허가 1.5조원 ▶ 2021년 국유재산특례 유형별 운용계획(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감면 22.6조원, 양여 0.2조원, 장기사용허가 3.1조원 ▶ 2022년 국유재산특례 유형별 운용실적(장부가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용료 감면 21.6조원, 양여 719억원, 장기사용허가 3.1조원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국유재산종합계획」, 2021. 8.

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의의 및 내용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는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종료 시 작성하여야 하는 보고서로, 앞서 국유재산종합계획이 정부예산에 대응된다고 할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는 정부결산에 대응되는 제도이다. 국유재산 결산은 모든 국유재산을 토지, 건물, 공작물, 기계기구, 입목죽, 선박·항공기, 유가증권, 무체증권으로 구분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한다. 이 과정을 통해 국유재산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국유재산의 최적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용할 수 있다.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는 ①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②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③ 국유재산특례종합계획 운용실적 등으로 구성된다.²³⁸⁾

작성절차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는 「국유재산법」 제69조²³⁹⁾에 따라 작성된다.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이 그 소관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고, ② 총괄청은 중앙관서의 장들이 제출한 계획을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한다. 그 후 ③ 총괄청은 해당 회계연도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고, ④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제3절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의의

국유재산특례지출이란 국유재산의 사용료 감면이나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 운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국가의 재정수입 감소분을 의미한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²⁴⁰⁾는 기획재정부

238) 「국유재산법」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70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한 집행 실적 및 평가 결과
2. 연도 말 국유재산의 증감 및 보유 현황
- 2의2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9조에 따른 운용실적
3. 그 밖에 국유재산의 관리·처분 업무와 관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39) 「국유재산법」

제69조(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① 중앙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속하는 국유재산에 관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총괄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총괄청은 제1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를 통합하여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총괄청은 제2항의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④ 총괄청은 제3항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받은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와 감사원의 검사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4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작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사용료등의 감면, 양여 등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 및 다음 회계연도 추정금액을 국유재산특례의 유형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장관으로 하여금 국유재산특례에 따른 재정 지원 규모를 분석한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34조제14호²⁴¹⁾에 따라 정부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되고 있다.

내용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한 각 개별법률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료 감면과 양여로 인해 발생하는 재정수입 감소분을 산출하고 있다. 사용료, 대부료 등 사용·수익에 대한 대가를 일부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 정상사용료에서 실제 부과사용료를 차감한 금액²⁴²⁾으로 산정하고, 국가 외의 자에게 국유재산의 소유권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양여의 경우에는 양여 시점의 해당 재산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산출하게 된다.

다만, 국가에 대한 기부 또는 대체시설의 제공에 따른 대가로서 국유재산의 사용료 등을 감면하거나, 특수한 재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해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적용되지 않는 6개 법률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등은 제외된다.

[국유재산특례지출에서 제외되는 범위]

규 정	제 외 내 역
「국유재산법」 §34①에 따른 감면	행정재산 목적의 기부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등에게 사용허가한 경우 등
「국유재산법」 §47①에 따른 감면	일반재산을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지자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국유재산법」 §55①에 따른 양여	도로 등 대체시설을 제공하는 자에게 공익사업의 사업지구로 편입된 재산을 양여하는 경우 등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적용 제외 법률(6개)에 따른 감면·양여 (「국유재산특례제한법」 §3 2.)	「도로법」에 따른 점용료 면제 등 「하천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 「소하천정비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 「공유수면 관리법」에 따른 점용료 감면 등 「어촌·어항법」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등 「항만법」에 따른 사용료 등 감면 등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1. 9.

241) 「국가재정법」

제34조(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42) 정상사용료(통상 재산가액 5%) - 실제 부과사용료(통상 0.25%)

국유재산특례지출 예산현황

2022년 국유재산특례 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 지출예산은 8,941억원으로 2021년 전망치 1조 283억원 대비 1,342억원 감소(△13.1%)한 규모이다. 이를 특례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2년 사용료 감면 지출규모는 8,222억원으로 2021년 전망치 대비 145억원 감소(△1.7%)하였는데, 해양수산부의 항만공사 특례적용 면적 감소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계약해지 등으로 감면 규모가 감소한 반면, 도로교통관리공단 대상 감면 규모가 증가함에 따라 감면 금액이 상쇄되었다. 한편, 2022년 양여 지출규모는 719억원 규모로 2021년 전망치 대비 1,197억원 감소(△166.7%)하였는데, 이는 세종시 지방공공시설 양여²⁴³⁾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양여 규모가 감소한 것에 기인하였다.

[특례유형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특례 유형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2022년 (계획)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사용료 감면	662,538	52.5	836,664	81.4	822,205	92.0
양 여	600,383	47.5	191,621	18.6	71,858 ¹⁾	8.0
합 계	1,262,921	100.0	1,028,285	100.0	894,063	100.0

주: 1) 202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에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준현의원 대표발의)의 국회 통과를 전제로 세종특별자치시에 119특수구조단, 창의진로교육원 양여 계획을 반영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1. 9.

지원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공공부문에 대한 특례지출이 7,434억원으로 전체의 83.1%를 차지하고, 민간부문은 1,507억원으로 16.9%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양여는 공공부문에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대한 국유재산특례지출은 외국인투자기업(790억원), 자유무역지역입주기업(466억원) 등 영리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용료 감면이 주된 내역이다.

243) 행복청 양여 규모: (2020년)3,921억원 → (2021년)1,903억원 → (2022년)719억원

[지원대상자별 국유재산특례지출 현황]

(단위: 백만원, %)

대상자		2020년 실적		2021년 전망		2022년 계획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공공 부문	지자체	398,185	31.5	198,034	19.3	78,218	8.7
	공공법인	668,959	53.0	674,997	65.6	665,150	74.4
	소 계	1,067,144	84.5	873,031	84.9	743,368	83.1
민간 부문	영리법인	122,124	9.7	134,791	13.1	132,855	14.9
	비영리법인	70,554	5.6	16,335	1.6	13,463	1.5
	개인	3,099	0.2	4,129	0.4	4,378	0.5
	소 계	195,777	15.5	155,255	15.1	150,696	16.9
합 계		1,262,921	100.0	1,028,285	100.0	894,063	100.0

자료: 대한민국 정부, 「202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2021. 9.

국유재산특례지출 관리제도 개편

종래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여러 법률에서 국유재산의 이용에 대한 특례를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으며, 국유재산에 대한 무분별한 특례의 신설로 인하여 국유재산 관리·처분 정책의 일관성 및 유사사용원칙을 훼손하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을 제정하면서 개별법상의 특례를 통합관리 함과 동시에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않고는 국유재산 특례를 운용할 수 없도록 제한하였다.²⁴⁴⁾

이와 함께 정부는 국유재산 특례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는지, 요건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국유재산특례가 다른 지원방법보다 적절한지, 존속기간의 적절성 등 타당성을 심사하도록 하고, 그 존속기간을 개별 근거 법률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하며 장기 사용허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국유재산특례가 불필요하게 지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현행 국유재산특례 규정 대부분이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정 이전에 도입된 것이라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있는 법률이 적어 실효성 있는 일몰주기 관리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간 특례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 재정수입 감소액이 2020년 말 기준 1조 2,629억원에 이르는 등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쳐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24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4조(국유재산특례의 제한) ① 국유재산특례는 별표에 규정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정할 수 없다.

② 이 법 별표는 이 법 외의 다른 법률로 개정할 수 없다.

이에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사전·사후 통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22년 1월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으로 국유재산특례 제도가 정비되어 2022년 7월부터 시행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① 국유재산특례에 대한 기본원칙(목적의 공익성, 대상·요건의 구체성, 방법의 최적성, 기한의 한시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특례를 신설·운용함에 있어 해당 원칙을 준수하도록 하였으며, ② 개별법상 국유재산특례의 존속기한을 특례제한법 별표에 직접 규정하도록 하는 한편, ③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국유재산특례 효과성·타당성 평가를 통해 존속기한 연장을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였다. 또한, ④ 미운용 특례 중 존치 필요성이 낮은 7개 특례를 폐지하고 10개의 특례를 신설하는 등 특례규정을 정비하였다.

2011년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제정된 이후 2022년 7월 12일 시행 예정인 법률을 기준으로 볼 때 182개 법률, 216개 규정이 특례로 규정되어 있다.

[국유재산 특례규정 현황]

(단위: 개)

구분	2011	2013	2014	2016	2017	2019	2020	2022.6 ¹⁾
법률	170	172(+2)	170(+1,△3)	175(+5)	176(+1)	177(+1)	184(+8,△1)	182
조항	195	198(+3)	197(+2,△3)	204(+7)	206(+2)	207(+1)	218(+12,△1)	216

주: 1) 2022. 7. 12. 시행 예정인 [별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으며, 별표 전체가 개정됨

1. 법률 및 조항 현황은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 연번을 기준으로 작성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1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18726호)를 바탕으로 제작

[국유재산특례 신설 현황]

연도	신설 특례규정	추가 사유
2013	「소상공인법」 부칙 §2 양여	(구)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지원회에 흡수되어 기존 재산 양여(특례법률 추가)
	「군공항이전법」 §9 양여	군공항 이전에 따른 이전주변지역 지자체 지원(특례법률 추가)
	「행복도시법」 §46의2 양여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양여(특례규정 신설)
2014	「수산과학기술진흥법」 §14 사용료 감면 및 양여	수산과학기술보급기관 지원(특례법률 추가)
	「공공주택법」 §40의3·§40의4 사용료 감면 및 장기사용허가	행복주택사업 지원(특례규정 신설)
2016	「국인복지기본법」 §11 사용료 감면	국방부 소유 어린이집 위탁운영기관 지원(특례법률 추가)
	「농어촌리모델링법」 §37 양여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정비 사업 시행자 지원(특례법률 추가)
	「평창동계올림픽법」 §9 사용료 감면	평창동계올림픽대회조직 위원회 지원(특례법률 추가)
	「평창동계올림픽법」 §28 양여	평창동계올림픽 시설 설치를 위한 양여(특례법률 추가)

연도	신설 특례규정	추가 사유
2016	「방위사업법」 §32의2 사용료 감면 및 양여	국방기술품질원 지원(특례규정 신설)
	「대한노인회지원법」 §4 사용료 감면	대한노인회 지원(특례법을 추가)
	「이북5도법」 §8 사용료 감면	이북도민 관련 단체 지원(특례법을 추가)
2017	「도청이전법」 §31의2②·③ 사용료 감면, 장기 사용허가 및 양여	도청이전에 따른 자치단체 지원(특례법을 추가)
	「새만금사업추진법」 §14⑤ 장기 사용허가	새만금사업 지원(특례규정 신설)
2019	「친환경자동차법」 §11의3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친환경차 충전시설 설치 사업자 지원 (특례법을 추가)
2020	「무형문화재 보전법」 §47 사용료 감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 지원(특례규정 추가)
	「영유아보육법」 §39의2 사용료 감면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원(특례법을 추가)
	「도시재생법」 §30·§54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도시재생사업 지원(특례법을 추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 §11 사용료 감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지원(특례법을 추가)
	「해양경비법」 §9② 양여	용도폐지합정 개도국 양여(특례법을 추가)
	「국가균형발전법」 §11의2 사용료 감면	상생형일자리 참여 기관·법인 등 지원(특례법을 추가)
	「기초생활보장법」 §15의6 사용료 감면	자활복지개발원 지원(특례규정 신설)
	「산업입지법」 §46의8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산단 개발사업 시행자 지원(특례규정 신설)
	「소재부품장비산업법」 §31 사용료 감면	실증기반시설 수요기업 지원(특례법을 추가)
	「소재부품장비산업법」 §48 사용료 감면	특화단지 입주기업 등 지원(특례법을 추가)
「철도사업법」 §46의2 장기사용허가	철도시설 점용허가 지원(특례법을 추가)	
2022	「해외진출기업복귀법」 §13의2·§13의3 사용료 감면, 장기사용허가	국내복귀기업 지원(특례법을 추가)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20 ① 사용료 감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지원(특례법을 추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14 ① 사용료 감면	소방병원 설립·운영 지원(특례법을 추가)
	「농어촌정비법」 §23③ 사용료 감면	농업생산기반시설 공공목적 사용 지원(특례법을 추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22조의8 사용료 감면	첨단투자지구 입주기업 지원(특례규정 신설)
	「수도법」 §77의2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수도부지 사용 지원(특례법을 추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 §21 사용료 감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특례법을 추가)
	「철도사업법」 §44 점용료 감면	철도시설 점용허가 지원(특례규정 추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31 사용료 감면	지방자치단체 철도유휴부지 사용 지원(특례규정 신설)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2021.9.)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6, 정부제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유재산특례 폐지 현황]

연도	폐지 특례규정	삭제 사유
2014	「문화예술진흥법」 §37 양여	특례 목적 달성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법」 §19 사용료 감면	법률 폐지
	「여수세계박람회법」 §9·§26 사용료 감면 및 양여	특례 목적 달성
2020	「부품소재기업육성법」 §20 양여	법률 폐지
202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및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지원법」 §6·§23 사용료 감면 및 양여	특례 목적 달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9 사용료 감면	특례 목적 달성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28 양여	특례 목적 달성
	「무역거래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 §12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	2011년 이후 운용실적 부재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36 사용료 감면	2011년 이후 운용실적 부재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17 사용료 감면	특례 목적 달성
	「포물러원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지원법」 §7 사용료 감면	특례 목적 달성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11 사용료 감면	인허가 관련 행정수수료 규정 폐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52 사용료 감면	인허가 관련 행정수수료 규정 폐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40 사용료 감면	인허가 관련 행정수수료 규정 폐지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4 사용료 감면	인허가 관련 행정수수료 규정 폐지	

자료: 대한민국 정부의 「2022년도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2021.9.)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16, 정부 제출) 검토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7장 공공기관

제1절 공공기관 지정 현황

1.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 기준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되, 이 중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50%(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 관리를 위탁받은 공공기관의 경우 85%)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이면서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 비중이 50% 미만인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이 된다.

한편, 공기업 중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의 비율이 85% 이상인 기관은 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형 공기업으로는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등이 있으며,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등이 있다.

[2022년 공공기관 지정 및 분류기준]

유형		분류기준		기관 예시	
공기업 (36개)	시장형 (15개)	직원 정원 50명 이상 총수입액 30억원 이상 자산규모 10억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이상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경우 85% 이상)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85% 이상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준시장형 (21개)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마사회 한국조폐공사	
준정부기관 (94개)	기금관리형 (13개)	자체수입이 총수입의 50% 미만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 관리 또는 위탁관리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위탁집행형 (81개)		정부업무의 위탁집행	한국농어촌공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장학재단	
기타공공기관 (220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		한국산업은행 출연연구기관 전북대학교병원	
총 350개					

자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을 바탕으로 재작성

또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신용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등을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으로 신용보증기금, 국민연금공단 등이 있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정부업무를 효율성 측면에서 위탁·집행하고 있는 기관(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으로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장학재단 등이 있으며, 기타공공기관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제외한 공공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연구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소속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74개 기관을 지정하고 있다.

2. 공공기관 현황

2022년 3월 기준 대한민국 공공기관은 공기업(시장형, 준시장형), 준정부기관(기금관리형, 위탁집행형), 기타공공기관으로 분류되며, 대한민국 공공기관 수는 350개로 2021년 349개 대비 1개 증가하였다. 2021년 1월 기획재정부는 350개의 공공기관을 지정하였으나,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한국광물자원공사와 한국광해관리공단이 2021.9.10. 해산되어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지정(2021.12.8.)되었으므로 2021년 말 기준 공공기관은 총 349개로 볼 수 있다.

공기업은 전년과 동일하고 준정부기관은 전년 대비 1개 감소하였으며, 기타공공기관은 전년 대비 2개 증가하였다.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이 13개, 위탁집행형이 81개로 총 94개이고, 기타공공기관은 220개(연구개발 목적기관 74개 포함)이다.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구 분	2021	2022	전년 대비			
			증감	신규	해제	변경
① 공기업	36	36	0	0	0	0
• 시장형	15	15	0	0	0	0
• 준시장형	21	21	0	0	0	0
② 준정부기관	95	94	△1	0	△1	0
• 기금관리형	13	13	0	0	0	0
• 위탁집행형	82	81	△1	0	△1	0
③ 기타공공기관	218	220	2	3	△1	0
합 계	349	350	1	3	△2	0

주: 1. 2021년 현황은 해산된 기관 현황을 포함한 2021년 말 기준임.

2. 증감은 신규와 해제를 합한 값이며, 변경은 공공기관 지정 유형이 변경된 것을 의미함.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

3. 공공기관 변동 현황

2021년 대비 2022년(3월 기준) 공공기관 수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재단법인 한국보건 의료정보원, 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의 3개 공공기관이 신규로 지정되었으며(기타 공공기관), 아시아문화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의 2개 기관이 지정해제되었다.

[공공기관 변동 현황]

구분	주무부처	기관명	지정 결과
신규 (+3)	복지부	(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기타공공기관
	산업부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산업부	한국제품안전관리원	
해제 (△2)	문화부	아시아문화원	지정 해제
	금융위	한국예탁결제원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

신규로 지정된 공공기관은 보건복지부 소관 기관 1개((재)한국보건 의료정보원), 산업통상자원부 2개(한국탄소산업진흥원, 한국제품안전관리원)이며, 해제된 기관은 문화체육관광부 1개(아시아문화원), 금융위원회 1개(한국예탁결제원)이다.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아시아문화원은 최근('22.1.17.) 기관이 해산되어 지정 해제하였고, 한국예탁결제원은 자본시장법 개정 등으로 전자등록업무가 범상 독점업무에서 제외됨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정부지원액 비중 50% 이상)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여 지정 해제하였다고 밝혔다.

4. 부처별 공공기관 지정 현황

2022년 3월 기준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을 살펴보면,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47개의 공공기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에너지, 산업 분야 등의 41개 공공기관이 소속된 산업통상자원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다음으로 공공기관이 많은 부처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는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남동발전(주) 등 에너지 관련 공기업이 지정되어 있으며, 국토교통부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등 교통 관련 공기업과 한국부동산원,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준시장형 공기업 등이 지정되어 있다.

또한, 기획재정부에는 한국수출입은행 등 은행형 공공기관과 한국재정정보원 등 재정정보를 관리하는 공공기관이 지정되어 있다.

[부처별 공공기관 현황]

(단위: 개)

부처명	공공기관수	부처명	공공기관수
경찰청	1	방위사업청	2
고용노동부	12	법무부	3
공정거래위원회	2	보건복지부	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7	산림청	4
관세청	1	산업통상자원부	41
교육부	22	소방청	1
국가보훈처	3	식품의약품안전처	4
국무조정실	25	여성가족부	5
국방부	3	외교부	3
국토교통부	28	원자력안전위원회	3
금융위원회	7	인사혁신처	1
기상청	3	중소벤처기업부	11
기획재정부	4	통일부	2
농림축산식품부	12	특허청	5
농촌진흥청	1	해양수산부	17
문화재청	1	행정안전부	3
문화체육관광부	31	환경부	12
방송통신위원회	2	합계	350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022.1.)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절 공공기관 재무 현황

1. 공공기관 재무 결산 개요

공공기관의 재무 결산 절차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규정되어 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은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고, 회계감사인을 선정하여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공기업은 외부 회계감사의 의견서가 포함된 재무제표 및 그 부속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준정부기관은 주무 기관의 장에게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고, 3월 31일까지 승인을 받아 결산을 확정한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주무 기관의 장은 5월 10일까지 확정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감사원에 제출한다. 감사원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결산서 등을 검사하여 그 결과를 7월 31일까지 다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기획재정부 장관은 결산서 등에 감사원의 검사 결과를 첨부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8월 20일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기타공공기관에 대하여는 결산과 관련한 특별한 법 규정이 없다.

[정부 결산 절차와 공공기관(공기업·준정부기관) 결산 절차 비교]

절차		정부 결산	공공기관 결산
자체 결산서 작성 및 제출·승인	중앙관서의 장(기관장) →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2월 말	2월 말까지 제출, 3월 31일까지 승인
결산서 감사원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주무기관장) → 감사원	4월 10일	5월 10일
회계검사 결과 기획재정부 송부	감사원 → 기획재정부장관	5월 20일	7월 31일
결산보고서 국회 제출	정부 → 국회	5월 31일	8월 20일

자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2.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

공공기관의 2020년도 말 자산은 902조 3,786억원, 부채는 544조 8,045억원, 자본 357조 5,741억원,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으로, 2019년도 말 대비 자산 41조 5,593억원, 부채 17조 9,045억원, 자본 23조 6,548억원 및 당기순이익 4조 4,820억원이 각각 증가하였다.²⁴⁵⁾

2019년 대비 2020년 말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41조 5,593억원)는 부채 증가(17조 9,045억원) 및 자본 증가(23조 6,548억원)에 기인한다. 자본의 증가는 당기순이익, 정부출자 및 자산재평가 등에 따라 발생하는데 2019년 대비 2020년 공공기관 전체 자본 증가(23조 6,548억원) 중 당기순이익 증가에 의한 것은 4조 4,820억원에 불과하다.

245) 기획재정부가 2021년 4월 발표한 공시자료에서 지정된 350개 공공기관 중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을 제외한 347개 공공기관의 2020 회계연도 재무 정보를 대상으로 함

[공공기관 재무 현황: 2016~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자산	7,995,243	8,099,020	8,281,966	8,608,193	9,023,786	415,593	4.8
부채	5,003,456	4,951,461	5,033,886	5,269,000	5,448,045	179,045	3.4
자본	2,991,787	3,147,559	3,248,080	3,339,193	3,575,741	236,548	7.1
당기순이익	156,612	72,541	6,920	8,269	53,088	44,820	542.0

주: 각 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자산

2020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자산은 2019년 대비 41조 5,593억원(4.8%) 증가한 902조 3,786 억원이며, 공기업과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

시장형 공기업 중 한국전력공사의 자산 증가는 설비투자 자산 증가(4조원) 및 일시적 자금 조달 등으로 인한 유동금융자산 증가(1.2조원) 등에 기인한다.

준시장형 공기업의 자산 증가는 한국토지주택공사(8.8조원)의 임대주택 증가와 한국도로공사(3.4조원)의 고속도로 투자비 증가, 한국철도공사(2.7조원)의 토지재평가이익 증가 등에 기인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의 2019년 말 대비 2020년 말 자산은 신용보증기금(4조원), 중소기업진흥공단(3.9조원),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2.5조원) 등을 중심으로 증가하였다.²⁴⁶⁾ 기타 공공기관의 자산 증가는 한국해양진흥공사의 현대상선(주) 지원을 위한 무보증사모전환사채(신종자본증권) 투자(0.36조원) 및 관련 자산 평가이익(3.3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246) 신용보증기금의 경우 사업 운영을 위해 정부 출연금이 늘어남(3.3조원)에 따라 동 자금을 운용하는 유동금융상품이 증가하는 등 자산 4조원이 증가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자산 증가(3.9조원)는 용자사업 추경예산 집행 등으로 인한 장기대여금 증가(2.7조원) 및 모태조합 신규출자 등 투자증권 증가(1조원)에 기인하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유가증권 투자로 인해 자산이 2.5조원 증가하였다.

[공공기관 자산 현황: 2016~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5,629,846	5,690,008	5,792,849	6,001,223	6,157,483	156,260	2.6
시장형	2,772,753	2,779,705	2,830,192	2,961,678	2,963,264	1,587	0.1
준시장형	2,857,093	2,910,303	2,962,657	3,039,545	3,194,219	154,674	5.1
준정부기관	2,031,552	2,070,970	2,096,239	2,184,450	2,358,748	174,298	8.0
기금관리형	1,109,241	1,130,737	1,159,574	1,254,433	1,403,761	149,328	11.9
위탁집행형	922,312	940,234	936,665	930,016	954,987	24,970	2.7
기타공공기관	333,845	338,042	392,878	422,521	507,555	85,035	20.1
합계	7,995,243	8,099,020	8,281,966	8,608,193	9,023,786	415,593	4.8

주: 각 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채

2020년 말 기준 공공기관의 부채는 2019년 대비 17조 9,045억원(3.4%) 증가한 544조 8,045억원이다.

2019년 대비 2020년 시장형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한국전력공사(3.8조원)와 한국토지주택공사(3조원), 한국도로공사(1.7조원), 한국철도공사(1.7조원)의 부채 증가에 기인한다.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중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2019년 대비 2020년의 부채 증가(3.2조원)는 용자사업 확대에 의한 공채 순증가 등에 의한 것이며, 기타공공기관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부채 증가는 자금마련 목적 사채 발행(1조원) 및 HMM 영구채 평가이익에 따른 이연법인세부채 증가(1.8조원)에 따른 것이다.

[공공기관 부채 현황: 2016~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3,629,932	3,640,568	3,711,644	3,880,982	3,978,508	97,527	2.5
시장형	1,697,227	1,721,842	1,804,005	1,962,290	1,990,710	28,420	1.4
준시장형	1,932,705	1,918,725	1,907,639	1,918,691	1,987,799	69,107	3.6
준정부기관	1,236,368	1,180,897	1,182,054	1,223,100	1,257,127	34,027	2.8
기금관리형	670,939	608,641	578,378	577,713	601,935	24,223	4.2
위탁집행형	565,429	572,256	603,677	645,387	655,191	9,805	1.5
기타공공기관	137,157	129,996	140,188	164,919	212,410	47,491	28.8
합계	5,003,456	4,951,461	5,033,886	5,269,000	5,448,045	179,045	3.4

주: 각 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당기순이익

2020년 전체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으로 2019년 8,269억원 대비 4조 4,820억원(542.0%) 증가하였으며, 이는 주로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 포함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당기순이익 증가(2019년 △3.6조원에서 2020년 1.6조원으로 5.2조원 증가)에 기인한다.

[공공기관 당기순이익 현황: 2016-2020년]

(단위: 억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액 (C=B-A)	증감률 (C/A)
공기업	90,442	41,954	20,049	12,334	△5,896	△18,229	△147.8
시장형	62,595	10,035	△10,952	△16,588	△25,476	△8,887	53.6
준시장형	27,848	31,919	31,001	28,922	19,580	△9,342	△32.3
준정부기관	64,986	28,645	△13,266	△4,711	31,125	35,836	△760.7
기금관리형	30,613	23,798	26,597	24,759	16,079	△8,680	△35.1
위탁집행형	34,373	4,847	△39,863	△29,471	15,046	44,516	△151.1
기타공공기관	1,184	1,942	137	646	27,859	27,213	4,210.0
합계	156,612	72,541	6,920	8,269	53,088	44,820	542.0

주: 각 기관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당기순이익을 인식한 기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3.3조원), 한국해양진흥공사(2.8조원), 연결 기준 한국전력공사(2.1조원), 예금보험공사(1.9조원), 국민건강보험공단(1.6조원) 등이 있으며, 반면 한국석유공사(2.4조원), 한국광물자원공사(1.35조원), 한국철도공사(1.3조원)에서 대규모 당기순손실을 기록하였다.

은행형 공공기관

기획재정부는 상기 공공기관 재무 현황 발표 시 재무건전성을 부채비율이 아닌 BIS비율(은행의 위험자산 대비 자본비율)로 관리하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한국수출입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의 재무현황을 제외하고 있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2020년말 부채 총계는 684조 1,013억원으로 2019년 대비 75조 8,858억원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전기 대비 1조 2,792억원 증가한 3조 6,074억원이다.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부채, 당기순이익 현황 (2018~2020)]

(단위: 억원)

구분	부채				당기순이익			
	2018	2019 (a)	2020 (b)	증감 (b-a)	2018	2019 (c)	2020 (d)	증감 (d-c)
한국산업은행	2,258,227	2,337,626	2,640,070	302,444	7,060	2,791	19,613	16,822
한국수출입은행	768,328	791,185	836,205	45,020	6,859	4,347	981	△3,366
중소기업은행	2,684,153	2,953,344	3,364,738	411,394	17,643	16,143	15,479	△663
합계	5,710,708	6,082,155	6,841,013	758,858	31,561	23,281	36,074	12,792

자료: 각 공공기관 감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의 BIS비율은 2019년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으나 2020년에 2019년 대비 한국산업은행 1.91%p, 한국수출입은행 0.53%p, 중소기업은행 0.35%p 증가하였다.

은행형 공공기관은 설립근거법상 정부의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기관으로, 이익적립금으로 손실을 보전할 수 없을 경우 정부가 그 부족액을 보전해 주어야 하므로, 향후 발생 가능한 재정부담의 방지 차원에서 이들 은행형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은행형 공공기관의 연도별 BIS 비율 현황 (2017~2021.3)]

(단위: %, %p)

구분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액 (B-A)	2021.3 (C)	증감액 (C-B)
한국산업은행	15.26	14.80	14.05	15.96	1.91	15.85	△0.11
한국수출입은행	12.90	14.42	14.56	15.09	0.53	15.23	0.14
중소기업은행	14.20	14.50	14.47	14.82	0.35	14.83	0.01
일반은행 평균	15.84	15.90	15.89	17.14	1.25	17.20	0.05

자료: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바탕으로 재작성

3. 공기업 당기순이익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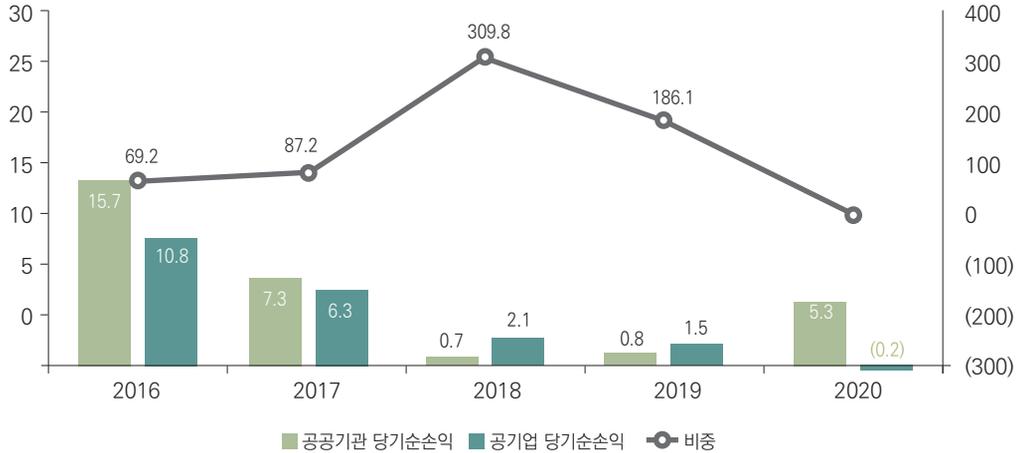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2020년 공공기관 총 당기순이익은 5조 3,088억원인데 반해 36개 공기업군은 1,758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다. 2020년 공기업 36개 중 18개의 기관이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으며,

이 중 한국석유공사(2조 4,392억원), 한국광물자원공사(1조 3,543억원) 및 한국철도공사(1조 3,427억원)는 2020년 당기순손실이 1조원을 초과하였다.

[2016~2020년 공기업 및 공공기관 당기순손익 비교]

(단위: 조원, %)



주: 공공기관 재무정보에는 3개 은행형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2020년 공기업의 당기순손실 인식은 주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레저 및 여행 관련 공기업의 매출 침체에 따른 것이다.

한국철도공사의 경우 코로나19에 의해 여객사업 매출 감소 추세이며, 고정비(인건비, 상각비 및 금융부채에 대한 이자비용)가 크게 발생해 재무건전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상황이며,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역시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지만 매출원가는 고정비적 성격(인건비 및 상각비 등)이 큰 탓에 2020년 매출총손실이 발생하였다.

한편, 외국인전용 카지노 등을 운영하는 강원랜드 및 그랜드코리아레저 역시 2020년 당기순손실을 인식한 바 있다.

[여행 및 레저 관련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익 현황 (2016~2020년)]

(단위: 억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A)	2020 (B)	증감 (B-A)
한국철도공사	△2,265	△8,555	△1,050	△469	△13,427	△12,958
인천국제공항공사	9,650	11,168	11,209	8,634	△4,229	△12,863
한국공항공사	1,902	1,898	1,259	188	△1,487	△1,675
한국마사회	2,300	2,227	1,828	1,449	△4,368	△5,817
강원랜드	4,550	4,371	2,973	3,356	△2,788	△6,144
그랜드코리아레저	1,143	805	776	720	△651	△1,371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지속적인 자본잠식을 보이는 공공기관

2020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3개 공기업의 자본잠식 수준이 확대되었다. 2020년에 당기순손실의 규모가 가장 큰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2019년 대비 2조 2,844억원 증가한 2조 4,392억원의 당기순손실을 인식하였는데, 이는 주로 해외 개발자산 손상 및 이자비용 부담에 기인한다. 한편,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채를 포괄 승계한 한국광해광업공단(2021년 9월 설립)은 자체수입 창출 및 채무 상환 계획 등 재무건전성 관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2020년 자본잠식인 공공기관의 당기순손익 및 부채현황]

(단위: 억원)

구분	당기순손익						
	2016	2017	2018 (a)	2019 (b)	2020 (c)	증감	
						(b-a)	(c-b)
한국석유공사	△11,188	△7,368	△11,595	△1,548	△24,392	10,048	△22,844
한국광물자원공사	△9,874	△4,106	△6,861	△5,638	△13,543	1,223	△7,905
대한석탄공사	△824	△799	△823	△1,221	△1,147	△397	74

자료: 각 공공기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공공기관 정부출자 현황

공공기관은 각각의 설립근거법에 근거하여 정부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는데, 해당 출자금은 투자유가증권 등으로 국가의 자산을 형성하며, 향후 배당 및 지분매각 등을 통해 정부출자수입의 원천이 된다.

2021년 12월 기준으로는 10개 부처 34개 공공기관이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다. 정부출자를 받는 공공기관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공기업이 20개로 가장 많았으며, 준정부기관 6개, 은행형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기타공공기관이 8개이다.

[정부출자 공공기관 유형별 세부 현황]

(단위: 개)

유형	주무부처	공공기관명	개수
공기업 (20)	기획재정부	한국조폐공사	1
	산업통상자원부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전력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석유공사	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1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한국부동산원, 인천국제공항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7
	해양수산부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4
	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1
준정부기관 (6)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1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2
기타공공기관 (8)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2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2
	해양수산부	한국해양진흥공사	1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2
	국가보훈처	88관광개발주식회사	1
정부출자 공공기관			34

주: 1. 2021년 12월 31일 기준

2. 정부가 출자 중인 비공공기관은 서울신문사(정부지분율 30.5%), 대한송유관공사(9.8%), 공항철도주식회사(41.6%), 한국방송공사(100%), 한국교육방송공사(100%) 등 5개가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부처별로 살펴보면, 국토교통부 소관 9개 기관에 89조 6,992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7개 기관에 13조 4,607억원, 해양수산부 소관 5개 기관에 7조 6,169억원, 금융위원회소관 4개 기관에 26조 9,161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3개 기관에 8조 8,694억원 등, 총 157조 6,180억원의 정부 출자금이 출자되었다.

[부처별 정부출자 공공기관 세부 현황]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국토교통부	1	한국도지주택공사	399,994	355,284	88.8
	2	한국도로공사	386,561	339,285	87.8
	3	한국철도공사	107,727	107,727	100.0
	4	인천국제공항공사	36,178	36,178	100.0
	5	한국공항공사	23,578	22,541	95.6
	6	주택도시보증공사	34,442	19,913	70.3
	7	한국부동산원	90	44	49.4
	8	새만금개발공사	13,970	13,970	100.0
	9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3,936	2,050	52.1
	소 계 (9)		1,006,476	896,992	89.1
산업통상자원부	10	한국석유공사	106,234	106,234	100.0
	11	한국광해광업공단	20,000	19,973	99.9
	12	한국전력공사	32,098	5,842	18.2
	13	한국가스공사	4,616	1,207	26.2
	14	대한석탄공사	601	601	100.0
	15	한국지역난방공사	579	200	34.5
	16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550	550	100.0
	소 계 (7)		164,678	134,607	81.7
해양수산부	17	부산항만공사	32,975	28,790	87.3
	18	인천항만공사	20,677	16,680	80.7
	19	여수광양항만공사	15,523	11,053	71.2
	20	울산항만공사	4,405	3,846	87.3
	21	한국해양진흥공사	29,493	15,800	53.6
	소 계 (5)		103,073	76,169	73.9

(단위: 개, 억원, %)

주무부처	기관명		납입자본금 (A)	정부출자	
				금액(B)	지분율(B/A)
금융위원회	22	한국산업은행	218,866	218,866	100.0
	23	중소기업은행	42,114	23,722	59.5
	24	한국주택금융공사	20,616	14,166	68.7
	25	한국자산관리공사	16,119	12,407	77.0
	소 계 (4)		297,715	269,161	90.4
기획재정부	26	한국조폐공사	66	66	100.0
	27	한국수출입은행	127,483	87,628	68.7
	28	한국투자공사	1,000	1,000	100.0
	소 계 (3)		128,549	88,694	69.0
농림축산식품부	29	한국농어촌공사	14,718	14,718	100.0
	30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	683	683	100.0
	소 계 (2)		15,401	15,401	100.0
문화체육관광부(1)	31	한국관광공사	324	179	55.2
환경부(1)	32	한국수자원공사	98,041	91,957	93.8
방송통신위원회(1)	33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3,000	3,000	100.0
국가보훈처(1)	34	88관광개발주식회사	20	20	100.0
전체 합계(34)			1,817,277	1,576,180	8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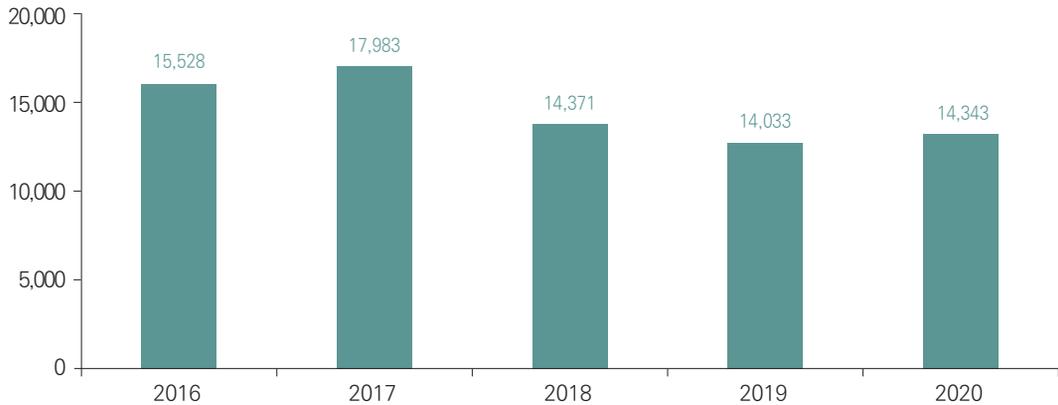
주: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정부출자 공공기관별 배당성향은 기관별로 상이하며, 이익금처리순서에 따라 배당을 실시한다. 최근 5년 동안 정부출자 공공기관의 배당액은 총 7조 6,258억 원이며, 2017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2018년 및 2019년에는 감소하였다.

[정부출자 공공기관 정부배당액 현황]

(단위: 억원)



주: 상기 연도는 배당 대상인 해당 회계연도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최근 5년 동안 정부배당액은 2조 1,535억원으로 34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배당을 실시하였고, 다음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같은 기간 동안 1조 5,947억원의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정부배당액은 2016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3,000억원 이상이었으나,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34개 정부출자 공공기관 중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5개 기관이 경영악화에 따른 당기순손실 발생 등에 따라 2020년에 배당을 실시하지 못하였다. 이 중 대한석탄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현,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철도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7개 기관은 최근 5년 간 지속적으로 배당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정부출자 공공기관별 정부배당액 현황]

(단위: 억원)

번호	공공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1	한국토지주택공사	3,764	4,681	3,325	3,920	5,845	21,535
2	인천국제공항공사	3,473	4,725	3,755	3,994	0	15,947
3	중소기업은행	1,608	2,067	1,872	1,662	2,208	9,417
4	한국산업은행	0	1,471	1,449	1,120	2,096	6,136
5	주택도시보증공사	1,352	1,025	1,229	707	616	4,929
6	한국전력공사	2,313	923	0	0	1,421	4,657
7	한국주택금융공사	584	572	565	0	425	2,146

번호	공공기관명	2016	2017	2018	2019	2020	합계
8	한국공항공사	660	679	344	404	0	2,087
9	한국수출입은행	0	395	415	724	277	1,811
10	한국투자공사	176	267	262	367	580	1,652
11	한국도로공사	316	388	260	334	120	1,418
12	부산항만공사	339	221	143	201	238	1,142
13	한국자산관리공사	205	91	145	139	142	722
14	한국농어촌공사	386	94	0	165	9	654
15	울산항만공사	94	115	95	107	77	488
16	한국가스공사	0	0	328	92	0	420
17	인천항만공사	33	50	56	21	213	373
18	한국지역난방공사	152	113	0	0	39	304
19	한국조폐공사	23	41	37	39	0	140
2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10	0	43	11	25	89
21	한국부동산원	27	19	18	13	10	87
22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	23	29	13	2	80
23	한국관광공사	0	23	0	0	0	23
24	88관광개발(주)	0	0	0.5	0	0.2	1
25	대한석탄공사	0	0	0	0	0	0
26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0	0	0	0	0	0
27	한국수자원공사	0	0	0	0	0	0
28	한국석유공사	0	0	0	0	0	0
29	한국광해광업공단	0	0	0	0	0	0
30	한국철도공사	0	0	0	0	0	0
31	여수광양항만공사	0	0	0	0	0	0
32	한국해양진흥공사	-	-	설립	0	0	0
33	새만금개발공사	-	-	설립	0	0	0
34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	-	설립	0	0	0
합계		15,528	17,983	14,371	14,033	14,343	76,258

주: 한국광해광업공단은 2021년 9월,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한국광물자원공사를 통합하여 설립되었으며, 위 2016~2020년간의 정부배당액은 기존의 출자기관이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연도별 정부배당액임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 대한민국 재정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년도 재정 현황

제2부

제1장

2022년도 재정개요

1. 재정 총량

지난해 9월 정부는 총수입 548.8조원, 총지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 심사 결과 총수입은 4.7조원 증액된 553.6조원, 총지출은 3.3조원 증액된 607.7조원으로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으며, 관리재정수지는 △94.1조원, 국가채무는 1,064.4조원 규모로 계획되었다.

정부는 올해 1월 24일 14.0조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 심사 결과 총수입은 553.6조원, 총지출은 624.3조원으로 확정되었다. 관리재정수지는 본예산 대비 16.6조원 악화된 △110.8조원, 국가채무는 본예산 대비 11.3조원 증가한 1,075.7조원 규모로 계획되었다.

[2022년도 재정총량]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정부안	본예산 확정(B)	제1회 추경(C)	(C-A)	(C-B)
총수입	482.6	514.6	548.8	553.6	553.6	39.0	0.0
총지출	558.0	604.9	604.4	607.7	624.3	19.4	16.6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2.5 (△5.6)	△126.6 (△6.2)	△94.7 (△4.4)	△94.1 (△4.4)	△110.8 (△5.2)	15.8 (1.0)	△16.6 (△0.7)
국가채무 (GDP 대비)	956.0 (47.3)	965.3 (47.3)	1,068.3 (50.2)	1,064.4 (50.0)	1,075.7 (50.1)	110.4 (2.8)	11.3 (0.1)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2. 총수입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총수입은 553.6조원으로 2021년 추경(514.6조원) 대비 39.0조원 (7.6%)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예산수입은 369.5조원이며, 이중 국세수입은 343.4조원, 세외수입은 26.1조원이다. 기금수입은 184.1조원으로 계획되었다.

[2022년도 항목별 총수입]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 (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총수입	482.6	514.6	553.6	553.6	39.0	7.6
예산수입	311.6	343.6	369.5	369.5	25.8	7.5
- 국세수입	282.7	314.3	343.4	343.4	29.1	9.3
- 세외수입	28.9	29.3	26.1	26.1	△3.3	△11.2
기금수입	171.0	171.0	184.1	184.1	13.2	7.7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3. 총지출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총지출은 624.3조원으로 2021년 추경(604.9조원) 대비 19.4조원 (3.2%) 증가하였다. 항목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354.4조원, 특별회계 62.8조원 등 예산이 417.2조원이며, 기금이 207.1조원이다.

[2022년도 항목별 총지출]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 (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총지출	558.0	604.9	607.7	624.3	19.4	3.2
예산	375.0	409.7	413.0	417.2	7.5	1.8
- 일반회계	314.8	348.8	350.2	354.4	5.6	1.6
- 특별회계	60.2	60.9	62.8	62.8	1.9	3.1
기금	182.9	195.2	194.6	207.1	11.9	6.1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소관별 2022년도 총지출 규모는 아래 표와 같다. 총지출 규모가 가장 큰 기관은 보건복지부로 98.0조원이며, 교육부 89.6조원, 행정안전부 70.7조원, 국토교통부 60.9조원 순이다.

[2022년도 소관별 총지출 현황]

(단위: 억원)

연 번	구 분	예 산	기 금	합 계
	총지출	4,172,133	2,070,905	6,243,038
1	보건복지부	628,365	352,038	980,403
2	교육부	838,150	58,101	896,251
3	행정안전부	706,649	0	706,649
4	국토교통부	251,841	357,017	608,858
5	국방부	354,523	42,669	397,192
6	고용노동부	75,943	294,727	370,670
7	기획재정부	51,037	251,212	302,249
8	중소벤처기업부	45,733	267,779	313,512
9	인사혁신처	2,045	222,560	224,605
1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1,223	34,379	185,602
11	농림축산식품부	88,061	80,706	168,767
12	방위사업청	166,813	0	166,813
13	경찰청	122,852	0	122,852
14	환경부	108,389	10,141	118,529
15	산업통상자원부	80,632	30,939	111,571
16	문화체육관광부	38,166	36,666	74,833
17	해양수산부	58,613	5,236	63,849
18	국가보훈처	56,544	2,208	58,752
19	질병관리청	75,123	0	75,123
20	법무부	40,920	827	41,746
21	외교부	28,748	1,305	30,053
22	산림청	23,903	0	23,903
23	대법원	19,509	753	20,262
24	국세청	19,330	0	19,330
25	해양경찰청	16,857	0	16,857
26	통일부	2,309	12,714	15,023
27	여성가족부	6,840	7,449	14,289
28	문화재청	10,608	1,477	12,0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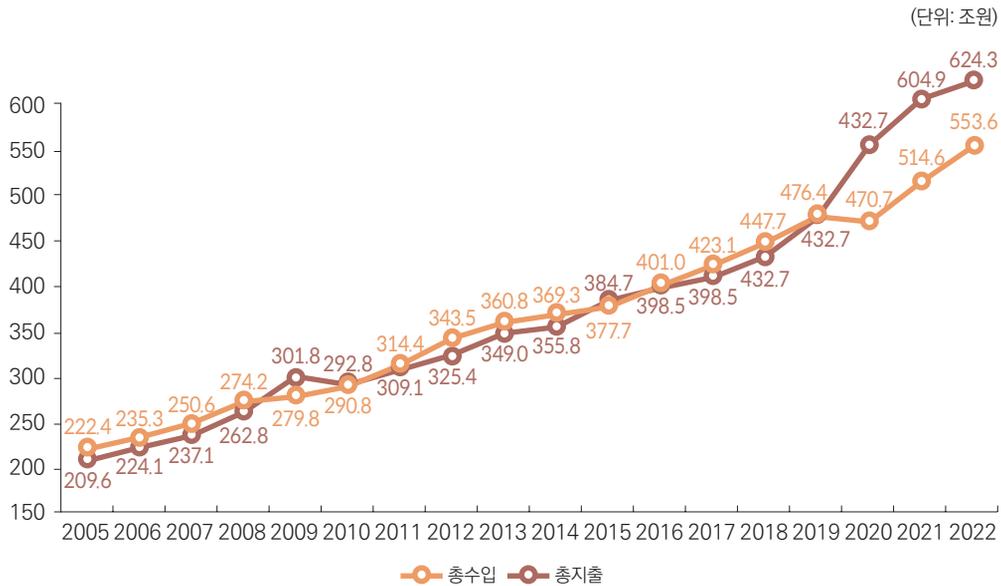
연 번	구 분	예 산	기 금	합 계
29	농촌진흥청	11,893	0	11,893
3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26	0	8,726
31	국가정보원	8,312	0	8,312
32	금융위원회	8,000	2	8,002
33	국회	7,038	0	7,038
34	식품의약품안전처	6,640	0	6,640
35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559	0	6,559
36	관세청	6,141	0	6,141
37	특허청	5,474	0	5,474
38	기상청	4,537	0	4,537
39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4,038	0	4,038
40	통계청	3,798	0	3,798
41	조달청	2,947	0	2,947
42	병무청	2,730	0	2,730
43	새만금개발청	2,485	0	2,485
44	소방청	2,426	0	2,426
45	공정거래위원회	1,575	0	1,575
46	원자력안전위원회	1,561	0	1,561
47	감사원	1,363	0	1,363
48	대통령경호처	970	0	970
49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56	0	956
50	국민권익위원회	933	0	933
51	헌법재판소	531	0	531
52	방송통신위원회	508	0	508
53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02	0	502
54	법제처	432	0	432
55	국가인권위원회	393	0	393
5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40	0	340
5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00	0	200
58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38	0	138
59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37	0	137
6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25	0	125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및 열린재정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정부는 2005년도 예산부터 총수입·총지출 기준의 중앙정부 재정 규모를 발표하고 있다. 그 추이를 살펴보면, 총수입의 경우 2005년 222.4조원에서 2022년 553.6조원으로 연평균 5.5%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2005년 209.6조원에서 2022년 624.3조원으로 연평균 6.6% 증가하고 있어 총수입보다 상대적으로 증가 속도가 빠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연도별 총수입과 총지출 증가 추이]



주: 예산(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4. 재정수지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는 70.8조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적자 규모가 16.6조원 증가되고, 전년 추경 대비 적자 규모가 19.5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¹⁾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110.8조원(GDP 대비 △5.1%) 적자로 본예산(△94.1조원) 대비 적자 규모가 16.6조원 증가하고, 전년 추경 대비 적자 규모가 15.8조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1)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022년 재정수지]

(단위: 조원, %, %p)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B)	제1회 추경(C)	C-A	C-B
통합재정수지 (GDP 대비)	△75.4 (△3.7)	△90.3 (△4.4)	△54.1 (△2.5)	△70.8 (△3.3)	19.5 (1.1)	△16.6 (△0.7)
관리재정수지 (GDP 대비)	△112.5 (△5.6)	△126.6 (△6.2)	△94.1 (△4.4)	△110.8 (△5.2)	15.8 (1.0)	△16.6 (△0.7)

자료: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5. 국가채무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1,075.7조원,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0.1%로 전망된다.

[성질별 국가채무 추이]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추경	2022 추경	연평균 증가율
국가채무 (GDP 대비 %)	626.9 (36.0)	660.2 (36.0)	680.5 (35.9)	723.2 (37.7)	846.6 (43.8)	965.3 (47.3)	1,075.7 (50.1)	9.4
적자성 채무	359.9	374.8	379.2	407.6	512.7	609.3	696.4	11.6
- 일반회계 적자보전	271.3	289.6	300.4	334.7	437.5	538.9	626.9	15.0
- 공적자금 국채전환 등	88.6	85.1	78.8	72.9	75.2	70.4	69.5	△4.0
금융성 채무	267.0	285.4	301.3	315.6	333.9	356.0	379.3	6.0
- 외환시장 안정용	209.8	222.3	234.9	247.2	256.4	263.5	270.6	4.3
- 서민주거 안정용 등	57.2	63.1	66.4	68.5	77.5	92.5	108.7	11.3

주: 1. 2020년까지는 결산 기준, 2021년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도는 제1회 추경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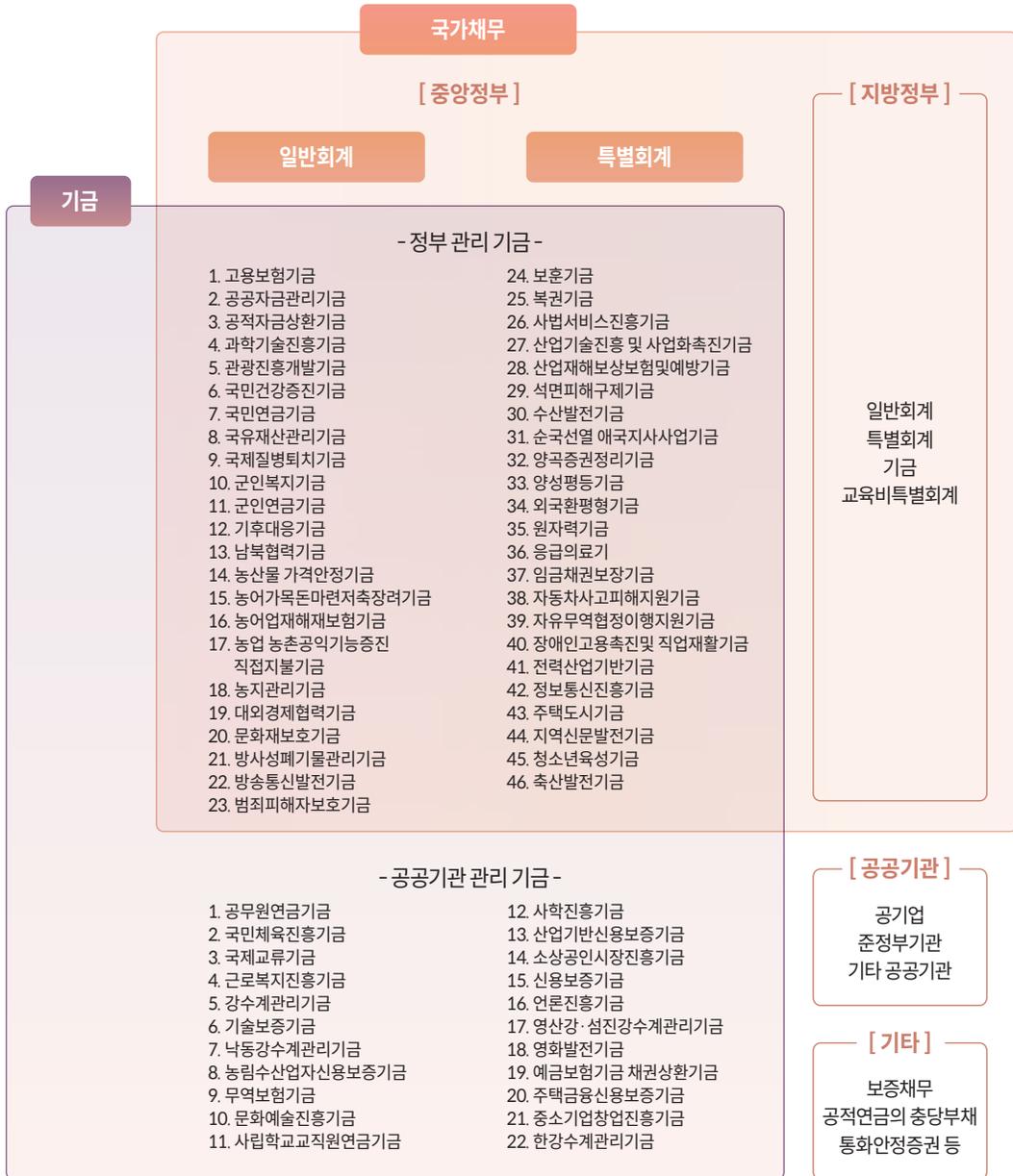
2. 소수점 이하는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및 기획재정부, 「2021~2025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1.9.

국가채무는 성질에 따라 대응자산이 없어 향후 조세 등 실질적인 국민의 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는 채무인 적자성 채무와 융자금·외화자산 등과 같이 대응 재산으로 자체상환 할 수 있는 채무인 금융성 채무로 구분할 수 있다.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채무의 64.7%인 696.4조원, 금융성 채무는 35.3%인 379.3조원 규모일 것으로 전망된다. 적자성 채무의 경우 일반회계 적자보전분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2016~2022년 연평균 증가율 15.0%), 금융성 채무는 서민주거 안정용 등 국채의 증가(2016~2022년 연평균 증가율 11.3%)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채무 포괄범위]



자료: 기획재정부

제2장

2022년도 예산 및 기금

제1절 2022년도 예산

1.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총액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총액은 436.4조원으로, 2021년 제2회 추경예산(424.4조원) 대비 12조원 증가(2.8%)하였고, 특별회계는 78.2조원으로 5.0% 감소하였다.

[202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일반회계	3,808,509	4,244,413	4,214,160	4,364,319	119,906	2.8
특별회계	790,292	822,802	762,609	781,531	△41,271	△5.0
- 농어촌구조개선	121,223	153,711	133,503	152,503	△1,208	△0.8
- 교통시설	213,430	211,156	173,458	173,458	△37,698	△17.9
- 등기	3,588	3,588	3,054	3,054	△534	△14.9
- 교도작업	1,384	1,384	1,216	1,216	△168	△12.1
- 에너지및자원사업	55,308	56,254	53,378	53,300	△2,954	△5.3
- 환경개선	74,435	75,485	69,062	69,062	△6,423	△8.5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¹⁾	25,541	25,541	24,830	24,830	△711	△2.8
- 우체국보험	10,073	10,073	10,284	10,284	211	2.1
- 주한미군기지이전	7,398	7,398	7,716	7,716	319	4.3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 (A)	본예산	제1회 추경 (B)	B-A	(B-A)/A
- 국방·군사시설이전	10,057	10,057	7,665	7,665	△2,392	△23.8
- 혁신도시건설	3,712	3,712	437	437	△3,276	△88.2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1,442	1,443	1,429	1,429	△14	△1.0
- 국가균형발전	106,230	106,530	114,087	114,087	7,556	7.1
- 유아교육지원	39,168	39,168	38,290	38,290	△877	△2.2
- 양곡관리	20,573	20,573	22,428	22,428	1,855	9.0
- 책임운영기관	10,686	10,686	12,259	12,259	1,573	14.7
- 조달	4,643	4,643	4,930	4,930	287	6.2
- 우편사업	45,372	45,372	46,448	46,448	1,076	2.4
- 우체국예금	31,667	31,667	34,081	34,081	2,414	7.6

주: 1) 2020년도부터 신설

1. 총계 기준

2.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국회, 연도별 예산

계속비

계속비란 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하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예산을 말한다(「국가재정법」 제23조제1항).

2022년의 경우 계속비는 편성되지 않았다. 참고로, 2021년의 경우에는 지역간선국도8차건설, 익산-대야복선전철, 군장산단인입철도건설 등 3개 사업이 계속비로 편성된 바(계속비 총액 2조 4,833억원, 연부액은 1,048억원) 있었다.

[2022년도 계속비]

(단위: 억원)

구분	계속비 총액	계속비 연부액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1 예산	24,833	374	2,300	5,409	5,084	5,059	2,437	2,158	965	1,048	-
2022 예산	-	-	-	-	-	-	-	-	-	-	-

주: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국고채무부담행위 및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국고채무부담행위란 당해연도 예산확보 없이 국가가 채무를 지는 행위를 의미하며, 그 목적에 따라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사전에 사업과 금액을 특정하여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고, 후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한도액 내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25조).

2022년의 일반적인 국고채무부담행위 금액은 편성되지 않았고,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은 1조 5,000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국고채무부담행위와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증감 (B-A)
	2021		2022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국고채무부담행위	0	0	0	0	0
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한도액	15,000	15,000	15,000	15,000	0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국가는 국고금의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 발행 등을 통하여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1항).

2022년도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통합계정(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 우체국보험·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 국유재산관리기금 0.2조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다.

[2022년도 재정증권 최고한도액]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통합계정	400,000	400,000	400,000	400,000	0	0.0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	20,000	20,000	20,000	0	0.0
공공자금관리기금	80,000	80,000	80,000	80,000	0	0.0
국유재산관리기금	2,000	2,000	2,000	2,000	0	0.0

주: 통합계정은 일반회계 및 17개 특별회계 적용(우체국보험 우체국예금-양곡관리특별회계는 제외)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차입금·국채발행한도액

국가의 세출은 국채·차입금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18조).

2022년도 중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액면가 기준)은 1차 추가경정예산 기준 주택도시기금 18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178.8조원, 외국환평형기금 10억달러이다. 다만,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한도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도 차입금·국채발행한도액]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주택도시기금	160,000	160,000	180,000	180,000	20,000	12.5
공공자금관리기금	1,775,000	1,875,000	1,675,000	1,788,000	△87,000	△4.6
외국환평형기금	15억달러	15억달러	10억달러	10억달러	△5억달러	△33.3

주: 외국환평형기금은 미합중국화폐 기준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이용(移用)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기관 간 또는 장·관·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국가재정법」 제47조제1항).

2022년 이용이 가능한 경비 또는 비목은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등 11가지 항목이 있다. 이외에 방위사업청 소관 지휘정찰사업·기동화력사업·함정사업·항공기사업·유도무기사업은 긴급 소요, 정산결과 증액 등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사정변경이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상호 간 이용할 수 있는데, 다만 연구개발 관련사항은 이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2년도 이용가능 경비 또는 비목]

연 번	주요 내용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식비, 임차료
3	배상금, 국선번호금, 법정보상금, 법정포상금(민간)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¹⁾ 경비
5	국제부담금,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국제유가 변동으로 인한 군 및 해양경찰의 유류경비 부족액
7	기업특별회계의 양곡관리비용,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우편운송료
8	재해대책비(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9	반환금
10	선거 및 국민투표 관련경비
11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기초연금급여, 장애인연금급여

주: 1) 이자지출은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른 조달자금에 대한 이자지출 포함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정부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는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증가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하 초과수입)을 그 초과수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제1항). 다만, 이러한 특별회계 중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경우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022년의 경우 「정부기업예산법」 제19조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

[2022년도 수입금 마련 지출 범위]

회계	수입	지출
우체국예금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급이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험보상금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예비비

예비비는 정부가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 이내에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반예비비와 예산총칙에 미리 사용목적 을 지정하여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하는 목적예비비로 구성된다(「국가재정법」 제22조제1 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예비비는 모두 4.5조원인데, 이 중 일반예비비 1.8조원 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산총액 436.4조원의 0.43%를 차지한다. 일반예비비는 1.8조원으로 전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비하여 2천억원 증액, 목적예비비는 2.7조원으로 전년도 추 가경정예산에 비하여 5.4조원 감액되었다.

[2022년도 예비비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예비비	86,000	97,000	50,000	45,000	△52,000	△53.6
- 일반예비비	16,000	16,000	29,000	18,000	2,000	12.5
- 목적예비비	70,000	81,000	21,000	27,000	△54,000	△66.7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2022년도 예산의 목적예비비는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 방·대책비 포함),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 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국제부담금 이외에는 지 출할 수 없다. 이는 전년도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목적예비비 용도 중에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과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용도가 삭제되고 '감염병 피해지원,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용도가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으로 변경된 것이다.

[2022년도 목적예비비 규모 및 용도]

구분	2021 추경	2022 본예산 및 2022 추경
규모	8.1조원	2.7조원
용도	「예산총칙」 제12조 •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에 따른 지역혁신성장사업 및 지역전략산업 재정지원 • 감염병 피해지원 •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및 업종에 대한 재정지원 • 국내 산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출규제 및 국제 통상마찰에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긴급한 재정지원 • 국제부담금	「예산총칙」 제12조 •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및 전염병 예방·대책비 포함) • 인건비(국민건강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경비 • 법적 의무지출의 전년도 미지급금 및 당해연도 지급 부족액(단,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에 한함) • (삭제) • 감염병에 따른 방역 및 손실보상 등 피해지원 • (삭제) • (삭제) • 국제부담금
예외	•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 각종 선거 및 국민투표 경비에 따른 예비비 지출은 예비비 용도 제한을 받지 않음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전입금

기업특별회계는 기업형태로 운영되는 정부사업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양곡관리특별회계, 조달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등 5개가 있다(「정부기업예산법」 제2조·제3조,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특별회계와 다른 회계 및 기금 간의 전입·전출은 예산총칙에 반영하여야 하는데(「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여기에는 결산의 결과 생긴 적립금 및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경우도 포함된다(같은 법 제21조 단서).

2022년도 예산 중에서 「정부기업예산법」 제14조 및 제21조 단서에 따른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에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181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억원,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606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1,055억원 등이 포함된다.

[2022년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편사업특별회계 전출금	6,972	6,972	7,181	7,181	209	3.0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공적자금상환기금 전출금	780	780	780	780	0	0.0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959	959	606	606	△353	△36.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출금	571	571	1,055	1,055	484	84.8

주: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정부기업예산법」제14조에 따른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1조 7,734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이 2,796억원이며, 우편사업특별회계는 일반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는데, 각각 123억원, 4,770억원, 7,181억원이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는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부터 전입금을 받으며 금액은 661억원이다.

[2022년도 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6,154	16,154	17,734	17,734	1,580	9.8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904	2,904	2,796	2,796	△108	△3.7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4,336	4,336	4,770	4,770	434	10.0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전입금	6,972	6,972	7,181	7,181	209	3.0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772	772	661	661	△111	△14.4
조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0	0	0	0	0	-

주: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따라 원자로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손해에 대비하여 민간보험사와는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정부와는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을 각각 체결해야 한다.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이란 원자력사업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생겼을 때 민간 책임보험이 담보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정상운전 중의 손해, 중대한 환경손상, 소멸시효가 도과한 손해 등)를 원자력사업자가 배상함으로써 생기는 손실을 정부가 보상할 것을 약정하고, 원자력사업자는 정부에 보상료를 납입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한다.

보상계약에 관한 내용은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로 따로 정하고 있는데, 동 법은 정부와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하는 보상계약금액 합계액 한도에 대해 매년 국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동 법 제10조).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 한도는 2조 9,600억원이며, 보상금의 지급 한도는 원자력사업자가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한 지급 받은 보험금을 공제한 금액 이내로 한다.

[2022년도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금액 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한국수력 원자력(주)	한국원자력 연구원	한국원자력 환경공단	한전원자력 연료	경희대학교 ¹⁾	계
2021년	3,030,374	7,020	2,020	260	20	3,039,694
2022년	2,950,886	7,020	2,020	60	20	2,960,006

주: 1) 경희대학교 연구용 원자로 관련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초과집행

2022년 예산총칙 제18조는 ‘민간투자사업의 토지보상비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토지보상비 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동 조항에 근거하여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동 제도는 예산으로 지급하기로 한 보상비에 대하여 민자사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보상자금을 대출받아 주무관청을 대신하여 보상비를 우선 지급하고 주무관청은 준공 이전에 예산을 확보하여 보상원금 및 이자를 상환하는 제도이다.

민간의 자본과 효율성을 공공부문에 도입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민간투자사업은 사업시행자와의 협약에 따라 토지보상비를 국가가 부담하고 있으므로, 당해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그 한도 내에서 집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은 정부가 토지보상비를 투입하여 토지 매입이 완료되면 사업시행자가 공사를 추진하게 되므로 토지보상비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되지 못하여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사업 보상자금 선투입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2. 세입예산

총계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예산 총액은 2021년 추경 대비 5조 3,032억원(1.0%)이 증가한 512조 247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35조 7,638억원으로 전년 대비 11조 3,225억원(2.7%)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6조 2,609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 193억원(7.3%) 감소하였다.

[2022년도 세입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총계	4,598,801	5,067,215	4,976,769	5,120,247	53,032	1.0
- 일반회계	3,808,509	4,244,413	4,214,160	4,357,638	113,225	2.7
• 국세	2,740,226	3,046,421	3,329,663	3,329,663	283,242	9.3
• 세외수입	1,068,283	1,197,992	884,497	1,027,975	△170,017	△14.2
- 특별회계	790,292	822,802	762,609	762,609	△60,193	△7.3
• 국세	87,199	96,395	104,176	104,176	7,781	8.1
• 세외수입	703,093	726,407	658,433	658,433	△67,974	△9.4

주: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세수입

2022년도 제1회 추경 국세수입 예산은 2021년 추경 대비 29조 1,023억원(9.3%) 증가한 343조 3,839억원이다. 내국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관세, 교육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구성된 일반회계 국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28조 3,242억원(9.3%) 증가한 332조 9,663억원이다. 주세와 농어촌특별세로 구성된 특별회계 국세수입 예산은 전년 대비 2조 5,828억원(33.0%) 증가한 10조 4,176억원이다.

[2022년도 국세수입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총국세	2,827,425	3,142,816	3,433,839	3,433,839	291,023	9.3
- 일반회계	2,740,226	3,046,421	3,329,663	3,329,663	283,242	9.3
• 내국세	2,395,647	2,701,842	2,961,270	2,961,270	259,428	9.6
• 교통·에너지·환경세	156,903	156,903	153,805	153,805	△3,098	△2.0
• 관세	83,472	83,472	87,351	87,351	3,879	4.6
• 교육세	53,066	53,066	53,409	53,409	343	0.6
• 종합부동산세	51,138	51,138	73,828	73,828	22,690	44.4
- 특별회계	87,199	78,348	104,176	104,176	25,828	33.0
• 주세	32,492	31,637	37,374	37,374	5,737	18.1
• 농어촌특별세	54,707	46,711	66,802	66,802	20,091	43.0

주: 일반회계 내국세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으로 구성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세외수입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외수입 예산은 2021년 추경 대비 21조 2,388억원(11.0%) 감소한 171조 2,011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외수입이 103조 4,656억원, 특별회계 세외수입이 67조 7,355억원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6조 3,336억원(13.6%) 감소하였고, 특별회계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4조 9,052억원(6.8%) 감소하였다.

[2022년도 세외수입 예산 내역]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증 감	
	본예산	제2회 추경 (A)	본예산	제1회 추경 (B)	B-A	(B-A)/A
세외수입	1,771,376	1,924,399	1,542,930	1,712,011	△212,388	△11.0
- 일반회계	1,068,283	1,197,992	884,497	1,034,656	△163,336	△13.6
• 재산수입	53,041	61,200	50,950	50,950	△10,250	△16.7
• 경상이전수입	63,479	63,479	56,851	56,851	△6,628	△10.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8,387	8,387	7,965	7,965	△422	△5.0
• 수입대체경비수입	2,883	2,883	2,494	2,494	△389	△13.5
• 관유물매각대	1,123	1,123	1,213	1,213	90	8.0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2.91	3.0	2.98	2.98	△0.02	△0.7
• 차입금및여유자금회수	0	0	0	0	0	-
• 전년도이월금	0	0	0	0	0	-
• 세계잉여금	0	16,924	0	0	△16,924	△100.0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939,367	1,043,993	765,021	915,180	△128,813	△12.3
- 특별회계	703,093	726,407	658,433	677,355	△49,052	△6.8
• 기업특별회계영업수입	63,736	63,736	67,385	67,385	3,649	5.7
• 재산수입	7,708	3,808	2,770	2,770	△1,038	△27.3
• 경상이전수입	49,979	49,979	38,800	38,800	△11,179	△22.4
• 재화및용역판매수입	17,348	17,348	15,839	15,839	△1,509	△8.7
• 수입대체경비수입	128	1091	32	32	△1,059	△97.1
• 관유물매각대	8,857	8,857	7,084	7,084	△1,773	△20.0
• 용자및전대차관원금회수	12,076	12,076	9,339	9,339	△2,737	△22.7
• 전년도이월금	0	0	0	0	0	-
• 세계잉여금	7,329	32,243	5,543	28,543	△3,700	△11.5
• 정부내부수입및기타	535,933	537,269	511,641	507,563	△29,706	△5.5

주: 총계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3. 세출예산

총계

2022년도 제1차 추경 세출예산 총액은 2021년 추경 대비 41조 1,961억원(8.7%) 증가한 514조 5,850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6조 4,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44조 3,026억원(11.3%)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8조 1,531억원으로 전년 대비 3조 1,065억원(3.8%) 감소하였다.

[2022년도 세출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B-A	(B-A)/A
총계	4,598,801	4,733,889	4,976,769	5,145,850	411,961	8.7
- 일반회계	3,808,509	3,921,293	4,214,160	4,364,319	443,026	11.3
- 특별회계	790,292	812,596	762,609	781,531	△31,065	△3.8

주: 1. 총계 기준

2.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회계별 세출예산

2022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0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5년간의 세출예산 추이를 보면 일반회계는 2018년에서 2022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2021년까지 증가하다가 2022년에는 2021년 대비 4조 1,271억원(5.0%) 감소하였다.

[회계별 세출예산 추이]

(단위: 억원)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일반회계	3,039,658	3,346,598	3,891,191	4,244,413	4,364,319
특별회계	673,014	694,457	708,444	822,802	781,531
- 농어촌구조개선	105,856	121,550	121,616	153,711	152,503
- 교통시설	182,470	157,870	159,085	211,156	173,458
- 등기	3,643	3,147	3,325	3,588	3,054
- 교도작업	1,299	1,268	1,272	1,384	1,216
- 에너지및자원사업	54,172	60,414	55,859	56,254	53,300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 환경개선	47,940	58,075	65,231	75,485	69,062
-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¹⁾	0	0	20,745	25,541	24,830
- 우체국보험	9,922	9,887	9,966	10,073	10,284
- 주한미군기지이전	5,641	4,933	6,997	7,398	7,716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	2,909	2,997	3,205	4,361	4,054
- 국방·군사시설이전	5,674	7,921	9,266	10,057	7,665
- 혁신도시건설	2,553	2,646	3,423	3,712	43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718	804.76	1,072	1,443	1,429
- 국가균형발전 ²⁾	99,694	109,094	94,343	106,530	114,087
- 유아교육지원	38,927	38,153	39,900	39,168	38,290
- 양곡관리	17,583	20,748	20,801	20,573	22,428
- 책임운영기관	11,041	10,856	10,763	10,686	12,259
- 조달	3,420	3,966	4,543	4,643	4,930
- 우편사업	46,769	49,198	46,381	45,372	46,448
- 우체국예금	32,783	30,929	30,652	31,667	34,081
합계	3,712,672	4,041,056	4,599,635	5,067,215	5,145,850

주: 1) 2020년도부터 신설

2) 2018년 '지역발전특별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명칭 변경

1. 각 연도 예산(추경) 기준, 2022년은 제1회 추경 기준

2.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4. 명시이월비

명시이월비는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될 때, 그 취지와 항목, 금액을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는 예산이다. 각 중앙관서의 장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장관은 해당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국가재정법」 제24조).

명시이월비는 과거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의 도입 지연 등으로 인해 국방부, 방위사업청의 사업에서 주로 편성되었으나, 2015년부터는 편성되지 않고 있다.

[2022년도 명시이월비]

(단위: 억원)

구분	금액				증감 (B-A)
	2021		2022		
	본예산	제2회 추경(A)	본예산	제1회 추경(B)	
명시이월비	-	-	-	-	-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 2021.12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022.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예산」, 2020.12.
 대한민국국회,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21.7.

제2절 2022년도 기금

1. 기금운용규모

2022년 기금 수는 총 68개로, 사업성기금 49개, 사회보험성기금 6개, 계정성기금 5개, 금융성기금 8개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 기준 기금의 총 운용규모는 787.9조원으로 2021년도 수정계획 대비 22.7조원(2.8%) 감소하였다. 수입은 자체수입 195.9조원, 정부내부수입 188.3조원, 차입금 200.7조원, 여유자금회수 등 203.0조원으로 구성된다. 지출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198.8조원, 정부내부지출 등 364.0조원, 여유자금운용 225.1조원 규모이다.

[2022년도 기금운용규모]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운용규모	773.7	810.6	756.3	787.9	△22.7	△2.8	
수입	자체수입	182.2	182.6	195.9	195.9	13.3	7.3
	정부내부수입	184.6	210.5	173.2	188.3	△22.2	△10.6
	차입금	198.9	209.5	189.4	200.7	△8.8	△4.2
	여유자금회수 등	208.0	208.0	197.9	203.0	△5.0	△2.4
지출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	172.4	199.8	183.8	198.8	△1.1	△0.5
	정부내부지출 등	371.7	387.2	347.1	364.0	△23.2	△6.0
	여유자금운용	229.5	223.6	225.4	225.1	1.6	0.7

주: 1.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2. 2021년 수정: 2021년 결산 시 확정되는 수치로, 2022년 1월 집계 기준으로 기입함
 3. 2022년 수정: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지출유형별 기금지출 추이]

(단위: 조원)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기금운용규모	497.5	515.4	504.7	620.0	615.3	594.9	633.2	724.8	773.7	756.3
- 사업비	114.4	120.7	128.7	135.5	138.2	143.5	129.3	148.9	169.8	181.1
- 기금운영비	2.1	2.1	2.2	2.3	2.3	2.4	2.5	2.6	2.6	2.7
- 정부내부지출 등	209.2	214.5	200.1	278.6	269.6	223.4	271.2	334.9	371.7	347.1
- 여유자금운용	171.8	178.1	173.8	203.6	205.2	225.6	230.2	238.4	229.5	225.4

주: 1. 당초계획액 기준
 2. 사업비는 차입금이자상환을 포함함
 3. 항목별 합계 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2. 기금별 운용규모

2022년 각 소관부처별 기금의 운용규모 현황은 다음과 같다.

[기금별 운용규모 현황]

(단위: 억원, %)

소관부처	기금명	2021 (A)	2022 (B)	증 감	
				B-A	(B-A)/A
고용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224,348	227,049	2,701	1.2
	근로복지진흥기금	5,104	4,334	△769	△15.1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81,964	181,407	△557	△0.3
	임금채권보장기금	10,083	9,646	△437	△4.3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6,772	18,746	1,974	11.8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진흥기금	3,068	1,903	△1,165	△38.0
	방송통신발전기금 ¹⁾	14,418	13,910	△509	△3.5
	원자력기금 ²⁾	4,911	4,994	83	1.7
	정보통신진흥기금	16,185	19,350	3,165	19.6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130,135	132,940	2,805	2.2
	사학진흥기금	4,703	3,682	△1,022	△21.7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8,360	6,823	△1,537	△18.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613	1,378	△235	△14.6
국방부	군인복지기금	8,383	10,203	1,820	21.7
	군인연금기금	36,074	37,212	1,138	3.2

소관부처	기금명	2021 (A)	2022 (B)	증 감	
				B-A	(B-A)/A
국토교통부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607	2,642	35	1.3
	주택도시기금	824,862	928,443	103,581	12.6
금융위원회	공적자금상환기금	61,424	51,370	△10,053	△16.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499	22,029	1,530	7.5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84	557	△127	△18.6
	신용보증기금	95,862	120,881	25,019	26.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30,529	31,970	1,441	4.7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4,957	42,100	△2,857	△6.4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2,633,324	2,433,424	△199,900	△7.6
	국유재산관리기금	16,664	19,375	2,711	16.3
	기후대응기금	0	24,594	24,594	순증
	대외경제협력기금	13,668	14,502	834	6.1
	복권기금	64,760	77,564	12,804	19.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6,464	6,917	453	7.0
농림축산 식품부	외국환평형기금	1,054,039	865,773	△188,266	△17.9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6,051	25,842	△210	△0.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279	1,450	△3,828	△72.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4,172	24,222	50	0.2
	농지관리기금	28,507	32,784	4,277	15.0
농림축산 식품부	양곡증권정리기금	2,225	7,271	5,046	226.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512	4,721	△791	△14.4
대법원	축산발전기금	10,354	10,445	92	0.9
대법원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453	1,826	373	25.7
문화재청	문화재보호기금	1,419	1,551	132	9.3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기금	16,625	18,734	2,109	12.7
	국민체육진흥기금	26,839	28,102	1,263	4.7
	문화예술진흥기금	5,239	5,240	1	0.0
	언론진흥기금	340	382	41	12.1
	영화발전기금	3,052	2,004	△1,048	△34.3
	지역신문발전기금	100	95	△4	△4.4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100	1,001	△99	△9.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43,629	44,572	942	2.2
	국민연금기금	1,337,688	1,307,422	△30,266	△2.3
	응급의료기금	3,079	4,639	1,560	50.7

소관부처	기금명	2021 (A)	2022 (B)	증 감	
				B-A	(B-A)/A
산업통상 자원부	무역보험기금	46,146	44,227	△1,919	△4.2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812	72,118	7,306	11.3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2,652	1,770	△882	△33.3
	전력산업기반기금	63,940	62,324	△1,617	△2.5
여성가족부	양성평등기금	5,191	6,682	1,491	28.7
	청소년육성기금	1,690	1,751	61	3.6
외교부	국제교류기금	1,697	2,205	509	30.0
	국제질병퇴치기금	651	921	269	41.3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기금	240,614	267,951	27,337	11.4
중소벤처 기업부	기술보증기금	29,106	33,481	4,375	15.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56,218	97,649	41,432	73.7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105,728	96,618	△9,111	△8.6
통일부	남북협력기금	16,756	15,571	△1,185	△7.1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10,249	9,267	△982	△9.6
환경부	금강수계관리기금	1,566	1,738	173	11.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641	2,535	△106	△4.0
	석면피해구제기금	391	321	△70	△17.9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176	1,421	245	20.8
	한강수계관리기금	6,589	6,763	174	2.6
합 계		7,736,941	7,563,337	△173,605	△2.2

주: 1)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관리하고 있으나 총괄 집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음

2)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원자력연구개발계정을 각각 관리하고 있으나, 총괄집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하고 있음

1. 당초계획액 기준

2. 항목별 합계 및 차감금액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상이할 수 있음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3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에 따라 2022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BTL; Build-Transfer-Lease)의 총한도액(1조 256억원), 대상시설별 한도액 및 예비한도액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철도시설에 대한 국가사업과 교육시설 및 공공보건의료시설에 대한 국고보조지자체사업을 추가하는 등의 결정을 통해 총한도액을 2조 4,354억원으로 최종 의결하였다.

1. 총한도액 및 대상시설별 한도액

2022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총한도액은 2조 4,354억원으로, 2021년도의 2조 3,096억원에 비해 5.4% 증가한 규모이다. 이 중 국가사업의 한도액은 1조 1,106억원, 국고에서 보조하는 지방자치단체사업의 한도액은 1조 2,089억원이며,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한도액은 1,159억원이다.²⁾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단위: 억원, %)

구분	2021 (A)	2022 (B)	증 감	
			B-A	(B-A)/A
총한도액	23,096	24,354	1,258	5.4
- 국가사업	11,077	11,106	29	0.3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0,919	12,089	1,170	10.7
- 예비한도액	1,100	1,159	59	5.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2020.9.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021.12.

정부가 2022년도에 실시할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상시설별 한도액을 살펴보면, 국가사업은 14개 대학시설 사업에 5,415억원, 1개 국방시설 사업에 745억원, 1개 보육시설 사업에 469억원, 1개

2) 국가사업 한도액 1조 1,106억원과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 한도액 1조 2,089억원의 합계액 2조 3,195억원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설정한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7조의2(민간투자사업의 총한도액 등 국회 의결) ②제1항에 따른 예비한도액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한도액 합계액의 100분의 20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철도시설 사업에 4,477억원이 계획되어 있다.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은 2개 완충저류시설 사업에 3,360억원, 1개 하수관거시설 사업에 371억원, 17개 교육시설 사업에 7,578억원, 1개 공공보건 의료시설 사업에 780억원이 설정되어 있다.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대상시설별 한도액]

(단위: 억원, %)

구분	대상시설	2021 (A)	2022 (B)	증감	
				B-A	(B-A)/A
국가사업	대학시설	3,637	5,415	1,778	48.9
	국방시설	6,399	745	△5,654	△88.4
	문화시설	1,040	0	△1,040	순감
	보육시설	0	469	469	순증
	철도시설	0	4,477	4,477	순증
	소계	11,077	11,106	29	0.3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완충저류시설	0	3,360	3,360	순증
	하수관거시설	0	371	371	순증
	교육시설	10,919	7,578	△3,341	△30.6
	공공보건의료시설	0	780	780	순증
	소계	10,919	12,089	1,170	10.7
예비한도액		1,100	1,159	59	5.4
합계		23,096	24,354	1,258	5.4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1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2020.9.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 2021.12.

2. 정부지급금 추계

정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라 임대형 민자사업의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에 대한 정부지급금 규모를 전망한 추계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9조의2에 따라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계서에 따르면, 2021년 5월 31일을 기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5조에 따라 주무관청으로부터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2021년부터 2030년까지 지급할 정부지급금 규모는 16조 2,926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고에서 지급되는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국가사업	10,458	11,079	13,305	13,262	13,238	13,263	13,280	13,241	13,001	12,783	126,911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3,653	3,633	3,631	3,650	3,650	3,650	3,650	3,648	3,623	3,232	36,016
합계	14,111	14,713	16,936	16,911	16,887	16,913	16,930	16,888	16,624	16,014	162,926

주: 1.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집계(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지급금 제외)

2. 2021년 5월말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BTL 사업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30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21.9.

이를 주무부처별로 살펴보면 국방부 5조 6,102억원, 국토교통부 4조 5,456억원, 환경부 3조 3,266억원 등 3개 부처가 전체 정부지급금의 82.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무부처별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추계]

(단위: 억원)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977	976	1,051	1,052	1,054	1,056	1,058	1,060	1,062	893	10,239
교육부	727	744	765	765	765	765	766	745	479	436	6,957
국방부	5,614	5,752	5,755	5,609	5,564	5,570	5,566	5,567	5,572	5,532	56,102
산업통상 자원부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	490
보건복지부	217	216	216	217	217	217	217	218	218	218	2,170
환경부	3,376	3,357	3,354	3,373	3,373	3,373	3,373	3,371	3,346	2,970	33,266
고용노동부	302	334	383	406	408	409	411	373	374	375	3,775
여성가족부	75	75	75	75	75	76	76	76	76	76	755
국토교통부	2,456	2,859	4,910	4,987	5,002	5,017	5,032	5,047	5,065	5,081	45,456
해양수산부	149	142	148	149	149	149	150	150	150	151	1,487
경찰청	117	157	177	177	178	179	179	179	179	179	1,701
질병관리청	52	52	52	52	53	53	53	54	54	54	529
합계	14,111	14,713	16,936	16,911	16,887	16,913	16,930	16,888	16,624	16,014	162,926

주: 1. 국고에서 지급되는 정부지급금만을 대상으로 집계(지자체가 부담하는 정부지급금 제외)

2. 2020년 5월말 기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BTL 사업 대상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30년 재정 관련 자료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추계서」, 2021.9.

참고로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과 관련하여 2020년 국고 및 지방비로 지급한 정부지급금은 국고 1조 3,154억원, 지방비 1조 1,173억원 등 2조 4,505억원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정부지급금 지급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국고	1,299	3,468	5,204	1,291	3,131	5,928	7,969	9,984	11,336	11,104	11,861	12,822	13,800	13,154
지방비				7,222	9,096	10,177	11,308	12,042	12,132	12,114	12,094	12,387	12,062	11,173
합계	1,299	3,468	5,204	8,513	12,227	16,105	19,277	22,026	23,468	23,218	23,955	25,209	25,862	24,505

주: 1. 작성대상: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대상(지자체 자체사업 제외)

2. 2007~2009년은 국고 및 지방비 개별 통계 미확보

자료: 기획재정부

제4절 국가보증채무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정부는 「대한민국헌법」 제58조 및 「국가재정법」 제92조에 따라 2022년도에 새로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 및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의 국가보증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1. 2022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국가보증채무란 정부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을 보증한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정부가 채무를 보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헌법」 제58조³⁾와 「국가재정법」 제92조⁴⁾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021년도를 기준으로 국가보증채무의 종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한국장학재단채권,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등 3개이다. 이 중 2021년 국회의 동의를 거친 국가보증채무는 한국장학재단채권 1조 3,000억원,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10조원 등 2개⁵⁾이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한국장학재단이 매년 학자금대출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채권이다. 2022년에는 학자금 대출 회수액 2.0조원과 학자금대출 및 만기도래하는 채권

3) 「대한민국헌법」

제58조 국채를 모집하거나 예산외에 국가의 부담이 될 계약을 체결하려 할 때에는 정부는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4) 「국가재정법」

제92조(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5)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은 2002년 말 「공적자금 상환대책」에 따라 예금보험공사의 공적자금 부채를 상환하는 과정에서, 수입액(금융권 특별기여금 및 자산매각을 통한 회수금)이 지출액(채권 원리금)에 미치지 못함에 따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04년부터 발행한 차환채권을 말한다. 정부는 2022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의 수입액이 지출을 초과하여 신규채권을 발행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하였다.

상환액 등 지출 3.3조원의 차액에 해당하는 1.3조원 규모의 채권 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은 한국산업은행이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기간산업안정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기간산업안정기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경제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경제상황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한 기업 경영상 어려움 극복 및 고용안정 등을 위해 2020년 4월 29일 「한국산업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신설되었다. 지원대상은 9대 기간산업⁶⁾을 중심으로 하되, 국민경제, 고용안정 및 국가안보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자금지원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장의 의견 및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통해 추가될 수 있다. 또한 동 기금의 지원 시,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기업의 경영자율성을 보장하되, 고용안정 및 정상화이익 공유 조건 등을 부과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10조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발행계획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정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2022년도 신규 발행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1 (A)	2022 (B)	증 감	
			B-A	(B-A)/A
한국장학재단채권	15,000	13,000	△2,000	△13.3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400,000	100,000	△300,000	△75.0

주: 발행 채권의 보증한도를 의미함

자료: 각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2. 국가보증채무 증감 추이

국가보증채무(보증잔액 기준)는 금융구조조정을 위한 공적자금 조성 등으로 인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였으나,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이다. 이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및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 등의 상황에 따라 2008년 GDP대비 2.5%까지 감소하였다.

2009년 이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구조조정기금채권발행⁷⁾, 학자금 마련을 위한 장학재단채권 발행 등으로 2010년 GDP 대비 2.8%까지 상승하였으나,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6) 9대 기간산업은 항공, 해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정유, 항공제조, 석유화학 등 9개 산업이다.

7) 구조조정기금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회사가 보유하는 기업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의 자산정리를 위해 한국자산공사에 설치(2009.6.13)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었다.

및 구조조정기금채권의 상환 등에 따라 2020년 보증채무 규모는 12.5조원으로 전년보다 2.3조 원 감소하였으며, GDP 대비 0.7% 수준이다.

[국가보증채무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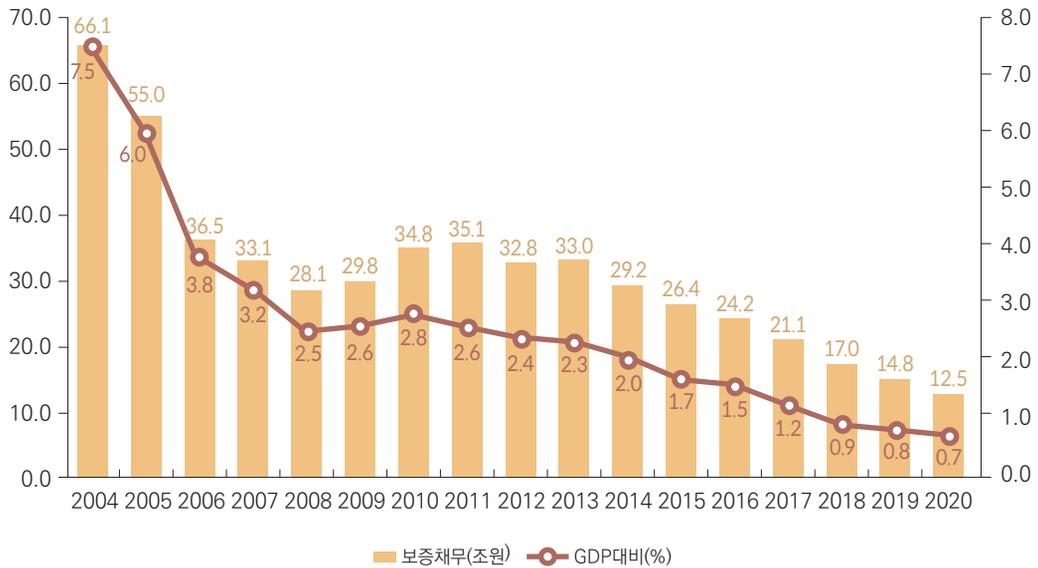
(단위: 조원,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보증채무 (GDP 대비 %)	24.2 (1.5)	21.1 (1.2)	17.0 (0.9)	14.8 (0.8)	12.5 (0.7)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12.6	9.7	5.9	3.9	1.5
한국장학재단채권	11.7	11.4	11.1	10.9	10.5
수리자금	0.03	0.02	0.01	-	-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	-	-	-	0.5

주: 보증잔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 2022.1.

[연도별 보증채무 추이]



주: 보증잔액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월간재정동향 및 이슈」, 2022.1.

3. 국가보증채무 전망

국가보증채무 규모(보증잔액 기준)는 2021년 11.3조원(GDP 대비 0.6%)에서 2022년 19.4조원(GDP 대비 0.9%)로 증가하였다가 2025년 9.7조원(GDP 대비 0.4%)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이 2021년 1조원에서 2022년 9.7조원으로 증가한 후, 기업의 정상화에 따른 자금회수를 통해 2025년 전액 회수할 전망이다. 한국장학재단채권은 신규 학자금 대출 대비 채권 회수 증가에 따라 보증 잔액이 소폭 감소(2021년 11.3조원 → 2025년 9.7조원)할 전망이다.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른 2021~2025년 보증채무 전망]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2023	2024	2025
보증채무 (GDP 대비 %)	11.3 (0.6)	19.4 (0.9)	16.7 (0.8)	13.6 (0.6)	9.7 (0.4)
한국장학재단채권	10.3	10.0	9.9	9.8	9.7
기간산업안정기금채권	1.0	9.7	6.8	3.8	-

주: 2021~202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GDP 전망 반영

자료: 기획재정부, 「2021~2025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021.9

제5절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

정부는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고, 국회는 이를 심의하여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다.

1.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무역보험은 우리 기업이 대외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수출대금 또는 선지급 수입대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수출입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수출활력을 제고하고, 중장기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와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WTO체제 아래에서도 용인되고 있는 대외거래의 지원수단으로 1920년대부터 도입되어 73개국 84개 기관에서 운영 중이다.

우리나라는 1968년 12월 「무역보험법」 제정 후 대한재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등에서 무역보험을 운영하여 왔으나, 1992년 7월 무역보험 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2010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사명 변경)를 설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운영 중에 있는 무역보험 종목으로는 증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이자율변동보험, 단기수출보험, 수출신용보증, 수출보증보험, 수입보험, 해외투자보험, 수출기반보험, 서비스종합보험, 해외공사보험, 부품소재신뢰성보험 등 총 12개이다.

「무역보험법」 제8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매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정하고, 이를 국무회의 심의와 국회의 의결을 받고 있다.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는 본한도와 예비한도로 구성되며,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증장기연불(中長期延拂)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도 따로 정하고 있다. 대금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증장기연불에 해당하는 보험은 앞서 살펴본 12개 무역보험 종목 중 증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이자율변동보험이다.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는 2021년과 동일하게 230조원으로 본한도 220조원, 예비한도 10조원이다. 본한도 중 대금결제기간 2년을 초과하는 '증장기연불 수출거래의 계약체결한도'는 17조 8,000억원이고,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는 202조 2,000억원이다.

[2022년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단위: 억원, %)

구분	2021 (A)	2022 (B)	증 감	
			B-A	(B-A)/A
계약체결한도(총액)	2,300,000	2,300,000	0	0.0
• 계약체결한도(본한도)	2,200,000	2,200,000	0	0.0
(증장기연불 수출거래 ¹⁾)	(178,000)	(178,000)	0	0.0
(단기수출 등 기타거래)	(2,022,000)	(2,022,000)	0	0.0
• 계약체결한도(예비한도)	100,000	100,000	0	0.0

주: 1) 증장기수출보험, 해외사업금융보험, 이자율변동보험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1.9.

2.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는 각 보험종목별 예상인수실적이나 향후 수요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산출된 계약체결한도의 합으로 산출되는데, 12개 종목의 각 체결한도는 아래 표와 같다.

[종목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단위: 억원)

종 목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중장기수출보험	139,000	160,000	155,000	113,000	81,000	81,000
해외사업금융보험	53,000	47,000	45,000	65,000	96,000	96,000
이자율변동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단기수출보험	1,848,000	1,831,000	1,833,000	1,860,000	1,873,000	1,873,000
수출신용보증	68,000	68,000	68,000	68,000	67,000	65,000
수출보증보험	42,000	42,000	47,000	42,020	40,000	40,600
수입보험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24,000
해외투자보험	19,000	19,000	19,000	18,900	10,000	10,000
수출기반보험	1,870	5,140	5,120	5,000	5,100	6,500
서비스종합보험	3,100	1,820	1,820	2,020	1,860	1,860
해외공사보험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부품소재신뢰성보험	30	40	60	60	40	40
계약체결한도(본한도)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2,200,000
(중장기연불수출거래)	(193,000)	(208,000)	(201,000)	(179,000)	(178,000)	(178,000)
계약체결한도(예비한도)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계약체결한도(총한도)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2,300,000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1.9.

3.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무역보험 전담기관인 한국수출보험공사(2010년 7월 한국무역보험공사로 사명 변경)가 설립된 1992년부터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를 살펴보면, 1992년 2조 6,000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5년부터 230조원을 유지하고 있다.

[연도별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단위: 억원)

연 도	계약체결한도	연 도	계약체결한도
1992년	26,000	2008년	1,300,000
1993년	36,000	2009년	1,700,000
1994년	58,000	2010년	1,900,000
1995년	110,000	2011년	2,000,000

연도	계약체결한도	연도	계약체결한도
1996년	179,000	2012년	2,070,000
1997년	187,000	2013년	2,200,000
1998년	310,000	2014년	2,250,000
1999년	393,000	2015년	2,300,000
2000년	490,000	2016년	2,300,000
2001년	540,000	2017년	2,300,000
2002년	590,000	2018년	2,300,000
2003년	590,000	2019년	2,300,000
2004년	650,000	2020년	2,300,000
2005년	760,000	2021년	2,300,000
2006년 ¹⁾	840,000	2022년	2,300,000
2007년	930,000		

주: 1) 2006년부터 계약체결한도 산정 시 환변동보험(선물환방식)은 제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2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 2021.9.

제3장 2022년도 예산안 등의 국회심의

제1절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국회 심의

정부는 2021년 9월 3일 총수입 548.8조원, 총지출 604.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BTL)(이하 '예산안 등')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국회는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을 통하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07.7조원 규모의 2022년도 예산 등을 확정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등 국회심의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2021			2022			
	본예산 (A)	제2회 추경 (B)	정부안 (C)	국회확정			
				규모 (D)	정부안 대비 증감액 (D-C)	전년 예산 대비	
					증감액 (D-B)	증가율 (D-B)/B	
총수입	482.6	514.6	548.8	553.6	4.8	39.0	7.6
- 예산	311.6	343.6	365.3	369.5	4.2	25.9	7.5
(국세수입)	282.7	314.3	338.6	343.4	4.8	29.1	9.3
(세외수입)	28.9	29.3	26.7	26.1	△0.6	△3.2	△11.0
- 기금	171.0	171.0	183.5	184.1	0.6	13.1	7.7
총지출	558.0	604.9	604.4	607.7	3.3	2.8	0.5
- 예산	375.0	409.7	409.2	413.0	3.8	3.3	0.8
- 기금	182.9	195.2	195.3	194.6	△0.7	△0.6	△0.3

자료: 기획재정부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1년 9월 6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 등은 11월 3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터 11월 23일(정보위원회)까지 소관 상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제외)에 상정되었다. 이후 소위심사 등을 거쳐 11월 8일(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부터 11월 25일(정보위원회)까지 의결하였으며, 일부 상임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는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였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일정]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국회운영위원회	2021-09-06	2021-11-10	2021-11-16
법제사법위원회	2021-09-06	2021-11-09	2021-11-17
정무위원회	2021-09-06	2021-11-09	2021-11-16
기획재정위원회	2021-09-06	2021-11-08	2021-11-11
교육위원회	2021-09-06	2021-11-09	2021-11-1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021-09-06	2021-11-09	2021-11-11
외교통일위원회	2021-09-06	2021-11-11	2021-11-19
국방위원회	2021-09-06	2021-11-09	2021-11-16
행정안전위원회	2021-09-06	2021-11-10	2021-11-1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1-09-06	2021-11-09	2021-11-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2021-09-06	2021-11-03	2021-11-08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09-06	2021-11-08	2021-11-11
보건복지위원회	2021-09-06	2021-11-11	2021-11-12
환경노동위원회	2021-09-06	2021-11-15	2021-11-18
국토교통위원회	2021-09-06	미상정	미의결
정보위원회 ¹⁾	2021-09-06	2021-11-23	2021-11-25
여성가족위원회	2021-09-06	2021-11-10	미의결

주: 1) 「국회법」 제84조제4항에 따라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봄
 자료: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 및 수입의 경우 2,299억원 증액, 213억원 감액되었으며, 세출 및 지출의 경우 13조 2,517억원 증액, 1조 8,405억원 감액되었다. 세입 및 수입 순증액 규모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1,000억원), 보건복지위원회(+453억원) 순이었으며, 세출 및 지출 순증액 규모는 보건복지위원회(+2조 8,508억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2조 428억원), 행정안전위원회(+1조 5,917억원) 순이었다.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억원)

위원회명		세입 및 수입			세출 및 지출		
		증액	감액	순증	증액	감액	순증
국회운영위원회	예산	1	0	1	151	△10	140
	기금						
법제사법위원회	예산	0	△11	△11	505	△374	131
	기금	0	0	0	22	△2	19
정무위원회	예산	1	0	1	1,907	△434	1,472
	기금	152	0	152	62	0	62
기획재정위원회	예산	0	0	0	123	△202	△79
	기금	0	0	0	556	△154	401
교육위원회	예산	0	0	0	11,727	△1,270	10,458
	기금	0	0	0	302	0	302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예산	0	0	0	2,739	△12	2,727
	기금	0	0	0	1,705	△610	1,095
외교통일위원회	예산	0	0	0	623	△81	542
	기금	0	0	0	265	0	265
국방위원회	예산	0	0	0	2,617	△7,444	△4,827
	기금	630	△200	430	433	△3	430
행정안전위원회	예산	0	△2	△2	16,069	△153	15,917
	기금	0	0	0	0	0	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예산	0	0	0	8,893	△250	8,643
	기금	1,000	0	1,000	3,395	△85	3,310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예산	0	0	0	19,000	△11	18,989
	기금	0	0	0	1,439	0	1,439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	0	0	0	12,085	△1,222	10,863
	기금	0	0	0	9,227	△4,873	4,353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0	0	0	27,216	△198	27,018
	기금	453	0	453	1,490	0	1,490
환경노동위원회	예산	0	0	0	9,067	△926	8,141
	기금	63	0	63	899	△90	809
합계	예산	2	△13	△12	112,722	△12,588	100,135
	기금	2,298	△200	2,098	19,794	△5,818	13,976

- 주: 1. 여성가족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이 미상정 됨
 2. 정보위원회는 심사 결과 미공개
 3. 회계 간 내부거래, 기금 간 내부거래를 각각 제외한 순계 기준이나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는 포함됨
 4.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각 상임위원회 2021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은 국가사업 1조 1,106억원, 국고보조 지자체 사업 1조 2,089억원 및 예비한도액 1,159억원인 총 2조 4,354억원으로 의결되었다.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총한도액]

(단위: 억원, %)

구분	2021(A)	2022(B)	전년 대비	
			증감액(B-A)	증가율(B-A)/A
총한도액	23,096	24,354	1,258	5.4
- 국가사업	11,077	11,106	29	0.3
-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10,919	12,089	1,170	10.7
- 예비한도액	1,100	1,159	59	5.4

자료: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 11월 1일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시작으로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종합정책질의(총 2회, 11.5.~11.8.)와 부별심사(총 4회, 11.9.~11.12.) 및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총 5회, 11.16.~11.20.) 등을 거쳤다. 그러나 심사기한인 11월 30일까지 종합심사를 마치지 못하였다.

3. 본회의 의결

11월 30일까지 위원회 심사를 마치지 못한 예산안 등은 「국회법」 제85조의3⁸⁾에 따라 12월 1일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12월 3일에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본회의에서는 「2022년도 예산안에

8) 「국회법」

제85조의3(예산안등 본회의 자동부의 등) ① 위원회는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이하 "예산안등"이라 한다)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까지 마쳐야 한다.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하여야 하고, 의장은 국회예산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다.

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부수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대한 수정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그리고 「2022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안 및 가결되어 2022년도 예산이 확정되었다.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총수입은 정부안 대비 6조 8,947억원 증액되고, 2조 1,745억원 감액되어 총 4조 7,202억원이 순증되었다. 총지출은 정부안 대비 8조 7,788억원 증액되고, 5조 5,520억원 감액되어, 총 3조 2,268억원 순증되었다.

[2022년도 예산안 등 조정규모: 수정안]

(단위: 백만원)

구분		증액	감액	증감
총수입	예산	6,300,859	△2,174,487	4,126,372
	기금	593,832	-	593,832
	합계	6,894,691	△2,174,487	4,720,204
총지출	예산	6,709,370	△2,853,478	3,855,892
	기금	2,069,432	△2,698,512	△629,080
	합계	8,778,802	△5,551,990	3,226,812

자료: 대한민국국회,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2021.12.

분야별 자원배분의 국회 수정

2022년도 확정예산에서 정부안 대비 증액된 분야는 총 8개 분야로, 일반·지방행정 분야에서 증액폭(+1.3조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반면, 정부안 대비 감액된 분야는 4개 분야로 국방 분야에서 감액폭(△0.6조원)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분야별 자원배분의 변동]

(단위: 조원, %)

분야	2021 제2회 추경(A)	2022		증감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2021대비 (C-A)	(C-A)/A
1. 보건·복지·고용	212.1	216.7	217.7	0.9	5.6	2.6
2. 교육	77.8	83.2	84.2	1.0	6.4	8.2
3. 문화·체육·관광	8.8	8.8	9.1	0.3	0.3	3.3
4. 환경	10.7	11.9	11.9	0.0	1.2	11.3
5. R&D ¹⁾	27.5	29.8	29.8	△0.0	2.3	8.2
6. 산업·중소·에너지	40.1	30.4	31.3	1.0	△8.8	△21.9

분야	2021 제2회 추경(A)	2022		증 감		
		정부안(B)	최종(C)	국회증감 (C-B)	2021대비 (C-A)	(C-A)/A
7. SOC	26.6	27.5	28.0	0.4	1.3	5.1
8. 농림·수산·식품	23.0	23.4	23.7	0.3	0.7	3.0
9. 국방 ²⁾	52.3	55.2	54.6	△0.6	2.3	4.5
10. 외교·통일	5.7	6.0	6.0	△0.1	0.3	4.4
11. 공공질서·안전	22.3	22.4	22.3	△0.1	0.0	0.0
12. 일반·지방행정	99.7	96.8	98.1	1.3	△1.6	△1.6
총지출	604.9	604.4	607.7	3.2	2.8	0.5

주: 1) 각 분야에 포함된 R&D 지출을 합계한 금액

2) 국방 분야 중 국방부, 방위사업청 소관(병무청 제외) 일반회계 총계

1. 12대 분야별 지출액 합계는 총지출과 일치하지 않음

자료: 기획재정부

부대의견

2022년도 예산안 등에 대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채택된 부대의견은 전년도 561건 대비 25건이 감소한 536건이다. 가장 많은 부대의견을 채택한 위원회는 행정안전위원회(95건)이며, 다음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88건), 법제사법위원회(64건) 순이다.

[상임위원회별 부대의견 채택 건수]

(단위: 건)

위원회	건 수	위원회	건 수	위원회	건 수
국회운영위원회	3	기획재정위원회	36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29
법제사법위원회	64	보건복지위원회	17	행정안전위원회	95
정무위원회	32	여성가족위원회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4
국방위원회	28	국토교통위원회	-	교육위원회	30
환경노동위원회	5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8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7
정보위원회	-	외교통일위원회	21	-	-
총 536건					

주: 1. 여성가족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못하였고, 국토교통위원회는 소관 예산안 등이 미상정 됨

2. 정보위원회는 심사 결과 미공개

자료: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국회가 2022년도 예산 등을 확정하면서 첨부한 부대의견은 전년도 47건 대비 2건이 감소한 45건이다. 2015년도를 제외하면 2013년도부터 2018년도까지 부대의견 채택 건수는 매년 전년대비 증가하였으며, 2018년도 이후 부대의견 채택 건수는 매년 감소하였다.

[부대의견 성질별 구분]

(단위: 건)

구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제도개선	23	31	31	32	34	42	17	34	31	37
국회보고	2	3	1	0	5	11	14	8	7	5
집행조건설정	8	11	11	12	12	14	20	6	5	2
집행유보	0	4	3	3	6	7	1	2	4	1
합계	33	49	46	47	57	74	52	50	47	45

주: 1. 제도개선: 정책방향 제시 또는 제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촉구한 내용
 2. 국회보고: 제도개선사항 또는 사업수행 내용에 대한 국회보고를 의무화한 내용
 3. 집행조건설정: 예산 지원 기간,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제시한 내용
 4. 집행유보: 부대의견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예산을 집행하도록 한 내용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2022년도 예산안 의결시 부대의견 (총 45건)

- * 정부는 상반기 조기집행 추진 시 재정 여건, 경제상황 및 실행 가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한다.
- * 정부는 국회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심의를 통해 확정하지 않은 신규사업이 추진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한다.
- * 정부는 신규사업의 경우 기존 예산사업과의 중복성과 조정방안 등을 검토한 후 예산을 요구하도록 예산안 편성지침에 규정한다.
- * 정부는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을 감안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환수기준을 명확히 한다.

(기타 41건은 생략)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주요 증감내역

주요 감액내역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감액내역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개별소비세(△622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조 3,765억원), 교육세(△1,271억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2,954억원),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의 면허료및수수

료(△2억원) 등이다.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은 유류세 한시 인하 및 기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변동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었으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의 법정부담금은 석유제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석유수입부과금의 징수를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국회 주요 감액내역]

(단위: 억원)

부처명	회계·기금	목 명	정부안	감 액	비 고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개별소비세	102,040	△622	유류세 한시 인하 및 기타 세법 개정에 따른 세수변동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감액
		교통·에너지·환경세	167,570	△13,765	
		교육세	54,680	△1,271	
산업통상 자원부	에너지및자원 사업특별회계	법정부담금	19,454	△2,954	석유제품 수입 시 부과되는 석유 수입부과금의 징수를 현실화 등을 고려하여 감액
인사혁신처	일반회계	면허료및수수료	19	△2	공무원 임용시험 등의 수험생 응시료 세입예산의 수납률을 고려하여 감액

자료: 국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내역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증액내역은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주부담금(+2,964억원) 및 피고용자분담금(+2,964억원),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법인세(+1조 1,570억원), 부가가치세(+1조 4,246억원) 등이다. 고용보험기금의 고용주부담금 및 피고용자분담금은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증액되었다. 법인세는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법인세 납기연장을 고려하여 증액되었으며, 부가가치세의 경우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고려하여 증액되었다.

[2022년도 세입예산안 및 수입계획안 국회 주요 증액내역]

(단위: 억원)

부처명	회계·기금	목 명	정부안	증 액	비 고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주부담금	91,158	2,964	2022년 고용보험요율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여 증액
		피고용자분담금	57,093	2,964	
기획재정부	일반회계	법인세	737,810	11,570	코로나19 피해 사업자 법인세 납기연장을 고려하여 증액
		부가가치세	760,540	14,246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고려하여 증액

자료: 국회 예산안 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주요 증감내역

주요 감액사업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감액사업은 기획재정부 소관 일반회계의 예비비(△1조 1,000억원), 금융위원회 소관 일반회계의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400억원), 법무부 소관 일반회계의 국가배상금지급(△1,000억원), 고용노동부 소관 일반회계의 국민취업지원제도(△232억원), 환경부 소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453억원), 전력산업 기반기금의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산업(△1,000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지원(용자)(△1,000억원) 등이다.

예비비 예산은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일반사업 예산의 대규모 증액으로 예비재원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되었고, 산업은행 출자(뉴딜펀드) 예산은 재정모펀드에서 자펀드로 미출자된 자금이 과다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었다. 국가배상금지급 예산은 내년도 국가배상금 지급예상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되었으며, 국민취업지원제도 예산은 내역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의 2021년도 집행 실적이 부진한 점과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단기 일자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되었다.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예산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되었으며, 가정용 스마트 전력 플랫폼 산업은 저조한 민간사업자의 참여 및 사업실적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논의된 시정요구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었다. 소상공인지원(용자) 예산은 내역사업인 '스마트소상공인 자금' 사업의 수요가 부족하여 2021년에 자체변경으로 감액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되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국회 주요 감액사업]

(단위: 억원)

부처명	회계·기금	사업명	정부안	감액	비고
기획재정부	일반 회계	예비비	50,000	△11,000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일반사업 예산의 대규모 증액으로 예비재원 소요가 감소함에 따라 감액
금융위원회	일반 회계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6,400	△400	재정모펀드에서 자펀드로 미출자된 자금이 과다하여 집행실적이 저조함 등을 고려하여 감액

부처명	회계·기금	사업명	정부안	감액	비고
법무부	일반회계	국가배상금지급	2,500	△1,000	내년도 국가배상금 지급예상액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
고용노동부	일반회계	국민취업지원제도	15,141	△232	내역사업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일 경험프로그램' 사업의 부진한 2021년도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감액
환경부	환경개선특별회계	스마트하수도 관리체계 구축운영	836	△453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절차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관련 예산의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점을 고려하여 감액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가정용 스마트 전력플랫폼 산업	2,267	△1,000	저조한 민간사업자의 참여 및 사업실적과 2020회계연도 결산에서 논의된 시정요구 등을 고려하여 감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소상공인지원(용자)	36,000	△1,000	내역사업인 '스마트소상공인 자금' 사업은 수요가 부족하여 2021년에 자체변경으로 감액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감액

자료: 국회예산안 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증액사업

2022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 주요 증액사업은 질병관리청 소관 일반회계의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4,846억원), 교육부 소관 일반회계의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2단계 사업 설계비 등)(+587억원) 및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의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2,394억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4,000억원) 및 소상공인지원(용자)(희망대출)(+7,000억원),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용자)(+1,000억원), 전력산업기반기금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250억원) 등이다.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예산은 코로나19 위·중증률 및 치명률 감소를 위해 경구용 치료제 40.4만명분을 구매하고 진단검사비 지원 강화를 위하여 각각 3,516억원, 1,300억원이 증액되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사업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노후시설을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단계 사업 설계비 등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예산은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를 2만원씩 인상하기 위해 자치단체교부금이 증액되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예산은 코로나19로 경영상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을 인상하기 위하여 증액되었으며, 소상공인지원(용자)(희망대출) 예산은 소상공인에 대한 용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되었다. 생활안정자금(용자)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증액되었으며,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예산은 에너지공과대 개교를 위하여 장비·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 편성되었다.

[2022년도 세출예산안 및 지출계획안 국회 주요 증액사업]

(단위: 억원)

부처명	회계·기금	사업명	정부안	증액	비고
질병관리청	일반 회계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9,162	4,846	경구용 치료제 구입비 (+3,516억원), 진단검사비 지원(+1,300억원) 등을 위해 증액
교육부	일반 회계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2단계사업설계비등)	6,075 (-)	△881 (587)	2단계 사업 착수를 위하여 설계비 등이 신규 편성
	유특 회계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35,897	2,394	어린이집·유치원에 대한 3~5세 누리과정 원아 보육료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증액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 시장진흥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18,436	4,000	코로나19로 경영상 곤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하한액 인상하고 소상공인 용자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증액
		소상공인지원 (용자)(희망대출)	36,000	7,000	
고용노동부	근로복지진흥	생활안정자금 (용자)	991	1,000	코로나19로 인한 법인택시, 전세·노선버스 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을 위해 증액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사업지원	-	250	에너지공과대 개교를 위하여 장비·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

자료: 국회예산안 등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재작성

제2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국회 심의

정부는 2022년 1월 24일 14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추경안'이라 함)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은 오미크론 변이가 확산되고 이에 방역조치가 연장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고 방역을 보강하기 위하여 제출된 것으로 소상공인 지원 11.5조원, 방역 보강 1.5조원, 예비비 보강 1.0조원 등 총 14조원 규모이다.

국회는 3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 등을 통하여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총수입 553.6조원, 총지출 624.3조원 규모의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등을 확정하였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국회심의 내역]

(단위: 조원, %)

구분	본예산 (A)	추경안 (B)	국회확정 (C)	추경안 대비 증감액 (C-B)	본예산 대비	
					증감액 (C-A)	증가율 (C-A)/A
총수입	553.6	553.6	553.6	0	0	0
- 예산	369.5	369.5	369.5	0	0	0
(국세수입)	343.4	343.4	343.4	0	0	0
(세외수입)	26.1	26.1	26.1	0	0	0
- 기금	184.1	184.1	184.1	0	0	0
총지출	607.7	621.7	624.3	2.6	16.6	2.7
- 예산	413.0	415.6	417.2	1.6	4.2	1.0
- 기금	194.6	206.1	207.1	1.0	12.5	6.4

주: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1.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2022년 1월 24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추경안은 2월 4일, 2월 7일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되었다. 이후 보건복지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위심사 등을 거쳐 2월 4일부터 2월 7일까지 추경안을 의결하였으나 기획재정위원회는 여·야 및 정부간 이견으로 추경안을 의결하지 않았다.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일정]

위원회명	회부일	상정일	의결일
기획재정위원회	2022-1-24	2022-2-4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2-1-24	2022-2-4	2022-2-7
보건복지위원회	2022-1-24	2022-2-7	2022-2-7

자료: 각 상임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등 예비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세입 및 수입의 경우 추경안에서 변동이 없었으며, 세출 및 지출의 경우 39조 9,032억원 증액되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단위: 억원)

위원회명		세입 및 수입			세출 및 지출		
		증액	감액	순증	증액	감액	순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 기업위원회	예산	-	-	-	-	-	-
	기금	-	-	-	249,500	-	249,500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	-	-	149,532	-	149,532
	기금	-	-	-	-	-	-
합계	예산	-	-	-	149,532	-	149,532
	기금	-	-	-	249,500	-	249,500

주: 1. 기획재정위원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안을 의결하지 않음
 2. 회계 간, 기금 간 내부거래를 제외한 순계기준(단, 회계
 자료: 각 상임위원회 2020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보고서를 바탕으로 재작성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 및 본회의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2년 2월 7일 상정 및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를 진행하였다. 이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심사를 1회(2.9.) 거쳐 2월 19일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2월 21일 제393회 국회 제3차 본회의에서 맹성규 의원 외 171인이 방역지원금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이 신규 반영된 수정안을 발의하였고 해당 수정안대로 최종 의결하였다.

재정총량

심사결과 총수입은 본예산 및 추경안과 동일한 553.6조원으로 확정되었으며, 총지출은 추경안 14조원에서 △0.7조원 감액되고 3.3조원 증액됨에 따라 2.6조원 순증하였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조정규모: 수정안]

(단위: 백만원)

구분		증액	감액	증감
총수입	예산	-	-	-
	기금	-	-	-
	합계	-	-	-
총지출	예산	2,053,594	△400,000	1,653,594
	기금	1,250,000	△300,000	950,000
	합계	3,303,594	△700,000	2,603,594

자료: 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통합재정수지 적자규모는 △70.8조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54.1조원 적자)에 비하여 적자폭이 16.6조원 악화되었고 추경안(△68.1조원 적자) 대비로는 2.6조원 악화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개 사회보장성기금 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110.8조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94.1조원)에 비해 적자폭이 16.6조원 악화되었고 추경안(△108.2조원 적자) 대비로는 2.6조원 악화되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재정수지 변동]

(단위: 조원)

구분	본예산(A)	추경안(B)	국회확정(C)	증감	
				본예산 대비(C-A)	추경안 대비(C-B)
통합재정수지	△54.1	△68.1	△70.8	△16.6	△2.6
관리재정수지	△94.1	△108.2	△110.8	△16.6	△2.6

주: 단수 차이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주요 감액·증액 사업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역보강 예산 증액 등을 감안하여 예비비(4,000억원)이 감액되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감액 사업]

(단위: 억원)

구분	사업명	부처	추경안(증액분) (A)	증감(B)	국회확정 (A+B)
예비비 보강	예비비	기재부	10,000	△4,000	6,000

자료: 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이번 국회 심사과정에서 총지출 기준 3조 3,035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이를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2조 532억원) 및 방역보강(1조 2,433억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 증액 사업]

(단위: 억원)

구분	증액항목	부처	추경안 (증액분) (A)	증감(B)	국회 확정 (A+B)
소상공인 및 사각지대 지원	방역지원금	중기부	96,000	3,600	99,600
	소상공인 손실보상	중기부	19,000	9,500	28,500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급	고용부	-	4,094	4,094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	고용부 국토부	-	1,623	1,623
	문화예술인 지원	문체부	-	864	864
	돌봄 지원	복지부 고용부	-	851	851
	소계		115,000	20,532	135,532
방역보강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질병청	4,881	9,740	14,621
	자가진단키트 지원	복지부 질병청	-	2,033	2,033
	방역인력지원	질병청	-	660	660
	소계		4,881	12,433	17,314

자료: 국회,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등을 바탕으로 재작성

부대의견

국회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심사과정에서 6건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의결하였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의결시 부대의견(총 6건)

- ①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로 연장하는 방안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조속히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② 정부는 청년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일하는 청년들의 생활 여건 개선과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청년희망적금 프로그램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 ③ 정부는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법인택시 및 전세·노선버스 기사에 대한 한시지원금을 100만 원 지급하되, 동 직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50만원 수준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

- ④ 기획재정부는 초과세수 발생시 국가재정법 제90조 제1항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⑤ 공공자금관리기금이 2021년 초과세수 여력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고용보험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예탁금을 확대한 것과 관련, 각 기금관리주체와 기획재정부는 예탁에 따른 채무상환계획을 작성하여 2022년 4월 임시국회 전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보고한다.
- ⑥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를 지원함에 있어서 직종별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필요성이 높은 직종을 중심으로 금번 국회의 추경예산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지원하되 신속한 지원을 위해 기존 4차례에 걸쳐 시행한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수급한 대상자의 경우에는 소득 감소 여부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제3절 2021년 세법개정

1. 개관

2021년 조세분야 법률 심사 및 처리 현황

국회의원 발의 및 정부 제출 세법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심사대상 법률은 국세 23개, 지방세 4개로 총 27개 법률이었다. 안전 기준으로 국세 세법개정안 240건, 지방세 세법개정안 180건으로 총 420건이 심사되었다.

국세 법률의 경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의결을 거친 17개 법안(대안 11건·수정안 4건·원안 2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12월 2일과 9일에 걸쳐 의결되었다. 지방세 법률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친 4개 법안(대안 4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어 12월 9일과 2022년 1월 11일에 걸쳐 의결되었다.

2. 국세기본법 주요 개정사항

국세기본법은 제도 합리화 및 납세자 부담을 완화하는 취지에서 법 개정이 추진되었다.

공동상속자의 납세의무 범위 조정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민법에 따른 유류분을 받는 사람이 있을 경우 민법상의 법정상속비율 대신 실제 상속받은 재산가액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

계하도록 개정하였다. 이를 통해 유류분을 청구한 경우에도 전체 상속재산 중 상속인별 실제 상속받은 재산의 비율로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여 유류분 상속시 납세의무가 일부 승계되지 않는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 상향

채납자의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신고 유도를 위해 국세 채납자의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한도를 종전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하였다.

소액채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기준금액 상향

소액채납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면제기준금액을 물가·소득수준 변화를 반영하여 종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상향하였다.

3. 소득세 주요 개정사항

소득세 분야는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자산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 실거주자의 세부담 완화 및 과세체계의 정비를 목적으로 하는 법 개정이 실시되었다.

근로장려금 소득기준금액 상향

일하는 저소득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근로장려금에 대해 지급 요건이 되는 가구별 총소득 기준금액(소득상한금액)을 최저임금수준 상승 등을 고려하여 종전 대비 200만원씩 상향하고, 근로소득자의 반기 근로장려금 정산 시기를 다음해 9월에서 다음해 6월로 3개월 단축하였다.

[근로장려금의 총소득기준금액 개정내용]

가구 유형	개정 전	개정 후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홀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1세대 1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2008년 9억원으로 규정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된 고가주택 기준금액을 최근 주택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상향함으로써 인플레이션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하여, 1세대 1주택 및 1세대

1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을 종전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였다.

가상자산소득 과세시행 1년 유예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등을 위해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시행 시기를 당초 2022년 1월 1일에서 1년 유예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하였다.

난임시술비 등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출산을 제고 및 난임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부에 대한 의료비 지원 확대를 위하여 난임시술비 및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의 공제율을 종전 20%에서 30%로 상향하였다. 아울러 “그 밖의 의료비”로 분류되어 15%의 공제율이 적용되었던 고위험임산부·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에 대한 공제율을 20%로 상향하였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⁹⁾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소득세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기부금 납입한도는 1인당 연간 500만원이며, 세액공제율은 거주자 기준 10만원 이하일 경우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분일 경우 15%로 규정하였다.

4. 법인세 주요 개정사항

법인세 분야는 차세대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및 투자지원 확대와 일자리 회복을 위한 고용분야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국가전략기술 R&D·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등

반도체·배터리(이차전지)·백신 분야의 첨단기술을 ‘국가전략기술¹⁰⁾’로 지정하고, 신성장·원천기술 R&D 및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공제율 보다 높은 수준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현행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였다.

9) 2021년 10월 19일 제정, 2023년 1월 1일 시행. 개인별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상한액은 500만원이며,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게 기부금을 모금하고 기부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답례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10) 구체적인 국가전략기술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국가전략기술 관련 세액공제 내용]

	개정 전	개정 후	
대상기술	신설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배터리·백신 3대 분야 첨단기술)	
세액 공제율	[R&D] (단위: %)		
		중소	중견
	일반	25	8
	신성장·원천	30~40	20~30
	[시설투자] (단위: %)		
	중소	중견	대
일반	10	3	1
신성장·원천	12	5	3
적용기한	신설	2024. 12. 31.	

고용증대 세액공제 공제금액 한시적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고용증대 세액공제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고, 비수도권의 취업 취약계층인 우대공제 대상(청년·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을 종전 1,200만원에서 1,300만원으로 2021~2022년간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세액감면 대상이 되는 생계형창업 중소기업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4,800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8,000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하여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제도의 적용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3년 연장하였다.

이(e)스포츠 경기부 설치·운영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에 따른 운영비 세액공제 적용대상 종목에 이(e)스포츠 경기부를 추가하고, 설치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포함하여 3년간 운영비 10% 세액공제를 신설하였다.

5. 부가가치세 등 소비세 주요 개정사항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등 소비과세 부문은 영세사업자 지원 및 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공제·감면제도 연장, 안정적 세입기반 조성 및 지방분권 지원을 위한 취지에서 세법개정이 이루어졌다.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에 대한 우대 공제율 적용기한 연장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된 사업자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 등의 매출세액공제에 대한 한시적 우대 공제율(1%→1.3%) 및 우대 공제한도(500만원→1천만원)의 적용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였다.

교통·에너지·환경세 적용기한 연장

교통시설 확충사업, 에너지·자원 사업 및 환경 보전·개선 사업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기후대응기금 등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교통·에너지·환경세의 적용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4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

중앙정부 기능이양에 따른 소요재원 이전 및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는 비율을 2022년 23.7%(이하 현행대비, +2.7%p), 2023년 이후 25.3%(+4.3%p)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하였다.

[부가가치세의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변화]

2010~2013	2014~2018	2019	2020~2021	2022	2023~
5%	11%	15%	21%	23.7%	25.3%

위기지역·제주도 소재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 종료

골프장 입장객 증가 등 당초 도입목적 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위기지역 및 제주도 소재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을 종료하였다.

6. 재산세제 주요 개정사항

재산세제는 주거목적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는 한편 납세의무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는 취지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 상향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2억원 상향하였다. 기본공제액 상향에 따라 과세표준은 '[주택분 합산공시가격 - 11억원] × 공정시장가액 비율'로 계산하게 되며, 종전 9억원 대비 과세표준이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및 영농상속공제 한도 상향

가업상속공제 적용기업 중 중견기업의 기준을 종전 매출액 3천억원 이하에서 4천억원 이하로 상향함으로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영농상속공제의 공제한도를 종전 15억원에서 20억원으로 5억원 상향하였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동거주택 상속공제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를 종전 직계비속으로 한정된 것에서,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보양한 직계비속의 배우자까지로 확대하였다.

문화재·미술품의 상속세 물납 허용 및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역사적·학술적·예술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미술품에 대하여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고, 상속세를 장기간에 나누어 납부하는 연부연납 기간을 종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였다.

7. 세법개정의 세수효과

국회예산정책처는 국회에서 확정된 개정세법에 따라 2022~2026년 동안 약 26.9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소득세의 경우 근로장려금(EITC) 소득기준금액 인상에 따른 세수감소(△1.3조원) 등으로 인해 1.7조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는 국가전략기술 R&D 비용 및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됨에 따라 약 4.3조원의 세수감소가 전망되며,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비율 상향(△21.1조원),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368억원) 등에 따라 21.3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된다. 그 외 기타 세목에서는 특정의국법인을 이용한 조세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세부담 판정 비율을 상향함에 따라 900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등 4,44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세법에 따른 세수효과(국회예산정책처 추계): 2022~2026년]

(단위: 억원)

	2022	2023	2024	2025	2026	연평균	'22~'26 누적
〈누적법〉	△39,127	△57,339	△59,742	△61,764	△51,640	△53,922	△269,612
소득세	△6,021	△2,806	△2,855	△2,761	△2,655	△3,420	△17,098
법인세	△5,762	△11,981	△12,734	△13,179	91	△8,713	△43,565
부가가치세 ¹⁾	△28,044	△43,868	△45,471	△47,128	△48,878	△42,678	△213,390
기 타	700	1,316	1,318	1,304	△198	888	4,441
〈순액법〉	△39,127	△18,211	△2,403	△2,022	10,124	△10,328	△51,640
소득세	△6,021	3,215	△50	94	106	△531	△2,655
법인세	△5,762	△6,218	△753	△445	13,270	18	91
부가가치세 ¹⁾	△28,044	△15,824	△1,602	△1,657	△1,750	△9,776	△48,878
기 타	700	616	2	△14	△1,503	△40	△198

주: 1)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 전환에 따른 국세 감소분이 반영된 것임

1. 누적법은 기준연도 대비 연도별 세수변화를 추계한 것이며, 순액법은 각 연도의 전년 대비 증가한 세수를 집계하는 방식으로,

두 방식 모두 일몰연장 법안은 세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가정함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2022 대한민국 재정

Public Finance of the Republic of Korea 2022

상임위 소관 부처별 재정 현황

제3부

제1장 국회운영위원회

제1절 국회

1. 재정 현황

2022년 국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억원, 세출예산은 7,038억원이다. 국회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국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3	37	42	13.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국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165	7,053	7,038	△0.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2. 주요 사업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은 정보자원의 통합적 이용을 활성화하고 위기 발생 시 자료유실 위험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대전에 국회 통합디지털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7억 7,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2021~2024년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87억 2,700만원(331.4%) 증가한 113억 6,000만원이다.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국회 통합디지털센터 건립	-	2,633	11,360	331.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회사무처

제2절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1. 재정 현황

2022년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원, 세출예산은 955억 7,000만원이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6	2.4	3.0	2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919.3	976.1	955.7	△2.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 주요 사업

국정운영관리

국정운영관리 사업은 올바른 정책방향 수립 및 국민과의 유대감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청와대 관람객 기념품 구매, 대통령 연하장 발송 등을 위한 운영비 15억 7,600만원, 여론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등을 위한 연구용역비 23억 2,400만원 등 43억 5,200만원이다.

[국정운영관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운영비	1,002	1,876	1,576	△16.0
업무추진비	491	452	452	0
연구용역비	2,415	2,024	2,324	14.8
유형자산	49	50	-	△100.0
합계	3,958	4,402	4,352	△1.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제3절 대통령경호처

1. 재정 현황

2022년 대통령경호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500만원, 세출예산은 969억 9,600만원이다. 대통령경호처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대통령경호처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06	0.8	0.75	△6.3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대통령경호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07.14	926.87	969.96	4.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2. 주요 사업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은 대통령 등 국가요인에 대한 경호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운영비 24억원, 특수활동비 67억 5,400만원, 업무추진비 18억 4,000만원 등 174억 3,500만원이다.

[요인 및 국민경호활동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운영비	1,927	2,223	2,400	7.9
여비	426	1,059	1,059	0.0
특수활동비	7,452	7,110	6,754	△5.0
업무추진비	1,410	1,840	1,840	0.0
직무수행경비	1,880	2,249	2,449	8.9
유형자산	744	550	2,933	433.3
합계	13,839	15,031	17,435	16.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은 청와대 경호경비시설 개보수 및 첨단경호장비 과학화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운영비 3억 900만원, 연구용역비 5,000만원, 건설비 44억 3,500만원, 유형자산 30억 3,400만원으로 78억 2,800만원이다.

[경호장비시설개선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운영비	89	25	309	1,136
연구용역비	47	30	50	66.7
건설비	2,986	3,213	4,435	38.0
유형자산	3,814	4,661	3,034	△34.9
합계	6,936	7,929	7,828	△1.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통령경호처

제4절 국가인권위원회

1. 재정 현황

2022년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의 총계와 동일하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0.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393억원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0.1	1	0.1	△9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62	379	393	3.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2. 주요 사업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동 사업은 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인권강사 양성, 인권감수성 향상, 인권리더십 향상 등을 통해 인권존중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은 20억 8,900만원이 편성되었다.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인권교육 기획 및 운영	1,627	1,672	2,089	24.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인권위원회

제2장 법제사법위원회

제1절 법무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법무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교도작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조 3,558억원, 세출예산은 4조 1,193억원이다. 교도작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216억원, 세출예산은 1,216억원이다.

[법무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3,365	19,306	13,558	△29.8
교도작업특별회계	1,042	1,384	1,216	△12.1
합계	14,407	20,690	14,773	△28.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법무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6,037	39,893	41,193	3.3
교도작업특별회계	1,074	1,384	1,216	△12.1
합계	37,111	41,277	42,409	2.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법무부 소관 기금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개이다.

2022년 당초 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1,001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99억원 감소하였다.

[법무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범죄피해자보호기금	1,044	1,100	1,100	1,001	1,001	△9.0

주: 총계 기준
자료: 법무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1조 4,245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5,998억원 감소하였다.

[법무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3,365	19,306	13,558	△29.8
교도작업특별회계	634	897	647	△27.9
범죄피해자보호기금	43	39	40	1.7
합계	14,041	20,243	14,245	△29.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2022년 법무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4조 1,746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164억원 증가하였다.

[법무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5,212	38,833	40,251	3.7
교도작업특별회계	654	696	669	△4.0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73	1,053	827	△21.5
합계	36,840	40,582	41,746	2.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4. 주요 사업

법률구조

법률구조 사업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법률상담·소송대리·기타 법률사무에 관한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기본적 인권옹호 및 법률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22년 예산액은 624억 원으로 전년 추경 대비 89억원(16.6%) 증가하였는데, 이는 AI 법률구조 및 전자접수시스템 도입, 플랫폼종사자에 대한 법률지원 확대 등에 따른 것이다.

[법률구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법률구조	525	535	624	16.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전국 교정기관 노후시설·장비의 유지보수, 수용관리 등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하고 전자경비시스템의 설치 등 시설·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은 전년 추경 대비 264억 원(33.2%) 증가한 1,061억 원으로, 과밀수용 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등 수용환경 개선을 통한 수용자 인권보호 예산이 반영되었다.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교정시설장비운용 및 현대화	642	797	1,061	33.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전자감독

성폭력 범죄자 등에 대한 위치 정보를 24시간 확인·감독함으로써 전자장치 피부착자의 재범 억제에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은 전년 추경 대비 52억원(23.6%) 증가한 274억원으로, 정신질환 범죄자에 대한 심리치료를 강화하고, 전자감독 대상자 증가에 따른 인프라 보강 등에 따른 것이다.

[전자감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전자감독	179	222	274	23.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무부

제2절 법제처

1. 재정 현황

2022년 법제처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32억원이다. 법제처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법제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84	407	432	6.1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2. 주요 사업

법령정보제공

법령정보제공 사업은 국민에게 친근한 매체를 발굴하여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으로,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법제정책 알리기, 어린이법제관, 청소년법제관,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5,200만원(13.1%) 증가한 21억 7,700만원이다.

[법령정보제공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알기 쉬운 법령안 입법예고	158	158	158	-
만화를 통한 법령홍보	222	238	238	-
법제정책 알리기	640	699	700	0.1
어린이법제관	274	442	403	△27.0
청소년법제관	99	108	-	0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	279	678	143.4
합계	1,394	1,925	2,177	13.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법제처

제3절 감사원

1. 재정 현황

2022년 감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2억원, 세출예산은 1,363억원이다. 감사원 소관 2022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감사원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8	6.1	7.2	17.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감사원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59	1,358	1,363	0.3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2. 주요 사업

감사활동경비

동 사업은 「대한민국헌법」 및 「감사원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에 대한 회계 검사, 직무감찰 등을 수행함으로써 국가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9억원(△9.3%) 감소한 183억원이다.

[감사활동경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감사활동경비	151	202	183	△9.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제4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 재정 현황

2022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세입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으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0억원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	-	200	순증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2. 주요 사업

공수처 업무 정보화 사업

공수처 업무 정보화 사업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 사업, 디지털 포렌식 장비 구축, 관련 시스템을 개발을 위한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 사업으로 구분된다. 2022년 예산은 52억 2,400만원이다.

[공수처 업무 정보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정보화체계 구축 및 운영(정보화)	-	-	1,887	순증
첨단범죄 및 디지털수사(정보화)	-	-	3,337	순증
합계	-	-	5,224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감사원

제5절 대법원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대법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등기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32억원, 세출예산은 1조 7,178억원이며, 등기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054억원, 세출예산은 3,054억원이다.

[대법원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009	6,294	4,832	△23.2
등기특별회계	3,189	3,588	3,054	△14.9
합계	6,029	8,315	6,854	△17.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대법원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5,986	17,180	17,178	△0.01
등기특별회계	2,410	3,588	3,054	△14.9
합계	18,396	20,768	20,232	△2.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대법원 소관 기금은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개이다. 2022년 당초 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1,826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373억원(25.7%) 증가하였다.

[대법원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사법서비스진흥기금	1,359	1,453	1,453	1,826	25.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8,055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309억원(△14.0%) 감소하였다.

[대법원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009	5,337	4,337	△18.7
등기특별회계	2,782	3,255	2,702	△17.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14	775	1,016	31.1
합계	7,705	9,367	8,055	△14.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2022년 예산 기준 대법원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2조 262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75억원(△0.9%) 감소하였다.

[대법원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5,986	17,180	17,178	△0.01
등기특별회계	2,257	2,449	2,331	△4.8
사법서비스진흥기금	531	808	753	△6.8
합계	18,774	20,437	20,262	△0.9

자료: 대법원

4. 주요 사업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및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능형 통합검색서비스 구축 등 전자소송시스템을 전면 개편하려는 사업으로 일반회계로 추진되며,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은 사법정보공개포털 구축 등 사법정보의 대국민 제공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사업으로 사법서비스진흥기금으로 추진된다. 2022년 예산은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구축 사업 212억 6,200만원,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83억 9,900만원이다.

[차세대전자소송시스템 및 대국민사법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차세대전자 소송시스템 구축	2,827	21,994	21,262	△3.3
대국민사법 정보시스템 구축	961	10,066	8,399	△16.6
합계	3,788	32,060	29,661	△7.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동 사업은 종이 기반의 등기업무프로세스 및 노후화된 등기정보시스템을 전면 재설계하여 공신력있는 국가등기체계를 구축하려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157억 200만원이다.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미래등기시스템 구축	8,935	13,084	15,702	2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대법원

제6절 헌법재판소

1. 재정 현황

2022년 헌법재판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8억원, 세출예산은 531억원이다. 헌법재판소 소관 2022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헌법재판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8	0.4	4.8	1,10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92	526	531	1.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2. 주요 사업

국선대리인보수등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은 재판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무자력자 등에게 국선대리인을 지원하고, 다양한 의견청취 및 심도있는 변론을 위해 참고인 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1억 2,700만원이다.

[국선대리인보수등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국선대리인보수등	103	127	127	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헌법재판소

제3장 정무위원회

제1절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0.2억원 편성되었다.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의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43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3억원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3	-	0.2	-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	-	-	-
합 계	3.3	-	0.2	-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748	6,295	6,439	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3	119	123	2.7
합 계	5,841	6,414	6,562	2.3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 총수입·총지출

2021년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소관 총수입은 세입예산과 같다. 총지출은 세출예산(총계)에서 내부거래 1개 사업(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전출, 3억원)을 제외한 6,436억원이다.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1 결산	2020 예산(A)	2021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746	6,294	6,436	2.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3	119	123	2.7
합계	5,839	6,413	6,559	2.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 주요 사업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규제개혁위원회는 정부 규제정책 총괄기구로 「행정규제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정비 등에 관한 사항의 종합적인 추진을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설치·운영된다. 국무조정실의 규제조정실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정부의 규제 관련 업무를 총괄·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사업으로 편성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은 10.6억원으로, 인건비 0.7억원, 위원회 회의 개최 및 사무실 임차 등 운영비 7.5억원, 업무추진비 0.7억원, 연구용역비 0.5억원, 여비 등 1억원으로 구성된다.

정부출연연구기관 지원(R&D)

2022년 기준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22개 출연연구기관(부설기관 2개 포함 시 24개)에 출연금을 지원하여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 2022년도 예산은 5,042억원이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433억원, 한국개발연구원(대학원 포함) 638억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6억원 등이다.

[2022년 연구기관별 출연금 예산]

(단위: 억원)

연구기관	출연금	연구기관	출연금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한-인도네시아 산업혁신 연구 협력사업 포함)	433	한국노동연구원	165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7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171	한국법제연구원	139
국토연구원	21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육아정책연구소	324
건축공간연구원	12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315	한국여성정책연구원	155
산업연구원	20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76
통일연구원	150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04
한국개발연구원 - KDI국제정책대학원	638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16
한국교육개발원	203	한국행정연구원	138
한국교육과정평가원	255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123
한국교통연구원	194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28
합 계			5,042

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제2절 국민권익위원회

1. 재정 현황

2022년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4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0.6억원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932.9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24.5억원 증액되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4	4.8	5.4	12.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13.6	908.4	932.9	2.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2. 주요 사업

부패신고사건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

국민권익위원회는 반부패총괄기관으로 신고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부패를 근절하고,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 신고대상은 부패행위, 공익침해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채용비리,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가 있으며, 신고자에 대해서는 최대 30억원의 보상금과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분보장, 신변보호 등 신고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신고대상]

구분	내용
부패행위	공직자가 직무상 지위·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공익침해 행위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복지·보조금 부정수급 행위	허위·거짓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정부·지자체 등이 제공하는 보조금을 수령하거나 사회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누리는 행위
공공재정 부정청구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로 청구하거나 과다 청구하는 행위, 공공재정지급금의 목적 외 사용 및 오지급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행위, 공직자등이 수수 금지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채용비리	자기 또는 제3자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법령·지침·정관·내규를 위반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규정 등을 위반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행위	공직자가 준수하여야 할 행위기준을 위반하는 행위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부패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과 관련된 사업으로는 부패신고자보호보상사업, 공익신고 제도운영사업 등이 있으며, 2022년도 예산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¹⁾에 따라 이해충돌방지사업이 신설되었다. 각 사업의 예산현황은 아래와 같다.

[국민권익위원회 주요사업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부패신고자보호보상	38.8	25.8	26.8	3.9
공익신고제도운영	17.3	22.4	20.8	△7.1
정부보조금통합신고센터 및 공공재정환수제도 운영	2.1	4.0	7.5	86.0
청탁금지제도운영	3.8	5.1	4.3	△16.1
이해충돌방지제도운영	-	-	3.0	순증

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제3절 국가보훈처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국가보훈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2개 기금(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으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2억원, 세출예산은 5조 7,240억원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0.6억원, 세출예산 규모는 170억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 규모는 0.5억원, 세출예산 규모는 22억원이다.

1) 2021. 5. 19. 시행

[국가보훈처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6	88	92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5	0.6	0.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0.5	0.5	-
합계	46.5	89.1	93.1	4.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국가보훈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4,862	56,633	57,240	1.1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1	179	170	△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	21	22	5.0
합계	55,054	56,833	57,432	1.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국가보훈처 소관 기금은 보훈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개이다. 2022년 보훈기금의 운용 규모는 6,823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1,537억원 감소하였다.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의 운용 규모는 1,378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235억원 감소하였다.

[국가보훈처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보훈기금	3,746	8,360	8,360	6,823	△18.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619	1,614	1,614	1,378	△14.6
합 계	5,365	9,973	9,973	8,201	△17.8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전년 예산 대비 1,536억원 감소한 5,087억원이다.

[국가보훈처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6	88	92	4.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0.5	0.6	0.6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	0.5	0.5	-
보훈기금	1,853	5,729	4,504	△21.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52	805	490	△39.1
합 계	2,751.5	6,623.1	5,087.1	△23.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22년 국가보훈처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전년 예산 대비 1,252억원 감소한 6조 2,937억원이다.

[국가보훈처 총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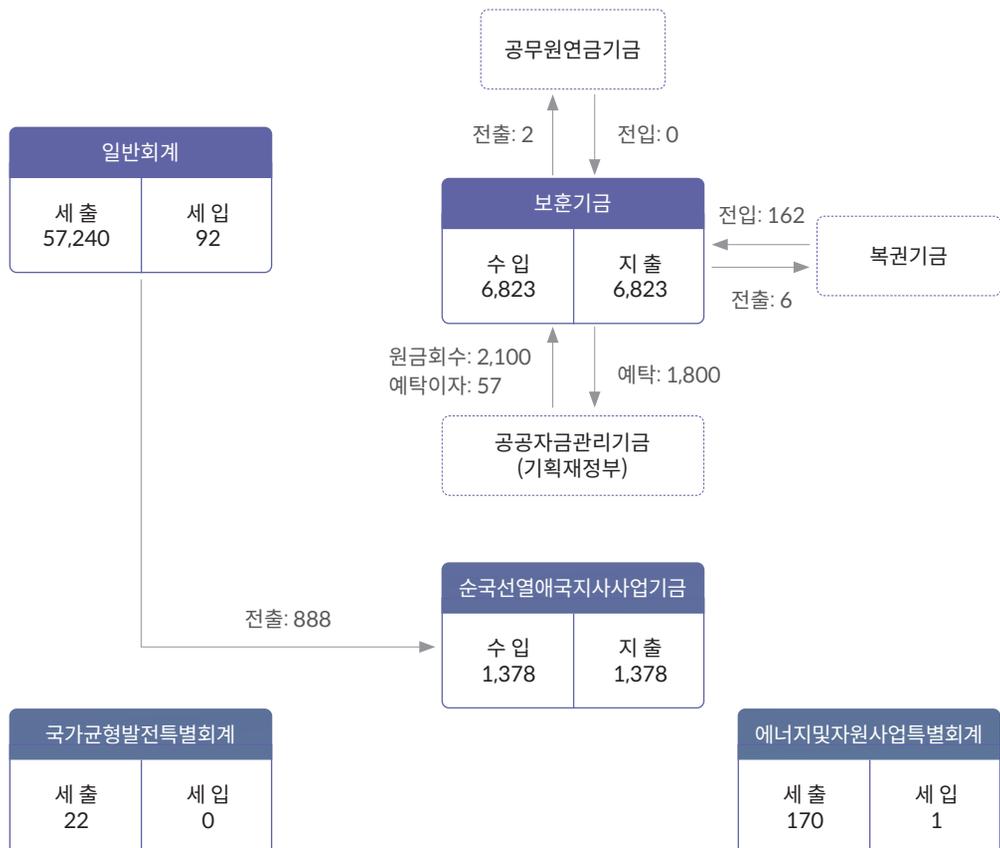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4,095	55,825	56,352	0.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1	179	170	△4.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	21	22	5.0
보훈기금	2,038	6,550	5,015	△23.4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1,619	1,614	1,378	△14.6
합계	57,944	64,189	62,937	△2.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2022년도 국가보훈처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4. 주요 사업

보상금 및 각종 수당

국가보훈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에게 보상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2022년 보상금 예산은 보상금 기본 단가를 전년보다 5.0% 인상하여 전년 대비 4.5%(1,382억원) 증가한 3조 1,975억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외에도 간호수당 및 6·25자녀수당의 단가 또한 5.0% 인상되어 증액 편성되었다. 다만, 고엽제수당, 무공영예수당 및 참전명예수당은 전년 대비 단가가 인상되었음에도 참전유공자 등이 고령이므로 대상자가 감소하여 동 예산은 감액 편성되었다.

[보상금 및 수당 예산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보상금	26,047 (191,465명)	27,438 (192,305명)	28,131 (191,888명)	29,444 (192,363명)	30,593 (191,866명)	31,975 (192,964명)
간호수당	581 (3,149명)	555 (3,006명)	547 (2,879명)	552 (2,754명)	555 (2,620명)	566 (2,503명)
생활조정수당	125 (5,111명)	164 (6,476명)	260 (8,267명)	272 (8,478명)	298 (9,097명)	351 (10,745명)
6·25자녀수당	2,237 (27,714명)	2,356 (27,220명)	2,606 (27,218명)	2,730 (27,403명)	2,886 (27,546명)	2,994 (27,398명)
고엽제수당	2,691 (37,891명)	2,860 (38,815명)	2,901 (38,191명)	3,008 (37,565명)	3,056 (37,273명)	2,984 (35,115명)
무공영예수당	608 (17,835명)	722 (16,519명)	666 (15,246명)	627 (13,617명)	591 (12,193명)	530 (10,668명)
참전명예수당	6,147 (232,464명)	7,696 (213,458명)	6,877 (190,633명)	6,839 (177,844명)	6,646 (162,637명)	6,088 (144,756명)
4·19혁명 공로수당	-	-	11 (303명)	11 (288명)	12 (277명)	12 (276명)
사망일시금	84 (6,896명)	92 (7,524명)	84 (6,854명)	84 (6,854명)	83 (6,818명)	83 (6,818명)
재해보상금	122 (165명)	138 (159명)	139 (169명)	148 (173명)	148 (173명)	0.8 (8명)
생계지원금	-	-	-	-	-	69 (5,728명)
합계	38,652	42,029	42,228	43,719	44,872	45,652.8

주: 본예산 기준
자료: 국가보훈처

제4절 공정거래위원회

1. 재정 현황

2022년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914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113억원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1,575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112억원 증가하였다.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 예산 총계와 같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676	4,027	3,914	△2.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344	1,463	1,575	7.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 주요 사업

소비자권익증진 지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소비자가 물품 등을 합리적으로 선택하고 올바른 권리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소비자단체 또는 자율분쟁조정위원회를 지원하거나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1인 가구 증가, 모바일 결제 확산 등에 따라 새로운 소비의 한 축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기기에 친숙한 청년·학생들의 소비역량을 강화하고 노인 등 취약계층 소비자들의 디지털 기기에 대한 접근성, 사용능력 등을 증진시키고자 내역사업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를 2022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한다.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의 각 내역사업별 예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소비자권익증진 지원의 내역사업별 예산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소비환경개선	646	646	646	-
상품비교정보생산 지원	555	550	550	-
소비자소송 지원	20	-	-	-
자율분쟁조정위원회 지원	195	195	195	-
청년소비자 역량 제고 및 디지털 디바이드 해소	-	-	847	순증
지역소비자행정 협력체계 구축	490	448	470	4.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제5절 금융위원회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금융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고 규모는 2,817억원이다. 2022년 세출예산은 2021년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의 산업은행출자(혁신모험펀드)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었으며 그 규모는 3조 4,000억원이다.

[금융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536	2,481	2,817	13.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4,704	37,052	34,000	△8.2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2,000	2,400	-	△100.0
합계	56,704	39,452	34,000	△13.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은 ①공적자금상환기금, ②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③신용보증기금, ④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⑤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⑥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으로 총 6개이다.

2022년 당초 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26조 8,907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1조 4,146억원 증가하였다. 금융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액이 증가한 것은 공적자금상환기금(△2조 415억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127억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2,857억원)이 감소하였음에도 신용보증기금의 계획액이 2021년 9조 6,668억에서 2조 4,213억원 증가한 12조 881억원으로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금융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공적자금상환기금	102,230	61,424	71,785	51,370	△28.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678	684	684	557	△18.6
신용보증기금	103,620	95,862	96,668	120,881	2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2,025	20,499	20,499	22,029	7.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62,986	44,957	44,957	42,100	△6.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22,896	30,529	30,529	31,970	4.7
합계	304,435	253,955	254,761	268,907	5.6

주: 총계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2조 7,101억원으로, 일반회계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성기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총수입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536	2,481	2,817	13.5
공적자금상환기금	3	12,730	24,284	90.8
합계	8,539	15,211	27,101	78.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 금융위원회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8,002억원으로, 일반회계 및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 구성된다. 금융성기금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역시 총지출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3,704	11,052	8,000	△27.6
특별회계	2,000	2,400	-	△100.0
공적자금상환기금	2	160	2	△98.8
합계	35,706	13,612	8,002	△41.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2022년도 금융위원회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본예산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4. 주요사업

공적자금

공적자금(Public Funds)²⁾은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금융부실이 누적되면서 경색된 금융 시장을 조속히 정상화하고, 이를 통해 급속하게 위축되던 실물경제를 회복시키고자 금융구조조정 등에 사용된 자금을 말한다.

정부는 이미 지원된 공적자금에 대하여 국회 심의로 공적자금 상환대책을 확정하고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공적자금 상환대책은 2002년 말 기준 상환 부담이 있는 공적자금 채무원금 97.2조원 중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 28.2조원을 제외한 69조원 중 20조원을 금융권에서, 나머지 49조원을 정부 재정에서 부담하도록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① 금융회사 부담분 20조원은 부보금융회사³⁾가 매년 특별기여금(부보예금평잔의 0.1%)을 납부하여 충당하고, ② 정부 부담분 49조원은 재정에서 매년 2조원(2002년 현재가치 기준)씩 출연하여 상환⁴⁾하도록 하였다.

정부 재정에서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출연⁵⁾하기 위하여 별도로 공적자금상환기금을 설치하였다. 동 기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국채 발행자금을 예탁받아 2006년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공적자금 49조원(원금 기준)을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과 부실채권정리기금 출연을 통해 상환하고, 매년 일반회계 출연금(2002년 현재가치 기준 2조원)과 우체국예금특별회계·우체국보험특별회계 출연금(예금평잔 등의 0.1%) 등으로 25년 이내에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원리금을 상환하도록 하였다.

상환실적을 보면,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2006년까지 공적자금상환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을 통해 45.7조원을 상환하고, 나머지 만기가 도래한 공적자금은 회수자금 또는 금융회사 특별기여금으로 상환하여 2021년 전액 상환하였다.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008년에 전액 상환하여 2013년 2월 청산하였다. 2021년 말 기준 공적자금상환기금의 채무잔액은 38조 6,354억 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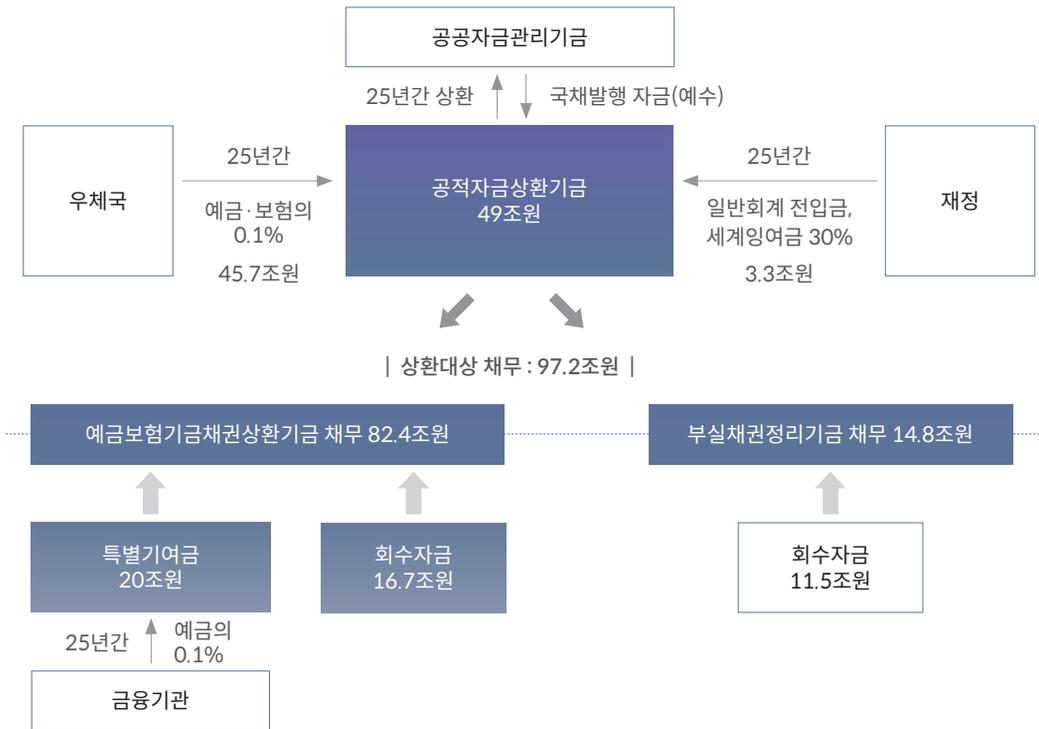
2) 공적자금은 ①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조성한 공적자금 I, ②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하여 금융회사 부실채권 및 구조조정기업 자산 인수를 위해 조성된 공적자금 II로 구분된다. 공적자금 II와 관련하여 설치된 구조조정기금은 2014년 말 운용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관리되고 있는 공적자금은 공적자금 I이다.

3) 예금보험공사에 예금보험료를 납부하고 보험 보장을 받는 금융기관을 의미한다.

4) 이와는 별도로 원칙적으로 전년도 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공적자금 상환에 사용하도록 하였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제5조

5) 2003~2006년에 걸쳐 출연이 완료되었다.(2003년 13조원, 2004년 12조원, 2005년 12조원, 2006년 12조원)

[공적자금상환기금 구조와 자금 흐름]



자료: 금융위원회

공적신용보증

정부는 담보능력이 부족한 개인과 기업을 위한 공적신용보증제도로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⁶⁾,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중 금융위원회 소관 신용보증 관련 기금은 신용보증기금,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이다.

신용보증 관련 기금의 건전성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지표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눈 운용배수이다. 보증을 과다하게 공급할 경우 기금의 재원이 고갈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운용배수를 관리하여야 하며, 각 기금의 근거법률은 운용배수의 한도를 규정(일반적으로 20배,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40배)하고 있다. 각 기금의 2021년 말 보증잔액 실적 등은 다음과 같다.

6) 기술보증기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변경됨

[금융위원회 소관 공적신용보증 규모]

(단위: 배, 억원, %)

구분	법정 운용배수	운용배수 (2021)	보증잔액 (2021)	대위변제율 (2021)	정부출연금 (2022예산)
신용보증기금	20	8.8	785,888	1.4	1,65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20	15.2	163,585	1.85	1,3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 주택신용보증계정	30 ¹⁾	13.4 ²⁾	1,169,990	0.2	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30 ¹⁾	9.9 ²⁾	62,811	0.23	0

주: 1) 「한국주택금융공사법」상 운용배수는 40배이나(제43조 및 제43조의9) 동법 시행령상 운용배수는 30배(제28조 및 제28조의8)

2) 2021.10월 말 기준

1. 2021년 말 기준(단, 정부출연금은 2022년 본예산 기준)

자료: 각 기금

청년희망적금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은 저소득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청년희망적금을 신설하고 상품 가입·유지를 독려하기 위하여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청년희망적금은 만 19~34세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400만원)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50만원씩 2년간 총 600만원을 납입하면 1년차에는 2%, 2년차에는 4%의 저축장려금을 지급하는 상품으로 출시되었다.

저축장려금 지급 주관과 적금 실적 관리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수행하며, 2022년도 예산에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으로 저축장려금 456억원, 운영시스템 구축비용 19억 5,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청년희망적금)	-	-	47,550	순증
장려금 지원	-	-	45,600	순증
운영시스템 구축	-	-	1,950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공공기관 출자 사업

2022년 금융위원회는 뉴딜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에 대규모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은행에 출자하고, 장기·고정금리 및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출자하였다.

산업은행에는 뉴딜펀드 프로그램을 위해 2022년 6,000억원의 출자예산이 편성되었다. 이는 2021년 예산 5,100억원에서 900억원 증가한 금액이나, 2021년 산업은행 출자액 총 1조 1,208억원 대비 6,208억원 감소한 것이다.

한편 한국주택금융공사에는 보금자리론 등 저리의 장기·고정금리 대출인 정책모기지를 안정적으로 공급함으로써 서민의 주거비용을 절감하고 가계부채의 질적구조를 개선하고자 2021년에 이어 500억원의 출자예산이 반영되었다.

[2022년 금융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에 대한 출자예산 주요 내역]

(단위: 억원)

공공 기관	세부사업명	출자 목적	2021 예산(A)	2022 예산(B)	B-A
산업 은행	산업은행 출자 (뉴딜펀드)	뉴딜 분야 중소기업·중견기업 등에 대규모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뉴딜펀드 조성	5,100	6,000	900
	산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2,296	-	순감
	산업은행 출자 (환경·안전투자지원)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설비투자 촉진 지원	225	-	순감
	산업은행 출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중소·중견기업의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산업의 설비·기술투자 지원	512	-	순감
	산업은행 출자 (기업구조혁신펀드)	기업구조조정의 패러다임을 채권회수 극대화에서 경영정상화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로 전환 유도	675	-	순감
	산업은행 출자 (혁신모험펀드)	소재·부품·장비 분야 산업 및 기업을 지원하는 펀드 조성	2,400	-	순감
중소 기업 은행	중소기업은행 출자 (금융시장안정화)	코로나19에 대응하여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지원	126	-	순감
	중소기업은행 출자 (환경·안전투자지원)	중소기업의 환경·안전 분야 설비투자 촉진 지원	225	-	순감
	중소기업은행 출자 (산업구조고도화지원)	중소기업의 주력산업 및 신성장 분야 산업의 설비·기술투자 지원	140	-	순감

공공 기관	세부사업명	출자 목적	2021 예산(A)	2022 예산(B)	B-A
한국 자산 관리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동산담보회수지원)	동산담보 회수지원기구 설치를 통해 동산금융의 공급 활성화 유도	119	-	순감
한국 주택 금융 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장기 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 공급 확대를 통한 가계부채 질적구조 개선	500	500	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금융위원회

제6절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 재정 현황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안전사회 건설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며 피해자 지원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8년 신설된 위원회로,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할 예정이다.⁷⁾

2022년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세출예산은 125억원으로 전년 대비 67억원 증가하였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지출은 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48	58	125	116.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7)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및 국회 보고)

①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는 날부터 2022년 6월 10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2. 주요 사업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두 참사의 원인을 규명하고 정부 대응의 적정성을 조사하는 한편, 참사의 원인을 제공한 법령·제도·정책·관행 등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021년에는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및 기록물 이관·보존 사업 예산 7억 7,500만원이 본예산으로 편성되었으며, 활동기한 연장⁸⁾에 따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사업 등의 예산 63억 5,800만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었다.

2022년에는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사업 예산 18억 5,600만원과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및 기록물 이관·보존 사업 예산 5억 4,900만원 등이 편성되었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주요사업비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종합보고서·백서 발간 및 기록물 이관·보존	563	775	549	△29.2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조사	1,153	-	-	-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조사	3,027	-	1,856	순증
안전사회 건설	352	-	48	순증
피해자 지원 대책 수립	580	-	14	순증
청문회 개최 지원 및 자료검증	113	-	113	순증
대국민 소통 강화	117	-	79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8)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당초 '20.12.10.까지 조사활동 종료 후 '21.3.10. 종합보고서 발표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20.12.22.)에 따라 조사활동은 '22.6.10.까지, 종합보고서 발표는 '22.9.10.으로 연장

제7절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1. 재정 현황

2022년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9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14억원 감소하였다. 세출예산 규모는 502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134억원 증가하였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의 총계와 같다.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3	43	29	△32.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08	368	502	36.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2. 주요 사업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 보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기에 데이터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디지털시대에 맞는 개인의 새로운 권리인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반 환경 조성을 주관한다.

'개인정보 전송 요구권'은 정보주체가 데이터의 이동을 요구하는 권리로, 정보주체가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에 제공한 본인의 정보를 본인 또는 다른 기관·기업 등에게 전송하여 신용, 자산, 건강관리 등에 주도적으로 활용하는 신개념 서비스인 '마이데이터'의 핵심적인 기반을 이룬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서로 다른 산업 간 데이터 전송을 위해 기술표준을 마련하고 모든 분야에서의 정보 연계·통합 활용을 촉진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제4장 기획재정위원회

제1절 기획재정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9조 2,687억원, 세출예산은 23조 7,194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0조 6,790억원, 세출예산은 5,551억원이다.

[기획재정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결산	2021예산(A)	2022예산(B)	증감률(B-A)/A
일반회계	3,847,917	4,164,599	4,292,687	3.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5,861	98,998	106,790	7.9
합 계	3,933,779	4,263,597	4,399,477	3.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결산	2021예산(A)	2022예산(B)	증감률(B-A)/A
일반회계	136,125	288,482	237,194	△17.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21	2,974	5,551	86.7
합 계	138,346	291,455	242,745	△16.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기금은 ① 공공자금관리기금, ② 국유재산관리기금, ③ 대외경제협력기금, ④ 복권기금, 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⑥ 외국환평형기금, ⑦ 기후대응기금으로 총 7개가 있다. 2022년도 수정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360조 8,799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7.9% 감소하였다.

기금별로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260조 73억원으로, 기금 등의 여유자금을 통합 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 및 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운용 규모는 1조 9,375억원으로, 국유재산의 총괄적인 수급·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운용 규모는 1조 4,502억원으로, 개발도상국의 경제·사회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복권기금의 운용 규모는 7조 7,564억원으로, 복권사업으로 조성된 재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사용하기 위하여 조성되었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운용 규모는 6,917억원으로, 민간투자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여 사업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외국환평형기금의 운용 규모는 86조 5,773억원으로, 채권발행 등을 통해 조성한 재원으로 외환을 보유·운용함으로써 외환시장의 안정을 도모한다. 2022년도에 신설된 기후대응기금의 운용 규모는 2조 4,594억원으로, 우리나라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조성되었다.

[기획재정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공자금관리기금	2,687,740	2,633,324	2,760,928	2,433,424	2,600,073	△5.8
국유재산관리기금	16,082	16,664	16,673	19,375	19,375	16.2
대외경제협력기금	11,427	13,668	13,668	14,502	14,502	6.1
복권기금	65,350	64,760	70,763	77,564	77,564	9.6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129	6,464	6,464	6,917	6,917	7.0
외국환평형기금	953,281	1,054,039	1,051,968	865,773	865,773	△17.7
기후대응기금	-	-	-	24,594	24,594	순증
합계	3,741,008	3,788,920	3,920,465	3,442,150	3,608,799	△7.9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도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351조 1,741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63.4%를 차지한다.

[기획재정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799,081	3,106,382	3,379,108	8.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0,084	32,492	37,374	15.0
공공자금관리기금	5,265	9,531	6,864	△28.0
국유재산관리기금	12,504	11,403	13,452	18.0
대외경제협력기금	1,978	2,469	2,657	7.6
복권기금	55,896	61,197	64,981	6.2
기후대응기금	-	-	7,306	순증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2,904,807 (60.7)	3,223,474 (62.6)	3,511,741 (63.4)	8.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기획재정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30조 2,24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4.8%를 차지한다.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및 외국환평형기금은 순수한 재정 활동이라기보다는 금융 활동으로 분류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통합재정 관점에서의 총지출에서는 제외된다.

[기획재정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5,897	113,933	51,037	△55.2
공공자금관리기금	134,338	155,634	156,875	0.8
국유재산관리기금	10,059	10,336	10,372	0.3
대외경제협력기금	9,386	13,042	13,844	6.1
복권기금	39,056	44,446	46,560	4.8
기후대응기금	-	-	23,562	순증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208,736 (3.8)	337,391 (5.6)	302,249 (4.8)	△10.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예비비 총액은 4조 5,000억원으로 전년도 추경예산 대비 53.6% 감소하였다.

[예비비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본예산	추경(B)	
예비비	5,500	86,000	97,000	39,000	45,000	△53.6

주: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다른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재정용자 등 공공목적에 활용하고 국채의 발행·상환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994년 설치된 계정성 기금으로, 총괄계정·용자계정·차관계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기금의 주요 사업은 국공채발행 및 상환 등 보전거래, 다른 회계·기금 간 내부거래 등이다.

2022년도 수정계획 기준 공공자금관리기금의 국공채발행수입은 177조 3,172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4.8% 감소하였으며, 국고채이자상환은 20조 7,070억원으로 전년 수정대비 4.7% 증가하였다. 또한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금은 137조 4,427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12.2% 감소하였다.

[공공자금관리기금 수입·지출계획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수입	2,687,740	2,633,324	2,760,928	2,433,424	2,600,073	△5.8
국공채발행수입	1,736,616	1,763,855	1,862,944	1,660,016	1,773,172	△4.8
지출	2,687,740	2,633,324	2,760,928	2,433,424	2,600,073	△5.8
국고채이자상환	172,737	202,101	197,778	207,070	207,070	4.7
예탁금	1,660,637	1,453,731	1,565,429	1,207,846	1,374,427	△12.2
일반회계	1,028,000	935,137	1,039,763	761,759	911,917	△12.3
기타회계	8,572	8,798	8,798	14,841	11,263	28.0
기타기금	624,065	509,796	516,868	431,247	451,247	△12.7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기후대응기금

기후대응기금은 우리나라의 산업구조가 탄소중립 생태계로 전환될 수 있도록 재정지원을 하기 위하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신설된 기금으로 2022년도부터 수입·지출계획이 수립되었다. 기후대응기금의 총괄적인 운용은 기획재정부(기후대응기금추진단)가 담당하고, 개별사업 집행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 등 13개 부처⁹⁾에서 담당한다.

2022년도 기후대응기금 운용규모는 2조 4,594억원으로, 수입은 자체수입(배출권 매각대금) 7,306억원과 내부수입(일반회계전입금 등) 1조 7,288억원으로 구성되며, 지출은 사업비가 2조 4,572억원, 기금운영비가 22억원이다.

[기후대응기금 수입·지출계획 현황]

(단위: 억원)

구분	내역	2022계획
수입	합계	24,594
자체수입	배출권 매각대금	7,306
	소계	17,288
내부수입	일반회계전입금(교통세)	10,766
	특별회계전입금(교통시설특별회계 여유자원)	3,000
	기금전입금(전력산업기반기금)	2,000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1,522
지출	합계	24,594
사업비	녹색금융, 기술개발, 탄소흡수원 조성, 산업저탄소화 등	24,572
	기금운영비	
	인건비	13
	운영비	9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산림청, 새만금개발청

대외경제협력기금

우리나라의 정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사업은 상환조건 유무에 따라 유상원조와 무상원조로 구분되며 전자는 기획재정부가, 후자는 외교부가 주관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은 이 중 유상원조를 총괄하는 기금이며, 2022년도 계획액은 총계 기준 1조 4,502억원으로 전년 대비 6.1% 증가하였다.

대외경제협력기금의 실질적인 사업은 대부분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저리융자 ODA 사업인 개도국 차관 단위사업 내에 묶여 있으며, 아시아·아프리카·중동-CIS·중남미·태평양 등 5개 지역차관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사업규모는 1조 3,334억원으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이는 대외경제협력기금 계획액 총계의 91.9%에 해당한다.

[대외경제협력기금 지출계획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계획		2022 계획(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대외경제협력기금	11,427	13,668	13,668	14,502	6.1
개도국 차관	9,024	12,582	12,582	13,334	6.0

주: 총계 기준

자료: 기획재정부

제2절 국세청

1. 재정 현황

2022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482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2022년 예산 기준 1조 9,330억 원이다. 국세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국세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998	6,940	5,482	△21.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국세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7,397	18,680	19,330	3.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세청

2. 주요 사업

근로장려세제(EITC) 운영

근로장려세제(EITC: Earned Income Tax Credit)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전통적 복지제도를 근로와 연결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차상위 계층의 근로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유인을 제고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제도이다. 2021년에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따라 420.7만 가구에 4조 4,286억원을 지급하였다.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만가구, 억원)

귀속년도	신청		지급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3	106.0	9,672	84.6	7,745
2014	165.9	14,196	128.2	10,566
2015	173.8	13,205	143.9	10,574
2016	198.5	14,779	165.5	11,967
2017	217.8	16,585	179.3	13,381
2018	502.1	55,595	410.2	45,049
2019	501.0	51,584	431.9	44,683
2020	491.5	52,568	420.7	44,286

주: 2020년 귀속 근로장려금은 2021년 10월 말까지의 지급 실적

자료: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연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 중 하나로 근로장려세제를 대폭 확대하였다. 구체적으로 2018년 30세 이상이던 단독가구의 수급연령 요건이 2019년에 폐지되었으며, 소득요건(맞벌이 가구 기준)이 2,5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되고 최대지급액(맞벌이 가구 기준)은 25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조정되었다. 또한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이 가능하도록 지급 방식을 개편하였다. 2021년에는 신청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거주자가 동의할 경우 과세관청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저소득 근로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반기 근로장려금의 지급기한을 결정일부터 20일 이내에서 15일 이내로 단축하였다.

[근로장려금 개편내역]

구분		2018년	2019년~
연령요건		30세 미만 단독 가구 배제	30세 미만 단독 가구도 포함
재산요건		가구당 1.4억원 미만	가구당 2억원 미만
소득 요건	단독	1,300만원 미만(1인 중위 65%)	2,000만원 미만
	홀벌이	2,100만원 미만(3인 중위 48%)	3,000만원 미만
	맞벌이	2,500만원 미만(4인 중위 46%)	3,6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단독	85만원	150만원
	홀벌이	200만원	260만원
	맞벌이	250만원	300만원
최대 지급액 구간	단독	600~900만원	400~900만원
	홀벌이	900~1,200만원	700~1,400만원
	맞벌이	1,000~1,300만원	800~1,700만원
지급방식		다음연도 연 1회 지급	연2회 반기별 지급 선택가능 (근로소득자)

주: 2021년 적용 세법 기준

자료: 국세청

자녀장려세제(CTC) 운영

정부는 2015년부터 자녀 수에 따라 자녀장려금을 지급하는 자녀장려세제(CTC, Child Tax Credit)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제도로써,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지급한다.

2021년에는 2020년 귀속 소득에 따라 69.9만 가구에 6,017억원을 지급하였다.

[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현황]

(단위: 만가구, 억원)

귀속년도	신청		지급	
	가구	금액	가구	금액
2015	115.1	7,787	94.4	5,700
2016	127.0	7,769	106.2	5,637
2017	115.1	6,727	93.7	4,917
2018	108.2	9,429	87.9	7,544
2019	88.0	7,857	74.3	6,457
2020	81.8	7,233	69.9	6,017

주: 2020년 귀속 자녀장려금은 2021년 10월 말까지의 지급 실적
 자료: 국세청, 2021년 국세통계연보

정부는 2018년 세법개정을 통해 자녀장려세제 역시 확대하였는데, 지급 대상 측면에서는 생계급여 수급자를 포함하였고 지급 금액 역시 1인당 30~50만원에서 50~70만원으로 인상하였다.

[2018년 자녀장려금 개편내역]

구분		총급여액	2018년	2019년~
지급대상			생계급여 수급자 수급 불가	생계급여 수급자 포함
소득 요건	홀벌이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자녀 1인당 70만원
		2,10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1,900분의 20]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총급여액-2,100만원) ×1,900분의 20]
	맞벌이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50만원	자녀 1인당 70만원
		2,500만원~ 4,000만원 미만	부양자녀의 수 × [5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1,500분의 20]	부양자녀의 수 × [70만원-(총급여액-2,500만원) ×1,500분의 20]

주: 1. 소득요건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
 2. 2021년 적용 세법 기준
 자료: 국세청

제3절 관세청

1. 재정 현황

2022년 관세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376억원으로 전년 대비 437억원 감소하였다. 세출예산은 6,141억원으로 전년 대비 179억원 증가하였다. 관세청 소관 2022년도 본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관세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939	813	376	△53.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관세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412	5,962	6,141	3.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2. 주요 사업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관세청은 수출입 통관질서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밀수, 불공정 무역 및 불법 외환거래를 적발하고,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총기·마약류의 반입을 차단하여 국민건강과 사회안전을 확보하고 있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은 총사업비 1,258억원으로 해상특송화물 자동분류기 및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사업을 통해 관세청은 해상특송화물 물동량 급증 등 물류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화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면서도 효율적인 화물 검사를

통해 불법위해물품 등 고위험 화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하는 통관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26억원(727.9%) 증액된 14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해상특송화물 자동분류기 도입 3년차 및 컨테이너 검색기 도입 2년차 사업비를 반영하여 각각 59억원, 68억원이 증액되었다.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사업 예산 규모]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인천항 세관 통합검사장 장비도입	397	1,736	14,372	727.9
해상특송자동분류기도입	397	1,636	7,522	359.8
컨테이너검색기 도입	-	100	6,850	6,75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관세청

제4절 조달청

1. 세입세출예산

조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라 설치된 조달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조달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외로 회전자금을 보유·운용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 기준 조달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액은 4,930억원으로 전년 대비 287억원 증가하였다.

[조달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조달특별회계	4,700	4,643	4,930	6.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조달특별회계	4,387	4,643	4,930	6.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2. 총수입·총지출

2022년도 예산 기준 조달청 소관 회계의 총수입은 3,009억원이고, 총지출은 2,946억원이다.

[조달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조달특별회계	2,616	3,068	3,009	△1.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조달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조달특별회계	2,882	2,270	2,946	29.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조달청

3. 주요사업

공공혁신조달사업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2019년부터 공공혁신조달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공공혁신조달사업은 상용화 전 혁신제품¹⁰⁾을 정부가 선도적으로 시범구매하여 공공현장에 적용함으로써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개선하고 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조달청은 기술성·시장성·혁신성 등에 대해 기술평가와 현장실사를 거쳐 혁신제품을 지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범구매사업은 혁신제품을 조달청 예산으로 구매하고, 테스트 희망 수요기관에 혁신제품을 제공하여 테스트를 수행하는 제도이다. 조달청은 테스트 결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해 우수조달물품 신청자격¹¹⁾을 부여하고, 보완이 필요한 제품은 해당 기업에 추가개발 정보를 제공한다. 2021년 누계 기준으로 혁신제품은 968개가 지정되었고, 시범구매계약은 260개 제품, 717개 기관, 743.8억원 규모로 추진되었다. 관련 사업 예산은 2019년 24억원, 2020년 293억원, 2021년 445억원, 2022년 465억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다양성 확대와 공공서비스 개선효과 제고를 위해 정부 주요 정책방향, 기술동향 등을 반영하여 기존 지정분야(혁신성장지원, 국민생활문제) 외에 코로나19, 한국판뉴딜, 탄소중립 등 지정분야를 신설하였다. 또한 공공기관의 수요 발굴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 제안형 혁신제품 지정을 확대하고, 혁신수요 인큐베이팅¹¹⁾ 등의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혁신제품 지정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스카우터¹²⁾ 방식도 운영하고 있다.

10) 혁신제품은 ①국가우수연구개발제품, ②혁신시제품, ③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으로 구성

① 국가우수연구개발제품(FT1): 각 부처의 국가 R&D 결과물 중 혁신성·공공성이 인증된 제품

② 혁신시제품(FT2): 상용화 전 시제품 중 조달청의 혁신성평가를 거쳐 혁신성이 인증된 제품

③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FT3): NEP·NET 등 기술인증 제품 중 공공성이 인정된 제품

11) 인큐베이팅: 수요자·일반국민의 혁신 아이디어를 전문가 그룹의 자문을 통해 실현 가능한 수준으로 구체화하는 제도

12) 스카우터: 기존 조달시장 밖에 있는 혁신기업을 현장에서 직접 발굴하여 혁신제품 진입을 지원하는 제도

[혁신제품 지정 및 시범구매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지정유형	지정 수	시범구매계약		
			제품 수	기관 수	계약금액
합계		968	260	717	743.8
2019	소계	66	28	35	22.8
	FT1	-	-	-	-
	FT2(공급)	66	28	35	22.8
	FT2(수요)	-	-	-	-
	FT3	-	-	-	-
2020	소계	279	66	290	280.4
	FT1	66	14	87	86.0
	FT2(공급)	86	52	203	194.3
	FT2(수요)	7	-	-	-
	FT3	120	-	-	-
2021	소계	623	166	392	440.6
	FT1	233	42	97	123.1
	FT2(공급)	136	79	209	196.9
	FT2(수요)	29	18	29	53.7
	FT3	225	27	57	66.9

자료: 조달청

제5절 통계청

1. 재정 현황

통계청 소관 재정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예산 기준 통계청 소관 세입예산은 35억원으로 전년 대비 5.0%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3,798억원으로 전년 대비 8.5% 감소하였다. 통계청 소관 2022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의 총계와 같다.

[통계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5	36	35	△5.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통계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519	4,153	3,798	△8.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2. 주요 사업

통계작성사업

통계청이 작성하고 있는 통계는 2022년 1월 말 기준 총 66종으로 조사통계 39종, 가공통계 25종, 보고통계 2종이다. 동 사업들의 2022년 예산은 546억원으로 전년보다 412억원(43.0%) 감소하였는데, 이는 5년 주기 인구주택총조사 및 농림어업총조사가 2020년, 경제총조사가 2021년에 실시되었기 때문이다.

[통계작성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인구주택총조사	860	65	20	△68.4
농림어업총조사	282	26	12	△52.2
경제총조사	11	571	12	△98.0
경제구조통계작성	222	86	287	235.2
경제동향작성	9	9	9	△5.7
사회통계작성	173	183	186	1.7
농어업통계작성	24	19	20	6.6
합계	1,581	958	546	△43.0

주: 1. 총지출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계청

제5장 교육위원회

제1절 교육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교육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88억원으로 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등에 따라 83조 3,62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75억원, 세출예산은 1조 2,647억원이 편성되었고,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3조 8,290억원이 편성되었다.

[교육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755	2,414	2,088	△13.5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72	145	175	20.7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41,961	39,168	38,290	△2.2
합계	44,788	41,727	40,553	△2.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교육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03,797	769,890	833,628	8.3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8,715	11,226	12,647	12.7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	39,900	39,168	38,290	△2.2
합계	752,412	820,284	884,565	7.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교육부 소관 기금은 사학진흥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등 2개가 있다. 2022년 사학진흥기금의 운용 규모는 3,682억원으로 사립학교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행복기숙사 용자 지원, 사학교육시설자금 용자지원, 사립학교 교직원 연수, 사립대학 강사 처우개선 용자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 규모는 13조 2,940억원으로 사립학교 교직원의 노후생활안정을 위한 연금사업, 용자사업, 회관운영·관리, 정보시스템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중 4조 5,928억원이 연금급여,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급여 등 급여로 지출되는 특징이 있다.

[교육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계획(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사학진흥기금	4,035	4,703	4,703	3,682	△21.7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0,529	130,135	130,135	132,940	2.2
합계	94,564	134,838	134,838	136,622	1.3

주: 총계 기준

자료: 교육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6조 3,264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1.1%를 차지한다.

[교육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232	1,789	1,602	△1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2	145	175	20.7
사학진흥기금	2,094	1,727	1,647	△4.6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3,135	57,022	59,840	4.9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57,533 (1.2)	60,683 (1.2)	63,264 (1.1)	4.3

주: 1.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조달되므로 내부거래를 제외한 총수입에서는 제외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2년 교육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89조 6,251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4.4%를 차지한다. 정부 총지출 대비 교육부 총지출의 비중은 2021년 13.7%에서 2022년 14.4%로 상승하였다.

[교육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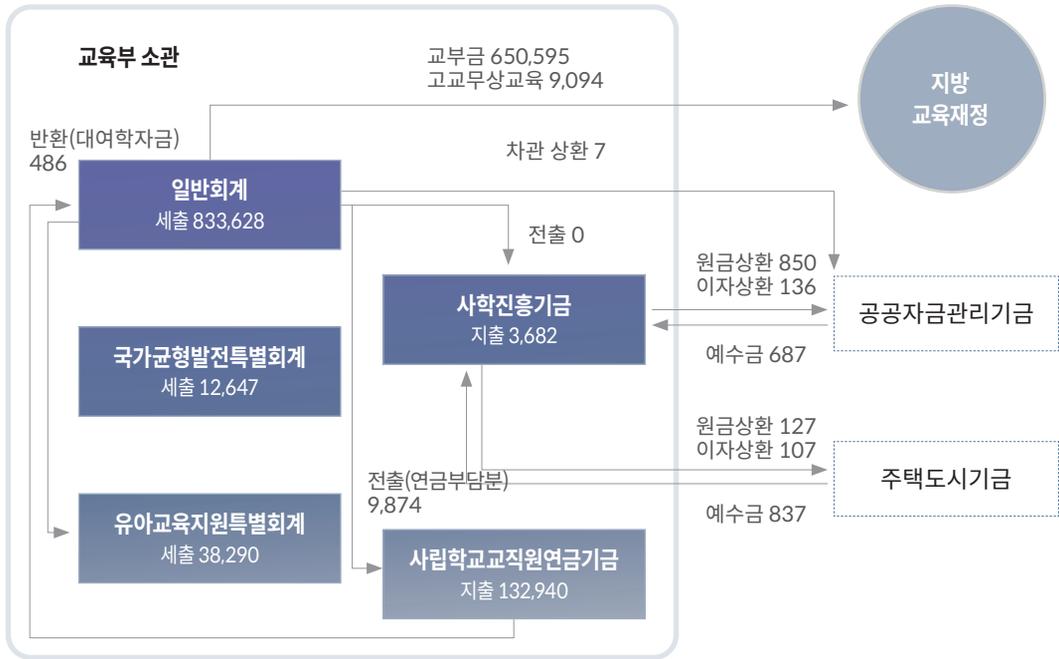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55,814	723,396	787,212	8.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15	11,226	12,647	12.7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39,900	39,168	38,290	△2.2
사학진흥기금	2,340	2,549	2,056	△19.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1,637	54,992	56,046	1.9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758,407 (13.8)	831,331 (13.7)	896,251 (14.4)	7.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2022년도 교육부 재정구조]

(단위: 억원)



자료: 교육부

4. 주요 사업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광역단위에서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하도록 중앙에서 시·도교육청으로 이전되는 재원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¹³⁾은 시·도교육청별로 운영되는 교육비특별회계의 주된 세입항목¹⁴⁾이며, 당해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 및 교육세 일부로 조성된다.¹⁵⁾ 「재정분권 추진 방안」(관계부처 합동, 2018. 10. 30.)에 따라 감소되는 내국세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육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내국세분 교부비율이 2018년 20.27% → 2019년 20.46% → 2020년 20.79%로 인상되었다.

13) 내국세에 연동되어 편성되는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을 말하며, 증액교부금은 제외된다.

14) 2022년 본예산 기준 72.6%

1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제3조제2항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재원을, 내국세 총액(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 개별소비세의 45% 등을 제외한 금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에 의해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을 위해 전출되는 금액 제외)로 규정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구분된다. 보통교부금의 재원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97에 해당하는 금액과 교육세 일부를 합산한 금액이며, 특별교부금은 내국세 총액 20.79%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별교부금은 ① 교육관련 국가정책사업, ② 지역교육현안수요, ③ 재난안전관리수요로 세분되는데, 재원규모는 각 유형별로 특별교부금 총액의 60%, 30%, 10%이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본예산	추경증액	결산	정부안	확정예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535,112	532,300	595,958	595,958	643,008	650,595
보통교부금	520,114	517,416	579,164	579,164	624,896	632,180
내국세분	484,593	481,257	543,005	543,005	585,626	595,435
교육세분	35,521	36,159	36,159	36,159	39,270	36,745
특별교부금	14,997	14,884	16,794	16,794	18,112	18,415
국가시책	8,998	8,931	10,076	10,076	10,867	11,049
지역현안	4,499	4,465	5,038	5,038	5,434	5,525
재난안전관리	1,500	1,488	1,680	1,680	1,811	1,841

자료: 교육부

2022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은 65조 595억원이며, 이 중 보통교부금이 63조 2,180억원, 특별교부금이 1조 8,415억원으로, 2022년 내국세의 증가에 따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예산도 함께 증액되었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은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대학재 학생에 대해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득연계형인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근로 장학금 지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으로 구분된다.

2022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은 4조 6,567억원 규모이며, 세부적으로 국가장학금 지원 4조 1,348억원, 대학생근로장학금 지원 3,693억원,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512억원, 중소기업취업연계(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993억원 등이다.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본예산	추경	결산	정부안	국회확정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39,949	39,946	40,196	40,196	46,567	46,567
국가장학금 지원	35,504	34,853	34,853	34,853	41,348	41,348
대학생근로 장학금 지원	3,164	3,668	3,668	3,668	3,693	3,693
우수학생 국가장학금 지원	367	472	472	472	512	512
희망사다리 장학금 지원	914	933	933	933	993	993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 운영비	-	20	20	20	20	20
코로나 위기가구 특별장학금	-	-	250	250	-	-

자료: 교육부

이 중 규모가 가장 큰 국가장학금 지원은 등록금 범위 내에서 소득과 연계하여 지원하는 국가장학금으로, I유형, 다자녀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역인재장학금으로 구분된다. I유형의 2022년 예산은 2조 8,346억원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대학생에 대해 지원구간별로 350만원~700만원을 지원한다. 다자녀 국가장학금의 2022년 예산은 9,180억원으로 다자녀 가구(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00%이하, 세 자녀 이상)의 모든 대학생에게 기초·차상위계층은 700만원(둘째 이상 전액), 1~3구간은 520만원(셋째 이상 전액), 4~8구간은 450만원(셋째 이상 전액)을 지원한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 구조]

지원구간	국가장학금 지원(4조 1,326억원)			
	I유형 (2조 8,346억원)	다자녀 (9,180억원)	II유형 (3,000억원)	지역인재장학금 (800억원)
기초·차상위	700만원 (둘째 전액)	700만원 (둘째 이상 전액)	대학자체노력 연계 지원 및 입학금 감축분 지원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에 입학할 경우 지원하는 장학금
1구간 (~기준중위소득의 30%)	520만원	520만원 (셋째 이상 전액)		
2구간(~50%)				
3구간(~70%)				
4구간(~90%)				
5구간(~100%)	390만원	450만원 (셋째 이상 전액)		
6구간(~130%)				
7구간(~150%)				
8구간(~200%)	350만원			

주: 운영비(29억원) 포함

자료: 교육부

또한 II유형은 대학의 자체노력(등록금 동결·인하, 교내 장학금 유지·확충) 등과 연계하여 대학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 2022년 예산 규모는 3,000억원이다. 그리고 지역의 우수한 인재가 지역대학에 입학할 경우 지원하는 지역인재 장학금의 예산은 2022년 800억원 규모이다.

2022년 예산의 특징은 국가장학금 지원 예산이 2021년 보다 6,495억원 증액한 4조 1,348 억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4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90~200%이하인 가구에 대한 국가장학금 지원 단가를 기존 연간 67.5 ~ 368만원에서 연간 350 ~ 390만원까지 인상하였으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에는 기존 450만원~520만원 지원하던 국가장학금을 등록금 전액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2022년 국가장학금 지원단가 인상 현황]

(단위: 만원)

구분		기초·차상위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	6구간	7구간	8구간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대비		-	~30%	~50%	~70%	~90%	~100%	~130%	~150%	~200%
'21	I유형	520	520	520	520	390	368	368	120	67.5
	다자녀	520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										
'22	I유형	700 (둘째 전액)	520	520	520	390	390	390	350	350
	다자녀	첫째, 둘째 (둘째 전액)	520	520	520	450	450	450	450	450
		셋째 이상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자료: 교육부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2020. 7. 14.)에 포함된 과제로 40년 이상 노후화된 학교시설을 공간혁신, 제로에너지 그린학교, 스마트교실, 학교시설 복합화를 결합한 미래형 스마트 그린 스쿨로 개축·리모델링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2021년도에 신규 도입되어 사전기획 및 설계비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2022년에는 본격 추진을 위한 공사비 등 사업비 5,194억원이 편성되었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예산]

(단위: 억원)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	2022 예산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	943	5,19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교육부

동 사업은 40년이 경과한 초·중등교육시설 중 2,835동을 선별¹⁶⁾하여 2021~2025년 동안 개축·리모델링을 추진한다는 중기재정계획하에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전체 물량 중 75%(2,126동)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고 25%(709동)는 임대형 민자사업(BTL)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며, 2021~2025년 재정사업 총사업비는 9.6조원(국비 30%, 시·도교육청 지방비¹⁷⁾ 70%), BTL 민간투자비는 총 4.3조원 규모이다.

[그린스마트 스쿨 조성 사업 추진 계획: 2021~2025년]

(단위: 동)

		2021	2022	2023	2024	2025	합 계
사업 대상	재정사업	582	386	386	386	386	2,126
	임대형 민자사업(BTL)	179	132	132	132	134	709
	합 계	761	518	518	518	520	2,835
재원	재정사업(억원)	3,304	18,293	28,143	23,130	23,130	96,000
	국비(30%)	943	5,194	8,106	6,648	6,648	27,569
	지방비(70%)	2,361	13,099	20,037	16,482	16,482	68,531
	민간투자(조원)	1.1	0.8	0.8	0.8	0.8	4.3

주: 동은 노후학교시설 단일건축물 기준

자료: 교육부

16) 40년 경과 노후시설(7,980동) 중 적정규모육성기준 미만 학교 및 합숙소 등 교육용도 외 시설 제외한 6,088동의 약 50%에 대해 선별하여 사업 추진

17)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통교부금으로 교부

제6장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1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6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0% 증가한 9조 4,891억원이다. 세입예산 중 우편사업특별회계·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4.2%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1.1% 감소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265	3,303	3,267	△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0	91	93	2.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432	361	353	△2.2
- 국립과천과학관계정	319	361	365	0.9
우편사업특별회계	40,952	45,372	46,448	2.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32,106	31,667	34,081	7.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1	10,073	10,284	2.1
합계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87,115 (83,019)	91,227 (87,112)	94,891 (90,813)	4.0 (4.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8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중앙과학관, 국립과천과학관), 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전년대비 7.1% 증가한 19조 170억원이다. 세출예산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전년대비 29.7%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및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세출예산이 각각 8.8%, 7.6% 증가하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5,377	78,010	84,885	8.8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3,693	4,173	4,459	6.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315	4,136	4,292	3.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19	3,855	5,002	29.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계정	337	361	353	△2.2
- 국립과천과학관계정	303	361	365	0.9
우편사업특별회계	40,223	45,372	46,448	2.4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8,344	31,667	34,081	7.6
우체국보험특별회계	7,546	10,073	10,284	2.1
합계 (우정사업 관련 특별회계)	162,358 (76,113)	178,009 (87,112)	190,170 (90,814)	7.1 (4.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 기금운용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기금은 원자력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통신발전기금 등 4개로 구성되며, 운용 규모는 4조 157억원이다. 이 중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공동 관리하며, 2022년 운용액 1조 3,910억원 중 2,054억원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집행한다. 원자력기금은 원자력연구개발 계정(2022년 운용액 2,140억원)과 원자력안전규제계정(2022년 운용액 2,854억원)으로 구분되며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관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원자력기금	4,528	4,911	4,911	4,994	1.4
과학기술진흥기금	2,665	3,068	3,068	1,903	△38.0
정보통신진흥기금	14,735	16,185	16,965	19,350	14.1
방송통신발전기금	13,109	14,418	14,418	13,910	△3.5
합 계	35,038	38,583	39,363	40,157	2.0

주: 1. 총계 기준

2. 원자력기금운용계획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지출액(2022년 2,85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3. 방송통신발전기금운용계획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액(2022년 2,05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8조 6,169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1.5%를 차지하며, 전년대비 4.8% 감소하였다. 총수입은 우편사업특별회계 3조 2,136억원,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조 2,127억원, 정보통신진흥기금 6,440억원, 방송통신발전기금 6,835억원 등으로 구성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477	3,303	3,267	△1.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0	90	93	3.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	7	18	18	0.0
- 국립과천과학관	13	68	49	△27.9
우편사업특별회계	31,529	30,388	32,136	5.8
우체국예금특별회계	21,351	20,812	22,127	6.3
우체국보험특별회계	9,961	10,073	10,284	2.1
원자력기금	3,781	4,340	4,821	11.1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정보통신진흥기금	6,879	10,848	6,440	△40.6
방송통신발전기금	7,048	10,442	6,835	△34.5
과학기술진흥기금	105	139	99	28.8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84,231 (1.5)	90,521 (1.6)	86,169 (1.5)	△4.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18조 6,88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3.0%를 차지한다. 우정사업 관련 3개 특별회계(우편사업특별회계, 우체국예금특별회계,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총지출 규모는 5조 4,569억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총지출의 29.2%에 해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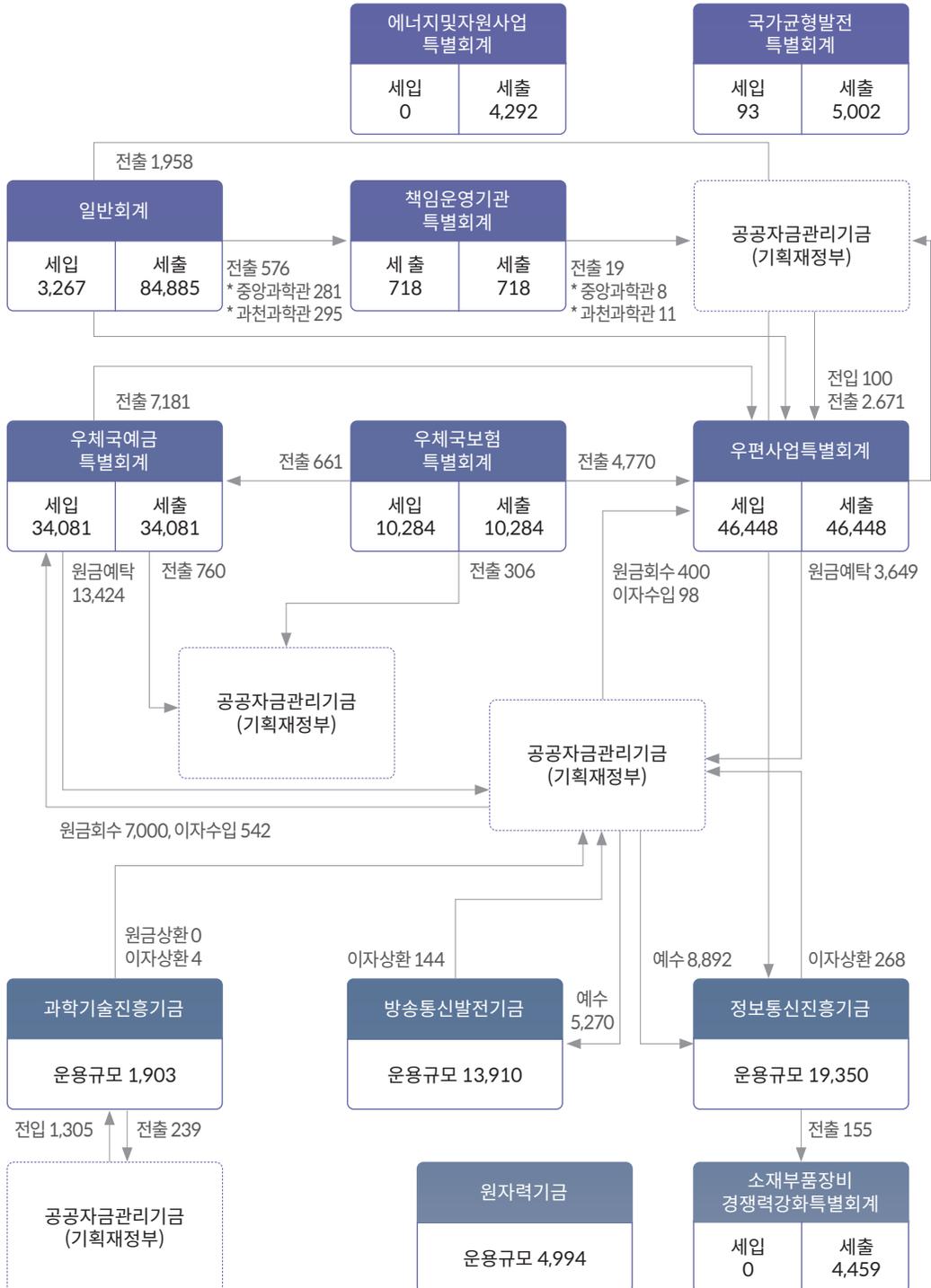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4,670	77,303	82,229	6.4
소재부품장비특별회계	3,315	4,173	4,459	6.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693	4,136	4,292	3.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219	3,855	5,002	29.7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 국립중앙과학관	316	339	333	△1.7
- 국립과천과학관	278	335	339	1.2
우편사업특별회계	36,621	39,191	39,068	△0.3
우체국예금특별회계	14,729	13,478	12,534	△7.0
우체국보험특별회계	3,307	2,965	2,967	0.1
원자력기금	2,895	3,234	3,265	1.0
과학기술진흥기금	620	972	1,043	7.3
정보통신진흥기금	13,536	14,886	17,532	17.8
방송통신발전기금	11,904	12,576	12,539	△0.3
기후대응기금	-	-	1,285	순증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69,103 (3.3)	177,444 (2.9)	186,887 (3.0)	5.3

주: 1. 원자력기금 지출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지출(2022년 1,150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2.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2022년 2,054억원)이 포함되어 있음
3.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2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구조]

(단위: 억원)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 주요사업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은 바이오·나노·소재·정보·컴퓨팅·에너지·환경 등 미래유망 분야의 원천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에는 바이오·의료기술개발,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 나노·소재기술개발, 첨단융합기술개발,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에너지·환경기술개발 등 6개 단위 사업과 여기에 속한 58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1,300억원(12.0%) 증가한 1조 2,040억원이다.

[미래유망원천기술개발 프로그램]

(단위: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수)	2022년 주요 세부사업	2021 예산	2022 예산
바이오·의료기술개발 (20개)	바이오·의료기술개발(2,438억원),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 사업(864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 사업(568억원) 등	5,251	5,532
국제핵융합실험로 공동개발(1개)	국제핵융합실험로공동개발(671억원)	671	659
나노·소재기술개발 (8개)	나노·소재기술개발(2,363억원),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471억원), 미래소재디스커버리(310억원) 등	2,853	3,472
첨단융합기술개발 (15개)	STEAM연구(369억원),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252억원),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101억원) 등	1,515	1,635
차세대정보·컴퓨팅 기술개발(5개)	양자컴퓨팅연구인프라구축(100억원, 신규), 슈퍼컴퓨터개발선도(137억원) 등	286	473
에너지·환경 기술개발(9개)	해양극지기초원천기술개발(75억원), 기후기술국제협력촉진(23억원, 신규) 등	164	270
합 계		10,740	12,04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바이오·의료기술개발 단위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281억원(5.4%) 증가한 5,532억원이며, 2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22년에는 다부처국가생명연구자원선진화사업(864억원),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568억원) 등의 사업을 통해 신약·의료기기·재생의료 등 바이오헬스 분야의 기초·원천 연구에서 임상·사업화까지 범부처 협업으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한다.

다음으로 나노·소재기술개발 단위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619억원(21.7%) 증가한 3,472억원으로 소재·부품·장비 핵심품목의 기술 자립화와 미래선도품목 선제 확보 등을 지원하고, 첨단융합기술개발 단위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120억원(7.9%) 증가한 1,635억원으로 무인이동체원천기술개발, 스마트팜 다부처패키지 혁신기술개발 등의 사업을 통해 분야 간 융합을 통한 원천기술 확보를 지원한다.

에너지·환경기술개발 단위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106억원(64.6%) 증가한 270억원이며, 9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당초 동 단위사업을 통해 추진해 온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473억원), 수소에너지혁신기술개발(104억원) 등 13개 세부사업(2022년 기준)이 2022년부터 기후대응기금으로 편성되었고, 동 단위사업에서는 해양극지 및 기후기술 등 국제협력과 기반조성 사업 중심으로 지원된다.

우주개발진흥

우주개발진흥은 인공위성·발사체·달탐사 등 독자적 우주수송능력 확보 및 우주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R&D 사업이 포함된 프로그램이다. 동 프로그램에는 인공위성개발, 우주발사체개발, 달 탐사, 우주핵심기술개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 등 5개 단위 사업과 여기에 속한 20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807억원(24.9%) 증가한 4,045억원이다.

[우주개발진흥 프로그램]

(단위: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수)	2022년 주요 세부사업	2021 예산	2022 예산
인공위성개발(14개)	차세대중형위성개발(331억원), 정지궤도공공복합통신위성개발(309억원),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320억원, 신규), 초소형위성체계개발(102억원, 신규) 등	1,144	1,923
우주발사체개발(3개)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1,728억원, 신규), 한국형발사체개발(73억원) 소형발사체개발역량지원(10억원) 등	1,718	1,811
달 탐사(1개)	달 탐사(198억원)	326	198
우주핵심기술개발(1개)	스페이스챌린지(104억원)	40	104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1개)	한국과학우주청소년단지원(9억원)	10	9
합계		3,238	4,04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중 인공위성개발 단위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779억원(68.1%) 증가한 1,923억원이며, 14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특히, 한국형위성항법시스템개발 사업의 경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2년 예산에 편성되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하여 2035년까지 14년 동안 총 3조 7,234.5억원 규모로 추진하는 장기 대규모 프로젝트이다.

우주발사체개발 단위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93억원(5.4%) 증가한 1,811억원이며, 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22년 종료되는 한국형발사체개발 사업은 2022년 2차 발사를 위한 예산(73억원)이 편성되었으며, 동 사업의 후속사업인 한국형발사체고도화 사업에 1,728억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고도화 사업을 통해 4차례 반복 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달 탐사 단위사업은 달 탐사 세부사업 1개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128억원(39.3%) 감소한 198억원이다. 달 탐사 사업은 2022년 달 궤도선 발사 후 종료될 예정이다.

인공지능데이터진흥

인공지능데이터진흥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데이터와 인공지능, 데이터·인공지능 간 융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 사업이다. 동 프로그램에는 AI기술개발, AI경쟁력강화, AI반도체경쟁력강화,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 등 4개 단위 사업과 32개 세부사업이 포함되어 있다. 동 프로그램의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2,848억원(31.1%) 증가한 1조 2,005억원이다.

[인공지능데이터진흥 프로그램]

(단위: 억원)

단위사업 (세부사업수)	2022년 주요 세부사업	2021 예산	2022 예산
AI기술개발(10개)	인공지능중심산업융합집적단지조성(R&D/비R&D, 709억원),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371억원, 신규), 차세대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114억원) 등	1,221	1,556
AI경쟁력강화(13개)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5,797억원), 클라우드컴퓨팅산업육성(765억원), AI융합 지역특화산업 지원(775억원), AI융합 의료영상 진료판독시스템(112억원) 등	5,072	7,331

단위사업 (세부사업수)	2022년 주요 세부사업	2021 예산	2022 예산
AI반도체경쟁력강화(7개)	차세대지능형반도체기술개발(설계)(298억원),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10억원, 신규),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78억원, 신규) 등	665	972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2개)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1,447억원), 빅데이터플랫폼네트워크구축(699억원)	2,199	2,146
합 계		9,157	12,00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AI기술개발 단위사업은 인공지능 기초연구,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며,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335억원(27.4%) 증가한 1,556억원으로, 10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2022년 신규사업인 사람중심인공지능핵심원천기술개발 사업은 AI학습능력개선과 AI신뢰성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6년까지 총사업비 3,018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이다.

AI경쟁력강화 단위사업은 기업 중심의 인공지능 혁신 생태계 조성과 다양한 산업분야의 지능화 확산을 지원하는 단위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2,259억원(44.5%) 증가한 7,331억원이며, 13개 세부사업으로 추진된다. 이 중 인공지능학습용데이터구축 사업은 인공지능이 스스로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가공된 대규모의 기계학습 데이터 구축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2021년까지 '정보통신융합산업' 프로그램의 '지능정보산업인프라조성' 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2022년부터 동 단위사업의 신규 세부사업으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5,797억원)은 310종의 기계학습 데이터를 구축할 계획으로 전년(3,705억원)에 비해 크게 확대되었다.

AI반도체경쟁력강화 단위사업은 7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307억원(46.2%) 증가한 972억원이다. 이는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210억원), 자율주행용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78억원) 등 2개 신규사업이 편성된 것에 기인한다.

데이터산업경쟁력강화 단위사업은 2개 세부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53억원(2.4%) 감소한 2,146억원이다. 두 사업 중 데이터기반산업경쟁력강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데이터 구매·가공 바우처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빅데이터 플랫폼 및 네트워크 구축 사업은 산업 전반에 필요한 양질의 데이터를 공급하기 위해 교통, 금융 등 분야별 데이터의 수집·가공·분석·유통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제2절 방송통신위원회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대비 11.9% 감소한 311억원이며,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2.7% 감소한 507억원이다.

[방송통신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일반회계	638	353	311	△11.9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일반회계	482	521	507	△2.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1개가 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위원회는 2022년에 동 기금 지출 중 2,054억원을 집행할 계획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계획(B)	증감
		당초	수정(A)		
방송통신발전기금	1,980	1,952	1,952	2,054	5.2

주: 1. 총계 기준

2. 방송통신발전기금 수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관리하고 있으며, 상기 계획은 방송통신위원회의 관리 하에 지출하는 금액을 의미함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3. 총수입·총지출

2021년 기준 방송통신위원회 총수입은 311억원이고, 총지출은 507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중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지출액(2,054억원)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포함하여 집계하고 있어 방송통신위원회의 총수입·총지출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
일반회계	638	353	311	△11.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
일반회계	482	521	507	△2.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4. 주요 사업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기반 구축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기반 구축 사업은 불법스팸 대응체계 구축 및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

반 구축 사업 등 10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단위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2021년(190억원) 대비 31억원(16.3%) 증가한 221억원이 편성되었다.

구체적으로 ① 불법스팸 대응을 위한 정책 개발, 인식 제고 및 스팸차단 등의 기술적 대응으로 국민의 피해를 야기하는 불법스팸 감축 및 지능정보사회 이용자 역량 강화(44억원), ② 안전한 위치정보의 이용 지원, 위치정보 활용 긴급구조 지원체계 강화 및 위치정보 산업 기반 마련을 위한 차세대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체계 구축(26억원), ③ 2022년 신규사업으로 인터넷 피해 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하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 지원(13억원), ④ 건전한 사이버 윤리문화와 클린인터넷 이용 환경 조성, 위치정보보호 등을 통한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및 불법유해정보의 유통방지를 위한 기반 마련 등(138억원)이다.

[안전한 인터넷 정보활용기반 구축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회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불법스팸 대응 체계구축	일반	37	34	33	△2.9
지능정보화 이용자 기반보호 환경조성	기금	8	10	11	10.0
안전한 위치정보 이용 환경조성	일반	3	2	2	0.0
위치정보활용 긴급구조 지원 체계 강화	기금	13	13	12	△7.7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기금	13	13	12	△7.7
인터넷 이용자보호 지원	기금	-	-	13	순증
건전한 사이버 윤리 문화 조성	기금	51	53	63	18.9
클린인터넷 이용환경 조성	기금	13	14	15	7.1
불법유해정보 차단기반 마련	기금	11	28	28	0.0
안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개선	기금	-	23	32	39.1
합 계		149	190	221	16.3

주: 1.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2. 총지출 기준

자료: 방송통신위원회

제3절 원자력안전위원회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만으로 구성된다. 세입예산 규모는 17억원, 세출예산은 1,561억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6	17	17	0.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073	1,551	1,561	0.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기금은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 1개가 있고, 운용 규모는 2,854억원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	2,160	2,566	2,566	2,854	11.2

주: 총계 기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수입은 17억원이고 총지출은 1,561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원자력기금의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관 원자력기금에 원자력연구개발계정과 함께 집계하고 있어, 원자력기금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의 총수입·총지출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총수입·총지출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6	17	17	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073	1,551	1,561	0.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4. 주요 사업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사업은 원자력 및 방사선으로부터 안전성을 검증, 규제, 강화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단위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588억원으로 전년(663억원) 대비 75억원(11.3%) 감소하였다.

동 단위사업은 2022년 기준으로 원자력안전규제검증기술고도화,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원자력안전규제검증기술고도화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2021년부터 신규로 추진된 사업으로 2022년에도 소규모 증액 편성되었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

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사업 역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1년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추진되고 있는 다부처 사업이다.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사업은 소형모듈원전(SMR) 대상의 규제체계, 규제요건 및 규제기술 등을 개발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신규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원자력안전규제기술개발(R&D)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회 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원자력안전규제검증기술 고도화	일반	0	311	315	1.3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개발	일반	0	40	48	21.3
중소형원자로 안전규제 기반기술 개발	일반	0	0	20	순증
원자력안전연구개발	일반	205	168	103	△38.9
한국원자력안전재단 기획평가관리비	일반	7	7	8	11.3
안전규제 요소·융합 기술개발	일반	49	60	60	0.0
원자력활동검증기반기술개발	일반	41	47	34	△26.7
핵비확산 및 핵안보이행 기술개발	일반	41	30	0	순감
합 계		343	663	588	△11.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원자력안전위원회

제7장 외교통일위원회

제1절 외교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외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320억원, 세출예산은 2조 8,748억원이다.

[외교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43	1,982	2,320	17.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외교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3,300	27,361	28,748	5.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외교부 소관 기금은 국제교류기금, 국제질병퇴치기금으로 총 2개가 있다. 2022년 수정 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3,126억원으로, 전년 수정 계획 대비 778억원(33.1%) 증가하였다.

[외교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국제교류기금	1,277	1,697	1,697	2,205	2,205	30.0
국제질병퇴치기금	572	651	651	921	921	41.3
합계	1,849	2,348	2,348	3,126	3,126	33.1

주: 총계 기준
자료: 외교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외교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3,431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471억원(15.9%) 증가하였다.

[외교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43	1,982	2,320	17.0
국제교류기금	248	412	741	79.8
국제질병퇴치기금	112	566	370	△34.6
합계	1,003	2,960	3,431	15.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2022년 예산 기준 외교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3조 53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644억원(5.8%) 증가하였다.

[외교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3,229	27,326	28,748	5.2
국제교류기금	582	655	681	4.0
국제질병퇴치기금	487	428	624	45.8
합 계	24,298	28,409	30,053	5.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4. 주요 사업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사업은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 및 납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통합관리시스템(가칭)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6억 5,500만원(신규)이다.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유엔 행정예산 분야 제도 구축 및 운영 강화(정보화)	0	0	655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 사업은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을 통하여 유라시아 국가들과의 쌍방향 교류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한 사업이다. 외교부는 2022년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가칭) 건립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한 이후 부지 공모, 설계 공모, 2026년 센터 완공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2022년 예산은 1억원(신규)이다.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한-유라시아 문화교류센터	0	0	100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외교부

제2절 통일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통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7억원, 세출예산은 3,308억원이다.

[통일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	28	17	△40.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통일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395	3,294	3,308	0.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통일부 소관 기금은 남북협력기금 1개이다. 2022년 수정 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1조 5,571억원이다.

[통일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남북협력기금	7,941	16,756	16,756	15,571	15,571	△7.1

주: 총계 기준
자료: 통일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366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205억원(△76.7%) 감소하였다.

[통일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	28	17	△40.7
남북협력기금	331	1,543	349	△77.4
합계	343	1,571	366	△76.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2022년 통일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1조 5,023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74억원(1.9%) 증가하였다.

[통일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895	2,294	2,309	0.7
남북협력기금	466	12,456	12,714	2.1
합계	2,361	14,749	15,023	1.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통일부

4. 주요 사업

DMZ 평화적 이용

DMZ 평화적 이용 사업은 비무장지대(DMZ)의 평화지대화를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평화 체감도를 제고하려는 사업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 사업, DMZ 평화의 길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2년 계획액은 266억 9,800만원이다.

[DMZ 평화적 이용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DMZ평화적이용	4,794	18,411	18,411	26,698	26,698	45.0

자료: 통일부

제3절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1. 재정 현황

2022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0.05억원, 세출예산은 340억원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같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0.04	0.06	0.05	△16.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97	329	340	3.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 주요 사업

자문위원 역량강화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은 지역별·대상별 자문위원 연수, 온·오프라인 통일자료 제공 등을 통해 자문위원의 통일문제 현안 인식과 정책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29억 3,000만원이다.

[자문위원 역량강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자문위원 역량강화	2,962	3,322	2,930	△11.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8장 국방위원회

제1절 국방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국방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81억원, 세출예산은 37조 9,195억원이다.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665억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7,716억원이다.

[국방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351	2,439	2,081	△14.7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728	10,057	7,665	△23.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061	7,398	7,716	4.3
합계	18,140	19,894	17,462	△12.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국방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21,507	358,437	379,195	5.8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8,728	10,057	7,665	△23.8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7,061	7,398	7,716	4.3
합계	337,296	375,892	394,576	5.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국방부 소관 기금은 군인연금기금, 군인복지기금 등 2개가 있다. 2022년 수정 계획 기준 군인연금기금의 운용 규모는 3조 7,212억 원이며, 군인복지기금의 운용 규모는 1조 203억 원이다.

[국방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군인연금기금	35,351	36,074	36,074	37,212	37,212	3.2
군인복지기금	9,215	8,383	8,383	10,203	10,203	21.7
합계	44,566	44,457	44,457	47,415	47,415	6.7

주: 총계 기준

자료: 국방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1조 9,557억 원이다.

[국방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660	1,934	2,001	3.5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6,567	5,801	2,526	△56.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349	1,351	3,026	124.0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군인연금기금	7,025	7,392	7,493	1.4
군인복지기금	4,241	4,487	4,511	0.5
합계	20,842	20,965	19,557	△6.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2022년 예산 기준 국방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39조 7,38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6.4%를 차지한다.

[국방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21,502	327,639	347,152	6.0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4,318	5,917	6,241	5.5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991	2,223	1,328	△40.3
군인연금기금	34,482	35,430	36,569	3.2
군인복지기금	6,421	6,073	6,099	0.4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369,714	377,282 (6.2)	397,389 (6.4)	5.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4. 주요 사업

병 인건비

국방부는 2022년 병 봉급을 당초 계획에 따라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병장 기준 676,100원)으로 지급한다. 이에 따라 병 인건비의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998억원(4.5%) 증가한 2조 3,324억원이다.

[병 인건비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병 인건비	20,879	22,326	23,324	4.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기본급식

기본급식 사업은 장병의 기본체력 및 전투력 유지를 위하여 영내 거주 장병과 영외 거주 간부들의 급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49억원(11.1%) 증가한 1조 5,538억원이다. 특히, 장병의 급식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기본급식비 단가를 25.1% 인상하였다.

[기본급식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기본급식	14,487	13,990	15,538	11.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병내일준비지원

병내일준비지원 사업은 기존의 장병내일준비적금에 1%p 이자를 추가로 지원하고 적금총액의 1/3을 추가로 국가가 지원하여 병사들이 전역 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2,190억원 규모로 신규로 도입되었다.

[병내일준비지원 사업]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병내일준비지원	-	-	2,190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방부

제2절 방위사업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방위사업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233억원, 세출예산은 16조 6,917억원이다.

[방위사업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416	4,529	3,233	△28.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방위사업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57,433	164,335	166,917	3.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2.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방위사업청 소관 총수입은 세입예산 총계와 동일한 3,233억원이다.

[방위사업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416	4,529	3,233	△28.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2022년 예산 기준 방위사업청 소관 총지출은 16조 6,917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3.4조원의 2.7%를 차지한다.

[방위사업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57,433 (3.1)	164,335 (2.7)	166,917 (2.7)	3.4

자료: 방위사업청

3. 주요 사업

보라매(R&D)

보라매(R&D) 사업은 노후한 F-4, F-5 전투기를 대체할 차기 전투기를 국제 공동개발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8조 8,406억원(국방예산 60%, 인도네시아 20%, 국내업체 20%)이며, 사업기간은 2014~2028년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4,541억원으로 전년(9,069억원) 대비 4,528억원 감소하였다.

[보라매(R&D)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보라매(R&D)	10,432	9,069	4,541	△49.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경항공모함

경항공모함 사업은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경항공모함을 건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조 6,49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22~2023년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72억원으로 전년(1억원) 대비 71억원 증가하였다.

[경항공모함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경항공모함	-	1	72	7,10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방위사업청

제3절 병무청

1. 재정 현황

2022년 병무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억원, 세출예산은 2,730억원이다. 병무청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의 총계와 같다.

[병무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	15	3	△80.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병무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104	2,444	2,730	11.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2. 주요 사업

병역의무자 지원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은 병역의무자에게 병역의무 이행 시 소요되는 경비(교통비, 숙박비, 식비)를 실비로 보전해주고 병역의무 이행 중 상해 발생 시 국가가 보상금 및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병역의무자의 병역이행과 복무만료 후 사회복귀 준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사회복무요원 건강보험료 지원 증액, 사회복무요원의 학점취득 원격강좌 수강료 지원확대 그리고 장병내일·사회복귀준비금 신규 지원으로 306억원(99.7%) 증액된 613억원을 편성하였다.

[병역의무자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병역의무자 지원	235	307	613	99.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병무청

제4절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1. 재정 현황

2022년 예산 기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 대비 35억원(34.9%) 증액된 137억원이며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7	102	137	34.9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2. 주요 사업

5·18진상규명지원

5·18진상규명지원 사업은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여 왜곡되거나 은폐된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2021년 대비 15억원(35.6%) 증액된 55억원이며 5·18행불자 유전자 검사 위탁 용역 등 일반연구비 10.5억원, 자료충서 발간 등 일반용역비 3.8억원 등이 증액되었다.

[5·18진상규명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5·18진상규명지원	3	40	55	35.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

제9장 행정안전위원회

제1절 행정안전부

1. 세입세출현황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11억원, 세출예산은 69조 5,137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3억원, 세출예산은 1조 1,512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2조 3,145억원 감소(△3.2%)하였는데,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8조 6,221억원)이 종료되었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은 추경예산 대비 9조 7,177억원 감소(△70.4%)하였다. 일반회계 사업비 중 일반사업의 예산은 2조 7,687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9조 8,305억원 감액(△78.0%)되었고, 정보화사업의 예산은 1조 1,999억원으로 추경예산 대비 1,077억원 증액(9.9%)되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4,523억원 증액(64.7%)되었다.

[행정안전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14	593	611	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1	25	53	112.0
합계	655	618	664	7.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84,316	718,282	695,137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176	6,989	11,512	64.7
합계	689,492	725,271	706,649	△2.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 총수입·총지출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의 총수입은 세입예산 총계와 동일한 664억원이다.

[행정안전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14	593	611	3.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1	25	53	112.0
합계	655	618	664	7.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 행정안전부 소관 회계의 총지출은 세출예산 총계와 동일한 70조 6,649억원이며,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1.3%를 차지한다.

[행정안전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84,316	718,282	695,137	△3.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176	6,989	11,512	64.7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689,492 (13.5)	725,271 (13.0)	706,649 (11.3)	△2.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3. 주요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은 발행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한 상품권을 발행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상품권 발행액의 일정비율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방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결산	2021예산(A)	2022예산(B)	증감률(B-A)/A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6,298	12,522	6,053	△51.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동 사업은 2018년 고용위기지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한시 지원하였으나 이후에도 정부 지원을 통한 발행·판매 확대가 이루어지고 있다. 2022년도에는 지역사랑상품권 15조원 규모에 대한 할인비용 5,000억원(발행액의 4%) 및 지자체 자체발행에 대한 발행비용 지원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 정부 지원예산은 6,053억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내용 및 재원]

연도	지원내용	국고보조(억원)	재원(억원)
'18	고용위기지역 발행액의 10% 지원 * 군산, 거제, 경남 고성, 영암	100	추경예산 60 예비비 40
'19	2.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4%지원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지원	884	예비비 533 특별교부세 351
'20	(본예산)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4%지원 (추경예산)3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8%지원	3,522	본예산 721 추경예산 2,400 특별교부세 401
'21	소 계	12,522	본예산 10,522 추경예산 2,000
	(본예산) 15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8%, 6% 지원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4%, 3% 지원 (2차추경) 약 5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2~4% 지원		
'22	소 계	6,053	본예산 6,053
	(할인비용) 15조원에 대해 발행액의 4% 지원 ※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는 2% 지원 (발행비용) 지자체 자체 발행에 대해 발행액의 0.7% 지원		

자료: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청년실업과 지방소멸위기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만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원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을 만들면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방식의 사업이다. 동 사업은 당초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간 한시적 사업이었으나, 지역경제·청년고용여건 악화 우려 등으로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2022년 예산은 전년도 추경예산 2,450억 원 대비 54억 원이 감소한 2,396억 원이 편성되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347	2,450	2,396	△2.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2022년도에는 코로나19·4차산업 확산으로 인한 급속한 지역산업구조 변화 및 인구감소·고령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청년·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지역 내 청년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까지 지원한 한시사업을 새롭게 세 가지 유형(지역혁신형, 상생기반대응형, 지역포용형)으로 개편하여 지원한다.

먼저 ‘지역혁신형’ 사업은 지역경제와 청년이 함께 혁신·성장할 수 있는 지역특화 정규직 일자리 지원으로,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구조를 전환하여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생기반대응형’ 사업은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과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소멸위기지역 창업 지원’은 소멸위기지역에서의 신규 청년창업을 지원하고, ‘창업성장 플러스 지원’은 서울외 지역에서 창업 초기 청년의 후반 성장 및 정착을 지원하여 지속가능한 지역 청년 일자리 토대를 마련한다.

마지막으로 ‘지역포용형’ 사업은 지역사회경제기업, 사회안전망 분야 등 청년의 지역사회공헌 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을 통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신규 세 가지 유형 외에 2021년까지 한시사업으로 지원한 ‘지역정착형’ 사업과 ‘지역포스트 코로나대응형’ 사업도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신규 채용 없이 기존 채용인원에 대해서 지원한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주요 내용		2021예산 (A)	2022예산 (B)	증감률 (B-A)/A
新 유 형	지역혁신형	지역경제구조변화 대응 및 지역혁신주도 연계한 지속성장 가능한 지역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0	110,250	순증
	상생기반 대응형	기업기반이 약한 지방소멸위기지역 등에서의 창업·성장 정착 지원을 통한 지역청년 일자리창출로 청년과 지역 상생 유도	0	20,625	순증
	지역포용형	지역사회경제기업, 사회안전망 분야 등 청년의 지역사회공헌연계 일자리 창출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0	24,833	순증
기 존	지역정착 지원형	지역기업에 청년 취업 지원을 통한 지역정착 유도	156,873	76,253	△51.4
	창업투자 생태계 조성형	임대료, 사업화 자금 등의 창업지원금과 교육·정주여건 지원으로 지역정착 유도	7,886	0	순감
	민간취업 연계형	지역사회서비스 등 공공·민간부문의 다양한 일 경험과 경력형성 및 교육·정주여건 지원을 통해 향후 민간 취업으로 연계	1,073	0	순감
	지역포스트코로나 대응형	코로나 대응 사업방식으로 전환 또는 관련 신산업 분야 사업장에 청년 신규채용 지원	78,367	6,805	△91.3
	운영비	일반수용비, 홍보비, 일반연구비 등	848	848	0
합 계			245,047	239,614	△2.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안전부

제2절 인사혁신처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인사혁신처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06억원, 세출예산은 4조 2,781억원이다.

[인사혁신처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86	683	606	△11.3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2,362	37,724	42,781	13.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인사혁신처 소관 기금은 공무원연금기금 1개이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운용 규모는 26조 7,951억원으로 2021년 대비 2조 7,337억원(11.4%) 증가하였다.

[인사혁신처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무원연금기금	227,450	240,614	240,614	267,951	267,951	11.4

주: 총계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19조 2,435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조 3,159억원(11.7%) 증가하였다.

[인사혁신처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3	71	67	△5.6
공무원연금기금	156,311	169,205	191,829	13.4
합계	156,364	169,276	192,435	11.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2022년 인사혁신처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22조 4,605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조 1,520억원(5.4%) 증가하였다.

[인사혁신처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759	2,040	2,045	0.3
공무원연금기금	204,020	169,205	222,560	5.5
합계	205,779	213,085	224,605	5.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4. 주요 사업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3단계)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교육의 비대면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정부 내·외의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하여 개인의 직무와 경력에 맞는 맞춤형 학습을 실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인재개발 플랫폼 구축(3단계) 사업을 2021년에 이어 2022년에도 추진 중이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플랫폼 구축을 위하여 43.2억원, 플랫폼 운영을 위하여 7.4억원 등 총 50.6억원이 반영되었다.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 플랫폼 구축(3단계)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국가인재개발 지능형 오픈플랫폼 구축	-	63.4	50.6	△20.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대부(용자)

공무원연금대부(용자)는 공무원 가계운영에 필요한 자금지원을 위한 대출로 공무원의 생활안정 및 금융시장 변화에 따른 안정적인 기금증식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공무원연금대부 수요증가를 반영하여 2022년 계획액은 전년 대비 2,000억원(△21.1%) 감소한 7,500억원이다.

[공무원연금대부(용자) 사업 기금운용계획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공무원연금대부(용자)	9,000	9,500	9,500	7,500	7,500	△21.1

자료: 인사혁신처

제3절 경찰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경찰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9,971억원, 세출예산은 12조 2,381억원이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827억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7억원이다.

[경찰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900	8,639	9,971	15.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23	827	827	0.1
합계	9,823	9,466	10,798	14.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경찰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11,306	119,305	122,381	2.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59	827	827	0.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	46	47	3.1
합계	112,110	120,178	123,255	2.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2. 총수입·총지출

2022년 경찰청 소관 일반회계·특별회계의 총수입은 1조 342억원이다.

[경찰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900	8,639	9,971	15.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70	366	371	1.4
합계	9,270	9,005	10,342	14.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2022년 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12조 2,852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2.0%를 차지한다.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2.6%(3,158억원) 증가한 12조 2,020억원이고,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0.2%(4억원) 증가한 785억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3.1%(1억원) 증가한 47억원이다.

[경찰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11,764	118,862	122,020	2.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804	781	785	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4	46	47	3.1
합 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12,612 (2.0)	119,689 (2.0)	122,852 (2.0)	2.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3. 주요 사업

수사지원

수사지원 사업은 수사기관에 걸맞은 전문성 확보 및 수사현장 활력 제고를 위해 범죄수사에 수반되는 제반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525억원(261.5%) 증가한 2,108억원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수사서류 보관실 개선, 현장수사 지원장비 지원 등 수사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가 증액되었다.

[수사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수사지원	58,921	58,311	210,801	261.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자치경찰지원 프로그램

자치경찰지원 프로그램은 국가경찰사무에서 자치경찰사무로 이관되는 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자치), 아동안전지킴이(자치),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교통안전활동(자치),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등 6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2021년 7월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2021년부터 편성되었으며, 2022년 자치경찰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전년 대비 147억 9,800만원(12.8%) 증액된 1,298억 7,600만원이다.

자치경찰지원 사업의 2022년 예산은 국고보조금(자치단체경상보조, 자치단체자본보조)으로 편성되었으며, 정부가 발표한 재정분권 2단계 추진방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는 사업 대상에 자치경찰사업을 포함하여 2023년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편성될 예정이다.

[자치경찰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자치경찰지원	115,078	129,876	12.8
범죄예방 및 생활질서유지(자치)	9,142	8,892	△2.7
아동청소년보호 및 수사활동(자치)	10,685	10,685	0.0
아동안전지킴이(자치)	57,839	64,516	11.5
교통안전교육홍보(자치)	4,673	4,673	0.0
교통안전활동(자치)	2,919	2,994	2.6
교통과학장비관리(자치)	29,820	38,116	27.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경찰청

제4절 소방청

1. 재정 현황

2022년 소방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으며,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의 총계와 동일하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36억원이며, 세출예산은 2,426억원이다.

[소방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32	28	36	26.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소방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085	2,208	2,426	9.9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2. 주요 사업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동 사업은 재난현장 지휘관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VR시뮬레이션 훈련시스템을 2개 시도소방학교에 설치 지원하는 신규사업으로, 2022년 예산액은 39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다.

[재난현장 지휘역량강화센터 구축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재난현장 지휘역량 강화센터 구축	0	0	3,940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정보화)

동 사업은 중앙 및 시·도 소방본부에서 운영중인 분산·노후된 구급활동 관련시스템을 통합·재구축하여 구급서비스 향상과 대응체계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4년(2022~2025년)이고, 총사업비는 129억원이며, 2020년 ISP용역수행을 완료하여, 시스템 구축을 위해 2022년 예산 14억 300만원을 편성하였다.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 시스템 구축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119구급현장대응 스마트시스템 구축	132	0	1,403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소방청

제5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재정 현황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어 있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0억원이며 세출예산은 8,726억원이다. 2022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4,874억원(126.5%) 증가하였다. 주요 증액 사업은 제20대 대통령선거, 재외선거 및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경비 등(2,618억 3,100만원), 선거보전금(1,267억 6,000만원), 재·보궐선거관리경비(22억 3,500만원) 등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2022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의 총계와 같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2	15	40	162.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107	3,852	8,726	126.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주요 사업

대통령선거관리

대통령선거관리는 2022년 3월 9일 실시하는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준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공직선거법」 제277조에 근거하여 선거경비를 선거일전 180일이 속하는 연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2017년 제19대 대통령선거 이후 예산이 편성되지 않다가 2021년에 순증되었으며, 2022년도에 2,491억원이 증가하였다. 주요 내역은 선거관리일반(223억원), 선거운동관리(370억), 사전투표관리(649억원), 선상투표관리(4억원), 투표관리(838억), 개표관리(171억원), 계도홍보(99억원), 예방단속(293억원), 정책선거(6억원), 선거여론조사심의(3억원), 인터넷선거보도심의(2억원) 등이다.

[대통령선거관리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대통령선거관리	-	171	2,662	1,460.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제10장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1절 문화체육관광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605억원, 세출예산은 3조 2,376억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19억원, 세출예산은 6,169억원이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각각 1,429억원이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추경 대비 0.9% 감소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 예산 증가 등으로 5.9% 증가하였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2.2%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사업종료 등의 사유로 4.7% 감소하였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0% 감소하였다.

[문화체육관광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본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07	611	605	△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2	223	219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188	1,443	1,429	△1.0
합계	1,827	2,277	2,252	△1.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7,554	30,559	32,376	5.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88	6,476	6,169	△4.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010	1,443	1,429	△1.0
합 계	35,653	38,477	39,974	3.9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기금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언론진흥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등 6개가 있다.

기금 운용 규모는 문화예술진흥기금, 영화발전기금, 지역신문발전기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전년대비 감소하여 2022년 전체 운용 규모는 2021년 수정계획 대비 7,202억원(11.7%) 감소한 5조 4,557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문화예술진흥기금	4,480	5,239	5,396	5,240	△3.0
영화발전기금	2,272	3,052	3,052	2,004	△34.3
지역신문발전기금	111	100	100	95	△4.4
언론진흥기금	328	340	340	382	12.1
관광진흥개발기금	13,335	16,624	26,031	18,734	△28.0
국민체육진흥기금	27,183	26,839	26,839	28,102	4.7
합 계	47,708	52,195	61,759	54,557	△11.7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3조 149억원으로, 2021년 추경 예산 2조 9,792억원 대비 357억원(1.2%) 증가하여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0.6%를 차지하고 있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60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9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10억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 611억원, 영화발전기금 487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2억원, 언론진흥기금 253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524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7,439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07	611	605	△0.9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32	223	219	△2.2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54	7	10	44.2
문화예술진흥기금	547	679	611	△10.1
영화발전기금	149	611	487	△20.3
지역신문발전기금	3	2	2	0.0
언론진흥기금	256	255	253	△0.8
관광진흥개발기금	6,690	10,412	10,524	1.1
국민체육진흥기금	15,541	16,992	17,439	2.6
합계	23,880	29,792	30,149	1.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7조 4,833억원으로, 2021년 추경 예산 7조 2,957억원 대비 1,875억원(2.6%) 증가하여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2%를 차지하고 있다.

회계·기금별로는 일반회계 3조 573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69억원,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1,424억원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 3,880억원, 영화발전기금 1,100억원, 지역신문발전기금 88억원, 언론진흥기금 213억원, 관광진흥개발기금 1조 3,659억원, 국민체육진흥기금 1조 7,726억원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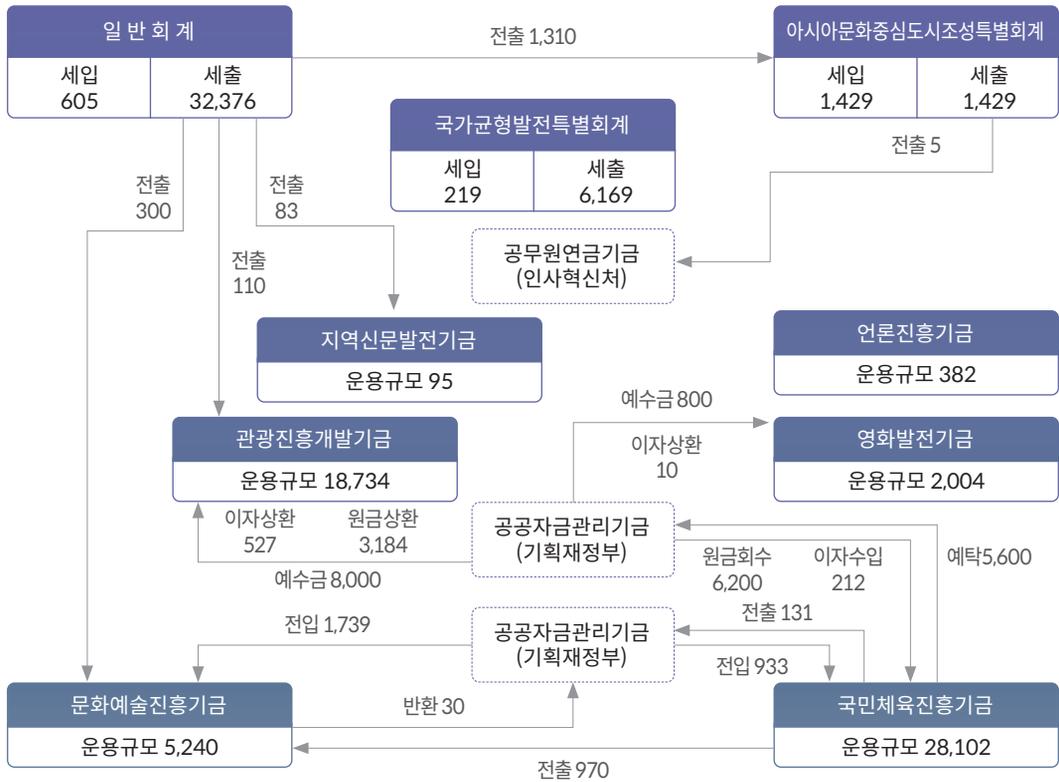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5,949	28,506	30,573	7.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088	6,476	6,169	△4.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특별회계	1,007	1,439	1,424	△1.0
문화예술진흥기금	3,222	3,496	3,880	11.0
영화발전기금	1,219	1,453	1,100	△24.3
지역신문발전기금	85	93	88	△4.9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언론진흥기금	217	212	213	0.6
관광진흥개발기금	12,563	13,476	13,659	1.4
국민체육진흥기금	15,094	17,807	17,726	△0.5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66,444 (1.3)	72,957 (1.2)	74,833 (1.2)	2.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22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4. 주요 사업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은 영상미디어센터 활성화 및 지역 영상산업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한 영상

산업 육성, 애니메이션·캐릭터 장르에 대한 제작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유통 활성화 및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620억원(216.5%) 증액된 906억원으로 영화관 인력지원(302억원) 및 영화관 특별기획전(164억원) 사업을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영화산업 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전주 독립영화의 집 건립', 'K-Film 제작기반 및 영상산업 허브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지역 영상산업 육성을 도모할 계획이다.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추경(B)	증감률 (B-A)/A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59	286	906	216.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사업은 능력과 역량은 있으나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 콘텐츠 제작·유통 업체에게 투자함으로써, 거대 신생기업(유니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모태펀드 출자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240억원(20.9%) 증액된 1,388억원으로, 제작초기 분야와 투자소의 분야의 기업 또는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모험투자펀드' 2,001억원을 조성한다. 또한 국내 드라마 제작사들의 IP를 확보하여 세계 경쟁력을 보유한 신한류 핵심사업으로서의 K-드라마 육성을 위해 드라마 펀드 400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22년 총 2,401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어 국내 콘텐츠 제작사에게 투자하는 사업이다.

[위풍당당 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위풍당당콘텐츠 코리아펀드출자	1,300	1,148	1,388	20.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제2절 문화재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문화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0억원, 세출예산은 1조 511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97억원이다. 세입예산은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인한 문화유산 관람객 증가 등을 예상하여 전년 대비 22.8%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고도 보존 및 육성, 세계유산 등재 및 보존관리, 문화유산 방문자센터 건립 등 체계적인 문화재 보존·관리 사업 운용을 위해 전년 대비 4.8% 증가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37.4% 증가하였다.

[문화재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10	448	550	22.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재청

[문화재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762	10,026	10,511	4.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2	41	97	137.4
합계	8,814	10,067	10,608	5.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재청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문화재청 소관 기금은 문화재보호기금 1개가 있다. 문화재보호기금은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2022년도 문화재보호기금의 운용 규모는 1,551억원이다. 문화재돌봄사업 및 소규모·긴급 매장문화재 조사 지원 등의 사업비는 증가하였으나,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및 국내외 문화재 긴급 매입 및 관리지원 등의 사업비는 일부 감소하였다.

[문화재청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문화재보호기금	1,550	1,419	1,419	1,551	9.3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전년 대비 30.8%(156억원) 증가한 663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0.01%를 차지한다.

[문화재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10	448	550	22.8
문화재보호기금	64	59	113	90.9
합계	374	507	663	30.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재청

2022년 문화재청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전년 대비 5.9%(669억원) 증가한 1조 2,085억 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0.2%를 차지한다. 전년 대비 동아시아 역사도시 진흥원 건립 9억원, 양산 통도사 문화공간 건립 6억원을 각각 신설하였고, 고도 보존 및 육성에서 104억원, 문화재 수리기술 진흥에서 61억원 등이 각각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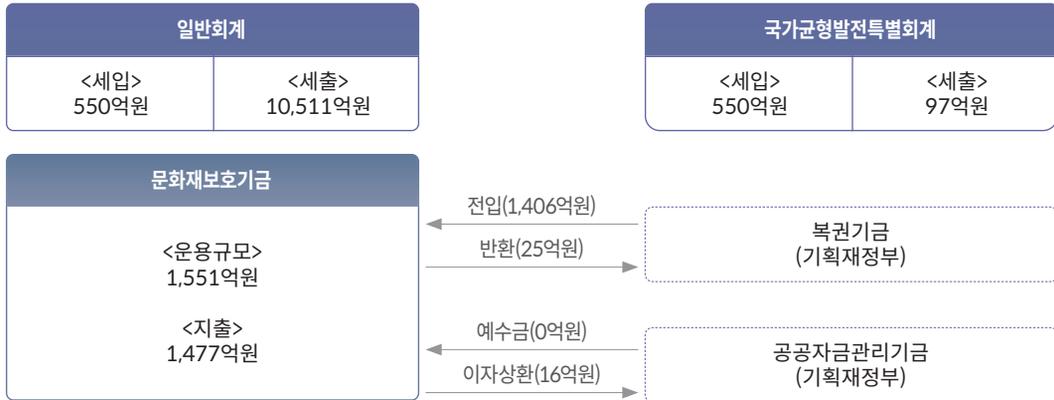
[문화재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762	10,026	10,511	4.8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2	41	97	136.6
문화재보호기금	1,364	1,349	1,477	9.5
합계	10,178	11,416	12,085	5.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문화재청

[2022년도 문화재청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문화재청

4. 주요 사업

문화재보수정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은 국가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원형보존과 멸실·훼손 방지를 위해 총액계상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0억원(1.8%) 증액된 4,040 억원이다. 동 사업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보조 사업으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70%, 등록문화재 보수정비 50%, 유물전시관 유지보수 30%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다.

문화재는 한번 훼손되면 원형복원이 불가능하고, 외부자연환경에 민감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하므로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 및 원형복원, 문화재 지정(보호)구역 내 사유지 매입·정비, 문화재보존 기반시설(축대, 배수로 등) 보수, 관람편의시설 등 문화재 주변 환경개선 등을 추진한다.

[문화재 유형별 문화재보수정비 사업 예산 현황(2022년)]

(단위: 건, 억원)

구분	합계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 문화재
		소계	국보	보물	사적	명승	천연 기념물	국가민속 문화재	
건수	1,861	1,714	63	461	555	72	356	207	147
사업비	4,040	3,874	107	779	2,295	287	256	150	166

주: 1. 국가지정문화재는 국보, 보물, 국가무형문화재, 사적, 명승, 천연기념물, 국가민속문화재임
2. 국가등록문화재는 국가 또는 시·도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 중에서 보존 및 활용을 위해 문화재청장이 등록한 문화재로서, 주로 근대문화유산이 대상임

자료: 문화재청

제11장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제1절 농림축산식품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5개의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1회 추경 기준 세입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07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조 2,884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29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50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2,428억원으로 총 16조 6,098억원으로 편성되었다. 이는 2022년도 본예산 14조 7,098억원 대비 1조 9,000억원 증가한 규모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전년도 세계잉여금 1조 9,000억원 신규 편성에 의한 증액규모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3	209	207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7,411	144,838	142,884	△1.3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8	429	429	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2	218	150	△31.1
양곡관리특별회계	21,071	20,573	22,428	9.0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1	0	0	0
합계	158,925.1	166,267	166,098	△0.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음으로 1회 추경 기준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8,943억원,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2조 3,85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2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526억원, 양곡관리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조 2,428억원으로 총 19조 2,972억원을 편성하고 있다. 2022년 본예산과 세출규모는 동일하나,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내 농어촌특별세계정의 세입항목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 1조 9,000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면서 세출항목 중 계정간 거래인 농어촌특별세계정에서 구조개선계정으로의 전출액을 1조 9,000억원을 순증한 반면, 회계간 거래인 일반회계의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전출금을 1조 9,000억원 감액하여 총계 기준의 세출예산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농림축산식품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2,760	38,198	38,943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8,361	126,313	123,855	△1.9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9	251	221	△1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806	7,792	7,526	△3.4
양곡관리특별회계	20,769	20,573	22,428	9.0
합계	198,965	193,127	192,972	△0.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기금은 축산발전기금,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어업재해해보험기금, 농지관리기금,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양곡증권정리기금 등 7개가 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의 운용규모는 10조 6,735억원으로 전년 대비 3.7% 증가하였다. 축산발전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6.2% 감소한 1조 445억원,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4.4% 감소한 4,721억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0.8% 감소한 2조 5,842억원, 농어업재해해보험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72.5% 감소한 1,450억원을 편성한 반면, 농지관리기금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15.0% 증가한 3조 2,784억원,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의 운용규모는 전년대비 0.2% 증가한 2조 4,222억원으로 운용규모가 큰 2개 기금의 증액이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전체 기금운용계획 증액 편성을 이끌었으며, 양곡증권정리기금의 운용규모 또한 전년대비 226.8% 증가한 7,271억원으로 편성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축산발전기금	9,675	10,354	11,138	10,445	10,445	△6.2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7,472	5,512	5,512	4,721	4,721	△14.4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2,743	26,051	26,051	25,842	25,842	△0.8
농어업재해보험기금	1,193	5,279	5,279	1,450	1,450	△72.5
농지관리기금	31,845	28,507	28,507	32,784	32,784	15.0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6,475	24,172	24,172	24,222	24,222	0.2
양곡증권정리기금	12,603	2,225	2,225	7,271	7,271	226.8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359	0	0	0	0	0
합계	113,365	102,100	102,884	106,735	106,735	3.7

주: 총계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12조 5,839억원으로, 1회 추경 기준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2.3%를 차지한다.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의 총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2.4% 증가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3	209	207	△1.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7,189	67,011	69,812	4.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8	429	429	0.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2	218	150	△31.1
양곡관리특별회계	5,000	4,420	4,420	0.005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0.1	0	0	0
축산발전기금	7,241	6,993	5,672	△18.9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131	4,190	4,259	1.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0,886	22,824	24,293	6.4
농어업재해보험기금	76	490	430	△12.2
농지관리기금	16,052	16,039	16,118	0.5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	25	45	80.0
양곡증권정리기금	14	3	3	-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8	0	0	-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121,054.1 (2.5)	122,851 (2.4)	125,839 (2.3)	2.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16조 8,767억원으로, 전년대비 0.7% 증가한 규모이다. 다만, 1회 추경으로 정부 총지출이 본예산 기준 607.7조원에서 624.3조원으로 확대된 반면,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은 변동이 없어 당초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이 2.8%에서 2.7%로 축소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703	7,208	7,370	2.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5,444	51,114	50,517	△1.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69	251	221	△12.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7,749	7,792	7,526	△3.4
양곡관리특별회계	19,769	19,573	22,428	14.6
축산발전기금	9,220	11,156	9,621	△13.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5,234	5,180	3,897	△24.8
농산물가격안정기금	21,700	22,930	24,294	5.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506	1,506	1,006	△33.2
농지관리기금	15,511	16,989	17,943	5.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26,226	23,921	23,943	0.1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기금	1,359	0	0	0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59,690 (2.9)	167,620 (2.8)	168,767 (2.7)	0.7

주: 1.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2. 양곡증권정리기금은 「양곡관리법」 제25조¹⁸⁾에 의거한 양곡기금 부채(공공자금관리기금)상환에 대해 소요되는 기금으로 총지출에서 제외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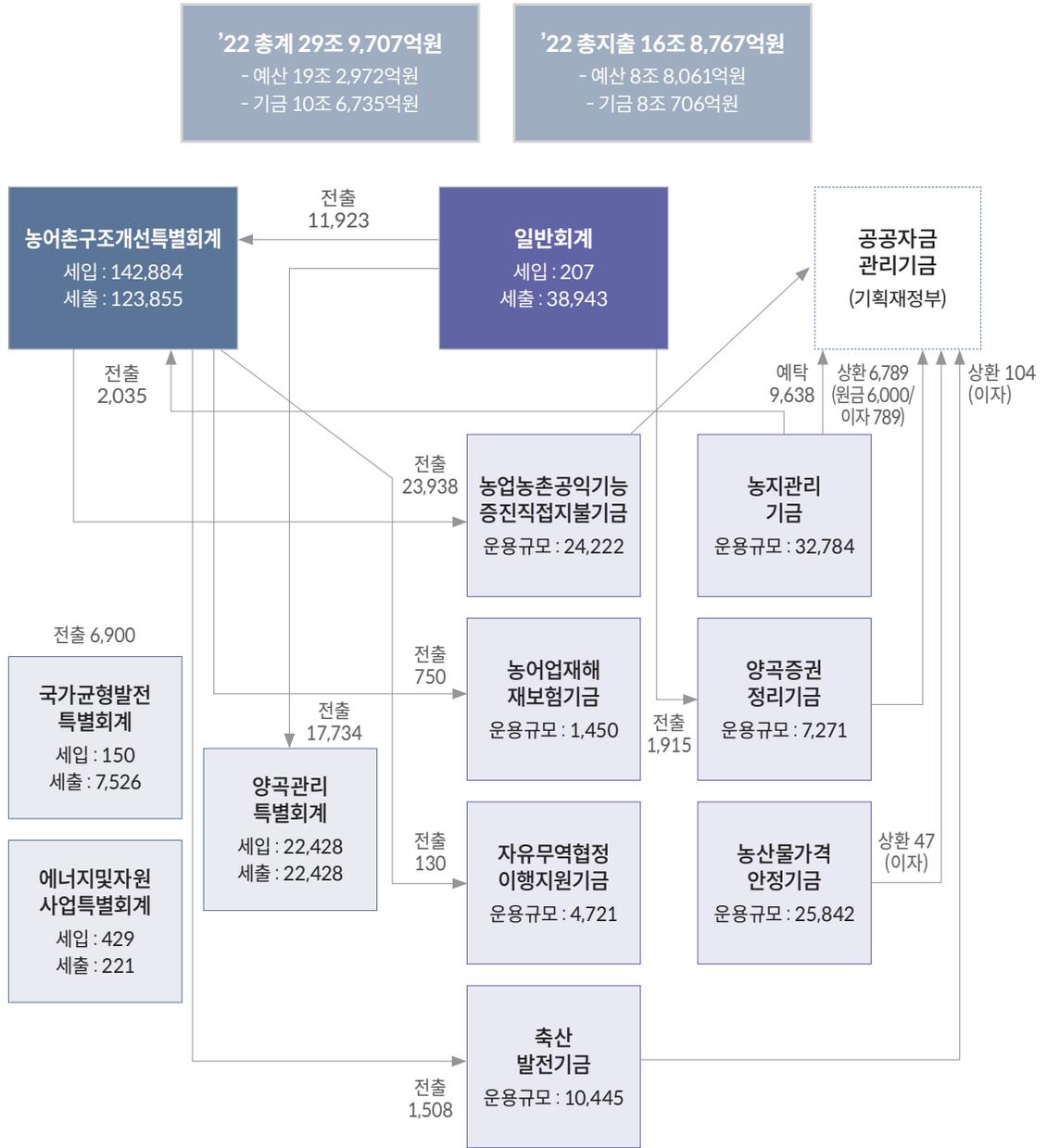
18) 「양곡관리법」

제25조(양곡증권정리기금의 설치) ① 부채의 정리 및 양곡증권의 관리 등에 관한 사업을 하기 위하여 양곡증권정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종전의 「양곡증권법」에 따라 기금으로 조성된 자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3. 제25조의4에 따라 정부의 회계로부터 받는 자금
4. 출연금
5. 기금의 결산상 잉여금

[2022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재정구조]

(단위: 억원, %)



주: 총계 기준(1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4. 주요 사업

식량안보 기반 확충

2022년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콩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생산 및 소비 등 자급기반을 지속확충하고, 재해 대비 및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위한 농업 SOC 개보수·정비 지원 확대를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2022년도에는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정부양곡매입비, 비축지원, 농업생산기반정비를 위한 농업 SOC 사업(11개 세부사업) 등 19개 세부사업에 4조 8,911억원을 편성하였다.

[2022년 식량안보 기반 확충 관련 주요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예산	사업내용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22,314	밀·콩 등 식량안보 취약품목에 대한 자급기반·유통 여건 개선을 위해 장비·가공시설 등 지원
정부양곡매입비	1,428,958	국민식량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공공비축양곡, APTERR 미곡 매입·비축
비축지원	562,021	밀·콩 등 국내생산 부족 또는 수급 불안정 농산물 구매 또는 수입 비축
농업 SOC사업(11개 세부사업)	2,029,715	수리시설유지관리, 수리시설개보수, 농촌용수개발, 농촌용수관리, 배수개선, 가뭄대비용수개발 등
고품질쌀유통활성화	24,967	벼 건조·저장시설 개보수 등 현대화 지원
식량작물소비기반구축	6,212	홍보·마케팅지원 등으로 식량작물의 소비기반을 구축하여 식량자급 기반 유지
발작물산업육성	9,275	발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생산자를 조직화·규모화하기 위한 역량강화, 품질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등 지원
수입양곡대	432,694	쌀관세화 이후 WTO 규정에 따른 TRQ물량 수입
정부양곡관리비	374,956	정부양곡(공공비축미, APTERR, TRQ쌀) 보관, 가공, 운송 등 지원
합 계	4,891,112	

주: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공간정비 및 활력 제고 관련 사업

농업인력 감소 및 고령화뿐만 아니라 농촌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이 더욱 심화될 전망으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농촌 공간정비와 인프라 확충을 통해 농촌을 '살고싶은 공간'으로 조성하고, 미래 농업·농촌 인력구조 개선 및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청년농과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맞춤형농지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3개 세부사업) 등 18개 세부사업에 1조 7,234억원을 편성하여 농업·농촌의 활력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2022년 농촌 공간정비 및 활력제고 관련 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 예산	사업내용
청년농업인영농정착지원	38,899	청년창업농에게 농업·농촌 정착지원을 위한 영농정착지원금 지급(최장 3년, 월 최대 100만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	23,615	귀농·귀촌 희망자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을 위한 교육·상담·임시주거·유치 프로그램 등 지원
맞춤형농지지원(용자)	812,314	고령·은퇴 농업인 등의 농지를 매입·임차하여 청년농업인·귀농인 등에게 매도·임대 지원
일반농산어촌개발(지역자율, 제주, 세종 3개 세부사업)	584,739	농산어촌지역의 여메니티 증진 및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의 기초생활수준을 높임으로써 인구유지 및 지역별 특화발전 유도
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 *농어촌지역으로만 작성	91,500	농촌 등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생활에 필요한 인프라 확충 및 주거환경개선 등을 통해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
농촌형교통모델	20,928	교통인프라가 취약한 농촌지역에 소형버스, 택시 등을 활용한 맞춤형 교통서비스를 지원하여 교통 사각지대 해소
청년농촌보금자리조성	800	만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등에게 공동보육, 문화 등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조성
농촌유휴시설활용창업지원	1,800	농촌지역의 유휴시설을 창업·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하여 농촌지역 일자리 창출 및 활력 증진
농공단지형 스마트그린 기술도입 모델	2,825	노후 농공단지에 스마트 교통·안전 인프라 등을 구축하여 농공단지 활성화 도모
농업·농촌교육훈련지원	49,307	농업전문경영인 및 후계농업인 등 육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귀농귀촌활성화지원(정보화)	7,620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준비에서 정착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농촌고용인력지원	11,157	농촌일손부족문제 완화를 위해 농촌인력중개센터, 인력중개 플랫폼 등 지원
농식품유통교육훈련	2,095	농식품 유통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지원

사업명	2022 예산	사업내용
농기계임대	27,800	임대사업소를 통해 귀농인 등에게 농기계 임대 지원
농식품모태펀드출자	40,000	정부와 민간인이 매칭펀드를 결성 유망한 농식품경영체를 발굴하여 투자
스마트팜청년창업보육센터	8,000	청년들이 스마트팜을 활용하여 창농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부터 창업초기까지 전과정 보육관리 지원
합 계	1,723,399	

주: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제2절 해양수산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해양수산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9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87억원,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조 6,45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45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8억원으로 총 1조 7,411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89	477	491	2.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96	279	287	2.9
교통시설특별회계	16,463	17,041	16,450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8	101	145	43.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	38	38	0
합 계	17,546	17,936	17,411	△2.9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조 7,377억원이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8,127억원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6,450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358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075억원으로 총 7조 4,387억원이다.

[해양수산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9,973	34,453	37,377	8.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11	17,462	18,127	3.8
교통시설특별회계	14,087	17,041	16,450	△3.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21	3,048	1,358	△55.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75	1,199	1,075	△10.3
합계	59,667	73,203	74,387	1.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해양수산부 소관 기금으로 수산발전기금이 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액은 9,267억 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982억원(9.6%)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수산발전기금	7,605	10,249	10,249	9,267	△9.6
합계	7,605	10,249	10,249	9,267	△9.6

주: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7,876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031억 원(20.5%) 감소하였다.

[해양수산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89	476	491	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96	279	287	2.9
교통시설특별회계	1,196	2,089	1,178	△43.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8	101	145	43.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0	38	38	0
수산발전기금	6,036	6,923	5,737	△17.1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8,315 (0.2)	9,907 (0.2)	7,876 (0.1)	△20.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 해양수산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6조 3,84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0%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798억원(2.9%) 증가하였다.

[해양수산부 총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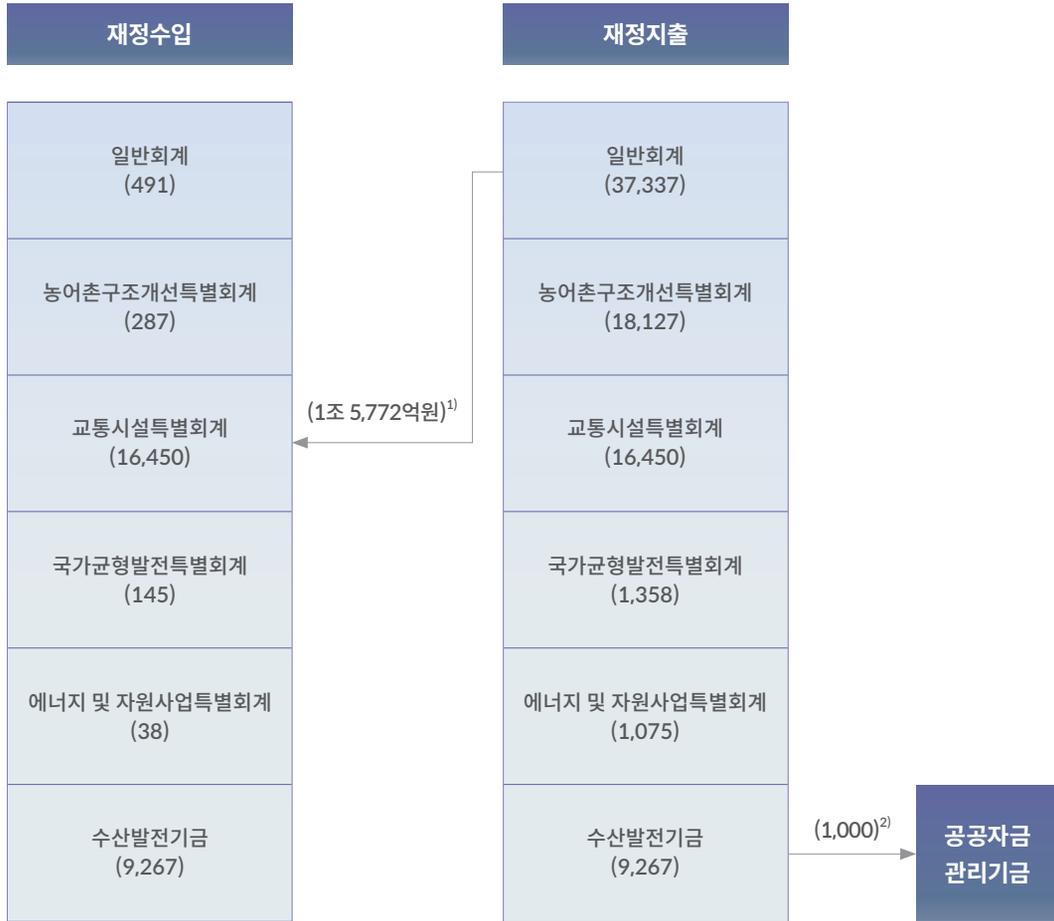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6,706	19,501	21,604	10.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3,611	17,462	18,127	3.8
교통시설특별회계	14,087	15,443	16,450	6.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21	3,048	1,358	55.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75	1,199	1,075	△10.3
수산발전기금	5,270	5,398	5,236	△3.0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51,670 (1.1)	62,051 (1.1)	63,849 (1.0)	2.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2022년도 해양수산부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1) 일반회계에서 교통시설특별회계(해운항만)로의 전출금

2)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1. 총계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4. 주요 사업

어촌뉴딜 300

어촌뉴딜 300 사업은 어촌의 재생·혁신성장을 견인하는 지역밀착형 생활 SOC 사업으로, 낙후된 어촌·어항 필수 기반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역의 고유자원을 활용한 어촌·어항 통합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어촌지역에 대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약 3조원(국비 2조 1,000억원, 지방비 9,0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현재까지 사업대상지 총 300개소(2019년 70개소, 2020년 120개소, 2021년 60개소, 2022년 50개소)를 모두 선정하였고, 2021년까지 총 1.6조원을 투자하였다. 2022년에는 신규대상지 50개소와 기선정된 250개소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5,236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어촌뉴딜300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어촌뉴딜 300	4,342	5,219	5,236	0.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수산부

제3절 농촌진흥청

1. 재정 현황

2022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입예산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51억원(41.1%) 증가한 175억 원이다. 일반회계가 117억원으로 전년 대비 22억원(23.2%) 증가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17억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29억원으로 전년 대비 15억원(141.7%) 증가하였다.

[농촌진흥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07	95	117	23.2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6	17	17	-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3	-	12	순증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	12	29	141.7
합계	203	124	175	41.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022년도 농촌진흥청 소관 세출예산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932억원(8.5%) 증가한 1조 1,893억원이다. 일반회계가 1조 6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29억원(9.5%) 증가하였고,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가 281억원으로 전년 대비 76억원(21.3%) 감소하였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923억원으로 전년 대비 79억원(9.4%) 증가하였다. 농촌진흥청 소관 총수입·총지출은 세입 세출예산 총계와 동일하다.

[농촌진흥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9,272	9,760	10,689	9.5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52	357	281	△2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42	844	923	9.4
합계	10,666	10,961	11,893	8.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2. 주요 사업

농업 분야 연구개발 사업

농촌진흥청은 농림식품연구개발사업에서 기초응용 및 현장실용화 중심의 R&D 사업 투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립농업과학원, 국립식량과학원,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축산과학

원 등 4개 연구기관을 소속기관으로 두고 있다. 농촌진흥청 본청은 외부공모 등 공모형 연구사업을 추진하며, 소속 연구기관은 각각 농업과학기술연구(국립농업과학원), 작물시험연구(국립식량과학원), 원예특작시험연구(국립원예특작과학원), 축산시험연구(국립축산과학원)를 경상 연구 방식으로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연구개발사업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2년 전체 사업비 1조 31억원 중 71.1%인 7,133억원이 연구개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

[농촌진흥청 사업비 현황]

(단위: 억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연구개발(a)	5,594	6,601	7,133	8.1
기술보급	3,081	2,137	2,514	17.6
정보화	190	186	242	30.1
기타행정지원	84	170	142	△16.5
합 계(b) (a/b)×100	8,949 (62.5)	9,094 (72.6)	10,031 (71.1)	10.3 -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농촌진흥청

제4절 산림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도 산림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94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9,301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 세입예산은 614억원으로 총 1조 856억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다.

[산림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984	888	941	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779	8,563	9,301	8.6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97	664	614	△7.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	-	-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	-	-	-
합계	10,579	10,115	10,856	7.3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림청

다음으로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9,861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301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037억원,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계정) 세출예산은 614억원으로 총 3조 2,813억원의 세출예산을 편성하였다. 2022년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탄소중립도시숲조성(2,688억원) 등의 사업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동 회계의 2022년도 세출예산은 순감되었다.

[산림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7,350	19,290	19,861	3.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8,321	8,563	9,301	8.6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41	2,338	-	순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81	2,349	3,037	29.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75	664	614	△7.5
합계	30,468	33,204	32,813	△1.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림청

2. 총수입·총지출

2022년도 산림청 소관 총수입은 3,990억원으로, 2021년 추경예산 대비 130억원(3.4%) 증가하였다.

[산림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983	888	941	6.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3,167	2,788	2,849	2.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3	185	199	7.6
합계	4,243	3,860	3,990	3.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림청

2022년도 산림청 소관 총지출은 2조 3,903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1,738억원(6.8%) 감소하였다. 총지출 감소의 주요 원인은 2022년 기후대응기금이 신설되면서 탄소중립도시숲조성(2,688억원) 등의 사업이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에서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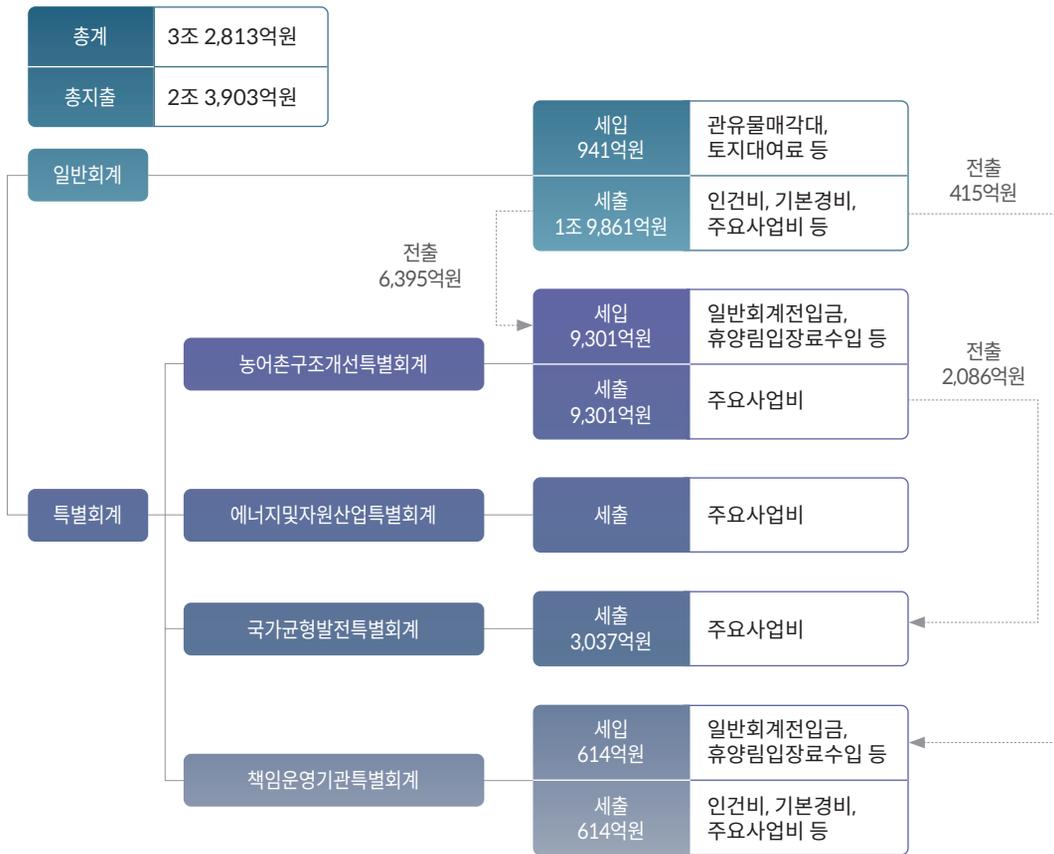
[산림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9,443	13,498	13,050	△3.3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79	6,805	7,216	6.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741	2,338	-	순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83	2,349	3,037	29.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762	650	599	△7.8
합계	22,800	25,641	23,903	△6.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림청

[2022년도 산림청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산림청

3. 주요 사업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증진

산림청은 「2050 탄소중립 선언」(2020.12) 및 관계부처 합동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발표(2021.12)에 맞추어 2021년 12월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확정·발표하였다. 동 전략은 나무를 심고, 가꾸고, 이용하는 산림의 순환경영과 보전·복원을 통해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4개의 핵심과제¹⁹⁾를 제시하고 있으며, 산림청은 조직 운영 및 성과

19) 4대 정책방향은 ①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② 산림의 탄소흡수능력 강화, ③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④ 산림탄소흡수원 보전·복원으로 구성된다.

관리를 탄소 중립 목표 중심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2022년에는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증진과 관련한 주요사업으로 총 8,381억원이 편성되었다. ① 생육환경 개선을 통해 산림의 경제·생태적 가치를 증진하는 숲가꾸기 사업은 2,308억원이 편성되었고, ② 국가 주도의 임도 개설을 통해 목재생산 기반을 확대하는 임도시설 사업이 2,094억원이 편성되었으며, ③ 경제림 및 큰나무 등을 육성하기 위한 조림사업이 1,291억원이 편성되었고, ④ 생활권 미세먼지 유입을 저감하는 미세먼지 차단숲, 도심내 오염물질·대기 순환을 위한 바람길숲 등을 조성하는 도시숲 조성 사업이 2,688억원이 편성되었다.

[산림탄소흡수원 유지·증진 관련 주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세부사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숲가꾸기	1,978	1,945	2,308	18.6
임도시설	1,745	1,765	2,094	18.6
조림	1,193	1,191	1,291	8.4
탄소중립도시숲조성 ¹⁾	1,741	2,338	2,688	15.0
합 계	6,657	7,239	8,381	15.8

주: 1) 탄소중립도시숲조성 사업은 2022년부터 기획재정부 소관 기후대응기금으로 이관·편성됨

1.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제5절 해양경찰청

1. 재정현황

2022년 본예산 기준 해양경찰청 소관 총수입은 세입예산 총계와 동일한 52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5조원의 0.001%미만이다.

[해양경찰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42	69	52	△24.6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0.003)	(0.001)	(0.00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2022년 해양경찰청 소관 총지출은 세출예산 총계와 동일한 1조 6,856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0.3%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446억원(9.4%) 증가하였다.

[해양경찰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4,557	15,410	16,856	9.4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0.3)	(0.3)	(0.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2. 주요 사업

함정건조 사업

함정건조 사업은 해양사고 예방 및 구조, 불법조업 외국어선 단속 등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경비함정 신규증강 및 노후함정 대체건조 등을 위한 사업이다. 2022년에는 서해 경비해역 전력증강을 위한 대형함정(3000톤) 신규도입 및 노후함정 대체 등으로 전년 대비 125억원이 증액된 1,373억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다.

[함정건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함정건조		170,202	124,843	137,299	9.98	
20 완료	500톤 경비함 3척	28,406	-	-		
	500톤 경비함 5척	37,664	-	-		
	100톤 형기정 2척	7,180	-	-		
21 완료	3000톤 경비함 1척	30,430	5,000	-		
	1500톤 경비함 1척	35,587	5,000	-		
	100톤 형기정 3척	9,329	11,240	-		
	고속단정 교체(18대)	1,075	4,324	-		
진행 사업	100톤 경비정 4척	3,394	29,920	24,640		
	3000톤 경비함 1척	762	18,000	26,100		
	100톤 경비정 4척	655	13,600	19,720		
	100톤 형기정 4척	382	8,000	11,600		
	예인정 2척	160	3,200	4,640		
	3000톤 경비함 1척	8,949	13,500	13,500		
	100톤 경비정 3척	5,080	7,650	7,650		
	100톤 형기정 2척	200	3,000	3,000		
	예인정 1척	800	1,200	1,200		
	3000톤 경비함 1척	-	900	18,000		
	예인정 2척	-	160	3,200		
	함정건조 지원	149	149	149		
	22 신규	3000톤 경비함 1척(신)	-	-	1,000	
		3000톤 경비함 1척(대)	-	-	900	
500톤 경비함 1척		-	-	350		
100톤 경비함 1척		-	-	170		
예인정 1척		-	-	100		
고속단정 교체(12대)		-	-	840		
방탄보트 2대		-	-	340		
형사기동정 2척(설계)		-	-	2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해양경찰청

제12장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제1절 산업통상자원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 3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00억원, 세출예산은 6조 3,841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39억원, 세출예산은 8,845억원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조 2,696억원, 세출예산은 1조 7,672억원이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조 4,830억원, 세출예산은 1조 6,833억원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173	2,092	2,100	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16	1,097	839	△23.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55,264	55,660	52,696	△5.3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20,745	25,541	24,830	△2.8
합계	79,298	84,390	80,465	△4.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6,715	66,303	63,841	△3.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53	9,114	8,845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4,821	29,899	17,672	△40.9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2,843	15,615	16,833	7.8
합 계	113,132	120,931	107,191	△11.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금은 ①전력산업기반기금, ②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③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④무역보험기금으로 총 4개가 있다. 2022년 당초 계획 기준 기금 운용계획액은 18조 439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2,889억원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전력산업기반기금이 1,616억원 감소,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 882억원 감소,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이 7,306억원 증가, 무역보험기금이 1,919억원 감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전력산업기반기금	49,652	63,940	63,940	62,324	62,324	△2.5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2,203	2,652	2,652	1,770	1,770	△33.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57,202	64,812	64,812	72,118	72,118	11.3
무역보험기금	38,448	46,146	46,146	44,227	44,227	△4.2
합 계	147,505	177,550	177,550	180,439	180,439	1.6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5조 8,119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5조원의 1.0%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9,743억원(14.4%) 감소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173	2,092	2,100	0.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116	1,097	839	△23.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8,104	28,914	22,885	△20.9
전력산업기반기금	24,039	25,024	22,843	△8.7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899	960	966	0.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8,445	9,775	8,486	△13.2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64,776 (1.4)	67,862 (1.3)	58,119 (1.0)	△14.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11조 1,573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8%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787억원(2.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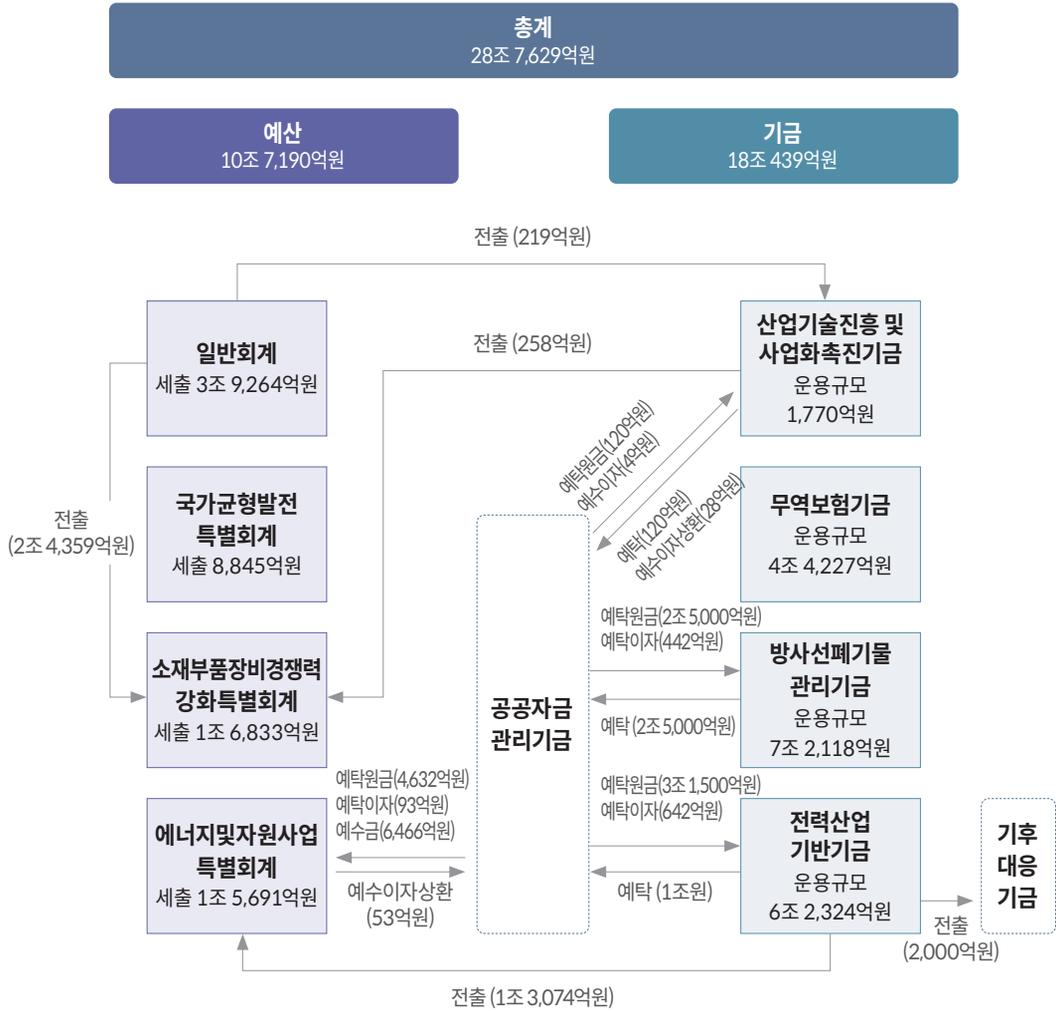
[산업통상자원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6,132	40,939	39,264	△4.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8,753	9,114	8,845	△3.0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6,261	19,706	15,691	△20.4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12,843	15,615	16,833	7.8
전력산업기반기금	26,715	26,923	29,079	8.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390	439	424	△3.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721	1,623	1,437	△11.5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102,815 (2.3)	114,360 (1.9)	111,573 (1.8)	△2.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4. 주요 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이용시설 설치비를 용자 지원하여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며, 2022년도 예산은 전년대비 1,250억원 증가한 6,590억원이다. 동 사업은 생산 및 시설자금, 운전자금, 에너지신산업융자 등 3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생산 및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제조·생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지

원 대상으로 하며 농촌태양광·산업단지 및 공장태양광·풍력 및 기타·도심형 태양광·설치를 위한 용자 지원이 포함된다. 동 자금의 2022년 예산은 6,510억원이다. 농촌태양광 용자는 농업인 및 축산인이 태양광을 설치하고 발전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산업단지 태양광 용자에서는 산업단지 내 기존건물의 지붕이나 유휴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을 용자 지원한다. 그리고 도심형 태양광은 2022년에 건축물 태양광에서 시설물 태양광으로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이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2022년 집행계획]

(단위: 억원)

내역사업		2022년 예산 산출내역	2022 예산
생산 및 시설자금	농촌태양광	1,470백만원/MW × 299MW × 81%(평균용자율)	3,570
	산단 및 공장태양광	1,470백만원/MW × 84MW × 81%(평균용자율)	1,000
	풍력 및 기타	25,000백만원 × 2개소 + 50,000백만원 × 1개소	1,000
	도심형 태양광	1,470백만원/MW × 37MW × 81%(평균용자율)	440
	생산자금	연료전지 및 바이오 등 산업시설 생산자금	500
운전자금		750백만원 × 4개소	30
에너지신산업용자		833백만원 × 6개소	50
합 계			6,590

주: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은 DRAM 제조 공정 기술 고도화, PIM(Processing In Memory)용 차세대 상용메모리(MRAM, PRAM) 아키텍처 및 공정·소재·장비 상용화 기술 개발을 통해 PIM용 메모리 기술 등을 고도화 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2년 예산은 200억원이 신규 편성되었다.

PIM 반도체는 기존 메모리 반도체와 다르게 메모리와 AI로 구현되는 연산시스템에 함께 내재된 반도체이다. PIM 반도체는 메모리와 CPU 간 데이터 전송을 통한 연산을 최소화하여 전력사용량을 줄이고 연산 속도를 증진시킬 수 있다. 동 사업에서는 PIM 반도체 분야 기술개발을 통한 시제품 제작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간 총사업비 4,027억원 중 국비 3,517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역할을 분담하여 수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PIM용 메모리기술 분야를 담당하며, 2028년까지 국비 총 957억원을 투입하여 동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PIM 인공지능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의 부처 및 지원분야별 중 주요 내용]

(단위: 백만원)

지원분야	부처	역할분담	2022 예산	총정부 지원금
PIM 설계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DRAM 융합 연산로직 PIM 설계 기술 개발, 프로세서·DRAM 융합 PIM, 휘발성 내장형 메모리 PIM, 저항형 메모리 기반 PIM, 전하형 메모리 기반 PIM, 차세대 신소자 메모리 기반 PIM 설계 기술 개발 등	13,602	143,328
PIM용 메모리 설계·제조	산업통상 자원부	PIM 컴퓨팅 구조 적용 위한 메모리 인터페이스·상용 플랫폼 기술, PIM 기반 컴퓨팅 시스템용 SCM 제어 반도체 기술, PRAM·MRAM 기반 PIM 제조를 위한 장비 사용기술 등	19,994	95,740
PIM 신소자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Si공정 호환성을 갖는 신규 PIM 소자 및 어레이 개발, 신재료 기반 PIM 소자 및 어레이 개발, PIM 소자 및 단위 셀 IP 집적공정 및 검증기술 개발 등	9,906	62,360
PIM 기반기술	과학기술 정보 통신부	PIM기반 Beyond Von Neumann 아키텍처 및 SW, PIM 인터페이스, PIM 반도체 설계 기반기술, PIM 성능평가 기술, PIM 통합 인력양성 센터 구축	7,392	45,948

주: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은 해외의존도가 높아 주력산업의 공급망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품목 중심의 기술개발 지원으로 소재산업의 기술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한 R&D 사업이며, 2022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54억원 증가한 1,842억원이다. 동 사업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국무회의 의결(2019.8)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2020년 예산에 신규 편성되었다. 동 사업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총사업비 1조 4,723억원 중 국비 9,897억원을 투입하여 핵심전략 품목 자립화에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2년도 예산은 100대 핵심품목 등과 관련한 55개 총괄과제 및 178개 세부과제의 계속 사업비로 구성된다.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내역사업	주요내용	2022년 예산
전략핵심소재자립화 기술개발	핵심소재의 해외의존도 완화 및 공급안정성 확보를 위한 전략핵심소재 개발	1,842

주: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수소 지원 신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에 액화수소 관련 3개 사업을 신규 편성하였다. 3개 사업은 액화수소 검사기반구축 사업,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 및 시설안전기술개발 사업,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사업이며, 3개 사업의 2022년 예산은 130억원이다.

[2022년도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액화수소 지원 신규 사업의 예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0	0	4,246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및시설안전기술개발	0	0	4,500
액체수소충전소용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 및 운영실증	0	0	4,300
합 계	0	0	13,04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사업은 액화수소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시험검사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이며, 액화수소충전핵심부품 및 시설안전기술개발 사업은 액화수소 충전부품 및 시설에 대한 성능평가 기준 마련 등을 위한 사업이고, 액체수소충전소용 저장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기술개발 및 실증 사업은 액화수소 충전용기 개발과 광역버스 운행을 통한 액화수소 충전 실증 등을 위한 사업이다. 이 중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사업과 액화수소 충전핵심부품 및 시설안전기술개발 사업은 민간기업 등에서 구축한 액화수소 관련 시설·장비에 대한 시험평가와 인증을 준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며, 2022년에 신규 편성되어 사업별 지원내용이 2023~2025년에 완료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액화수소 지원 신규사업 추진계획]

(단위: 억원)

지원분야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년)	총정부 출연금
액화수소검사기반구축 (한국가스안전공사 출연)	시험동 건축	2022~2023	297
	설비 및 장비구축	2023~2024	

지원분야	사업내용	사업기간 (년~년)	총정부 출연금
액화수소충전 핵심부품 및 시설안전 기술개발	액화수소 저장탱크 압력용기류 진공·단열 성능평가 기술개발	2022~2025	260
	액화수소 충전 핵심부품 성능검사 기술개발	2022~2025	
	수소충전소 설계·운전 안전성 검증 표준모델 개발	2022~2024	
	액화수소 충전소 안전성 평가·실증 및 안전기준 개발	2022~2024	
액체수소충전소용 저장 용기 및 수소공급시스템 기술개발및운영실증	액체수소 저장 및 공급시스템 개발	2022~2024	230
	수소광역버스 실증		
	액체수소 충전소 안전기준 및 기술기준 개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2절 중소벤처기업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의 특별회계(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각각 구성된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1,847억원으로 전년 대비 293억원(18.9%)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2조 600억원으로 전년 추경대비 3조 5,757억원(140.0%) 증가하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634억원, 세출예산은 21조 1,998억원이고, 특별회계 중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213억원, 세출예산은 5,064억원이며, 2020년 신설된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3,538억원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40	1,334	1,634	2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9	220	213	△3.2
합 계	1,499	1,554	1,847	18.9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업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37,794	176,038	211,998	144.0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586	3,353	3,538	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811	5,452	5,064	△7.1
합계	145,191	184,843	220,600	140.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기업기업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중소기업기업부 소관 기금은 중소기업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기술보증기금,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등 3개가 있다. 2022년 수정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37조 6,870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5,976억원(△1.6%)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7,467억원(3.1%), 기술보증기금 4,375억원(15.0%)이 각각 증가하였고, 중소기업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이 1조 7,818억원(△15.6%) 감소하였다.

[중소기업기업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중소기업기업창업 및 진흥기금	114,929	105,728	114,436	96,618	96,618	△15.6
기술보증기금	33,401	29,106	29,106	33,481	33,481	15.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9,516	56,218	239,304	97,649	246,771	3.1
합계	247,846	191,052	382,846	227,748	376,870	△1.6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기업기업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7조 1,969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1.3%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조 5,466억원(27.4%) 증가하였다.

[중소벤처기업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40	1,334	1,634	22.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59	220	213	△3.2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32,615	34,588	41,754	20.7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0,407	20,361	28,368	39.3
합 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54,521 (1.1)	56,503 (1.1)	71,969 (1.3)	27.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 제1회 추경예산 기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33조 7,533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5.4%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조 3,206억원 (△6.4%) 감소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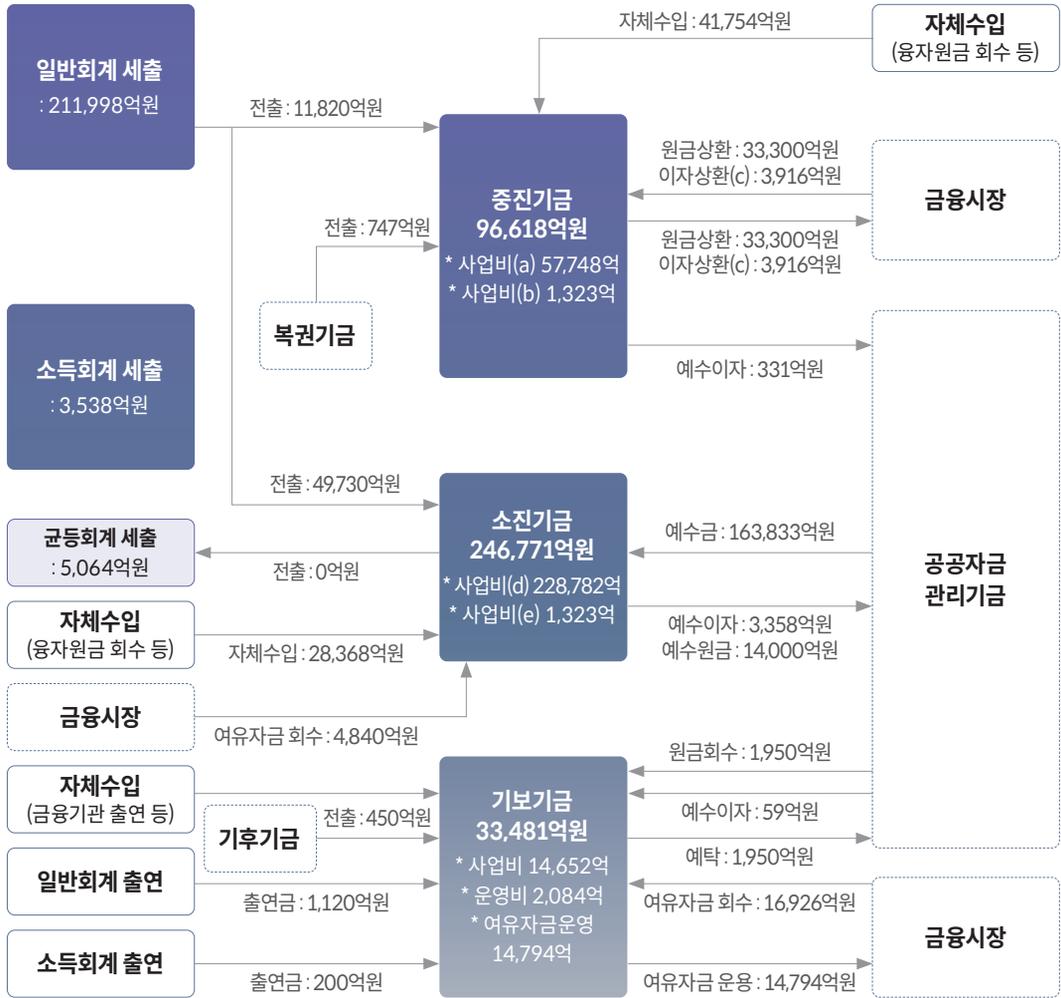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2,619	43,334	36,530	△15.7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 특별회계	2,586	3,353	3,538	5.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811	5,452	5,064	△7.1
중소벤처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78,725	77,606	62,987	△18.8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6,672	230,994	229,414	△0.7
합 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255,413 (4.6)	360,739 (6.0)	337,533 (5.4)	△6.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4. 주요 사업

창업지원

창업지원사업의 2022년 예산은 전년 추경 대비 542억원(6.3%) 감소한 8,006억원으로, 이중 창업사업화지원(4,328억원)과 민관협력창업자육성(1,303억원)이 사업규모가 크다.

[창업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B-A	(B-A)/A
합 계	8,548	8,006	△542	△6.3
- 창업저변확대	532	420	△112	△21
- 창업사업화지원	4,737	4,328	△409	△8.6
- 민관협력창업자육성	1,024	1,303	279	27.2
- 중소기업재기지원	140	168	28	20
- 창업생태계기반구축	1,266	977	△289	△22.8
- 지역기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100	69	△31	△31
- 창업인프라지원	749	741	△8	△1.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창업사업화지원은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축진을 위하여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사업화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세부내역은 예비창업패키지(983억원), 초기창업패키지(925억원), 창업도약패키지(900억원), 혁신분야창업패키지(1,361억원) 등이다.

민관협력창업자육성은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유망 창업자를 발굴, 육성하여 성공적인 창업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민관공동창업자발굴육성(778억원), 사내벤처 육성(150억원), 대-스타해결사 플랫폼(76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

중소기업 정책자금은 중소기업의 성장기반 확충, 일자리 창출, 경영위기 대응 등에 필요한 자금을 용자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5조 975억원이며, 이는 전년 수정계획 대비 9,125억원(15.2%) 감소한 규모이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용자는 혁신창업사업화자금(2조 3,000억원), 투융자복합금융(1,200억원), 신시장진출지원자금(4,000억원), 신성장기반자금(1조 6,200억원), 긴급경영안정자금(2,000억원), 재도약지원자금(4,200억원), 매출채권팩토링(375억원) 등 7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1		2022		증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합계	54,100	60,100	50,975	50,975	△9,125	△15.2
- 혁신창업사업화자금	22,500	25,500	23,000	23,000	△2,500	△.8
- 투융자복합금융	1,400	1,400	1,200	1,200	△200	△14.3
- 신시장진출지원자금	5,000	5,000	4,000	4,000	△1,000	△20.0
- 신성장기반자금	17,700	17,700	16,200	16,200	△1,500	△8.5
- 긴급경영안정자금	5,000	8,000	2,000	2,000	△6,000	△75.0
- 재도약지원자금	2,500	2,500	4,200	4,200	1,700	68.0
- 매출채권팩토링	-	-	375	375	375	순증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에 재도약지원자금은 전년 수정계획 대비 1,700억원(68.0%) 증액되었으며, 중소기업의 경영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적기 사업전환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디지털, 친환경 등 산업생태계 급변에 따라 기술혁신형 재창업 기업을 중점 지원한다.

또한, 매출채권팩토링 사업을 신설(375억원) 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 자금조달과 연쇄부도 방지를 위해 중소기업 보유 매출채권을 인수, 경영안정성 확보 및 경제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지원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기금운용계획 변경된 소상공인지원사업 예산(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21조 8,445억원이며, 이는 전년 수정계획 대비 1조 2,034억원(△5.2%) 감소한 규모이다.

이중 소상공인성장지원이 11조 1,248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경사업은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5조 1,436억원), 시장경영혁신지원(4,302억원) 등 12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다.

[소상공인지원사업 예산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1		2022		증 감	
	당초	수정(A)	당초	수정(B)	B-A	(B-A)/A
합 계	47,443	230,479	79,660	218,445	△12,034	△5.2
- 소상공인지원(융자)	37,000	56,000	42,000	42,000	△14,000	△25.0
- 소상공인창업지원	238	238	229	229	△9	△3.8
- 소상공인성장지원	1,314	139,425	1,463	111,248	△28,177	△20.2
- 소공인특화지원	743	743	365	365	△378	△50.9
- 소상공인재기지원	717	1,319	1,196	1,196	△123	△9.3
- 소상공인자영업자를위한 생활혁신형기술개발	40	40	37	37	△3	△7.5
-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45	251	314	314	63	25.1
-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220	204	770	770	566	277.5
- 시장경영혁신지원	3,625	3,892	4,302	4,302	410	10.5
- 전통시장주차환경개선	752	752	-	-	△752	순감
-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369	2,369	1,644	1,644	△725	△30.6
- 지역신용보증지원	180	983	4,904	4,904	3,921	398.9
- 소상공인손실보상제도화	-	24,263	22,436	51,436	27,173	112.0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2022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었다. 코로나19 피해 저신용 소상공인 14만명에게 1% 초저금리(1천만원 한도)로 희망대출을 공급할 예정이며, 소상공인의 폐업 부담 완화와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을 강화하였다.

또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함께 이루어진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소상공인에게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에 11조 1,248억원이 편성되었고, 방역조치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제도화 사업에 5조 1,436억원이 편성되었다.

제3절 특허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특허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추경예산 기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7,938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545억원 (24.2%) 증가하였다.

[특허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824	6,393	7,938	24.2
합계	6,824	6,393	7,938	24.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특허청

[특허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290	6,393	7,938	24.2
합계	6,290	6,393	7,938	24.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특허청

2. 총수입·총지출

2022년 추경예산 기준 특허청 소관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총수입은 5,943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5조원의 0.1%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444억원(8.1%) 증가하였다. 총지출은 5,474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0.1%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예산 대비 221억원(4.2%) 증가하였다.

[특허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5,562	5,499	5,943	8.1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5,562 (0.1)	5,499 (0.1)	5,943 (0.1)	8.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특허청

[특허청 총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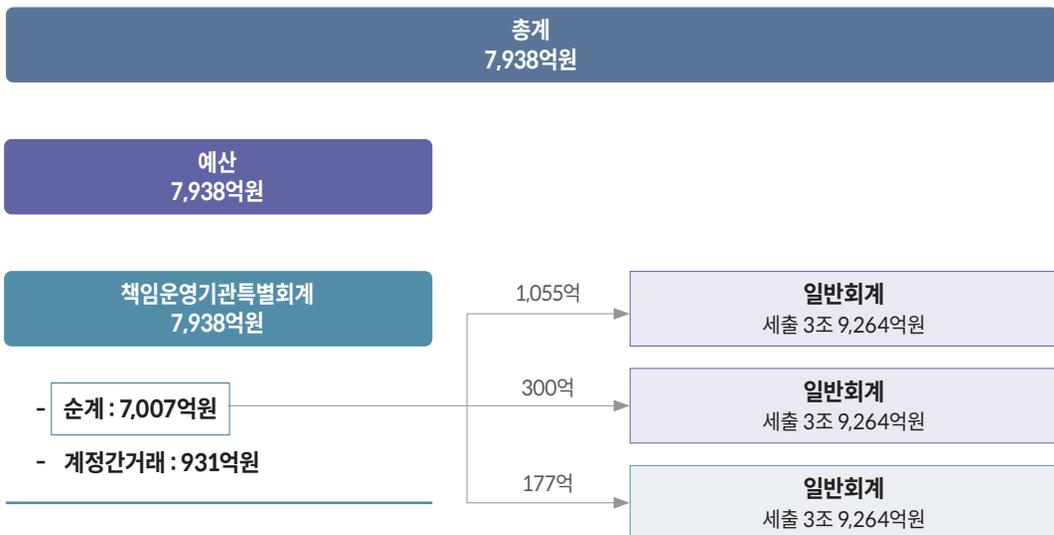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25	5,253	5,474	4.2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925 (0.1)	5,253 (0.1)	5,474 (0.1)	4.2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특허청

[2022년도 특허청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총계 기준
자료: 특허청

3. 주요 사업

IP-R&D 전략지원 사업

특허청은 중소기업의 R&D 역량 및 특허·논문 분석 등을 통해 특허대응 전략 및 우수특허 창출 전략 등이 포함된 연구개발 전략 수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IP-R&D 전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도 예산은 435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1억원(7.7%) 증가하였다.

동 사업은 IP-R&D 전략지원 사업의 기존 내역 사업인 '기술혁신 IP 융합전략지원'과 '정부 R&D 특허전략지원' 사업이 사업 구조 단순화 및 자원배분 최적화 차원에서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에 통합되었다.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전략 지원 사업에서는 연구개발 전략지원을 신청한 중소기업 중 지원대상을 선발하고, 한국특허전략개발원의 지재권전략 전문가와 지재권 분석 전문기관이 전담팀을 구성하여 기업별 특허전략과 연계한 연구개발 전략수립을 지원한다. 기업별 전략수립 과정은 기업역량 파악, 특허 및 논문 등 분석, 핵심특허 대응 전략 수립 등의 단계로 진행된다.

[특허청 심사·심판처리 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IP-R&D 전략지원	36,935	40,352	43,470	7.7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27,821	28,622	39,975	39.7
기술혁신 IP융합 전략지원	6,055	5,640	0	순감
정부 R&D 특허 전략지원	0	4,200	0	순감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특허청

제13장 보건복지위원회

제1절 보건복지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3개의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131억원, 세출예산은 62조 6,699억원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8억원, 세출예산은 490억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은 175억원, 세출예산은 2,928억원이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824억원, 세출예산은 1,824억원이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대부분(92.5%)은 국가보조사업의 집행잔액 반납금인 기타경상이전수입(4,745억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건복지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373	5,030	5,131	2.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	8	8	△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8	-	175	순증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51	1,745	1,824	4.6
합계	7,881	6,783	7,138	3.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72,526	588,011	626,699	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4	546	490	△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46	3,814	2,928	△2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879	1,745	1,824	4.6
합계	578,524	594,115	631,941	6.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연금기금, 응급의료기금으로 총 3개가 있다. 2022년 기금운용계획액은 135조 6,633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281억원(△2.0%)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566억원(1.3%) 증가하고, 국민연금기금이 303억원(△2.3%) 감소하였으며, 응급의료기금이 1,560억원(50.7%)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수정(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국민건강증진기금	41,168	43,629	44,006	44,572	1.3
국민연금기금	1,640,734	1,337,688	1,337,688	1,307,422	△2.3
응급의료기금	12,459	3,079	3,079	4,639	50.7
합계	1,694,361	1,384,397	1,384,773	1,356,633	△2.0

주: 2022년 수정계획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77조 4,050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14.0%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조 9,979억원 증가(5.4%)하였다.

[보건복지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373	5,129	5,131	0.0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9	8	8	△2.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8	-	175	순증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495	458	447	△2.3
국민건강증진기금	30,459	31,049	29,308	△5.6
국민연금기금	723,935	697,207	737,131	5.7
응급의료기금	883	220	1,850	740.4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761,402 (15.9)	734,071 (14.3)	774,050 (14.0)	5.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 예산 기준 보건복지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98조 403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5.7%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5조 2,971억원(5.7%)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 총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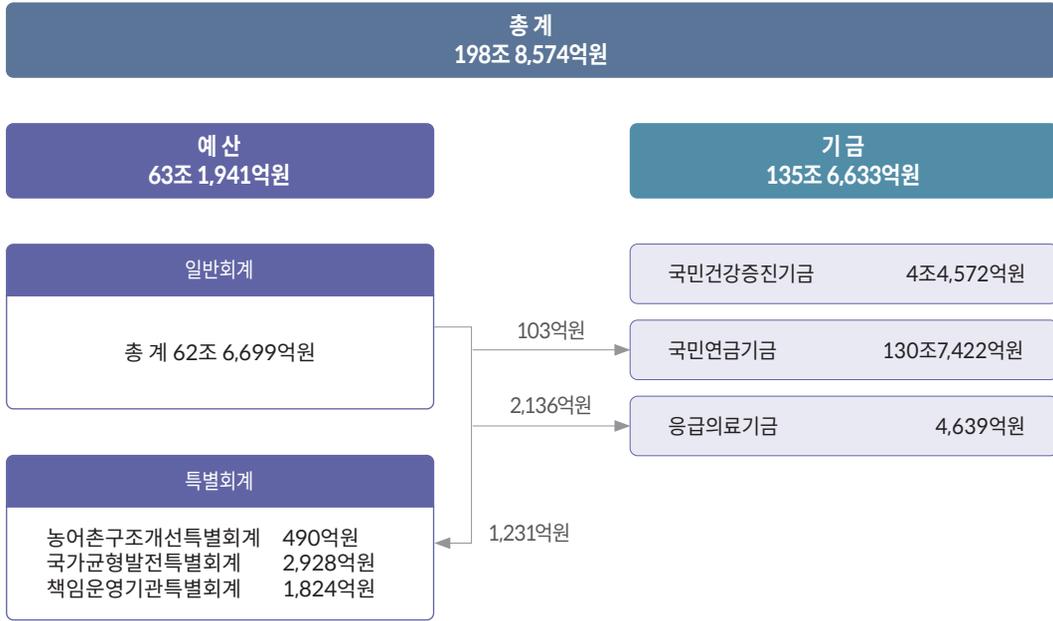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69,168	584,696	623,228	6.6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4	546	490	△1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646	3,814	2,928	△23.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769	1,645	1,719	4.5
국민건강증진기금	33,696	34,242	34,630	△0.2
국민연금기금	264,539	300,025	314,649	4.8
응급의료기금	11,144	2,464	2,759	12.0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884,436 (16.1)	927,432 (15.2)	980,403 (15.7)	5.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2022년도 보건복지부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4. 주요 사업

기초생활보장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의료급여)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생계·의료·해산·장제 등 필요한 급여를 지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국가가 보장해주는 사업이다. 종전의 통합급여체계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여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2015년 7월부터 시행된 맞춤형 급여체계에서는 상대적 빈곤 수준 및 급여별 특성을 고려하여 각 급여별로 수급기준을 다층화하는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되었으며, 제도개편에 따라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각각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이관되었다.

보건복지부 소관 기초생활보장급여는 기초생활급여와 의료급여로 구분된다. 2022년 기초생활급여(생계급여, 해산·장제급여) 예산은 5조 2,996억원이며, 이 중 생계급여는 2021년 예산 대비 6,093억원(13.1%) 증가하였고, 해산·장제급여는 15억원(4.5%) 증가하였으며, 의료급여는 8조 1,232억원으로 2021년 예산 대비 4,427억원(5.8%) 증가하였다.

2022년 생계급여 예산은 기준 중위소득 인상에 따른 4인 가구 기준 최대급여액이 146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약 5.5% 인상되었고,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 폐지 등 제도개선 사항이 반영되었으며, 의료급여 예산은 의료보장성 강화, 부양의무자 완화 등에 소요되는 진료비 증가분이 반영되었다.

[2022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기초생활급여	40,327	46,888	52,996	13.0
- 생계급여	40,011	46,555	52,648	13.1
- 해산·장제급여	316	333	348	4.5
의료급여	70,038	76,805	81,232	5.8
합 계	110,365	123,693	134,228	8.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급

기초연금 지급 사업은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를 대상으로 기초연금을 지급하여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2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80만원, 부부 288만원) 이하인 노인에 대해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하위 70% 이하(선정기준액: 단독 180만원, 부부 288만원)에 해당하는 노인에게 월 최대 307,500원이 지급되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에 대하여 산정된 기초연금액의 20%를 감액한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 예산은 16조 1,140억원으로 2021년 대비 1조 1,503억원 증가하였고, 2022년 지원대상은 628.3만명으로 2021년 597.6만명 대비 30.7만명 증가하였다.

장애인연금 사업은 장애에 따른 근로능력의 감소로 인한 소득상실과 장애로 인한 추가 지출비용으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에게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여 경제적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중전 1급, 2급, 3급 중복)의 70% 수준을 대상으로 하며, 2022년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122만원, 부부 195.2만원) 이하인 중증장애인에게 기초급여액은 월 최대 307,500원, 부가급여액은 연령 및 소득계층에 따라 20,000원~387,500원을 지급한다. 장애인연금 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

여 수급자에 대한 기초급여액을 2019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하였고, 이후 2020년에는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2021년에는 차상위초과자까지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였다. 2022년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제6조에 따라 전년도 전국소비자 물가변동률(2.5%)을 반영하여 38만7천5백원으로 결정되었다. 2022년 장애인연금 지급 예산은 8,326억원으로 2021년 대비 35억원 증가하였다.

[2022년 기초연금 지급 및 장애인연금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기초연금 지급	131,760	149,635	161,140	7.7
장애인연금	7,861	8,291	8,326	0.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가입자 지원

건강보험은 질병발생에 따른 예기치 못한 위험부담을 사회적 연대책임 하에 분산시켜 질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려는 사회적 장치로, 2021년 6월말 기준으로 약 5,140만명이 가입되어 있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부담하는 보험료 수입, 정부지원금과 기타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며, 재정 규모는 2020년 지출액 기준 73조 7,716억원으로 8대 사회보험²⁰⁾ 중 지출규모가 가장 크다. 건강보험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 하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자체회계로 운영되는 정부재정 외 사회보험으로, 예산 편성 및 결산에 대한 국회의 심의·의결을 받지 않는데, 이는 정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타 사회보험 재정이 기금의 형태로 정부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것과 차이가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건강보험 재정에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국민건강보험법」과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일반회계 14%, 국민건강증진기금 6%)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 재정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다.²¹⁾ 2022년도 정부지원금은 2021년도 대비 9,992억원 증가한 10조 4,992억원(일반회계 8조 6,843억원, 국민건강증진기금 1조 8,149억원)이다.

20)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이상 공적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포함한다.

21)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나, 실제 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17년 13.6%, 2018년 13.2%, 2019년 13.3%, 2020년 14.8%로 나타나고 있다. 2021년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현재 집계 중으로, 2022년 1분기 중 발표 예정이다.

[건강보험재정 현황]

(단위: 억원)

구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A)	512,151	550,357	602,840	641,902	미정	미정
지출(B)	572,913	622,937	708,886	737,716	미정	미정
정부지원(C)	67,839	70,802	77,803	92,283	95,720	104,992
- 일반회계	48,828	52,001	59,721	73,482	76,554	86,843
- 건강증진기금	19,011	18,801	18,082	18,801	19,167	18,149
당기수지(A-B+C)	7,077	△1,778	△28,243	△3,531	미정	미정

주: 현금흐름 기준, 2020~2021년 정부지원은 추경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제2절 식품의약품안전처

1. 재정 현황

2022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1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2개 특별회계(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01억원, 세출예산은 6,579억원이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천만원, 세출예산은 23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38억원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16	321	501	56.4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0.08	0.1	0.1	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18	0	0	0
합계	316	321	501	56.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627	6,046	6,579	8.8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22	24	23	△4.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43	40	38	△5.0
합계	5,692	6,110	6,640	8.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2. 주요 사업

국산 백신 개발 지원 및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은 백신·혈액제제 등 바이오의약품의 신속한 제품화와 수출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정보제공·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제도 운영을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한 사용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2022년 예산은 전년 대비 133% 증가한 280억원으로, 국산 백신 개발 지원과 글로벌 백신허브 구축을 위한 예산이 증액되었다.

코로나19 백신 등 국산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해 '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여 차세대 백신 개발의 기초상당부터 품질·비임상·임상시험 분석 등 종합상당과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백신 제조용 세포주 공급을 위한 '국가 백신 셀뱅크'를 구축하고, 해외 규제기관 인허가 지원을 위한 '실습형 교육시설'을 마련하여 국산 백신의 경쟁력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단위: 백만원, %)

사업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6,495	12,059	28,049	132.6
- 바이오의약품 등 국제 경쟁력 강화	3,276	7,929	24,061	203.5
- WHO 협력센터 운영 등 국제협력	814	1,027	983	△4.3
-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관리 규제 인프라 구축	1,474	1,850	1,850	0
- 바이오의약품 GMP 선진화 및 안전관리 강화	741	908	809	△10.9
- 인체조직 및 원료혈장 안전관리 강화	187	345	347	0.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

제3절 질병관리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질병관리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 특별회계(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6억원, 세출예산은 7조 5,013억원이다.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338억원, 세출예산은 338억이다.

[질병관리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¹⁾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	26	56	115.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45	335	338	0.8
합계	151	361	393	8.8

주: 1)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¹⁾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336	63,352	75,013	18.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9	335	338	0.8
합계	6,445	63,688	75,351	18.3

주: 1)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질병관리청은 국민건강증진기금, 응급의료기금 2개를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²²⁾ 2022년 기금운용계획액은 6,349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354억원(5.9%) 증가하였다. 기금별로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이 293억원(4.9%) 증가하고, 응급의료기금이 61억원(112.7%)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¹⁾	2021		2022 수정(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국민건강증진기금	6,459	5,930	5,940	6,233	4.9
응급의료기금	43	55	55	116	112.7
합계	6,502	5,985	5,995	6,349	5.9

주: 1)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총계 기준

2. 2022년 수정계획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보건복지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질병관리청 소관 회계의 총수입은 142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0.002%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예산 대비 37억원(35.2%)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¹⁾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	26	56	115.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30	79	86	8.8
합계	36	105	142	35.2

주: 1)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22) 「국민건강보험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가 보건복지부장관인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 중 일부를 배정받아 사용하고 있다.

2022년 예산 기준 질병관리청 소관 회계의 총지출²³⁾은 8조 1,495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3%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조 2,004억원(17.3%) 증가하였다.

[질병관리청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¹⁾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336	63,178	74,802	18.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06	318	321	1.0
국민건강증진기금	6,459	5,940	6,256	5.3
응급의료기금	43	55	116	111.0
합계	12,944	69,491	81,495	17.3

주: 1) 질병관리청 조직개편('20년 9월) 후 소관 결산 금액

1. 기금의 경우 「구건강증진법」 및 「응급의료법」에 따라 복지부 소관인 보건복지부에서 배정받아 사용 중임.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2022년도 질병관리청 재정구조]

(단위: 억원)

총계	
<세입> 393	<세출> 75,351

일반회계	전출(212)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 56</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출> 75,013</td> </tr> </table>	<세입> 56	<세출> 75,013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r> <td style="text-align: center;"><세입> 126</td> <td style="text-align: center;"><세출> 338</td> </tr> </table>	<세입> 126	<세출> 338
<세입> 56	<세출> 75,013					
<세입> 126	<세출> 338					

주: 총계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4. 주요 사업

국가예방접종 실시

국가예방접종 실시 사업은 국가가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 가계부담을 경감하고, 예방접종률 향상을 통해 예방접종대상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건

23) 보건복지부로부터 배정받은 국민건강증진기금과 응급의료기금을 포함한다.

소와 민간위탁의료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다. 동 사업의 2022년 예산은 3,749억원이 편성되었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를 대상으로 16종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생후 6개월~13세 어린이와 임신부 및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며, 65세 어르신을 대상으로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있다.

2022년에는 건강여성첫걸음사업의 일환으로 시행하였던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예방접종 국가지원 대상자를 만 12세 여성청소년에서 만 12세~17세 여성청소년과 만 18세~26세 저소득층 여성(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하여 지원한다.

[국가예방접종 실시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국가예방접종 실시	3,871	3,478	3,749	7.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사업은 대규모 신종감염병 위기 상황에 대비하여 권역 내 감염병 환자 진단·치료 및 환자 의뢰·회송 체계 관리·운영, 감염병관리기관의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 교육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을 지정하고, 국가 감염병관리시설 인프라로서 독립적인 감염병동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15년 메르스 이후, 국가방역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2017년 8월 호남권(조선대학교병원), 2020년 7월 충청·경남권(순천향대학교부속천안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 2021년 7월 경북권(칠곡경북대학교병원) 감염병전문병원을 지정하여 감염병동 구축사업을 추진 중이다.

2022년에는 수도권 감염병 전문병원 1개소를 지정할 예정이며, 신규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설계비 및 기 지정한 호남·충청·경남·경북권 감염병전문병원 구축을 위한 공사비 266억을 편성하였다.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권역 감염병 전문병원 구축	84	458	266	△41.9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질병관리청

제14장 환경노동위원회

제1절 환경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환경부의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32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조 9,06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8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약 8.4% 감소한 6조 9,244억원이다.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법정부담금과 자치단체 및 민간 용자원금회수 등으로 구성된 자체세입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회계 전입금 4,298억원이 증가하였지만, 법정부담금 2,428억원과 기타경상이전수입 5,424억원 감소 등으로 인해 2021년 추경예산 대비 8.5% 감소하였다.

[환경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8	8	32	300.0
환경개선특별회계	70,294	75,485	69,062	△8.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15	5	5	0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50	0	17	순증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625	115	128	11.3
합계	71,052	75,613	69,244	△8.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2022년 예산 기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조 6,463억원, 환경개선특별회계 6조 9,062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25억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179억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조 8,650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2021년 추경예산 대비 9,942억원 증액된 17조 779억원이다.

구체적으로, 일반회계는 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예산 증가와 수문조사 및 댐 운영·관리 사업, 공업용수도 관리 사업 추진에 따라 전년 추경예산 대비 7.8% 증가하였다. 또한,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연료전지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위한 예산이 증액됨에 따라 전년 추경예산 대비 68.3% 증가하였다.

반면,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스마트 지방상수도 관망인프라 지원 축소, 기후대응기금 사업으로 사업 이관 등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8.5% 감소하였으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사업별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전년 추경예산 대비 각각 4.7%, 0.8% 감소하였다.

[환경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9,026	61,651	66,463	7.8
환경개선특별회계	66,080	75,485	69,062	△8.5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	561	446	425	△4.7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6,568	6,231	6,179	△0.8
에너지및자원사업 특별회계	12,411	17,024	28,650	68.3
합계	144,646	160,837	170,779	6.2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환경부 소관 기금은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 등 5개로 구성된다.

한강수계관리기금, 낙동강수계관리기금, 금강수계관리기금,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개 수계관리기금의 운용액은 각각 6,763억원, 2,535억원, 1,738억원, 1,421억원으로, 공통적으로 지출계획액의 약 84.6%를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 주민지원사업에

투자할 계획이다.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액은 321억원으로, 사업비 항목 중 석면피해구제급여지급 사업이 전년 대비 6.7% 증가하였으나, 석면건강영향조사 및 석면안전관리사업이 전년 대비 각각 6.7%, 1.5% 감소하였고, 여유자금운용이 전년 대비 48.9% 감소함에 따라 2021년 계획 대비 17.9% 감소되었다.

[환경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당초(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한강수계관리기금	6,843	6,589	6,589	6,763	2.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507	2,641	2,641	2,535	△4.0
금강수계관리기금	1,512	1,566	1,566	1,738	11.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1,146	1,176	1,176	1,421	20.8
석면피해구제기금	300	391	391	321	△17.9
합계	12,308	12,363	12,363	12,778	3.4

주: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2조 1,936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0.4%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예산 대비 7,469억원 감소하였다.

[환경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8	8	32	300.0
환경개선특별회계	19,395	19,146	11,505	△39.9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5	5	5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0	0	17	순증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625	115	128	11.3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한강수계관리기금	4,873	5,227	5,304	1.5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288	2,515	2,525	0.4
금강수계관리기금	1,270	1,309	1,320	0.8
영산강·섬진강수계 관리기금	890	937	951	1.5
석면피해구제기금	159	143	149	4.2
합계	29,633	29,405	21,936	△25.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2022년 예산 기준 환경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5,763억원 증가한 11조 8,53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1.9%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일반회계와 환경개선특별회계,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등 4개의 특별회계를 통하여 예산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환경개선특별회계를 통해 대부분의 예산사업이 수행되고 있는데, 2022년 예산 기준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환경부 총지출의 54.2%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자체세입 기반이 취약하여 환경개선특별회계 세입예산의 82.6%를 자체세입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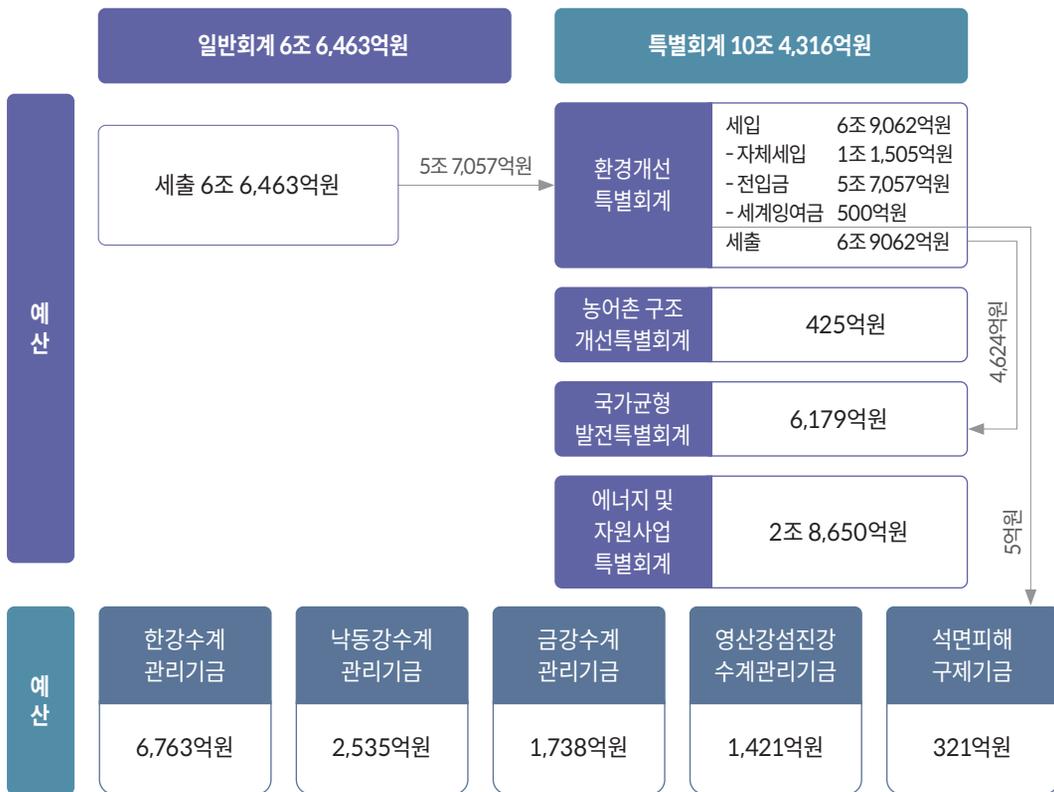
[환경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8,127	8,392	8,906	6.1
환경개선특별회계	60,547	70,622	64,228	△9.1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61	446	426	△4.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568	6,231	6,179	△0.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2,411	17,024	28,650	68.3
한강수계관리기금	5,160	5,413	5,300	△2.1
낙동강수계관리기금	2,382	2,393	2,444	2.1
금강수계관리기금	1,220	1,183	1,269	7.3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11	802	891	11.1
석면피해구제기금	214	261	237	△9.2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98,001 (1.8)	112,767 (1.9)	118,530 (1.9)	5.1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2022년도 환경부 재정구조]



주: 1. 2022년도 예산 기준
 2. 총계 기준
 자료: 환경부

4. 주요 사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사업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전기차·수소차) 보급 사업은 내연기관 자동차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고 미래차 산업 육성을 통한 시장 선점을 목적으로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이하 미래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고 전기차 충전기 및 수소충전소 등 충전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환경부는 2011년 전기자동차 보급 신규 사업을 추진한 이래로 2021년까지 전기자동차 23.8만대, 수소연료전기차 1.9만대를 보급하였으며(국토교통부 자동차 등록통계 기준),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10.7만기, 수소충전소 170기를 구축하여 이용자 편의성 개선을 통해 미래차 대중화를 촉진하고 있다.

환경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2020.7.) 및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2020.10.)

을 통해 정부합동으로 발표된 보급목표인 2025년까지 전기차 113만대, 수소차 20만대 달성을 위해 보급사업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2년에는 시장 수요 및 제작·판매사 생산능력을 고려하여 전기차 22.7만대, 수소차 2.8만대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 전년 예산 대비 1조 2,639억원(80.8%) 증액된 2조 8,280억원을 편성하였다.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보급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8,530	11,226	19,352	72.4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사업	2,946	4,415	8,928	102.2
미래차 합계	11,476	15,641	28,280	80.8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환경부

제2절 고용노동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2개 특별회계(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311억원, 세출예산은 8조 5,659억원이다.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910억원이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00억원, 세출예산 규모는 2,558억원이다.

[고용노동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94	860	1,311	5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4	-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	-	100	-
합계	1,401	863	1,411	63.5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00,734	93,667	85,659	△8.5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9	922	910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75	2,916	2,558	△12.3
합 계	104,118	97,506	89,126	△8.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고용노동부 소관 기금은 ① 고용보험기금, ②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④ 임금채권보장기금, ⑤ 근로복지진흥기금으로 총 5개가 있다. 2022년 당초 계획 기준 기금운용계획액은 44조 1,182억원으로, 전년 수정계획 대비 1조 4,333억원 감소하였다. 기금별로는 고용보험기금이 1조 4,535억원 감소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이 566억원 감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이 1,968억원 증가, 임금채권보장기금이 437억원 감소, 근로복지진흥기금이 764억원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2022 수정(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고용보험기금	204,653	224,348	241,584	227,049	△6.0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8,002	181,964	181,973	181,407	△0.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950	16,772	16,778	18,746	11.7
임금채권보장기금	8,404	10,083	10,083	9,646	△4.3
근로복지진흥기금	19,049	5,104	5,098	4,334	△15.0
합 계	328,058	438,270	455,515	441,182	△3.1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26조 7,759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5조원의 4.8%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조 924억원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294	860	1,311	52.4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	4	-	△100.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6	-	100	100.0
고용보험기금	139,859	145,497	160,585	10.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82,645	94,907	90,558	△4.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7,931	8,306	7,834	△5.7
임금채권보장기금	5,131	5,482	5,809	6.0
근로복지진흥기금	2,177	1,779	1,561	△12.3
합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239,144 (5.0)	256,835 (5.3)	267,759 (4.8)	4.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 본예산 기준 고용노동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37조 670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5.9%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조 7,988억원 감소하였다.

고용노동부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등에 비해 기금이 재정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구직급여(2022년 11조 5,339억원), 산재보험급여(2022년 7조 1,463억원) 등 규모가 큰 의무지출이 사회보험성기금²⁴⁾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24)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고용노동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08,460	82,850	72,476	△16.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909	922	910	△1.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475	2,916	2,558	△12.3
고용보험기금	204,519	222,723	188,405	△15.4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70,771	81,580	88,844	8.9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5,911	6,879	7,663	11.4
임금채권보장기금	6,404	7,340	7,008	△4.5
근로복지진흥기금	2,667	3,448	2,806	△18.6
합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02,116 (7.8)	408,658 (7.3)	370,670 (5.9)	△6.5

자료: 고용노동부

[2022년도 고용노동부 재정구조]



주: 총계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4. 주요 사업

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낸 보험료로 실직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취업알선·직업훈련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는 고용유지와 교육훈련 비용을 지원하는 사회보험으로 1995년에 도입되었다. 1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자영업자의 경우 5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 한해 고용보험 임의가입이 가능하다.

2020년 「고용보험법」 및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 개정됨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확대되었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12월 10일부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2021년 7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가 가입 대상으로 확대되었다.

고용보험의 주요 재원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보험료로, 대상자 및 계정에 따라 보험료율이 각각 달리 적용된다. 임금근로자 실업급여계정에 대해서는 1.6%(사업주·근로자 각각 0.8% 부담)의 보험료율이 부과되고, 임금근로자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의 보험료율은 0.25~0.85%(사업주 전액 부담)²⁵⁾이다. 임의가입 대상인 자영업주의 실업급여계정 및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보험료율은 각각 2%, 0.25%이다.

구직급여 수급 자격 및 급여 수준도 가입대상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수급 자격은 이직일 이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중 180일 이상 일을 하고, 비자발적 사유로 퇴직한 실업자 중 취업의사가 확고한 사람이며, 급여 수준은 퇴직 전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원한다.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 자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비자발적으로 폐업한 자영업자가 해당되며, 급여 수준은 기준보수의 60%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간 지급한다.

25)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보험료율]

(단위: %)

구분	보험료율
150인 미만 기업	0.25
150인 이상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0.45
150인 이상 ~ 1,000인 미만 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제외)	0.65
1,000인 이상 기업 및 국가, 지자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0.85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제도 개요]

가입대상자	계정	보험료율	사업내용
임금근로자 (의무가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사업규모에 따라 0.25~0.85% (사업주 전액 부담)	고용장려금, 직업훈련 등
	실업급여	1.6% (사업주, 근로자 각각 0.8%) ※ 예술인·특고의 경우 실업 급여 보험료만 부과	구직급여, 모성보호급여 등 • 구직급여: 가입일수에 따라 120~270일, 퇴직전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의 60% 지급 (1일 상한 6.6만원, 하한 최저임금의 80%) • 모성보호급여: 출산전후휴가기간(90일)에 대한 통상 임금 지급(상한 600만원), 육아휴직 개시일 기준 첫 3 개월은 월 통상임금의 80%(상한150만원, 하한70만 원), 이후 50% 지급(상한120만원, 하한70만원) ※ 예술인·특고의 경우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2개 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이고, 모성보호급여 중 출산전후급여만 지급
자영업자 (임의가입)	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0.25% (자영업주 전액 부담)	전직훈련 등
	실업급여	2% (자영업주 전액 부담)	자영업자 실업급여 • 지급수준: 기준보수의 60% • 지급기간: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

주: 2022년 7월부터 임금근로자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8%로 인상(사업주, 근로자 각각 0.9%) 예정이며,

예술인·특고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은 1.6%로 인상(사업주, 노무제공자 각각 0.8%) 예정

자료: 고용노동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예술인·특고는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²⁶⁾되는데, 기존 임금근로자와 달리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여요건이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예술인) 또는 12개월(특고) 이상이다. 구직급여액은 퇴직 전 12개월의 보수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기초일액의 60%(임금근로자와 상·하한액 동일)를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간 지원하며, 모성보호급여의 경우 출산전후급여만 지급한다.

26) 따라서, 예술인·특고는 실업급여계정에서 지출되는 사업(구직급여, 출산휴가급여 등)의 혜택을 받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계정 내 각 사업의 혜택은 받지 않는다.

[근로자·예술인·특고 고용보험의 주요 내용]

구분		근로자	예술인	특고	
적용 범위	적용대상	근로자(일용근로자 포함)	예술인(단기예술인 포함)	특고(단기특고 포함)	
	주요 적용제외	주 15시간 미만자 65세 이후 신규자 등	일정소득 미만자 (좌동)	일정소득 미만자 (좌동)	
피보험자 관리	취득신고 등	사업주(원칙)	(좌동)	(좌동)	
보험료 징수	보수	근로소득 - 비과세소득	사업소득 + 기타소득 - 비과세소득 - 경비	(좌동)	
	보험료율	실업급여 1.6% 고안·직능 0.25~0.85%	실업급여 보험료만 부과 (보험료율 등 대통령령으로 규정)	(좌동)	
	보험료 납부자	사업주(원칙)	(좌동)	(좌동)	
실업급여 지급	수급 요건	기여 요건	이직 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9개월 이상	이직 전 24개월 중 피보험 단위기간 12개월 이상
		주요 이직 사유	비자발적 이직	비자발적 이직 (소득감소에 따른 이직 인정)	(좌동)
	지급수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이직 전 12개월 보수총액 기준으로 산정한 구직급여 기초일액의 60%	(좌동)	
	지급기간	120~270일	(좌동)	(좌동)	
	수급기간 중 소득활동 인정 여부	수급기간 중 취업한 날에 대해서는 구직급여일액 전부를 감액	수급기간 중 소득 발생시 일부 또는 전부를 감액하고 구직급여 지급	(좌동)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내용		출산전후휴가급여	출산전후급여	(좌동)	
고용안정·직업능력 개발사업		적용	미적용	(좌동)	

자료: 고용노동부

고용보험은 고용보험기금을 통해 운용된다. 2022년 당초 계획 기준 고용보험기금의 수입은 18조 6,586억원, 지출은 19조 173억원이고, 수입에서 지출을 제외한 재정수지는 3,587억원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보험기금 운용 현황]

(단위: 억원, 배)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총 계	수입(A)	101,362	107,696	118,638	198,358	200,074	186,586	
	지출(B)	94,607	115,778	139,515	204,653	210,577	190,173	
	재정수지(A-B)	6,755	△8,082	△20,877	△6,295	△10,503	△3,587	
	누적적립금(C)	102,544	94,452	73,532	66,996	56,487	52,900	
인 민 근 로 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입(A)	29,795	31,193	33,752	61,884	51,690	50,507
		지출(B)	31,700	36,566	40,894	65,706	66,325	48,699
		재정수지(A-B)	△1,904	△5,374	△7,142	△3,822	△14,635	△1,808
		누적적립금(C)	44,264	38,886	31,726	27,800	13,163	11,355
		적립금배율(C/B)	1.4	1.1	0.8	0.4	0.2	0.2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71,476	76,407	84,756	136,287	148,141	135,759
		지출(B)	62,858	79,157	98,558	138,859	144,137	141,366
		재정수지(A-B)	8,618	△2,750	△13,802	△2,573	4,004	△5,607
		누적적립금(C)	57,958	55,201	41,734	38,666	42,666	37,059
		적립금배율(C/B)	0.9	0.7	0.4	0.3	0.3	0.3
자 영 업 자	고용 안정 직업 능력 개발 계정	수입(A)	11	12	16	22	28	36
		지출(B)	12	13	20	10	10	14
		재정수지(A-B)	△1	△1	△4	12	18	22
		누적적립금(C)	73	73	69	81	99	121
	실업 급여 계정	수입(A)	79	85	115	164	215	284
		지출(B)	37	42	44	77	104	94
		재정수지(A-B)	42	43	71	87	110	190
		누적적립금(C)	249	292	363	449	559	749

주: 2017~2021년은 결산 기준, 2022년은 당초 계획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한국형 실업부조’로서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실업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I유형과 II유형으로 구성되는데, I유형 지원자에게는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 최대 6개월)을 제공하고, II유형 지원자에게는 취업지원서

비스와 구직활동 참여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제공한다. I유형은 취업경험 등 기준에 따라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구분되는데, 요건심사형은 법령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지원하고, 선발형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유형별 요건 비교]

유형별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I유형	요건 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은 120% 이하)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무관)
II유형 (舊 취성패)		15~69세	중위소득 100%↓ (청년은 소득 무관)	무관	무관

자료: 고용노동부

2021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은 국민취업지원제도(일반) 세부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지원(일반) 세부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세부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2022년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라는 하나의 세부사업으로 통합되었다.

2022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세부사업은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④ 연계·협업 지원의 4개 내역사업으로 구성된다. ① 국민취업지원제도 I유형 내역사업에는 I유형 지원자에 대한 구직촉진수당 예산 등이 편성되었고, ② 국민취업지원제도 II유형 내역사업에는 II유형 지원자에 대한 취업활동비용 예산 등이 편성되었으며, ③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내역사업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중 일경험 프로그램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었고, ④ 연계·협업 지원 내역사업에는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자체 일자리센터 등 연계·협업기관 및 민간위탁기관 담당자의 교육 강화를 위한 예산이 편성되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단위사업 전체의 2022년 추경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확정예산 1조 4,030억원에 비해 935억원(6.7%) 증액된 1조 4,965억원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국민취업지원제도	327,200	1,402,965	1,496,473	6.7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	25,716	937,179	1,205,551	28.6
국민취업지원제도 II 유형	301,484	327,231	173,940	△46.8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	138,555	116,230	△16.1
연계·협업 지원	-	-	752	순증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만 15~34세 이하)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7년 신규 도입되었다. 공제에 가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시 1,200만원(+자산운용수익)의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동 사업은 2021년부터 기업지원금 및 정부지원금이 각각 축소되면서²⁷⁾ 만기공제금이 1,6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감소하였다.

2022년 추경 기준 예산은 2021년 제2회 추경 확정예산 1조 4,162억원에 비해 1,064억원(7.5%) 감액된 1조 3,099억원으로, 일반회계(정부지원금)에 8,755억원, 고용보험기금(기업지원분)에 4,344억원이 편성되었다.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 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	775,415	917,702	875,468	△4.6
청년내일채움공제(고보)	456,966	498,576	434,414	△12.8
합계	1,232,381	1,416,278	1,309,882	△7.5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고용노동부

27) 2021년은 2020년에 비해 기업지원금이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정부지원금이 9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각각 하락하였다. 더불어, 기업순지원금(2년간 50만원)을 폐지하였다.

제3절 기상청

1. 재정 현황

2022년 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14억원으로 전년 추경예산 대비 5.7% 감소하였다. 세입예산은 출연연구개발사업 및 민간대행사업 정산액, 공사 관련 위약금 등 경상이전수입, 항공기 상정보사용료, 기상정보제공수수료 등 면허 및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기상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4	2274	214	△5.7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2022년 예산 기준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4,528억원,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9억원으로 총 세출예산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6.6% 증가한 4,537억원이다. 이는 위험기상 조기탐지를 위한 신규 관측망 확충 및 국가 기후변화 대응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차세대 항공교통지원 항공기상기술 개발 등 미래기상기술력 확보를 위한 핵심사업 투자 확대에 기인한다.

[기상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579	4,257	4,528	6.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	-	9	순증
합계	3,579	4,257	4,537	6.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2. 주요 사업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정보화)

국가 기상기후데이터의 체계적 관리 및 보존을 위한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국가·사회가 공동 활용 가능한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상청은 2011년부터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AI·빅데이터 활용, 디지털 뉴딜 등으로 데이터 수요가 급증하고, 기상기후데이터가 사회·경제적 기후변화 리스크 관리의 필수 정보로 급부상함에 따라 모든 분야에서 누구나 데이터를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2022년도 예산은 기상청의 방대한 기상기후자료를 국가·산업계·학계·국민이 모두 자유롭게 공유·활용할 수 있는 기상기후데이터허브 구축을 위해 전년 추경예산 25억 2,900만원 대비 104억 4,400만원(413.0%)이 증액된 129억 7,300만원이 편성되었다.

기상청은 동 사업을 바탕으로 기상기후분야 데이터댐을 구축하여 과거 100년 기상자료부터 미래 100년 기후변화 시나리오까지 기상청이 보유한 모든 기상기후데이터를 안정적으로 통합 관리하고 '맞춤형 One-Point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정보화)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국가기후자료 관리 및 서비스 체계 구축	15	25	130	413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기상청

제15장

국토교통위원회

제1절 국토교통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국토교통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4개의 특별회계(교통시설특별회계,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1,465억원, 세출예산은 21조 7,973억원이며,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규모는 15조 7,008억원이다.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24억원, 세출예산 규모는 427억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087억원, 세출예산 규모는 3조 4,090억원이며,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8억원, 세출예산 규모는 189억원이다.

[국토교통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673	1,714	1,465	△14.5
교통시설특별회계	144,022	194,115	157,008	△19.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848	3,712	424	△88.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54	5,400	5,087	△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	8	8	-
합계	155,000	204,949	163,992	△20.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221,541	230,703	217,973	△5.5
교통시설특별회계	142,982	194,115	157,008	△19.1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3,677	3,712	427	△88.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874	32,852	34,090	3.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8	185	189	2.2
합계	396,232	461,568	409,688	△11.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국토교통부 소관 기금은 주택도시기금과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으로 총 2개가 있다. 2022년 주택도시기금의 운용 규모는 92조 8,442억원으로, 주택시장의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자치단체, 민간 등에 대한 출자·보조 또는 용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운용 규모는 2,642억원으로 자동차사고 피해자에 대한 재활보조금, 국립교통재활병원 지원비 등으로 운용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수정(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주택도시기금	1,003,031	824,862	827,458	928,442	12.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2,566	2,607	2,607	2,642	1.3
합계	1,005,597	827,469	830,065	931,084	12.2

주: 총계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21조 1,106억원으로, 정부 총수입 553.6조원의 3.8%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조 4,732억원(13.3%) 증가하였다. 총수입은 주택도시기금에서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국민주택채권 발행수입 및 청약저축 수입 계획을 증액한 것에 기인한다.

[국토교통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673	1,714	1,465	△14.5
교통시설특별회계	9,044	4,560	3,547	△22.2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6	1	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454	5,400	5,087	△5.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4	8	8	-
주택도시기금	178,803	174,157	200,458	15.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489	536	540	0.7
합 계 (정부 총수입 대비 비중)	195,472 (4.1)	186,374 (3.6)	211,106 (3.8)	13.3 -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 제1회 추경 기준 국토교통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60조 1,544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9.6%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대비 2,373억원(0.4%) 감소하였다.

국토교통부는 일반회계의 규모에 비하여 특별회계나 기금이 재정운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도로, 철도 등의 SOC건설은 교통시설특별회계, 임대주택 건설 등의 주택정책 사업은 주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운용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총지출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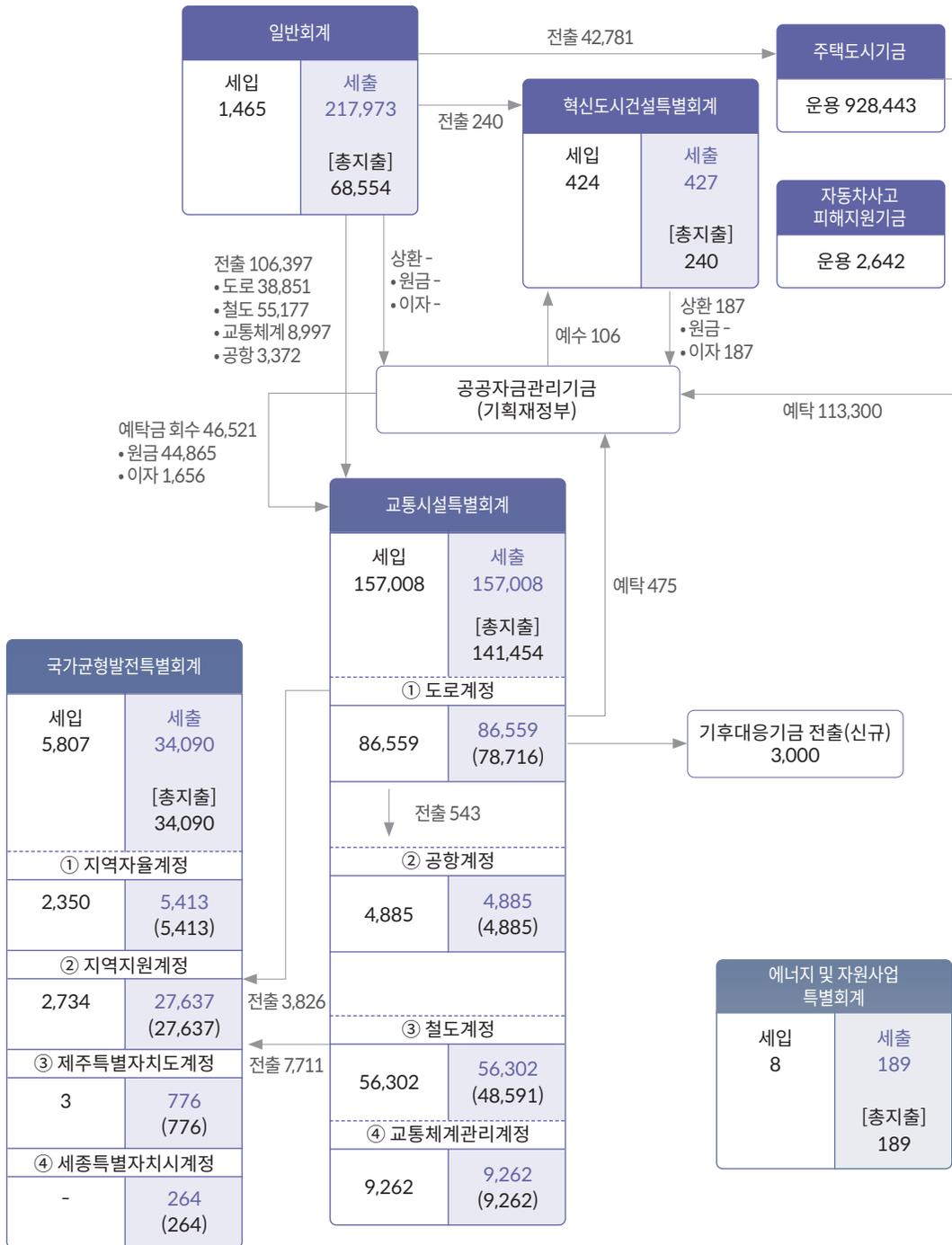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73,439	76,066	68,554	△9.9
교통시설특별회계	102,487	127,105	141,454	11.3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479	805	240	△70.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7,874	32,852	34,090	3.8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58	185	189	2.2
주택도시기금	288,289	366,387	356,419	△2.7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26	517	597	15.5
합 계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	493,251 (8.9)	603,917 (10.0)	601,544 (9.6)	△0.4 -

자료: 국토교통부

[2022년도 국토교통부 재정구조]

(단위: 억원)



주: () 는 예산총지출(총계-회계·계정간 거래 - 기금·회계간 거래) 수치
 자료: 국토교통부

4. 주요 사업

서민 주거안정 지원 사업

국토교통부는 불안정한 저소득층과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일반회계 주요사업으로는 저소득 빈곤가구 등에 대하여 주택 임차료를 보조하는 주거급여 사업(2조 1,819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2022년 신규사업으로 청년층에게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8조 2,149억원)이 편성되었다. 주택도시기금 주요 사업으로는 무주택 서민과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임대주택 지원 용·출자 합산 총 22조 5,281억원)과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주택 구입 또는 전세자금 을 융자하는 사업(9조 5,300억원), 저렴한 분양주택 등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3,258억원) 등이 편성되어 있다.

[서민 주거안정 지원 관련 사업 주요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회계 기금	세부사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 회계	주거급여지원	17,240	19,879	21,819	9.8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	-	82,149	순증
주택 도시 기금	임대주택지원(출자)	44,301	64,606	68,794	6.5
	임대주택지원(용자)	106,168	157,299	156,487	△0.5
	구입전세자금지원(용자)	99,122	99,000	95,300	△3.7
	분양주택등지원(용자)	2,488	4,907	3,258	△33.6
합 계		269,319	345,691	427,807	23.7

자료: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따른 교통시설 확충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2019.1. 발표)는 지역 경제 활력이 저하되어 수도권과의 격차가 심화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에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지역의 성장발판 마련을 위한 국가의 전략적 투자를 실시하려는 것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지역산업을 뒷받침할 도로·철도 인프라 확충, 전국을 연결하는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환경·의료·교통 시설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제고라는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국토교통부는 이 중 R&D투자 등을 통한 지역의 전략산업 육성 영역을 제외한 3개 영역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는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 6개 사업,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 5개 사업,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 4개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2022년 예산은 전년대비 4,088억원 증액된 8,095억원으로 확정되었다.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프로젝트 영역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	
				B-A	(B-A)/A
지역산업 인프라 확충(6개)	131	1,223	1,810	587	48.0
광역 교통·물류망 구축(5개)	71	1,011	1,982	971	96.0
지역주민 삶의 질 제고(4개)	259	1,773	4,303	2,530	142.7
합 계	461	4,007	8,095	4,088	102.0

자료: 국토교통부

스마트시티 사업

스마트시티 사업은 도시에 ICT 및 빅데이터 등 신기술을 접목하여 각종 도시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마트시티 종합계획('19~'23년)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이다.

2022년에는 전년 추경 대비 275억원(14.1%) 감액된 1,682억원이 반영되었다.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구축하고 스마트시티 관련 인재를 양성하고,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사업을 통해 스마트시티 국제 협력체계 등을 바탕으로 민간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스마트시티 확산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스마트서비스를 보급하고 국가 스마트시범도시인 세종 5-1생활권과 부산 에코델타 시티 조성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스마트시티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세부사업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스마트시티 기반구축	381	27	58	117.1
스마트시티 산업육성	143	74	82	20.2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926	1,856	1,542	△16.9
합 계	1,450	1,957	1,682	△14.1

자료: 국토교통부

제2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세입예산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로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4,054억원으로 전년 대비 307억원(7.0%) 감소하였고, 세출예산은 7,971억원으로 전년 대비 707억원(8.1%)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917억원이고,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054억원, 세출예산은 4,054억원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3,340	4,361	4,054	△7.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088	4,317	3,917	△9.3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회계	3,195	4,361	4,054	△7.0
합 계	6,283	8,678	7,971	△8.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 총수입·총지출

2022년 예산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의 총수입은 44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과 동일한 수준이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예산(B)	증감률 (B-A)/A
		본예산	추경(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76	44	44	44	0.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2년 예산 기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회계의 총지출은 4,038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306억원(7.0%) 감소하였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소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	3,181	4,344	4,038	△7.0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22년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재정구조]



주: 2022년도 예산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주요 사업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은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하여 세종특별자치시로 추가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행정안전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의 청사를 건립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3,4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었으나,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하여 3,502억원으로

사업비가 변경되었다. 청사는 2022년에 준공할 예정으로 2022년도 예산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03억원(7.7%) 증액된 1,440억원이 편성되었다.

[중앙행정기관 이전 건립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중앙행정기관 이전건립	254	1,337	1,440	7.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제3절 새만금개발청

1. 재정 현황

2022년 새만금개발청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된다.

2022년 예산 기준 세입예산은 79억원으로 전년 대비 25억원(46.8%) 증가하였고, 세출예산은 2,485억원으로 전년 대비 477억원(16.1%) 감소하였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8억원, 세출예산은 2,485억원이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0.7억원이다. 한편, 새만금개발청 소관 2022년도 예산의 총수입·총지출은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동일하다.

[새만금개발청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일반회계	16.9	52.1	78.4	50.5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0.2	1.8	0.7	△61.1
합 계	17.1	53.9	79.1	46.8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청

[새만금개발청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일반회계	3,118	2,962	2,485	△16.1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청

2. 주요 사업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은 새만금사업의 투자환경 등을 홍보하여 대내외 인지도를 높이고, 새만금산업단지내 장기임대용지를 조성하여 기업의 투자를 유인하는 사업이다. 2022년도 예산은 전년 추경예산 대비 130억원(67.7%) 증액된 322억원이 편성되었으며, 구체적으로 국내외 투자유치 활동 및 투자전시관 운영에 24억원, 장기임대용지 36.2만㎡ 조성에 298억원이 편성되었다.

[새만금투자유치지원 사업 예산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 감
새만금투자유치지원	436	192	322	67.7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새만금개발청

제16장 정보위원회

제1절 국가정보원

1. 재정 현황

2022년 국가정보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은 일반회계로만 구성되며 세입세출예산 총계와 총수입·총지출이 동일하다. 2022년 추경 기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77억원, 세출예산은 8,312억원이다. 국가정보원 예산은 전액 정보활동 세부사업의 안보비(270-00목)로 편성되었다.

[국가정보원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171	29	77	167.6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국가정보원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6,202	7,460	8,312	11.4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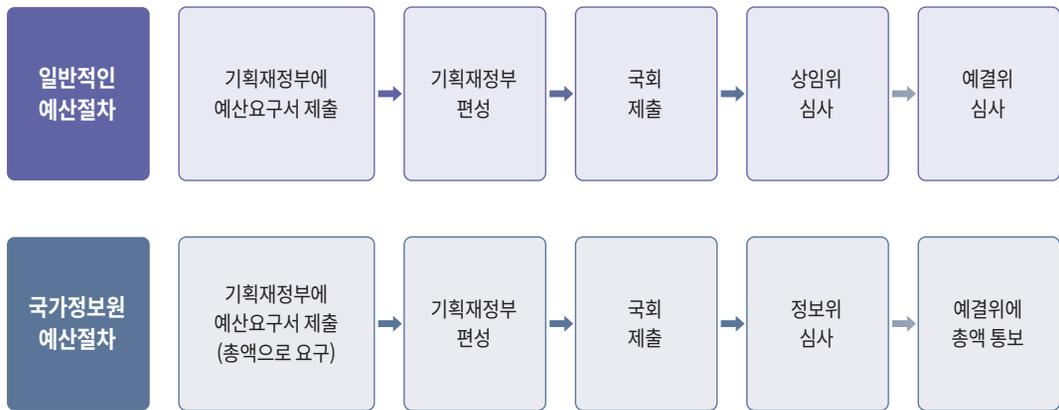
자료: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2. 국가정보원 예산심사의 특례

「국가정보원법」에 따라 국가정보원은 기획재정부에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 장·관·항으로 구분하여 총액으로 요구하며 그 산출내역은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²⁸⁾

또한,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의 경우 「국회법」 제84조에 따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를 총액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²⁹⁾

[국가정보원 예산안 편성 및 심의 절차]



28) 「국가정보원법」

제16조(예산회계) ② 국정원은 세입, 세출예산을 요구할 때에 「국가재정법」 제21조의 구분에 따라 총액으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며, 그 산출내역과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예산안의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으며, 그 편성과 집행 결산에 대하여는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다.

⑦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정원의 예산심사를 비공개로 하며, 국회 정보위원회의 위원은 국정원의 예산 내역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29) 「국회법」

제84조(예산안·결산의 회부 및 심사) ④ 정보위원회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 소관 예산안과 결산,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조정 대상 부처 소관의 정보 예산안과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여 그 결과를 해당 부처별 총액으로 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의장은 정보위원회에서 심사한 예산안과 결산에 대하여 총액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한다. 이 경우 정보위원회의 심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로 본다.

제17장 여성가족위원회

제1절 여성가족부

1. 세입세출예산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세입예산은 일반회계로 구성되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와 1개 특별회계(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구성된다. 여성가족부는 법무부 소관 범죄피해자보호기금 사업(성폭력 피해자 지원 사업, 2022년 예산 362억원)의 시행주체이며, 동 사업은 여성가족부 세입·세출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2022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35억원, 세출예산은 6,347억원이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93억원이다.

[여성가족부 세입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18	107	135	26.2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하였는데, 주요 증가사유로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등이 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9.1% 증가하였는데, 이는 신규 가족센터 건립이 12개소 증가하여 해당 예산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여성가족부 세출예산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209	5,549	6,347	1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0	452	493	9.1
합계	5,246	6,000	6,840	14.0

주: 1. 총계 기준

2.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기준,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 기금운용계획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기금은 ①양성평등기금, ②청소년육성기금으로 총 2개가 있다. 기금 별로는 양성평등기금이 1,491억원 증가, 청소년육성기금이 61억원 증가하였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여성 발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복권기금 전입금과 이자수입을 재원으로 하여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청소년육성기금은 청소년의 활동지원 및 복지증진, 청소년 보호·교육을 목적으로 하며, 복권기금 전입금과 경륜·경정사업수익 등을 재원으로 하여 청소년 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기금운용계획]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2022 수정(B)	증감률 (B-A)/A
		당초	수정(A)		
양성평등기금	4,398	5,190	5,190	6,682	28.7
청소년육성기금	1,535	1,690	1,690	1,751	3.6
합계	5,933	6,880	6,880	8,433	22.6

주: 총계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3. 총수입·총지출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수입은 8,568억원으로 전년 추경 예산 대비 1,581억원(22.6%) 증가하였다.

[여성가족부 총수입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318	107	135	26.2
양성평등기금	4,398	5,190	6,682	28.7
청소년육성기금	1,535	1,690	1,751	3.6
합계	6,251	6,987	8,568	22.6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 여성가족부 소관 회계·기금의 총지출은 1조 4,289억원으로 정부 총지출 624.3조원의 0.23%를 차지하며, 전년 추경 예산 대비 2,216억원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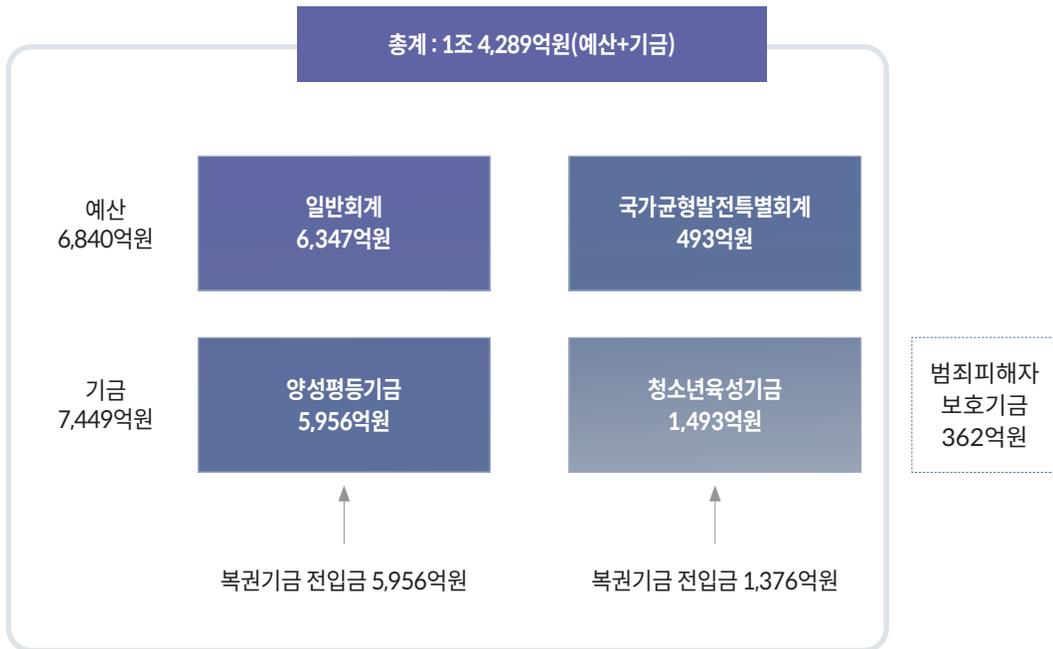
[여성가족부 총지출 규모]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일반회계	5,209	5,549	6,347	14.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70	452	493	9.1
양성평등기금	4,097	4,677	5,956	27.3
청소년육성기금	1,308	1,395	1,493	7.0
합계	10,984	12,073	14,289	18.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2022년도 여성가족부 재정구조]



주: 총계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4. 주요 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동 사업은 소득인정액³⁰⁾이 중위소득 52%(2022년 4인 가구 기준 266만원) 이하이면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및 조손가족을 지원대상으로 한다. 지원항목별로 살펴보면, 아동양육비의 경우 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이 지원되며,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월 5만원, 만 25~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는 월 5~1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학용품비는 중·고등학생 자녀 1인당 연 83,000원이, 생활보조금은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입소가구당 월 5만원이 지원된다.

30) 소득, 재산(주택·차량 등), 부채 등을 반영한 소득평가(환산)액

2022년부터는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만 18세 미만 아동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가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인상된다. 또한 일하는 한부모의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선정 시 근로·사업소득 30% 공제를 도입한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의 2022년도 예산은 전년보다 1,146억원(37.4%) 증가한 4,213억원이며, 아동양육비 4,052억원, 추가아동양육비 151억원, 학용품비 8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사업 예산]

(단위: 억원, %)

구분	2020 결산	2021 예산(A)	2022 예산(B)	증감률 (B-A)/A
아동양육비	2,591	2,974	4,052	36.2
추가아동양육비	11	83	151	81.9
학용품비	11	8	8	-
생활보조금	1	1	1	-
우편요금	0.1	0.4	0.4	-
부정수급신고 포상금	0.1	0.3	0.3	-
합계	2,614	3,067	4,213	37.4

주: 2021년 예산은 제2회 추경, 2022년 예산은 제1회 추경 기준
자료: 여성가족부

찾아보기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456	국고금	222
감사원	431	국고금 통합계정	224
결산	118, 258	국고보조금	33
결산보고서	258	국고채무부담행위	94, 130, 134
경찰청	52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438
계속비	130, 132	국민계정체계(SNA)	47
고용노동부	589	국민권익위원회	440
고용보험기금	593	국민부담률	63
공공기관	340	국민취업지원제도	596
공공부문 부채(D3)	99	국방부	505
공공자금관리기금	463	국세	60, 377
공적개발원조(ODA)	179	국세감면율 한도제	143
공적자금	452	국세청	465
공정거래위원회	447	국유재산	3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83	국유재산관리운용총보고서	332
관리재정수지	87, 300, 360	국유재산종합계획	330
관세청	469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	333
교육부	475	국채	93
교육청 전출금	35	국채발행한도액	370
구조적 재정수지	90	국채시장	105
국가결산보고서	259	국도교통부	601
국가결산보고서 부속서류	261	국회	420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4	국회법	195
국가보증채무	95, 388	국회의 예산안 심의	195
국가보훈처	442	근로장려세제(EITC)	142, 466
국가연구개발	153	금융성 채무	94, 365
국가인권위원회	425	금융위원회	448
국가재무제표	276	기금	11, 381
국가재정법	115	기금수입	69, 361
국가재정운용계획	137	기금운용계획 변경	213
국가정보원	611	기금운용계획안의 구성	135
국가채무(D1)	99	기상청	599
		기초생활보장급여	575
		기초연금	576
		기획재정부	459

L

내부거래	52
농림축산식품부	535
농촌진흥청	546

C

대법원	433
대외경제협력기금	465
대외군사판매(FMS)	312
대통령경호처	423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421
대한민국헌법	114
독립기관의 예산안 편성	129

Q

명시이월비	134
목적예비비	214, 372
무역보험 계약체결한도	391
문화재청	532
문화체육관광부	527
민간투자사업	163
민간투자사업 토지보상비	37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503

B

발생주의 복식부기 정부회계	276
방송통신위원회	492
방위사업청	508
법무부	426
법안비용추계	281
법제처	429
병무청	510
보건복지부	572
보전거래	57
보조금	239
복권기금	460
본예산	121
부담금	301
부대의견	199, 400
분야별 재정지출	74

人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151
사회보장성기금	289, 300
사회보장제도	314
산림청	54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
산업통상자원부	555
상환지출	79
새만금개발청	609
서민 주거안정 지원	605
성과관리제도	272
성인지예산	186
성질별 재정지출	79

찾아보기

세계잉여금	25, 67
세법개정	410
세외수입	65, 377
세입세출예산	131
세입예산	376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200
세출예산	379
소관별 재정지출	71
소방청	523
수익형 민자사업(BTO)	163
수입금 마련 지출	371
수정예산안	122
순계예산	18
시·도비 보조금	35
시정요구	269
식품의약품안전처	578

외교부	498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	375
원자력안전위원회	495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404
의무지출	81
이용	212, 371
이월	134, 214
이체	212
인사혁신처	517
일반재정	18
일반정부 부채(D2)	99
일반정부 재정	43
일반회계	9
임대형 민자사업(BTL)	163, 385

ㄷ

○

어촌뉴딜 300	546
여성가족부	613
연기금투자플	246
예비비	214, 372, 462
예비타당성조사	145
예산 집행지침	206
예산배정	206, 208
예산안 등의 자동부의 제도	203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첨부서류	136
예산안 편성지침	127
예산요구서	127
예산총칙	130, 367
예탁금	463
온실가스감축인자예산제도	191

자녀장려세제(CTC)	467
장기계속계약	133
장애인연금	576
재난안전사업	171
재량지출	81
재무제표	259
재정과정	114
재정분권	40
재정사업 성과관리	274
재정수지	86, 298, 364
재정준칙	103
재정증권	226
재정집행관리제도	209
적자성 채무	94, 365
전략물자	257
전용	212

2022 대한민국 재정

발 간 일 2022년 8월
발 행 인 국회예산정책처장 임익상
편 집 예산분석실 예산분석총괄과
발 행 처 국회예산정책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대한민국국회
TEL. 02-6788-4687
인 쇄 1판 1쇄/2022년 4월
2판 1쇄/2022년 8월
디 자 인 유월에 TEL. 02-859-2278

ISBN 979-11-6799-043-3 93350

© 국회예산정책처, 2022

내일을 여는 국민의 국회



(07233)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2070-3114 www.nabo.go.kr

발 간 등 록 번 호

31-9700460-001414-10



국회에산정책처
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